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17-1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75

외 교 부

| 일러두기 |

1. 외교사료해제집은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록한 것으로, 본 책자는 2006년에 공개된 1975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2. 각 문서철별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은 각 외교문서철의 주제순(분류번호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해제문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과와 함께 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해제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변경,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1975년 외교일지)으로 구성되었다.

1975년도

0001 양유찬 대사(전 주미국대사) 장례식 ····· 34
000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35
0003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2권 (V.1 1974.7-75.1) ····· 36
0004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2권 (V.2 1975.3-10) ····· 37
0005 재외공관 근무 직원 서열에 관한 규정 ····· 38
0006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 1975.10.1. ····· 39
0007 명예영사 입국 사증발급 임무부여 ····· 40
0008 Idriss, Ahmed 주N'Djamena(차드) 명예영사 임명, 1975.1.7. ····· 41
0009 Hernandez Sanchez, I. Rafael J.M. 주Santo Domingo(도미니카공화국) 명예영사 임명, 1974.12.26. ····· 42
0010 주Guayaquil(에콰도르) 명예총영사 임명 및 해임 ····· 43
0011 주San Salvador(엘살바도르) 명예총영사 임명 및 해임 ····· 44
0012 Largier, Yves E. 주Marseille(프랑스) 명예영사 임명, 1975.5.19. ····· 45
0013 Mango, Kamal H. 주Amman(요르단) 명예총영사 유임문제 및 서훈 ····· 46
0014 명예영사 임명 - 모나코 ····· 47
0015 Seeyave, Rene Cheh 주Port Louis(모리셔스) 명예영사 해임, 1975.8.14. ····· 48
0016 Obregon Reynoso, Bernado 주Gudalajara(멕시코) 명예영사 임명, 1975.12.5. ····· 49
0017 Guthrey, A.R. 주Christchurch(뉴질란드) 명예영사 임명, 1975.1.7. ····· 50
0018 Kahraman, Ferda 주Istanbul(터키) 명예총영사 임명, 1975.1.28. ····· 52
0019 주Boston(미국) 명예영사관 개관, 1975.5.16. ····· 53
0020 주Philadelphia(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주Phoenix(미국) 명예영사관 개관 ····· 54
0021 주Portland(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55
0022 Coleman, Thomas B. 주New Orleans(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5.3.13. ····· 56
0023 Lounsbury, Loren H. 주Anchorage(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5.5.12. ····· 57
0024 Matheson, Richard G. 주Seattle(미국) 명예총영사 해임, 1975.8.27. ····· 58
0025 Williams, John B. 주San Juan(미국) 명예총영사 임명, 1975.6.11. ····· 59
0026 1975년도 북미지역 주재 명예영사 활용방안 및 현황 ····· 60
0027 주Detroit(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61
0028 주페루대사관 상주무관 파견 ····· 62
0029 Farrington, Joseph R. 전 미국 하원의원 및 이원순 한·미 협회장에 대한 훈장수여 ····· 63
0030 한·일본 인사 서훈 ····· 64
0031 국내 가톨릭계 인사의 정치활동 문제 ····· 65
0032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및 이에 대한 각국 반응 ····· 66
0033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 선포 ····· 67
0034 김대중 납치사건 ····· 68
0035 국외안장(일본 및 미국) 애국선열 유해봉환 ····· 70
0036 국제회의 참가대표 신임장 발급 ····· 71
0037 주일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문제 ····· 72
0038 주월남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계획 ····· 73
0039 주영국대사관 청사 매입 ····· 74
0040 주네덜란드대사관 관저 매입 ····· 75
0041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회관 건립 ····· 76
0042 주인도대사관 구건물 임차계약 관련 소송 ····· 77
0043 대사파견 - 아프가니스탄 ····· 78

0044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 79
0045 대사파견 - 미얀마(구 버마) ····· 80
0046 대사파견 - 볼리비아 ····· 81
0047 대사파견 - 차드 ····· 82
0048 대사파견 - 칠레 ····· 83
0049 대사파견 - 콜롬비아 ····· 84
0050 대사파견 - 카나다 ····· 85
0051 대사파견 - 코스타리카 ····· 86
0052 대사파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87
0053 대사파견 - 덴마크 ····· 88
0054 대사파견 - 에티오피아 ····· 89
0055 대사파견 - 핀란드 ····· 90
0056 대사파견 - 독일 ····· 91
0057 대사파견 - 그레나다 ····· 92
0058 대사파견 - 과테말라 ····· 93
0059 대사파견 - 제네바 ····· 94
0060 대사파견 - 이탈리아 ····· 95
0061 대사파견 - 요르단 ····· 96
0062 대사파견 - 케냐 ····· 97
0063 대사파견 - 라오스 ····· 98
0064 대사파견 - 말레이시아 ····· 99
0065 대사파견 - 모리셔스 ····· 100
0066 대사파견 - 몰디브 ····· 101
0067 대사파견 - 멕시코 ····· 102
0068 대사파견 - 니카라과 ····· 103
0069 대사파견 - 파나마 ····· 104
0070 대사파견 - 포르투갈 ····· 105
0071 대사파견 - 페루 ····· 106
0072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1973-75) ····· 107
0073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1975) ····· 108
0074 대사파견 - 스웨덴 ····· 109
0075 대사파견 - 싱가포르 ····· 110
0076 대사파견 - 시에라리온 ····· 111
0077 대사파견 - 세네갈 ····· 112
0078 대사파견 - 스와질란드 ····· 113
0079 대사파견 - 스위스 ····· 114
0080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 115
0081 대사파견 - 우루과이 ····· 116
0082 대사부임 - 호주 ····· 117
0083 대사부임 - 방글라데시 ····· 118
0084 대사부임 - 미얀마(구 버마) ····· 119
0085 대사부임 - 볼리비아 ····· 120
0086 대사부임 - 대만(구 중국) ····· 121
0087 대사부임 - 칠레 ····· 122
0088 대사부임 - 중앙아프리카 ····· 123
0089 대사부임 - 프랑스 ····· 124

0090 대사부임 - 가봉 ····· 125
0091 대사부임 - 독일 ····· 126
0092 대사부임 - 일본 ····· 127
0093 대사부임 - 라오스 ····· 128
0094 대사부임 - 모로코 ····· 129
0095 대사부임 - 네덜란드 ····· 130
0096 대사부임 - 페루 ····· 131
0097 대사부임 - 스웨덴 ····· 132
0098 대사부임 - 스위스 ····· 133
0099 대사부임 - 영국 ····· 134
0100 영사위임장 발급 ····· 135
0101 영사부임 - 칠레 ····· 136
0102 영사부임 - 영국 ····· 137
0103 Cottle Crosby, Robert 주서울 페루 명예영사 접수 ····· 138
0104 왕상은 주부산 영국 명예영사 접수 ····· 139
0105 장상태 주서울 코트디부아르 명예총영사 승인, 1975.3.26. ····· 140
0106 무관접수 - 요르단 ····· 141
0107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문제 ····· 142
0108 한국의 외교특권 및 면제제도 ····· 143
0109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 144
0110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특권부여 문제 ····· 145
0111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정, 1975.11.3. ····· 146
0112 부산 일본인 학교 설립 ····· 147
0113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소련 민간학술 문화·산업분야 접촉시도 ····· 148
0114 한국의 대팔레스타인(PLO) 정책 ····· 149
0115 대미국 의회 활동 계획 및 보고 ····· 150
0116 1975년도 대미국 외교시책 및 업무 요강 ····· 151
0117 1975년도 대아프리카·중동 외교방안 ····· 152
0118 한국의 대구주 외교정책(자료) ····· 153
0119 중국(구 중공)의 국제회의에서의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 154
0120 일본의 대한 정책 ····· 155
0121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관계 발언 ····· 156
0122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 ····· 157
0123 미국의 대외 정책 ····· 158
0124 한·오스트리아 정무일반 ····· 159
0125 한·벨기에 정무일반 ····· 160
0126 한·미얀마(구 버마) 정무일반 ····· 161
0127 한·대만(구 중국) 정무일반 ····· 162
0128 한·에티오피아 정무일반 ····· 163
0129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 164
0130 한·가봉 정무일반 ····· 165
0131 한·독일 정무일반 ····· 166
0132 한·이스라엘 정무일반 ····· 167
0133 일본 주요인사의 한국관계 발언 ····· 168
0134 일본 내 좌익단체의 주일본공관 앞 시위 및 난입 사건 ····· 169
0135 재한 일본인 관광객 등 안전문제 ····· 170

0136 한·일본 정무일반 ····· 171
0137 한·쿠웨이트 정무일반 ····· 172
0138 한·레소토 정무일반 ····· 173
0139 한·라이베리아 정무일반 ····· 174
0140 주멕시코대사관 공사의 스페인 공화파 망명정권 리셉션(4.14.) 참석 및 스페인 정부의 유감표명 ····· 175
0141 한·네팔 정무일반 ····· 176
0142 한·노르웨이 정무일반 ····· 177
0143 한·네덜란드 정무일반 ····· 178
0144 한·니제르 정무일반 ····· 179
0145 한·페루 정무일반 ····· 180
0146 한·스리랑카 정무일반 ····· 181
0147 한·터키 정무일반 ····· 182
0148 한·우간다 정무일반 ····· 183
0149 한·영국 정무일반 ····· 184
0150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 ····· 185
0151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V.1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 기본대책) ····· 186
0152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V.2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I: 진행상황) ····· 187
0153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V.3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II: 증언문과 속기록) ····· 188
0154 한·미국 정무일반 ····· 189
0155 한·월남 정무일반 ····· 190
0156 대짐바브웨(구 로데시아) 교역 및 여행금지 ····· 191
0157 한·자이르 정무일반 ····· 192
0158 강영규 주코트디부아르대사 겸임국 베냉(구 다호메이) 및 니제르 출장 ····· 193
0159 윤영교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차드 출장 ····· 194
0160 Mougnon, Sidoine 주한 가봉대사(일본 상주) 방한, 1975.6.17.-20. ····· 195
0161 강춘희 주뉴질란드대사 겸임국 서사모아 및 통가 출장, 1975.5.31.-6.11. ····· 196
0162 대동구권 외교관 직접 접촉 ····· 197
0163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출장 ····· 198
0164 자이르의 임명진 주자이르대사에 대한 PNG 결정 취소에 관한 건 ····· 199
0165 Mulamba, Leonard 일본 상주 주한 자이르대사 방한, 1975.2.3.-6. ····· 200
0166 호주·중국(구 중공) 관계 ····· 201
0167 미얀마(구 버마)·중국(구 중공) 관계 ····· 202
0168 브라질·중국(구 중공) 관계 ····· 203
0169 일본·대만(구 중국) 관계 ····· 204
0170 미국·대만(구 중국) 관계 ····· 205
0171 EC(구주공동체)·중국(구 중공) 외교관계 수립, 1975.9.15. ····· 206
0172 프랑스·중국(구 중공) 관계 ····· 207
0173 독일·중국(구 중공) 관계 ····· 208
0174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 ····· 209
0175 중국(구 중공)·라오스 관계 ····· 211
0176 파키스탄·중국(구 중공) 관계 ····· 212
0177 필리핀·중국(구 중공) 외교관계 수립, 1975.6.9. ····· 213
0178 태국·중국(구 중공) 관계 ····· 215
0179 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 217
0180 미국·중국(구 중공) 관계 ····· 218
0181 Ford, Gerald R. 미국 대통령 중국(구 중공) 방문, 1975.12.1.-5. ····· 219

0182 Kissinger, Henry 미국 국무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1975.10.19.-23. ····· 220
0183 필리핀·쿠바 관계 ····· 222
0184 미국·쿠바 관계 ····· 223
0185 이집트·리비아 관계 ····· 224
0186 이집트·소련 관계 ····· 225
0187 이집트·미국 관계 ····· 226
0188 프랑스·소련 관계 ····· 227
0189 일본·소련 관계 ····· 228
0190 미국·일본 정치이사회 설립 추진 ····· 230
0191 미끼(三木武夫)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75.8.5.-6. ····· 231
0192 일본·미국 관계 ····· 233
0193 히로히또(裕仁) 일본 천황 미국 방문, 1975.9.30.-10.13. ····· 234
0194 일본·월맹 관계 ····· 235
0195 튀니지·리비아 통합 노력 ····· 236
0196 미국·몽골 관계 ····· 237
0197 파키스탄·미국 관계 ····· 238
0198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관계 ····· 239
0199 사우디아라비아·중동 관계 ····· 240
0200 우간다·미국 관계 ····· 241
0201 미국·소련 관계 ····· 242
0202 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소련 관계 ····· 243
0203 미국·월남 관계 ····· 244
0204 한·알제리 관계개선 ····· 245
0205 국교수립 - 미얀마(구 버마), 1975.5.16. ····· 246
0206 국교단절 - 베냉(구 다호메이), 1975.10.6. ····· 247
0207 대중국(구 중공) 외교관 직접 접촉 ····· 248
0208 국교수립 교섭 - 이집트 ····· 249
0209 국교단절 - 라오스, 1975.7.24. ····· 251
0210 외교관계 정지 - 르완다, 1975.5.31. ····· 252
0211 국교수립 - 싱가포르, 1975.8.8. ····· 253
0212 국교수립 - 수리남, 1975.11.28. ····· 254
0213 한·소련 관계개선 ····· 255
0214 국교수립 교섭 - 북예멘 ····· 256
0215 재외공관(상주)설치 계획 ····· 257
0216 재외공관 설치 - 아프가니스탄, 1975.3.12. ····· 258
0217 재외공관 설치 - 방글라데시, 1975.3.1. ····· 259
0218 주Rio de Janeiro(브라질)영사관 설치 건의 ····· 260
0219 캄보디아(구 크메르) 주재 한국대사관 및 교민 비상철수, 1975.4.5. ····· 261
0220 재외공관 설치 - Toronto(카나다)총영사관, 1975.8.18. ····· 262
0221 아이슬란드 관할공관 변경 ····· 263
0222 재외공관 설치 추진 - Surabaya(인도네시아)영사관 ····· 264
0223 재외공관 설치 - 요르단, 1975.4.10. ····· 265
0224 주Beirut(레바논) 통상대표부 공관 직원 및 교민 철수, 1975.12.19. ····· 266
0225 재외공관 폐쇄 - 라오스 ····· 267
0226 재외공관 설치 - 포르투갈 ····· 269
0227 재외공관 설치 - 르완다, 1972.8.23. ····· 270

0228 재외공관 폐쇄 - 르완다, 1975.5.31. ····· 271
0229 수리남 관할공관 변경 ····· 272
0230 재외공관 설치 - 수리남, 1975.12.19. ····· 273
0231 월남 주재 한국대사관 및 정부기관 철수 ····· 274
0232 주한공관 철수 - 브라질 ····· 275
0233 주한 크메르대사관 폐쇄, 1975.5.1. ····· 276
0234 주한공관 재설치 - 칠레, 1975.3.5. ····· 277
0235 주한 칠레대사관내의 총영사관 설치 인가 문제 ····· 278
0236 주한공관 설치 - 가봉, 1975.6.26. ····· 279
0237 주한공관 설치 - 이란, 1975.8.26. ····· 280
0238 주한공관 설치 - 사우디아라비아, 1975.4.21. ····· 281
0239 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의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지원 ····· 282
0240 ASEAN(동남아국가연합) 고위관리회의 ····· 283
0241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무장관회의, 제8차. Kuala-Lumpur, 1975.5.13.-15. ····· 284
0242 AIPO(아세안 의원연합기구) 구성 ····· 285
0243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등록처 장래문제 ····· 286
0244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용역등록처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이관문제 ····· 287
0245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임명 ····· 288
0246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6-37차. 서울, 1975.2.7. 및 9.30. ····· 289
0247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8차. 서울, 1975.11.7. ····· 290
0248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9-20차. 서울, 1975.2.14. 및 10.6. ····· 291
0249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8차. 서울, 1975.11.14. ····· 292
0250 OAS(미주기구) 회의 ····· 293
0251 EC(구주공동체)·COMECON(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과의 관계 ····· 294
0252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 295
0253 NORDIC(북구협력기구) 외상회의 ····· 296
0254 이슬람 외상회의, 제6차. Jeddah(사우디아라비아), 1975.7.12.-15. ····· 297
0255 Bahie Eldin Nasr 일본 상주 아랍연맹 대표 방한 ····· 298
0256 AAPSO(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회의 ····· 299
0257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12차. Kampala(우간다), 1975.7.29.-8.1. 전2권 (V1. 기본문서) ····· 300
0258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12차. Kampala(우간다), 1975.7.29.-8.1. 전2권 (V2. 자료) ····· 301
025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 302
0260 Onu, Peter U.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차장 방한, 1975.1.21.-25. ····· 303
0261 신정부 승인 - 방글라데시, 1975.8.21. ····· 304
0262 신정부 승인 - 온두라스, 1975.4.26. ····· 305
0263 신생독립국 승인 - 파푸아뉴기니 ····· 306
0264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전3권 (V1. 1974) ····· 307
0265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전3권 (V2. 1975) ····· 308
0266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전3권 (V3. 자료) ····· 309
0267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 310
0268 Sinnott, James P. 미국인 신부 출국 조치 ····· 311
0269 주요인사 접촉 기록 ····· 312
0270 외무부장관 연설문 ····· 313
0271 함병춘 주미국대사 연설문 ····· 314
0272 주한 프랑스대사 면담록 ····· 315
0273 교황청(구 바티칸) 교황 메시지 ····· 316

0274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연설문 및 기자회견 내용 ····· 317
0275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1 사전준비철) ····· 318
0276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2 경제관계 실무자회의. 동경, 1975.9.3.-9.) ····· 319
0277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3 회의결과) ····· 320
0278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4 회의운영 준비) ····· 321
0279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5 행정관계철) ····· 322
0280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6 언론반응) ····· 323
0281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7 자료) ····· 324
0282 공관장회의, 1975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Paris, 1975.3.16.-18. 전3권 (V.1 기본문서) ····· 325
0283 공관장회의, 1975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Paris, 1975.3.16.-18. 전3권 (V.2 회의자료) ····· 326
0284 공관장회의, 1975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Paris, 1975.3.16.-18. 전3권 (V.3 자료집) ····· 327
0285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아주지역. Jakarta, 1975.2.27.-3.1. 전2권 (V.1 기본문서) ····· 328
0286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아주지역. Jakarta, 1975.2.27.-3.1. 전2권 (V.2 자료) ····· 329
0287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아·중동지역. 서울, 1975.1.27.-2.8. ····· 330
0288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중남미지역. 서울, 1975.4.10.-20. 전2권 (V.1 기본문서) ····· 331
0289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중남미지역. 서울, 1975.4.10.-20. 전2권 (V.2 통상관계 자료집) ····· 332
0290 한국 관계 세미나 및 학회 ····· 333
0291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 334
0292 박정희 대통령 이란 방문 추진 ····· 335
0293 김종필 국무총리 일본 방문, 1975.5.8.-9. ····· 336
0294 김동조 외무장관 인도 방문, 1975.4.20.-23. 전2권 (V.1 기본문서) ····· 337
0295 김동조 외무장관 인도 방문, 1975.4.20.-23. 전2권 (V.2 참고자료) ····· 338
0296 김동조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75.3.31.-4.2. ····· 339
0297 노신영 외무차관 일본 방문(연기) ····· 340
0298 김동조 외무장관 파키스탄 방문 추진 ····· 341
0299 김동조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추진 ····· 342
0300 김동조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75.3.23.-30. ····· 343
0301 노신영 외무차관 미국 방문, 1975.5.1.-3. ····· 344
0302 노신영 외무차관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4.10.-29. 전2권 (V.1 사전준비) ····· 345
0303 노신영 외무차관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4.10.-29. 전2권 (V.2 결과보고) ····· 346
0304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1 사전준비) ····· 348
0305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2 국별교섭) ····· 349
0306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3 결과보고) ····· 350
0307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4 언론보도 및 연설문) ····· 352
0308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5 자료) ····· 354
0309 노신영 외무차관 서남아 순방, 1975.7.13.-24. ····· 355
0310 노신영 외무차관 중동 순방, 1975.8.8.-19. ····· 357
0311 김동조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75.3.14.-4.2. ····· 358
0312 노신영 외무차관 중남미 순방, 1975.5.27.-6.12. ····· 360
0313 특별사절단 아프가니스탄 및 서남아 순방, 1975.8.5.-19. ····· 361
0314 이용희 특사(대통령 특별보좌관) 브라질 방문, 1975.10.25.-29. ····· 363
0315 장예준 특사(상공장관) 그리스 방문, 1975.10.26.-28. ····· 364
0316 특별사절단 북예멘 및 쿠웨이트 방문, 1975.10.17.-25. ····· 365
0317 최규하 특사(대통령 외무담당 특별보좌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1975.3.15.-24. ····· 366
0318 심흥선 특사(총무처장관) 중동 및 스페인 순방, 1975.5.5.-20. ····· 367
0319 최경록 특사(교통장관) 태국 방문, 1975.4.29.-5.3. ····· 368

0320 최규하 특사(대통령특별보좌관) 태국 방문, 1975.10.26. ····· 369
0321 친선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8.2.-21. ····· 370
0322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지역 등 순방, 1975.6.20.-7.12. ····· 371
0323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6.24.-7.11. ····· 372
0324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 1975.10.2.-11.6. ····· 373
0325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3.18.-4.12. ····· 374
0326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 1975.9.22.-10.8. ····· 375
0327 특별사절단 북구 순방, 1975.9.5.-27. ····· 376
0328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 이란 방문, 1975.1.7.-16. ····· 377
0329 국회의원 일본 방문 ····· 378
0330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일본 방문 ····· 379
0331 이철승 국회부의장 일본 방문, 1975.5.14.-15. ····· 380
0332 정일권 국회의장 미국·서구 및 일본 순방, 1975.4.30.-5.21. ····· 381
0333 이철승 국회 부의장 미국 방문, 1975.2.24.-3.6. ····· 382
0334 6.25 참전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675.6.3.-25. 전2권 (V.1 기본문서) ····· 383
0335 6.25 참전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675.6.3.-25. 전2권 (V.2 활동보고서) ····· 384
0336 국회의원단 중동 순방 계획(연기) ····· 385
0337 신도성 국토통일원장관 독일 및 오스트리아 방문, 1975.6.13.-26. ····· 386
0338 구자춘 서울시장 터키·이란 및 대만(구 중국) 순방, 1975.10.12.-20. ····· 387
0339 국방대학원 교수 그리스 방문 계획 ····· 388
0340 특별사절단 카타르 방문, 1975.10.22.-24. ····· 389
0341 정세조사단 수리남 및 안티레스(네덜란드령) 방문, 1975.1.13.-17. ····· 390
0342 김용우 한국적십자사 총재 터키 방문, 1975.7.29.-8.3. ····· 391
0343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5.5.18.-6.9. ····· 392
0344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5.6.12.-7.11. ····· 393
0345 김종필 국무총리 장개석 대만(구 중국) 총통 장례식 참석, 1975.4.15.-18. ····· 394
0346 김종필 국무총리 사또(佐藤榮作) 일본 수상 장례식 참석, 1975.6.15.-17. ····· 395
0347 김동조 외무장관 Birendra Bir Birkram Shah Dev 네팔 국왕 대관식 참석, 1975.2.22.-26. ····· 396
0348 김종필 국무총리 Khalid Ibn Abdul Aziz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즉위식 참석, 1975.5.2.-5. ····· 397
0349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 수리남 독립경축식 참석, 1975.11.20.-28. ····· 398
0350 강춘희 주뉴질란드대사 통가 헌법제정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1975.11.1.-6. ····· 399
0351 강춘희 주뉴질란드대사 사모아(구 서사모아) 독립기념행사 참석, 1975.5.31.-6.6. ····· 400
0352 Bongo, El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1975.7.5.-8. 전3권 (V.1 기본문서) ····· 401
0353 Bongo, El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1975.7.5.-8. 전3권 (V.2 의전) ····· 403
0354 Bongo, El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1975.7.5.-8. 전3권 (V.3 자료) ····· 404
0355 De Roburt, Hammer 나우루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취소) ····· 405
0356 Macapagal, Diosdado 전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75.12.12.-15. ····· 406
0357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방한 ····· 407
0358 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 ····· 408
0359 Biya, Paul 카메룬 수상 방한 초청 계획 ····· 409
0360 Mancham, James R. 세이셸 수상 방한, 1975.8.27.-31. ····· 410
0361 Arron, H.A.E. 수리남 수상 방한 초청 계획 ····· 411
0362 Yahya Gegham 북예멘 외교·경제담당 부총리 방한 초청 계획 ····· 413
0363 Vigness, Alberto J.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 414
0364 Willesee, Donald 호주 외상 방한, 1975.6.19.-22. ····· 415
0365 Aladaye, Michel 베냉(구 다호메이) 외무장관 방한 추진 ····· 416

0366 MacEachen, Allan J. 카나다 외무장관 방한, 1975.6.26.-27. ····· 418
0367 Roman, Victor Hugo 코스타리카 외무차관 방한, 1975.6.24.-30. ····· 420
0368 Bozanga, Simon-Narcisse 중앙아프리카 외무차관 방한, 1975.11.3.-7. ····· 421
0369 Castaneda Comejo, Ricardo Guillermo 엘살바도르 외무차관 방한, 1975.3.2.-4. ····· 422
0370 Okumba D'okwatsegue, El Konighi 가봉 외무장관 방한, 1975.4.13.-18. ····· 423
0371 Wills, Fred R. 가이아나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 424
0372 Pineda Milla, Ricardo Arturo 온두라스 외무차관 방한, 1975.6.27.-7.1. ····· 425
0373 Brutus, Edner 아이티 외무장관 방한, 1975.9.9.-12. ····· 426
0374 도오고오 후미히꼬(東郷文彦)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975.10.7.-11. ····· 427
0375 미야자와 기이찌(宮澤喜一) 일본 외상 방한, 1975.7.23.-24. ····· 428
0376 Sapena-Pastor, Raul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1975.7.28.-31. ····· 429
0377 Collantes, Manuel 필리핀 외무차관 방한, 1975.12.15.-18. ····· 430
0378 De la Flor Valle, Miguel 페루 외상 방한 초청 계획 ····· 431
0379 Garcia Bedoya, Carlos 페루 외무차관 방한 초청 계획 ····· 432
0380 Nsekalije, Aloys 르완다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 433
0381 Chatichai Choonhavan(챠챠이 춘하완) 태국 외무장관 방한, 1975.11.30.-12.3. ····· 434
0382 Zerbo, Saye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외무장관 방한 계획 ····· 435
0383 Mohamed Abdul Kader HATEM 이집트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전 부수상 및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한 초청 계획 ··· 436
0384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방한 ····· 438
0385 Gillet, Roland 벨기에 국회의원 방한, 1975.12.7.-11. ····· 439
0386 콜롬비아 국회의원 방한 ····· 440
0387 Carro Zuniga, Alfonso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방한, 1975.5.28.-6.2. ····· 441
0388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75.9.27.-10.3. ····· 442
0389 De Nurville, Couve 프랑스 외무위원장 방한 초청 계획 ····· 443
0390 독일 국회의원 방한 ····· 444
0391 Ponce Monroy, Ramiro 과테말라 제1부의장 및 Castillo Valdez, Rafael 외무위원장 방한, 1975.11.16.-19. ··· 445
0392 고다이라 다다시(小平忠) 일본 민사당 부위원장 일행 방한, 1975.7.4.-6. ····· 446
0393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단 방한계획(취소) ····· 447
0394 Kamal El Assad 레바논 국회의장 방한 초청 계획 ····· 448
0395 미국 의회의원 방한. 전2권 (V.1 1-8월) ····· 449
0396 한국전쟁 참전 의원단 방한, 1975.10.23.-28. ····· 451
0397 Fraser, Donald M. 미국 하원의원 방한, 1975.3.30.-4.2. ····· 452
0398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 창립, 1975.12.17. ····· 453
0399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추진 ····· 454
0400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결성, 1975.12.17. ····· 455
0401 한·일본 의원간친회 총회, 제4차. 동경, 1975.1.22.-23. ····· 456
0402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 제1차. 서울, 1975.7.9.-11. ····· 457
0403 한·영국 의원친선협회 ····· 458
0404 대만(구 중국) 주요인사 방한 ····· 459
0405 Hernandez Almanzar, Homero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성 유엔국장 방한, 1975.7.19.-23. ····· 460
0406 Chiriboga, Jorge 에콰도르 외무성 국제경제국장 방한, 1975.11.10.-16. ····· 461
0407 Astacio, Julio E. 엘살바도르 보건장관 및 Vieytez Canãs, Atilio 국가계획청장 방한, 1975.3.27.-30. ····· 462
0408 Martin, Claude 프랑스 외무장관 보좌관 방한, 1975.3.21.-25. ····· 463
0409 Soto Reyes, Arturo 온두라스 외무성 의전장 방한, 1975.8.18.-22. ····· 464
0410 Rossi, Agnelo 바티칸 추기경(포교성 장관) 방한, 1975.7.15. ····· 465
0411 Naseri, Freydoon 이란 노동성차관 방한, 1975.1.9.-12. ····· 466

0412 일본 주요인사 방한 ····· 467
0413 Bruce, L.S. 자메이카 수상 개인보좌관 방한, 1975.4.21.-23. ····· 468
0414 Rookmarker, Jacobus 네덜란드 외무부 아주국장, 1975.1.13.-16. ····· 469
0415 필리핀 주요인사 방한 ····· 470
0416 Abdul Wahab Ahmed Abdul Wassie 사우디아라비아 감사원장 방한, 1975.10.3.-7. ····· 471
0417 스리랑카 불교 Malwatte 종정 일행 방한, 1975.6.30.-7.7. ····· 472
0418 Bentley, William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 방한, 1975.12.5.-9. ····· 473
0419 Wilford, K. Michael 영국 아주담당차관보 방한, 1975.5.10.-14. ····· 474
0420 미국 국무부 동부아시아 및 태평양담당차관보 및 부차관보 방한 ····· 475
0421 미국 국무부 인사 방한 ····· 476
0422 미국 Georgia주 주지사 및 무역사절단 방한 ····· 477
0423 Kell, Raymond M. 주Portland(미국) 명예총영사 방한, 1975.2.17.-23. ····· 478
0424 PuigLanza, Barrett 우루과이 대통령 공보실장 방한, 1975.4.15.-18. ····· 479
0425 북한·알제리 관계 ····· 480
0426 북한·앙골라 관계 ····· 481
0427 북한·아르헨티나 관계 ····· 482
0428 북한·호주 관계 ····· 483
0429 북한·방글라데시 관계 ····· 484
0430 북한·벨기에 관계 ····· 485
0431 북한·미얀마(구 버마) 관계 ····· 486
0432 북한·브라질 관계 ····· 487
0433 북한·보츠와나 관계 ····· 488
0434 북한·베냉(구 다호메이) 관계 ····· 489
0435 북한·콜롬비아 관계 ····· 490
0436 북한·카메룬 관계 ····· 491
0437 북한·캐나다 관계 ····· 492
0438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 493
0439 북한·중국(구 중공) 관계 ····· 494
0440 북한·코모로 관계 ····· 495
0441 북한·덴마크 관계 ····· 496
0442 북한·도미니카공화국 관계 ····· 497
0443 북한·에콰도르 관계 ····· 498
0444 북한·이집트 관계 ····· 499
0445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 500
0446 북한·피지 관계 ····· 501
0447 북한·핀란드 관계 ····· 502
0448 북한·프랑스 관계 ····· 503
0449 북한·가봉 관계 ····· 504
0450 북한·독일 관계 ····· 505
0451 북한·그레나다 관계 ····· 506
0452 북한·감비아 관계 ····· 507
0453 북한·과테말라 관계 ····· 508
0454 북한·가이아나 관계 ····· 509
0455 북한·온두라스 관계 ····· 510
0456 북한·인도 관계 ····· 511
0457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 512

0458 북한·이란 관계 ····· 513
0459 북한·이탈리아 관계 ····· 514
0460 북한 경비정의 일본어선 쇼세이 마루호(松生丸) 나포사건, 1975.9.2. ····· 515
0461 북한선박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 ····· 516
0462 북한·일본 관계 ····· 517
0463 일본내에서의 북한간첩 활동 ····· 518
0464 북한·요르단 관계 ····· 519
0465 북한·케냐 관계 ····· 520
0466 북한·쿠웨이트 관계 ····· 521
0467 북한·레소토 관계 ····· 522
0468 북한·라이베리아 관계 ····· 523
0469 북한·라오스 관계 ····· 524
0470 북한·말레이시아 관계 ····· 525
0471 북한·마카오 관계 ····· 526
0472 북한·모로코 관계 ····· 527
0473 북한·모리셔스 관계 ····· 528
0474 북한·몰타 관계 ····· 529
0475 북한·멕시코 관계 ····· 530
0476 북한·모잠비크 관계 ····· 531
0477 북한·네팔 관계 ····· 532
0478 북한·노르웨이 관계 ····· 533
0479 북한·네덜란드 관계 ····· 534
0480 북한·니제르 관계 ····· 535
0481 북한·뉴질랜드 관계 ····· 536
0482 북한·파키스탄 관계 ····· 537
0483 북한·필리핀 관계 ····· 538
0484 북한·파나마 관계 ····· 539
0485 북한·파푸아뉴기니 관계 ····· 540
0486 북한·포르투갈 관계 ····· 541
0487 북한·페루 관계 ····· 542
0488 북한·루마니아 관계 ····· 543
0489 북한·르완다 관계 ····· 544
0490 북한·사우디아라비아 관계 ····· 545
0491 북한·싱가포르 관계 ····· 546
0492 북한·시에라리온 관계 ····· 547
0493 북한·스리랑카 관계 ····· 548
0494 북한·세네갈 관계 ····· 549
0495 북한·스위스 관계 ····· 550
0496 북한·태국 관계 ····· 551
0497 북한·튀니지 관계 ····· 552
0498 북한·상투메프린시페 관계 ····· 553
0499 북한·터키 관계 ····· 554
0500 북한·탄자니아 관계 ····· 555
0501 북한·우간다 관계 ····· 556
0502 북한·영국 관계 ····· 557
0503 북한·소련 관계 ····· 558

0504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제한 조치 연장 ····· 559
0505 북한·미국 관계 ····· 560
0506 북한·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관계 ····· 561
0507 북한·우루과이 관계 ····· 562
0508 북한·베네수엘라 관계 ····· 563
0509 북한의 구주지역 진출 현황 ····· 564
0510 북한·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관계 ····· 565
0511 북한·잠비아 관계 ····· 566
0512 북한·자이르 관계 ····· 567
0513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3권 (V.1 각국 반응) ····· 568
0514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3권 (V.2 방문결과 대통령 보고) ····· 569
0515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3권 (V.3 자료집) ····· 570
0516 북한대표단 일본 방문 ····· 571
0517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방문 추진 ····· 572
0518 북한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동향 ····· 573
0519 북한 외교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 574
0520 김일성 북한 주석 동구 및 중동지역 순방, 1975.5.22.-6.9. ····· 575
0521 북한사절단 중남미 순방 ····· 577
0522 Bonge, El Hadj Omar 가봉 대통령 북한 방문 계획 ····· 579
0523 Ashari, D. 인도네시아 외무차관 북한 방문, 1975.6.21.-24. ····· 580
0524 우쓰노미야(宇都宮德馬) 일본 자민당 의원 북한 방문, 1975.7.12.-20. ····· 581
0525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문제연구회 의원단 북한 방문, 1975.7.22.-28. ····· 582
0526 일본 주요 대표단 북한 방문 ····· 583
0527 일본·북한 경제관계 ····· 584
0528 일본·북한 어업관계 ····· 585
0529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저지 교섭 ····· 586
0530 북한의 대서구 채무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철 ····· 587
0531 북한의 대미국 직접 평화협정 체결제의 및 대책 ····· 588
0532 동구권과의 인사교류 현황 ····· 589
0533 대동구권 관계개선 ····· 590
0534 우방국을 통한 대동구권 관계개선 추진 ····· 591
0535 공산권지역 경유 여행 - 불가리아 ····· 592
0536 공산권 여행허가 - 폴란드 ····· 593
0537 동구권 교류 - 소련인 입국허가 ····· 594
0538 공산권 여행허가 - 동구 ····· 595
0539 동구권 교류 - 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 596
0540 국제회의 등을 통한 동구권 교류 - 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 597
0541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1 기본대책 I: 2~4월) ····· 598
0542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2 기본대책 II: 5월) ····· 599
0543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3 기본대책 III: 6~8월) ····· 600
0544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4 국가별 지지교섭 I: 아주·미주지역) ····· 601
0545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II: 중동·아프리카지역) ····· 602
0546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6 현지교섭 및 회의경과) ····· 603
0547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7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 ····· 604
0548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8 친서 및 회의 준비자료) ····· 605
0549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9 회의결과 자료) ····· 606

0550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vana(쿠바), 1975.3.17.-19. ····· 607
0551 비동맹그룹 주관 원자재에 관한 개발도상국회의. Dakar(세네갈), 1975.2.3.-8. ····· 608
0552 한국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 ····· 609
0553 일본·미국 안보 협력 ····· 610
0554 미국의 전쟁수행권법 ····· 611
0555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지출법 및 계속지출결의안) ····· 612
0556 FY76 미국 국방백서 ····· 613
0557 월남 공산화 이후의 동남아 안보정세 ····· 614
0558 청와대 안보정세 보고자료 ····· 615
0559 한국 안보관계 자료 ····· 616
0560 1971년 대여 미국 해군 보조예인선 '틸라묵'호(ATA-192) 반납 ····· 617
0561 미국산 군수물자구매 추진 ····· 618
0562 미국산 F4E 및 F5E 전폭기 도입 ····· 619
0563 한·미국 간의 FMS(대외군사판매) 차관협정 ····· 620
0564 주한미군 병력현황 ····· 621
0565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1 1-3월) ····· 622
0566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2 4월) ····· 623
0567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3 5-6월) ····· 624
0568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4 7-12월) ····· 625
0569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5 언론보도, 1-4월) ····· 626
0570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6 언론보도, 5월) ····· 627
0571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7 언론보도, 6-12월) ····· 628
0572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Helsinki(핀란드), 1975.7.30.-8.1. 전2권 (V.1 기본문서) ····· 629
0573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Helsinki(핀란드), 1975.7.30.-8.1. 전2권 (V.2 연설문) ····· 630
0574 CENTO(중앙아시아조약기구) 회의 ····· 631
0575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에 대한 반응 신문기사 ····· 632
0576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관계(현황) ····· 633
0577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634
0578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1차, 1975.1.30. ····· 635
0579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2-105차 ····· 636
0580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6-108차 ····· 637
058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제98-104차 ····· 638
0582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주한미군 당국과 외국기관 노동조합 간의 쟁의 ····· 639
0583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30-32차 ····· 640
0584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국 군인기지촌 현지답사 ····· 641
0585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회의, 제5-6차 ····· 642
0586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문제 ·· 643
0587 SOFA(주둔군지위협정)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및 운영 ····· 644
0588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저축조합 결성문제 ····· 645
0589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 646
0590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 조치 ····· 647
0591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58-362차 ····· 648
0592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63-369차 ····· 649
0593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30-438차 ····· 650
0594 중립국 감시위원회 ····· 651
0595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유엔기(旗) 사용제한 조치 ····· 652

0596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연례보고서 ····· 653
0597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 ····· 654
0598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 철수문제 ····· 655
0599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용사회 ····· 656
0600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태국 연락장교단 철수문제 ····· 657
0601 북한의 도발사건 ····· 658
060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하터널 구축 ····· 659
0603 6.25 참전국 참전인사 방한 초청계획 ····· 660
0604 Ennatollah Zoghi 이란 지상군 공병감 방한, 1975.9.29.-10.8. ····· 661
0605 Lekhanya, Justinus M. 레소토 기동경찰대장 방한, 1975.9.25.-10.2. ····· 662
0606 영국 국방대학원생 일행 방한,1975.9.21.-25. ····· 663
0607 미국 안보관계 인사 방한 ····· 664
0608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V.1 사전준비) ····· 665
0609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V.2 결과보고) ····· 666
0610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 ····· 667
0611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 668
0612 국제기구분담금 ····· 669
0613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전4권 (V.1 대책 및 진행사항 I:1975.3-7) ····· 670
0614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전4권 (V.2 대책 및 진행사항 II:1975.8-10) ····· 671
0615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전4권 (V.3 각국 입장 및 지지 교섭) ····· 672
0616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전4권 (V.4 언론보도 및 자료) ····· 673
0617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 기본대책 I: 1974.12-75.2) ····· 674
0618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6 연설문) ····· 675
0619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7 기타 자료) ····· 676
0620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9 국가별 교섭 I: 지시공문) ····· 677
0621 유엔 특별총회, 제7차(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력), New York, 1975.9.1.-16. ····· 678
0622 주유엔 북한대표부 동향 ····· 679
0623 Waldron-Ramsey, Waldo E.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 방한, 1975.7.8.-12. ····· 680
0624 Caicedo, Aurelio 주유엔 콜롬비아대사 및 Giambruno, Carlos 주유엔 우루과이대사 방한, 1975.6.9.-13. ····· 681
0625 Obame, Alexis 주유엔 가봉대사 방한, 1975.4.13.-20. ····· 682
0626 유엔 한국참전국협회 ····· 683
0627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 684
0628 제30차 유엔의 날 기념메세지 ····· 685
0629 한국의 대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활동 강화 방안 ····· 686
063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1차. New Delhi(인도), 1975.2.26.-3.7. ····· 687
063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공업·주택 및 기술위원회, 제1차. Bangkok, 1975.9.15.-22. ····· 688
063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업개발위원회, 제1차. Jakarta, 1975.8.25.-9.1. ····· 689
0633 제1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위원회 및 제6차 무역협상단 회의. Bangkok, 1975.11.3.-14. 690
063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사회개발위원회, 제1차. Bangkok, 1975.7.30.-8.5. ····· 691
063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9-13차. Bangkok ····· 692
063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DI(아시아개발연구원) 집행이사회. Bangkok ····· 693
063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sian Industrial Survey 권고 사업수행을 위한 고위계획관, 정부관리, 기업인 및 금융기구대표 간 회의. Bangkok, 1975.5.19.-26. ····· 694
063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TNG(무역협상단) 회의, 제5차. Bangkok, 1975.7.1.-31. ····· 695
063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회복지훈련연구센터 재정지원 문제 ····· 696
064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농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간 회의. Bangkok, 1975.11.20.-22. ·· 697

064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U(아시아청산동맹) 설립 ····· 698
064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작업단 회의 및 속개회의, 제14차. Geneva ····· 699
064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15차. Geneva, 1975.8.5.-16. ····· 700
064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 외채문제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제3차. Geneva, 1975.2.25.-3.7. ····· 701
064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1차. Geneva, 1975.11.24.-12.5. ····· 702
064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7차. Geneva, 1975.10.27.-11.7. ····· 703
064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작업단 및 전문가회의, Geneva ····· 704
064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품위원회, 제7차. Geneva, 1975.6.23.-7.4. ····· 705
064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제9차. Geneva, 1975.7.28.-8.1. ····· 706
065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제10차. Geneva, 1975.11.15.~19. ····· 707
065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위원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75.11.10.-21. ····· 708
065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입법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5.1.27.-2.7. ····· 709
065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1차산품위원회, 제8차. Geneva ····· 710
065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스웨덴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관계 규정 변경 ····· 711
065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712
0656 각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 713
065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Lima(페루), 1975.3.12.-26. 전2권 (V.1 기본계획) ····· 714
065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Lima(페루), 1975.3.12.-26. 전2권 (V.2 결과보고) ····· 715
0659 제9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6차 상설위원회. Vienna ····· 716
0660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20차. Geneva, 1975.6.11.-30. ····· 717
0661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 제3차. Nairobi(케냐), 1975.4.17.-5.2. ····· 718
0662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분담금 ····· 719
0663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기여금 ····· 720
0664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총회, 제25차. Moscow(소련), 1975.10.1.-6. ····· 721
0665 WFC(세계식량이사회) 회의, 제1차. Rome,1975.6.23.-27. ····· 722
0666 WFP(세계식량계획)/IGC(정부간위원회) 회의, 제27-28차. Rome ····· 723
0667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19차. Vienna(오스트리아), 1975.9.22.-26. ····· 724
0668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 제9차. London, 1975.11.3.-14. 전2권 (V.1 기본문서) ····· 725
0669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 제9차. London, 1975.11.3.-14. 전2권 (V.2 회의문서) ····· 726
0670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 727
0671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75.4.28.-5.23. 전2권 (V.1 기본문서) ····· 728
0672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75.4.28.-5.23. 전2권 (V.2 북한가입, 1974-75) ····· 729
0673 WMO(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의, 제6차. Colombo(스리랑카), 1975.9.8.-18. ····· 730
0674 유네스코 매스미디어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전문가회의. Paris(프랑스), 1975.12.15.-22. ····· 731
0675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국내위원회 회의, 제6차. NewDelhi(인도), 1975.11.10.-15. ····· 732
0676 유네스코/IBE(국제교육국) 총회, 제35차. Geneva(스위스), 1975.8.27.-9.4. ····· 733
0677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의 공업소유권 관계기술 습득을 위한 상임위원회, 제2차. Geneva, 1975.3.17.-21. ····· 734
067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18차. Rome, 1975.11.8.-27. 전2권 (V.1 기본문서) ····· 735
067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18차. Rome, 1975.11.8.-27. 전2권 (V.2 각국의 사무총장 및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 736
0680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67차. Rome, 1975.11.3.-7. ····· 737
068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개발도상국 농업신용에 관한 세계회의. Rome, 1975.10.14.-21. ····· 738
0682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비료위원회 회의, 제2차. Rome, 1975.6.3.-7. ····· 739
068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상주대표단 회의, Rome ····· 740
0684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장관리위원회, 제6차. Manila(필리핀), 1975.4.28.-5.6. ····· 741

0685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 제19차. Rome, 1975.10.6.-10. ····· 742
0686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회의. Rome ····· 743
0687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8차. Rome, 1975.1.13.-17. ····· 744
0688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회의, 제50차. Rome, 1975.10.13.-24. ····· 745
0689 FAO(유엔식량농업기구)/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특별협의회. Rome, 1975.5.19.-23. ····· 746
0690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AG(농업위원회) 회의, 제3차. Rome, 1975.4.15.-24. ····· 747
0691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10차. Rome, 1975.6.3.-10. ····· 748
0692 FAO(유엔식량농업기구)/CGFPI(식량생산 및 투자협의단) ····· 749
0693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C(국제포플라위원회) 회의, 제15차. Rome, 1975.12.1.-6. ····· 750
0694 FAO(유엔식량농업기구)/WECAFC(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차. Port of Spain(트리니다드토바고), 1975.10.20.-23. ····· 751
0695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8차. Geneva(스위스), 1975.5.13.-28. ····· 752
0696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의, 제26차. Manila(필리핀), 1975.9.1.-6. ····· 753
0697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60차. Geneva(스위스), 1975.6.4.-26. ····· 754
0698 대만(구 중화민국)의 UPU(만국우편연합) 회원권상실에 따른 제 문제 ····· 755
0699 북한의 UPU(만국우편연합) 가입에 따른 남북한 우편물 교환문제 ····· 756
0700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가입 ····· 757
0701 유엔에서의 칠레 인권문제 토의 ····· 758
0702 '세계여성의 해' 국제회의. Mexico City(멕시코), 1975.6.19.-7.2. 전2권 (V.1 기본문서) ····· 759
0703 '세계여성의 해' 국제회의. Mexico City(멕시코), 1975.6.19.-7.2. 전2권 (V.2 회의자료) ····· 760
0704 유엔마약위원회 회의, 제26차. Geneva, 1975.2.17.-28. ····· 761
0705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V.1 사전준비) ····· 762
0706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V.2 결과보고) ····· 763
0707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3.21.) 기념행사 ····· 764
0708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 제8차. Rome, 1975.4.23.-26. ····· 765
0709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3차. Paris, 1975.5.26.-31. ····· 766
0710 IOE(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 총회, 제9차. Paris, 1975.10.22.-11.4. ····· 767
071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제12차. 동경, 1975.8.8.-22. ····· 768
0712 SEAMEC(동남아문교장관기구이사회), 제10차. Baguio(필리핀), 1975.1.20.-24. ····· 769
0713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총회, 제3차. Melbourne(호주), 1975.11.19.-27. ····· 770
0714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회의, 제3차. Montreal(카나다), 1975.4.1.-5. ····· 771
0715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 참여를 위한 공동이사국 형성문제 ····· 772
0716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Traffic 회의, 제1차. Athenes(그리스), 1975.9.3.-8. ····· 773
0717 IHO(국제수로기구) 동부아시아지역 수로위원회 제2차 총회 개최의 건 ····· 774
0718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1차. Madrid(스페인), 1975.5.12.-24. 전2권 (V.1 사전준비) ····· 775
0719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1차. Madrid(스페인), 1975.5.12.-24. 전2권 (V.2 결과보고) ····· 776
0720 UNWTO(세계관광기구) 태평양·아시아지역위원회, 제1차. Manila, 1975.8.13.-15. ····· 777
0721 UNWTO(세계관광기구) 회원국 현황 ····· 778
0722 IBWM(국제도량형국) 총회, 제15차. Paris, 1975.5.27.-6.3. ····· 779
0723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연락관위원회 회의, New Delhi(인도), 1975.10.16. ····· 780
0724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 제16차. Manila, 1975.10.27.-31. ····· 781
0725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총회, 제5차. Manilla, 1975.2.24.-3.3. ····· 782
0726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17차. 서울, 1975.5.20.-23. ····· 783
0727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위생위원회, 제12차. Washington, D.C., 1975.5.12.-16. ····· 784
0728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문제 ····· 785

0729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 및 분담금 지불문제 ····· 786
0730 ADC(아시아개발센터) 이사회, 제12차. 동경, 1975.6.25.-27. ····· 787
0731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 제11차. Taipei(대만(구 중국)), 1975.10.6.-10.8. ····· 788
0732 IPU(국제의원연맹) 구주안보회의, 제2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75.1.31.-2.6. ····· 789
0733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2차. London, 1975.9.4.-12. ····· 790
0734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6차. Colombo(스리랑카), 1975.3.31.-4.5. ····· 791
0735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지역 회의, 제3차. Manila(필리핀), 1975.4.3.-8. ····· 792
0736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44차. Buenos-Aires (아르헨티나), 1975.10.9.-15. ····· 793
0737 아시아 사법회의, 제6차. Wellington(뉴질랜드), 1975.2.3.-7. ····· 794
0738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집행이사회, 제20차. Manilla, 1975.5.3.-5. ····· 795
0739 IUA(국제건축가연맹) 총회, 제13차. Venice(이탈리아), 1975.4.30.-5.3. ····· 796
0740 아시아·아프리카 국제박람회협회 창립 및 한국가입 문제 ····· 797
0741 WEC(세계에너지회의) 국제집행이사회. Copenhagen(덴마크), 1975.5.25.-29. ····· 798
0742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 제12차. Adelaide(호주), 1975.11.9.-22. ····· 799
0743 제3세계 교직자회의, 제1차. Acapulco(멕시코), 1975.8.5.-9. ····· 800
0744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회의 ····· 801
0745 제24차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및 제15차 Workshop. Sydney(호주) ····· 802
0746 한·터키 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 803
0747 한·미국 국방부 간의 과학교류 및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75.3.17. ····· 804
0748 한·독일 간의 재정원조 협정 ····· 805
0749 한·캐나다 수출진흥공사 간의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 806
0750 한·일본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에 관한 차관협정 ····· 807
0751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V.1 1973) ····· 808
0752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V.2 1974-75) ····· 809
0753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V.1 체결교섭, 1970-73) ····· 810
0754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V.2 체결 및 공포, 1974-75) ····· 811
0755 한·튀니지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812
0756 한·벨기에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1975.1.28.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26호) ····· 813
0757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V.1 1971-74) ····· 814
0758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V.2 1975) ····· 815
0759 한·그리스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체결 교섭 ····· 816
0760 한·싱가포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5.8.19. ····· 817
0761 북한·제3국가 간 항공관계 ····· 818
0762 일본·대만(구 중화민국) 민간항공협정 체결 ····· 819
0763 한·벨기에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5.10.20. ····· 820
0764 한·이탈리아 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면제협정, 1975.4.5. Rome에서 각서교환: 1977.5.5. 발효(조약 제530호) ····· 821
0765 한·그리스 간의 선원수첩 공인협정 교섭철 ····· 822
0766 한·스페인 간의 선원수첩 공인협정, 1975.4.18. Madrid에서 각서교환: 1975.5.18. 발효(조약 제535호) ····· 823
0767 한·독일 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 연장에 관한 협정 체결 및 철회 ····· 824
0768 한·이란 간의 문화협정, 1974.7.16. Teheran에서 서명: 1975.3.20. 발효(조약 제529호) ····· 825
0769 한·파라과이 간의 문화협정, 1973.6.28. Asuncion에서 서명: 1975.7.31. 발효(조약 제541호) ····· 826
0770 한·파나마 간의 문화협정, 1974.6.3. 서울에서 서명: 1975.1.17. 발효(조약 제524호) ····· 827
0771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문화협정, 1975.4.19. Jeddah에서 서명: 1975.8.4. 발효(조약 제540호) ····· 828
0772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1975.10.31. 서울에서 서명: 1975.11.14. 발효(조약 제550호) ····· 829

0773 IAEA(국제원자력기구)·한·프랑스 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1975.9.22. 비엔나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547호) ····· 830
0774 [1974년도] 한·미국 간의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정 제8조 C항의 해석 ····· 831
0775 한·그리스 간의 발명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72.7.15. 및 10.25. 서울에서 각서교환: 1973.1.25. 발효(조약 제458호) ····· 832
0776 한·스페인 간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각서교환, 1975.7.31. 서울에서 각서교환: 1975.8.15. 발효(조약 제542호) ····· 833
0777 [평화식량법에 의한] 한·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협정 ····· 834
0778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정부의 대책 ····· 835
0779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전2권 (V.1 협정 체결) ····· 836
0780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전2권 (V.2 정부대책 및 조치) ····· 837
0781 한·월남 간의 농업기술협력 약정의 수정 ····· 838
0782 한·호주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전2권 (V.1 1974) 1975.6.17.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536호) ····· 839
0783 한·호주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전2권 (V.2 1975-76) 1975.6.17.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536호) ····· 840
0784 한·오스트리아 간의 원산지증명 발급협정, 1975.3.14. 비엔나에서 서명: 발효 ····· 841
0785 한·코스타리카 간의 무역협정, 1974.3.15. 동경에서 서명: 1975.6.27. 발효(조약 제539호) ····· 842
0786 [1971.1.1.자] 한·EC(구주공동체) 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의 연장교섭 ····· 843
0787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V.1 제1차 체결교섭회담. Washington D.C., 1974.9.12.-20.) 1975.6.26.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1974.10.1. 소급발효(조약 제538호) ···· 844
0788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V.2 제1차 체결교섭회담 및 추가교섭회담, 1974.11.4.-9. 및 1975.1-3) 1975.6.26.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1974.10.1. 소급발효(조약 제538호) ···· 845
0789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V.3 체결철) 1975.6.26.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1974.10.1. 소급발효(조약 제538호) ····· 846
0790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V.4 참고자료) 1975.6.26.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1974.10.1. 소급발효(조약 제538호) ····· 847
0791 한·독일 간의 기술원조협정의 해석 ····· 848
0792 한·독일 간의 독일내 한국인 병원요원의 노동 및 생활에 대비한 준비에 관한 협정 체결추진 ····· 849
0793 한·독일 간의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수정 약정 체결, 1973.3.27. ····· 850
0794 한·독일 간의 전화시설 유지보수 용역사업 연장 약정, 1975.5.6. 각서교환: 발효 ····· 851
0795 한·독일 간의 주물기술센타 설립지원에 관한 약정, 1975.6.13. 각서교환 ····· 852
0796 한·이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 1975.7.8. Teheran에서 서명: 1975.9.27. 발효(조약 제548호) ····· 853
0797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5.8.29. 서울에서 각서교환 (조약 제545호) ····· 854
0798 한·르완다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교섭 ····· 855
0799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1974.7.4. 서울에서 서명: 1975.1.9. 발효(조약 제527호) ····· 856
0800 한·영국 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1975.12.8. 서울에서 각서교환: 1975.1.13. 소급발효(조약 제551호) ····· 857
0801 한·월남 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1975.2.7. 및 3.1. Saigon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28호) ····· 858
0802 한·북예멘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추진 ····· 859
0803 각국의 국제기구 신규가입 및 한국과의 다자조약 관계 성립 ····· 860
0804 1961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각국의 관행 ····· 861
0805 유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에 관한 회의. Vienna, 1975.2.4.-3.14. ····· 862
0806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2차. Geneva, 1975.2.3.-4.18. ····· 863
0807 ILO(국제노동기구) 북한 가입문제 ····· 864
0808 1929.10.12.자 Warsaw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항공법회의. Montreal, 1975.9.3.-25. ····· 865

0809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1.7.14. ····· 866
0810 유네스코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검토 ····· 867
0811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의정서 한국가입, 1975.8.8. ····· 868
0812 각국의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가입 ····· 869
0813 NPT(핵확산금지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1 1967-68.6) ····· 870
0814 NPT(핵확산금지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2 1968.7-12) ····· 871
0815 NPT(핵확산금지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3 1969-74) ····· 872
0816 NPT(핵확산금지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4 1975) ····· 873
0817 ISC(국제잠사위원회) 설립규약 한국가입 검토 ····· 874
0818 아시아·극동 및 남서태평양지역의 동물생산 및 보건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정 한국가입 추진 ····· 875
0819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5.7.1. ····· 876
0820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 877
0821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법률전문가 그룹회의. New York, 1975.12.1.-12. ····· 878
0822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4권 (V.1 사전준비, 1974-75) ····· 879
0823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4권 (V.2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 ····· 880
0824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4권 (V.3 자료 I, 1974-75) ····· 881
082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4권 (V.4 지료 II, 1975) ····· 882
0826 해양법에 관한 중국(구 중공)의 입장 ····· 883
0827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 884
0828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 885
0829 브라질·아르헨티나 간의 Parana강 분쟁 ····· 886
0830 월남의 Paracels, Spratleys군도(서사·남사군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만(구 자유중국)의 항의 ····· 887
0831 터키·그리스 간의 Aegean Sea(에게해) 대륙붕 분쟁 ····· 888
0832 케냐의 탄자니아 및 우간다와의 분쟁 ····· 889
0833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말리 간의 국경분쟁 ····· 890
0834 스페인령 서부사하라(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 891
0835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 평화협상 ····· 892
0836 각국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신청 ····· 893
0837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분담금 ····· 894
0838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제129-133차. New Delhi(인도) ····· 895
083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6차. Teheran(이란), 1975.1.26.-2.2. 전2권 (V.1 기본문서) ····· 896
0840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6차. Teheran(이란), 1975.1.26.-2.2. 전2권 (V.2 회의자료) ····· 897
0841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한 국가명(호칭) 사용문제 ····· 898
0842 월남임시혁명정부(베트공)의 월남정권 인수에 따른 법적 제 문제 ····· 899
0843 영국 'The Sunday Times' 게재 한국 관계 기사에 대한 해명 ····· 900
0844 대미국 특별홍보 활동계획 ····· 901
0845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과세문제 ····· 902
0846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제3차. Paris, 1975.5.29.-30. ····· 903
0847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제1차. Bonn, 1975.3.4.-7. 전2권 (V.1 기본계획, 1972-75) ····· 904
0848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제1차. Bonn, 1975.3.4.-7. 전2권 (V.2 결과보고) ····· 905
0849 Ahmed Taibi Benhima 모로코 공보담당국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 906
0850 미얀마(구 버마) 언론인단 방한 초청 계획 ····· 907
0851 Reyner, Pedro 멕시코 'Ovaciones'지 논설위원 방한, 1975.1.19.-24. ····· 908
0852 미국 언론인 방한 ····· 909
0853 Beltran, Washington 우루과이 'El Pais'지 사장 방한, 1975.10.20.-30. ····· 910
0854 미국 Harvard대학교 한국학 연구비 지원 문제 ····· 911

0855 미국 Hawaii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건립기금 모금 ····· 912
0856 외국 교과서 및 문헌에 나타난 한국관 시정 ····· 913
0857 Winkler, Gunther 오스트리아 Vienna대학교 부총장 겸 오스트리아·한 친선협회장 방한, 1975.7.20.-24. ····· 914
0858 일본 창가학회 ····· 915
0859 프랑스 여행사의 한국 내 지점 설치 문제 ····· 916
0860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33회. Calcutta(인도) 및 ITTF(국제탁구연맹) 총회, 1975.2.6.-16. ····· 917
0861 일본문제연구 친선협회 ····· 918
0862 한·호주 협회 ····· 919
0863 코스타리카·한 친선문화협회 창립, 1975.12.4. ····· 920
0864 에콰도르·한 문화협회 창립, 1975.12.18. ····· 921
0865 한·이란 친선협회 ····· 922
0866 일본·한 친선협회 ····· 923
0867 뉴질랜드·한 협회 창립 ····· 924
0868 한·파나마 친선협회 ····· 925
0869 1974년도 나이지리아 대외무역 현황 ····· 926
0870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 공관협의체 운영 ····· 927
0871 EC지역 주재 공관협의체 회의, Brussels ····· 928
0872 한·덴마크 경제협력 ····· 929
0873 한·가이아나 경제협력 ····· 930
0874 한·헝가리 금융협력 ····· 931
0875 한·이스라엘 경제협력 ····· 932
0876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 933
0877 한·스위스 경제협력 ····· 934
0878 한·영국 경제협력 ····· 935
0879 한·가봉 경제각료회담. 서울, 1975.7.7. ····· 936
0880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V.1 기본문서) ····· 937
0881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V.2 회의 준비자료) ····· 938
0882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V.3 후속조치) ····· 939
0883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 동경 ····· 940
0884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차. The Hague, 1975.5.27.-28. ····· 941
0885 한·파라과이 [경제]혼성위원회 설치 ····· 942
0886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1차. Jeddah, 1975.8.10.-13. ····· 943
0887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제3차. Tunis, 1975.5.20.-23. ····· 944
0888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차. Brussels, 1975.3.27. ····· 945
0889 한·프랑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차. Paris, 1975.3.17. ····· 946
0890 한·일본 민간 합동경제위원회 ····· 947
0891 한·모로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 948
0892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차. Madrid, 1975.6.17.-18. ····· 949
0893 한·영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차. London, 1975.3.21. ····· 950
0894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 제5차. Melbourne(호주), 1975.4.8.-10. ····· 951
0895 제10차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 개최 계획 ····· 952
0896 경제조사단 에콰도르 방문, 1975.6.12.-17. ····· 953
0897 경제협력사절단 미국 및 일본 방문, 1975.2.12.-25. ····· 954
0898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이란 방문, 1975.7.4.-8. ····· 955
0899 김상영 국회의원 미국·중동 및 구주 순방, 1975.8.18.-9.15. ····· 956
0900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구주지역 순방, 1975.6.21.-7.4. ····· 957

0901 Abdel-Rahman Ⅰ. El Kashif 이집트 주택재건성차관 방한, 1975.11.15.-19. ····· 958
0902 한국의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구호용 의약품 원조 ····· 959
0903 한국의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긴급 원조 문제 ····· 960
0904 한국의 대차드 군복 원조 ····· 961
0905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무상원조 ····· 962
0906 한국의 대이집트 원조(무상원조) ····· 963
0907 한국의 대피지 태풍 구호금 원조 ····· 964
0908 한국의 대그레나다 원조(무상원조) ····· 965
0909 한국의 대자메이카 원조(무상원조) ····· 966
0910 한국의 대레소토 원조(무상원조) ····· 967
0911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마스게임 교관단 파견지원 ····· 968
0912 한국의 대라오스 원조 ····· 969
0913 한국의 대모리셔스 태풍 구호금 원조 ····· 970
0914 한국의 대르완다 원조(무상원조) ····· 971
0915 한국의 대튀니지 어망 기증 ····· 972
0916 한국의 대통가 폭풍우 피해복구 원조 문제 ····· 973
0917 한국의 대터키 지진원조 ····· 974
0918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군복 원조 ····· 975
0919 대월남 지원 잔여 구호물자 처리문제 ····· 976
0920 대아프리카 남북한 원조공여 현황 ····· 977
0921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 978
0922 한·미국 해저유전 개발장비 건조합작 투자 ····· 979
0923 프랑스 공공차관 도입 ····· 980
0924 대일본 농업개발 및 북평항 건설차관 도입 ····· 981
0925 영국의 공공차관 도입 ····· 982
0926 AID(미국국제개발처) 주택개량사업 차관도입 ····· 983
0927 벨기에의 상업차관 도입 ····· 984
0928 프랑스의 상업차관 도입 ····· 985
0929 여천지구 석유화학 관련 공장건설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 문제 ····· 986
0930 대이라크 건설업체 진출 ····· 987
0931 이란 코람샤항만 확장공사 참여 ····· 988
0932 대이란 인력 진출 ····· 989
0933 대사우디아라비아 인력 진출 ····· 990
0934 한·프랑스 간 아주공과대학 운영 및 장래문제 협의 ····· 991
0935 한·프랑스 촉매화학연구실 설립 사업추진 ····· 992
0936 니제르 도자기공장 건설 원조 ····· 993
0937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75.8.4.-7. ····· 994
0938 캄보디아(구 크메르)의 기술공여 요청 ····· 995
0939 대이집트 기술공여 문제 ····· 996
0940 한·이란 간의 정유공장 합작건설 ····· 997
0941 Eghbal, Manoutcher 이란 석유공사 총재 방한, 1975.5.4.-10. ····· 998
0942 대만(구 중국)의 해저 석유자원 개발 ····· 999
0943 특정해역의 어업제한에 관한 수산업법 개정문제 ····· 1000
0944 한·코스타리카 어업협력 ····· 1001
0945 한·가나 어업협력 ····· 1002
0946 한·이란 어업협력 ····· 1003

0947 한·일본 어업공동 규제수역내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 1004
0948 한·일본 어업협력 ····· 1005
0949 한·모로코 어업협력 ····· 1006
0950 한·모리타니아 어업협력 ····· 1007
0951 한·니카라과 어업협력 ····· 1008
0952 한·시에라리온 어업협력 ····· 1009
0953 한·스페인 어업협력 ····· 1010
0954 남태평양 수산 진출 ····· 1011
0955 한·일본 수산청장회담. 서울, 1975.11.14.-15. ····· 1012
0956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10차. 동경, 1975.8.25.-28. ····· 1013
0957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Madrid, 1975.6.18.-21. ····· 1014
0958 한·미국 어업실무자회담, 제3차. 서울, 1975.11.10.-15. ····· 1015
0959 한·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 ····· 1016
0960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임업협력 ····· 1017
0961 한·핀란드 임업개발협력 ····· 1018
0962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 제7차. 동경, 1975.3.11.-14. ····· 1019
0963 손수익 산림청장 구주 순방, 1975.7.26.-8.9. ····· 1020
0964 인도 잠업사절단 방한, 1975.10.26.-28. ····· 1021
0965 Soedjarwo 인도네시아 산림청장 방한, 1975.11.6.-9. ····· 1022
0966 Abdul Ghafar Bin Baba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성장관 방한, 1975.10.24.-29. ····· 1023
0967 한국 근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각국반응 ····· 1024
0968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월남 및 캄보디아 정부 인정문제 ····· 1025
0969 제30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및 김용환 재무장관 영국 방문, 1975.9.1.-13. ····· 1026
0970 IMF(국제통화기금) 잠정위원회 및 IMF/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 제2-3차 ····· 1028
0971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및 개발문제회의, 제5-7차 ····· 1029
0972 IMF(국제통화기금) Oil Facility 및 Trust Fund ····· 1030
0973 ADB(아시아개발은행) 그룹에서 한·대만·월남그룹 활동 문제 ····· 1031
0974 제8차 ADB 총회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대표권 문제 ····· 1032
0975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8차. Manila, 1975.4.24.-26. ····· 1033
0976 ADB(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한국지소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 1034
0977 한국의 ADB(아시아개발은행) 자본금 증자 ····· 1035
0978 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 부과에 따른 대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책 ····· 1036
097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및 철회 교섭 ····· 1037
098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종합대책 ····· 1038
098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 그룹회의 ····· 1039
098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수량규제분야 소그룹회의 ····· 1040
098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열대산품 그룹회의 ····· 1041
0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 ····· 1042
0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장벽) 기술적장벽 소그룹회의 ····· 1043
0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 1044
098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그룹회의 ····· 1045
09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 1046
09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EC(구주공동체)의 MTN(다자간무역협상)에 대한 입장 ····· 1047
09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31차. Geneva, 1975.11.26.-27. ····· 1048
09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 1049
099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의정서 참가국 위원회 ····· 1051

099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 회의. Geneva, 1975.11.18.-20. ····· 1052
099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자문단) 회의 ····· 1053
099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 1054
0996 Wurth, Pau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의장 방한, 1975.5.20.-26. ····· 1055
0997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5-46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056
0998 호주의 수입규제조치 ····· 1057
0999 EC(구주공동체)의 참치 수입규제 ····· 1058
1000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조치 연장문제 ····· 1059
1001 미국의 1974년도 통상개혁법 ····· 1060
1002 한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지정문제 ····· 1061
1003 한·헝가리 교역 추진 ····· 1062
1004 아일랜드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조치 ····· 1063
1005 한·이스라엘 통상 ····· 1064
1006 일본의 한국 부실기업조사서 공개 ····· 1065
1007 한·일본 쯔무기(명주) 교역 ····· 1066
1008 한·루마니아 교역 추진 ····· 1067
1009 한·사우디아라비아 합작무역회사 설립추진 ····· 1068
1010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제6차. 서울, 1975.6.17.-18. ····· 1069
1011 한·미얀마(구 버마) 통상장관회담, 제2차. Rangoon, 1975.10.6.-9. ····· 1070
1012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제1차. 서울, 1975.7.9.-11. ····· 1071
1013 한·호주 의류 쿼터회담. 서울, 1975.6.10.-12. ····· 1072
1014 한·오스트리아 간의 합섬셔츠 쿼터회담. Vienna, 1975.7.10.-11. ····· 1073
1015 한·인도 무역회담. New Delhi, 1975.11.25.-27. ····· 1074
1016 한·일본 무역회담, 제12차. 동경, 1975.12.1.-2. ····· 1075
1017 한·일본 섬유류 실무자회담. 서울, 1975.4.15.-16. ····· 1076
1018 한·일본 해태회담, 제12차. 동경, 1975.4.23.-24. ····· 1077
1019 한·말레이시아 경제통상 실무자회담 개최 계획 ····· 1078
1020 한·노르웨이 섬유 쿼터회담. 서울, 1975.6.27.-7.1. ····· 1079
1021 한·스웨덴 섬유 쿼터회담 ····· 1080
102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 1081
1023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V.1 제1-3차) ····· 1082
1024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V.2 제4-7차) ····· 1083
1025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V.3 제8-10차) ····· 1084
1026 통상사절단 중동 순방 계획 ····· 1085
1027 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세일즈맨단 파견 계획 ····· 1086
1028 파라과이 통상사절단 방한, 1975.10.24.-11.1. ····· 1087
1029 Gillespie, Alastair 카나다 상공장관 방한, 1975.6.26. ····· 1088
1030 Manhindra, Harish C. 인도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 방한, 1975.9.26.-30. ····· 1089
1031 쿠웨이트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 1090
1032 Ghissassi, Abdellatif 모로코 상공장관 방한 초청 계획 ····· 1091
1033 Magnussen, Einar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1975.9.21.-24. ····· 1092
1034 Adnan M. Khashoggi 사우디아라비아 'Triad'사 회장 방한, 1975.11.2.-6. ····· 1093
1035 Ob Vasuratna 태국 상공회의소 소장 방한, 1975.5.4.-9. ····· 1094
1036 Shore, Peter 영국 통상장관 방한, 1975.9.11.-16. ····· 1095
1037 대미얀마(구 버마) 연불 수출 ····· 1096
1038 대중국(구 중공) 홍삼 수출 ····· 1097

1039 대일본 참치 수출 ····· 1098
1040 한국의 대이집트 군수품 수출 문제 ····· 1099
1041 대사우디아라비아 군수품 수출 ····· 1100
1042 대태국 군수품 수출 ····· 1101
1043 프랑스산 방위산업제품 수입 ····· 1102
1044 그리스산 엽연초 정책 수입 ····· 1103
1045 남아프리카산 철광석 수입 문제 ····· 1104
1046 대동구권 교역 추진 ····· 1105
1047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한계선 조정 ····· 1106
1048 외국 항공기의 대구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및 구역조정 문제 ····· 1107
1049 대만(구 중국)의 제주도 개항 요청 문제 ····· 1108
1050 중국(구 중공)상선의 부산항 입항 문제 ····· 1109
1051 일본 항공당국의 내공성(耐空性) 개선 통보 ····· 1110
1052 대한항공 및 대한해운공사의 쿠웨이트 대리점 설치 ····· 1111
1053 한·소련 해운협력 ····· 1112
1054 대한항공사(KAL)의 운임신청에 대한 미국의 이의제기 ····· 1113
1055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문제 ····· 1114
1056 Charbert, Josef 벨기에 교통체신장관 방한, 1975.1.3.-8. ····· 1115
1057 Tarjanne, Pekka J. 핀란드 교통장관 비공식 방한, 1974.1.25.-26. ····· 1116
1058 노르웨이 조선장비사절단 방한, 1975.3.1.-4. ····· 1117
1059 Mohammed Omar Tawfig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체신교통장관 방한, 1975.4.25.-5.2. ····· 1118
1060 Plovdiv(불가리아) 국제박람회 간접 참가, 1975.9.3.-10. ····· 1119
1061 광주(廣州, 중국)교역회 참가, 1975.10.15.-11.15. ····· 1120
1062 Kinshasa(콩고민주공화국) 국제박람회 참가, 1975.6.21.-7.6. ····· 1121
1063 Leipzig(동독) 국제무역박람회 간접 참가, 1975.3.9.-16. ····· 1122
1064 오끼나와(일본) 국제해양박람회 참가 ····· 1123
1065 Poznan(폴란드) 국제박람회 참가, 1975.9.7.-14. ····· 1124
1066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조직망 조정 ····· 1125
1067 Dhaka(방글라데시) KOTRA 사무소 설치 및 폐쇄 ····· 1126
1068 Rangoon(미얀마) KOTRA 무역관 ····· 1127
1069 Copenhagen(덴마크) KOTRA 사무소 ····· 1128
1070 Guayaquil(에콰도르) KOTRA 무역관 ····· 1129
1071 주서백림(독일) KOTRA 사무소 ····· 1130
1072 Athens(그리스) KOTRA 사무소 존속문제 ····· 1131
1073 Bombay(인도) KOTRA 사무소 설치 ····· 1132
1074 Dublin(아일란드) KOTRA 사무소 설치 및 폐쇄 ····· 1133
1075 Casablanca(모로코) KOTRA 사무소 설치 ····· 1134
1076 Lagos(나이지리아) KOTRA 사무소 강화 ····· 1135
1077 Lima(페루) KOTRA 사무소 설치 ····· 1136
1078 KOTRA 직원의 주세네갈대사관 파견 문제 ····· 1137
1079 Istanbul(터키) KOTRA 사무소 설치 ····· 1138
1080 Saigon(월남) KOTRA 사무소 직원 일시철수 ····· 1139
1081 77그룹 각료회의. Algiers(알제리), 1975.2.15.-18. ····· 1140
1082 북한의 77그룹 가입 ····· 1141
1083 세계경제수뇌회담, 제1차. Rambonillet(프랑스), 1975.11.15.-17. ····· 1143

1084 콜롬보플랜(Colombo Plan) 자문위원회, 제25차. Colombo(스리랑카), 1975.11.25.-12.3. 및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1975.12.9.-16. ····· 1144
1085 콜롬보플랜(Colombo Plan) 기술협력이사회, 제126-131차. Colombo(스리랑카) ····· 1145
1086 CEDEAO(서부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 창설 ····· 1146
1087 알제리 정세 ····· 1147
1088 앙골라 정세 ····· 1148
1089 아르헨티나 정세 ····· 1149
1090 호주 총선거 ····· 1150
1091 방글라데시 정세 ····· 1151
1092 부탄 정세 ····· 1152
1093 미얀마(구 버마) 정세 ····· 1153
1094 브라질 정세 ····· 1154
1095 베냉(구 다호메이) 정세 ····· 1155
1096 각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 신정권 승인 ····· 1156
1097 캄보디아(구 크메르) 정세 ····· 1157
1098 차드 정세 ····· 1158
1099 대만(구 자유중국) 정세 ····· 1159
1100 콜롬비아 정세 ····· 1160
1101 카메룬 정세 ····· 1161
1102 캐나다 정세 ····· 1162
1103 코스타리카 정세 ····· 1163
1104 중국(구 중공)의 대외관계 ····· 1164
1105 중국(구 중공) 정세 ····· 1165
1106 쿠바 정세 ····· 1166
1107 사이프러스 사태 ····· 1167
1108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외관계 ····· 1168
1109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 1169
1110 이집트 정세 ····· 1170
1111 적도기니 정세 ····· 1171
1112 에티오피아 정세 ····· 1172
1113 에티오피아 Eritrea지역 분리독립 문제 ····· 1173
1114 가봉 정세 ····· 1174
1115 감비아 대외관계 ····· 1175
1116 독일 정세 ····· 1176
1117 가나 정세 ····· 1177
1118 과테말라 정세 ····· 1178
1119 가이아나 정세 ····· 1179
1120 교황청(구 바티칸) 정세 ····· 1180
1121 인도 정세 ····· 1181
1122 동티모르 문제 ····· 1182
1123 이란 정세 ····· 1183
1124 이스라엘 정세 ····· 1184
1125 일본 정세 ····· 1185
1126 자메이카 정세 ····· 1186
1127 요르단 정세 ····· 1187
1128 케냐 정세 ····· 1188

1129 쿠웨이트 정세 ····· 1189
1130 레바논 정세 ····· 1190
1131 라이베리아 정세 ····· 1191
1132 라오스 정세 ····· 1192
1133 말리 정세 ····· 1193
1134 모로코 정세 ····· 1194
1135 멕시코 정세 ····· 1195
1136 잠비크 정세 ····· 1196
1137 나이지리아 정세 ····· 1197
1138 네팔 정세 ····· 1198
1139 니제르 정세 ····· 1199
1140 파키스탄 정세 ····· 1200
1141 파나마 정세 ····· 1201
1142 파푸아뉴기니 부겐빌(Bougainville)의 분리독립운동 ····· 1202
1143 파푸아뉴기니 정세 ····· 1203
1144 포르투갈 정세 ····· 1204
1145 각국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승인 및 PLO 사무소 설치현황 ····· 1205
1146 페루 정세 ····· 1206
1147 루마니아 대외관계 ····· 1207
1148 세이셸 정세 ····· 1208
1149 르완다 정세 ····· 1209
1150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 1210
1151 시에라리온 정세 ····· 1211
1152 스리랑카 정세 ····· 1212
1153 세네갈 정세 ····· 1213
1154 수단 정세 ····· 1214
1155 수리남 정세 ····· 1215
1156 시리아 정세 ····· 1216
1157 스위스 정세 ····· 1217
1158 태국 총선거 ····· 1218
1159 튀니지 정세 ····· 1219
1160 상투메프린시페 정세 ····· 1220
1161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 1221
1162 탄자니아 정세 ····· 1222
1163 우간다 정세 ····· 1223
1164 영국 정세 ····· 1224
1165 소련 정세 ····· 1225
1166 미국 의회 동향 ····· 1226
1167 미국 정세 ····· 1227
1168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정세 ····· 1228
1169 우루과이 정세 ····· 1229
1170 각국의 월남 신정부 승인 ····· 1230
1171 각국의 월남 피난민 수송 및 구호 원조 ····· 1231
1172 월남 공산화. 전4권 (V.1 이전 정세) ····· 1232
1173 월남 공산화. 전4권 (V.2 공산화 및 각국 반응) ····· 1233
1174 월남 공산화. 전4권 (V.3 이후 정세) ····· 1234

1175 월남 공산화. 전4권 (V.4 신문기사) ····· 1235
1176 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 송환 ····· 1236
1177 월남 주재 각국 공관 철수 ····· 1237
1178 베네수엘라 정세 ····· 1238
1179 북예멘 정세 ····· 1239
1180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정세 ····· 1240
1181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세 ····· 1241
1182 공관활동보고 - 아르헨티나 ····· 1242
1183 공관활동보고 - 카나다 ····· 1243
1184 공관활동보고 - Vancouver(카나다)총영사관 ····· 1244
1185 공관활동보고 - 가봉 ····· 1245
1186 공관활동보고 - 온두라스 ····· 1246
1187 공관활동보고 - 코트디부아르 ····· 1247
1188 공관활동보고 - 나고야(名古屋, 일본)총영사관 ····· 1248
1189 공관활동보고 - 삿포로(札幌, 일본)총영사관 ····· 1249
1190 공관활동보고 - 센다이(仙臺, 일본)영사관 ····· 1250
1191 공관활동보고 - 요코하마(橫浜, 일본)총영사관 ····· 1251
1192 공관활동보고 - 일본 ····· 1252
1193 공관활동보고 - 후쿠오카(福岡, 일본)총영사관 ····· 1253
1194 공관활동보고 - 쿠웨이트 ····· 1254
1195 공관활동보고 - 라이베리아 ····· 1255
1196 공관활동보고 - 라오스 ····· 1256
1197 공관활동보고 - 르완다 ····· 1257
1198 공관활동보고 - 스웨덴 ····· 1258
1199 공관활동보고 - 시에라리온 ····· 1259
1200 공관활동보고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 1260
1201 공관활동보고 - 우루과이 ····· 1261
1202 공관활동보고 - 월남 ····· 1262
1203 공관활동보고 - 콩고민주공화국(구자이르) ····· 1263
1204 김철우 재일본 교민 간첩사건 ····· 1264
1205 재외공관의 영사 및 재외동포 관련 업무 봉사자세 확립 시행 ····· 1265
1206 해외 유공동포 모국 방문, 1975.9.30.-10.5. ····· 1266
1207 재일본 한국인 서훈 ····· 1267
1208 주오사카총영사관 청사건립 유공자(재일본 한국인) 서훈 ····· 1268
1209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 ····· 1269
1210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 1270
1211 일본 정부의 한국인 밀입국자 황정하 북한송환 조치 ····· 1271
1212 재일본 한국인 북한송환 ····· 1272
1213 가나가와현(일본) 한국종합교육센터 설립 ····· 1273
1214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관련 민원 ····· 1274
1215 미국 Los Angeles시 한국센터(Korea Center) 건립지원 문제 ····· 1275
1216 주Los Angeles 한국교민회관 건립 ····· 1276
1217 재사할린 동포 귀환관계 진정서 ····· 1277
1218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 1278
1219 월남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문제. 전2권 (V.1 4-8월) ····· 1279
1220 월남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문제. 전2권 (V.2 9-12월) ····· 1280

1221 재월남 동포 철수 ····· 1281
1222 재월남 동포철수시 기착(체류)국가 동향 ····· 1282
1223 김창근 주월남 2등서기관 탈출수기 ····· 1283
1224 재외국민단체 창설 및 활동 ····· 1284
1225 반한단체 및 재외동포의 반한활동 ····· 1285
1226 재일본 반한단체 동향 ····· 1286
1227 재일본 조선인 민주화 촉진연맹(조민련) 결성 ····· 1287
1228 전향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 ····· 1288
1229 조총련 결성 20주년 기념행사 ····· 1289
1230 조총련 동향 ····· 1290
1231 조총련계 인사 북한 방문 및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 ····· 1291
1232 조총련계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 ····· 1292
1233 호주 이민 추진 ····· 1293
1234 브라질 잠업(양잠) 이민 추진 ····· 1294
1235 중국(구 중공)의 한국어선(제601수덕호) 나포사건 ····· 1295
1236 주교황청(구 바티칸)대사관 영사업무 취급 ····· 1296
1237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 1297
1238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76-77차 ····· 1298
1239 한국 수용 월남난민의 재정착 교섭 ····· 1300
1240 한국 화물선 쌍용호의 월남난민 구조 ····· 1301
1241 한국의 대월남 전시난민(수송) 지원 및 구호 ····· 1302
1242 일본 적군파 관계 ····· 1303

1975년도

75-0001

양유찬 대사(전 주미국대사) 장례식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총무
MF번호	A-12 / 1 / 1-114

1. 주미국대사관은 1975.10.17. 양유찬 전 미국대사가 현재 수술후 위독한 상태에 있고 동 대사의 가족은 동인 사망 후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주미국대사관은 10.19. 동 대사가 별세하였음을 보고

2. 외무부는 1975.10.18. 동 대사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이라고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3. 1975.10.27. 외무부가 작성한 고 양유찬 대사 외무부장 거행 관련 대통령 앞 보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장례종류: 외무부장
- 유해 도착일시: 1975.11.1. 08:00(KE-005편)
- 영결식: 1975.11.1. 14:00, 정동 제일교회
- 안장식: 1975.11.1. 16:00, 국립묘지 제2유공자 묘역
- 장례위원회 구성
  - 위원장(김동조 외무부장관), 부위원장(노신영 외무부차관) 등
  - 1975.10.27. 서울신문에 공고 예정
- 신문 공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생산연도 1963-1975
생 산 과 법무
MF번호 2008-4 / 3 / 1-127

1. 재외공관 부동산 등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1963.4.11. 제정됨.

●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

- 부동산 처분, 자동차의 교환 등 처분 조항

2. 재외공관 부동산 등 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1970.8.7. 공포됨.

● 개정 내용

-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내 기간의 공관건물 또는 공관장 관저의 임차료 선불 가능
- 또한 공관청사나 공관장 관저를 매입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 가능 등

3.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1975.12.31. 공포됨.

● 개정 배경

- 재일거류민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기증하고 그 일부를 사무실과 회관용으로 사용 수익하고자 할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상으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재일민단 각 지부가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민단은 법인체가 아니므로 민단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고, 민단대표가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대표 경질시마다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고 이 때문에 민단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이를 국가 명의로 등기하여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목적
-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상으로는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국세청장에게 있으나, 잡종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관리처분하기가 곤란하므로 외무부장관을 관리처분기관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 주요 골자

-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이 국외에 있을 경우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함.(제7조)
- 국외에 있는 잡종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함.(제8조)

75-0003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2권 (V.1 1974.7-75.1)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법무/여권1
MF번호	2010-1 / 4 / 1-251

1. 외무부는 1974.11.20. 여권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하고자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여권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 일반여권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초본 제출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로 변경
  -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초본 제출을 삭제
- 여권의 유효기간을 재조정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
  -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현행은 명시규정 없음.)
  -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무기한 여권, 5년 기간 여권(3년 연장가능), 6개월 기간 여권(6월 연장가능)으로 분류(현행은 명시규정 없음.)
- 기재사항 변경을 외무부령에 위임하고, 동반자녀를 여권에 병기할 때 그 연령을 12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변경함.
- 재외공관에서의 여권수수료는 달러 또는 현지화로 납부할 수 있게 함.

2. 외무부는 1974.12.28. 여권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여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종전에 외무부 훈령으로 정한 여권발급 규정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흡수함.
- 시행령에서 위임한 여행목적별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정함.
- 일반여권은 단수일반여권과 복수일반여권으로 구분하고, 단수일반여권의 여행목적은 상용, 문화, 동거, 방문, 유학, 취업, 기술훈련, 거주로 하고, 복수일반여권의 여행목적은 상용, 문화, 거주로 한정함.
- 종전의 이민여권은 단수여권으로 규정하여 귀국 시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교포여권은 복수여권으로 규정함.
- 여권의 유효기간 재조정
  - 거주 복수여권(교포여권) 3년, 방문 단수여권 1년 등

3. 외무부는 1975.1.13. 여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본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여권발급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함으로써 일반 신청자들에게 편의 제공

4. 외무부는 1975.1.21.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457호) 및 여권법 시행규칙(외무부령 제88호, 제89호)의 개정·공포내용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함.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전2권 (V.2 1975.3-10)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법무/여권1
MF번호 2010-1 / 5 / 1-232

1. 외무부는 1975.3.20.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여권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
  - 갑근세 납세필증 제출 폐지(1년이하 해외여행자)
  - 거주복수여권 발급 요청 시 재외공관장이 발행하는 거주증명서 제출 폐지
- 상용복수여권 발급기준 완화
- 복수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거주여권의 국내 체류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 외화경비 지급 추천제도 삭제

2. 외무부는 1975.4.1. 상기 법제처 심의를 필한 외무부령 제91호를 관보에 게재하여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함.

3. 외무부는 1975.8.14.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권관계 법령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아래와 같이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여권신청 시 구비서류의 일부로 관계부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종래 관행을 지양하고 발급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사항에 한하여 해당부처의 의견을 문의
- 국외이주자, 국외유학생, 국외취업자 및 기술훈련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무장관이 발행하는 서류로 의견문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4. 외무부는 1975.9.15. 상기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이 1975.9.4. 대통령령 제7,788호로 공포되었음을 전재외공관에 통보함.

75-0005

재외공관 근무 직원 서열에 관한 규정

생산연도	1966-1975
생 산 과	법무
MF번호	2008-8 / 5 / 1-284

1966~75년 중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서열에 관한 예규 관련 개정내용임.

1. 외무부는 1975.6월 내부건의를 통해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서열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1975.7.1., 외무부 예규 제75-3호)하기로 결정함.

- 개정이유
  -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서열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외교활동의 비중과 일치시키기 위해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함이 타당
  - 공관장 직무를 대행할 자의 서열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공관 차석 직원의 사기를 높임.
  - 공관에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공관장이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서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열문제로 야기되는 공관원 간의 불화를 방지
- 주요 개정내용
  -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서열은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정함.
  - 공관의 특수성을 감안, 공관장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서열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관장 직무대행은 차상급 외무부 소속 공무원이 하며 차상급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정무담당직원이 하도록 함.
  - 공관장 직무를 대행할 자를 동급 대외직명자 서열의 최상위에 둠.
  - 현행 무관 서열을 1단계씩 하향 조정함.

2. 국방부는 1975.12.17. 상기 예규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함.

- 개정된 예규 별표 서열에 의하면 준장급 무관의 서열이 2급을류 참사관보다 그리고 대령급 무관이 3급갑류 참사관보다 뒤지도록 수정한 것은 국외여비규정, 군인 및 공무원 보수규정과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및 재외공관 주재 무관 보수규정에서의 각기 계급에 대한 대우 측면과 각기 계급에 이르는 경력연한 등을 고려할 때 수정조치 요망
- 재외공관 무관 주재령에 의해 주재하는 무관부에 관련되는 법률 또는 예규의 개정은 사전에 국방부와 협조한 후 조치 요망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 1975.10.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법무/여권1
MF번호	2010-1 / 12 / 1-49

1. 외무부는 1975.9.18. 내부건의를 통해 대통령령 제7,788호로 1975.9.4. 개정·공포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 및 1975.9.16. 공포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외무부령 제93호)에 따라 개정된 부분의 시행을 위하여 여권법 시행세칙(외무부 훈령 제96호)을 개정하기 위해 훈령 제125호에 의거, 대민관계 법령 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함.

2. 외무부는 1975.10.10. 상기 시행세칙이 1975.10.1. 외무부 훈령 제101호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전재외공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10.27. 상기 개정된 법령집과 이에 따른 여권발급, 기재사항 변경업무에 유의할 사항 및 개정 주요내용을 아래 요지로 전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착오 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함.

● 여권법령 개정 골자
- (여권발급 신청전반)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을 통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 필요, 신원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 제출 폐지 등
- (상용문화여권 발급관계) 관계부처 추천서 제출을 전반적으로 폐지, 갑근세 완납필증 제출 조건 완화 등
- (유학여권 발급관계) 비정규 유학중 병역의무 등 사유로 귀국하여 복학하려는 자에게 비정규 유학여권 발급가능 등 유학여권 발급규정 완화
- (동거방문여권 발급관계) 한국으로 귀화한 원 외국인이 원 국적지로 영주 귀국하는 경우 발급가능 등 동거방문여권 발급대상 확대, 일본지역 이외에는 1촌 이내에 국한한 발급을 2촌(형제, 자매)까지 발급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문여권 발급대상 확대
- (거주여권 발급관계) 종전 구비서류 중 재정보증서 또는 고용계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거주(이민) 단수여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

● 유의사항
- 동거, 방문 초청장에는 초청자의 여권번호, 여행목적 또는 재일교포의 경우 체류자격을 조사한 후 공관확인 조치하고 초청자의 전 여권사본(기재사항 변경란, 사증란 포함)을 초청장에 첨부하여 송부
- 거주여권 발급 및 거주목적 기재변경 시 과거 보건사회부 이주허가가 필수적이었으나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거주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거주국 영주권 취득 시 거주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거주국 영주권 취득 시는 여행목적 변경이 가능하여 보건사회부 이주신청이 필요 없음.
- 1975.4.3.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시귀국 본국 체재기간은 연 3개월임을 재차 교포사회에 주지
- 경유지 및 목적지 추가는 증빙서류 또는 여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관 재량으로 처리 등

75-0007

명예영사 입국 사증발급 임무부여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A-12 / 2 / 1-26

1. 외무부 영사국은 1974.2.23.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법규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관할지역내 명예영사 중 출입국관리법과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외무부장관에 의하여 사증발급 권한이 위임된 명예영사의 성명을 알려줄 것을 아주국, 미주국 및 구아국에 요청함.

- 구아국은 3.8. 주오슬로 명예총영사 등 관할 명예영사 성명을 영사국에 통보
  - 관할 명예영사 중 주잘츠부르크 명예영사만 통과·관광사증 발급업무 수행
- 미주국은 6.10. 주애틀랜타 명예영사 등 관할 명예영사 성명을 영사국에 통보
  - 관할 전명예영사에게 사증발급업무 위임

2. 1975.5.30.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75.5.26. 공포된 아래 요지의 명예영사 입국사증 발급 임무부여에 관한 예규(외무부예규 제75-2호)를 부내 각 실·국(과)에 통보함.

- 명예영사에게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나 명예영사의 관할지역과 상주공관과의 원격한 거리 및 한국과 당해지역 간 교류상 동 임무부여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명예영사에 한해 외무부장관이 이를 부여
- 사증 발급임무가 부여된 명예영사가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종류는 관광사증과 통관사증에 한하며, 사증 발급대상은 주재국 국민에 한함.
- 외무부장관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동 임무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Idriss, Ahmed 주N'Djamena(차드) 명예영사 임명, 1975.1.7.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A-12 / 3 / 1-32

1. **외무부는 1974.12.23. 주프랑스대사의 건의에 따라 Ahmed Idriss를 차드 수도인 은자메나 주재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함.**
   - 동인은 은자메나 최대의 양복제조공장 사장으로 정부요로 및 경제계에 널리 알려진 활동적인 청년실업가로 현재 차드 상공회의소 회원 및 차드 적십자사 위원임.
   - 차드는 한국이 1960.8.11. 승인한 국가로 1961.8.6.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26차 유엔총회 이래 계속적으로 한국을 지지
   - 한국은 1973.3월 WHO(세계보건기구)에서의 지지 확보 방안으로 차드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주프랑스대사로 하여금 파리 주재 차드대사관에 통고하도록 한 바 있으나 당장 상주공관을 설치할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우선 명예영사를 임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외무부는 1975.1.3. Ahmed Idriss가 주은자메나 명예영사로 1975.1.7.자 임명 발령됨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 영사 관할구역: 차드 전지역
   - 직무범위
     - 대통령령 제2,400호 제6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되 그 외 사항은 주프랑스대사의 지시를 받음.
   - 운영경비: 동 대통령령 제7조 1항에 규정된 경비

3. **주프랑스대사관은 1975.2.26. 공한(1.23.)으로 동 명예영사 임명에 관한 차드 정부의 사전 동의를 현지 주재 차드대사관을 통해 요청하였고 2.18. Attimer 차드 외무성 의전차장과 통화한 결과, 동의 요청에 대한 승인으로 영사인가장을 신청해도 좋다고 하여 2.20.자 공한(영사위임장 첨부)으로 현지 주재 차드대사관을 통해 동국 정부에 영사인가장을 신청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카메룬대사는 1975.4.4. 최경록 특사를 수행, 1975.3.25.~27. 차드 방문계기에 명예영사관 신설에 따른 비품을 Idriss 명예영사에게 전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009

Hernandez Sanchez, I. Rafael J.M. 주Santo Domingo(도미니카공화국) 명예영사 임명, 1974.12.26.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2007-1 / 14 / 1-18

1. 외무부는 1974.12.26. I. Rafael Jesus Maria Hernandez Sanchez를 도미니카공화국의 Santo Domingo 주재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12.30.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임명 사실을 통보함.
   - 주베네수엘라대사는 Santo Domingo 주재 Alfred Dalmau 명예총영사의 활동을 원활하게 보조할 수 있도록 동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
   - 동인 및 Dalmau 명예총영사는 1974.11.12.~17. 정부 초청 방한 시 명예영사 임명을 희망하였으며, 동인은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해주고 있는 도미니카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영식임을 감안함.

2. 외무부는 1974.12.30. Hernandez Sanchez가 12.26.자 Santo Domingo 주재 명예영사로 임명되었음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통보함.

3. 외무부 미주국은 1975.1.6. 동인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발급,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송부해 줄 것을 의전실에 요청함.

주Guayaquil(에콰도르) 명예총영사 임명 및 해임

생산연도	1962-1975
생 산 과	중남미/총무
MF번호	A-12 / 4 / 1-56

1. 외무부는 1963.5.22. 에콰도르 명예영사 임명 관련 아래 요지로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에콰도르 Guayaquil시에 주재하고 있는 그리스총영사는 서한을 통해 Nahim Isaias Barquet을 Guayaquil시 주재 한국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추천하여 온 바 있음.
  - 외무부는 1964년도에 8개 지역의 명예영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소요경비를 책정하고자 하나 동 시는 명예영사 임명지역 계획에 포함된 바 없음.

2. 외무부는 1968.10.21. Gonzalo Enderica Espinoza를 Guayaquil시 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3. 주칠레대사관은 1969.12.11. 상기 명예총영사가 재무부 재직 시의 범죄로 현재 체포령이 내려져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동인을 해임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조속 해임을 건의함.

- 외무부는 12.13. 동인이 동일자로 해임 발령되었음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

4. 외무부는 1975.10.20.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2.11. 해임된 Roberto Isaias Dassum을 주Guayaquil시 명예영사로 재임명하기로 결정함.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동인의 사임 경위와 재취임 의사를 알아본 바, 현재로서는 동인보다 좋은 여건의 인사를 구하기 어려우며 동인은 사임 이유가 외적요인에 있었다면서 재취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고함.
- 동인의 명예영사직 사퇴가 동인의 결격사유 또는 과오에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1971.3.8. 명예영사로 임명된 이래 양국간 우호증진과 교역 및 문화증진에 공헌한 점을 감안, 현지 공관 건의에 따라 동인을 명예영사로 재임명함.

5. 외무부는 1975.12.6. 동인이 12.5.자로 주Guayaquil시 명예영사로 임명되었음을 주에콰도르 대사관에 통보함.

75-0011

주San Salvador(엘살바도르) 명예총영사 임명 및 해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미주/총무
MF번호	A-12 / 5 / 1-30

1. **외무부 미주국은 1973.5.24. 김이배 주엘살바도르 명예총영사(1968.7.21. 임명)가 1972.12.31. 영주 귀국하여 사표를 제출(1973.5월초 접수)하였음을 총무과에 통보하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총무과는 5.25.자로 동 명예총영사 해임 발령이 재가되었음을 미주국에 통보

2. **외무부는 1975.2.6.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주재 명예영사 임명 관련, 동국 거주 약화학자 Victor Silhy가 한국 명예영사직을 희망하는 서신을 송부해 왔음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보고를 지시함.**
   - 외무부는 3.7. Castaneda 엘살바도르 외무차관이 방한 중 한국 측이 명예영사 적격자 추천을 요망한데 대해 현재 엘살바도르에서는 젊은 세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 집권층과 친교가 있고 활동적인 인사로서 동인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음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10.27. 내부건의를 통해 1972.12.31.이래 공석 중에 있는 주산살바도르 명예총영사에 Baldocchi를 임명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는 12.6. 동인이 12.5.자로 주산살바도르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었음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함.

Largier, Yves E. 주Marseille(프랑스) 명예영사 임명, 1975.5.19.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총무
MF번호	A-12 / 6 / 1-50

1. 외무부는 1975.5.16. 주마르세유 명예영사에 Yves E. Largier를 임명하기로 결정함.

- 주프랑스대사는 1974.10.31. 마르세유에 명예영사관을 설치하고 마르세유 상공회의소 소장이 추천하는 동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여 온바, 외무부는 이를 승인하고 주재국의 사전 동의를 득하도록 지시
- 프랑스 외무성은 1975.4.15. 공한으로 동 명예영사관 설치 및 동인 임명에 동의
- 임명 필요성
  - 마르세유는 프랑스 제2의 도시이며 최대의 항구
  - 관할지역내 라누벨 등 2대 항구가 있으며 동 지역은 한국의 대프랑스 통상 및 문화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등

2. 외무부는 1975.5.24. 동 명예영사가 5.19.자로 발령되었으며 명예영사관 개관에 필요한 물품은 철제 현판의 제작 지연으로 송부하지 못하였으나 6.4. 개관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임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3. 주프랑스대사는 1975.6.4. 마르세유에 출장하여 마르세유 시장대리 및 도지사를 예방하고 코트라 마르세유사무소와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거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013

Mango, Kamal H. 주Amman(요르단) 명예총영사 유임문제 및 서훈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A-6-13 / 5 / 1-14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1975.1월 요르단은 동 대사관의 겸임국으로서 Kamal Mango가 주암만 명예총영사로 임명된 바 있으나 동인을 교체하고 요르단 참모총장을 역임한 인사를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자 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1.14. 동 명예총영사 교체 건은 상주대사관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검토 중임을 주사우디대사관에 통보함.

3. 주요르단대사관은 1976.4.30. 동 명예총영사 임명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건의함.
   - Kamal Mango 명예총영사의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동인이 확보하고 있는 주재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교분에 비추어 향후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활용하는 경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유임을 재건의함.
   - 동 명예총영사는 1969.8월 임명 이래 한국의 대요르단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동인에 대한 서훈을 건의함.

4. 주요르단대사관은 1976.9.4. 동인에 대한 훈장(수교훈장 숭례장) 전수식을 동 대사관에서 주재국 유력언론인 및 친한인사 다수 참석 하에 거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명예영사 임명 - 모나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A-12 / 7 / 1-7

1. 외무부는 1975.5.21. 모나코에 거주하는 실업가 Schiffer가 4.30. 국무총리 앞 서한을 통해 한국 명예영사직에 임명 신청한 사실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하고 모나코의 명예영사 필요성 여부와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동인의 적격 유무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75.6.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명예영사 임명문제는 당분간 보류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 모나코와 정치, 통상 및 경제적 관계에서 평가할 때 실질적인 임명의 효과는 별로 없음.
   - 영사업무면에서도 명예영사가 담당할만한 업무가 많지 않음.
   - 마르세유에 이미 명예영사관이 설치되어 남부프랑스지역에 대한 명예영사 활동이 기대되고 있음.
   - 동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소규모 수출입상사로서 동 사가 앞으로 한국의 동 지역 또는 대프랑스 무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기대되지는 않음.

75-0015

Seeyave, Rene Cheh 주Port Louis(모리셔스) 명예영사 해임, 1975.8.1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총무
MF번호	A-12 / 8 / 1-50

1. 주영국대사관은 1975.2.5. Rene Cheh Seeyave 주모리셔스 명예영사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현지 주재 모리셔스대사관을 통해 모리셔스 정부에 제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인의 재임명일자 및 명예영사관 개관시기 등에 관한 지침 전달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75.2.8. 동인의 명예영사 재임명일자는 1974.11.28.이며, 3.12. 모리셔스 독립기념식 전에 인접국인 주케냐대사를 경축사절로 파견, 동 기회에 명예영사관 개관식도 거행하도록 할 예정임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2.20. 한국 정부가 모리셔스의 현 비상사태와 관련, 동국 정부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며 경축사절단 파견계획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5.2.26. 주모리셔스 명예영사관 개관식을 최경록 특사의 동국 방문(1975.4.9.~12.)시 거행하기로 하였음을 Seeyave 명예영사에게 알려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주영국대사관에 지시함.

5. 주영국대사관은 1975.4.7. Seeyave 명예영사에 대한 모리셔스 정부의 명예영사 인가장은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득하기 위해 관계서류가 왕실에 제출되어 있으나 여왕의 일정 및 집무계획상 다소 시간을 요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6. 외무부는 1975.6.7. Seeyave 명예영사가 5.29. 방한하여 외무부장관 및 정무차관보 예방, 금성사 접촉 등의 일정을 갖고 5.31. 이한하였으며, 외무부 예방시 자신의 국회의원 출마계획과 관련 당선이 되면 모리셔스 국내법상 명예영사직 겸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음을 주케냐대사관에 통보함.

7. 외무부는 1975.8.19. Seeyave 명예영사가 정계 진출을 이유로 동 명예영사직 사임을 표명하여 왔으므로 1975.8.14.자로 해임 발령하였음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하고 현지 주재 모리셔스 고등판무관실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Obregon Reynoso, Bernado 주Gudalajara(멕시코) 명예영사 임명, 1975.12.5.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A-12 / 9 / 1-21

1. 외무부는 1974.12.23. 주멕시코대사가 건의한 멕시코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시에 Jalisco주 식량산업회의소 고문으로 있는 Bernado Obregon Reynoso씨를 명예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함.
   - 과달라하라시는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한국상품의 진출이 기대되는 곳이며 더욱이 멕시코 좌익계 활동의 본거지로서 이를 이용한 북한의 대멕시코 침투가 가능한 지역임.
   - 따라서 대멕시코 교역증진과 북한의 침투 저지를 위해 동 명예영사 임명 필요
     - 다만, 멕시코 헌법 규정에 따라 동국 국회의 동의를 먼저 득할 필요

2. 외무부는 1974.12.24. 주재국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취할 것을 주멕시코대사관에 지시함.

3. 주멕시코대사관은 1975.10.22. 주재국 국회는 동인의 한국 명예영사 활동에 동의하여 7.23.자 관보(Diario Oficial)에 게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75.12.6. 동인이 12.5.자로 주과달라하라 명예영사로 임명되었음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함.

75-0017

Guthrey, A.R. 주Christchurch(뉴질란드) 명예영사 임명, 1975.1.7.

생산연도	1962-1975
생 산 과	동남아1/총무
MF번호	A-12 / 10 / 1-60

1. 주호주대사관은 1962.12.27. 동 대사관의 관할 하에 있는 뉴질랜드와 이미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뉴질랜드 정부 및 공공사회단체와의 접촉에 지장이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국에 명예영사제도 적용을 건의함.

- 외무부는 1963.3.19. 각령 1,049호에 규정된 명예영사에게 지불해야 할 경비는 1963년도 추가 경정예산이 가능하면 이에 계상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1963년내 동 지역에 명예영사 임명은 실현이 곤란함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2.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4.10.4. 주재국 South Island의 최대도시인 Christchurch에 아래 사항을 고려, 주재국 외무차관이 추천한 A.R. Guthrey(Christchurch 시장 역임)를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Christchurch는 South Island의 정치, 산업, 문화중심지로서 한국과의 교역은 Auckland 다음으로 활발한 교역의 중심지임.
- South Island는 거리상 대사관에서 자주 출장갈 수도 없고 한국 정부기관 또는 상사 지점도 없어 각종 대외활동에 문제가 많음.

3. 외무부는 1974.10.16. Christchurch에 명예영사관을 설치하고 명예영사에 A.R. Guthrey을 임명하기로 10.14. 결정하였음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의 동의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2.19. 주재국 정부가 동 명예영사관 설치 및 동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정식 통고(12.17.)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4. 외무부는 1975.1.22. Guthrey 명예영사 임명장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송부하고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대통령령(1970.8.3.)에 의거,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을 지시함.

- 명예영사는 동 대통령령에 규정된 직무 중 하기 사항 수행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사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상거래 및 외자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등

5.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5.2.4. Guthrey 명예영사가 한국 입국사증을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하면서 최소 주재국 국민에 대한 한국통과 및 관광사증은 발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건의함.

- 외무부는 2.25. 동 명예영사에 대해 통과 및 관광사증 발급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

6.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5.4.24. 주재국 외무성이 Guthrey 명예영사에 대한 영국 여왕의 명예영사 인가장(4.7. 발급)을 송부하여 옴으로써 동 명예영사에 대한 주재국 정부와의 정식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 주뉴질랜드대사는 1975.5.30. Christchurch에 출장(1975.5.26.~28.), Guthrey 명예영사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임명장 및 영국 여왕의 인가장을 전달하고 선서를 받음으로써 동 명예영사관이 1975.5.27. 정식으로 개설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018

Kahraman, Ferda 주Istanbul(터키) 명예총영사 임명, 1975.1.28.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총무/구주2
MF번호	A-12 / 11 / 1-66

1. 외무부는 1974.11.16. 주터키대사가 건의한 이스탄불에 명예총영사관을 설치하고 동 명예총영사에 기업인인 Ferda Kahraman을 임명하기로 결정함.

- 명예총영사 임명 필요성
  - 이스탄불은 흑해 및 지중해를 연결하는 국제적 상업, 해운 및 항공도시이므로 한국선박의 수시 입항, 흑해 출입에 따른 영사적 보호 필요성
  - 국제항로의 요충지로서 한국인의 일시적 기착에 따른 영사적 보호 필요성
  - 동서 양진영의 완충지로서 각종 정보수집 필요성 등
- 직무범위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254호) 제6조 중 영사송장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 다만, 이스탄불의 경우 아랍 게릴라 등 불온분자가 명예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광 및 통관사증 발급을 위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외무부는 1975.2.11.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명의 영사위임장을 주터키대사관에 송부하고 주재국의 인가장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3. 주터키대사관은 1975.4.30. 주재국 외무성은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인가장이 발급되기 전에 동인이 업무를 개시하여도 좋다는 외교 공한을 4.29. 발송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대사관은 5.8.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임명 선서식을 5.7. 동 대사관에서 거행하고 대통령령 제5,254호에 규정한 임무를 부여(단, 사증 발급업무는 위임하지 않음)하였음을 보고

4. 주터키대사관은 1975.6.13. 주재국 대통령이 서명한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인가장(4.30.자 발급)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함.

5. 주터키대사관은 1975.12.16. 동 명예총영사가 10.9. 27명으로 구성된 경제인 관광단을 직접 인솔 방한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등 지대한 공로를 세운 점을 감안, 동인에 대한 훈장 수여를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1976.1.19. 동인에 대해 수교훈장 숭례장을 서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주터키대사관에 통보

주Boston(미국) 명예영사관 개관, 1975.5.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묵미1
MF번호	A-12 / 12 / 1-27

1. 주미국대사관은 1975.1.28. 미 국무부가 1.14. John Joseph Maloney(변호사) 주보스턴 명예영사에게 영사인가를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미국대사관은 1975.5.13. 주보스턴 명예영사관 개관식이 5.16. 보스턴 시장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75.5.19. 동 개관식이 5.16. 보스턴 시청 회의실에 거행되었으며, 동 개관식에는 메사츄세츠주 부지사 및 주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보스턴 주재 각국 영사, 언론인, 한국교민 등 약 90명의 인사가 참석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020

주Philadelphia(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주Phoenix(미국) 명예영사관 개관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A-12 / 14 / 1-34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1972.4.27. 주Phoenix 명예영사관 개관식이 아래와 같이 거행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개관식은 4.25. Arizona주 주지사실에서 주지사 및 지방유지 등 참석하에 거행
- 황호을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주미국대사를 대신하여 영사위임장 등을 William L. Weirich 명예영사에게 전달하고 명예영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 개관식후 일정에 따라 리셉션 및 만찬 개최
- 동 개관식 관계는 현지 방송국에 의해 녹화방송된 바 있으며 4.27. The Arizona Republic지에 보도

2. 외무부는 1975.12.1. Richard W. Thorington 변호사를 주필라델피아 명예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함.

- 주미국대사는 1973.4.4. J. Welles Henderson 변호사를 동 명예영사로 임명 건의하였으나 동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철회되고 새로운 명예영사 후보로 Hugh Scott 상원의원이 추천한 Thorington 변호사를 주필라델피아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
- 직무범위
  - 대통령령 제5,254호 제6조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업 등

3. 외무부는 1975.12.15. 상기인이 12.10.자로 주필라델피아 명예영사로 발령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주Portland(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총무
MF번호	A-12 / 15 / 1-29

1. 주미국대사관은 1974.2.19. 주Portland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로 발령된 Robert Freeman Smith에 대한 미 국무부로부터의 명예영사인가 통보서한(1974.2.12.)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75.2.13. 주Portland 명예총영사관 Albert Meyer 명예영사(1973.3.20. 임명)를 해임하기로 결정함.
   - 동인은 다른 개인적 업무와 관련한 일신상의 이유로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사직서 제출
   - 이와 관련, Raymond M. Kell 주Portland 명예총영사는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동인의 해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과 곧 그 후임을 추천하겠다고 알려옴.

3. 외무부는 1975.2.21. Meyer 명예영사가 2.20. 해임 발령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5.7.1. Meyer 명예영사 후임으로 Kenneth Lewis를 임명하기로 결정함.
   - 주미국대사는 Kell 주Portland 명예총영사의 추천에 따라 Meyer 명예영사 후임으로 동인(Oregon주 Portland 소재 해운회사 부사장)을 임명할 것을 건의
   - 직무범위
     - 주Portland 명예총영사의 관할구역 및 직무범위 내에서 동 명예총영사의 지휘, 감독에 따른 업무 수행

5. 외무부는 1975.7.19. Kenneth Lewis가 7.15. 주Portland 명예영사로 발령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75-0022

Coleman, Thomas B. 주New Orleans(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5.3.1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총무
MF번호	A-12 / 16 / 1-18

1. 외무부는 1975.3.5. 주New Orleans 명예총영사관의 명예영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함.
   - 주New Orleans 명예총영사의 요청에 의한 주미국대사의 건의에 따라 James J. Coleman, Jr.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Thomas B. Coleman를 임명
   - Thomas B. Coleman은 International Tank Terminal-Korea(울산 소재) 사장으로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New Orleans 지방의 유력한 청년 실업가임.

2. 외무부는 1975.3.13. James J. Coleman, Jr.은 동일자로 해임되고, Thomas B. Coleman이 주New Orleans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로 임명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75.6.14. 미 국무부가 Thomas B. Coleman에 대한 영사인가를 통보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75.11.18. Thomas B. Coleman에 대한 임명장은 10.9. 주휴스턴총영사가 애틀랜타 출장계기에 New Orleans에서 본인에게 직접 수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Lounsbury, Loren H. 주Anchorage(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5.5.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총무
MF번호	A-12 / 17 / 1-40

1. 외무부는 1975.4.30. 주앵커리지 명예영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함.

- 주미국대사는 알래스카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의 증가 및 향후 동 지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하여 알래스카주 출신 Ted Stevens 상원의원이 추천한 Loren H. Lounsbury를 주앵커리지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
- 직무범위
  - 대통령령 제5,254호 제6조 규정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업무 등

2. 외무부는 1975.5.13. 동인이 주앵커리지 명예영사로 5.12. 발령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75.7.29. 미 국무부는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를 공한(1975.7.10.자)으로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75.8.29. 주앵커리지 명예영사관 개관식이 8.25. 앵커리지 시장실에서 Sullivan 시장과 유지들의 참석 하에 예정대로 개최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일 오후 함병춘 주미국대사를 위한 리셉션에는 Sullivan 시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유지들이 참석
- 함병춘 대사는 상공회의소(8.25.) 및 로터리클럽(8.26.) 오찬에 참석하여 각각 연설함.

75-0024

Matheson, Richard G. 주Seattle(미국) 명예총영사 해임, 1975.8.2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총무
MF번호	A-12 / 18 / 1-9

1. 주미국대사관은 1975.8.12. Richard G. Matheson 주시애틀 명예영사(1973.5.28.임명)가 개인사업 관계로 9월초 타지역으로 주거 이전하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건의함.

2. 외무부는 1975.8.14. 동인을 주시애틀 명예영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함.

3. 외무부는 1975.8.29. 동인이 8.27.자로 해임 발령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Williams, John B. 주San Juan(미국) 명예총영사 임명, 1975.6.11.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A-12 / 19 / 1-30

1. **외무부는 1975.6.7. 주미국대사의 건의에 따라 Francis Valeo 미국 상원 사무총장이 추천한 John B. Williams(실업인)를 주San Juan 명예총영사에 임명하기로 결정함.**
   - 관할구역: Puerto Rico
   - 직무범위
     - 대통령령 제5,254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건 제6조 규정 중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사업, 미국시민에 대한 통관 및 관광사증 발급 등
   - 추천사유
     - 주휴스턴총영사관의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명예영사관들의 위치로 보아 Puerto Rico지역을 담당하는 명예영사관은 없음.
     - 특히 동 지역은 무역량이 많고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카리브 연안의 중심지이며 미국의 영토이면서도 자치도가 강한 점에 비추어 명예총영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추천인은 20여 년 전 동지역에 이주하여 사업기반을 마련한 실업인으로 한국과의 각종 교류 특히 통상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외무부는 1975.6.14. 동인이 6.11. 주San Juan 명예총영사로 발령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76.1.19. 동 명예총영사관 개관식이 1.16. Banker's Club에서 리셉션과 함께 거행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개관식에 참석한 주미국대사는 1.15. Tampa Bay Area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주최 만찬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제정세에 대해 연설함.

75-0026

1975년도 북미지역 주재 명예영사 활용방안 및 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
MF번호	A-12 / 20 / 1-49

1. 외무부는 1975.3.14. 대통령령 제5,254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명예영사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하여 1975년도 북미지역 명예영사 활용 및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함.

● 목표
- 명예영사들을 대미국 및 캐나다 외교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활용
- 명예영사들의 대의회 및 홍보활동 강화

● 주요사업
- 명예영사 방한 초청
- 유공 명예영사에 대한 서훈
- 대의회 활동의 측면지원 강화
- 지방 홍보활동 강화
- 명예영사의 활동평가 보고

● 보조금 지급
- 대통령령 제5,254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건 제7조(경비)에 따라 1974년에 준하여 각 명예영사관당 1천 달러씩 책정, 주미국대사 및 주캐나다대사에게 일괄 송금하여 대사 관할하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함.
- 기타 특별사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검토하여 지급

2. 외무부는 1975.3.18. 상기 계획을 주미국대사관 및 주캐나다대사관에 각각 통보하고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지시함.

주Detroit(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총무
MF번호	A-12 / 13 / 1-35

1. 주미국대사관은 1975.3.18. R.S. Gribbs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가 자신의 순회법관 피선에 따라 명예영사직 사직을 원하여 왔으며 지난 1.1.자 소급면직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의원면직 조치를 건의함.

- 주미국대사관은 3.19. 동인의 소급면직 이유는 순회법관 취임일자가 1.1.로 원칙적으로는 소급발령이 바람직하나 어려운 경우 본부 원칙에 따라 발령할 것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3.25. 동인이 3.22.자로 해임 발령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2. 외무부는 1975.5.1. Chester Mally(사업가)를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함.

- 주미국대사는 공석중인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직에 동 지역 출신 Broomfield 하원의원이 추천한 동인을 임명할 것을 건의
- 직무범위
  - 대통령령 제5,254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 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업, 통상, 경제, 예술, 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촉진, 미국시민에 대한 통관 및 관광사증 발급 등

3. 외무부는 1975.5.13. 동인이 5.12.자로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로 발령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75.7.29. 동 명예영사관 개관식이 7.28. 디트로이트 시장실에서 개최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개관식에는 함병춘 주미국대사, Coleman 디트로이트 시장, Broomfield 하원의원을 비롯한 동 지역 각계 유지 참석
- Detroit Athletic Club에서 리셉션 및 오찬이 있었으며, 주미국대사는 동 계기에 한국 정세 등에 관해 설명

75-0028

주페루대사관 상주무관 파견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A-12 / 21 / 1-13

1. 외무부는 1974.4.2. 중남미국가에 대한 무관 파견 관련, 아래 요지로 국방부에 통보하고 무관 파견 문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1974.3.18.~19., 페루 리마)에서 중남미지역에 대한 외교 강화책의 일환으로 무관 파견 및 무관 활용문제 토의
- 중남미에는 10여 개국이 군부 집권국가이며 민정하의 국가에 있어서도 군부의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음.
- 금번 공관장회의에서는 북한침투 저지 및 대중남미 외교강화를 위해 무관 파견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으므로 조속히 무관 파견 문제 검토 요망
  - (페루) 군부 집권국가로서 대외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집요한 침투공세가 있는 국가
  - (콜롬비아) 참전 16개국의 하나로 군부의 영향력이 큰 국가
  - (우루과이) 민정하에 있으나 군부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주브라질대사관 무관이 겸임하고 있으나 무관상주 필요)

2. 국방부는 1974.6.21. 콜롬비아 및 페루에 대한 무관 파견(1975년)을 계획하고 소요예산을 요청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1.17. 최근 페루에는 북한 통상대표부가 개설되었고 금년 8월에는 비동맹 외상회의가 동국 수도 리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북한의 침투활동이 더욱 격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금년도에 파견될 예정인 상주무관을 가급적 1/4분기 중에 파견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함.

4. 외무부는 1975.1.25. 국방부에서는 예산 및 교육관계상 무관을 10.1.자로 파견할 것이라고 주페루대사관에 통보함.

Farrington, Joseph R. 전 미국 하원의원 및 이원순 한·미협회장에 대한 훈장수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A-12 / 22 / 1-57

1. 외무부 미주국은 1975.5.12. Joseph R. Farrington의 서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의전실에 요청함.
   - 동인은 미국 하원의 하와이주 대표로 재직중 1944년 이래 미국의 이민 및 귀화 관계법상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제출, 동 차별대우 철폐에 진력함으로써 한국인의 대미국 이민과 국위선양에 기여
   - 동인은 1954년 사망하였으나 한국인의 대미국 이민에 대한 공헌을 감안,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고 현재 하와이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인의 미망인이 대리로 수령하도록 조치

2. 외무부는 1975.5.14. 이원순 한미협회 회장이 1946.10월 워싱턴에서 한인 이민 및 시민권 위원회를 창설, 1949년까지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의회에서 이민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활약을 하여 한국인의 미국 이민에 공헌하였음을 총무처에 통보하고 동인에 대한 서훈을 추천함.
   - 특히 동인은 동 위원회 사무총장이던 Walter Jhung을 동원하여 1944년 한국인의 대미국 이민법안을 최초로 미국 하원에 제안한 상기 Farrington을 비롯한 상·하 양원 의원들과 접촉, 한국인의 대미국 이민을 허용하게 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교섭
   - 동 법안은 1953.1월 다른 이민관계 법안과 통합, 미공법 제414호(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동 법안 제정으로 매년 100명의 한국인 이민과 아울러 미국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게 됨.

3. 총무처는 1975.6.27. 상기인들에 대한 서훈(국민훈장 무궁화장) 결정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5.7.19. 동 훈장 수여와 관련, 이원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수여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한편 고 Farrington에 대해서는 동인의 유족(부인)에게 전수할 것을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지시함.

5.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1975.8.7. 동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8.5. Elizabeth Farrington 여사에게 동 훈장 수여식을 거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030

한·일본 인사 서훈

생산연도	1967-1975
생 산 과	교민1/일본담당관
MF번호	A-12 / 23 / 1-70

1. 외무부는 1975.6.6. 주일본대사의 건의에 따라 일본 국제봉사단원인 지비키 다카노리에 대해 외무부장관 감사패를 수여함.

- 동인의 공적사항
  - 1967.10월 국제봉사단원으로서 경북 월성군 천복면 복군리에 입주하여 음성 나환자 희망촌 농업지도원으로 활약하면서 나환자 농업교육에 진력함.
  - 1974.11.27. 국제봉사농장 창립 7주년 기념일을 기해 농장(6만 m^2) 및 기타 일체시설과 재산을 희망촌에 기증, 나환자들의 자활기반을 구축함.

2.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1975.3.17. 콜롬보플랜에 의한 하천공학 연수차 일본을 방문하여 연수중 사망한 경북도청 건설국 치수과장의 고별식 등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협조해준 고사카 다다시 건설성 치수과 도시하천대책실장 외 일본인 3명에 대해 내무부장관 감사패 수여를 건의함.

- 외무부는 1975.4.8. 내무부는 경상북도 지사 명의로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경상북도에 이첩, 지시하였다고 함을 주요코하마총영사관에 통보
- 외무부는 6.12.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5.27. 동 총영사관에서 해당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고 보고해 왔음을 경상북도에 통보

국내 가톨릭계 인사의 정치활동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B-6-26 / 5 / 1-13

1.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Dossena 주한 교황청대사(1975.1.11.) 및 Jenebelly 주한 벨기에대사(1.13.)와 국내 가톨릭계의 동향에 관해 각각 협의함.

- 김동조 장관 언급요지
  - 한국 가톨릭계의 최근 행동은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종교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에 의해 허용된 종교활동은 정치활동과는 엄격히 구별됨.
  - 천주교 사제단의 명의로 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현 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도전임.
  - 일부 가톨릭계의 움직임이 한국 가톨릭 전체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여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도록 협조 요망
  - 외국인 선교사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활동은 할 수 없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임.
- Dossena 대사 언급요지
  - 활동에 참가한 가톨릭신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다수 가톨릭교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김수환 추기경과 상의, 주교 회의를 개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협의 예정
- Jenebelly 대사 언급요지
  - 벨기에 신부의 데모는 평화적인 행동에 불과하며 한국 정부의 선처를 요망

2.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1975.1.21. Dossena 대사와 국내 가톨릭계 인사의 정치활동에 관해 협의함.

- 김정태 차관보 언급요지
  - 정부는 가톨릭계와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럴 의사도 없음.
  - 가톨릭신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일부 신부의 행동이 가톨릭교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 Dossena 대사 언급요지
  - 일부 신부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으로, 가톨릭교회의 승인 또는 지지를 얻고 하는 것이 아님.
  - 가톨릭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것임.

75-0032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및 이에 대한 각국 반응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B-24 / 1 / 1-60

1. 박정희 대통령은 1975.1.22.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찬반(贊反)을 묻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함.

2. 외무부는 1975.1.31. 전재외공관장에게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자료를 송부함.

● 국민투표의 근거와 의의, 한국에서의 국민투표, 국민투표의 대상·절차·효력, 국민투표의 공정관리 문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제한문제 등

3. 외무부는 1975.2.15. 상기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종합함.

● 일본 외무성
- 예견된 결과이나 투표실시 자체에 의의가 있고, 유신체제를 뒷받침하여 국론통일을 가져왔으나, 이로써 현 정권이 안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이 불가

● 중국 언론
-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신임 획득
- 동 대통령은 국민총화에 입각한 거국적 정치체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천명

● 미국 국무성
- 관례에 따라 불언급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영국 언론
- 수백만 한국인은 야당의 투표거부 호소를 무시하고 투표에 참가, 박 대통령의 헌법체제를 간접적으로 승인
- 동 대통령은 범국민 정치체제를 전개하겠다고 언명하였으나, 국민투표 반대자들을 고립시킬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

● 독일 언론
- 박 대통령의 승리는 예측한 것
- 투표자의 73%가 찬성함으로써 독재적인 헌법유지를 간접적으로 찬성
- 이 선거결과에 대해 비교적 강한 반대세력이 생김.

● 이탈리아 외무성
- 현 헌법과 박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

● 소련 국내방송
- 투표소에는 투표자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검찰당국의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 박 정권에 항의, 투표에 불참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 선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동북아1
MF번호	B-24 / 2 / 1-188

1. 외무부는 1975.5.13. 헌법 제53조에 의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아래와 같이 선포되었음을 주요 공관에 통보함.

-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하는 행위, 헌법을 부정 또는 비방하거나 그 결정 또는 폐지를 주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는 학생들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이 조치를 공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함.
- 동 조치 위반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 가능
- 대통령은 동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담화를 발표함.
  - 국민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여 국민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
  -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공약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친선 및 협력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다짐

2. 외무부는 1975.5월 이후 상기 긴급조치 발표에 대한 해외반응을 수시로 종합함.

- 미국 언론
  - 박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야당 및 학생들의 반정부 운동을 금지
- 캐나다 언론
  - 동 긴급조치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필리핀 언론
  -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대통령 특별담화 배경, 안보우선을 위한 국민의 국론통일 양상 등 보도

3. 외무부는 1975.5월 법무부, 문화공보부에 상기 긴급조치가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자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문화공보부는 체한중인 외국기자에도 적용된다고 회신
  - 아울러 특정한 보도행위의 저촉여부 심사를 위해 문공부 내에 보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 법무부 회신
  - 동 긴급조치는 한국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외국인 기자에도 적용
  - 일본 국내에서 긴급조치 위반행위를 한 일본인이 한국에 올 경우 불적용
  - 재한 일본특파원의 긴급조치 위반기사 송고 등 전파행위는 형법이론에 따라 해석
  - 방한 일본인의 긴급조치 위반소지 출판물 단순휴대 시에는 처벌 어려움

75-0034

김대중 납치사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4 / 3 / 1-343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1975년 중 한·일본 외교당국이 취한 주요 조치내용임.

1. 일본 외무성은 1975.1.31.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한국 측 수사상황을 조속 회신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법무부는 2.19. 동 사건은 1974.8.14. 내사중지 결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일본 측에 알릴 사항이 없다고 외무부에 통보

2.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4.7. 니시야마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함.

- 한국 측은 1973.11월 김종필 총리가 방일하여 다나카 일본 수상에게 유감을 표명하였고, 따라서 김대중 사건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언급

3. 도고 일본 외무차관과 주일본대사는 김대중 사건 해결에 관한 양측 구상서 합의문안을 협의함.

- 일본 측 제안요지
  - 한국 측은 김동운 문제에 관해 1974.8.14. 동 수사를 일시중단, 불기소 처분, 본인의 언동 등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 공무원 면직 등을 포함하는 구술서를 1975.7월중 일본 외무성에 전달하고 동 구술서로서 일본 정부는 김동운 문제를 금후 불재론(不再論)
  - 미야자와 일본 외상이 7월 하순 방한하여 한·일본 간 안보문제, 각료회의 문제 등 협의

4. 외무부는 1975.7.9. 주일본대사에게 김대중 사건 해결과 미야자와 외상 방한에 관한 훈령을 지시함.

- 금후 김동운 문제 재론 않겠다는 의사를 보장
- 8·15 사건 사후처리에 대한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보장
- 김대중 출국문제에 관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대외논평 수정 요망
- 동 외상 방한(1975.7.23.~24.) 환영 등

5. 김동조 장관은 1975.7.22. 니시야마 주한 일본대사에게 아래 요지의 구상서를 전달함.

- 김동운 문제는 동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확증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 아울러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이유로 면직처리
- 8·15 박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및 공범 등 철저한 수사와 조총련 등 반한단체 활동규제를 요청
  - 일본 측은 철저한 수사, 테러방지에 최선의 노력 방침 천명

6. 미야자와 외상 기자회견(1975.7.22.)

- 한국 측으로부터 수교한 구상서 내용 설명
- 김동조 장관과 니시야마 대사와의 면담내용 소개
  - 김대중의 출국자유를 포함하여 일반인으로서의 자유보장, 김동운 문제 등 수사결과 추후 통보

7. 미야자와 외상 방한(1975.7.23.~24.)

- 김대중 사건(김동운 문제 포함)관련한 모든 문제 해결

8. 일본 언론은 1975.8.9. 김대중 사건 2주년 집회 관련 보도함.

- 김대중의 원상회복,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공동주최 집회 개최
  - 양국 정상에게 보내는 항의성명과 김대중 사건 진상규명운동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75-0035

국외안장(일본 및 미국) 애국선열 유해봉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B-24 / 4 / 1-31

1. 외무부는 1974.7.27.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에게 순국의사 유해봉환 협조 훈령을 지시함.

- 이민휘 한인회장이 원호처에 구한말 순국한 장인환 의사 유해의 한국 국립묘지 봉환이장을 진정함.
  - 원호처는 동 사항이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이를 추진
- 지역 교포사회에서 장인환 의사의 유해봉환 합의 사실여부, 본국송환 시 대미 절충 등 공관의 편의제공 가능여부 조사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9.5. 교포사회에서 장인환 의사의 유해송환 만장일치 결의를 보고함.

2. 원호처는 국외안장 선열 유해봉환을 위해 1975.3.17.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함.

- 광복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조국독립을 위해 몸 바친 선열 중 해외에서 숨진 선열의 유해를 8.15.까지 봉환하여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하기로 결정
- 아래 봉환대상자의 봉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장인환 등 미국안장 4명, 서상한 일본안장 1명 등 총 5명

3. 원호처는 상기 5명중 봉환 및 안장이 가능한 2명(미국 장인환, 일본 서상한)의 애국선열 유골봉환을 위해 1975.5.30. 외무부에 유골봉환 및 유족 입국수속 등 협조 요청함.

4. 원호처는 국외선열 유해봉환을 위해 1975.7.24.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함.

- 광복 3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선열 유골봉환사업이 예정대로 진행,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됨.
  - 유족 및 수행자에게 왕복항공권 송부 및 봉환경비 지불의사 전달
- 국외선열 입국 및 안장행사
  - 봉환행사는 8.4. 김포공항 도착과 동시 영접행사를 거행하고, 국립묘지 영현 봉안소에 임시 안치
  - 8.8. 국가행사로서 순국선열 합동 안장식을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서 거행

국제회의 참가대표 신임장 발급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4 / 6 / 1-28

외무부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한국 정부대표에 대해 외무부장관 명의의 신임장을 발급함.

1. 유엔주석(朱錫)회의(1975.5.20.~6.20., 제네바)
   - 최호중 주제네바 공사(수석대표) 등 4명

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최빈개도국에 관한 정부간 그룹회의(1975.7.7.~18., 제네바)
   - 최호중 주제네바 공사(수석대표) 등 2명

3. 제73차 IWC(국제소맥이사회) 총회 및 71년 국제소맥협정 추가 연장 의정서 발효 확인을 위한 정부간 회의(1975.6.30.~7.1., 런던), 제74차 IWC 총회(1975.7.1.~3.)
   - 윤처원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외 1명
   - 회의참가 목적
     - 1974/75년도 현안문제 처리를 위한 제73차 총회, 71년도 국제소맥협정 추가연장 의정서의 발효여부를 확정할 정부간 회의, 동 연장 의정서하의 첫 회의가 될 제74차 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서 토의되는 전반 상황을 관찰하는 동시에 관련정보 수집
   - 참고사항
     - 한국은 71년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 비준서를 1975.6.18. 미국 정부에 기탁

4. 제75차 IWC 총회(1975.12.1.~5., 런던)
   - 윤처원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외 1명

75-0037

주일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문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기획예산
MF번호	2010-85 / 7 / 1-72

1. 주일본대사는 1973.1.22. 청사 및 관저 신축개요를 외무부에 보고함.

- 신축위치: 동경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소재
- 신축규모: 약 2,560평 대지에 청사 및 관저 신축
  - 청사: 지하 2층 지상 7층 6,500㎡, 관저는 지하 1층 지상 2층 1,620㎡ 규모 콘크리트건물
- 공사기간: 착공후 청사 약 18개월, 관저는 약 15개월
- 신축경비: 5,983,700달러(착수금은 1백만 달러)

2. 사업추진 경과

- 주일본대사는 1973.9.25. 외무부에 청사 및 관저 신축공사 설계 승인요청 및 10.18. 은행대부 승인신청(대출이자 연 9.125%, 5년 이내 상환)
- 외무부는 1974.10.1. 주일본대사에게 청사 및 관저신축은 정부 재정형편 및 국내 외화사정상 1974년에는 불가능하니 신축에 관한 제반계획은 별도지시 때까지 중단을 지시함.
-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에게 1975.9.30. 건축 소요면적의 타당성 및 건축비 소요규모의 타당성 보고 지시
- 주일본대사는 1975.10.9. 외무부에 대사관 인원 및 일인당 평균면적, 건설공사비 평당 단가, 자금계획 및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보고

3. 외무부는 1975.10.15. 주일본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계획을 수립함.

- 현황
  - 청사대지: 2,500평, 건물: 435평 목조 2층건물
  - 관저대지: 1,020평, 건물: 207평 목조 2층건물
  - 총 인원은 171명(주재관 및 고용원 포함)
- 청사 신축계획
  - 신축규모: 대지 2,500평, 연건평 2,528평, 지하 2층 지상 7층의 철근콘크리트건물
  - 건축비: 총 27억 엔(약 900만 달러)
  - 자금 확보방안: 착수금 100만 달러(1976년 예산에 반영), 은행융자 800만 달러, 완공후 현 대사관저를 매각하여 일부 상환하고 잔여 530만 달러는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예산에 반영
- 건의
  - 청사 신축 착수금은 1976년 예산에 반영조치, 잔여 800만 달러는 1976년도 국고채무부담 행위로 융자충당

4. 외무부는 1975.12.3. 주일본대사에게 조속한 시일내 착공준비를 지시함.

- 총 건설비 5,536,300달러는 물가상승률 감안, 국회에서 사정책정

주월남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계획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P-17 / 3 / 1-174

1. 주월남대사는 1974.7.4. 청사 및 관저 신축상황을 보고함.

- 대지
  - 청사 건물은 현 위치에 신축, 관저는 대사관 인접대지(900평) 구입 교섭중
- 건물규모
  - 청사: 지하1층 지상3층 약 465평
  - 관저: 지하1층 지상2층 약 200평
- 공사계획
  - 1974.8.31. 설계완료, 9월 착공, 1975.8월 완공계획
- 공사비: 약 88만 달러

2. 외무부는 1974.7.26. 주월남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정부재정 및 외무부 예산 형편상 현 대지(약 1,600평)에 청사 및 관저신축 결정
  - 신축공사는 예산형편상 원칙적으로 1975년부터 착공, 단 1974년 착공하되 1975년 공사비 지불이 가능하면 공사 착공시기 재검토

3. 주월남대사는 1974.12.30. 외무부에 공관 신축설계를 확정하고 승인을 요청함.

- 설계도에 대한 외무부 승인 시 현공관 건물철거 등 조기 착공예정

4. 외무부는 1975.2.28. 주월남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예산형편상 고아원 대지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 부지에 공관 신축추진
- 지명 경쟁 입찰을 위한 관계서류 송부

5. 주월남대사는 월남 정세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대사관 신축중지 및 보류를 건의함.

6. 외무부는 1975.3.31. 동 공관의 건의에 따라 당분간 공관 및 관저 신축계획 중지를 승인함.

75-0039

주영국대사관 청사 매입

생산연도	1973-1977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P-17 / 4 / 1-157

1. 주영국대사는 1973.7.6. 외무부에 현 공관청사 임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청사의 이전 또는 구입 필요성을 건의

- 외무부는 월 임차료(2천 파운드)로 건물 임차고려를 지시

2. 주영국대사는 1973.12.29. 외무부에 청사건물 구입요청

- 구입비: 약 220만 달러

3. 외무부는 1973.12.31. 청사 구입계약 체결승인

- 건물구입 계약금(67만 6천 달러) 송금조치 및 잔여분(172만 8천 달러)은 외환은행 또는 외국은행 차입계획

4. 주영국대사는 1974.1.11. 청사건물 구입을 추진하였으나 동 건물의 소유권 분쟁으로 구입 가계약이 해약됨을 외무부에 보고

5. 주영국대사는 1974.9.12. 외무부에 청사건물 구입 추진을 재건의

- 본부책정 예산(220만 달러)으로는 소유권 이전된 건물구득이 곤란
- 신규 청사구입 건의
  - 위치 및 규모: 하이드파크 남쪽 Kensington 구역, 9,475㎡ 지하1층 지상4층 단독건물(대지 400평, 건평 600평)
  - 구입가: 150만 파운드이나 절충가능

6. 외무부는 1974.12.17. 청사건물 구입승인

- 구입비: 283만 달러, 계약금은 기송금(67만 6천 달러) 분으로 충당
- 잔여분(215만 4천 달러)은 외환은행 런던지점에 자금 융자신청 지시
  - 10년 융자기간, 원리금은 1975년부터 매년 균등 분할상환

7. 주영국대사는 1975.1.29. 외무부에 청사건물 구입계약 체결보고

- 구매가격: 98만 파운드(235만 2천 달러)
  - 계약금 98,000파운드 지불, 잔금은 소유권 이전과 건물 명도시 지불

8. 주영국대사는 1975.4.16. 외무부에 청사건물 구입계약 완결, 인수보고

- 소유권 이전서류 수령 및 잔금지불 완료

주네덜란드대사관 관저 매입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기획예산담당관실
MF번호	P-17 / 5 / 1-103

1973~75년 중 네덜란드 관저매입 관련 내용임.

1. 매입 경위

- 1973.12.6. 주네덜란드대사, 관저매입 건의
- 1973.12.13. 외무부는 예산형편상 불가능하다고 회신
- 1974.4.17. 주네덜란드대사, 관저매입 재건의
- 1974.4.29. 외무부는 관저매입을 위한 기본방침 훈령
  - 관저구입은 공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75년도 구입계획에 포함(1974.7.31. 임차만료 기간을 1975.3월까지 1차 연장교섭)
- 1974.6~7월 주네덜란드대사, 교섭경과 보고

2. 주네덜란드대사는 1974.8.23. 아래와 같이 관저구입 가계약체결 승인을 요청함.

- 규모: 대지 1만 평, 건평 200평
- 구입가격: 약 62만 달러
- 계약 불이행시 구입가격의 10% 벌과금 부과 등

3. 외무부는 1974.9.12. 관저구입 가계약을 아래 조건으로 승인함.

- 건물 구입비는 최대 62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정부 외화사정상 1975.3월 구입 착수금으로 구입비 30% 송금
  - 잔액은 주재국 은행에서 융자로 충당

4. 주네덜란드대사는 1974.12.30. 관저구입 가계약체결을 외무부에 보고함.

- 계약금액(약 68만 5천 달러)의 30% 지불 및 잔액은 외환은행 융자조치 요청

5. 외무부는 1975.3.10. 주네덜란드대사에게 관저 구입비 일부송금 및 잔액 융자신청

- 구입가격 684,650달러 중 구입비 30%(332,930달러) 송금
- 부족액 361,720달러 외환은행 런던지점 융자신청: 1976년부터 10년간 매년 균등상환

6. 주네덜란드대사는 1975.5.16. 매매계약서, 소유권 증명서 등 관저구입 관계서류를 외무부에 송부함.

- 네덜란드는 토지와 가옥증명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관저구입에 외무성 허가 불필요

75-0041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회관 건립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교민1/기획예산담당관/동북아1
MF번호	P-6-22 / 4 / 1-77

1. 외무부는 1975.1.20. 재일거류민단 중앙회관 신축 관련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신축 규모
  - 총11층(대지 361평, 연건평 2,352평, 지하3층 지상9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 위치: 동경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 공사비: 11억8천만 엔
- 공사기간: 1974.10.15.~76.2.25.
- 시공청: 주일본대사관
- 건축업자: 대성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1974.10.15.~76.2.25.
- 공사계약: 수의계약
- 공사비 조달방법
  - 현 적립액: 2억 엔
  - 부족액 조달: 9억 8천만 엔 모금
- 기타: 회관 건축후 국가에 기증
- 신축 경위
  - 재일 거류민단 중앙본부는 재일동포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을 위해 건설위원회 조직
  - 모금으로 동경 중심가 신축대지(234평) 확보, 동 대지를 대사관 부근 대지(361평)와 교환
  - 동 대지에 주일본대사관 별관 건물로 허가를 받아 공사 착수
  - 외무부는 1974.12.30. 회관 건설계약 승인, 12.31. 착공
- 문제점
  - 민단본부는 모금 부족액 3억 엔의 정부지원을 요청했으나, 주일본대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 민단본부의 자체 모금으로 건축을 완공하겠다고 보고함.

2. 주일본대사는 1975.11.28. 대통령의 휘필을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1976.2월 준공예정인 동 민단 중앙회관 8층 회의실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 게시를 요망

3. 외무부는 1976.2.16. 주일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휘호를 송부함.

- 민단 중앙본부가 제시한 휘호 문안대신 국시현양(國是顯揚) 문안 송부

4. 재일 거류민단 중앙본부는 1976.3.30. 민단 중앙회관 준공식을 거행함.

주인도대사관 구건물 임차계약 관련 소송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법무담당관
MF번호	2008-87 / 7 / 1-113

1. 주인도대사관은 1975.11.17. 인도 외무성이 11.11.자 공한을 통해 주뉴델리총영사관으로 임차한 건물에 대해 계약위반을 이유로 건물주가 54만5천 루피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지침 회시 등을 건의함.

2. 상기 사건 관련, 1975.12.5. 외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인도 대법원 상고 통보서 요지
  - Mrs. Singh(구 건물주)이 1972.11.10. 상고 제기
  - 최운상 총영사에서 박찬현 대사로 피고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관계서류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인수
- 건물주 주장
  - 1968.2.19. 계약에 의해 1968.1.1.부터 5년간 월 8,000루피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1968.11.30.까지 월 5,500루피만 지불하고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545,000루피를 청구(임차미납차액 425,000루피, 명예훼손 100,000루피, 수리비 20,000루피)
- 최운상 주모로코대사(당시 주뉴델리총영사) 등 당시 근무직원 설명 요지
  - 월 8,000루피 지불을 문서로 합의한 바 없으며 임차계약서에는 월 5,500루피 지불로 명시
  - 월 8,000루피는 공관수리를 조건으로 완료 후 지불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인바, 건물주가 수리 약속을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원 임차계약기간 만기도달로 계약서 규정에 따라 사전통고 후 이전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 아님.
- 건의사항
  - 본건 관련 한국 측은 잘못이 없고, 동 소송이 이미 1, 2심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또한 한국 측의 건물이전 후에도 건물주는 제3자에게 임차하여 손해를 보지 않은 점을 감안, 최 대사의 건의에 따라 주인도대사관으로 하여금 외교특권 및 면제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도록 조치

3. 외무부는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써 공관의 외교특권 및 면제와 기타 이유로 이미 인도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서도 자동 기각되도록 할 방침임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면서,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오히려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한국 측은 응소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위각서를 작성, 주재국 외무성에 제출할 것을 지시함.

4. 주인도대사관은 1975.12.11. 현지 Sareen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경위각서 제출보다는 외무성 공한에 대한 회신공한을 발송한 뒤 추후 비공식적으로 외무성 관계자에게 한국 측의 정당한 입장에 관한 경위를 상세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043

대사파견 - 아프가니스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서남아
MF번호	B-24 / 7 / 1-65

1. 외무부는 1974.12.28. 주인도대사에게 주아프가니스탄대사 내정을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최명준 주벤쿠버총영사를 주아프가니스탄 상주 특명전권대사로 내정
  -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결과보고

2.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1975.4.1. 최명준 주아프가니스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한국 정부는 1975.4.30. 최명준 신임 주아프가니스탄대사의 신임장과 전임 박찬현 대사의 소환장을 발급함.

4. 최명준 대사는 1975.5.31. Mohammed Daoub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 요지로 환담함.

- Daoub 대통령 언급요지
  -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극찬하였으며, 견직 및 방직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추진을 희망
  -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전통적인 엄정중립주의를 언급하며, 우리에게는 적이 없으며 모든 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최 대사 언급요지
  - 한국의 외교정책도 모든 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려는 문호개방정책이며 정치체제를 초월하여 설사 공산국가라도 한국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한국과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은 경제, 문화, 체육분야 뿐 아니라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엄정중립주의 정책을 극찬하고 도의적인 견지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하여 준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남북한 문제를 엄정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다루어주기를 요청
  - Daoub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구두 요청한바, 동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방한을 수락하고 방문시기는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함.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인사/동남아1
MF번호	B-24 / 8 / 1-16

1. 외무부는 1975.2.15. 김순교 대사를 주방글라데시대사(초대 상주)로 발령함.

2. 김순교 대사는 1975.3.14. 다카에 부임하여 3.20. Hossain 방글라데시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Hossain 외상은 최근 양국관계가 상호교류를 통해 착실히 발전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대사의 재직중 무역, 경협 등에서 더욱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기를 희망

3. 김순교 대사는 1975.3.25. 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Rahman 대통령은 면담 시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건강과 한국 국민의 번영을 기원하며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며, 방글라데시로서도 경제발전 계획상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

75-0045

대사파견 - 미얀마(구 버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의전1
MF번호	2007-3 / 6 / 1-35

1. 외무부는 1975.8.13. 주미얀마(구 버마)대사대리에게 안진생 전 주콜롬비아대사를 주미얀마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결과보고를 지시함.

2. 미얀마 정부는 1975.9.12. 안진생 주미얀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5.9.18. 안진생 주미얀마대사를 발령함.

4. 안진생 대사는 1975.10.27. 네윈 미얀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안 대사는 10.15. 미얀마에 부임하여 10.25. Phone 미얀마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동 외상의 방한 문제에 관해 협의
     - 동 외상은 현재 일정에 비추어 11월 중순까지는 국내사정으로 실현이 어려우나 연내 방한을 꼭 실현하고자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며, 11월 중순 이후 편리한 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통보해 주기로 약속

대사파견 - 볼리비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24 / 10 / 1-108

1. 외무부는 1973.3.15. 주볼리비아대사에 전상진 주페루대사를 겸임대사로 내정함.

2. 전상진 대사는 1973.8.3. H. Banzer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볼리비아 정부가 1975.4.11. 김인권 주볼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외무부는 1975.4.30. 김인권 주볼리비아대사를 발령함.

5. 김인권 대사는 신임장 제정차 1975.5.17.~23. 볼리비아에 출장함.

- 김 대사는 5.19. Guzman 볼리비아 외상을 예방함.
  - 동 대사는 볼리비아가 과거 유엔 기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 및 공동제안국이 되어준 데 대해 사의 표명
  - Guzman 장관은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볼리비아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앞으로도 대한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최근 북한사절단 방문 허가와 관련, 어떠한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이를 통해 북한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
- 김 대사는 5.21. H. Banzer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를 전달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다짐

75-0047

대사파견 - 차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4 / 11 / 1-43

1. 외무부는 1975.4.4. 차드 겸임대사를 주프랑스대사에서 주카메룬대사로 변경하는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이에 따라 4.24. 윤영교 주카메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함.

2. 외무부는 1975.10.21. 윤영교 주카메룬대사를 차드 겸임대사로 발령함.

3. 윤영교 대사는 겸임국 신임장 제정을 위하여 1975.12.28.~30. 차드에 출장함.

● 윤 대사는 12.29. Gamougue 차드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환담함.
- Gamougue 외상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 시 차드가 대한국 태도를 후퇴시킨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며, 당시 프랑스 주둔군 철수주장으로 부득이하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
- 아울러 바쁜 일정으로 조속 방한 실현이 어려우며, 대통령의 사전재가가 필요하다고 언급

● 윤 대사는 12.29. Malloum 차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의 외상 방한 허가요청에 대해 Malloum 대통령은 언질은 주지 않고, 외상 방한 이전에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을 희망
- 차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요청

대사파견 - 칠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24 / 12 / 1-32

1. 외무부는 1975.5.30. 장재용 주칠레대사를 발령함.

2. 장재용 대사는 1975.8.7. 산티아고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Libra 칠레 의전 부국장의 영접을 받음.

3. 장재용 대사는 1975.8.18. P. Carvajal 칠레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장재용 대사는 1975.8.27. A. Pinochet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한·칠레 간 우호협력 관계에 관해 환담함.

75-0049

대사파견 - 콜롬비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중남미
MF번호	2007-3 / 17 / 1-43

1. 외무부는 1974.12.31.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옥만호 전 공군참모총장을 신임 주콜롬비아대사로 임명 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결과보고를 지시함.

2. 콜롬비아 정부는 1975.2.21. 옥만호 주콜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5.2.25. 옥만호 주콜롬비아대사를 발령하고 동일자로 전임 안진생 대사를 소환함.

4. 옥만호 대사는 1975.4.3. Lopez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Lopez 대통령은 신임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을 바란다고 언급
   - 옥 대사는 6.25 당시 생사(生死)를 같이한 전우의 나라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위대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대사파견 - 카나다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미주
MF번호	B-24 / 14 / 1-5

1. 외무부는 1974.1.19. 김영주 주캐나다대사를 발령함.

2. 김영주 대사는 1974.2.19. 캐나다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5-0051

대사파견 - 코스타리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24 / 15 / 1-24

1. 외무부는 1975.10.7. 장상문 주멕시코대사를 주코스타리카 겸임대사로 발령함.

2. 장상문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75.12.3. D. Oduber 코스타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장상문 대사 언급요지
  - 부임소감과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말씀 전달
  - 유엔에서 코스타리카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관계 심화를 위해 제조업 분야에서 합작형식의 경제협력안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현안인 외상의 방한 문제도 의견 타진함.
- D. Oduber 대통령 언급요지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문안말씀 전달
  - 그간 한국이 이룩한 현저한 발전을 주지하고 있으며, 동 대사가 제안한 합작형식의 경제협력 방안에 전적인 찬의를 표명
  - 코스타리카는 유엔에서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하고 이는 양국이 공동의 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외상의 방한 문제는 바쁜 일정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회답

대사파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1/총무
MF번호	2007-3 / 23 / 1-47

1. 외무부는 1974.6.18. 임명진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를 임명함.

2. 임명진 대사는 1974.6.27. Mobutu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외무부는 1975.5.28. 동부아프리카국가의 겸임국 재조정을 위한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변경 목적
  - 동부아프리카에서의 대북한 우위 확보
  - 주요 공관의 기지화를 통한 장기적 안목의 한국 거점 확보
- 조정 필요성
  - 주케냐대사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 편중된 겸임국을 분담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 도모
  - 상주공관 증설에 따른 경비절약
- 조정 내용
  - 보츠와나 및 스와질랜드 겸임국을 케냐에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변경 등

4. 주케냐대사는 1975.7.29. 스와질랜드 외무성으로부터 임명진 대사의 주스와질랜드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한다는 공한을 접수함.

5. 외무부는 1975.10.7. 임명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를 주스와질랜드 겸임대사로 발령함.

- 임명진 대사는 외무부 의전장으로 전임하게 되어 실제로는 신임장 미제출

75-0053

대사파견 - 덴마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구주2
MF번호	2007-3 / 26 / 1-23

1. 덴마크 정부는 1975.1.24. 홍성욱 주덴마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2.5. 홍성욱 주덴마크대사를 발령함.

3. 홍성욱 대사는 1975.3.19. 덴마크에 부임하여 3.20. 덴마크 외무성 의전국장을 방문하고 주재국 관례에 따라 신임장 사본을 제정함.
   - 홍 대사는 신임장 제정과 관련, 4.10.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의 덴마크 공식 방문에 앞서 주재국 외무성의 특별배려로 4.4.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임.

4. 홍성욱 대사는 1975.4.4. Margrethe 2세 덴마크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에티오피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07-4 / 2 / 1-39

1. 외무부는 1975.7.1. 박준하 주에티오피아대사를 발령함.

2. 박준하 대사는 1975.8.28. G. Kibret 에티오피아 외무장관대리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박준하 대사는 1975.8.30. 에티오피아 임시군사행정위원회 의장인 Teferi 장군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박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 대사로서 신임장 제정이 영광
  - 박정희 대통령의 Teferi 의장에 대한 문안인사 및 한국 정부의 에티오피아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사 전달
  - 의장의 리더십하에 아프리카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 증진, 위대한 국가건설에의 찬사 표명
  - 한·에티오피아 양국간의 친밀 우호적 관계가 공식·비공식 분야에서 진행중임.
- Teferi 의장의 답사
  - 신임대사 환영 및 전임대사의 양국간 이해와 협력증진 활동 등 노고치하
  - 임시군사행정위는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높이 평가
  - 에티오피아는 새로운 경제·사회건설이라는 근본적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음.
  - 박 대사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

75-0055

대사파견 - 핀란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2/인사
MF번호	2007-4 / 4 / 1-20

1. 외무부는 1975.8.8.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주핀란드대사로 발령함.

2. 윤경도 대사는 1975.8.28. 핀란드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윤 대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대해 주는 핀란드 정부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언급
- 동 외상은 윤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 양국관계 특히 통상관계 긴밀화에 노력할 것을 바라며 유엔 등에서의 한국문제는 자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에 입각하여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

3. 윤경도 대사는 1975.8.29. Kekkonen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대통령과 환담함.

- 윤 대사는 의례적인 인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앞으로 양국간의 관계 긴밀화를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피력하는 동시에 최근 핀란드의 구주안보회담 주재를 통한 긴장완화의 주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시
- Kekkonen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를 묻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목재 및 철강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시,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희망

대사파견 - 독일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총무
MF번호	2007-4 / 9 / 1-38

1. 외무부는 1975.7.15. 이창희 주멕시코대사를 주독일대사로 발령함.

2. 이창희 대사는 1975.9.17. Scheel 독일연방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 요지로 환담함.

- 한반도 및 아주정세
  - 이 대사는 최근 베트남 사태 이후 아주정세와 특히 북한의 전쟁준비 및 침략상과 위장평화 선전 등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설명
  - Scheel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국제정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오판할 우려가 있음을 시인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유지가 아주지역 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 매우 긴요한 것으로 여긴다고 언급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 이 대사는 현실타개와 세계 긴장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직접대화의 길을 틈으로써 평화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남북한 불가침협정과 유엔 동시가입 제의를 상기
  - Scheel 대통령은 한국의 어려운 내외정세하에 박 대통령의 남북회담 제창에 깊은 이해와 지지를 표명
- 한국의 경제부흥
  - Scheel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군비경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건설에 역점을 두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의욕을 포기시키고자 하는데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양국간 자본 및 기술협력면에서 보다 밀접한 협력체제가 이루어 질 것을 희망
- 독일의 동방정책
  - Scheel 대통령은 동방정책의 배경이 된 정치철학과 외교교섭 경위와 현황을 소상히 설명
  - 이 대사는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이 독일의 동방정책과 같은 뜻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국민의 염원인 민주평화통일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 유엔에서의 지지
  - 이 대사는 독일이 1973년 유엔가입 이래 한국을 위한 서방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서 적극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Scheel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국의 모든 평화통일정책 지지를 확인
  - 이 대사는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추진과 관련 6.23정신을 설명, Scheel 대통령은 한국의 조치에 찬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이룩한 국력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경하의 뜻 표시

75-0057

대사파견 - 그레나다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B-24 / 20 / 1-89

1. 외무부는 1974.8.1. Gairy 그레나다 수상과 김용식 특사 간에 한·그레나다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겸임대사를 파견하기로 양해함.

- 외무부는 그레나다를 주베네수엘라대사의 겸임공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

2. 외무부는 1974.12.4.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를 주그레나다 겸임대사로 발령함.

- 외무부는 1975.1.30. 신임장 제정차 그레나다를 방문하는 송광정 대사에게 1975년도 유엔에서의 지지 확보 등을 위한 훈령을 지시함.
- 송광정 대사는 De Gale 그레나다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Gairy 그레나다 수상과 면담함.
- Gairy 수상 발언요지
  - 현재 경제적으로 심한 고난을 받고 있어 각국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원조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 1974년 유엔총회 참석 시 외무부장관과 은행보증문제에 관해 협의한 바 있음.
  - 농업기계화를 위한 소형, 수동 농기계가 필요하고 양파·양배추 등 소채 재배에 대한 한국의 기술원조를 요망, 한국의 의약품 원조 제의에 감사
  - 그레나다 정부는 한국의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1975년 유엔총회에서 그레나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음.

대사파견 - 과테말라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24 / 21 / 1-13

1. 외무부는 1975.8월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장상문 주멕시코대사의 주과테말라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접수함.

2. 장상문 대사는 1975.10.23.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5-0059

대사파견 - 제네바

생산연도	1959-1976
생 산 과	의전1/인사계
MF번호	B-24 / 22 / 1-22

1. 외무부는 1959.6.26. Hammarskjold 유엔사무총장에게 주제네바대표부를 설치하고 김용식 특명전권공사를 동 대표부 공관장으로 임명하는데 대한 필요한 조치와 가능한 협력을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함.

- Falthey 주제네바 유엔사무소 부소장은 7.17. 유엔사무총장의 동의 공한을 외무부로 송부함.
- 외무부는 7.22. 김용식 공사를 초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로 임명

2. 외무부는 1960.11.18. Hammarskjold 사무총장에게 11.7. 김성용 공사를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로 임명했다는 공한을 발송함.

- 김성용 공사는 1961.1.5. Falthey 주제네바 유엔사무소 부소장을 예방하고 동 사무총장에 대한 신임장을 전달함.
- 주제네바 유엔사무소는 1.6. 상기 신임장을 접수하였으며, 활동에 대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는 회신을 정일형 외무부장관 앞으로 발송

3. 외무부는 1974.12.22. Waldheim 유엔사무총장에게 황호을 대사 후임으로 문덕주 대사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로 임명했다는 공한을 발송함.

- 문 대사는 1975.1.31. 주제네바 유엔사무소장에게 신임장 제출
- 주제네바 유엔사무소는 1.31. 상기 신임장을 무위 접수하였으며, 활동에 대한 제반편의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는 회신을 김동조 외무부장관 앞으로 발송

대사파견 - 이탈리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2007-4 / 20 / 1-39

1. 이탈리아 정부는 1974.11.12. 조상호 주이탈리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4.12.16. 조상호 주이탈리아대사를 발령함.

3. 조상호 대사는 1975.1.27. 이탈리아에 부임하여 2.4. Gionanni Leone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대통령과 환담함.
   - Leone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건안과 한국 및 한국민의 번영을 축원하고, 양국이 공동이념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러한 유대관계가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함.
   - 조 대사는 Leone 대통령의 건안과 이탈리아 및 이탈리아 국민의 번영을 축원하는 박 대통령의 안부인사를 전달하고, 한국전 당시의 지원과 유엔에서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의 재임 중 양국간의 우의와 상호신뢰 및 공동이념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75-0061

대사파견 - 요르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중동
MF번호	2007-4 / 25 / 1-17

1. 요르단 정부는 1975.6.24. 소상영 주요르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7.13. 소상영 주요르단대사를 발령함.

3. 소상영 대사는 1975.8.12. 요르단 외무담당국무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제정에 관해 협의함.

4. 소상영 대사는 1975.8.20. 요르단 국왕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Hassan 황태자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소 대사의 언급요지
  - 요르단 국왕의 건강과 요르단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축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인사를 국왕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함.
  - 요르단이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하고 특히 비동맹 회의에서의 한국입장 지지를 확약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금번 상주대사관 설치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양국간 협조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 Hassan 황태자의 언급요지
  - 요르단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과의 우호관계는 계속 증진될 것임을 확신하며, 장차 요르단 국왕의 아시아 순방기회가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대사파견 - 케냐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의전1
MF번호	2007-4 / 26 / 1-183

1. 케냐 정부는 1974.3.18. 연하구 주케냐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연하구 대사는 5.23. Kenyatta 케냐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Kenyatta 대통령은 양국간 우호증진과 대사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함.

2. 레소토 정부는 1974.6.14. 연하구 주케냐대사의 주레소토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연하구 대사는 6.24. 레소토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스와질랜드 정부는 1974.6.21. 연하구 주케냐대사의 주스와질랜드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연하구 대사는 7.2. 스와질랜드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말라위 정부는 1974.5.21. 연하구 주케냐대사의 주말라위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연하구 대사는 7.31. 말라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보츠와나 정부는 1974.7.23. 연하구 주케냐대사의 주보츠와나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연하구 대사는 8.20. 보츠와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 모리셔스 정부는 1974.8.14. 연하구 주케냐대사의 주모리셔스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연하구 대사는 1975.9.19. 모리셔스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5-0063

대사파견 - 라오스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동남아
MF번호	2007-5 / 2 / 1-67

1. 한국 정부는 1974.7.25. 라오스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2. 라오스 정부는 1974.8.30. 천병규 주태국대사의 주라오스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9.13. 천병규 주태국대사를 주라오스대사에 겸임 발령함.

4. 천병규 대사는 1974.10.20. 라오스에 도착하여 Phoumi Vongvichit 라오스 외상과 제1부수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5. 천병규 대사는 1974.10.22. 라오스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의전1
MF번호	2007-5 / 3 / 1-35

1.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5.1.31. 전상진 주말레이지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2.15. 전상진 주말레이지아대사를 발령함.

3. 전상진 대사는 1975.2.23. 말레이시아에 부임하여 2.25. Agong 말레이지아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전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촉진하는 것이 자신의 희망이며 사명임.
     - 아시아 대륙에 있는 양국은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사회적 안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 Agong 국왕의 답사 요지
     -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긴밀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 양국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하려는 공통의 열망을 가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와 관리들은 대사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할 것임.

75-0065

대사파견 - 모리셔스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B-24 / 25 / 1-27

1. 모리셔스 정부는 1975.8.14. 연하구 주케냐대사의 주모리셔스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8.30. 연하구 주케냐대사를 주모리셔스대사에 겸임 발령함.
   - 모리셔스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하고 9.19. Sir Baman Osman 모리셔스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연하구 대사는 1975.9.19.~22. 모리셔스 수상, 국회의장, 재무장관, 문교장관, 상공장관, 외무차관 등을 접촉함.

대사파견 - 몰디브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의전/서남아
MF번호	B-24 / 26 / 1-10

1. 몰디브 정부는 1968.6.15. 한표욱 주태국대사의 주몰디브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한표욱 대사는 1969.6.30. 몰디브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한표욱 대사는 1971년 주유엔대사로 전임된 후에도 주유엔대표부가 몰디브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주몰디브 겸임대사 역할을 계속 수행함.

4. 몰디브 정부는 1975.1.19. 조효원 주콜롬보통상대표부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5. 외무부는 1975.1.29. 조효원 주콜롬보통상대표부대사를 주몰디브대사에 겸임 발령함.

6. 조효원 대사는 1975.4.10. 몰디브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5-0067

대사파견 - 멕시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중미담당관
MF번호	B-24 / 27 / 1-5

1. 멕시코 정부는 1975.8.21. 장상문 주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8.30. 장상문 주멕시코대사를 발령함.

3. 장상문 대사는 1975.10.2. 멕시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니카라과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중미담당관
MF번호	B-24 / 28 / 1-8

1. 니카라과 정부는 1975.9월 장상문 주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10.7. 장상문 주멕시코대사를 주니카라과대사에 겸임 발령함.

- Cesar Alegria 니카라과 외상서리(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장상문 대사는 1975.11.24. 오후 Anastasio Somoza Debyle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장 대사는 니카라과가 극심한 지진 참변에도 불구하고 빠른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경의와 축의를 전한다고 말하자, 니카라과 대통령은 지난 2년동안 니카라과 국민들이 복구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것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다고 언급함.

75-0069

대사파견 - 파나마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의전1/중남미
MF번호	2007-5 / 16 / 1-45

1. 파나마 정부는 1974.12.12. 황호을 주파나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4.12.16. 황호을 주파나마대사를 발령함.

3. 황호을 대사는 1975.2.3. 파나마에 부임하여 3.12. Lakas 파나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대통령과 환담함.
   - 황 대사는 파나마 국민의 근면과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양국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함.
   - 신임장 제정식에는 파나마 외무장관 및 차관, 총무법제장관, 문교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의전장 등이 참석함.

대사파견 - 포르투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구주
MF번호	2007-5 / 18 / 1-34

1. 포르투갈 정부는 1975.7.22. 윤호근 주포르투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8.8. 윤호근 주포르투갈대사를 발령함.

3. 윤호근 대사는 1975.8.19. Ruivo 포르투갈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윤호근 대사는 1975.8.20. Gomes 포르투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대통령과 환담함.
   - Gomes 대통령은 포르투갈이 모든 국가와의 평화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모든 분쟁은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이 있으며 포르투갈이 어업국가인 만큼 한국과의 어업분야 협력이 요망된다고 언급함.
   - 윤 대사는 재임기간중 양국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차분히 검토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75-0071

대사파견 - 페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중남미
MF번호	B-0024 2007-5 / 21 / 1-80

1. 페루 정부는 1975.2.17. 김인권 주페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김인권 대사는 1975.3.11. 페루에 부임함.

3. 김인권 대사는 1975.4.3. 페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볼리비아 정부는 1975.4.11. 김인권 주페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5. 김인권 대사는 1975.5.19. Guzman 볼리비아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동 외상과 환담함.
   - 김 대사는 볼리비아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하여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Guzman 외상의 방한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함.
   - Guzman 외상은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볼리비아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확인하고, 최근 주유엔 북한대사의 볼리비아 방문허가는 북한 측의 끈질긴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이며 하등의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해명함.

6. 김인권 대사는 1975.5.21. Banzer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생산연도	1973-75
생 산 과	총무/중동
MF번호	2007-5 / 22 / 1-124

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73.5월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외무부는 5.26.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발령함.
- 윤경도 대사는 7.17.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국왕과 환담함.
  -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희망함.
  - 한국에 사우디아라비아 상주공관 설치를 희망함.
  - 양국간 경제적 유대강화는 중요하며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함.
  -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우호국가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무라고 생각함.
  - 공산주의는 경계해야 하며, 남북대화에서 한국의 고충을 이해함.

2. 요르단 정부는 1973.9.5.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외무부는 9.5.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주요르단대사에 겸임 발령함.
- 윤경도 대사는 1974.1.30. Hassan 요르단 황태자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오만 정부는 1974.10.9.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외무부는 11.1.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주오만대사에 겸임 발령함.
- 윤경도 대사는 11.13. 오만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카타르 정부는 1974.10.7.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외무부는 10.19.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주카타르대사에 겸임 발령함.
- 윤경도 대사는 1975.6.1. 카타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5-0073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인사계
MF번호	B-24 / 32 / 1-10

1975년 중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의 주사우디아라비아 일본대사에 대한 발언(6월)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교환된 공문이 수록됨.

1. 중앙정보부의 외무부에 대한 공문(1975.8.14.)

2. 외무부의 중앙정보부에 대한 공문(1975.8.20.)

대사파견 - 스웨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구주2
MF번호	2007-5 / 27 / 1-25

1. 스웨덴 정부는 1975.7.4. 김세원 주스웨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8.19. 김세원 주스웨덴대사를 발령함.

3. 김세원 대사는 1975.9.5. 스웨덴에 부임, 9.8. Sigurdsen 스웨덴 외무장관대리(대외원조처장관)을 방문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외교단장인 주스웨덴 쿠바대사를 예방함.

4. 김세원 대사는 1975.9.9. Carl Gustaf 스웨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국왕과 환담함.
   - Gustaf 국왕은 스웨덴에 대한 한국의 직물류 수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스웨덴은 자국 직물 생산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임을 언급함.

75-0075

대사파견 - 싱가포르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1
MF번호	2007-5 / 28 / 1-67

1. 한국은 1975.8.8. 싱가포르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2. 싱가포르 정부는 1975.10.1.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5.10.20. 이규성 주싱가포르대사를 발령함.

4. 이규성 대사는 1975.11.6. 싱가포르에 부임하여 11.15. Sheares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대통령과 환담함.

- 이 대사는 최근 양국관계가 각 분야에서 밀접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해 준데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 Sheares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한국이 매우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해주길 바람.
  - 태국, 말레이시아 사태는 모두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며, 육영수 여사의 희생도 그들의 만행임.
  - 한·미국 양국간의 정기적 협의는 매우 좋은 일임.
  -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음.

대사파견 - 시에라리온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1/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07-5 / 29 / 1-35

1. 시에라리온 정부는 1974.11.18. 이춘성 주시에라리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4.12.16. 이춘성 대사를 주시에라리온대사에 발령함.

3. 이춘성 대사는 1975.2.28. 시에라리온에 부임하여 5.22. Stevens 시에라리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대통령과 환담함.
   - 이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 말씀을 Stevens 대통령에게 전하고,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조할 것을 강조함.
   - Stevens 대통령은 신임장 접수가 늦어진데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안부 말씀을 전해 달라고 당부함.

75-0077

대사파견 - 세네갈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총무
MF번호	2007-5 / 32 / 1-57

1. 세네갈 정부는 1974.7.8. 지성구 주세네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4.7.16. 지성구 주세네갈대사를 발령함.

3. 지성구 대사는 1974.7.23. 세네갈에 부임하여 9.26. Senghor 세네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4. 감비아 정부는 1975.1.14. 지성구 주세네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5. 외무부는 1975.1.29. 지성구 주세네갈대사를 주감비아대사에 겸임 발령함.

6. 지성구 대사는 1975.3.5. Jawara 감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지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Jawara 대통령에게 전하고, 양국간의 돈독한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함.
   - Jawara 대통령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감비아와 가장 친근한 우방국이며,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함.

대사파견 - 스와질란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B-24 / 36 / 1-19

1. 외무부는 1975.5월 주케냐대사가 겸임하고 있는 스와질랜드를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가 겸임하도록 조정함.

2. 스와질랜드 정부는 1975.7.29. 임명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5.10.7. 임명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를 주스와질랜드대사에 겸임 발령함.

4. 스와질랜드 정부가 1976.1월 임명진 대사의 신임장 제정일로 1976.1.27. 또는 2월을 제의하였으나, 임 대사가 외무부 의전장으로 전임됨에 따라 신임장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75-0079

대사파견 - 스위스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구주1
MF번호	2007-6 / 3 / 1-30

1. 스위스 정부는 1975.1.27. 박근 주스위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2.5. 박근 주스위스대사를 발령함.

3. 박근 대사는 1975.3.14. 스위스에 부임하여 3.25. Graber 스위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박 대사는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화, 자주 및 번영을 위한 공통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간의 행복하고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Graber 대통령은 답사에서 대사의 활동이 양국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스위스 정부는 대사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서부아프리카
MF번호	B-24 / 38 / 1-10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5.6.19. 겸임국인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를 방문, Zerbo 부르키나파소 외상을 면담하여 한국 정부가 와가두구 주재 신임 한국대사대리로 김태지 공사를 임명한 것은 최근 양국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지 공관을 보강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신임 대사대리가 도착하면 바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외무부장관의 소개장(Lettres de Cabinet)을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함.

2. 김태지 주부르키나파소 대사대리는 1975.6.30. 아래 내용의 Zerbo 외상 앞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소개장을 지참하고 부르키나파소에 부임함.
   - 와가두구 주재 신임 한국대사대리로 임명된 김태지 공사를 각하께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함.
   - 양국간에 현존하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김태지 공사의 부임을 계기로 이러한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리라 확신함.
   - 신임 대사대리가 그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기를 요청함.

75-0081

대사파견 - 우루과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
MF번호	2007-6 / 20 / 1-25

1. 우루과이 정부는 1975.1.14. 오윤경 주우루과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5.2.5. 오윤경 주우루과이대사를 발령함.

3. 오윤경 대사는 1975.3.12. 우루과이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3.20.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장관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에 관심 표시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좌경세력과 투쟁하는 우루과이로서는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의 사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
   - 동 대통령은 한국과의 긴밀한 우호관계 신장 희망

대사부임 - 호주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의전/서남아/대양주담당관
MF번호	B-24 / 40 / 1-60

1. 호주 정부는 1974.11.14. J. Holdich를 주한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4.11.29. Holdich 주한 호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M. Bourchier 주한 호주대사는 1975.1.28. 이임하였으며,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동 대사 환송 만찬을 주최함.

4. Holdich 대사는 1975.3.3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제정사를 행함.
   - 한국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부임함에 영광
   - 휘트람 호주 수상은 한국과의 현존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관계가 계속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
   - 한·호주 간 긴밀한 우호관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5. 박정희 대통령은 Holdich 대사의 제정사에 대한 답사를 행함.
   - 대사 부임을 환영
   -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평화와 자유의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동목표하에 계속 증진되어 왔음을 인식
   - 대사의 중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협조할 것을 다짐
   - 엘리자베스 여왕의 건강과 호주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

6. Holdich 대사는 1976.4.28. 이임함.

75-0083

대사부임 - 방글라데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1/서남아담당관
MF번호	B-24 / 41 / 1-74

1. 1974.9.14. 주인도대사(방글라데시 겸임)는 Ahmed 방글라데시 외무차관 면담시 한국에 상주 또는 비상주 사절 파견을 요청함.

- 동 차관은 출장 중인 Hoddain 방글라데시 외상 귀임시 협의, 결정하겠다는 반응
- 1974.11.1~5. 주인도대사의 방글라데시 출장시 Ahmed 차관은 주한 방글라데시대사로 하여금 주일본 방글라데시대사를 겸임하도록 결정함을 언급

2. 한국 정부는 1974.12.19. Abdul Chaudhury 초대 주한 방글라데시대사(동경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Abdul Chaudhury 대사는 1975.4.28. 김동조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4.29.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외무부 정무차관보, 코트라사장, 서울시장, 대법원장 예방 및 금성사, 현대조선소, 석유공사공장, 태광산업 시찰

대사부임 - 미얀마(구 버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서남아담당관
MF번호	B-24 / 42 / 1-72

1. 미얀마(구 버마) 정부는 1975.7.10. U Thaung Lwin 대사를 주한 미얀마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5.7.25. U Thaung Lwin 초대 주한 미얀마대사(동경 상주)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U Thaung Lwin 대사는 1975.10.25.~11.1. 방한하여 10.30.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서울시장, 상공회의소회장, 코트라사장 예방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림방직 등 시찰

75-0085

대사부임 - 볼리비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1/남미
MF번호	B-6-26 / 16 / 1-57

1. Yoshida Armando 주한 볼리비아대사가 1975.3월 이임함.

2. 한국 정부는 1975.9.25. Walter Montenegro 주한 볼리비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Montenegro 대사는 1976.6.15.~20. 방한하여 6.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주요 인사 예방 및 새마을운동 브리핑 청취

대사부임 - 대만(구 중국)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동북아2
MF번호	B-24 / 43 / 1-27

1. Loh Ying The 주한 대만대사가 1975.2월 이임인사차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을 예방하고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을 가짐.
   -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2.5.)

2. 한국 정부는 1975.1.16. Chu Fu Sung 주한 대만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hu Fu Sung 대사는 1975.3.12. 부임하여 5.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5-0087

대사부임 - 칠레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1/남미담당관
MF번호	B-24 / 44 / 1-67

1. 칠레 정부가 1974.12.11. Fontaine Leopoldo를 주한 칠레대사(초대 상주)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Fontaine Leopoldo 1974.12.22. 주한 칠레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Fontaine Leopoldo 대사는 1975.4.25. 부임하여 5.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중앙아프리카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1/서부아프리카
MF번호	B-24 / 45 / 1-136

1. Kombot-Naguemon 초대 주한 중앙아프리카대사(동경 상주)가 1974.10월 이임차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차관(장관 대리)등을 예방함.

2. 한국 정부는 1975.10.2. M'Bary-Daba 주한 중앙아프리카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M'Bary-Daba 대사는 1975.10.7.~14. 방한하여 10.1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 양국간의 민간교류 필요성 및 새마을운동과 중앙아프리카의 '보코사 작전'과의 유사성 및 협력 문제 논의
   - 국무총리, 외무부차관 예방

75-0089

대사부임 - 프랑스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의전1/구주1
MF번호	B-24 / 46 / 1-73

1. Pierre Landy 주한 프랑스대사가 1975.11월 이임함.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무부장관대리, 서울시장 등 예방

2. 한국 정부는 1975.9.25. Remy Teissier Du Cros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Remy Teissier Du Cros 대사는 1975.12.15.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12.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국무총리 서리, 대법원장, 외무부차관 등 예방

대사부임 - 가봉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1/서부아프리카
MF번호	B-24 / 47 / 1-162

1. Sidoine Mougnon 주한 가봉대사(동경 상주)
   - 1974.5.31. 아그레망 부여
   - 1975.4.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2. Valentin Obame 주한 가봉대사(초대 상주)
   - 1975.6.3. 아그레망 부여
   - 1975.6.25.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6.26.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75-0091

대사부임 - 독일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서구1
MF번호	B-24 / 48 / 1-37

1. 한국 정부는 1974.11.26. Karl Leuteritz 주한 독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Karl Leuteritz 대사는 1975.3.2. 부임하여 3.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일본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4 / 49 / 1-107

1. 우시로쿠 도라오 주한 일본대사가 1975.2월 이임함.
   - 2.5. 외무부장관 주최 송별 만찬

2. 한국 정부는 1975.1.16. 니시야마 아키라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니시야마 아키라 대사는 1975.3.10. 부임하여, 3.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5-0093

대사부임 - 라오스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B-25 / 1 / 1-84

1. 라오스 정부가 1974.9.11. Tiao Khamhing를 초대 주한 라오스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4.9.26. Tiao Khamhing cheon 초대 주한 라오스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Tiao Khamhing 대사는 1975.6.24.~30. 방한하여, 6.26.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신임장 사본 제출(6.25.)
   - 국무총리 예방 및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대사부임 - 모로코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의전담당관
MF번호	B-25 / 2 / 1-82

1. 한국 정부는 1974.7.10. Abdeslam Tadlaoui 주한 모로코대사(동경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Abdeslam Tadlaoui 대사는 1975.1.28.~2.1. 방한하여, 1.30.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함.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신임장 사본 제출(1.29.)
   - 국무총리, 총무처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75-0095

대사부임 - 네덜란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서구1
MF번호	B-25 / 3 / 1-24

Carl Barkman 주한 네덜란드대사(동경 상주)는 1975.12.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페루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의전1/중남미
MF번호	B-25 / 4 / 1-106

1. Jose Mariategui 주한 페루대사(동경 상주)가 1974.4월 이임차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상공부장관을 예방하고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을 가짐.
   -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수교훈장(광화장) 서훈(4.4.)

2. 페루 정부는 1974.4.3. Jorge Velando 주일본 페루대사를 주한 페루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74.5.1. Jorge Velando 주한 페루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Jorge Velando 대사가 부임하여 1974.5.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75-0097

대사부임 - 스웨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구주
MF번호	B-25 / 5 / 1-54

1. Gunnar Heckscher 주한 스웨덴대사(동경 상주)가 1975.7.7. 이임함.

2. Bengt Odevall 주한 스웨덴대사(동경 상주)가 1975.10.7.~16. 방한하여 10.1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1975.5.21. 아그레망 부여
   - 1975.10.8. 외무부장관대리에게 신임장 사본 제출

대사부임 - 스위스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담당관/서구1
MF번호	B-25 / 6 / 1-36

1. Giovanni Bucher 주한 스위스대사(동경 상주)가 1974.12월 이임함.
   - 이임 인사차 방한하여 대통령, 외무부장관 등 예방
   - 주포르투갈대사로 전임

2. Pieme Cuenoud 주한 스위스대사(동경 상주)가 1975.5.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함.
   - 1974.11.6. 아그레망 부여

75-0099

대사부임 - 영국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의전/구주1
MF번호	B-25 / 7 / 1-48

1. Jeffrey Petersen 주한 영국대사가 1974.12.17. 이임함.

2. William Staniley Bates 신임 주한 영국대사는 1975.2.20. 부임하여 3.6.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1974.12.6. 아그레망 부여
   - 1975.1.7. 임명 발표

영사위임장 발급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5 / 8 / 1-146

공관 근무자에 대한 정부의 영사위임장과 주재국의 영사인가장 발급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장관 명의 영사위임장 발급

- 1975.1월 손상하 주인도네시아(대) 부영사 외 1인
- 1975.1월 황원영 주오사카(총) 부총영사 외 4인
- 1975.2월 정신 주자메이카(대) 부영사 외 4인
- 1975.3월 우종 주오사카(총) 영사 외 1인
- 1975.5월 허인성 주삿포로(총) 영사 외 11인
- 1975.10월 성재록 주네덜란드(대) 영사 외 3인
- 1975.11월 박광수 주오사카(총) 부영사 외 1인
- 1975.12월 김한두 주라스팔마스(총) 부영사 외 1인

2. 대통령 명의 영사위임장 발급

- 1975.2월 홍무부 주스웨덴(대) 영사 외 4인
- 1975.4월 최봉름 주세네갈(대) 영사 외 2인
- 1975.5월 배병승 주영국(대) 영사 외 5인
- 1975.8월 문희철 주상파울로(총) 총영사 외 2인
- 1975.8월 John Williams 주산후안(명총) 명예총영사 외 6인

3. 영사인가장 발급

- 1975.4월 배진 주코스타리카(대) 부영사
- 1975.10월 이강용 주홍콩(총) 부영사

75-0101

영사부임 - 칠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특전담당관
MF번호	B-25 / 9 / 1-6

1. 주한 칠레대사관은 1975.5.27.자 공한으로 Renan Sanchez Vargas 주한 칠레대사관 1등서기관을 영사로 임명하면서 영사인가를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6.28.자로 영사인가됨을 회신함.

영사부임 - 영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특전담당관
MF번호	B-25 / 10 / 1-8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5.1.2.자 공한으로 Ian Christopher Sloane가 영사로 임명됨을 통보하고 외무부에 영사인가장을 발급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1.24.자로 대통령 명의 영사인가장이 발급됨을 회신함.

75-0103

Cottle Crosby, Robert 주서울 페루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B-25 / 12 / 1-22

1. 주한 페루대사대리(동경 상주)는 1974.10.16.자 공한으로 페루 출신 영국인 Robert Cottle Crosby를 주서울 명예영사로 임명함을 통보하고 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 동인은 한국탄산주식회사 사장

2. 외무부는 1975.4월 인가장이 발급됨을 회신함.

왕상은 주부산 영국 명예영사 접수

생산연도	1969-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B-25 / 13 / 1-23

1969~75년 중 왕상은 주부산 영국 명예부영사 임명 및 인가, 동 명예영사 승격 임명 및 동의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69.5.13.자 공한으로 왕상은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주부산 영국 명예부영사로 임명하고 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 외무부는 6.11. 명예부영사 임명에 동의하며 인가장 발급을 회신

2.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5.4.4.자 공한으로 왕상은 명예부영사(협성해운 대표)를 명예영사로 승격 결정함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동 명예영사 관할구역은 경상남북도 및 전라남도임.**
   - 외무부는 4.15. 임명에 동의함을 통보

75-0105

장상태 주서울 코트디부아르 명예총영사 승인, 1975.3.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B-25 / 11 / 1-10

1975년 중 장상태 주서울 코트디부아르 명예총영사 임명 및 승인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동경 상주)는 1975.2.27.자 공한으로 한병기 주서울 명예총영사가 주칠레대사로 발령됨에 따라 후임으로 장상태 동국제강 사장을 선임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2. 외무부는 명예총영사 임명 동의 서한을 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전달하도록 1975.3.26. 주일본 대사관에 지시함.

무관접수 - 요르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중동
MF번호	B-25 / 14 / 1-12

1. 주사우디 요르단대사관은 1975.1.6.자 공한으로 Mansour Al Kaid 대령(대만(구 자유중국) 상주)의 한국 겸임 무관 발령을 위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2. 주사우디대사관은 1975.3.8.자 공한으로 Al Kaid 대령의 한국 겸임 무관 임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주사우디 요르단대사관에 통보함.

3. Al Kaid 주한 요르단대사관 무관은 1975.7.5.~13. 부임 인사차 방한,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 등을 예방함.

75-0107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2/조약
MF번호	B-25 / 15 / 1-18

1975년 중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

1. 의전실은 1975.4.2. 양자협정에 의거, 주재하는 전문가, 강사 및 기타 인사들에 대한 자동차세, 유류세 면세에 대해 방교국에 문의함.

● 방교국은 제협정 및 관계 국내법을 검토, 자동차세 및 유류세 면제는 불가한 것으로 해석함을 회보
- 협정에 의하면 차량의 수입 관세 및 공공투과금의 면제에 국한
- 국내법에 의하면 자동차 면세대상은 주한외교기관 및 국제연합기관 등 주한 외국원조기관용 차량에 한정되어 있고 유류세 면제는 대사관, 영사관 및 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제한

2. 의전실은 1975.5.29. 전문가 사업수행을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파견된 전문가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를 방교국에 문의함.

● 방교국은 WHO(세계보건기구) 및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특권면제협정, 석유류세법 등 국내법령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
- WHO 및 UNDP는 협정상의 규정 및 석유류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포함한 직원용 차량에 대한 석유류세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으로 해석
- WHO 및 UNDP 전문가는 1951년 유엔협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석유류세법에 의거한 면세권 향유자의 범위에는 불포함

3. 의전실은 1975.9.15. 주한 UNDP 기관이 한국내 유엔기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한국인 고용원의 병역 및 기타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한데 대한 의견을 문의함.

● 방교국은 "유엔 전문기구의 특권와 면제에 관한 협약"에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며 동 협약이 적용될 경우에도 적용대상은 전문가를 포함한 기구의 직원으로 제한되므로 현지 채용된 한국인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

한국의 외교특권 및 면제제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25 / 16 / 1-26

1975년 중 주칠레대사관이 문의한 주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내용임.

1. 주칠레대사관은 칠레의 상호주의에 대응하고자 주한 외교관의 차량구입 및 판매, 골프클럽 가입 시 특혜에 관해 1975.4.16. 외무부에 문의함.

2.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 특혜범위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주한 외교관 차량수입 및 처분에 대한 상세내용은 주한 외국공관 회람에 첨부
   - 외교관 골프클럽 가입(한국 골프협회 회신)
     - 주한 대사, 공사, 참사관 및 총영사에 대해 회원 대우의 특혜를 부여

75-0109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1/의전2
MF번호	B-25 / 17 / 1-12

1975년 중 한·독일 기술협력협정에 의한 주한 독일 기술자의 특권과 면제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5.6.13.자 공한으로 한·독일 기술협력협정에 의거, 실시 중인 부산시 종합하수도 건설계획이 1976.12월까지 연기됨에 따라 독일인 기술자의 체한기간이 1976년말까지 연장되므로 양국간 기술협력협정에 따른 수출입 제세금의 면제를 요청함.

2. 상기 관련 의전실은 방교국의 의견을 문의한바, 방교국은 1975.8.1.자 회신에서 한·독일 기술협력협정 제5조 4항에 따라 독일인 전문가의 수출입 제세금 면제는 동 전문가의 체한기간에 관계없이 부임 후 9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체한기간 연장으로 인한 면세기간 추가 부여는 곤란하다고 회보함.

3. 한·독일 기술원조협정에 관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외무부는 1975.12.16. 아래와 같이 회신함.
   - 1961.3.18. 체결된 한·독일 기술원조협정 제10항의 "독일 정부가 공급한 물품"에서 '물품'의 범주에 일반적 사용 관례 및 협정의 문맥에 비추어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동 협정 제5항(바)에 명시된 자동차(혼합차) 1대는 "독일 정부가 공급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특권부여 문제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25 / 18 / 1-35

1972~76년 중 콜롬보플랜의 기술협력으로 초청된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특권부여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5.8.1.자 공한으로 일본어 교사 2인을 일본재단 부담으로 한국에 파견하는 계획을 통보하면서 도착 후 6개월내 자동차, 가구 구입 등에 대한 면세를 요청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함.
   - 재무부: 정부가 초청하는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전문가가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개인 물품은 관세법에 의해 면세

3. 외무부는 1975.11.12.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 공한에서 한국 관계당국은 일본어 교사 2인의 초청을 콜롬보플랜에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를 일본내 담당기관에 송부하여 주기를 요청함.

4.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어 교사에 대한 자동차 면세수입을 요청한 데 대해 외무부내 관련국은 상이한 견해를 표명함.
   - 방교국: 조약 또는 국내법상 근거가 없음.
   - 국제경제국: 콜롬보플랜에 의한 전문가로서 면세수입 허가대상이며 콜롬보플랜의 여타 전문가와 동일 대우를 부여

5. 외무부는 양자협정 내지 유사한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특권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며, 자동차 수입면세에 관해서는 기술협력을 위해 정부 초청으로 체류하므로 관세법에 의해 주무부처와 관세청이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과기처에 1976.2.16. 송부함.

75-0111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정, 1975.11.3.

생산연도	1969-1975
생 산 과	특전
MF번호	B-25 / 19 / 1-32

1.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정령(외무부령 제94호)이 1975.11.3.자로 공포·시행됨.

2. 주요 개정내용

- 신분증의 종류를 3종으로 함.
- 신분증 발급대상 범위를 구체화함.
- 신분증 발급대상에 명예영사를 포함함.
- 신분증 발급절차 규정을 신설함.
- 외교관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용어를 통일함.

부산 일본인 학교 설립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의전2
MF번호	B-25 / 20 / 1-20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5.9.16. 부산지역 거주 일본인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부산에 일본인 학교(초등부와 중등부)를 설립하고자 외무부에 승인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10.16.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아래 조건하에 동 일본인 학교 설립을 승인한다고 통보함.

- 동 일본인 학교는 한국 교육법상의 설립인가를 득한 정규학교가 아님.
- 동 학교에의 입학은 일본인 자녀에 국한됨.
- 부산 일본인회는 동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국의 관계법규 및 관계당국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75-0113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소련 민간학술 문화·산업분야 접촉시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81 / 2 / 1-9

1.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김준엽교수)는 1974년 외무부로부터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국(구 중공), 소련 및 동구권과 민간학술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시도함.

2. 김준엽 소장은 1974.11~12월 미주, 구주, 홍콩 및 일본 등지에서 중국·소련 측과 접촉활동을 전개한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중국 측은 인적·물적 교류와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면서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일률적으로 보임.
- 소련 측으로부터는 접촉 시도한 5개 경로 중 3개 경로(주미국 소련대사관, 소련과학원, 소련정보관계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3. 소련과학원이 주최한 일본·소련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자유'지 편집장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아래와 같음.

- 소련 공산당 중앙위는 아직 대한국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한국 태도가 유동적이고 신중하다고 함.
- 소련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는 문제와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북한을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함.
- 소련 측은 비공개적으로는 북한의 정책과 현실을 비웃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함.

한국의 대팔레스타인(PLO) 정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1 / 5 / 1-51

1. 1975.2.4.~3.1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Conference on the Representation of States in their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회의에서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대표가 취한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아랍국가들이 PLO에게 정식 옵서버자격을 부여하자는 결의안을 동 회의 총회에 제출한바, 한국 대표는 절차문제(동 결의안의 총회 상정문제)에는 찬성하고, 본질문제(옵서버자격 부여문제)에는 기권함.

2. 외무부 아중동국은 제7차 WMO(세계기상기구) 총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PLO에 대한 옵서버자격 부여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아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방교국장에게 1975.4월 제시함.
   - 절차문제에는 찬성하고 본질문제에는 기권함.

3. Ericson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는 1975.8.1. 외무부 정무차관보에게 PLO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함.
   - 미국 정부는 한국이 PLO가 팔레스타인 인민의 유일한 대표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를 희망함. 이러한 공식성명은 중동평화의 전망을 높이게 하는 것보다는 흐리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임.

4. PLO의 한국 태권도사범 초청 및 태권도훈련생 한국 파견 의향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75.8.19. 한국 정부의 정책상 PLO에 대한 태권도사범 파견 및 PLO 훈련생 접수는 불가하다고 주쿠웨이트 공사에게 통보함.

75-0115

대미국 의회 활동 계획 및 보고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1 / 6 / 1-215

1. 외무부는 1974.8.30. 아래 목차의 '미국 의회 및 언론의 최근 동향과 대책'을 작성하여 주미국 대사관에 송부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활동할 것을 지시함.

- 미국 의회 및 언론의 최근 동향
  - 의회, 언론, 종교계, 학계
- 대책 및 활동계획
  - 목표, 대의회 활동, 대언론 활동, 기타

2. 외무부는 1975.1월 주미국대사관에 '1975년도 대미국 의회 활동목표와 계획'을 송부하고 이에 따라 대미국 의회 활동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 미국 신의회의 구성 및 특징
- 신의회의 대한국 태도별 구성 분포
- 대의회 활동 목표와 방침
- 대의회 활동 세부계획
  - 방한 초청, 유공의원에 대한 서훈 및 학위 수여
  - 한·미국 양정부 및 의회 간에 매개 역할을 담당할 기구 설립 검토, 대사관의 대의회 활동체제 강화, 대사관의 의회관계 고문 고용
  - 재미교포 유지 및 학생 활용, 명예영사 활용, 한국 진출 미국업계 활용
  -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 사교행사의 적극 시행

3. 외무부 미주국은 1975.5.12. 1975년도 대미 의회 활동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작성함.

- 최근 미국 의회의 대한국 태도 평가
- 대의회 활동계획 시행실적
- 대의회 활동계획 보완 및 건의사항

1975년도 대미국 외교시책 및 업무 요강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담당관
MF번호	C-81 / 7 / 1-88

1. 외무부는 1975.2월 수립한 1975년도 대미국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을 주미국대사관 및 미국지역 주재 총영사관에 송부함.

2. 1975년도 대미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 주요목차

- 미국정세 전망
  - 국내정세, 대외정책, 대한정책, 대북한 태도
- 1975년도 대미 외교목표와 방침
  - 목표, 방침
- 1975년도 주요 업무
  - 미국 정부와의 접촉 강화, 대미 안보외교 강화
  - 대언론 활동 강화, 홍보활동 강화, 대학계 활동 강화, 유력인사 방한 추진, 교포 선도 강화
  - 경제협력 추진, 수출진흥 활동, 기타(어업협력, 농업, 과학협력, 교육활동)
- 부록
  - 한·미국 간 주요 민간단체 현황
  - 한국의 대미수출 비중, 한국의 대미수입 비중
  - 외자도입 총괄표, 국별 외자확정 현황, 국·연도별 외국인 투자인가 현황

75-0117

1975년도 대아프리카·중동 외교방안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81 / 8 / 1-27

외무부(구아국)가 1975.1월 수립한 1975년도 대아프리카·중동 외교방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음.

1. 아·중동지역 정세 분석

- 서언
  - 대중동 외교 호전, 대아프리카 외교 부진
- 중동지역(22개국)
- 아프리카지역(36개국)

2. 1975년도 외교시책

- 기본목표
  - 대북한 우위 확보
- 기본방침
  - 선택적 중점외교, 친아랍 정책의 적극 추진, 미수교국에 대한 적극 침투, 현지공관 중심의 외교 수행, 실적별 중점 지원
- 외교방안
  - 외교망의 정비 강화, 미수교국 및 신생독립국과의 수교, 방문외교 효율화, 초청외교 강화, 의료 및 기타 원조, 친한세력 육성 지원

3. 선택적 중점외교 대상국

- 중동지역
  - 모로코, 쿠웨이트 등 12개국
- 아프리카지역
  - 중앙아프리카, 차드 등 22개국

한국의 대구주 외교정책(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총괄
MF번호	C-6-94 / 5 / 1-27

1. 외무부 구주국이 1975.6월 작성한 국회 답변자료임.

- 구주 외교 강화 방안, 6·23선언 이후의 대공산권 관계개선 및 전망, 북한의 대외지불 불이행 문제, 구주 안보협력회의의 현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2. 외무부 구주국은 1975년도 외무부 활동에 대해 국내 홍보를 위한 구주국 소관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정보문화국에 송부함.

- EC(구주공동체) 국가와의 협력관계 확대
  - EC 개황, 한국의 대EC 관계, 한국의 대EC 회원국과의 관계(프랑스, 독일, 영국 등)
- 구주국가와의 제반 협력관계 증진
  - 대통령 특사 파견, 방문 외교, 초청 외교
- 대동구권 관계 개선
  - 공산권 개최 국제행사 적극 참가, 공산권 인사의 방한 초청 추진

75-0119

중국(구 중공)의 국제회의에서의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국제기구
MF번호	C-81 / 9 / 1-100

1. 중국(구 중공)이 북한의 참가 없이 한국 단독으로 참가하는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대표권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음에 따라, 외무부는 이를 지양하기 위해 1975.4.4.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함.

- 관계회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단은 우방국대표를 통하여 한국대표권 문제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중국대표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중국 측이 동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함.
- 우방국대표들에게 상기 내용 요청 시에는 기 준비된 자료를 전달하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한국 측 입장과 북한의 태도 등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함.
- 우방국대표들의 중국 접촉은 가급적 북경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외교부 간부급 인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

2. 중국은 1975.11월 제1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한국의 대표권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제12차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에서는 회람을 통하여 한국의 대표권을 부인한바, 이는 FAO 총회 이전까지의 국제회의에서 중국대표의 발언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한국이 단독으로 참석한 국제회의(1975년)
  - 3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및 4월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시 중국은 한국의 대표권을 부인하기보다는 한국의 대표권이 북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나머지 국제회의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남북대표가 동시에 참가한 국제회의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3. 미 국무부는 1975.11월 한국의 대표권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태도를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중국은 국제회의에서 지난 1년간 북한에 대한 지지를 점차 강화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ESCAP, WMO, FAO 등에서의 발언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연설에서도 분명히 나타남.
- 중국의 반한적인 발언 증가는 한국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인 태도가 전반적으로 강경해지고 있음을 반영함. 이는 이미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축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열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일본의 대한 정책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1 / 10 / 1-21

1. 1975.1.24. 미야자와 일본 외상의 중의원 본회의 외교연설 중 한국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한·일본 간 과거 1년 남짓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나, 일본으로서는 한·일본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변함이 없음.
- 일본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요망하며 한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임.

2. 미키 일본 수상은 1975.1.29.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국 관계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함.

- 한국문제에 관한 미키 내각의 자세는 사토 내각과 다름이 없음. 한반도의 평화가 일본의 안전과 관계없다고 할 수 없음.
- 북한승인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아 아직 성숙되지 않음. 북한승인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경제적·문화적 교류는 증가할 것임.

3. 나카에 일본 외무성 아주국 차장은 이상건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1975.2.3.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키 수상이 행한 북한과의 정치인 교류에 관한 발언은 현실을 앞지른 것이며, 외무성 당국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다고 말함.

75-0121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관계 발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국담당관
MF번호	C-81 / 11 / 1-61

1. 맨스필드 방중 보고서(1974.12.9.~30.)에 의하면 중국(구 중공) 지도부는 주한미군의 지체없는 철수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 후에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침략이 있다면 다른 방향에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함.

2. 등소평 중국 부수상의 프랑스 공식 방문과 관련, 주프랑스대사관 직원이 1975.5.23. 주재국 외무부 관계관으로부터 탐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등소평 부수상은 시라크 프랑스 수상과의 면담 시 아시아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문제를 잠깐 언급하였는데 한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 동 부수상은 현재나 미래에 있어 중국군의 해외파견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약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함.

3. Chiao Kuan Hua 중국 외상은 1975.9.26. 제30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서방 측이 제출한 결의안은 유엔사 해체 구실 하에 미군의 한국 주둔을 합법화하고 두 개의 한국을 영구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함.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1 / 12 / 1-42

1. 미야자와 일본 외상은 1975.5.2. 호주 캔버라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기구설립 구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동 기구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소련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호주의 구상에는 문제가 있음.
- 동 기구 설립의 주도권은 아세안 국가에 맡기는 것이 적당함.

2.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1975.5.2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7개국 주재 일본대사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제까지와 다른 사태가 된 것은 확실하나 앞으로 어떤 정책을 전개할지는 미지수이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음.
- 하노이 정부의 일본에 대한 반응이 좋고 인도차이나에서 일본 정부의 지위가 커진 점 등을 고려, 하노이 정부에 대한 경제원조 교섭을 조속히 타결하고 하노이에 일본대사관이 곧 설치되도록 할 것임.

3. 미키 일본 수상은 1975.7.11. 각의 후 미야자와 외상, 도고 차관을 포함한 외무성 간부를 초치, 아시아·태평양 선진국 간 협력기구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힘.

- 요미우리신문은 7.25. 수상 관저에서 회동한 미야자와 외상 등 외무성 고위간부와 대장성·통산성·농림성 국장 등이 미키 수상의 구상에 반대의 뜻을 표하였다고 보도함.

75-0123

미국의 대외 정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1 / 13 / 1-261

1.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5.4.10. 미국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함.

● 연설 요지
- 월남 문제: 722백만 달러의 추가 군사원조가 긴급히 요망되며, 우선 250백만 달러의 경제·인도적 원조를 제안
- 캄보디아: 코이 대통령서리로부터 추가원조 요청 서한을 접수하였으나, 때가 늦었을지도 모름.
- 아시아 우방국: 인도차이나 사태로 미국의 우방, 특히 아시아의 우방국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바, 이 문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하여야 함.
- 서구, 개발도상국, 중동, 소련, 중국과의 관계 등에 관해 언급함.

● 연설 경위
- 월남 및 캄보디아의 붕괴위기에 따라 미국 의회 및 여론이 미국의 외교정책 재평가를 요구
- 미국의 월남 포기 가능성에 충격을 받은 서구, 동남아 및 일본 등 우방국들이 미국 공약 유효성을 의심
- 미국이 월남을 비롯한 세계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평가
- 월맹의 공세를 둔화시키고 단기간이라도 월남이 더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최후의 노력으로 평가
- 월남에서의 군사적 후퇴를 시인하면서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권위와 영향력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이 반영됨.
- 동 연설로 행정부와 의회 간 의견대립이 해소될 전망은 거의 없음.

2. 포드 대통령은 1975.12.7. 하와이대학 동서센타 연설을 통하여 '새 태평양 독트린'을 선언함.

● 연설 요지
- 미국의 힘은 태평양지역의 세력균형에 필수적
- 미국·일본 간의 협력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지주
-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상하이 공동성명에 의거하여 실천
- 동남아시아의 안정과 안전보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사

● 평가
- 동 선언은 종래의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이나 변경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다시 종합 정리하였다는 데 의의
- 동 독트린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세력관계가 균형되어 있다고 보고, 현상유지 및 안정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선언

한·오스트리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81 / 14 / 1-12

1975년 중 한·오스트리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5.7.1. Steiner 오스트리아 외무성 정무국장에게 제30차 유엔총회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방국들이 제출한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을 수교함.

2. Weidinger 오스트리아 외무성 유엔담당공사는 1975.10.27. 오스트리아 외무성은 한국문제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최종 태도를 결정하여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 측 안에 찬성하고 공산 측 안에는 기권하도록 주유엔 오스트리아대표부에 훈령하였다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에게 통보함.

75-0125

한·벨기에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81 / 15 / 1-5

1975년 중 한·벨기에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벨기에대사는 1975.5.14. 벨기에 수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 시 수행한 Bloock 외무성 정무총국장을 면담한바, 동 정무총국장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국문제
  - 중국 측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 자신이 받은 인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한국통일 노력에 정신적인 지원은 확약하였으나 무모한 무력도발행위는 삼가할 것을 종용한 것 같음.
- 인도차이나 사태 및 유럽
  - 중국은 인도차이나 사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동 지역이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함.
  - 중국은 유럽이 통일되어 초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되기를 희망함.

2. 주벨기에대사는 상기 면담 시 유엔에서의 한국문제를 협의한바, Bloock 총국장의 견해는 아래와 같음.

- 국제세력균형의 다극화 현상, 최근의 국제정세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공산측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바,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임.
- 따라서, 한국은 획기적인 대유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벨기에와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바람.

한·미얀마(구 버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1 / 16 / 1-17

1975년 중 한·미얀마(구 버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안진생 주미얀마대사는 1975.10.27. 네윈 주미얀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미얀마 정부 주요 각료를 예방하고 결과를 보고함.

- 주요 예방 인사
  - 문교부장관, 교통·체신부장관, 제1·2공업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부장관, 내무부장관
- 예방 결과
  - 미얀마 측은 외교관계 수립이후 양국간 우호 친선관계가 더욱 증진되었으며, 특히 통상 면에서 관계증진이 괄목할 만함을 강조함.
  - 미얀마는 유엔에서 북한지지 태도를 취한바, 한국으로서는 상호교류·통상 확대, 경제협력 증대 등을 통한 대한국 인식의 제고를 기도하고, 이를 점차 정치적 유대로까지 강화하는 것이 과제임.

75-0127

한·대만(구 중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81 / 17 / 1-34

1975년 중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만 정부는 1975.1.22.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외교관인 Chu Fu Sung(전 주브라질대사)을 주한 대만대사로 임명함.

● 역대 주한 대만대사가 주로 한국 정계 중진급 친중 인사들을 중심으로 로비활동에 치중하고 외무부 간부나 실무진과는 관계가 소원한 경향이 있었는바, 상기 대사 임명을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대한국 외교자세를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주한 대만대사는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오재희 아주국장을 면담함(면담록 수록).

● 외무부장관 면담
- 1975.4.7. 예방
- 1975.5.23. 대만 외교부장의 Message 전달

● 아주국장 면담
- 1975.3.21. 기술·과학분야 협력증대 희망 표명
- 1975.7.21. 외무부장관의 대만 방문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대만 방문 문제 협의

한·에티오피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81 / 18 / 1-18

1975년 중 한·에티오피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1975.3.11. 1975년도 외교교섭 목표를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지시함.

- 대주재국
  - 1975년도 유엔 한국문제 토의 시 에티오피아 정부의 태도 악화 방지(중립태도 유지 교섭)
  - 에티오피아 신정부 요인과의 접촉 강화 및 유력인사 방한 초청 추진
- 대OAU(아프리카단결기구)
  - OAU 본부와의 접촉 강화 및 간부진 방한 초청 추진
  - Kampala OAU 회의 대책 수립 및 건의

2.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무관은 1975.4.25. Gizaw Belaineh 주재국 총참모장 면담 시 아래 정보를 취득함.

- 총참모장 언급내용
  - 에티오피아 군사위는 한국의 6·25 참전기념물 기증 제의를 이유없이 부결
  -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 예상
  - UNC(유엔군사령부) 연락장교단 대체 후임문제에 대한 반응이 없으며, 철수 예상
  - 군사위 간부들은 남한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음.
- 평가
  - 군사위의 친공산화 분위기에 따라 북한의 대에티오피아 침투 기도가 가중되고, 에티오피아의 대한국 정책변화가 예상됨.

75-0129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81 / 19 / 1-33

1975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1975.2.21.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EC 아주국장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됨.

- 프랑스대표는 북한 측으로부터 파리 주재 북한통상대표부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요구받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함.
- 영국대표는 북한민간통상대표부 설치 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다고 보고함.
- 이탈리아대표는 북한의 통상대표부 설치 요구에 결국 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네덜란드대표는 자국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 제기한 한국문제에 관한 중국 측 반응을 보고함.

2. 1975.2.24. 개최된 EC 아주전문가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가 간략히 논의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탈리아대표는 이탈리아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간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것은 Official Status는 아니라고 설명함.
- 영국대표는 북한이 런던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외지불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함.

3.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3.20. 브뤼셀에서 Elslande 벨기에 외무장관과 면담함.

- Elslande 장관 언급요지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는 한국 측 결의안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는 한 금년에는 힘들 것임.
  - 북한승인 문제는 중국과 소련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시점에서 서방 측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반대함.

4. 1975.6.20.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EC 아주전문가회의에서 김일성의 해외방문, 북한의 대외부채 문제, 북한의 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문제 등이 간략히 논의됨.

5. 1975.7.1.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EC 유엔전문가회의에서 영국과 네덜란드대표는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 측 결의안에 EC국가들이 공동제안국이 될 것을 요청하는 발언을 함.

한·가봉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1
MF번호	C-81 / 20 / 1-12, 2010-87 / 37 / 1-4

1975년 중 한·가봉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가봉 대통령 비서실장은 1975.7.3. 주가봉대사에게 봉고 가봉 대통령이 방한 시 한국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동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어린이용 티셔츠(원숭이가 곡예중인 그림 밑에 Bongo라는 글자가 들어감)를 보고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함.

- 상공부는 8월 미도파백화점 사장에게 시판중인 상기 셔츠를 회수하고 앞으로 판매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상공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티셔츠의 그림은 원숭이가 아니고 곰과 비슷한 동물로 Disney 시리즈 봉고 편에 있는 그림이라고 함.

2. 주가봉대사는 1975.12.14. 봉고 대통령을 면담한바, 동 대통령은 1976.8월 스리랑카 비동맹 정상회담(1976.8.16.~19.) 참석 후 귀로에 약 1주일간 한국을 비공식적으로 재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동 대통령은 방한 시 이임인사차 청와대 방문자리(7.8.)에서 재방문 희망을 잠시 언급하였고, 9월에도 주가봉대사에게 상기 희망을 표명한 바 있음.

75-0131

한·독일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81 / 21 / 1-16

1975년 중 한·독일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독일대사는 1975.10월 겐셔 독일 외상과의 면담을 신청 중에 있다고 하면서 동 외상 면담 시 제시할 구체적인 토의안건을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75.11월 상기 토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주독일대사에게 통보함.

- 1975.11.10.~15. 쉘 독일 대통령을 수행하여 소련을 방문하는 기간 중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소련을 위시한 동구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한국 측 입장을 소련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반응을 타진해 주도록 요청
- 1976년도 대한국 재정차관 증액과 조건개선을 촉구
- 한국의 중소기업 및 중화학분야에 대한 독일기업의 투자증진을 촉구
- 대한국 투자를 위한 기업인 및 조사단 파견권장을 촉구

한·이스라엘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81 / 22 / 1-29

1975년 중 한·이스라엘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75.1.25.자 동경 발 AP보도에 의하면, 북한통신은 한국 측이 지난 10월 중동전쟁 시 32명의 조종사를 이스라엘에 파견하였다고 평양 주재 아랍 외교관을 인용, 보도함.**
   - 외무부는 1.27.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상기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함.

2. **문공부는 1975.2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개최 국제도서박람회(1975.4.28.~5.5.)에 한국 출판업자를 참석시키고자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아래 입장을 통보함.**
   - 현재의 중동 정세 및 정부의 대아랍 정책에 비추어 볼 때 한국대표가 굳이 동 박람회에 새로이 참가함으로써 아랍권으로부터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킬 필요는 없음.

3.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관계관은 1975.3월 주사우디대사관 공사에게 아시아축구연맹회의(1974.9월, 테헤란)에서 한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데 대해 파이잘 주사우디 국왕은 한국 측에 유감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사우디 외무부에 지시하였다고 언급함.**
   - 외무부는 상기 회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축구협회 부회장과 이사가 정부 훈령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동한데 대해 문교부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바, 축구협회 부회장은 의원면직(10월)되고 동 협회 이사는 해임(75.1월)됨.

4.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대리는 1975.6.9. 주사우디대사를 초치하여, 아래와 같이 발언함.**
   - 아랍의 숙적인 이스라엘대사관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됨.
   - 한국이 이스라엘대사관을 조속 폐쇄시키지 않는다면 한국과 사우디 관계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사우디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대해 여타 아랍국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것임.

5.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975.11.18. 주한 이스라엘대사를 면담, 이스라엘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한국문제 표결 시 한국입장을 지지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본회의 표결 시에도 계속 한국입장 지지를 당부함.**

75-0133

일본 주요인사의 한국관계 발언

생산연도	1969-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2010-9 / 6 / 1-34

1.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가 1969.7.1. 동경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본 공관장회의 참석 기회에 마련된 일본 주요 신문과의 간담회에서 행한 발언 일부가 외신을 통하여 보도된바, 한국의 신민당이 동 발언내용을 문제시함.

● 가나야마 대사의 발언내용
- 동 대사는 한국사정, 특히 박정희 대통령 3선 문제에 관하여 '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군부를 누를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 대다수가 박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함.

● 신민당의 반응
- 한국 정부는 조속히 문제의 발언을 취소시키고, 일본 정부는 동 대사를 즉각 소환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7.4. 한국 특파원으로부터 신민당 성명에 대한 논평 요구를 받고 '가나야마 대사는 한국 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내정간섭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함.

2. 오오시바 일본 사회당 의원은 1975.4.10. 이시이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 참사관을 방문, 한·일본 경제협력 반대 서한을 제출하고 대화한바, 동 의원은 경협 반대 서한 제출 사실과 함께 이시이 참사관의 '한국은 야만국' 운운 부분을 언론에 거두절미하여 유포, 동 내용이 일본신문에 보도됨.

● 일본 측 조치
- 일본 외무성은 4.10. 보도자료를 발표, 이시이 참사관의 발언이 오해를 초래한데 대해 유감 표시
- 동 참사관은 4.10. 주일본대사관에 '유도에 의한 본의 아닌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 발표

● 한국 측 조치
- 외무부는 4.11. 일본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
-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4.12.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엄중 항의

● 외무부 방침
- 이시이 참사관 본인과 일본 외무성의 해명과 같이 본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음.

일본 내 좌익단체의 주일본공관 앞 시위 및 난입 사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1 / 23 / 1-39

1. 홋카이도 대학생들을 포함한 약 100여명의 '가쿠마라' 시위대가 1975.5.8. '김종필 총리 방일반대, 전쟁반대' 등의 구호를 걸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주삿포로총영사관 정문 옆 도로를 통과함.

- 일본 경찰대원 3~4명이 주삿포로총영사관 담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일부 시위대를 제지하다 경미한 부상을 당함.
- 동 총영사관 및 민단은 총영사관 건물 및 민단 건물에 대해 사전 철저한 경비조치를 취함.

2. 와세다대학 소속 '가쿠마루파' 소속 극좌 학생단체 56명이 1975.5.30. 한·일본 각료회의 반대 명분으로 주일본대사관 방향으로 몰려왔으나 동 대사관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되어 해산함.

3. 일본 나고야시 아이치 대학생 7명(과격좌경세력 학생집단의 하나인 소위 '가쿠마루파' 소속)이 1975.6.13. 반한 및 김지하 구출구호를 외치고 공관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주나고야총영사관 내 난입을 기도함.

- 시위 학생들은 이를 저지하던 일본경찰 측과 충돌함.
  - 총영사관 유리 1개 파손
- 일본 관계당국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현(縣) 경찰부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 동 영사관을 방문, 사과의 뜻을 표하고 파손된 유리 보상 약속
  - 일본 외무성은 주일본대사관에 심심한 유감 표명
- 외무부의 조치사항
  - 아주국 심의관이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 유감의 뜻을 표시함과 아울러 여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대책 강구와 난동자들에 대한 의법처리 요청

75-0135

재한 일본인 관광객 등 안전문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1 / 24 / 1-67

1. 소위 '한·일본 양국을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음모'와 관련, 일본 정부는 1974.5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주한 일본공관, 기업 및 관계시설, 여행자를 포함한 주한 일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동 사실을 내무부 및 중앙정보부에 통보함

2. 1975.1.7. 청와대 경제 제1수석 주재로 개최된 관광진흥 당면과제 협의회는 한국 정부(중앙정보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구두요청(74.5.9.)한 바에 따라, 일본 정부가 취한 일본인의 한국여행 자숙조치 해제를 요구하기로 함.

-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1.18.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인의 한국여행 자숙' 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함.

3. 일본 정부는 1975.2.21. 한국여행 자숙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함.

- 일본 운수성은 2.21. 한국여행 자숙조치의 해제를 공표하고 각 여행사에 대하여도 이를 통달할 것임.
- 또한, 해제조치 공표 시 한국의 국내정세가 안정되어 긴급조치가 해제되었으므로 여행 자숙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제이유를 밝힐 것임.

한·일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1 / 25 / 1-31

1975년 중 한·일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5.3.5.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대리를 초치, 동일자 조간신문에 보도된 미야자와 일본 외상의 중의원 예산위원회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동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의 기본자세가 문제될 것이라고 지적함.

● 미야자와 외상은 3.4. 중의원 답변에서 8·15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시나이 사절이 진사 사절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진사 사절은 아니다' 라고 하고 시나이 메모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하여 '양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였다 함.

2. 마에다 대사대리는 1975.3.11. 노신영 차관을 면담, 일본 외무성의 회신내용을 아래 요지로 설명하고, 미야자와 외상의 발언은 시나이 사절의 성격과 메모의 구속력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한국 측이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함.

● 시나이 메모의 법적 구속력 여부

- 동 외상은 동 메모의 성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나이 특사가 일본 수상의 친서를 전했을 때 그 내용을 구두로 부연 설명, 메모하여 한국 측에 수교한 것'이라고 한바, 그 취지는 조약이나 교환공문의 형식이 아니라고 함.
- 시나이 특사의 발언은 특사로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인 만큼 이를 일본 정부가 준수한다는 데는 추호의 변함이 없음.

● 시나이 특사의 진사 사절 여부

- 일본 외상은 '엄밀히 말하여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진사를 하기 위한 특사는 아니며, 따라서 이를 진사 사절로 부르면 안된다'고 답변함.
- 그러나, 동 외상이 '일본 정부의 여권이 불법으로 발급되었고, 권총을 도난당한 것은 일본의 행정과 관계가 있는 일이므로 무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일본 정부의 행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언간에 유감의 뜻을 함축하고 있음.

75-0137

한·쿠웨이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1 / 26 / 1-32

1975년 중 한·쿠웨이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쿠웨이트 상무성은 1975.5.11.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의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통보함.

2. 노재원 주쿠웨이트 공사는 1975.6.2. 외무부장관 앞 서한으로 아래 사항을 보고·건의함.

- 비동맹그룹 가입건
  - 쿠웨이트의 지지 확보 노력 중
- 예산 지원
  - 자동차 교체를 위해 1만 달러 지원 요청
- 외교관계 수립
  - 1975.7월말까지 성사를 목표로 노력 중
- 유엔관계
  - 쿠웨이트의 기권 가능성이 보이는바, 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음.
- 쿠웨이트 올림픽위원장 겸 농구협회장(왕족) 방한
  - 1975.7월 방한 실현 시 외무부장관 면담 및 청와대 방문주선 건의
- 쿠웨이트인(Kazem) 공관 협조자에 대한 배려
  - 공관 외교활동에 중요한 협조자인 Kazem이 대한해운공사 및 대한항공 대리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외무부의 측면지원 건의

한·레소토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81 / 27 / 1-22

1973~76년 한·레소토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유엔대사는 1974.2월 유엔 주재 레소토대사가 자신과의 면담에서 레소토 수상이 한국의 특사가 언급한 원조와 관련하여 한국 측의 구체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유엔총회 대비 교섭차 백인환 특사가 1973.11월 레소토 방문 시 조나탄 레소토 수상에게 약속한 원조 건은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치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고 신임대사 부임후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주유엔대사에게 참고로 알려줌.

2. 주케냐대사는 겸임국 레소토 출장 중 1975.8.16. 조나탄 수상에게 한국의 원조품 인쇄기를 전달함.

3. 주케냐대사는 겸임국 레소토 출장 중 1975.11.16. 신임 레소토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유엔에서 레소토의 한국 측 입장 지지에 사의를 표함.

4. 레소토에서 근무하는 의사 최강의 1975.12월 국무총리 앞 서신과 관련, 외무부는 1976.1.19. 아래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겸임국 조정문제
  - 1975.5월 아프리카지역 겸임국 재조정을 통해, 그간 4개국을 겸임하고 있던 주케냐대사에게 레소토 및 모리셔스만 겸임하도록 함.
- 겸임국에 대한 상주 외교관 파견 문제
  - 주말라위 및 주모리셔스대사관 개설 검토 중
  - 기타 겸임지역에 대한 상주 외교관 파견 문제는 예산사정 및 외교관 인력부족 등 제반 제약요인 수반
-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레소토의 태도
  -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국 측 안 지지 및 공산 측 안 반대)

75-0139

한·라이베리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81 / 28 / 1-16

1975년 중 한·라이베리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1975.3.11.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동 대사관의 1975년도 교섭목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비동맹회의에서 한국입장 대변 교섭
- 유엔에서 한국입장 전폭 지지 및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의 계속적인 참가 확보
- 주한 상주대사관 유치

2. 외무부장관은 1975.3.25. 미국 뉴욕에서 Dennis 라이베리아 외상을 면담한바, 동 면담요지는 아래와 같음.

- 비동맹 조정위 회의
  - 외무부장관이 리마 개최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가입 저지를 요청한데 대해, Dennis 외상은 조정위의 권고 및 비동맹그룹 국가들의 성분에 비추어 리마에서 북한 가입을 저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Dennis 외상 방한시기
  - 라이베리아 측은 1975년은 선거의 해이고 일련의 국제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으로 1975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1976년 방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3. 라이베리아 외무성은 1975.8.14.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한국의 기술공여 계획에 따라 훈련생 1명(외교부문 약 3개월 정도)을 초청하여 줄 것을 비공식으로 요청함.

주멕시코대사관 공사의 스페인 공화파 망명정권 리셉션(4.14.) 참석 및 스페인 정부의 유감표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1 / 29 / 1-9

1. 주스페인대사는 1975.5.22. Courruba 스페인 외무성 극동·필리핀 국장이 멕시코의 소위 '스페인 공화파 망명정권' 리셉션(4.14.)에 주멕시코대사가 참석한 데 대해 한·스페인 간 돈독한 우의에 비추어 유감이라고 말하였다고 보고함.

2. 외무부는 1975.5.28. 주멕시코대사관으로부터 파악한 리셉션 참석 경위를 주스페인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이를 스페인 외무성에 적절히 설명하도록 지시함.
   - 주멕시코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침투 저지와 관련하여 주재국 외상과 긴급히 면담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상기 리셉션에 참석하였으나, 면담 기회를 얻지 못해 리셉션장에서 바로 나옴.
   - 당시 주멕시코대사는 겸임국 온두라스 출장관계로 부재중이었음.

75-0141

한·네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1 / 30 / 1-23

1975년 중 네팔과 북한 간의 관계 동향에 관한 주네팔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1975년도 하바나 비동맹회의 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동맹 옵서버 가입안이 채택되었는바, 4.1. 주네팔대사는 네팔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를 면담하고 향후 가입 절차 및 전망을 문의하는 동시에 중국(구 중공) 및 구소련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의 비동맹 가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국입장에 대한 네팔의 지지를 요청함. 네팔 측은 공산국가의 비동맹 가입으로 비동맹의 순수성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립적 태도를 견지함.
   - 1975.8월 리마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 예정

2. 주네팔대사는 1975.5.9. 네팔 외무차관을 방문하여 김일성의 중국 방문시의 호전적 발언에 대한 대통령 및 본부 특별성명서를 네팔 측에 설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등 북한의 선전공세에 대응하여 주네팔대사관이 한국 정부의 정책 등을 네팔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설명함. 또한 가을 유엔총회에서 공산국가들이 한반도 문제 관련된 제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네팔도 인도차이나 공산화가 주변지역에서의 공산 게릴라 침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함.

3. 주네팔대사는 1975.12.17. 네팔 신임 수상을 예방하고 양국관계 증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한·노르웨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81 / 31 / 1-9

1973~75년 중 한·노르웨이 간의 관계 동향 가운데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Berg-Nielsen 주한 노르웨이대사(일본 상주)를 접견한 내용임.

1. 노르웨이와 북한 간의 외교관계 수립

- 노르웨이는 1973.6.22.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였으며, 8.15. 주노르웨이는 북한대사관이 개설됨.

2.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Berg-Nielsen 주한 노르웨이대사와의 면담

- 1974.1.17. 면담
  - Berg-Nielsen 대사는 한·노르웨이 간 통상진흥, 특히 조선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김 장관은 노르웨이 정부의 의료센터 설립 등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함.
- 1975.1.30. 면담
  - Berg-Nielsen 대사가 가을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상정대책, 대통령의 6.23 선언 이후 한국과 동구권 국가 간의 관계개선 현황, 한·일본 관계개선, 입양고아 송출 중단 문제 및 대한투자사절단 방한계획을 언급한데 대하여, 김 장관은 북한의 유엔에서의 남북한 대결 추진에 대비한 우방국과의 대책마련 계획과 6.23 선언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국가와의 관계개선 진전이 없음을 언급함. 또한 동 장관은 8.15 대통령 저격사건으로 악화된 한·일본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함.

75-0143

한·네덜란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1-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81 / 32 / 1-36

1971~76년 중 한·네덜란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네덜란드·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 추진

- 북한이 네덜란드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주네덜란드대사는 1974.10.1. Vondeling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북한과의 관계수립 가능성을 문의한데 대하여, 동 의장은 시기상조라고 답변함. 1975.1월 북경을 방문한 네덜란드 외상은 북한과의 접촉을 권유하는 중국(구 중공) 외상에게 공산권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상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2. 유엔에서의 대책

- 1975.2.14. De Vris 주한 네덜란드대사대리는 외무부 방교국장을 예방하고 한국 정부가 가을에 유엔 단독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한데 대하여 동 국장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동시가입 제안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가입신청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강화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3.21. Stoel 네덜란드 외상과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미군 철수 결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유엔사를 미국과 한국으로 대체하는데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 특히 유엔사를 한국으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한국문제를 국내 문제화) 등을 협의하였으며, 김 장관은 EC(구주공동체)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당부함.

3. 한국의 안보상황

- 월남의 공산화와 김일성의 북경에서의 호전적 발언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네덜란드대사는 1975.5월 스키프 네덜란드 외무성 사무차관, 정무차관보 및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에서의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한국군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능력과 결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네덜란드 등 EC 국가들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북한의 비동맹 가입

- 1975.8월 리마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동맹 가입이 결정된데 대하여(한국가입은 부결) 9월 De Vris 대사대리가 외무부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그 평가를 문의함.

한·니제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81 / 33 / 1-14

1974~75년 중 한·니제르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74.4.15. 군사 쿠데타로 인해 정권을 장악한 니제르 군부는 외교·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외상을 임명하고 5.8. 니제르를 겸임하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군사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공한을 보내어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하면서 한국도 유사한 의사를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국과 니제르는 서로 신임 외무장관에 대한 축전을 교환함.

2. 니제르 외무성은 1975.7.17. 각 대사관 및 국제기구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니제르 한발로 인한 경제난 지원을 요청함.

75-0145

한·페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C-81 / 34 / 1-18

1975년 중 페루의 신정부 수립 관련내용임.

1. 1975.8.29. 페루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자, 각 정부는 새로운 정권 승인문제에 직면하였으며, 페루 주재 공관들 중 일부는 신정부가 새로이 수립된 정부라기보다는 동일한 정부 내에서 영도자가 교체된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한국 정부는 9.1. 신임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 명의 축전을 발송함.

2. 1975.9.4. 거행된 신임 대통령의 외교단 접견식에서 동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의 우호친선 관계 지속유지를 희망하였으며, 외무부장관은 8.30.자로 각 공관에 보낸 공한에서 페루 정부는 1968.10월에 설정된 대외정책 노선과 규정 내에서 약속한 제반 국제의무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통보해옴.

3. 페루 외무성 아주국장은 1975.11.26. 주페루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한국 Korea Herald가 11.12. 게재한 'North Korea Supplies Chile Leftist Forces' 제하의 기사를 제시하면서 동 기사가 마치 페루가 북한에게 게릴라 양성기지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을 항의하였는바, 동 대사는 이에 대하여 동 기사가 칠레 측 소식통을 인용한 것에 불가하다고 해명하였으며 외무부에 대하여는 칠레와 지나치게 친밀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건의함.

한·스리랑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1 / 35 / 1-23

1975년 중 한·스리랑카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임.

1.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와의 외교관계는 없으나 대스리랑카 관계개선을 위하여 스리랑카 수상 생일을 축하하는 국무총리 명의의 선물 증정, 스리랑카공화국 선포기념일(1975.5.22.) 계기 국무총리 명의의 축전 발송 등 외교적 노력을 전개함.

2. Asgiria 스리랑카 불교계 종정 서거를 애도하는 조계종 종정 명의의 조전을 1975.11월 발송함.

75-0147

한·터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68-1975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C-81 / 36 / 1-203

1968~75년 중 한·터키 간의 관계 동향 중 주한 터키대사관 무관차량 매각과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한국 검찰은 1975년 박태선 장로의 장남 박동명의 외화 불법반출 혐의를 조사하던 중 Oktay주한 터키대사관 무관으로부터 박동명이 1974.8월에 시가 3만 달러(약 37백만 원 상당) 벤츠450 1대를 구매한 후에 1975.3월 미국으로 재반출한 것을 밝혀내었으며 이를 국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함.
  - 주한 터키대사관이 불법적으로 차량을 매각하였다고 보도
- 검찰 조사에 따르면 Oktay 무관은 박동명의 대리인 요청으로 1974.1.22. 벤츠를 구입하였으며, 본인의 한국 근무 종료에 따라 8.21. 외무부로부터 조건부로(매수인의 양수보고서 사전 제출) 매각 허가를 득하였으나 매수인은 외무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매수인은 박동명 모친의 친구로 모친 사망 후 박동명과 동거하면서 보호자 역할

2. 터키의 요구와 정부의 대응

- 터키 정부는 주한 터키대사관과 주터키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검찰이 주한 터키대사관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과 무관이 마치 불법 거래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정정기사를 게재하든지 또는 외무부 대변인의 해명을 요청함.
- 주터키대사관의 건의와 주한 터키대사관의 요청에 직면한 외무부는 양국간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검찰에 대하여는 주한 터키대사관 명칭 거론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문공부를 통하여 언론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함.
- 그러나, 무관이 한국 근무 종료를 앞두고 차량을 대리 구입한 것은 외교특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부분에 대하여는 터키 측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한·우간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81 / 37 / 1-9

1973~75년 중 한·우간다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이디 아민 우간다 대통령은 1971.1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후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숙청과 탄압을 자행하여 고위인사의 망명 등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해짐.

2. 주우간다대사관은 1973.10.31. 외무부에 현지의 불안한 사정을 알리고 이디 아민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아민자선기금 긴급지원을 건의함.

3. 주우간다대사관은 1974.2월 주우간다 북한대사관의 공작과 우간다공항 파우치 담당자의 남북한 미구별로 인한 파우치 발송 및 접수 보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케냐 나이로비 이용 등 시정조치를 외무부에 건의함. 또한 2월에는 우간다 외무장관이 주우간다대사를 초치하여 1.26.자 조선일보 외신 기사에서 이디 아민 대통령을 비난한 것을 엄중 경고하여 동 대사가 이를 해명하였으며, 동 대사는 외무부에 동 대통령에 대한 비난 기사가 일체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 동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방 기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바, 동 대사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하여 동 기사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함.

4. 1975.10월 이디 아민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앞두고 주우간다 대사관은 동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목적이 외환 부족으로 인한 재정원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사우디 측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 발언을 해주도록 교섭하고 주사우디대사의 공항 영접과 한국과 사우디 간의 우호관계를 설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사우디대사에게 이를 조치하도록 훈령을 보냄.

75-0149

한·영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C-82 / 1 / 1-84

1974~75년 중 한국에서 발생한 영국인 관련 사건임.

1. 이태영 사건

- 이태영 교수는 1974.4.6. 울릉도 간첩사건 피의자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2.9.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 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임.
  - 동인은 1963.7월 이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수차례 금품수수 및 동조혐의
- 영국인 W. Klatt 박사는 1974.10월 영국 국회의원과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를 통하여 이태영의 구속 사실여부 및 이유 등을 문의함.

2. 영국 함정 부산 입항

- 영국 구축함이 친선 방문차 1975.5.19.~22.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입항 허가를 요청하였음. 이에 부산시는 환영행사 등을 준비하였으나 영국 측 사정으로 방문이 무기 연기됨.

3. 기타

- 1975.4월 영국인 마약 불법소지 구속설, 11월 수원농촌진흥원에서 원조사업을 수행중인 영국인이 통금시간 이후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다 한국 군인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 12월 영국 롤스로이스 엔진회사가 중국(구 중공)에 롤스로이스 Spey 엔진 판매 및 제작을 위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롤스로이스 회장이 외무부 정무차관보에게 제3국(북한) 이전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 영향에 대하여 해명한 건 등이 수록됨.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2 / 2 / 1-245

1975년 중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열린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와 한국 정부의 관심 내용임.

1.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주관 청문회: 1975.7.15.~11.18.(7회)

- 국제관계위원회 외교정책연구 및 개발특별소위원회는 월남전 이후 새로운 외교정책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미국 외교정책의 목적과 목표와 미국의 이익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직 국무장관 등 중진급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별 외교정책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함.
  - 의원들은 미국·소련 관계, 미국·중국·소련 관계, 중국·소련 분쟁 등 강대국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북한의 남침 가능성과 미국의 대응에 대하여도 질의함.
- 소위원회는 11월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전문 학계인사들은 중국의 외교정책, 무역정책, 미국·중국 관계 개선방안, 아주지역 미군 주둔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에 대하여 답변함.
- 한국과 관련하여 증인인 Harriman 전 소련대사, Bundy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군 현대화 지원과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Dean Rusk 전 국무장관은 한국문제는 북태평양 전반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며, 북한의 침공 시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보장 및 핵무기 계속 주둔을 주장함.

2. 상원 외교위원회 주관 청문회: 1975.7.23.~12.3.(3회)

- 상원 외교위 대외원조소위원회는 FY76 대외원조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 필리핀, 포르투갈 등 권위주의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7.23. 개최하여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증인들은 포드 행정부가 한국의 인권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함.
  - 주미국대사관은 Fraser 하원 의원이 주동이 된 한국 인권 문제가 상원으로 확산될 기미가 있으며 상원에서 한국 군사원조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외교위는 미국 외교정책 전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9.10. 미국 여론조사 기관대표로부터 미국 국민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특히 독재정권에 대한 원조, 군사원조 등) 조사 결과에 대하여 청취함.
  - 미국 국민은 북한 남침 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지지
- 12월에 개최된 청문회에서는 장기적 미국 외교정책 설정과 관련하여 Schleginger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동 장관은 주한미군 계속 주둔과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75-0151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V.1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 기본대책)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2 / 3 / 1-294

1974~75년 중 미국 의회 하원에서 개최되는 한국 관계 청문회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기본 대책임.

1. 경위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소속인 Donald Fraser 의원이 주도한 한국 인권탄압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1974년 3차례 개최되었으며, Fraser 의원은 1975.3월 한국을 방문한 후 5~6월 2차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함.
  - 한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대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2. 한국 정부의 대책

- 외무부는 청문회 개최 연기를 위해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되, 개최 시에는 우호적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 청문회에 대비한 주미국대사관 의견서 등 자료 작성(민청련 등 국내 보안사범 등에 대한 해명자료 등), 공정한 청문회 개최 당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1975.4.23.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정일권 국회의장 명의의 하원 의장과 Fraser 의원에 대한 서한 발송,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를 통한 설득 등 청문회 연기를 위한 외교 캠페인을 전개

3. 경과

-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75.4.23. 월남 패망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관련 청문회 개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하여 Fraser 의원에게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
- 주미국대사는 하원의장, Fraser 의원 등 의회 인사들을 접촉하고 청문회 개최 중지를 설득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는바, Fraser 의원은 비민주 국가에 대한 경제군사원조 제공 반대뿐만 아니라 한국이 민주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것이라 언급함.
- 주미국대사관은 5.2.자 보고에서 청문회 반대 서한 발송, 미국 주요 일간지에의 투고, 국내 일간지 기고문 및 논설 게재, 친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추진 등 대책을 건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동 대사관은 친한의원, 학계인사 등을 집중 접촉하여 지원을 모색함.
- Fraser 의원은 외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국문제 결의안을 비공식적으로 배포함.
  -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제도 강화 유지와 모든 시민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할 필요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V.2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I: 진행상황)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2 / 4 / 1-401

1975.5~6월 중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에서 5차례 개최된 한국 인권 문제에 관한 청문회 진행상황임.

1. 미국 하원 의원들의 관심 사항

- 한국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 국가인지 여부, 고문 등 한국에서의 인권탄압 실태, 한국의 인권탄압이 한반도 안보에 초래할 결과,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위협의 정치적 이용,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의 유용성, 한국에 대한 원조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조치의 필요성, 한국의 부패, 노동자 탄압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 평가 등
- 위원장인 Fraser 의원 등 비판적 의원과 한국에 우호적인 의원들로 대비되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회의 도중에 퇴장하는 등 청문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나타냄.

2. 증인들의 견해

-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증인들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국의 대한 공약의 중요성을 주장한 반면, 비판적인 증인들은 한국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에 바탕을 두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주장하거나 미국 정부가 강대국 간의 협상을 통한 중립화 통일을 추구하는 등 미국의 개입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증언함.
  - 그러나 군사원조나 경제원조 삭감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
- 가톨릭 신부, 세계교회협회 변호사, 국제사면위원회 관계자와 같이 한국 인권을 직접 경험 하였거나 조사한 증인들의 경험담(인혁당 사건 등)과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의견 표명이 있었음.
- 증인 중에는 주미국대사관 공보관으로 재직 중 미국에 망명한 이재현이 포함되었으며, 동인은 한국 정부의 독재 정치에 대한 비판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벌어진 중앙정보부의 공작내용을 공개함.

3.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우호적 증인 및 의원들에 대한 자료제공, 질문내용 유도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하여는 의원 선거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를 물색하여 간접적으로 비판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비판적 증인에 대하여는 과거 증언의 일관성 부족과 허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우호적 의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모색함.

4. 미국 정부의 입장

-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75.6.24.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한국 인권문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안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방어태세를 완화할 수 없음을 증언함.

75-0153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V.3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II: 증언문과 속기록)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2 / 5 / 1-278

1975.5~6월 중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에서 5차례 개최된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청문회에서의 증인들의 증언문과 질의응답의 속기록임.

1. 의장 Donald Fraser 의원의 개회사

2. 증언문

- 아란 코헨 하버드대학 교수, 래리 레드야드 콜롬비아대학 교수, 제임스 시노트 신부, 브라이언 로벨 변호사, 프랜즈 마이클 조지워싱턴대학 교수, 이재현 전 주미국대사관 공보관, 리차드 워커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 교수, 윌리엄 톰슨 선교사, 도날드 레이나드 전 국무부 한국과장,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 레오나드 미커 변호사, 마이클 맥패든 신부 등 13명

3. 속기록

- 증인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응답 내용임.

4. 기타

- Fraser 의원이 미국 법무장관에게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앙정보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며, 의회 하원 외무위원회 대외정책연구소위원회가 1975.12.15. 개최한 미국·중국(구 중공)·소련 삼각관계에 관한 청문회에서 2년 내에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12.17.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Hamilton special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은 미국·중국 관계에 관하여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는바, 중국의 북한 지원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동 차관보는 "…. 미국이 바라는 바와 같이 북한의 전쟁도발이 억제되고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의 의도를 미국은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한·미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2 / 6 / 1-63

1974~75년 중 한·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 간 협의

- 1974.12.20.
  - 유엔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표결성과 평가, 주한 유엔군사령관과 주한 미군사령관 분리안, 반정부 활동 미국 목사의 강제퇴거와 관련된 문제, 한·일본 관계개선 걸림돌(김대중 사건, 민청학련에 관련된 일본인 학생) 처리문제
- 1975.4.9.
  - 일본기업의 수출입은행 자금을 이용한 대북한 플랜트 수출문제, 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 저지 대책, 유엔대책, 유엔사 분리문제, 인도차이나 사태
- 1975.4.19.
  - 월남 피난민 수용을 위하여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 사용을 위한 한국의 협조 요청(부족 시에는 한국기지 및 시설 사용)
- 1975.7.18.
  - 유엔군사령부 개편문제, 공산 월남의 유엔가입 신청문제(남북한 유엔가입 문제와 연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미국 원자력협력협정의 해석문제, 비동맹회의 대책, 일본 외상의 방한 시 협의내용과 한·일본 문제 조속한 해결 당부
- 1975.11.25.
  - 한·미국 통합사령부 설치안, 키신저 미 국무장관 방한 추진, 북한의 77그룹 가입 추진 가능성과 미국의 입장

2. 외무부차관과 슈나이더 대사 간 협의

- 1975.11.4. 외무부차관과 슈나이더 대사는 유엔에서의 표결대결과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지양하는 문제, 유엔사와는 별개로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는 안, 슐레진저 국방장관 경질 등 협의

3. 국무총리와 슈나이더 대사 간 협의

- 1975.4.19. 슈나이더 대사는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한 월남 피난민 수용시설 관련 협조 요청문제를 제기함.

75-0155

한·월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C-82 / 7 / 1-83

1974~75년 중 공산 월남의 평화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지원 요청과 1975.4.30. 월남 패망 이후 주한 공관원의 처우에 관한 내용임.

1. 공산세력의 평화협정 위반에 대한 호소 전달

- Nguyen Van Thieu 월남 대통령은 1974.4.25.과 1975.1.25.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월맹군의 1973.2월 파리평화협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월맹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산군의 불법 점령지에서의 철수 등 협정을 준수하도록 한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월남 외무부는 1974.11.7.과 1975.1.6.~25. 공산 월남군의 대규모 공격과 협정 위반을 한국이 비난하고, 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월남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주한 월남대사관을 통하여 외무부에 전달함.
  - 박 대통령은 1975.3.11. 지지를 재확인하는 서한 발송
- Pham Xuan Chieu 주한 월남대사는 1975.2.7.과 3.12.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여 월남 정세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로마인도법회의에서 월남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과 Bac 월남 외상의 메시지 및 코뮤니케를 전달함.

2. 미국의 월남 철수계획 수립과 한국 정부와의 협의

-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1975.4.19. 김동조 장관을 예방하여 미국 정부는 월남인 철수 비상작전을 계획중인바, 이들 피난민 수용소를 주한미군 기지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며 아울러 한국의 기지시설과 편의제공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라는 훈령을 전달함.
  -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수용소 설치 요청
- 국무총리는 4.21. 슈나이더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함.

3. 월남 패망과 주한 월남 및 크메르대사관 폐쇄, 공관원 처우문제

- 월남이 1975.4.30. 패망하자 주한 월남대사관은 1975.5.17.자로 폐쇄
  - 주한 크메르대사관은 1975.5.1.자로 공관 폐쇄
- 주한 월남대사관이 공관 폐쇄 후 공관원에 대한 회수 또는 단수 재입국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이들의 외교특권 부여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
  - 외교관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1975.7.31.까지 부여, 면세품 구입은 체류기간 만료 시까지 인정, 공용차량은 외무부에 이관 등

대짐바브웨(구 로데시아) 교역 및 여행금지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남동아프리카
MF번호	C-82 / 8 / 1-27

1974~75년 중 유엔결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짐바브웨(구 로데시아)에 대한 교역 및 여행 금지를 시행함.

1. 유엔 결의안 채택

- 유엔 특별위원회는 1974.4.2. 짐바브웨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
  - 짐바브웨가 1965.11.11.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하자 11.20. 유엔 안보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짐바브웨 정부에 무기 및 군사기재 수출금지, 석유 수출금지를 비롯한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 이후 1968년 결의를 통하여 일체의 상품과 출산품에 관련된 교역금지, 선박 항공기 및 지상 교통수단에 의한 상기 물품 수송금지, 짐바브웨의 이민금지, 모든 영사 및 통상대표부 철수를 결정함.
  - 유엔총회는 1974.4.2. 결의에서 모든 정부가 짐바브웨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면서 동 지역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권 및 기타 문서를 무효화하여 줄 것을 촉구함.

2. 한국 정부의 결의안 시행

- 한국은 유엔 회원국은 아니나 유엔 결의안이 범세계적 성격의 것으로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결의를 적극 시행하는 입장을 견지함.
  - 상공부는 1966.3.10.자 고시 제2496호를 통하여 짐바브웨와의 통상 단절을 공고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4.6.29.자 내외경제신문 품목별 바이어 소개란에 짐바브웨 철도회사 직원공제회 가게를 게재한 데 대하여 한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여 옴에 따라 정부는 조치를 취함.
  - 1975.4월 전매청 직원이 짐바브웨 공무여행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허함.

75-0157

한·자이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82 / 9 / 1-10

1975년 중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관계 동향에 관한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의 보고내용임.

1. 1975.1월 신임 외상의 주요 경력, 사상적 경향 등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이 파악 보고한 내용과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가 4.30. Fiankan 코트디부아르 외교단 단장을 면담한 결과 북한의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원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병원 건립을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1975.7.29. 외무부장관이 보낸 친전에 대한 답전에서 콩고민주 공화국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목표달성을 다짐하면서 현안에 대해 간략한 현황보고를 함.
   - 한국 정부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제안한 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하여 설명함.
   - 미국 특사 방문설에 대하여 미국과 콩고민주공화국 간의 악화된 관계로 인한 접촉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밴스 특사의 방문 가능성을 탐문 보고함.

강영규 주코트디부아르대사 겸임국 베냉(구 다호메이) 및 니제르 출장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82 / 10 / 1-112

1974~75년 중 강영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겸임국인 니제르와 베냉(구 다호메이)을 방문함.

1. 니제르

- 강영규 대사는 1974.4.10, 5.22, 9,11, 1975.3.24., 9.19. 5차례 니제르를 방문함.
- 강 대사의 방문 목적은 북한의 침투 동향 파악 및 저지 방안 모색, 유엔문제 교섭과 군사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니제르 정세 동향 파악 및 도자기공장 기자재 원조 등임.
  - 1974.3월 북한사절단 방문, 5월 외신은 북한이 니제르 신군사 정부를 승인하는 외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보도, 니제르는 9월 북한과 수교
  - 김용래 대통령 특사가 7월 니제르를 방문하여 국산 트럭 50대 지원을 약속
- 1975.1월 외무부는 니제르가 북한과 수교한 이후에 대사의 업무목표를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한국입장 대변 등으로 정하고 지침을 보냄.
  - 강 대사는 니제르 지지획득을 위한 외교활동 내용 및 결과보고를 지시
- 한국 정부는 이병희 무임소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을 10월 니제르, 베냉 등 4개국에 파견하는 것을 추진함.

2. 베냉

- 강영규 대사는 1974.4.23, 1975.3.27., 5.13. 3차례 베냉을 방문함.
- 강 대사의 방문 목적은 주베냉 북한대사관의 활동 동향 파악, 유엔에서의 지지 교섭, 베냉의 정세파악 등임.
  - 한국 정부는 의료단 파견, 병원 건립지원 등 원조 제공

75-0159

윤영교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차드 출장

생산연도	1975-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4 / 12 / 1-94

1975~76년 중 윤영교 주카메룬대사가 겸임국인 차드를 3차례 방문함.

1. 제1차 방문(1975.5.6.~11.)

- 차드에서 1975년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5.7.에 군사최고위원회가 겸임대사를 접견함에 따라 윤석헌 주프랑스대사는 윤영교 신임대사를 대동하고 차드를 방문(윤영교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대기중)하여 신정권의 대외정책 파악 및 양국간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함.

2. 제2차 방문(1975.8.12.~15.)

- 윤영교 대사는 겸임대사로서 아직 아그레망을 받지 못함에 따라 특사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 친서를 소지하고 차드를 방문하여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안 지지 교섭을 수행함.

3. 제3차 방문(1976.10.26.~11.1.)

- 유엔 문제와 관련, 차드의 한국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불토의가 결정됨에 따라 외무부는 방문 목적을 양국간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변경 추진함.
- 외무부는 기존에 군화와 군복 등의 원조를 약속하였으나 차드와의 확실한 관계 강화 전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윤 대사는 차드 방문 후 외상 방한 초청과 원조 대신에 경제사절단 파견을 건의함.
  - 11월 차드 외상 북한 방문

Mougnon, Sidoine 주한 가봉대사(일본 상주) 방한, 1975.6.17.-2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82 / 11 / 1-12

Sidoine Mougnon 주일본 가봉대사가 1975.6.17.~20. 겸임국인 한국을 방문함.

1. Mougnon 대사는 1975.6.18. 이임 인사차 방한하여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면담함.

2. 가봉은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를 추진함.

75-0161

강춘희 주뉴질란드대사 겸임국 서사모아 및 통가 출장, 1975.5.31.-6.1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2 / 12 / 1-9

1975년 중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가 겸임국인 서사모아 및 통가를 방문함.

1. 서사모아

- 1975.5.31.~6.6. 서사모아를 방문한 강춘희 대사는 경축행사 참석 및 서거한 전수상 위안예배에 참석하여 우호를 강화함.
  - 북한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확보

2. 통가

- 1975.6.7.~11. 통가를 방문하여 양국간 유대강화를 모색함.
  - 공산국가와의 관계 불수립 방침 확보

대동구권 외교관 직접 접촉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구
MF번호	C-82 / 13 / 1-10

1975~76년 중 재외공관 공관원이 공산권 국가 인사들을 접촉한 내용임.

1. 재외공관 직원은 국경일 행사나 외교단 행사를 기회로 적성국가로 분류된 공산권 국가 외교관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이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독일, 주네덜란드, 주터키대사관 보고

2. 또한 일본 등 주재 재외공관은 주재국 외무성 관계자들로부터 소련 등 공산국가의 국내 정세 및 대외관계 관련정보를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75-0163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출장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2 / 14 / 1-120

1974~75년 중 주멕시코대사가 겸임국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를 방문함.

1. 엘살바도르 방문(1975.1.12.~15., 7.30., 10.25.~31.)

- 주멕시코대사 방문시 대통령, 외상 등 고위인사들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여 유엔에서 한반도 관련 공동제안국이 되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그러나 가을에 들어 한국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엔 제1위원회 북한안에 반대 대신 기권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됨. 동 대사가 급히 재방문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입장변화가 아니라 자국의 FAO(국제식량기구) 사무총장 입후보에 따른 것이어서 동 대사가 지지를 약속하는 등 외교적 설득 결과, 결국 한국안에 찬성하고 북한안에 반대투표를 함.
  - 주쿠바 북한대사 방문 허용

2. 온두라스 방문(1975.3.10.~17., 5.13.~18., 7.23.~25.)

- 정부는 온두라스 정부의 1974년 두 차례 북한사절단 접수 및 1975년 수교 가능성, 유엔에서의 한국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불참여 등을 감안하여 온두라스를 1975년도 대중남미 중점외교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외상 방한 초청, 협력사업 시행 등 사업을 구상함.
- 주멕시코대사관 직원을 온두라스에 출장시켜 분위기 파악 등 외교활동 집행 구상을 하던 중 1975.4.25.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군사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외무부는 주멕시코대사를 급히 파견하여 신정부의 대외정책 성향 파악, 한국에 대한 기존 지지 재확인, 외상 방한 초청 등 협력사업 집행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지시함.
- 신정부가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주멕시코대사의 7월 방문 시에 온두라스 대통령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가담 요청을 수락하는 동시에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함(그러나, 온두라스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음).

3. 자메이카(1975.1.21.~25., 8.12.~15.), 과테말라(1975.7.21.~23.), 코스타리카(1975.7.28.~30.), 니카라과(1975.6.16., 7.25.~28.)

- 방문 국가 인사들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과 지지 요청에 대하여 지지와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자메이카와 같은 국가는 비동맹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함.
  - 과테말라 공동제안국 참여요청 수락
  - 코스타리카 외무차관 7월 방한 및 김동조 외무부장관 방문 추진

자이르의 임명진 주자이르대사에 대한 PNG 결정 취소에 관한 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82 / 15 / 1-18

1975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부가 인명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 대한 PNG(Persina non Grata, 비우호적 인물 규정) 결정을 취소한 내용임.

1. PNG 선언

- 콩고민주공화국 외상은 1975.1.3. 인명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PNG를 선언하면서 48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통보함.
- 그러나 동일 저녁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모부토 대통령의 지시로 동 대사에 대한 PNG를 취소한 사건이 발생함.

2. 배경 설명

- 콩고민주공화국 외상은 인명진 대사에게 PNG를 선언하면서 한국이 모부토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을 취소한 후 다시 방한 초청을 하는 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인 대사는 1975.1.3. 오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기자에게 전달 사실을 시인함.
- 모부토 대통령은 비동맹 외교정책에 의거하여 좌우도 아닌 중립적 입장으로 남북한과 관계를 유지함. 동 대통령은 1974.12월 북한 방문 후 바로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한국 특사가 자신의 방한 초청을 근거로) 방한 일자를 일방적으로 한국 측에 통보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1975.1.20. 이후로의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동 대통령은 한국 방문은 포기하고 1974.12.9.~16. 북한만 방문함. 동 대통령은 북한의 원조획득 외에도 개인숭배체제, 일당통치, 언론통제 등 독재체제에 강하게 매료되어 귀국 후 북한을 모방한 대대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함.
  - 콩고민주공화국은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으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악화됨.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은 1975.1.3.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인 대사가 모부토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하여 동 정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비난하였으며, 주재국 정부 통신기관은 1.6.자 기사에서 동 대사가 초청 사실을 공개한 것은 외교관례에 어긋난 것으로 주재국 정부가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항의 각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동 대사는 1.3. 초청장 전달 후 동국 외무성에서 기자에게 "모부토 대통령이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해준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이기를 바란다"고 언급
- 인 대사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외상이 자신을 PNG로 추방시키려다 실패하자 대사 스스로 떠나도록 하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함.

75-0165

Mulamba, Leonard 일본 상주 주한 자이르대사 방한, 1975.2.3.-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82 / 16 / 1-14

Leonard Mulamba 일본 상주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가 1975.2.3.~6. 방한함.

1. 양국간 현안 문제

- 모부토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방한추진
- 기술협력협정 체결추진
-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상주대사관 개설

2. 방한 내용

- Leonard Mulamba 대사는 방한하여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였는바, 장·차관은 모부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다시 초청하면서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동 대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입장 불변을 확인함.

호주·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동북아2
MF번호 C-82 / 17 / 1-11

1975.6월 호주 외상의 중국(구 중공) 방문과 관련하여 호주 언론의 보도내용임.

1. Willesee 호주 외상의 중국 방문을 수행 취재하고 있는 The Australian지 기자의 보도 요지임.

- Willesee 외상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방문에 대하여 월남 패망 후 시대의 함축성과 의의를 탐색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하면서 동 외상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인도양의 비핵지대화, 호주의 제3세계와의 관계 긴밀화 등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월남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된 중국·소련 긴장 사태에 관한 현실적 평가일 것임.
  - 교관화 중국 외상은 Willesee 외상에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여하한 국가 또는 국가군에 의한 헤게모니에도 반대한다는 1973.11월의 호주·중국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소련 간의 균형자 역할을 하던 미국의 퇴조로 인하여 호주가 중국의 반소 진영에의 가담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
  - 등소평은 "앞문으로 들어오는 승냥이를 쫓으면서 뒷문으로 호랑이를 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련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촉구함.
- 또한 보다 긴박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로서, 김일성은 월남 공산화를 계기로 자신의 개인숭배에 기초한 지배하에 한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동기라고 보고 있음에 틀림이 없음. 그러나 중국·소련은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가 필연적으로 양국간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계속적인 아시아 개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김일성은 중국·소련 간 갈등이 자신의 야욕 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의 공산화를 공산주의자의 인민전선 전략의 성공으로 판단하고 국내에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일체의 반론을 질식시키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땅굴 문제는 남북한의 증오의 상징이 되고 있음.

2. Sydney Morning Herald 지의 보도 요지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이 동남아 국가와의 데탕트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며 중국과 필리핀은 25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관계를 수립할 것임.
- 호주는 미얀마(구 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반란단체에 대한 중국의 지원문제, 중국은 호주의 대소련 태도, 인도양에서의 소련함대 진출문제, 태평양지역의 안전문제 등을 제기할 것임.

75-0167

미얀마(구 버마)·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82 / 18 / 1-27

Ne Win 미얀마(구 버마) 대통령의 1975.11.15. 중국(구 중공) 방문과 관련된 내용임.

1. 중국의 동남아 반정부 게릴라 지원 관련자료

- 주대만대사관이 입수한 자료는 동남아에서의 공산단체 지원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군구의 편제가 수록됨.

2. Ne Win 미얀마 대통령의 방중에 관한 외무부의 분석자료

- Ne Win 대통령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 등소평, 주은래 등 지도부 인사와 회담을 가지고 1975.11.15.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공동성명서는 13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평화공존 5대원칙 확인, 적대적 군사동맹 불가입, 동남아시아에 평화, 중립, 자유지역 설치 등 포함
- Ne Win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후 8번째로 양국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외무부 자료는 평가함.
  - 동 대통령은 미얀마 공산당 반란세력을 격퇴할 수 있도록 중국 국경수비대 병력을 양국간 국경에서 후퇴시켜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중국 측은 수마일 후퇴를 약속하였으나 미얀마 공산당에 대한 계속적 물자지원 중단에 대하여는 거부함.
  - 동 대통령은 중국의 패권반대 압력에 대하여 비동맹과 독자적인 대외 정책을 강조하였으며, 미얀마가 소련으로부터 어떠한 원조도 받지 않도록 한 중국 측의 요구에 대하여는 수락하지 않음.
  - 경제협력 획득
  - 동남아지역의 평화, 중립, 자유지역화는 동남아의 중립화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이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임.

브라질·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2 / 19 / 1-12

1975년 중 브라질과 중국(구 중공)에 주재하는 대사관 관련자료임.

1. 초대 주브라질 중국대사 이력사항 및 부임 동정

2. 주북경 브라질대사관 및 주브라질 중국대사관 직원명단

75-0169

일본·대만(구 중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동북아1
MF번호	C-82 / 20 / 1-6

1975년 중 주대만(구 자유중국) 일본교류협회 대북사무소장의 기자회견 내용임.

1. 우라베 일본교류협회 대북사무소장은 1975.2.19. 기자회견을 통하여 중국·일본 양국간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발언함.

2. 우라베 소장은 일본과 중국(구 중공)의 평화우호조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을 거부하면서 동 조약 체결 가능성 유무도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쌍방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어떠한 해결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신이 사무소장으로 부임한 것은 단절된 중국·일본 항공노선 복항을 포함한 중국·일본 양국간의 유대강화와 양국 국민간의 우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언급함.

미국·대만(구 중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82 / 21 / 1-52

1975년 중 미국과 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관계 동향임.

1. 미국·대만 간 관계 현황

- 미국은 대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
  - 중국(구 중공)에는 연락사무소 설치
- 상호방위조약 체결, 약 4,500명의 미군이 주둔
- 1972.2월 상해선언 이후 미국기업의 대만 진출 및 미국·대만 통상관계 증대
  - 3월 케네디 전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무역투자방문단이 대만 방문

2. 장개석 대만 총통의 서거와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

- 1975.4월 장개석 총통이 서거함에 따라 그의 서거가 대만의 장래, 미국·중국 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국 주요 일간지의 보도가 수록됨.
- Melvin Laird 전 국방장관이 9월 대만을 방문하여 장 총통 묘소 참배, 외교부장 등 고위 인사 면담 등을 하였으며, 기자회견에서 포드 미국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과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다수 미국 의회의원과 국민들은 대만과의 우의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함.
- 미국 하원의원 방문단이 10월 대만 Pacific Cultural Foundation의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쌍십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함.
- 도슨 매디스 미국 하원의원은 11.17.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완화 과정에서 대만의 자유를 해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견해임을 밝힐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결의안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이미 203명의 서명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함.

3. 포드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

- 미국 정부는 하비브 아태 차관보를 1975.12.9. 대만에 파견하여 12월에 있었던 포드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를 대만 정부에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동 차관보는 대만과 계속적인 우호관계 유지라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언급함.

75-0171

EC(구주공동체)·중국(구 중공) 외교관계 수립, 1975.9.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총괄
MF번호	C-82 / 22 / 1-8

1. 주일본대사관은 1975.5.9. 현지 Times지 및 Financial Times지가 동일 각각 북경 및 브뤼셀 발 기사를 통해 중국(구 중공)이 EC(구주공동체)를 공식 승인하고, 주EC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75.9.17. Li Lien-Pi 주벨기에 중국대사는 1975년 후반기 EC 각료이사회 의장인 Rumor 이탈리아 외상(9.15.)과 Ortoli EC집행위 위원장(9.16.)에게 각각 겸임대사로서 신임장 제정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중국은 공산국가로서는 유고에 이어 EC와 관계를 설정한 두 번째 나라이며 중국대사는 103번째 EC 주재 대사가 됨.
- 중국의 대EC 관계설정은 1972년 주은래의 AFP와의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표명되었고 1973.10월 이후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
  - 1975.5.8. Soames EC 집행위 대외담당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매듭을 짓게 됨.
- 중국은 EC를 양 초강대국에 대한 서구의 독자노선 강화로 간주하고 있는바, EC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저의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서구의 대소련 접근에 쐐기를 박는데 중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

프랑스·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중국담당관
MF번호	C-82 / 23 / 1-23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75.5.12. 등소평 중국(구 중공) 부수상의 1975.5.12.~17. 프랑스 공식 방문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등소평 부수상은 Chai Kuan Hua 중국 외상을 포함한 19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5.13.~14.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수상과 회담 예정
- 동 회담은 미리 준비된 일정에 국한하지 않고 현 정세 및 양국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 바, 특히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동서 관계, 양국간 경제·문화 등의 문제가 의제로서 토의될 것으로 예상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75.5.13. Chirac 프랑스 수상이 5.12. 등소평 부수상과의 회담을 마치고 양국간 외상급 정기회담(회담주기 미정)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프랑스대사관은 1975.5.21. 등소평 부수상의 프랑스 공식 방문 후 양국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프랑스 측은 그 이유를 외국 방문 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관례라고 하나, 양국이 미국·소련의 헤게모니, 동서 관계, 유럽안보회의 등 문제에 있어 의견을 달리한 것이 그 이유로 생각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프랑스대사관은 1975.5.23. 등소평 부수상 방문 관련 프랑스 외무성 측에 탐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부수상은 한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북한은 남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약화(소련 대두)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미군의 일본 주둔을 확실히 원하고 있으나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함.

5. 주프랑스대사관은 1975.11.24. Sauvagnargues 프랑스 외상의 중국 방문(1975.11.19.~24.) 결과에 관한 11.23~24. 르몽드지 북경 주재 특파원 기사 내용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금번 방문 중 동 외상은 등소평을 만나지 못하였고 중국 외상 및 이선념 부수상과 회담
- 금번 회담은 구체적 결과가 거의 없으나 프랑스 측은 방문 결과에 대해 만족 표명 등

75-0173

독일·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1/동북아2
MF번호	C-82 / 24 / 1-15

1. 1975.1.17. 주재국 언론은 슈트라우스 독일 기사당 당수가 1.16. 갑자기 모택동을 만났으며 동 당수의 모택동 면담은 주재국 정치가로서는 처음 이라는 점과 동 당수가 서구의 야당 지도자로서 작년 5월에 있었던 영국 보수당 당수와의 면담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도함.

2. 주독일대사관은 1975.11.15. 슈미트 수상은 현직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1975.10.29.~11.2. 중국을 방문, 중국 도착 익일 모택동을 예방하고 등소평과 두차례의 수뇌회담을 개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회담 관련 슈미트 수상을 수행한 Morsch 독일 외무성 정무관, Fischer 아주국장 및 Hellbeck 동아과장을 각각 만나 파악한 내용에 관한 특별정세보고서를 송부한바, 동 보고서 중 대미국 관계 및 분단국 관계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미국 관계

- 독일 측이 미국과 정치군사경제 면에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을 설명한데 대해 중국 측은 대소련 전략면에서 독일의 역할을 이해 지지한다면서, 대화 중 포드 미국 대통령과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에 관해 언급시 등소평은 양인이 호혜적 입장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라고 호평

● 분단국 관계

- 독일 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회담이 속개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존체제 하에 통일 문제의 토의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등소평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는 등소평이 동 문제 토의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중국·소련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과 정열을 소비한 탓이었다고 함.
- 김일성은 금년 5월 북경 방문 시 극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중국 측 인사들은 표면적으로 김일성 일행을 환대했으나 내심 당혹한 상황하에 있었다고 하며, 독일 측이 느낀 제반 인상과 중국 지도자들과의 접촉 결과, 중국은 대소련 관계, 국내 문제에 대부분의 정력을 소비하고 있으므로 대외분쟁에 개입할 겨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며 북한에 대하여도 남침을 지원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함.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동북아2
MF번호	C-82 / 25 / 1-64

1974~75년 중 일본·중국(구 중공) 평화우호조약 체결 추진동향 등 양국관계 동향임.

1. 주일본대사관은 1974.11월 도고 일본 외무차관의 한념용 중국 외무차관과의 회담 동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1974.11.14. 및 11.15.)

- 11.14. 마이니치신문 보도요지
  - 13일 오후 도고 차관은 중국 외무차관과 회담하였으며 동 회담은 사실상 실무급 정기협의회의 첫번째 회담
  - 14일의 제2차 회담에서는 일·중 평화조약의 예비교섭이 시작되고 동 회담 결과에 따라 북경에서는 양측이 동 조약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 11.15. 마이니치신문 보도요지
  - 오사카와 상하이에 총영사관을 상호 개설하기 위해 교섭을 추진하고, 어업협정 교섭을 평화우호조약 교섭과 병행시켜 추진하며, 양국 외상 간 정기협의를 하자는데 의견일치

2. 미야자와 일본 외상 및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의 1975.4.23.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의 일·중 평화우호조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중국은 패권반대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그 세력의 확장, 지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헌법 전문에도 포함되고 있어 패권반대는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음.
- 일본은 패권을 추구할 방침도 아니고 그만한 힘도 없으며, 양국 우호관계는 중요한 것이나 여타 세계 각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상 조약에의 패권조항 삽입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음.

3.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후 귀국한 미야자와 외상은 1975.10.1. 기자회견에서 평화우호조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동 외상은 방미중 고관하 중국 외상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패권조항을 동 조약에 삽입하는 것은 제3국에 대한 것이 아니며 또한 패권반대를 위한 공동행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감촉을 받았다고 밝힘.
- 동 외상은 일본 측이 패권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로 소련을 적대시하는 것과 관련이 되므로 일·중의 우호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에 제3국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을 들어왔으나 이러한 중국 측의 유연한 자세로 미루어 앞으로의 중국 측 태도를 신중히 보아가며 대처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함.

4. 주일본대사관은 1975.10.4. 윤하정 일본 공사의 10.3. 나카에 일본 외무성 국장 면담시 나카에 국장은 상기 일·중 외상회담에서는 소위 패권문제에 관하여서만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한국문제에 대한 거론은 하나도 없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중국(구 중공)·라오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2 / 26 / 1-35

1975년 중 중국(구 중공)·라오스 관계에 관한 언론기사 중 10.12. 라오스 독립 30주년 기념 인민일보 사설의 주요 요지(한글 번역문)는 아래와 같음.

1. 인도차이나에서 혁명개선의 노래가 널리 퍼지고 있는 좋은 형세 하에 라오스 인민은 자신들의 빛나는 경축일인 독립 30주년을 맞이했음.

2. 1945.10.12. 라오스 인민은 일본 파쇼 침략자를 반대하는 무장봉기의 격랑 가운데 국가독립을 선포하였고, 그 후 또한 9년간의 항전 후에 프랑스 식민 통치자를 패배시킴.

3. 1945년 제네바협정 이후 미 제국주의는 라오스에 대해 침략과 간섭을 진행함.
   - 장기적인 고투와 복잡한 투쟁을 거친 후 마침내 금년에 들어와 미 제국주의의 침략세력과 극우 반동파를 물리치고 전국 각지에 인민정권을 수립,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승리 획득

4. 중국과 라오스는 산수가 서로 접해 있으며, 중국 인민과 라오스 인민은 장기적 반제혁명 투쟁 중 줄곧 서로 동정해 왔고 서로 지지하고 고무해 왔던 두터운 우의로 결성되어 있으며, 라오스 독립절 경축을 맞이하여 양국 인민의 전투적 우의가 발전되고 공고해지기를 축원함.

75-0176

파키스탄·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동북아2
MF번호	C-82 / 27 / 1-16

1975년 중 파키스탄·중국(구 중공) 간의 관계 동향에 관한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의 보고임.

1. 이선념 중국 부수상(재정·경제담당)은 1975.4.20.~25.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함.

- 동 부수상은 도착 당일 주재국 대통령 예방에 이어 부토 수상과의 1차 회담을 가진 후 동 수상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
  - 4.21. 동 수상과의 2차 회담 개최

2. 이선념 부수상은 상기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최근의 국제정세와 양국간 문제를 논의함.

- 최근 인도차이나 사태 발전과 인도, 파키스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 및 양국간 문제에서는 주로 경협문제 외에 방산분야에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여짐.
- 이선념 부수상은 부토 수상 주최 환영만찬 연설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은 제3세계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맹우로서 중국은 파키스탄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맹방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 남아시아 비핵지대 제안과 카시미르인의 자결권을 위한 투쟁, 인도의 시킴(Sikkim) 병합에 대한 반대투쟁, 네팔의 최근 평화지대 선언 및 스리랑카의 인도양 평화지대 설정 제안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
- 이선념 부수상의 방문은 양국간 특별한 문제 협의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1974.5월 인도의 핵실험 이후의 인도·파키스탄 관계, 시킴 병합 및 카시미르 문제 등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함으로써 인도에 대한 하나의 대항조치로 보임.
- 양국간 경제원조 분야에서 중국은 1974년말까지 파키스탄이 수원한 총원조액의 5% 상당인 3억 3천만 달러의 경제원조와 312백만 달러의 군사원조 제공

필리핀·중국(구 중공) 외교관계 수립, 1975.6.9.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동북아2
MF번호	C-83 / 1 / 1-295

마르코스 주필리핀 대통령이 1975.6.7.~11. 중국(구 중공)을 방문함.

1. 마르코스 대통령은 주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과 주은래 중국 국무원 총리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함.

- 세부일정
  - 모택동과 회담, 등소평 부수상 등 주요 고위인사들과의 집단면담, 주은래 주최 환영연 및 회담(6.7.), 등소평 부수상과 단독회담 및 양국 대표단 회담(6.8.), 등소평과 회담(공동성명 조인), 마르코스 대통령 주최 답례만찬(6.9.), 상하이 시찰 및 출발(6.10.~11)

2. 주요 활동

- 마르코스 대통령과 주은래 수상은 1975.6.9. 공동성명을 통해 동일자로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 공동성명 요지
  - 외세에 의한 내정불간섭 합의, 1국가 또는 집단의 패권 확립 내지 영향권 조성기도 반대, 중국의 유일 합법성 인정,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측 입장 지지, 필리핀 측은 공동성명 서명일 1개월 이내 대만으로부터의 필리핀 측 공식대표 철수 결정, 양측은 상대방 국가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시민들은 원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간주 등

3. 주요 면담내용 및 연설요지

- 1975.6.7. 주은래 수상과의 면담 시 주은래는 중국은 필리핀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평화공존(반둥선언)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중국 측 기본입장 천명
- 6.8. 및 6.9. 두 차례에 걸쳐 등소평과 회담을 갖고 외교관계 수립 등 실질문제 논의
- 마르코스 대통령은 6.9. 답례만찬 시 모택동 주석이 생각하는 자주사상은 필리핀의 새 사회건설의 기본원칙에 이미 채택되어 있다고 언급했으며, 등소평은 양국은 제3세계에 속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초대국의 패권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

4. 관계국 반응

- 하비브 미 국무부 극동아시아담당차관보는 양국 수교가 2개의 주필리핀 미군기지에는 위협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

●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관계
  - 필리핀 외무성은 1975.6.4. 주필리핀 대만대사에게 동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국교 정상화를 위한 중국과의 서명 예정을 공식 통보
  - 6.9. 필리핀 정부 및 대만 정부는 외교관계 단절 성명 각각 발표
●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양국 수교는 이미 예상한 일로 공동성명상의 패권반대 조항은 일·중 평화우호조약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5. 평가

● 필리핀의 대외관계 다원화(미수교 공산국가: 소련, 북한, 캄보디아, 월맹, 공산월남 등)
● 미국의 대동남아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처한 조치(단, 기존 양국관계는 계속 유지)
● 대만의 고립 심화 및 중국의 동남아 진출 촉진
● 대북한 수교 등 관계개선 촉진 우려 등

태국·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동북아2
MF번호 C-83/2/1-198, 2010-87/16/1-3

1975.7.10. 외무부 작성 쿠크리트 태국 수상의 중국(주 중공) 방문(1975.6.29.~7.6.)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임.

1. 방문일정 및 수행원

- 쿠크리트 수상은 주은래 중국 수상의 초청에 의해 중국을 공식 방문
- 주요 일정
  - 모택동(7.2.), 등소평(6.30.)과 회담
  - 7.3.~5. 상하이 등 지방도시 시찰

2. 주요 활동

- 양측은 1975.7.1. 하기 요지의 공동성명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 외세에 의한 내정 불간섭 원칙에 합의, 1국가 또는 집단의 패권확립 내지 영향권 조성기도 반대, 중국의 유일 합법성 인정, 대만(구 자유중국)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인정, 태국은 대만으로부터 모든 공식대표를 공동성명 서명일 1개월 이내 철수 결정 등
- 주요 면담내용 및 연설요지
  - 7.1. 주은래와의 면담시 중국 측은 수교가 되면 내정 불간섭할 것이며 태국내 외국군 주둔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소련의 영향력에 우려 표명
  - 6.30. 등소평 부수상 주최 환영연에서 쿠크리트 수상은 태국 주둔 미군이 명년초까지 철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태국 자체의 안전은 캄보디아 등 신생 공산 인접국과 태국 북부의 공산게릴라 운동에 대한 중국의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고 언급, 등소평은 미군 철수가 동남아 자결(自決)을 위해 유리한 조건하게 조성하게 되었다고 의례적인 발언

3. 관계국 반응

- 대만 정부 측은 1975.7.1. 성명을 통해 태국과의 외교 단절을 발표하고 주태국대사관 업무 중단, 주태국 대만대사는 6.28. 기자회견시 외교관계 단절 후 양국간 무역, 문화 및 교통 등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
- 미 국무부의 대외적 논평은 없으나 담당관은 비공식 견해임을 전제로 태국의 중국 접근은 인도차이나 사태 변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인접 공산국가와의 관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인구의 1/10을 점하는 대만계 국민의 경제력은 국내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4. 평가

- 중국은 태국과의 수교로 중국 남부지방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남아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증가
- 태국은 금번 수교로 일단 중국 및 인접 공산세력의 위협을 경감시키는 한편, 국내 공산 게릴라(8천여 명) 활동에 대한 동 국가의 지원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보적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협의 등 대미관계도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83 / 3 / 1-93

1. 1975.8.24. 워싱턴포스트지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 기관지 Kommunist지가 최근호에서 중국을 신랄히 비난하는 1만5천 자에 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보도함.

- Kommunist지는 모택동주의와 그의 정책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다같이 위험한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국가도 중국의 반사회주의적 운동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모택동주의 타도를 요구
- 워싱턴포스트지는 동 비난이 연말 개최 예정인 유럽공산당대회에서 만장일치에 의한 모택동주의 비난을 겨냥하면서 이러한 소련의 목표에 비협조적인 유고와 루마니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2. 1975.10.8. 주프랑스대사관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0.8. 르몽드지는 키신저의 중국 방문이 포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비한 것이며, 동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중국당국은 양국간 관계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접촉유지에 의의를 둘 것이라는 관측 기사를 게재
- 한편, 중국을 방문중인 Bijedic 유고 수상을 위한 10.6. 연회에서 등소평 부수상이 소련을 지명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가 평화를 찬양할 때에는 전쟁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된다고 소련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자 7개국(소련,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동독 등) 대사들은 퇴장한 반면, 북한을 비롯한 루마니아, 쿠바, 알바니아 대사 등은 남아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동지는 보도

3. 1975.12.29.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중국의 소련 승무원 석방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2.29. 주재국 주요 일간지는 12.28. 북경발 로이터통신을 인용, 1974.3.14. 중국 서북방 신강성에서 생포되어 간첩활동 혐의로 억류되어온 소련 헬리콥터 승무원 3명을 12.27. 중국이 석방한 것은 냉각된 중국·소련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닌지 서방 측은 억측하고 있다고 보도
- 한편, 12.29. 대만 신생보는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에 관한 회고라는 시사해설을 통해 미국, 소련, 중국 간의 불안정성은 언제든지 변화하거나 균형을 상실함으로써 심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므로 미국이 만일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한다면 중국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

75-0180

미국·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동북아2
MF번호	C-83 / 4 / 1-66

1. 1975.2.7. 주미국대사관은 미국의 대중국 관계개선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George Bush 북경 주재 미국연락사무소장은 정무협의를 마치고 2.6. 북경으로 귀임한바, 금일 워싱턴포스트지는 Bush가 미국이 대중국 관계개선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했으며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동인과의 회견을 일부 인용하여 보도
- 미국은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포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입장에 관해 철저한 보안을 취하고 있으며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Bush가 금번 귀국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요청한 바 있다고 함.

2. 주미국대사는 1975.4.14. William Gleysteen 미 국무부 극동담당부차관보와 면담하고 Albert 하원의장의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하여 문의한바, 동 부차관보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 국제문제에 관한 중국 측과의 대화는 광범위한 것이어서 한국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 월남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동하는데 대해 중국 측은 다소 당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중국은 월맹의 공격을 중지시키기가 어려우므로 마지못해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3. 주영국대사관은 1975.8.8. US Group of China's Wish to Avoid Korean War 제하 The Times지 북경특파원의 8.7.자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중국은 방중 미국 의회대표단에게 중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

4. 주미국대사관은 1975.9.5. Robert Byrd 미국 상원의원이 9.4. 본회의에서 1975.8.20.~30. 미국 의원단의 중국 방문 결과에 관한 보고 연설을 하면서 등소평 부수상, 고관화 외상과 각각 2시간동안 회담을 하고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기타 관리들과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중국은 Superpower를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구 자유중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영토의 점령이나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은 경제발전에 주력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발전시킬 것임.
-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영토보전 등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 소련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신감을 갖고 있으므로 중국·소련 분쟁이 지속하는 한 중국이 미국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우려할 필요가 없음.

Ford, Gerald R. 미국 대통령 중국(구 중공) 방문, 1975.12.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동북아2
MF번호	C-83 / 5 / 1-314

1. 주미국대사관은 1975.11.13. 백악관 대변인이 동일 포드 미국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12.1.~5.), 필리핀(12.5.~6.) 방문 일정 등을 발표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75.11.19. 상기 중국 방문 관련 아래 요지의 박정희 대통령의 포드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금번 유엔총회에서 우방 측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 공산 측 결의안을 동시 채택함으로써 변칙적 사태를 야기하게 한 것은 극히 유감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여하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전쟁재발 방지를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법적문서인 휴전협정은 계속해서 준수되어야 함. 이에 대한 대안이 직접 당사자 간에 마련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될 수 없다고 생각
- 중국 방문에 즈음하여 중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입장, 특히 휴전협정 보전을 위한 대안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길 요망

3. 포드 대통령은 1975.12.1.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어떤 협상에서도 한국 배제를 수용할 수 없음을 중국 측에 분명하게 할 것이라는 요지의 박정희 대통령 앞 답신을 전달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75.11.29.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동일 오후 포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아래 요지로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금번 방문은 지정학적 측면, 관계 정상화 측면, 양자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바, 특히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측면이며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중국 측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방문의 주목적임.

5. 1975.12.8. 외무부 미주국 작성 포드 대통령의 중국 일정과 성과분석 자료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일정
  - 동경 기착 및 미야자와 일본 외상과 공항라운지에서 1시간동안 회담, 북경 도착, 주덕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장 면담, 등소평 부수상 주최 환영만찬(12.1.), 등소평과 1차회담, 모택동 주석 면담(12.2.), 등소평과 2차회담(12.3.), 등소평과 3차회담(12.4.), 출발(12.5.)
- 모택동과 1시간50분, 등소평과 총7시간의 회담을 통해 광범위한 국제 문제와 쌍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추측되며 한국 문제, 동서화해 문제, 대만 문제, 양국관계 정상화 문제, 무역통상확대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봄.

75-0182

Kissinger, Henry 미국 국무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1975.10.19.-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동북아2
MF번호	C-83 / 6 / 1-266

1975.10.19.~23.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구 중공)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1975.11월 하순으로 예정된 포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 양국간 제반 문제 협의

2. 방문 일정

- 교관화 외상 주최 만찬(10.19.), 등소평 부수상과 1차, 2차 회담(10.20.), 등소평과 3차 회담, 모택동 면담(10.21.), 등소평과 4차 회담(10.22.), 동경 도착(10.23.)

3. 주요 토의의제

- 미군 철수 후의 동남아 정세, 한국문제, 대만 문제, 동서화해 문제 등 국제 문제, 미국·중국 관계개선 문제 등

4. 회담 결과

- 양측은 상기 의제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했으나 북한문제, 남북한 및 남북월남의 유엔 가입문제에 관한 종래의 태도를 변경시키지 않았으며, 동서화해문제를 위요한 이견도 접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모택동 주석 면담
  - 키신저 장관은 모택동과 1975.10.21. 전격적으로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가진 바, 모택동은 소련은 서구와 아시아에서 침략적이며 소련과의 화해는 미국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미국의 대소련 화해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함.
- 등소평 부수상과의 회담
  - 등소평과 4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동 회담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비밀에 부쳐져 있음.
- 회담 결과에 관한 키신저 장관의 발언
  - 중국이 미국의 세계정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필요성을 인식, 미군의 아시아 주둔에 반대하지 않고 있음(10.24., 워싱턴).
  -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없었으며 자신이 제안한 남북한 및 미국·중국 등 관계 당사자회의는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음(10.23., 동경).

5. 1975.10.24.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기착한 키신저 장관은 10.23. 미야자와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가짐,

- 동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결의를 둘러싼 북한과의 접촉이외 키신저 구상의 포럼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동 장관은 이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언급함.

75-0183

필리핀·쿠바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3 / 7 / 1-11

1975년 중 필리핀·쿠바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필리핀대사관은 1975.8.25. 주재국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가 금일부터 3일간 예정으로 대통령 특사로서 쿠바를 방문하며, 금번 방문으로 필리핀은 1961년 단교된 쿠바와의 외교관계 재개 및 국제설탕 문제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주필리핀대사관은 1975.8.28. 이멜다 여사가 8.27. Osvaldo Dorticos 쿠바 대통령 및 카스트로 수상과의 면담에서 양국간 국교 재개를 합의하였으며, 동 수상은 환영 만찬에서 쿠바는 필리핀에 어업 및 광업분야에 관한 기술을, 필리핀 측은 미곡생산 및 농업현대화기술을 쿠바에 상호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특히 필리핀의 경우 군사기지 임대에 명확한 사용기한이 있으므로 쿠바의 경우(Guantanamo 미 해군기지)와 비교하여 보면 다소나마 유리한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미국은 1900년초 협정에 의해 Guantanamo 해군기지 설치권을 획득했으나 당시 협정에 기지 사용에 관한 기한이 없었으며 쿠바가 일방적으로 동 협정을 폐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필리핀이 다소나마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

미국·쿠바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3 / 8 / 1-26

1. **주미국대사관은 1975.2.20. 주유엔 쿠바대표부 직원들에 대한 여행제한 범위가 종래 뉴욕시로부터 25마일 반경이던 것이 250마일로 확장되었다고 보도된 2.18. 주재국 언론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유엔 쿠바대표부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현재 25마일 제한을 받고 있는 공산국가는 알바니아와 북한뿐임.

2. **주미국대사관은 1975.3.2.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3.1. 휴스턴 Combined Service Club 오찬 연설에서 4월 남미국가 순방시 남미국가와 대쿠바 봉쇄조치 해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며 OAS(미주기구)에 의해 대쿠바 봉쇄조치가 해제되면 미국은 쿠바와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1975.5.9. 카스트로 쿠바 수상은 5.7. 쿠바를 방문 중인 맥거번 미국 상원의원 수행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대쿠바 봉쇄가 해제된다면 미국과 관계개선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봉쇄해제의 첫 단계로 의약품 및 식량에 대한 봉쇄해제를 요망한다고 언급함.**

4. **1975.8.21. 미국 정부는 1964년 이래 취하여온 쿠바를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 소속국가에 대한 원조금지 등 대쿠바 금수조치의 일부를 완화함.**
   - 국무부 당국은 상기 조치는 OAS의 대쿠바 금수해제에 상응하는 조치이며 미국의 대쿠바 정책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쿠바 간의 직접거래금지는 계속 유효함을 밝힘.
   - New York Times지는 사설을 통해 쿠바가 동결하고 있는 18억 달러의 미국재산문제 해결, 카스트로의 대미국 비난 선전중지 등을 하지 않는 한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는 가까운 장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표명

75-0185

이집트·리비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3 / 9 / 1-12

1975년 중 이집트·리비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75.4.17. BBC 방송에 의하면 리비아는 이집트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고 하였으나, 주재국에서는 하등의 보도가 없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1975.4.18. 주재국 Egyptian Gazette가 이집트·리비아 관계 악화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보도함.**
   - 이집트 정부는 리비아가 트리폴리 주재 이집트연락사무소장을 통해 제출한 항의가 불순한 언사와 국교단절을 위협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다고 코뮤니케를 발표, 리비아에 통고
   - 리비아 측의 항의서는 4.14. 제시되었는바, 사다트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고 양국간 국교단절 및 리비아에서 건설업에 종사중인 이집트 노동자에 대한 위협 등 포함

3. **1975.4.22. 이집트 언론은 가다피 대통령이 서부 사막지대 베두인으로 하여금 이집트에 대항하여 사보타지 내지 무력행사를 하도록 조작하는 목적으로 11백만 이집트 파운드를 할당하였다고 보도함.**
   - Wafia 주재국 의회 청원위원회 위원장은 4.20. 리비아 정보기관을 통해 입수된 동 사실을 발표

4.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75.10.11. 그간 악화일로에 있던 이집트와 리비아 및 시리아의 관계는 Confederal Assembly에 의한 작용으로 호전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이집트, 리비아 및 시리아로 구성되는 Confederal Assembly는 10.10.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동 의회대표단이 상기 3개국 대통령을 각각 면담, 협의한 내용 및 대표단 보고서를 검토하고 동 의회가 아랍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일치
   - 상기와 같은 움직임은 계속 악화되고 있던 이집트·리비아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시나이협정 체결 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시리아의 대이집트 태도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와해 직전에 처해있던 아랍내부의 단결문제가 다소 호전되는 징조라고 평가

이집트·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3 / 10 / 1-19

1975년 중 이집트·소련 간의 관계 동향에 관한 주카이로총영사관의 보고내용임.

1. 그로미코 소련 외상의 1975.2.3.~5. 이집트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1975.2.10.)

- 그로미코 외상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 주재국 외상과 2차에 걸친 회담을 갖고 공동코뮤니케 발표
  - 동 공동코뮤니케에는 소련이 대이스라엘 침략 저지에 있어서 아랍을 지지할 것과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평화회담 즉각 개최 등 종전의 주장을 반복한 것 이외에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로미코 외상은 도착성명에서 소련·이집트 관계 긴밀화를 위해 양국 고위층에 의한 솔직한 의견교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스라엘군의 점령 아랍영토로부터의 철수 만이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는 소련의 종전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
- 양국 외상은 2.3. 영사협정, 경제계획에 관한 협력협정 및 문화교류협정 등 각각 서명
- 사다트 대통령은 2.4. 동 외상과 약 4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담 후 기자단에게 아래와 같은 요지로 언급
  - 양국 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17. 이집트 경제사절단을 소련에 파견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함.
  -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의 카이로 방문을 기대하며,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2.12. 카이로를 방문할 예정
- 관찰
  - 금번 소련 외상의 방문은 주재국의 대소련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키신저 장관의 카이로 방문에 따른 이집트의 대이스라엘 개별협상 수락을 배제하고 시리아, 요르단 및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의 공동보조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집트는 소련제 무기 공급을 원하나 소련 측이 제시한 조건(제네바회담 즉시 개최 및 소련 군사고문단 접수)을 거부함으로써 동건 진전 별무

2. 사다트 대통령은 1975.9.15. 아랍사회주의연맹 간부들에게 아랍 단결에 관해 연설하는 가운데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난하고 소련 MIG-25 4대의 철수를 이집트 정부가 요구했다고 처음으로 밝히면서 지난 13일부터 철수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함.

75-0187

이집트·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3 / 11 / 1-22

1975년 중 이집트·미국 간의 관계 동향에 관한 주카이로총영사관의 보고내용임.

1. 아랍의 석유생산 국가들이 공업화된 세계의 파멸을 기도할 경우 미국은 아랍 산유국들에 대해 군사개입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성명에 대해 이집트 공보장관은 1975.1.7. 기자회견에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키신저 장관의 성명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과 아랍국가와의 관계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집트는 아랍국가에 대한 침략을 전체 아랍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겠으며 또한 유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알제리 대통령의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함.

2.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75.5.5.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1975.6.1.~2.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포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금번 정상회담은 사다트 대통령이 이집트와 관계가 깊은 주요국 정상과 일련의 회담이 끝난 후, 또한 포드 대통령의 5.22. 단계적 해결방안 실패 후 미국 외교정책 재평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중동 사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3. 주미국대사관은 1975.10.30. 미 국무부가 배포한 사다트 대통령의 하기 미국 방문일정과 Washington Post지 기사 등 동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언론기사를 외무부에 송부함.

- Williamsburg 방문(10.26.), 포드 대통령과 면담, National Press Club 주최 오찬, 록펠러 부통령 면담, 포드 대통령 주최 만찬(10.27.), Schlesinger 국방장관 접견, 포드 대통령과 회담, 키신저 국무장관 주최 오찬, 워싱턴시장의 행운의 열쇠 증정, 사다트 대통령 주최 답례만찬(10.28.), 뉴욕 향발,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면담, 유엔총회 연설, 유엔사무총장 주최 오찬 등(10.29.), GM 회장, 뉴욕시장 등 면담, 시카고 향발, 시카고시장 주최 만찬(10.30.), 휴스턴 향발, NASA Space Center 시찰 등(10.31.), 플로리다 향발 및 개인일정(11.1.~3.), Camp David 도착(11.4.), 상·하 양원연설, 미 의회 주최 오찬, 런던 향발(11.5.)

프랑스·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구주1/구주3
MF번호	C-83 / 12 / 1-41

1975년 외무부 구주국에서 작성한 프랑스·소련 정상회담에 관한 업무자료의 주요내용임.

1. 지스카르 프랑스 대통령은 1975.10.14.~18. 소련을 공식 방문하여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선언 및 협정 체결을 발표

- 양국 정상은 전반적인 양국 공동관심사에 관한 합의사항이 수록된 프랑스·소련 우호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에 서명
- 양국 외상 간의 항공협정, 관광협정, 프랑스 공업상과 소련 각료회의 부의장 간의 에너지협정에 각각 서명

2. 정상회담 결과 분석

- (구주안보회의 결과) 양측은 구주안보협력회의 결과를 구주국가 간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동 안보회의 최종문서의 이행 의사를 확인하고 동 회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쌍무적 협정방식을 포함한 상호협력에 응할 용의 표명
- (군비축소) 양측은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감시하의 핵군비 축소를 포함하는 일반적 및 완전한 군비축소 실현에 기여할 결의를 확인하고 전 핵보유국이 참석하는 군비축소에 관한 세계회의 소집에 찬성
- (중동 문제) 중동의 평화정착을 위해 이스라엘의 1967년 전쟁 시 전 점령지역에서의 철수, 팔레스타인의 권리보장 등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합의
- (인도차이나 문제) 인도차이나반도의 평화회복에 만족 표시 및 남·북 월남의 유엔기구 가입 지지
- (사이프러스 문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사이프러스에 대한 유엔결의 이행 촉구 등

3. 정상회담 결과 평가

- (긴장완화 문제) 1975.10.14. 만찬석상에서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국제 긴장완화가 결코 이념간의 경쟁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군사면의 대립 해소를 주장한 반면, 지스카르 대통령은 군사면의 대립 해소뿐만 아니라 이념면에서의 화해도 강조함으로써 양국의 긴장완화에 대한 견해 차이를 노출
- (군비축소 문제) 전 세계의 핵보유국이 참석하는 군비축소회담이 아닌 현행 군비축소회담 및 핵비확산조약에 프랑스를 참석시키고자 한 소련의 노력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양국 우호협력선언에도 반영
- (경제기술협력) 상기와 같은 정치적 분위기에도 불구, 금번 소련 방문을 통해 약 25억 프랑(약 6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앞으로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

75-0189

일본·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구주3
MF번호	C-83 / 13 / 1-82

1975년 중 일본·소련 간의 관계 동향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일본·소련 외상회담 결과 등에 관한 보고(1975.1.20.)

- 양 정부는 1.18. 미야자와 일본 외상과 그로미코 소련 외상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공동발표를 행하였으나 공동발표에 포함될 내용의 표현을 둘러싸고 쌍방이 대립, 결국 미야자와 외상이 귀국 후 발표
  - 이러한 이례적인 사례는 일본·소련 평화조약 체결교섭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양국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서 미야자와 외상이 교섭벽두부터 북방영토의 일괄반환을 주장한데 대해 소련은 현실적 처리, 즉 현상고정론을 주장
- 그러나 쌍방이 평화조약을 조기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교섭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였다고 명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교섭계속이 양측간에 확인된 것으로 일본측은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로미코 외상의 방일을 1975년에 실현하기로 합의하는 동시 양국 최고수뇌간의 대화 유지를 강조한 것 등이 금번 교섭의 성과

2. 미야자와 외상의 중의원 예산위 발언에 관한 보고(1975.1.31.)

- 동 외상은 1.30. 중의원 예산위에서 그로미코 외상과의 회담 시 소련 측이 아시아집단안보구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일본 측의 지지를 촉구하면서 일본과 우호친선조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제안하였다고 밝힘.
- 소련 측 제안에 대해 동 외상은 동 제안이 북방영토 문제를 미루려는 획책이라고 판단,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함.

3. 주일본 소련대사의 미키 일본 수상 면담에 관한 보고(1975.2.14.)

- 트로야 노브스키 소련대사는 2.13. 미키 수상을 방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친서를 전달
  - 동 친서는 지난 1월 미야자와 외상의 소련 방문 시 휴대한 미키 수상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앞 친서에 대한 회답친서로서 평화조약 교섭을 계속하면서 선린협력조약 체결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안
- 미키 수상은 동 제안에 대해 일본 측으로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한 위에 선린협력조약이 아닌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선린우호관계의 기초를 굳히고자 한다고 반론, 동 제안을 거부

4. 미야자와 외상의 참의원에서의 발언에 관한 보고(1975.2.14.)

- 2.13. 참의원 외무위에서 도가노 사회당 의원은 상기 외상회담 시 그로미코 외상이 평화조약 체결 관련 힘에 의한 위협의 배제, 제3국에의 영토제공 금지, 양국의 국익에 반하는 제3국의 움직임 불허용 등 3개 원칙을 제시한 것이 사실인지 문의한데 대해 미야자와 외상은 회담 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밝힘.

75-0190

미국·일본 정치이사회 설립 추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6-96 / 2 / 1-9

1. 1975.10.16. 동경 AFP는 최근 유럽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 일본대표로 참석하고 미국을 경유하여 귀국한 나카오 에이이치 일본 자민당 의원에 따르면 일본·미국 양국 소장파 의원들이 빠르면 내년 봄에 동경이나 워싱턴에 모여 극동지역의 방위, 핵에너지 개발, 자원문제 등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며 또한 양국 소장파 의원들로 정치이사회(Political Council)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경위 등을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5.10.21. 주일본대사관 윤 공사가 나카오 에이이치 의원을 만나 문의한 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의원은 하워드 베이커 미국 상원의원, 자브로스키 미국 하원의원 등을 각각 만나 특히 한국의 안보가 극동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고 극동 문제에 있어 한·미·일의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미국 측 의원들은 동감을 표시
- 이에 따라 동인은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는 미국·일본 국회의원들이 정치이사회를 형성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미국 측은 찬성하고 하워드 베이커 의원이 미국 측 창구가 되어 추진할 것에 합의
  - 밸런스 있는 외교추진에서도 동 이사회의 역할을 갖게 하려고 하며 이런 경우 이사회에서 양국 의원 간 의견교환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나가려는데 동 이사회의 형성 목적이 있다고 강조
  - 우선 양측 국회의원 각각 60~70명 정도로 구성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
- 동 의원은 이러한 이사회를 통해 미국, 일본의 그릇된 여론도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한국에 관한 미국 여론은 일부 신문, 학자 등으로부터 많은 그릇된 영향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협의가 건전한 여론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언급

3. 주일본대사관은 1976.2.24. 나카오 에이이치 의원이 동일 윤 공사에게 이사회 사무국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Victor Johnson 교수가 2.26. 방한, 약5일간 체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교수의 체한 중 정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와의 면담 주선을 건의함.

미끼(三木武夫)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75.8.5.-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북미1
MF번호 C-83 / 14 / 1-310

미키 일본 수상이 1975.8.5.~6. 미국을 방문함.

1. 포드 미국 대통령과 미키 수상은 1975.8.5.~6.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및 공동언론발표(Joint Announcement to the Press)를 행함.

- 공동성명서는 모든 국가가 상호 협력하여 나가야 할 제반 원칙을 선언하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언론발표는 양국간 논의, 합의된 사항을 하기 제목별로 기술
  - 양국간 협력체제 재확인, 연2회 외상회의 개최,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발전
  -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아시아 정세검토, 전략무기제한협정 체결노력, 핵확산 방지조약에의 기여, 국제경제 질서에의 공헌, 국제적 개방무역 추구, 개도국에 대한 원조 등
-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아시아 정세 검토부분 중 한국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
  - 양 정상은 한국의 안전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며 이것은 또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필요한 것임에 의견일치
  - 양 정상은 동 평화유지를 위해 현존 안전보장상의 제반 약정의 중요성에 유의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관련 양 정상은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현 휴전이 보존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희망
- 상기 언급된 한국 관련 사항 검토의견
  - 1969년 미국·일본 공동성명의 한국조항에비해 한국문제 부분이 길어졌고 그 내용도 다양하며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종래 한국 정부에 말하여 오던 바를 재천명한 것임.

2. 미키 수상은 1975.8.7. National Press Club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일본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진전을 강력히 희망하며, 이 지역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 안전에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상태로서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주둔은 한국의 평화와 아시아 안정에 대한 중대한 기여로 보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믿는 바임.

3. 일본 야당의 반응

- (1975.8.7. 사회당 성명) 일본은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에 대한 협력 확인, 특히 미국·일본 협력의 이름하에 핵 반입을 용이하게 하고 일본의 방위분담을 구체화, 한국조항을 사실상 확인하여 박 정권에 대한 일방적 가담 강화를 약속

● (8.7. 공산당 정책위원장 담화) 정상회담은 대미종속을 미화, 한반도 문제에서는 한국조항의 새롭고도 중대한 확대, 특히 중대한 것은 수상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높이 평가하고 위험한 핵전략에 일층 깊게 가담할 것을 서약

일본·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북미1
MF번호	C-83 / 15 / 1-33

1. 외무부는 1975.2.27. Jacob Javits 의원 외 32명의 상원의원이 2.26. 미국·일본 우호법안(US-Japan Friendship Act)을 제안했다고 하는 워싱턴발 AP통신보도에 대해 주미국대사관에 동 법안 제안 경위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은 1975.3.7. 동 법안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1970.6월 서명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불하기로 된 대미국 보상금을 양국간의 문화교류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뜻의 법안을 1972년 Javits 의원이 제출한바, 동 법안은 1974.6월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하원에서는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동 법안을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으므로 동 의원이 금번 동 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임.
- 동 법안의 주요골자
  - 오키나와 반환 보상금 3억 2천만 달러의 10%로 특별기금을 설치, 양국간 학문, 예술 및 기타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
  - 동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감독을 받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기관인 미국·일본 우호위원회(US-Japan Friendship Commission) 설치 등
- 미국 행정부는 상기 보상금을 현재 양국간에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계획에 편입시킬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1972년 제안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부결되었다고 하며, 동 의원 보좌관에 의하면 동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고 Edwin O. Reischauer 교수 등 미국 내의 일본학 권위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 내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75.6.19.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6.18. 뉴욕 일·미 협회에서의 연설에 대한 주재국 언론의 논평요지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미국에 있어 일본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설명한 것이 특히 주목되며 양국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으로 평가
- 한국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과 아시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외에 한국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월남전 후 이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 깊으며 금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중점을 한반도에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75-0193

히로히또(裕仁) 일본 천황 미국 방문, 1975.9.30.-10.13.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동북아1/북미1
MF번호	C-83 / 16 / 1-28

히로히토(裕仁) 일본 천황이 1975.9.30.~10.13. 미국을 방문함.

1. 주미국대사관은 1972.11.24. 닉슨 미국 대통령의 1973년 중 일본 방문설에 대해 현지 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 탐문한바, 일본 측은 일본 천황의 미국 방문이 닉슨 대통령의 일본 방문보다 선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아직도 취하고 있으나 미국 측이 동 대통령의 방일을 먼저 원할 경우에는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4.2.14. 동일 오히라 일본 외상이 2.13.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일본 천황 부부의 방미와 닉슨 대통령의 방일에 관해 지난 8월의 미국·일본 공동성명서를 재확인하였으며, 외무성에서는 천황 부부의 방미는 빠르면 금년 9월 또는 내년 봄으로 보고 동 대통령의 방일은 9월, 11월 하순으로 보고 있다는 일본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를 보고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75.2.27.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동일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포드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975.10.2.~13.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4. 주일본대사관은 1975.2.28. 일본 정부가 동일 각의에서 천황 부부의 방미(10.1. 출발, 워싱턴에서의 공식 일정 포함 2주간 미국에 체재할 계획)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미키 일본 수상의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공산당의 무라카미 국회대책위원장은 동일 기자회견에서 동 방미가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공산당은 이에 반대한다고 밝힘.
   - 사회당, 공명당은 천황 방미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경계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관하는 상태이며, 민사당은 동 방미를 적극 찬성하는 태도

일본·월맹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3 / 17 / 1-33

1. 주일본대사관은 1975.3.7. 일본 외무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본 측은 하노이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월맹 측과 합의하였으며, 동 개설일자는 4.1.로 예정하고 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 제2차 세계대전 배상처리문제, 월남혁명정부 처우 등에 관한 이견으로 대사관 설치가 지연되어 왔으나 월맹에 대한 50억 엔의 배상 문제가 타결되면서 급물살을 탐

2. 주일본대사관은 1975.4.4. 요미우리신문 석간의 방일중인 월맹경제사절단의 동정 등에 관한 보도를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사절단 단장(외무성 아시아1국장)은 4.3. 미야자와 일본 외상을 방문, 약 40분간 요담
- 동 석상에서 미야자와 외상은 월남 사태에 대해 다수의 난민이 생기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며 파리협정에 따른 민족자결원칙에 입각,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동 단장은 월맹은 일관하여 파리협정을 존중하고 있으나 미국과 티우정권이 동 협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사이공에 동 협정을 존중할 정권이 새로 나타난다면 월남임시혁명정부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3. 주일본대사관은 1975.10.2. 일본 조간보도에 의하면 일본과 월맹 간 교섭 중이던 대월맹 무상경제협력과 주하노이 일본대사관 개설문제에 관해 양측은 10.1. 최종적 합의를 보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가체결되었으며, 10.9. 각의에서 정식 결정이 있은 후 10.11. 대사관을 개설하고 동일 하노이에서 85억 엔에 달하는 무상협력협정의 체결이 있을 것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 이번 합의된 85억 엔의 원조는 금년도분으로서 내년도분과 합한 총액은 구 월남 정부에 공여한 130억 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며 건설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상품원조가 될 것이라고 함.

75-0195

튀니지·리비아 통합 노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3 / 18 / 1-8

주튀니지대사관의 1975.4.3. 가다피 리비아 혁명위원회 의장의 튀니지 방문에 대한 분석 관련 보고내용임.

1. 가다피 리비아 의장의 튀니지 방문

- 동 의장은 부르기바 튀니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1975.3.25. 튀니지 방문
- 튀니지 정부는 동 방문 48시간 전에 갑자기 발표하였고, 회담 결과에 관한 공식성명도 없이 끝남으로써 동 방문 동기 및 결과에 대해 다양한 억측 초래

2. 관련 소식통을 종합해본 상황분석

- 리비아는 1974.1.8. 제르바에서 양국 정상간 서명된 통합 합의의정서에 대한 튀니지 측의 성의 있는 이행(즉,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 설치 등)을 촉구하여 왔으며, 튀니지 국회가 부르기바 대통령의 종신 대통령 추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서두르면서도 국민투표 조항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는 등 리비아를 따돌리는 결과에 자극을 받은 가다피 의장이 자신의 방문을 튀니지 측에 제의했다고 함.
  - 통합문제로 당시 마스무디 튀니지 외상 일파가 국가반역죄로 국외 망명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통합 반대파인 Nouira 튀니지 수상이 부르기바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등 튀니지는 통합의정서를 백지화하려고 함.
  - 당초 가다피가 노린 것은 연로한 부르기바가 은퇴하면 소위 아랍회교공화국(통합시 국명)을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것이었음.
- 상기 튀니지 방문 제의에 대한 튀니지 측의 회답도 없으므로 리비아 측은 양국 국경선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3.15. 동 의장의 튀니지 방문을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당혹한 튀니지 측은 동 의장의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히고 급히 초청형식을 취했으며 방문 시기는 3.25. 이슬람교 축제일로 잡아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가급적이면 국제적 이목을 끌지 않도록 배려하였다고 함.

3. 부르기바 대통령의 이탈리아 신문과의 기자회견

- 동 대통령은 가다피의 튀니지 방문 직전 이탈리아 신문과의 회견에서 국민투표 없이는 통합을 할 수가 없는바,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하나 헌법 개정을 다룰 국회는 통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명

미국·몽골 관계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83 / 19 / 1-7

1. 주미국대사관은 1973.6.6. 로저스 미 국무장관이 6.5.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몽골과의 관계개선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 한편, 동일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고위관리와 주유엔 몽골대표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협상이 지난 수개월동안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미국은 케네디 및 존슨 행정부때 몽골을 승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대만(구 자유중국)의 항의를 받고 동 시도를 중지한 바 있으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구 중공)과의 연락사무소 상호설치가 닉슨 미국 행정부로 하여금 몽골과의 회담을 촉진하게 되었다고 언급
- 미국은 미국·몽골 간 협상진전에 관해 중국 및 대만에 각각 통보했으며 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였으나 공식적인 항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

2. 주인도대사는 1974.9.17. 멕시코 국경일 리셉션에서 만난 주인도 몽골대사대리가 몽골이 자국의 유엔대표부를 통해 지난 1년반에 걸쳐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을 해왔으며 내년 초에는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대사대리는 중국과는 1962년에 체결한 국경문제에 관한 조약이 있으나 요즈음도 사소한 국경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언급

75-0197

파키스탄·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3 / 20 / 1-17

1.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75.2.6. 주재국 부토 수상 내외가 1975.2.4.~6. 미국 공식 방문을 위해 외무국방담당 국무상 등 40명의 수행원을 대동, 2.3. 출발하였음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부토 수상은 2.1. 출발에 앞서 주재국내 외신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제3세계에 속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만을 위해 모든 양국간 및 국제문제에서 미국 입장에 동조해 오지만은 아니하였으며, 특히 월남과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문제와 유엔에 있어서는 미국과 상이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그것이 양국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가져온 바는 없다고 밝힘.
- 또한, 동 수상은 금번 방미를 계기로 주재국 최대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무기원조 금지해제 요청과 관련하여 미국의 금지해제가 자국의 구매능력만 보더라도 결코 지역 내의 세력균형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을 것이며 해제되는 경우 파키스탄으로서는 첫 단계로 노후무기 대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언급
- 이와 관련, 비공식으로 접한 정보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미국에 대해 무기원조 재개를 조건으로 이란과의 국경에 인접해 있는 Gwadar 항구를 중심으로 한 아랍해 연안에 해·공군기지 제공을 재론하게 될 것이라는 설도 존재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75.2.13. 부토 수상의 방미결과 등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3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 후 2.10.부터 루마니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부토 수상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정치인의 피살사건으로 루마니아 방문을 취소하고 2.10. 급거 귀국
- 2.7. 발표된 양국간 공동성명에서 포드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독립과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는 미국 대외정책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밝힘.
- 경제원조에 있어서 미국은 이미 1974.11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시 합의된 10만 톤 소맥에 추가하여 30만 톤의 소맥원조를 약속
- 무기원조 재개문제와 관련, 양측간 회담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이에 할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동성명에는 상호 안전보장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 사항은 밝혀진 바 없음.
- 상기 군사기지 제공설과 관련, 동 수상은 명백하게 이를 부인

3.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75.2.24. 동일자로 대파키스탄 및 인도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은 동 조치로 인도대륙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거나 군비경쟁을 자극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언급함.

- 동 대변인은 금수조치를 해제하였으나 현금으로만 무기를 판매할 것이며 무상군사원조 형식이나 credit베이스로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사우디아라비아·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중동
MF번호	C-83 / 21 / 1-7

1. 미국 정부는 1975.1.9. 사우디에 대해 60대의 F-5 항공기 및 동 항공기 조종훈련 등 총7억5천만 달러어치를 판매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함.

- 미 국무부 대변인은 동 판매가 사우디의 합법적인 방위 소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동지역 정세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 판매조치가 이란 등 걸프만 지역에서 사우디의 경쟁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이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동 계약에는 제3국에 대한 무기이전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바, 이는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장비를 이집트 등 아랍국가에 이전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함.
  - 사우디는 이집트가 프랑스로부터 38대의 Mirage 항공기를 구입하는데 사실상 중계 역할을 한 바 있음.
- 미국과 사우디 간에 설치된 합동군사위원회는 사우디의 군사장비 소요를 검토하여 장비현대화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사우디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1975.6.16. 최근 미국 회사의 대사우디 무기거래와 관련, 대리인을 통한 사우디 국방부 관리에 대한 수뢰의혹사건을 미국 언론이 보도한데 대해 사우디 국방부 측은 동 사건 진상을 조사 규명하기로 발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199

사우디아라비아·중동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3 / 22 / 1-76

1975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중동 간의 관계 동향임.

1. 1975.1.21. 주카이로총영사관은 화이잘 사우디 왕의 이집트 방문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화이잘 왕은 1.19. 아스완에 도착,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한 후 1.20. 출발
  - 동 방문에는 Abdel Aziz 부수상 겸 내무상 등 수행
-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이집트 측 발표문중 특기사항
  - 양 정상은 점령당한 아랍 영토와 예루살렘 성지를 아랍 공동의 적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자원과 힘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
  - 레바논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공격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레바논을 지원할 것에 합의
- 헤가지 이집트 수상이 밝힌 바에 의하면 사우디는 금번 방문을 계기로 이집트 국민의 생활고를 완화시키는 명목으로 1억 달러를 이집트에 지원하기로 약속
- 화이잘 왕은 이집트 방문에 앞서 시리아 및 요르단을 방문하여 아랍 단결을 강조한 바 있음에 비추어 금번 방문은 최근 급진전하는 사태변화에 대비하여 아랍국가 간에 보조를 일치시키고 아랍권의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제네바평화회담에 임하는 아랍 측의 입장을 정돈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1975.12.8. 주사우디대사관은 Fahd 사우디 황태자의 이집트 방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Fahd 황태자겸 제1부수상은 1975.12.3.~5. 이집트를 방문, 사다트 대통령과 2차례 회담
- 주재국 신문들은 금번 이집트 방문 목적이 지난 9월 이집트·이스라엘 간의 잠정평화협정 체결 이래 악화된 이집트·시리아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 제네바 중동평화회담에 대처한 아랍국가 간의 사전 의견조정 등 아랍국가 간의 유대강화와 양국간 협력증진에 있는 것으로 보도
- 12.5. 카이로를 출발하기에 앞서 Fahd 황태자는 기자회견에서 중동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아랍국가들은 유엔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기를 바라며 중동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힘.

우간다·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83 / 23 / 1-58

1. 1974.8.23. 주우간다대사관은 아민 우간다 대통령의 신임 미국 대통령 앞 축전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아민 대통령은 닉슨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고 포드 미국 부통령이 38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데 대해 장문의 축전을 보내어 축하함.
- 아민 대통령은 동 축전에서 중동 사태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식민지의 독립 쟁취문제가 국제 정치의 쟁점임을 강조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미국 신정부가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관계 관련 전임 미국 대통령이 1973년 주우간다 미국대사관을 철수한 후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 비추어 앞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회복하여 줄 것을 부탁함.

2. 박건우 주미국대사관 서기관은 1975.3.31. Ford 미 우간다 담당관을 접촉, Oris 우간다 외상서리 일행의 미국 방문결과를 파악함.

- Ford 담당관의 언급 요지
  - Oris 외상서리 일행은 3.3. Joseph Sisco 정치담당차관 및 John Foley 동부아프리카담당 부차관보와 면담
  - 동 일행은 미 국무부 측과의 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미국대사관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미국 측은 감사하지만 아직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정도로 동 요청을 정중하게 거부
  - 아민 대통령이 동 사절을 파견한 것은 주우간다 미국대사관을 복귀시킴으로써 우간다의 위신을 높이고 또한 현재 매우 곤란한 경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원조를 획득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나, 1973.11월 주우간다 미국대사관 철수 당시 있었던 미국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감안할 때 미국으로서는 아민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서둘러 대사관을 복귀시킬 이유가 없다고 봄.
  - 최근 소련은 우간다에 대한 군사원조를 증가시키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도 있으므로 미국은 당분간 계속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것임.
- 동 담당관의 상기 언급 등으로 보아 미국의 아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주우간다 미국대사관이 복귀하거나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됨.

75-0201

미국·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83 / 24 / 1-55

1975년 중 미국·소련 간에 체결한 주요 경제관련 협정 동향임.

1. 미국·소련 통상협정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5.1.14. 기자회견에서 소련 정부가 1974년 미국 통상법에 근거한 무역관계를 수락할 수 없다고 통고해 왔다고 발표함.
  - 소련 정부는 동 통상법 조항 중 소련에 대해 MFN(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대신 소련계 유대인의 해외이민 제한을 완화하도록 명시한 부분이 1972년 통상협정의 취지와 내정불간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 협정시행 불가입장을 표명
  - 이러한 사태진전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소련 통상협정을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 각계의 반응
  - 포드 미국 대통령은 1.15. 연두교서에서 의회의 소련에 대한 MFN 조건 부여를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
  - 미국 언론은 미국·소련 간 전반적인 화해무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포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불만에 주목
  - 소련 언론은 소련 측이 동 협정에의 복귀를 희망하며, 미국·소련 간 긴장우려를 이용하여 관계조항에 대한 수정압력이 있을 것으로 관측
- 키신저 장관은 1975.2.17. 그로미코 소련 외상과 미국·소련 외상회담을 갖고, 소련 측의 일방적 폐기선언으로 사문화된 1972년 미국·소련 통상협정에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타진

2. 미국·소련 곡물협정

- 주미국대사는 1975.10.2. 미국 정부가 소련과 장기 곡물협정을 체결하고, 9월 이후 취해온 대소련 곡물수출금지 조치를 10.20. 해제했다고 보고
  - 소련은 금후 5년간(1976.10.1.~81.9.30.) 매년 6백만 톤의 소맥과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구매
  - 동 곡물협정을 체결한 주요 이유는 그동안 소련의 작황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량을 구매함으로써 곡물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
  - 동 곡물협정과는 별도로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연간 원유 및 정유 1천만 톤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3. 미국·소련 신해운협정

- 미국·소련 양국은 12.29. 1972년 미국·소련 해운협정을 향후 6년간(1976.1.1.~81.12.31.) 연장하기로 합의
  - 이는 미국이 소련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곡물수송(5년간 총 3천만 톤)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

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83 / 25 / 1-16

1. 소련·유고 정상회담 개최

- 소련 모스크바방송은 1973.9.24. 코시긴 소련 수상이 유고를 방문, 티토 유고 대통령 및 비에지치 유고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무역관계 및 기타 국제문제를 토의할 것이라고 보도함.
- 외무부의 분석
  - 비동맹 독자적 사회주의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유고는 1948.6월 코민포름에서 추방당한 것을 계기로 대소련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1955년 흐루시초프 대유고 정책개선으로 양국 관계는 호전되기 시작
  - 1971.9월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유고 방문과 1972.6월 티토 대통령의 소련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보다 긴밀화
  - 이번 정상회담 목적은 소련의 대발칸 정책의 강화를 위한 유고와의 관계 긴밀화와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 및 티토 이후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데 있을 것으로 관측
  - 특히 1970년 독일·소련조약을 필두로 동구국가가 독일(구 서독)과 관계개선을 한 이후 구주정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소련의 대발칸 정책은 보다 중요성이 대두
  - 중국(구 중공)의 대발칸 진출을 억제하는 한편, 티토 사후의 유고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유고를 소련권에 재결속시키기 위해서도 소련의 경제협력문제를 표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유고 수뇌들과의 정치적 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으로 추정

2. 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의 대소련 관계 연구자료(1975.12.4. 주오스트리아대사 송부)

- 최근 신유고연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코민포름 캠페인을 둘러싼 유고 국내 정세 및 소련의 대유고 정책 등에 관한 내용
  - Radio Free Europe(1975.11.4.) 및 기타 일간지, 공산당 일간지(1975.11.15.~12.1.) 보도내용

75-0203

미국·월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북미
MF번호	C-83 / 26 / 1-62

1975년 중 미국·월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국의 월남 자산 동결조치

- 미국 재무부는 외국자산 통제령(재무부령 제500호, 1950년 시행)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월남 자산을 1975.4.30. 동결조치
  - 동 조치로 월남 내 거주자는 재무부 허가 없이 미국은행 계좌에서 인출불가, 미국인도 월남에 송금불가
  - 부동산, 증권 및 기타은행(Nonbank) 자산도 적용
  - 유사한 동결조치는 중국(구 중공), 북한, 월맹, 캄보디아(구 크메르) 등에 대해서도 기적용

2. 기타

- 미 국무부는 프랑스 국적 Bank of America 부사장의 월맹 상공회의소 초청 하노이 방문을 비공식 허가(1975.7.19., NYT 보도)
  - 월맹 측은 상기인을 통해 미국회사와의 거래희망 의사를 표명
- 월남 잔류 미국인 현황(10.2., 주미국대사 보고)
  - 4.30. 현재 잔류 미국인은 약 90여명, 현재는 약 60여명 잔류 추산
  - 8월 Bingham 미국 하원의원이 월맹 팜반동 수상에게 월남 내 미국인 현황을 알려달라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동 수상은 미국이 대월 원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미국인 현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
- 미국인 월남 출국(10.10., 주미국대사 보고)
  - 최근 미국인 4명이 월남 출국, 사이공 당국은 동인들의 출국에 관해 언급 무
- 미국, 월남과의 우편물 취급재개(12.1., 주미국대사 보고)
  - 미국과 하노이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11.30.부터 월남과의 우편물 취급을 재개
  - 미국·월남 간 우편물 취급은 4.29. 중단된 이후 8.4.재개되었다가 9.2. 다시 중단된 바 있음. 당시 미국 측은 월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소련을 통해 미국 우편물을 월남에 송부하였으나 월남 측이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중단됨.
- 실종된 미국 조종사 유해송환(12.9., 주프랑스대사 보고)
  - Montgomery 미국 하원의원 등 사절단이 12.6. Vo Van Sung 주프랑스 월남대사와 월남전에서 실종된 미국 조종사 3명의 유해를 인도하기로 합의
  - Sung 대사는 미국·월남 관계가 독립, 주권 및 내정불간섭 기초 하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으며, 상기 유해 인도는 우호의 표시라고 언급
  - 당지 언론은 사이공 함락 후 두절되었던 미국·월남 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일보(一步)라고 보도

한·알제리 관계개선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마그레브담당관
MF번호	C-83 / 27 / 1-41

1974~75년 중 각 재외공관의 한·알제리 간의 관계개선 활동 보고임.

1. 주일본대사는 1974.6.27. 주일본 알제리대사를 면담,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알제리의 이해를 촉구했다고 보고함.

- 동 대사를 방한 초청한바, 동 대사는 본국 정부의 양해를 득하여 방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2. 주모로코대사는 1975.1.17. 알제리와의 관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세일즈맨단의 알제리 방문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 대사관 관계관이 Baghli 주모로코 알제리대사관 서기관을 접촉, 한국 세일즈맨단의 알제리 입국을 요청하는 비망록을 수교한바, 동인은 이를 알제리에 보고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 Baghli 서기관은 1.28. 알제리 정부로부터 OPEC(석유수출국기구)회의 후 분망한 일정관계로 금번 한국 세일즈맨단의 알제리 방문이 어렵겠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통보

3. 주프랑스대사 등 한국대표단은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대비 77그룹 각료회의(1975.2.15.~18., 알제리)에 참가, 대알제리 관계개선 노력 및 성과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참가 목적
  - 한국은 77그룹 회원국으로서 비동맹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제3세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회의 개최국인 알제리와의 관계개선 모색
- 대표단 활동
  - 한국대표는 1975.2.16. 알제리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연설 시행
  - 회의기간 중 대표단은 알제리 연락관을 통해 외무성 장·차관 또는 기타 책임자와의 접촉을 요청한바, 동 연락관은 구두전달을 약속
- 관찰
  - 한국대표의 연설에 대해 알제리 측 반응은 없었으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을 느낌.
  - 회의장 파견 외무성 책임자는 여건이 조성되면 양국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태도 표명
  - 알제리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외무성 당국과의 접촉은 불가능했으나, 금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알제리 관계개선 희망은 전달된 것으로 간주
- 건의
  - 비동맹국가와의 관계를 위해 77그룹에 대한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대책반 구성
  - 제3세력 특히 좌경국가에 대한 홍보, 선전기능을 강화
  - 제3세력 지도국들에 대해 외교노력을 집중
  - 알제리 체류 중 한국대표단에 대한 제한 조치에 국내신문, 방송 등에서 자극적인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할 것

75-0205

국교수립 - 미얀마(구 버마), 1975.5.16.

생산연도	1958-1975
생 산 과	경무대/동남아1
MF번호	C-83 / 28 / 1-61

한·미얀마(구 버마)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미얀마 정세보고 입수(1958.11.15.)
   - 미얀마 정부가 공산권과의 공생(共生)정책에서 벗어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분간 한·미얀마 간 영사 또는 외교관계 수립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2. 주미얀마총영사관 설치 결정(1961.9월)
   - 현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국가 중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얀마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여 동 국가와 친선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촉진

3. 한·미얀마 간 영사관계 수립 합의 발표(1962.7.10.)
   - 한국 정부는 1961.7월 한국 동남아친선사절단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와의 영사관계 수립에 관한 교섭진행
     - 1962.3월 네윈 미얀마 신정부 수립 후 교섭이 촉진되어 4.16. 양국이 정식 합의
   - 공동성명서 발표
     - 한·미얀마 정부는 7.10. 영사관계를 수립하는데 합의, 양국 정부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상대방 수도에 총영사관 설치

4. 외무부, 주랑군총영사관을 통해 대미얀마 수교제의(1973.12.26.)
   - 미얀마 외무성 정무국장은 최근 각국들이 남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정상을 참작, 분단국가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한국 측 희망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정식 외교문서 접수에 찬동

5. 주랑군총영사, 한·미얀마 외교관계 수립 전망 보고(1974.1.18.)
   - 1974.3.2. 민정이양을 앞둔 주재국의 국내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민정이양 이전에는 분단국에 대한 기본정책 변경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6. 한·미얀마 외교관계 수립 합의(1975.5.16.)
   - 미얀마 정부는 주랑군총영사를 통해 한국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해 왔으며, 한국은 이를 수락
     - 금번 미얀마 정부는 남북한 동시수교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수교를 제의한바, 북한은 종래의 단독수교 주장을 변경하고 이를 수락

국교단절 - 베냉(구 다호메이), 1975.10.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83 / 29 / 1-40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베냉(구 다호메이)정부가 1975.10.6. 각의에서 한국과의 국교단절을 결의했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급거 현지에 출장, 진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지 근무중인 한국의사 2명을 아비장으로 철수하도록 지시

2. 외무부 아중동국은 1975.10.8. 아래 대책회의 자료를 작성함.

- 1972.10월 쿠데타로 집권한 케레쿠 베냉 대통령의 군사정권은 과격좌경 성향임. 1973.1월 베냉 외상은 중국(구 중공)을 방문, 중국으로부터 4,500만 달러 원조를 획득하고 대만(구 자유중국)과 단교함. 1974.11.30. 케레쿠 정부는 혁명 2주년을 맞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선포함.
- 북한은 1973.2월 베냉과 외교관계를 수립, 7월 코토누에 상주공관을 설치함. 2월 베냉 외상의 북한방문 시 양국간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1974.11.10. 북한 농업기술자가 베냉에 파견됨. 또한 1975.4월 베냉 보건상이 북한을 방문하고 1975.10월 5명으로 구성된 북한 의료단이 근무를 개시함.
- 베냉 군사정권의 좌경정책으로 1973년 이후 유엔 한국문제에 관해 공산 측 안 공동제안국에 가담하고 있음.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5.10.13. 베냉의 한국과의 국교단절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조광제 공사가 10.10. 베냉에 출장,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동 차관은 국교단절 경위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후에 공식문서로 통보하겠다고 언급
  - 단교조치는 베냉 단일정당 정치국에서 10.6. 국내의 정치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 정부 대변인은 단교발표시 제국주의자 비난 및 반혁명 경계를 강조
- 베냉의 대한국 단교조치 결정은 최근 비동맹회의, 유엔 등에서 친공 제3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정세변화에 편승하여 북한이 한국의료단이 근무하던 Ouidah 병원의 운영일체 지원(의사파견, 병원완공, 의료기재 및 의료품 제공) 및 각종원조를 제의하면서 베냉 정부에 끈질지게 한국과의 국교단절을 종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
- 한국의료단은 10.11. 아비장으로 철수

4.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75.11.5. 베냉 정부의 한국과의 국교단절 통보 공한을 접수했다고 보고함.

- 동 공한에는 국교단절에 관한 아무런 이유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국교단절 사실과 일자만을 기술

75-0207

대중국(구 중공) 외교관 직접 접촉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C-84 / 1 / 1-9

1. 주태국대사는 1975.12.16. 태국·중국(구 중공) 간 접촉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Tej 태국 외무성 동아과장은 차차이 태국 외상이 1975.10월 방일시 주일본 태국대사로 하여금 주일본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동북아 정세안정에 기여할 것이므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했으나, 중국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그후 다른 경로로 재차 제의했으나 같은 결과였다고 함.
  - 주태국대사는 10.3. 차차이 외상 면담시 동 외상이 한국과 중공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역설함에 따라 6.23 선언을 설명하고 양국간에 관계가 없는 것은 중국 측 거부태도 때문임을 지적한 사실이 있는바, Tej 동아과장은 상기조치가 이 문제에 대한 태국 외상의 관심이 진지한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부연

2. 외무부는 1975.12.17. 주태국대사관에 상기 태국·중국 간 접촉 관련 가능한 구체적으로 조사 보고할 것을 훈령한바, 12.22. 주태국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0.6. 주일본 태국대사는 휴가로 귀국인사차 내방한 주일본 중국대사에게 본부 훈령대로 한·중국 관계개선 문제를 제기한바, 주일본 중국대사는 아래와 같이 언급
  - 중국은 한국의 박정희 정권을 미국 제국주의 괴뢰로 보고 이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외교정책
  - 제32차 유엔 공산 측 결의안의 4개 조항(유엔사령부 해체, 미군철수, 미국·북한 간 직접교섭, 평화통일)을 전폭 지지하므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 소련 및 일본의 참석을 반대
- 주일본 태국대사는 주일본 중국대사가 귀국하면 본건을 본국 정부에 다시 조회해 줄 것을 당부한바, 주일본 중국대사 귀임후 본국 정부의 태도도 자기의 발언내용과 차이가 없었다고 회보

국교수립 교섭 - 이집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4 / 3 / 1-42

1975년 중 이집트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임.

1. 주카이로총영사, Riad 이집트 외무성차관과의 면담내용 및 관찰보고(1975.5.15.)

- 외무차관 언급요지
  - 이집트·북한 간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이집트 내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
  - 총영사관의 본연의 임무(경제, 문화, 영사업무)에만 국한하여 활동
  - 경제분야에서의 관계가 발전함으로써 국교수립의 여건 마련
- 관찰
  - 당관의 정치활동 특히 대북한 선전공세에 대한 경고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면에는 북한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집트가 한국에 기대했던 경제협력이 부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당관의 정무활동을 억제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판단
- 건의
  - 정무활동을 잠정적으로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주재국 정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자제하는 한편, 모든 공관활동을 한층 활발히 전개

2. 주카이로총영사, 주재국 반응 추가보고(1975.6.2.)

- 이집트는 한국에 대해 기대했던 대규모 경제협력이 1974년 후반기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소규모 경제원조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수차 간접적 표시
  - 동남아 사태가 급변한 시점을 이용하여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 측 소규모 경제원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3. 주카이로총영사, 주재국 의회사절단 접촉 건의(1975.8.5.)

- 이집트 의회는 국제의원회의(1975.9.3.~13., 런던)에 S. Marei 의장 등 대표단을 파견 예정인바, 한국의원단이 이집트대표단 중 한국에 호감을 가진 Oteify 부의장 등 적극 접촉 건의

4. 주카이로총영사,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방미기간 중 한·이집트 관계개선을 위한 미국 측의 협조요청 건의(1975.9.17.)

- 외무부는 10.8. 주미국대사에게 사다트 대통령의 방미 시 이집트 측에 대한 미국 측의 측면지원을 요청하라는 훈령지시

5. 주미국대사, 한·이집트 관계개선을 위한 미 국무부 접촉결과 수시 보고(1975.10.29.~11.3.)

● Gleysteen 국무부 부차관보 및 한국과장 등 협조요청

- 한국과장은 사다트 대통령 방문 시 브리핑 자료에 한국과의 외교관계 문제를 포함시켰고 국무부 고위직이 이를 알고 있으므로 적절한 기회에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이집트과장은 한·이집트 외교관계 문제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면담자료에 포함시켰다고 하고, 이집트로서는 당장 한국과 수교하기는 어려우나 시간을 두고 한·미국 간 협조하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주미국대사는 Broomfield 의원에게 한·이집트 외교관계 수립 문제 협조요청

- 포드 미국 대통령이 사다트 대통령과 접촉하는 기회에 포드 대통령이 언급하도록 요청한바, 동 의원은 포드 대통령과 대면 또는 서신으로 요청할 것임을 약속

국교단절 - 라오스, 1975.7.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4 / 4 / 1-79

1. 주태국대사는 1975.7.12. 한국과 라오스 국교단절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함.

- 비엔티안발 소식통에 의하면 라오스 JNPC(정치자문위원회)는 1975.7.7. 루앙프라방에서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을 제의
- 또한 동 성명은 한국인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의 미군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

2. 라오스는 1975.7.24. 한국과의 국교단절을 결정했다는 정부대변인의 성명을 발표함.

- 1975.7월초 파테트라오 지도자인 Souphanouvong이 주재하는 JNPC의 건의에 따라 7.24. 각의에서 결정
  - 한국대표가 라오스 외무성에 통보도 없이 라오스를 이탈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으며, 이로써 한국이 동 국교단절을 주도

3. 주태국대사는 1975.7.30. 한·라오스 간 외교단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태국 라오스대사관은 라오스 외무성으로부터 한국과 국교단절 공한 접수
  - 주태국 라오스대사와의 접촉 결과, 라오스 정부의 대한국 단교결정 확인
- 한국은 항의각서를 라오스 측에 전달

4. 외무부는 1975.7.30. 한·라오스 간 외교관계 단절에 대한 라오스 결정에 대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 라오스 겸임 주태국대사는 7.30. 주방콕 라오스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견해를 설명하고 라오스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
  - 라오스 정부는 주라오스대사대리가 라오스 외무성에 아무런 통고 없이 라오스를 떠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제예양을 위배했으며, 이로써 한국이 라오스와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 한국 정부는 라오스 정부가 전적으로 사실무근인 이유를 들어 한국과의 국교단절 조치를 취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

75-0210

외교관계 정지 - 르완다, 1975.5.3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84 / 5 / 1-27

1. 주르완다대사관 설치배경 및 경위는 아래와 같음.

- 1963.3.21. 한·르완다 외교관계 수립 합의
  - 이후 한국은 겸임공관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르완다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진전
- 1969.6.10. 주우간다대사의 겸임 신임장 제정
  - 신임장 제정이 지연된 주 동기는 르완다 정부의 한국 상주공관 설치 희망과 특히 무상원조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이 만족한 약속을 주지 못한데 있음.
- 1972.8.29. 한국 상주공관 창설을 르완다 측에 통보
  - 한국 정부는 임박한 유엔대책 및 르완다가 유엔운영위원회 회원국임을 감안하여 홍일 주프랑스대사관 공사가 우간다 외상 면담시 통보

2. 주르완다대사는 1975.1.14. 외교망 정비 강화문제 관련, 주르완다대사관 존폐여부를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정치, 경제적으로 아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철수해도 좋으나, 정치적 실익유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르완다 공관철수가 불가피하다면 북한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르완다의 태도도 관찰할 수 있는 8월 이후 단행할 것을 건의

3. 르완다 외무성은 한국대표단의 르완다 방문 관련, 1975.4.1. 아래 구상서를 주르완다대사관에 송부함.

- 르완다는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나, 한국 측은 수교 이래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동 외무성은 한국사절단이 양국간의 구체적 협력사업계획을 휴대하고 오는 경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할 것임.
  - 동 사절단이 르완다 측과 협의하려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

4. 주우간다대사는 1975.8.5. 르완다 사태 관련 아래와 같이 건의함.

- 르완다는 한국 측이 명확한 공관철수 의사표명 없이 사실상 철수함으로써 현재 양국관계는 미묘한 상황
  -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교섭은 철수전 한국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Aide Memoir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의 교섭은 불필요
- 형식적인 교섭시도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르완다를 자극시켜 오히려 현상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당분간 정부교섭을 보류하면서 현상 유지함이 좋을 것

국교수립 - 싱가포르, 1975.8.8.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동남아/통상1
MF번호	C-84 / 6 / 1-360

1970~75년 중 한·싱가포르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62.4월 싱가포르가 동남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통상대표부 설치교섭을 전개함.

- 싱가포르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 별무

2. 윤석헌 외무부차관은 1970.4.10. Goh Keng Swee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면담, 양국간 교류 강화와 대싱가포르 경제기술협력 촉진 및 통상증대를 위해 영사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

3.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70.6.8. 싱가포르 외상과 면담, 양국간 영사관계 수립의사 타진

- 싱가포르 측은 우선 무역대표부 설치후 1970년중 영사관 승격안 제시

4. 한·싱가포르 양국은 1970.11.5. 통상경제대표부 설치에 합의

- 싱가포르 측은 한국대표부 설치후 6개월내 총영사관 승격을 구두보장

5. 싱가포르 측은 1971.3.8. 함영훈 한국대표부 공관장 임명동의 서한 발송

6. 한·싱가포르 양측은 1971.7.5. 현 통상경제대표부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기로 합의 발표

7. 외무부는 주싱가포르총영사에게 1973.12.20. 수교 적극추진 훈령을 지시

- 싱가포르 각의는 1975.7.31.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

8. 한·싱가포르 양국은 1975.8.8.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 주싱가포르총영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
  -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개정(9.23.)

9. 북한 측 반응

- 북한은 허담의 싱가포르 방문계획(1975.8.11.~13.)을 취소
  - 싱가포르 외무성은 한국과의 선(先) 수교에 대한 항의표시로 인식

75-0212

국교수립 - 수리남, 1975.11.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4 / 7 / 1-64

1. 한국 정부는 1975.11.25. 네덜란드령 자치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수리남을 승인함.

- 수리남 승인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1975.11.14.)
  - 독립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것이며, 대외정책은 중립노선의 정책추구가 예상되므로 한국은 신속히 수리남을 승인하여 친선관계 강화와 교역증진 및 재외국민(원양어업 종사자 약 300명)에 대한 지도보호를 강화
-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1.25. A. Arron 수리남 수상 앞으로 수리남 승인통보 전문을 발송

2. 외무부는 1975.11.14. 수리남 독립기념행사에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를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하고, 동 특사에게 아래 훈령을 지시함.

- 수리남 독립 축하와 우의 전달
-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진행
  -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희망의사를 강력히 표명
  - 수리남 측이 희망한다면 수리남 체재 중 국교수립 공동성명 발표도 가능
- 정세관찰 및 건의
  - 북한의 대수리남 침투가능성, 신정부 조직 및 각료명단 파악, 대수리남 관계 참고사항 건의

3. 주파라마리보총영사는 1975.11.27. 한·수리남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11.28. 양국 수도에서 동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함.

- 공동성명서 내용
  - 한국과 수리남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이 양국간 우호관계를 강화, 증진할 것을 확신하고 한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는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4.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수리남 독립기념행사에 참가(1975.11.20.~28.)함.

- 주요활동 및 결과
  - 독립기념행사 참석, J. Ferrier 신임 수리남 대통령 및 Arron 수리남 수상의 외국사절 접견식 참석, Arron 수상 및 주요각료 면담
  - 수상 면담시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합의
- 건의
  - 주파라마리보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변경하는 사무적 교섭 진행
  - 겸임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 신청 등

한·소련 관계개선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C-84 / 8 / 1-125

1975~76년 중 한국 정부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함.

1. 소련 외교관 직접접촉

- 주코스타리카 소련대사관 직원 접촉(1975.1.31.)
- 주스페인대사, Yt. Ko Hin 주스페인 소련통상대표부 단장 면담, 소련선박의 한국선원 구조에 대한 사의표명과 양국간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의사 전달(2.21.)
- 주핀란드대사, 주핀란드 소련대사관 직원 접촉, 양국간 관계개선 의견타진(6.17.)
- 주프랑스대사, 한국 국경일 리셉션에 소련무관 참석보고(10.3.)
- 주이탈리아 무관의 소련무관 접촉보고(11.17.)
- 주네덜란드대사, 주네덜란드 소련대사관 리셉션 참석결과 보고(12.15.)
- 주네덜란드대사, 주네덜란드 소련대사관 참사관 발언내용 보고(1976.1.28.)

2. 우방국을 통한 접촉

- 주영국대사는 1975.2.12. 캘러헌 영국 외상을 면담, 방소하는 윌슨 영국 수상에게 한·소련 관계개선 협조요청
- 주미국대사는 3.6. 미 국무부 소련문제담당관과 한·소련 관계개선 의견교환내용 보고
- 주프랑스대사는 3.27. 시라크 프랑스 수상의 소련 방문시 한·소련 관계 논의내용 보고

3. 유네스코 활동을 통한 대소련 관계개선 방안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1973.3월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석을 계기로 소련 유네스코사무총장 방한 초청, 국제세미나 및 학술교류에 소련학자 초청, 볼쇼이무용단 초청공연 등 계획을 수립
- 외무부 검토의견
  - 소련과의 관계개선 시도 측면에서 추진함이 좋으나, 교섭과정에서 북한의 방해공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안유지, 유니버시아드대표의 일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교섭대상자의 선택과 접근방법에 유의, 초청 이외에 상호방문과 친선경기 등을 추진하여 친선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등 필요

4. 학술회의를 통한 접촉

- 주일본대사는 1975.2.4. 일본·소련 협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한국계 소련학자 G. Kim의 동태 보고
- 아세아문제연구소는 1975.11.5. 1975년도 3/4분기 대공산권 문화교류 활동보고
  - 각종 소련관계 자료수집 등

75-0214

국교수립 교섭 - 북예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4 / 9 / 7-120

1. 외무부는 1975.2.27.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조속한 시일내 북예멘에 출장, 현안인 외교관계 수립 교섭을 성공리에 타결하라고 훈령함.

- 북예멘이 자국산 암염(rock salt) 판매를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우선 공업용으로 1975년 2만 톤 범위 내에서 구입의향 표명
  - 향후 북예멘산 암염가격 및 기타 수입조건이 합당하다면 계속 수입용의

2. 주사우디대사는 1975.4.4.~11. 북예멘을 방문함.

- 주요결과
  - 북한공작원(10여명)으로부터 만행적이고 위협적인 방해를 받음.
  - 북예멘 정부는 구체적인 경제원조 선행을 고집,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거부
- 건의
  - 북예멘산 암염수입 실현
  - 한국 측 경비부담, 외상 및 국회의장 등 주요인사 방한 초청

3.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특별사절단으로 1975.6.5.~8. 북예멘을 방문하여 동국 정부요인과 양국간 제반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북예멘 간 경협 및 통상진흥책의 일환으로 A. Al-Thawr 경제상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4. 정순근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대사는 1975.9.23.~25. 북예멘에 출장하여 북예멘 외교 및 경제담당 부수상과 면담함. 동인이 조속한 시일내 방한하여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협력 용의 등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고함.

5. S. Zikri 북예멘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암염의 대일수출 협의차 방일하는 기회에 1975.10.16.~18. 방한하여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면담함.

- 한국 측 언급요지
  - 양국간 상호이익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북예멘의 경제개발을 위해 공유희망
- 북예멘 측 언급요지
  - 북예멘의 국가발전을 위해 한국의 전문기술자 파견과 양국간 교류확대를 위한 배려요망
  - 가까운 장래 양국관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

재외공관(상주)설치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법무담당관
MF번호	C-84 / 10 / 1-27

1. 외무부는 1975년도 공관설치계획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공관을 설치하기로 확정함.

- 1975년 2/4분기
  - 주포르투갈대사관: 북한침투 저지를 위한 선제조치, 경제 및 통상관계 학대, 독립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속령(屬領)과의 관계 긴밀화
  - 주요르단대사관: 북한진출 봉쇄, 한국 건설업자 진출협력
  - 주포트모스비영사관(파푸아뉴기니): 6월 독립예정인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수교기반 및 지지 확보, 자원개발 참여에 의한 경제진출 확대, 남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외교 거점 확보
- 1975년 3/4분기
  - 주토론토총영사관: 교민보호(재캐나다 교민 2/3인 7천여 명 거주), 통상증진(캐나다 산업중심)
  - 주모리셔스대사관: 북한진출 봉쇄 및 계속적 지지 확보, 한국 원양어업기지 확보 및 선원과 어선보호
  - 주말라위대사관: 북한진출 봉쇄, 한국과의 우호관계 계속 유지로 좌경국가에 둘러싸인 말라위에 대북한 외교 전초기지 구축, 경제진출 및 자원확보
  - 주파라과이대사관: 북한침투 저지 및 계속적 지지 확보, 교민보호(7천여 명) 및 이민송출, 1973년도에 상주공관 설치의사를 파라과이 정부에 기 통고
- 1975년 4/4분기
  - 주볼리비아대사관: 북한침투 저지 및 계속적 지지 확보, 경제진출 및 자원(동, 주석) 확보
  - 주도미니카대사관: 북한침투 저지 및 계속적 지지 확보, 카리브지역 내의 한국외교 거점 확대, 통상증진

2. 외무부는 1975.5월 향후 북한과 국제무대에서 효과적으로 대결하고 현 재외공관을 능률적이고 기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공관을 지정하여 동 공관에 인원 및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 지역별 거점공관수
  - 아주지역5(동북아1, 동남아2, 서남아1, 대양주1), 미주지역4 (북미1, 중남미3), 구주지역3, 중동지역4, 아프리카지역4(동부2, 서부2)
- 거점공관 선정기준
  -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으로 지역내 타 국가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 주재공관
  - 다수의 겸임 및 관할국을 갖고 있으며, 소규모 상주공관 신설보다 현재 겸임대사 상주공관을 거점공관으로 강화하는 것이 외교효과 및 인원, 예산면에서 유익한 공관
  - 북한의 외교적 진출저지 및 견제를 위해 외교전략상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내 주재하거나 북한의 거점공관에 대처하기 위해 강화가 필요한 공관 등

75-0216

재외공관 설치 - 아프가니스탄, 1975.3.12.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4 / 11 / 1-56

1. 외무부는 1974.7.15. 주아프가니스탄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함.

● 현황
-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1973.12.31.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북한은 1973.12.26. 수교)했으나, 한국은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 또는 급격한 통상관계 확대시까지는 주인도대사관이 겸임한다는 방침하에 최근 박찬현 주인도대사가 1974.6.26. 신임장을 제정
- 그러나, 북한은 1974.5.23. 아프카니스탄 카불에 대사대리외 5명을 파견, 6.3. 상주공관을 개설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 주요인사와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

● 공관설치 이유
- 아프가니스탄은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 회원국으로 아시아 역내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중립태도를 계속 견지하게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하므로 한국도 현지에 진출하여 북한활동을 적시에 파악,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
-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130만 달러 상당의 인견직물 플랜트 연불수출을 했으며, 북한도 한국의 이러한 경제적 노력을 무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도 절실

● 공관규모 및 설치시기
- 당분간 주인도대사로 하여금 계속 겸임하게 하고 카불에는 대사대리 포함 제한된 인원을 상주도록 하되 개설시기는 늦어도 1974년 유엔총회 이전으로 함.

● 예산문제
- 1974년도 방글라데시 공관설치를 위해 확보한 기존예산을 주아프가니스탄 공관설치에 전용

2. 외무부는 1975.2.13. 주아프가니스탄 공관개설을 위해 김창환 주인도대사관 1등서기관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외무차관에게 제출할 외무부장관 명의의 소개장을 작성함.

● 김창환 서기관은 양국의 기존 우호관계강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예정
-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김 서기관이 소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당부

3. 주인도대사는 1975.3.15. 주아프가니스탄 공관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김창환 서기관이 3.10. 아프가니스탄 외무차관에게 외무부장관 소개장을 제시
- 3.12. 공관건물을 계약하고 아프가니스탄 외무성에 동일자로 공관이 개설되었음을 정식으로 통보

● 김 서기관은 3.17. 공관건물로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집무를 개시할 예정

재외공관 설치 - 방글라데시, 1975.3.1.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C-84 / 12 / 1-62

1. 외무부는 1973.9월 주방글라데시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함.

● 경위
- 방글라데시 외무성은 1973.9.13. 주뉴델리 방글라데시 고등판무관의 주뉴델리총영사 앞 공한으로 한국과의 영사관계 수립에 정식 합의하고 방글라데시 내 한국총영사관 설치에 동의

● 아래 이유로 방글라데시 내 한국공관을 1973.10~11월 설치
- 인구 7천만의 동남아국가로서 현재 대부분의 유엔 전문기구 회원일 뿐 아니라 앞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동남아지역 문제에도 발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큼.
- 방글라데시는 아직 북한과의 접촉이 없는바, 한국공관의 조기설치로서 북한의 이지역 진출을 저지
- 독립직후 경제적 여력이 빈약한 가운데서도 각국으로부터 약 2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 한국상품을 다수구입(1972년도 한국상품 수출 약 186만 달러)하고 있는바, 앞으로 동국의 경제력이 회복되는 경우 한국상품의 수출시장 확장이 가능
- 국내 회사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492만 달러의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공중에 있는바, 공사인원의 보호 및 앞으로의 건설업 진출후원을 위해 필요

2. 외무부 아주국은 1974.10.8. 기획관리실에 주방글라데시 상주대사관 설치를 요청함.

● 주방글라데시 상주대사관 설치안이 1973.12.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한바 있으나, 그후 한국 공관개설은 북한이 상주공관을 설치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방침하에 주인도대사로 하여금 동국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1974.6.10. 신임장을 제정
- 그러나 9.7. 북한이 상주대사관을 정식 개설함으로써 한국도 상기방침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상주공관 설치에 관해 필요한 조치 요망

3. 외무부는 1975.1.20. 주인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주방글라데시대사관 개설을 위해 정해헌 주인도대사관 참사관을 1975.2.15.까지 부임하도록 발령
- 동국에 대사관 개설을 통보하고 대사 부임시까지 정 참사관을 대사대리로 지정하는 공한발송
- 공관개설에 필요한 업무인계 등 제반조치 시행

4. 주방글라데시대사대리는 1975.3.1. 한국 상주공관을 정식 개설했다고 보고함.

● 방글라데시 외무성은 한국공관 개설을 환영하며, 제반 협조를 다하겠다고 언급

75-0218

주Rio de Janeiro(브라질)영사관 설치 건의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4 / 13 / 1-39

1. 주브라질대사는 1972.10.4. 주리우데자네이루영사관 설치를 건의함.

- 경위
  - 리우에 주재하면서 대사관의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하던 무관부가 1972.10.16. 브라질리아로 이동하게 되어 금후 리우와의 연락사무 및 활동이 두절
- 설치이유
  - 브라질의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수출지원
  - 한국 원양어선(연 200~300척 정박) 선원보호 활동 및 각종 통관수속 지원 등
  - 대다수의 여타국 공관은 대사관보다 큰 규모의 총영사관을 리우에 설치

2. 주브라질대사는 1974.4.12. 주리우데자네이루영사관 설치 필요성에 관한 건의서를 송부함.

- 리우의 입지요건
  - 인구 430만 명으로 브라질 상파울루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정치활동 및 실질적인 행정의 중심지이며 제1의 항구도시 겸 제2의 공업도시
  - 브라질리아 75개의 외국대사관중 45개국이 리우에 총영사관 설치, 운영
- 영사관 설치에 수반되는 이익
  - 외교: 북한의 무역사무소 설치 등 사전 봉쇄로서 북한진출 저지
  - 경제: 신시장 개척 및 대브라질 경제협력에 공헌, 본부지시의 원활한 수행
  - 영사: 리우 거주 교포 및 한국선원들에 대한 영사업무 활동의 원활한 수행
  - 기타 공관경비 절약 등 효과

3. 외무부는 1974.4.18. 주브라질대사에게 공관직원 1명을 리우데자네이루에 파견 근무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주브라질대사는 공관인원 형편상 직원파견은 불가하다고 하고, 영사관 설치방안 재고 요청
  - 브라질 외무성은 브라질리아에 상주하지 않고 타 도시에 파견되는 외교관에 대해서는 외교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회보

4. 외무부는 1975.2.7. 주브라질대사에게 주리우데자네이루영사관 설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공관의 영사관 설치건의를 계속 검토, 공관의 업무처리에 있어 빈번하게 브라질리아와 리우 간을 왕래하는 어려운 점을 인정
- 그러나, 영사관 설치문제는 전체 예산 및 인원사정과 공관설치 우선순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계속 검토하여야 할 사항

캄보디아(구 크메르) 주재 한국대사관 및 교민 비상철수, 1975.4.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4 / 14 / 1-162

1975년 중 캄보디아(구 크메르) 공산군의 전면공세로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주캄보디아대사관 및 교민 비상철수 조치를 시행함.

1. 외무부는 1975.1.15. 주캄보디아대사에게 공관 안전강화 및 비상시 대책 재검토 훈령 지시

2. 주캄보디아대사는 1975.1.24. 프놈펜 주재 한국교민에 대해 안전지대 대피권고 공고발송

3. 외무부는 1975.3.3.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인의 안전 및 비상철수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 최근 정세 및 향후전망
  - 캄보디아 공산군의 1.1. 신년 대공세 이후 공세가 더욱 강화
  - 일반 국민들은 물가고 앙등과 생필품 품귀현상으로 불만가중, 전쟁에 회의적 태도 시현
  - 미국의 추가군원이 없을 경우 캄보디아 정부 위기초래 가능성 대두
- 캄보디아 주재 한국인 현황 및 안전대책
  - 현재 대사관 직원, 미국계 회사 고용원 기타 잔여인원 총 73명
  - 교민대피 공고 및 퇴거명령(3회)

4. 주캄보디아대사는 1975.3.6. 공관문서 소각 및 후송대책 보고

5. 외무부는 1975.3.17. 주캄보디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공관철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부에 보고하고 재량대로 철수
  - 공관직원 일부 철수 및 부인 등 직원가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 철수

6. 주캄보디아대사는 1975.4.3. 직원 등 일부 철수를 외무부에 보고

- 론놀 캄보디아 대통령의 망명(4.1.) 이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우방공관 철수시작
- 주캄보디아대사관 직원(3명)은 방콕으로 대피, 대사 및 일부직원은 4.8. 철수예정
  - 잔류교포의 퇴거조치 만전

7. 외무부는 1975.4.5. 주캄보디아대사에게 별도 철수지시가 있을 때까지 방콕에 대기하도록 훈령

8. 주태국대사는 1975.4.5. 주캄보디아대사 등 방콕으로 철수완료 보고

- 일부를 제외한 교포 전원 철수완료

75-0220

재외공관 설치 - Toronto(카나다)총영사관, 1975.8.18.

생산연도	1969-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4 / 15 / 1-90

1. 주캐나다대사는 1969.9.11. 대캐나다 교역의 중심지이며 한국교포의 2/3이상이 거주하는 몬트리올 및 토론토에 명예총영사를 임명해 줄 것을 건의함.

2. 주캐나다대사는 1971.1.4. 주토론토영사관 설치를 건의함.

- 인구 220만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 수많은 위성도시를 조성, 캐나다에서 제일가는 산업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한국과의 무역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
  - 토론토 등 정착교포는 약 3천 명이며, 토론토에 중국(구 중공)영사관 설치가 예상되어 북한의 침투가 우려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시급
- 기타 문화홍보활동면 등 고려, 정규 영사관 설치를 건의
  - 정규 영사관 설치가 곤란할 때 잠정조치로 우선 명예영사 임명을 건의

3. 외무부는 1971.1.18. 주캐나다대사에게 1971년 공관설치 계획상 정규 영사관 설치가 실현성이 없으므로 명예영사를 임명 추천하도록 회보함.

4. 주캐나다대사는 1971.11.23.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교포의 약 75%(3,500명)이 거주하는 토론토에 정규 영사관 설치가 긴요하다고 재건의함.

5. 외무부는 1975.1.24. 주캐나다대사에게 주토론토총영사관을 1975년 상반기중 설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함.

6. 외무부는 1975.2.11. 총무처에 주토론토총영사관을 포함한 9개 공관설치를 위한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주토론토총영사관 설치시기: 1975.7.1.
  - 설치이유: 교민보호(재캐나다 교민의 2/3인 7천여명 거주), 통상증진(캐나다 산업중심지)

7. 외무부는 1975.5.9. 주캐나다대사에게 상기 대통령령이 공포(1975.4.4.)됨에 따라 주토론토 총영사관의 8.1.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캐나다 외무성에 총영사관 설치동의를 공식 요청하라고 훈령함.

- 주캐나다대사는 캐나다 외무성이 6.4. 이에 동의해 왔다고 보고

8. 주캐나다대사는 1975.8.18. 주토론토총영사관이 정식 개관했다고 보고함.

- 이에 앞서 캐나다 외무성은 8.4. 이창범 주토론토총영사의 활동을 인가한다고 통지

아이슬란드 관할공관 변경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84 / 16 / 1-31

1. 외무부는 1974.1.30. 주스웨덴대사가 겸임하는 아이슬란드를 아래 이유로 주노르웨이대사가 겸임하도록 겸임공관을 조정하기로 결정함.

- 아이슬란드 겸임공관 현황
  - 오슬로 소재 공관 18개국, 스톡홀름 5개국, 코펜하겐 4개국, 런던 6개국
- 역사, 정치 및 경제관계 비교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인의 대부분은 9~10세기 경 정착한 노르웨이인의 후예이며, 1262~1380년 노르웨이의 통치하, 양국은 공히 NATO 회원국으로서 여타 북구지역 국가(덴마크 제외)중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오슬로는 레이캬비크로 향발하는 항공로의 기점
  -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14세기 이래 1944년 독립시까지 덴마크의 통치하(1918년 자치령 획득)에 있었고 덴마크는 아이슬란드의 제4위 주요 교역국
- 현지공관장 의견
  - 주스웨덴대사: 외국의 예로 겸임공관 소재지중 오슬로가 다수인 주노르웨이대사관의 아이슬란드 겸임을 건의
  - 주노르웨이대사: 주노르웨이대사관에서 겸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노르웨이 외무차관도 오슬로 겸임이 좋다는 의견
  - 주덴마크대사: 아이슬란드는 13세기 이래 제2차 대전시까지 덴마크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아이슬란드·덴마크 간 교역량(약 3천만 달러)이 아이슬란드·노르웨이 간 교역량의 배를 능가한다는 역사적, 경제적 관계를 지적, 양국간 관계가 긴밀하다는 의견 표명

2.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7,088호)이 1974.3.18. 공포됨.

- 주아이슬란드공화국대사관의 위치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로 변경

75-0222

재외공관 설치 추진 - Surabaya(인도네시아)영사관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C-84 / 17 / 1-36

1. 외무부는 1972.10.17. 동남아경제담당관회의 시, 주자카르타총영사의 건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영사관 설치 필요성을 인정, 10.23. 제9차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보고하고 11.7. 주수라바야영사관 설치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음.

- 설치 이유
  - 인구 200만 명의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제2의 무역항이며, 인구 2,700만 명의 동부 자바의 주청 소재지
  - 수라바야는 또한 칼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자야의 상품 보급기지로서 동 항구를 통한 연간 수입량이 2억 달러 규모이며, 장차 한국의 중요한 수출대상지역임.
- 설치시기 및 공관규모
  - 1972.12월 설치, 영사 1명 파견

2.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2.11.9. 및 12.22. 주수라바야영사관 설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수라바야영사관 설치문제는 대인도네시아 정부교섭을 추진함에 앞서 본부의 교섭 사전승인을 득하기 위해 건의한 것
- 주재국 정부와 예비교섭을 진행한바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5.1.27. 주수라바야영사관 설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72.12.22. 보고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예비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수라바야에는 소련의 총영사관, 미국과 일본의 영사관, 프랑스의 Consular agent가 주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포르투갈, 필리핀 등은 명예영사관을 두고 있을 뿐이며 한국은 코트라사무소가 이미 설치
- 본건을 인도네시아 외무성에 비공식 타진한바, 수라바야에 영사관 설치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 앞으로 상당기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라바야 외국영사관 설치를 일체 불허할 방침이라 함.

재외공관 설치 - 요르단, 1975.4.10.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4 / 18 / 1-90

1. 주터키대사 등은 주요르단 상주공관 설치를 수시로 외무부에 건의함.

- 주터키대사, 요르단 출장후 상주공관(1인공관 포함) 설치 건의(1970.5.1.~12.)
  - 요르단의 대한국 인식악화 방지 및 북한침투 저지
- 임명진 주터키대사관 참사관은 요르단 출장후 상주공관 설치 건의(1970.11.19.~20.)
  - 겸임공관에서 연2, 3회 출장에 의지하는 것보다 상주공관 설치가 북한진출 견제에 최선의 방법
- 주터키대사, 요르단 공관설치 건의(1971.11.12.)
  - 1인공관이라도 시급 설치가 절실히 요망
-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요르단 출장시 재건의(1975.1.12.~12)
  - 상주대사관 시급 설치와 상주대사 파견

2. 외무부는 1975.2.11. 총무처에 재외공관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을 요청함.

- 현재 다극화된 국제정세하에서 외교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날로 첨예화되어가는 남북대결에 있어서 북한의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통상증진 및 자원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 주요르단대사관 등 9개 공관
  - 요르단은 1975.3.1. 북한진출 봉쇄와 한국 건설업자 진출협력을 위해 대사관을 설치

3. 외무부는 1975.3.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외무부는 요르단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송학원 주사우디 참사관을 대사대리로 임명, 3월말 파견하고자하니, 이를 요르단 정부에 정식 통고하고 결과보고
- 송학원 참사관 부임시 요르단 외상에게 전달할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별도 작성, 지참예정

4. 주사우디대사는 1975.3.8.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사우디대사관 강공사가 3.8. Alkhabariti 주사우디 요르단대사관 참사관을 방문, 공한으로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 의향을 정식통보하고, 양국 관계증진 및 경협강화 희망을 피력
  - 동 참사관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 요르단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금번 상주공관 설치로 요르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와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교역증진이 강화되기를 희망

5. 주요르단대사대리는 1975.4.10. 요르단대사관을 설치하고 임시사무소를 정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75-0224

주Beirut(레바논) 통상대표부 공관 직원 및 교민 철수, 1975.12.1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4 / 19 / 1-108

1. 외무부는 1975.9.16. 레바논 사태와 비상철수계획을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최근 베이루트 사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조인된 제2차 시나이군 격리협정에 불만을 표명한 팔레스타인 측의 반발이 도화선이 되어 레바논 국내의 고질적인 회교도와 기독교 간 대립으로 인해 1975.8월말 이래 각지에서 유혈 충돌사태 야기
- 주베이르투 공사는 레바논의 특수한 지정학적 제반요인으로 인한 불안요소 등을 고려 아래 조치시행
  - 자체 비상대처계획 수립 보고(8월)
  - 주재국 체류 한국인의 비상시 안전을 위해 미국 측의 비상철수계획에 한국인 포함에 대한 미 국무부 측과의 협의요청(9.3.)
- 외무부의 조치
  - 상기 비상대처계획 승인(9.12.)
  - 미 국무부와 협의
  - 향후 레바논 사태 악화로 공관원과 가족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현지 공관장의 재량하에 인근지역으로 긴급대피 승인

2. 외무부는 1975.12.22.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 직원가족의 본국철수 관련,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 베이루트 사태의 악화에 따라 현지 공관원, 가족 및 기타 잔류교포의 안전을 위해 아래 조치를 시행
  - 공관원 가족(19명) 본국철수 지시로 1975.12.19. 현지 출발
  - 공관직원(6명)은 현지 사태 추이에 따라 공관장 등 3명을 최종 잔류자로 남기고 잔여직원을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본국 철수지시
  - 현지 잔류교포 중 코트라 직원 및 가족 등 대피지시

3. 주베이루트공사는 1975.12.30. 현지상황에 관해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당지 치안상태는 호전되고 있지 않으며, 레바논의 현 정세는 1976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으로 당지에 사무소를 유지하며 주재국을 상대로 정상활동을 계속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당지에 거주를 두지 않고 임시로 인접 타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봄.

재외공관 폐쇄 - 라오스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4 / 20 / 1-131

1. 외무부는 1975.5.10. 최근 라오스 정세와 주라오스대사관 한국 공관원 철수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라오스 정세
  - 1974.4.5. 좌우파 연정 수립후 월맹/파테트라오 연합군과 정부군 간 대규모 군사충돌로 정세악화
- 한국 공관원 철수문제
  - 외무부는 5.8. 주라오스대사관에 즉시 비상철수 태세 유지와 공관직원 가족의 본국 철수지시, 아울러 교민들에게 조속철수 강력권고 지시
  - 외무부는 5.10. 공관장 및 공관원에게 최단시일내 우선 방콕으로 대피 지시
- 한국인 현황
  - 공관직원 및 가족 7명 외 교민 총 68명

2. 외무부는 1975.5.15. 주라오스대사관 한국 공관원의 대피 관련, 대통령에게 아래 보고함.

- 교민철수 문제
  - 공관원 및 가족과 교민 16명이 1975.5.13. 무사히 방콕으로 대피
  - 잔류교민(39명)도 2~3일내 거의 철수할 것으로 예상
- 한국공관 및 교민보호를 위해 5.13.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협조요청
- 5.14. 겸임대사인 주태국대사와 업무협의차 약 1개월간 비엔티안을 비운다는 공문을 5.14. 라오스 정부 측에 발송

3. 외무부는 1975.5.28. 주라오스대사대리에게 라오스 사태가 상금 유동적인 점을 감안, 공관을 폐쇄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방침하에 아래 지침에 따라 운영하라고 훈령함.

- 공관, 관저 및 현지 고용원은 당분간 현재대로 유지
- 정구욱 주라오스대사대리 등은 당분간 주태국대사관에서 라오스 관계업무 수행

4. 외무부는 1975.6.19. 최근 라오스 정세 및 주라오스대사관의 복귀문제 관련,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대책방안
  - 현 사태가 상금 유동적이며, 공산 월남정권이 사이공 잔류 한국 공관원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사태에 비추어, 라오스 공관원 현지복귀 문제는 당분간 사태를 관망한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5. 외무부는 라오스 정부의 한국과의 국교단절 결정(1975.7.24.)이 최종 확인되어 주라오스대사관 폐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공관 임차계획 종료, 현지 고용원 계약해지, 공관 재산 및 비품처리 등

재외공관 설치 - 포르투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84 / 21 / 1-11

1. 외무부는 1975.2.11. 총무처에 재외공관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을 요청함.

- 목적
  - 현재 다극화된 국제정세하에서 외교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날로 첨예화 되어가는 남북대결에 있어서 북한의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통상증진 및 자원확보 도모(주포르투갈 대사관 등 9개 공관)
-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망
- 주포르투갈대사관 설치
  - 설치시기: 1975.3.1.
  - 설치이유: 북한침투 저지를 위한 선제조치, 경제 및 통상관계 확대, 독립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속령과의 관계 긴밀화
  - 위치: 프랑스 파리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변경

2. 주프랑스대사는 1975.4.10. 겸임국인 포르투갈의 최근 정세가 미묘하다고 하면서 포르투갈에 상주공관 설치를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75-0227

재외공관 설치 - 르완다, 1972.8.23.

생산연도	1966-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84 / 22 / 1-31

1. 주유엔대사는 1966.4.12. Mudenge 주유엔 르완다대사가 한국이 르완다에 공관을 설치하고 대사대리라도 상주한다면 한국문제 상정시 한국을 지지하는데 입장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보고함.

2. 주우간다대사는 1972.8.18. 르완다에 출장, 상주공관 설치문제에 관해 르완다 외무장관과 면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우간다대사 언급요지

- 한국이 먼저 키갈리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대사대리를 둠으로써 북한대사관 설치를 삼가하도록 하겠다는 약속 이행여부 문의
- 금번 대사대리를 대동, 신임장을 제정하는 동시에 대사대리를 잔류시켜 대사관을 설치 예정
-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발전되어 한국이 북한대사관 설치를 환영할 때가 오면 좋지만 아직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남·북한대사관의 공존은 곤란하다고 강조

● 외무장관 언급요지

- 한국대사관을 먼저 설치하면 북한대사관 설치 불가약속은 오해라고 강조
- 르완다는 남북한을 동시에 인정하고 키갈리에 두개의 대사관 설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우호관계에 비추어 한국대사관이 먼저 설치될 것을 간절히 바랐던 것은 사실
- 그후 북한대사관이 설치되는 경우, 남·북한대사관이 공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3. 주르완다대사대리는 외무부의 훈령에 따라 1972.8.23. 겸임대사의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시에 주르완다대사관을 개관했다고 보고함.

4. 주르완다대사대리는 1973.6.1. 키갈리 중심부에 위치한 신규 공관건물을 임차, 이전을 완료했다고 보고함.

5. 주르완다대사대리는 1974.3.21. 대사관 공관건물 매입에 관해 아래 건의함.

● 르완다 정부는 추방된 모든 외국인의 건물을 강제 구입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현 임차공관 건물도 당초 벨기에인 소유로서 르완다인이 구입 추진중

- 1년반 또는 2년간 임차료로 동 건물 구입이 가능하며, 동 구입시 연간 약 1만 달러 예산절약이 예상

재외공관 폐쇄 - 르완다, 1975.5.3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84 / 23 / 1-62

1. 외무부는 1975.1.8. 주르완다 1인 공관 철수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문제의 제기
- 1974.8월 르완다 외상이 북한방문 후 북한동조 세력으로 전환, 제29차 유엔총회에서 공산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가담
- 1974.10월 김동휘 차관보, 11월 한유동 주우간다대사를 파견, 공산 측 결의가담 철회 및 양측안 기권을 간청했으나, 르완다 대통령 및 외상은 단호히 거절
- 르완다 1인 공관 설치목적이 유엔표 확보에 있었던 만큼 르완다에 상주공관 유지문제 재검토 필요

● 르완다 1인 공관 철수 필요성
-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실익이 없으며, 앞으로 실익이 생길 기대 가능성도 없음.
- 제2의 토고 사태를 초래할 위험성
- 다른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한국의 결의를 확고히 표시할 필요

● 철수방법
- 현재의 대사급 외교관계는 그대로 두고, 즉 주우간다대사를 겸임대사로 유임시키면서 대사대리만을 타 공관으로 전임발령
- 철수이유는 정부의 재정상 이유라고 설명, 상대국의 감정을 무마

2. 외무부는 1975.5.20. 주우간다대사에게 아래 훈령함.

● 정부는 1975.5.31. 주르완다 상주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
- 단, 7월의 OAU(아프리카단결기구)회의 및 8월의 비동맹 외상회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르완다 측에 상주공관 폐쇄를 공식 통고하지 않고 공관원의 타임지 전보에 따른 임시공석 형식을 취하기로 함.

● 이계철 주우간다대사관 공사를 긴급 르완다에 출장, 이 공사 책임하에 철수작업을 진행하고 결과보고

3. 주르완다대사대리는 1975.5.26. 주르완다 대사대리의 공석과 주우간다대사가 겸임한다는 내용의 Aide Memoire를 르완다 외무성에 수교함.

4.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1975.6.25. 아래 개정, 공포됨.

● 아프리카지역 주르완다대사관의 위치를 르완다 키갈리에서 우간다 캄파라로 변경

75-0229

수리남 관할공관 변경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4 / 24 / 1-11

1. 외무부는 1975.2.6. 수리남의 관할공관을 아래와 같이 임시 지정하기로 결정함.

- 1975.11월 독립예정인 남미 네덜란드령 수리남에 1975.1.14.~20. 실무급 정세조사단(단장: 조광제 주네덜란드대사관 참사관)을 파견
- 동 정세조사단의 보고 및 아래 사유로 수리남을 재외공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7,135호) 제4조(관할구역에 관한 예외조치)에 의거하여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관할구역으로 지정
  -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는 한국 원양어업의 기지로서 7개 회사(주재원 18명, 새우어선 56척, 선원 268명)가 진출 조업하고 있어 각종 영사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
  - 현재까지 수리남에 대한 영사업무는 관례적으로 주브라질대사관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거리의 원격성을 감안하여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관장

2. 외무부는 1975.2.7.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및 주브라질대사관에 관할구역 변경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예외 조치에 따라 수리남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관할로 지정하였으므로,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수리남 관계 영사업무를 처리

재외공관 설치 - 수리남, 1975.12.1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4 / 25 / 1-113

1. 외무부는 1975.4.3. 주파라마리보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함.

- 1975.11월 하순 독립예정인 남미 네덜란드령 자치국인 수리남에 한국의 외교적 진출기반 확보와 정세파악을 위해 1975.1.13.~15. 실무조사단(조광제 주네덜란드참사관 등) 파견
- 설치 사유
  - 향후 외교관계 수립 기반 확보
  - 북한침투에 대비한 선제조치
  - 양국간 경협확대 및 원양어업기지 지원
- 설치시기: 1975.8월

2.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7,644호)이 1975.5.30. 공포되어 주파라마리보총영사관을 신설함(영사 관할구역: 수리남).

3. 김창근 주네덜란드대사관 영사는 1975.10.16. 수리남에 도착, 임시 사무실을 개설함.

4. 외무부는 1975.11.28. 한·수리남공화국 간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따라 아래 조치를 취함.

- 주수리남 상주대사관(대사대리 상주) 설치를 수리남 정부에 제의
  - 상기 한국 측 제의에 대한 수리남 측 동의접수 즉시 대사대리 임명통보, 주베네수엘라대사의 주수리남 겸임대사 아그레망 신청조치

5. 외무부는 주수리남 상주대사관 설치 제의에 대한 Arron 수리남 수상의 동의전문 접수에 따라 1975.12.19. Arron 수상 앞으로 주베네수엘라대사를 겸임대사로 하는 상주대사관 개설을 통보함.(김창근 서기관을 임시 대사대리로 임명)

6.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1976.2.19. 개정 공포되어 주파라마리보 총영사관이 삭제되고 주수리남대사관이 신설됨.

75-0231

월남 주재 한국대사관 및 정부기관 철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4 / 26 / 1-303

외무부는 유동적인 월남전 상황을 감안하여 1975.4.5. 대통령에게 "월남 비상철수계획"을 보고하고, 동 계획에 기초하여 주월남대사관 철수를 진행함.

1. 월남 비상철수계획

- 가족의 철수
  - 주월남대사는 대사관을 위시한 정부 산하 각 기관원의 가족을 1975.4.12.까지 철수시키기로 함.
- 정부관계기관 직원의 철수
  - 의료사절단을 제외한 정부 산하 각 기관 및 사절단원에 대하여는 임무의 성격상 잔류의 필요가 없는 직원은 철수하도록 함.
- 대사관 규모 축소
  -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대사관원은 철수하도록 함.
- 문서의 소각, 대피
- 민간인 철수
  - 교포 등 민간인에 대하여는 가족과 함께 철수하도록 지도하고, 비상소집연락망, 탑승계획 등을 마련하여 비상철수에 대비함.

2. 재월남 한국인 철수현황(1975.4.30. 현재)

- 대사관 직원
  - 외무부 소속 공관원 9명 중 3명(김영관 주월남대사 외 2명) 철수
  - 김영관 대사는 4.29. 미 구축함 Blue Ridge에 승선하여 철수
  - 타 부처 소속 공무원 8명 중 5명 철수
  - 관계요원 4명 중 3명 철수
- 사절단 및 공공기관 직원
  - 각종 사절단 50명 및 공공기관 직원 10명은 전원철수
- 진출업체
  - 6개 업체 직원 100명 철수(13명은 미확인)
- 교민
  - 약 1,011명이 교민철수 선박 및 군용기를 이용해 철수
  - 약 130명 잔류

주한공관 철수 - 브라질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5 / 1 / 1-87

1. 브라질 외상서리는 1970.9.16. 장창국 주브라질대사를 초치하여 주한 브라질 상주공관 폐쇄문제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고해옴.

- 브라질 정부는 행정비 절감에 따른 해외공관 축소계획에 의하여 주한 상주공관을 금년말에 폐쇄하기로 결정함.
- 이번 조치는 하등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며, 브라질의 한국과의 우의와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음.

2. Ribeiro 주한 브라질대사가 1970.9.24. 최규하 외무부장관을 면담하여 주한 브라질대사관 폐쇄문제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최규하 장관은 아래와 같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브라질 정부가 폐쇄결정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망함.

- 한국 정부는 남미국가 중 브라질을 중요시하여,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브라질에 2개의 상주공관을 두고 있음.
- 귀하의 부임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은 물론 경제적, 문화적 분야 등에서 실질적 유대관계가 강화됨.
- 실질적 유대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이때 상주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3. 장창국 주브라질대사는 1970.10.5. 브라질 외상을 면담하여 주한 브라질 상주공관의 존속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동 외상은 브라질 정부의 기존입장을 반복함.

4. 외무부는 1970.10월 브라질 외상 앞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을 통하여 주한 브라질 상주공관 존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브라질 정부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주미국 브라질대사 등 외교경로를 통하여 브라질 정부가 계획을 재고하도록 외교교섭을 전개함.

5. 정부는 1970.11.5.~10. 백두진 국회의원(전 국회의장)을 대통령 특사로 브라질에 파견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함.

- 백두진 특사는 11.9. 브라질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을 면담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브라질 측은 주한 브라질대사관의 폐쇄계획을 일단 중지하기로 결정함.

6. 국내 관계기관은 주한 브라질대사관이 자국 정부에 주한 브라질대사관의 철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1975.12.15. 작성하였으며, 12.18. 이를 본국 정부에 발송할 방침이라고 외무부에 알려옴.

75-0233

주한 크메르대사관 폐쇄, 1975.5.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5 / 2 / 1-64

1. Poc Thieun 주한 크메르대사는 1975.4.18.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주한 크메르대사관은 조용히 폐쇄하되, 4월말까지는 현 사무실을 유지할 의향임.
- 자신의 처신은 자녀들의 학교가 끝나는 6월말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그 이후 결정하고자 함.
- 약 30여명에 달하는 대사관 직원, 가족, 기타 자국민의 처신에 관하여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2. Poc Thieun 대사는 1975.4.21.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옴.

- 4.21.부터 대사관이 크메르 국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 자신은 자녀들의 외국인 학교 학기가 종료되는 5월말 혹은 6월초까지 한국에 체류할 것임.
- 대사관 사무실은 4월말 폐쇄할 것이며, 그 이후 출국 시까지는 관저만 유지할 것임.
- 자신의 문제는 조용히 처리해 나가겠으며, 한국 정부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 대사관 직원, 가족, 기타 자국민은 아래와 같이 처신할 것임.
  - 대사 및 가족 4명, 참사관 및 가족 2명, 영사담당 및 가족 7명, 무관 및 가족7명, 무관보 및 가족 5명, 총 25명은 미국으로 망명 추진
  - 국제기구 훈련생 및 가족 3명은 관계 국제기구에 의해 독자적으로 처리
  - 나머지 7명은 프놈펜으로 귀국 추진

3. 주한 크메르대사관은 크메르공화국 정부의 소멸(1975.4.17.)에 따라 1975.5.1.자로 대사관을 폐쇄함.

주한공관 재설치 - 칠레, 1975.3.5.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5 / 3 / 1-29

1. 칠레는 1969년 이후 주한 상주대사관을 유지해 왔으나, Allende 정권이 1971년 주한 상주대사관을 폐쇄하고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함.

2. 칠레 일간지 LA TERCERA지는 1974.11.10. 칠레 정부가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고려 중에 있음을 칠레 외무성차관이 밝혔다고 보도함.

3. 신임 주한 칠레대사로 임명된 Leopoldo Fontaine Nakin 제독은 1975.1.16. 주칠레대사를 예방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주한공관 재개설을 위하여 Renan Sanchez 서기관이 1975.2.25.경 한국에 도착 예정임.
   - 자신과 무관의 부임은 공관 개설준비가 완료되는 1975.3월 중순경이 될 것임.

4. Renan Sanchez 주한 칠레대사대리는 1975.3.21. 김동조 외무부장관 앞으로 아래 내용의 공한을 보내옴.
   - 경제발전에 있어 타국의 모범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귀국에서 일하게 됨을 만족스럽게 생각함.
   - 4.15.경 Leopoldo Fontaine Nakin 제독이 대사로서 부임할 때까지 본인이 대사대리로서 활동할 영광을 갖게 됨.
   - 귀부 및 주칠레대사관 당국자들이 우리 외교사절에게 베풀어주신 끊임없는 호의에 감사드림.

75-0235

주한 칠레대사관내의 총영사관 설치 인가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5 / 4 / 1-10

1. 주한 칠레대사관은 1975.8.27.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칠레 정부가 주서울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을 8.22.자로 설치하고 Renan Sanchez 1등서기관 겸 총영사가 동 총영사관의 책임을 맡게 되었음을 통보해 옴.

2. 외무부는 1975.9.5. 주칠레대사관에 주한 칠레대사관의 통보내용을 알려주면서 아래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칠레 정부가 외국 수도에 대사관과 별도로 영사관(명예영사관 제외)을 설치하고 대사관 직원을 영사관의 장으로 겸직시키고 있는 관례가 있는지
- 금번 주서울 총영사관 설치가 단순히 총영사로 인가된 대사관 직원의 영사업무 수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대사관과 별도의 새로운 공관설치를 뜻하는 것인지

3. 상기 외무부의 지시에 대해 주칠레대사관은 1975.10.10.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칠레는 자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는 수도에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동 총영사관 설치는 새로운 공관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임.
- 칠레 산티아고에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는 12개국임.
  - 별도건물 소재: 브라질, 코스타리카, 스페인, 핀란드,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 같은건물 소재: 콜롬비아, 영국, 그리스, 이스라엘, 페루, 네덜란드
- 칠레 정부가 대사관 및 총영사관(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임.
  - 별도건물 소재: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 같은건물 소재: 영국, 미국(영사관)

주한공관 설치 - 가봉, 1975.6.26.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5 / 5 / 1-18

1. 한국을 겸임하고 있는 주대만(구 자유중국) 가봉대사관은 가봉이 서울에 공관을 설치할 계획임을 1973.4.9. 주대만대사관에 알려오면서, 자국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한국의 필수품 물가, 대사관 및 관저용 건물의 임대가능 여부 및 임대료 등에 관해 문의함.
   - 외무부는 주대만 가봉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4.30. 주대만대사관을 통해 회신함.

2. 주대만대사는 1974.4.2. Angome Minso Philippa 주대만 가봉대사를 면담한바, 동 대사는 가봉의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1974.3.30.)에 따른 주한대사 겸임문제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가봉이 개발도상국가로서 공산국가 또는 중국(구 중공)을 승인한 국가와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산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생존유지를 위하여 부득히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함.
   - 한국과의 우의는 계속 유지되어 나갈 것으로 봄.
   - 이미 가봉에 한국대사관이 설치되어 대사대리까지 파견되어 있으므로 가봉 정부가 주한공관 설치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나, 가봉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단시일내에 주한공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봄.
   - 주일본 가봉대사가 주한대사를 겸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함.

3. 주프랑스 가봉대사관은 주한 가봉대사관 개설(1975.6.26.)을 위해 Ogouenkero 주프랑스 가봉대사관 1등서기관이 1975.6.23. 서울 도착 예정임을 주프랑스대사관에 알려옴.

75-0237

주한공관 설치 - 이란, 1975.8.26.

생산연도	1968-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5 / 6 / 1-60

1. Abbas Ali Khalatbary 이란 외상은 1975.6.4.자 김동조 외무부장관 앞 공한에서 이란 정부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옴.

2. Abbas Ali Khalatbary 이란 외상은 1975.7.16.자 김동조 장관 앞 공한에서 이란 정부가 Abdol Amir Alam 공사참사관을 주한 이란대사대리로 파견 예정임을 알려옴.

3. Abdol Amir Alam 주한 이란대사대리는 1975.8.25. 서울에 도착하여 8.26. 주한 이란대사관을 개설함.

4. Abdol Amir Alam 대사대리는 1975.9.17. 김동조 장관을 예방하여 양국관계, 김 장관의 이란 방문, 이란·북예멘 관계, 이란 국경일 리셉션 등에 관해 협의함.

5. 주한 이란대사관은 1975.10.10.자 외무부 앞 공한에서 Abdol Amir Alam 대사대리의 김종필 총리, 민복기 대법원장 및 정일권 국회의장에 대한 예방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함.

주한공관 설치 - 사우디아라비아, 1975.4.21.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5 / 7 / 1-27

1.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 국무상은 1974.9.1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 시 한국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곧 개설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함.

2.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은 1974.12월 방한 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창설요원으로 Mohamed A. Alaki를 임명하였으며, 동인을 1975.1.20.경 파견하겠다고 언급함.

3. Mohamed A. Alaki 주한 대사대리내정자는 1975.1.2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면담하여, 자신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창설요원으로 발령받았으며, 3월초 부임하여 당분간 대사대리 자격으로 근무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동 대사대리내정자는 3.4. 자신의 한국 부임일자가 부득히 4월 중순으로 연기되었음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알려옴.

4. Mohamed A. Alaki 대사대리는 1975.4.21. 서울에 부임함.

75-0239

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의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지원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5 / 8 / 1-14

아세안 회원국의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지원 이유에 대해 1975.1월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내용임.

1. 미국 측 관측

- 캄보디아의 공산화는 아세안 국가에 위협적 요소가 됨.
- 미국 및 아세안 국가의 캄보디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공산 측과의 협상 타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이 지원에 주도적이며, 싱가포르는 지원에 소극적임.

2. 인도네시아 측 관측

- 아세안 국가의 캄보디아 지원은 론놀(Lon Nol)정권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이 자국의 경우에도 캄보디아와 같이 망명정부가 수립되어 유엔에서 대표권 문제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

3. 필리핀 측 관측

- 아세안 5개국의 묵시적 협약, 즉 망명정권보다는 안정된 정권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공동보조가 캄보디아 지원의 이유임.
- 동 결의는 중국(구 중공)과의 정면대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변동될 수 없음.

4. 호주 측 관측

- 론놀정권에 대한 지지는 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의해 주도됨.
  - 특히 태국은 캄보디아의 적화가 자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사전 예방하려는데 큰 관심을 가짐.
  - 여타 회원국은 아세안의 행동통일면에서 친 론놀정권의 경향을 보임.
- 아세안 국가들은 론놀정권에 대한 지지로 얻는 이익이 중국과의 대립으로 상실될 손실을 보상하리라고 생각함.
- 론놀정권에 대한 지지의 주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 영향력 행사 때문임.

ASEAN(동남아국가연합) 고위관리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5 / 9 / 1-46

1975년 중 제1~2차 아세안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9.15.~17., 싱가포르)

- 참석자
  -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고위관리
- 주요 협의내용
  -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문제
  - 회원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 1974.6월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가서명된 "우호 및 협력 조약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
  - 아세안 공동시장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안
  - 외부 및 내부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회원국들의 경제사회 발전방안

2. 제2차 회의(1975.11.11.~1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참석자
  -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고위관리
- 주요 협의내용
  - 1976.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동남아중립화 계획 협의
  - 동남아중립화 결의안을 향후 아세안 정상회의를 거쳐 유엔에 제출하기로 원칙적 합의
  - 동남아국가의 독립, 주권 및 영토보존 문제를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결의안에 포함

75-0241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무장관회의, 제8차. Kuala-Lumpur, 1975.5.13.-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5 / 10 / 1-99

제8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1975.5.13.~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외무장관

2. 주요 토의의제

- 동남아중립화 계획안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실천계획
- 최근 인도차이나 사태
-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문제
- 지역안보문제
  - 특히 인도차이나반도로부터의 노획무기 유입 방지책 및 상호협조 문제
- 아세안사무국 설치 문제

3. 주요 회의결과

-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공식 의제)에 관한 23개항의 공동성명서 발표
- 비공식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 아세안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과 아세안 사무국 설치에 관한 협정 가서명
- 아세안 해난구조에 관한 협정 서명

4. 특기사항

-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제기함.
  -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자국의 유엔가입 뿐 아니라 북한과의 유엔 동시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원하는 평화적 통일이 유엔 동시가입으로 저해되지 않으므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면서 아세안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공동제안할 것을 제의
-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아세안은 이 문제에 대한 공동제안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

AIPO(아세안 의원연합기구) 구성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
MF번호 C-85 / 11 / 1-20

AIPO(아세안의원연합기구) 결성에 관한 내용임.

1. AIPO 설립경위

- 인도네시아가 1974년 설립을 제의하여 제1차 아세안 의원회의가 1975.1.8.~1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 동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의회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국 의회대표 3명 이내로 구성된 작업위원회(Work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아세안 의회 간 협력의 형식과 구조에 관한 건의안과 아세안 의회협력에 관한 규약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 동 결정에 따라 1975.5.12.~14.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작업위원회는 아세안 의원연합의 명칭, 사무국, 재정, 사용언어 등에 관한 규약안을 작성함.
- 1975.5.13.~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8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 제15항은 아세안 의원 연합기구 결성을 위한 노력을 주목한다고 언급함.
- 제2차 아세안 의원회의가 1975.8.20.~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어 작업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The ASEAN 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AIPO)"이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2. AIPO 목적

- 아세안 국가 의회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의원들 간의 접촉과 이해를 증진함.
- 아세안선언(1967.8.8.)에 제시된 목표 달성을 촉진함.
-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 토의 및 제안함.
- AIPO의 목적 실현을 위해 각 회원국 의회가 취한 조치와 성과에 대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에 제공함.

75-0243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등록처 장래문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5 / 12 / 1-155

1. 호주 정부는 호주 캔버라에 소재하는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의 과학기술등록처를 타 국제기구 산하로 이관시킬 의도를 가지고 ASPAC 회원국들의 의사를 타진해 옴.

- 호주 정부는 ASPAC이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시대착오적인 기구라는 판단에 따라 1974.4월 이후 ASPAC 과학기술등록처의 타 국제기구로의 이관을 ASPAC 회원국들과 협의해 옴.
- 한국 정부는 ASPAC 과학기술등록처 이관이 타 ASPAC 사업기구의 장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 등록처의 장래문제는 ASPAC 전체 사업체의 장래문제와 일괄하여 거론되기를 희망함.
- 대부분의 ASPAC 회원국들은 호주 측의 계속적인 주장에 따라 동 등록처의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으로의 이관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함.

2. 1974.11.27. ESCAP 상임대표회의에서 ASPAC 과학기술등록처의 이관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등록처의 이관을 위한 결의안을 1975.2월 ESCAP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3. 호주 정부는 1974.12.9. 캔버라에서 ASPAC 회원국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ASPAC 과학기술 등록처의 종료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제의함.

- ASPAC 과학기술등록처의 이관을 위한 우선적 절차로서 회원국들이 동 등록처로부터의 철수를 통고함.
- 다음 단계로 ASPAC 과학기술등록처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의 결의로 동 등록처의 재산을 ESCAP에 인계함.

4. 1975.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ESCAP 총회에서 미국, 소련 등 많은 국가들이 과학기술등록처의 ESCAP 이관을 위한 결의안에 반대함으로써 호주 측이 자진하여 동 결의안을 철회함.

5. ASPAC 과학기술등록처 집행위원회는 1975.6.17. 동 등록처의 해체 문제와 재산처리 문제에 관하여 아래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함.

- 1975.6.30.부터 ASPAC 과학기술등록처의 기능을 중단함.
- ASPAC 과학기술등록처의 재산은 호주 정부에 이관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용역등록처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이관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조약
MF번호 2008-14 / 14 / 1-35

외무부 아주국이 1975.1.9. 방교국에 호주 정부가 제의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등록처의 종료 절차에 관한 법적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방교국은 1.14. 아래와 같은 의견을 아주국에 제시함.

1. ASPAC 과학기술등록처 해체 문제와 관련, 동 기구 협약 제17조의 규정상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탈퇴할 필요는 없으므로 탈퇴여부에 관한 기본입장은 귀국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2. 호주 측의 제의대로 협약 탈퇴의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아국 헌법상 조약체결 시의 절차 규정을 유추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탈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75-0245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임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C-85 / 13 / 1-19

1. 갈홍기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이 1975.9.3.자로 사무총장직을 사임함.

- ASPAC 사회문화센터 회원국 대표 및 사무국은 조속히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임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직은 전통적으로 센터 본부 소재지인 한국 측이 제청하여 왔으며, 역대 사무총장은 아래와 같음.
  - 초대 사무총장 : 강병규(1968.9.7.~71.5.6.)
  - 제2대 사무총장: 민병기(1971.7.1.~73.3.12.)
  - 제3대 사무총장: 갈홍기(1973.3.8.~75.9.3.)

2. 제20차 ASPAC 사회문화센터 임시집행위원회가 1975.10.6. 개최되어 한국 측이 제청한 이동환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함.

- 동 위원회는 갈홍기 전임 사무총장의 사임보고를 접수하고, 이동환을 제4대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에 임명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6-37차. 서울, 1975.2.7. 및 9.3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C-85 / 14 / 1-141

제36~37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1. 제36차 회의(1975.2.7.)

● 주요 의제
- 제7차 집행위원회 정규회의 회의록
- 갈홍기 사무총장의 월남 출장보고
- 75/76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 전문직원의 임기연장

● 회의 결과
- 제7차 집행위원회 정규회의 회의록 원안대로 채택
- 갈홍기 사무총장의 현지 활동보고 접수
- 75/76 회계연도 예산안 이의 없이 채택
- 75/76 회계연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일본 측 제안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
- 사무국 공보관의 임기연장 문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결정 유보

2. 제37차 회의(1975.10.3.)

● 주요 의제
- 제19차 임시집행위원회 정규회의 회의록
- 갈홍기 사무총장의 사임 보고 및 신임총장 임명 문제
- 가고시마 이치로 사무국 부총장의 임기연장 승인
- 74/75 회계연도 재정결산 및 재정감사 보고

● 회의 결과
- 제19차 임시집행위원회 회의록 원안대로 채택
- 갈홍기 사무총장 사임보고 및 한국 측의 후임 사무총장 후보(이동환) 추천
- 가고시마 이치로 부총장의 임기연장 승인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 및 대만(구 자유중국) 측이 이의 없음을 표명하고 필리핀 측은 본국 정부에 연장 승인을 건의하겠다고 언급
- 74/75 회계연도 결산보고 채택
  74/75 회계연도 재정감사 보고 및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적

75-0247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8차. 서울, 1975.11.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C-85 / 15 / 1-79

제38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가 1975.11.7. 서울에서 개최됨.

1. 주요 의제

- 제20차 임시집행위원회 회의록 채택
- 제1차 ASPAC TV 회의(1975.6.23.~30., 타이페이)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제2차 ASPAC 국제도서전시회(1975.9.8.~13., 서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제1차 ASPAC 음악회의(1975.10.13.~18., 서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76/77 회계연도 행정비 및 운영비 예산 검토

2. 회의 결과

- 제20차 임시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
- 제1차 ASPAC TV 회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
- 제2차 ASPAC 국제도서전시회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
- 제1차 ASPAC 음악회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를 이의 없이 채택
- 76/77 회계연도 행정비 예산 검토에서 회원국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차기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합의
- 76/77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 검토에서 사무총장 및 전문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이 있어 재조정하기로 합의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9-20차. 서울, 1975.2.14. 및 10.6.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C-85 / 16 / 1-140

제19~20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임시집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됨.

1. 제19차 회의(1975.2.14.)

- 주요 의제
  - 제7차 집행위원회 정규회의 회의록
  -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의 월남 출장 보고
  - 75/76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국 공보관의 임기연장
- 회의 결과
  - 제7차 집행위원회 정규회의 회의록 원안대로 채택
  - 사무총장의 현지 활동보고 접수
  - 75/76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사무국 공보관의 2년 임기연장 승인

2. 제20차 회의(1975.10.6.)

- 주요 의제
  - 제19차 임시집행위원회 정규회의 회의록 채택
  - 갈홍기 사무총장의 사임 보고 및 신임총장 임명 문제
  - 가고시마 이치로 사무국 부총장의 임기연장 승인
  - 74/75 회계연도 재정결산 및 재정감사 보고
- 회의 결과
  - 제19차 임시집행위원회 회의록 원안대로 채택
  - 갈홍기 사무총장 사임보고 및 한국 측의 후임 사무총장 후보(이동환) 추천
  - 가고시마 이치로 사무국 부총장의 임기연장 승인
  - 74/75 회계연도 결산보고 원안대로 채택
  - 74/75 회계연도 재정감사 보고접수
  - 이동환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 선서 및 사무총장직 수락 연설

75-0249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8차. 서울, 1975.11.1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C-85 / 17 / 1-152

제8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가 1975.11.14. 서울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한국, 일본, 필리핀 및 대만(구 자유중국)대표
-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및 관계관

2. 주요 의제

- 제20차 임시집행위원회 회의록 채택
- 제1차 ASPAC TV 회의(1975.6.23.~30., 타이베이)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제2차 ASPAC 국제도서전시회(1975.9.8.~13., 서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제1차 ASPAC 음악회의(1975.10.13.~18., 서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76/77 회계연도 행정비 및 운영비 예산검토

3. 회의 결과

- 제20차 임시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
- 제1차 ASPAC TV 회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
- 제2차 ASPAC 국제도서전시회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
- 제1차 ASPAC 음악회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
- 76/77 회계연도 행정비 예산을 원안대로 채택
- 76/77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원안대로 채택

OAS(미주기구) 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5 / 18 / 1-95

1. 1975.5.8.~18.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OAS(미주기구) 총회에서 멕시코 외상이 대쿠바 봉쇄해제의 방법으로 리우조약(Rio Treaty)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동 회의는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될 예정임.

- 코스타리카 회의는 OAS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외상들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합의된 것임.
- 동 회의에서는 1947년 리우조약을 개정하여 대쿠바 봉쇄해제를 2/3 찬성이 아니라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 또는 각국에게 재량권을 주어 쿠바와의 관계 재개 여부를 각 회원국에게 일임하는 방법 등을 토의하게 될 것임.

2. OAS 21개국은 1975.7.16.~28.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외상회의(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리우조약 개정문제를 협의함.

- 동 회의는 7.22. 리우조약 제17조(제재의 중지)를 과거 2/3 찬성에서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OAS 헌장 개정안을 가결함.
- OAS 특별이사회(Permanent Council)는 7.26. 남미 10개국의 요청에 따라 쿠바문제 토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7.29. 개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7.29. 개최된 특별회의는 각국이 자국의 의사에 따라 쿠바와 외교 및 경제관계를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75-0251

EC(구주공동체)·COMECON(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과의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C-85 / 19 / 1-10

1. 1974.10.15.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C(구주공동체) 9개국 외상회의는 EC 대 COMECON(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의 공식회담을 갖자는 COMECON 측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

- 소련은 동·서간 경제교류에 있어 국가 대 국가의 개별접촉 방식을 지양하고 EC 대 COMECON이라는 블록 간 교류방식을 제도화시키자고 주장해 옴.
  -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2.12.21. 소련 창건 50주년 기념연설에서 구주지역에 현존하는 2개의 통상경제기구 간에 어떠한 형태의 기초를 발견해야 한다고 언급함.

2. 1975.2.4.~7. 소련 모스크바에서 EC·COMECON 간 첫 실무급 회담이 개최됨.

- 동 회담에서는 COMECON이 양 기구간에 대외무역창구 일원화를 통한 포괄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바라는데 반해, EC는 COMECON 가입국과 개별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협상이 무산됨.

3. COMECON 측은 1976.2월 EC 측에 양기구 간 공식회담 재개를 제의함.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통상2
MF번호	C-85 / 20 / 1-129

1.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이 1975.7.16.~17.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동 정상회담에서는 EC 내의 경제문제, 국제통화, 에너지 및 원자재회의 재개문제, 유럽 정치동맹의 전망 등이 토의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함.

2. EC 외상회담이 1975.9.11.~12.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어 유엔총회, 포르투갈 사태, 중동 문제, 아랍권과의 대화, 사이프러스 문제, 12월 EC 정상회담 등에 관해 논의함.

- 동 회담은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중동 문제에 관한 시나이 잠정협정이 데탕트를 위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평가하고,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 국경에 대해서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동 공동발표문은 중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EC의 역할을 강조하고, 포르투갈 경제의 재건을 위한 EC의 재정지원 의사를 표명함.

3. EC 정상회담이 1975.12.1.~2.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어, 국제경제협력회의 EC 대표 파견문제, 구주의회 직선문제, EC 공동여권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 1975.12.16.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경제협력회의에 EC를 대표하여 1975년도 하반기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참석하기로 결정함.
  - 다만 산유국으로서 영국과 차기 의장국으로서 룩셈부르크는 각각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동 회의 토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
- 구주의회 의원은 1978.5월 또는 6월에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7개국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기로 결정함.
  -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추후에 선거를 실시함.
  - 선거방식과 의석배정 등은 추후 외상회담에서 결정함.
- 1978년부터 EC 회원국 국민에게 EC 공동 단일여권을 발급하기로 합의함.

75-0253

NORDIC(북구협력기구) 외상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C-85 / 21 / 1-29

1975년 중 NORDIC(북구협력기구) 외상회의가 두차례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3.20.~21., 핀란드 헬싱키)

- 참석자
  -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외상
- 공동성명 요지
  - 국제협력의 강화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제개발에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심각한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강조함.
  -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및 중부유럽의 군사력 감축을 위한 비엔나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SALT(전략무기감축협상)에서의 진전을 희망함.
  -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사이프러스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환영함.
  - 중동 사태 및 아프리카에서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제3차 해양법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제인도법 규정 보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함.

2. 제2차 회의(1975.8.21.~22., 노르웨이 오슬로)

- 참석자
  -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및 스웨덴 외상
- 공동성명 요지
  - 국제협력의 강화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핀란드에서 개최된 제1차 CSCE 회의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표명함.
  - 창설 30주년을 맞는 유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
  - 중동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 및 기여에 만족을 표명함.
  - 세계 여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베트남에서의 군사작전 중지에 대한 만족을 표명함.

이슬람 외상회의, 제6차. Jeddah(사우디아라비아), 1975.7.12.-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85 / 22 / 1-26

제6차 이슬람 외상회의가 1975.7.12.~15.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40개 이슬람 국가 대표 참석

2. 회의 구성

- 정치위원회
- 경제, 사회 및 종교문제위원회
- 행정 및 재정위원회

3. 회의 결과

- 1975.7.16. 공동성명 발표

4. 특기 사항

- 이스라엘 유엔축출 결의
  -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 규탄
  - 회원국에 대해 이스라엘과의 정치, 경제 및 문화관계를 단절하도록 촉구
  - 이스라엘을 유엔으로부터 축출하도록 촉구
- 걸프지역 국가 외상회의
  - 이슬람 외상회의에 참석한 걸프지역 국가 외상들이 별도로 회합하여 약 2개월 내에 걸프지역 국가 외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75-0255

Bahie Eldin Nasr 일본 상주 아랍연맹 대표 방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5 / 23 / 1-187

1975년 중 Bahie Eldin Nasr 일본 상주 아랍연맹대표가 두차례 방한함.

1. 제1차 방한(1975.7.22.~27.)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대통령 특별담당보좌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문공부장관 등 고위인사 면담
- Nasr 대표의 주요 발언요지
  - 한국과 아랍국가와의 관계개선책으로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관계 증진이 효율적임.
  - 한국 측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에 대한 정식 외교적 승인(Diplomatic Recognition)을 요청하지는 않지만, 한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기를 요청함.
  - 한국 고위사절을 아랍연맹 본부에 파견할 것을 권유함.

2. 제2차 방한(1975.10.7.~12.)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대통령 특별담당보좌관, 문공부장관 등 고위인사 면담
- Nasr 대표의 주요 발언요지
  - 한국과 아랍국가와의 관계개선책으로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과 제휴하여 이집트에 진출하는 3각 협력관계를 권유함.
  - 한국의 대이집트 관계개선을 위하여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음.
  - 이집트 대통령의 방미(1975.10.27.) 기회에 미국이 한국·이집트 관계개선을 이집트 측에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이집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측면지원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AAPSO(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회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5 / 24 / 1-32

1. AAPSO(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회의가 1974.3.24.~27.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최됨.

- 참석자
  - 79개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 400여명의 대표 참석
  - 북한대표도 참석
- 회의 결과
  - 아랍 급진세력의 주동으로 개최된 동 회의는 결의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이란, 오만 등 온건 보수국가들을 신랄하게 비난
  -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는 미군철수 등 북한입장 지지내용을 결의안에 포함

2. 북한은 1975.1.18.~19.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북한 지지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s Struggle for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를 개최함.

- 참석자
  - AAPSO 등 국제기구와 관련국
- 회의 결과(회의 일반선언 요지)
  - 김일성의 통일노선(5개 제안) 환영
  -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 계속을 위한 북한의 노력 찬양
  -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 주장
  - 일본 군국주의 비난
  - 미국의 침략적 행위 비난

75-0257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12차. Kampala(우간다), 1975.7.29.-8.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85 / 25 / 1-166

1975년 중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관련 회의가 개최됨.

1. 제24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회의(1975.2.13.~21.,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 중동 및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프리카의 문제이며 팔레스타인에 상징적인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아디스아바바선언을 채택함.
- 75/76년 OAU 예산안(7,181,902달러)을 통과시킴.
- Arafat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제12차 캄팔라 정상회담에 초청하기로 결정함.

2. OAU 특별외상회의(1975.4.7.~11.,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 남부아프리카지역의 인종차별 문제를 주로 토의함.
- 아프리카에서의 소수 백인의 지배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3. 제25차 OAU 각료회의(1975.7.18.~29., 우간다 캄팔라)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고 남아공화국을 계속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구할 것을 촉구함.
- 이스라엘이 아랍점령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하는 유엔결의를 이행할 때까지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킬 것을 결의함.
- 소말리아는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지부티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함.

4. 제12차 OAU 정상회담(1975.7.29.~8.1., 우간다 캄팔라)

- 한국문제는 거론되지 않음.
- 유엔에서의 이스라엘 축출 문제에 관하여는 아랍권과 아프리카권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결의안 내용이 약화됨.
- 스페인령 사하라 문제는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므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앙골라 문제에 관하여는 포르투갈이 전투를 즉시 정지시키고 앙골라의 순조로운 독립달성을 위하여 책임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12차. Kampala(우간다), 1975.7.29.-8.1.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85 / 26 / 1-431

1975년 중 개최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관련 자료임.

1. OAU 특별외상회의(1975.4.7.~11.,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결의문 및 언론보도

2. 제25차 OAU 각료회의(1975.7.18.~29., 우간다 캄팔라) 참가자, 의제, 연설문, 결의문 및 언론보도

3. 제12차 OAU 정상회담 결의문
   - 앙골라 사태에 관한 결의문
   - 아프리카·아랍 협력에 관한 결의문
   - 지부티 문제에 관한 결의안
   - 중동 문제 및 점령된 아랍영토에 관한 결의안
   -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결의안
   - OAU와 아프리카 노동장관회의 간 관계에 관한 결의안

75-025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6-97 / 9 / 1-110

1. 제10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특별각료회의가 1976.1.8.~9.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됨.

- OAU 특별정상회담(1976.1.10.~12.)에서 앙골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
  - MPLA(앙골라해방인민운동)를 앙골라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하는 문제
  - 앙골라에 개입하고 있는 외국군의 철수 문제
  - 앙골라에서의 즉각적인 전투 중지 및 연립정부수립 문제

2. 앙골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OAU 특별정상회담이 1976.1.10.~12.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어 2개의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나 모두 채택되지 못함.

- 나이지리아가 제안한 결의안은 MPLA를 앙골라의 유일정부로 승인하고 OAU에 가입시킨다는 내용임.
- 세네갈이 제안한 결의안은 OAU의 보장하에 앙골라에서의 즉각 휴전, 외국간섭의 배제 및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한 3파(MPLA, FNLA(앙골라민족해방전선) 및 UNITA(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 대표의 동시 초청 및 회의 개최를 내용으로 함.
- 2개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2개안 모두 단순과반수 지지 확보에 실패함.
- 앙골라문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앙골라 문제를 계속 면밀히 검토하기로 합의함.

Onu, Peter U.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차장 방한, 1975.1.21.-2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C-86 / 1 / 1-134

Onu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차장이 외무부의 초청으로 1975.1.21.~25. 방한함.

1. 방한 목적

- 공식적으로는 OAU 사무차장 자격으로 방한함.
- 비공식적으로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지시로 농기구, 섬유, 제약 등 분야에서의 한국 투자유치 가능성 조사를 위해 방한함.

2. 방한 초청경위

- Onu 사무차장은 1974.4.2.~4. OAU 해방위원회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함.
- 한국 정부는 1974.5.25. OAU 해방위원회에 의약품 구입대금으로 3만 달러를 기증하는 한편 해방위원회대표단의 방한을 추진함.
- Onu 사무차장은 자신이 해방위원회대표단의 이름으로 초청되는 경우 위원회의 공식승인 등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자신을 OAU 정치담당 사무차장 자격으로 초청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인을 정식 방한 초청하게 됨.

3. 주요 방한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 외무부차관 주최 비공식 만찬, 주에티오피아대사 주최 오찬,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 판문점 시찰
- 경제기획원, 상공회의소, 코트라 방문
- 섬유, 제약, 농기구공장 시찰

75-0261

신정부 승인 - 방글라데시, 1975.8.2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C-86 / 2 / 1-94

1. 정부는 1975.8.21.자로 방글라데시 신정부를 승인함.

- 방글라데시 신정부가 보낸 공한에 대한 주방글라데시대사관 명의 회답 공한방식으로 승인 조치함.
  -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정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승인 조치
- 주방글라데시대사는 8.21. Hashim 방글라데시 외무부 차관보를 면담, 동 공한을 전달함.

2. 방글라데시 신정부 승인 경위

- 1975.8.15. 방글라데시에서 군부에 의한 정변이 발생함.
  - Rahman 대통령 및 측근 대부분이 피살
  - Mostaque Ahmed 전 상무장관이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0인의 민간내각을 구성
- 한국 정부는 아래 사항을 검토, 방글라데시 신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함.
  - 신정부는 8.19. 현재 전국을 완전 장악하여 정권의 기반이 확고
  - 신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 및 유엔헌장 준수 등을 선언하고 다카 주재 모든 외국공관에 동 내용의 공한 발송
  - 신정부의 수뇌부는 친서방적

신정부 승인 - 온두라스, 1975.4.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6 / 3 / 1-63

1. 중미 온두라스에서 1975.4.22. 군부 구데타가 발생, Lopez 온두라스 대통령이 축출되고 Juan Alberto Melgar Castro 대령이 온두라스 국가원수로 취임함.

2. 정부는 온두라스 신정부 승인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감안, 신정부에 대한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의 표시로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1975.4.26.자)을 주멕시코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3. 일본 외무성도 온두라스 신정부 승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신정부의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외국의 승인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밝힘.
   - 미국이 신정부 승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
   - Lopez 대통령 축출과 Melgar 대령의 대통령 취임을 단순한 국가원수의 변동으로 봄.
   - 신정부의 성격이 구정권과 별로 다르지 않음.

75-0263

신생독립국 승인 - 파푸아뉴기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동남아
MF번호	C-86 / 4 / 1-78

1. 한국 정부는 1975.9.16. 독립한 파푸아뉴기니를 동일자로 국가로 승인함.
   - 대통령 명의의 독립축하와 한국 정부의 승인통보 전문을 파푸아뉴기니 총독에게 발송함.

2. 상기 승인방식에 대해서는 주호주대사가 1975.3월 파푸아뉴기니에 출장하여 파푸아뉴기니 측과 합의한 바 있음.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전3권 (V1. 1974)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6 / 5 / 1-333

1. 외무부는 1974.6.13. 오키나와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문제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한바, 동 재가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주일본대사관과 민단간부로 구성되는 위령탑 건립위원회를 동경에 설치함.
- 탑 건립 최적합 용지인 사유지를 매수함.
- 탑 건립용 소요 총액 중 10만 달러를 정부 예비비에서 보조하고, 잔여 소요경비는 민단의 모금운동을 통하여 충당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회의 등을 거쳐 대지 매입, 위령탑 설계, 건립허가 취득, 비문작성 등을 추진한바, 1974.11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음.

- 비문 작성은 노산 이은상씨에게 위촉함.
- 설계도는 건설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함.
- 위령탑 공식명칭은 문공부와 협의하여 '한국인 위령탑'으로 결정함.
- 당초 건립예정지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전 예정지와 동일한 '마부니' 지역내 대지로 건립지를 변경함.
- 위령탑 건립을 위한 정부 보조금 10만 달러를 주일본대사관에 송금함.
- 오키나와 현청으로부터 위령탑 건립허가를 취득함.
- 위령탑 건립부지를 매입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74.11.28. '한국인 위령탑 건립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킴.

75-0265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전3권 (V2. 197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6 / 6 / 1-242

1. 오키나와 한국인 위령탑 제막식이 1975.9.3. 오키나와 현지에서 개최됨.

- 동 제막식은 고재필 보건사회부장관, 김영선 주일본대사, 민단간부, 일본인 유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식으로 진행됨.
- 동 제막식후 기념 리셉션이 개최됨.

2. 한국인 위령탑 건립개요

- 1975년도 주요 일지
  - 4.9. 공사 착공
  - 5.12. 대통령의 탑명 휘호 송부
  - 8.14. 준공
  - 9.3. 제막식
- 헌시(이은상), 글씨(서희한)
- 총경비: 약 8천만 엔
  - 한국 정부가 10만 달러 보조, 나머지는 민단모금으로 충당

3. '한국인 위령탑 건립위원회'는 1975.10.29. 아래 사항을 결정하고, 동 건립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의함.

- 건립비 부족액 처리
  - 부족액 11백만 엔의 보전방안은 추후 민단에서 검토
- 위령탑 관리비
  - 연 175천 엔 정도의 관리비는 중앙민단에서 부담
- 소유권 명의 변경
  - 위령탑 부지의 소유권 명의가 위령탑 건립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동 소유권 명의를 한국 정부로 변경
  - 한국 정부에서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

오끼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6 / 7 / 1-192

오키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에 관한 자료임.

1. 공사 안전위생 지시서(일본어, 1975.5~6월)

2. 공사진행 상황도 및 진행 상황 사진

3. 위령탑 설계안 및 설명서
   - A, B, C, D안

4. 위령탑 안내(일본어)

5. 한국인 위령탑 건립(일본어, 1974.12월)
   - 동화일급건축사 사무소 작성

75-0267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6 / 8 / 1-161

1. 주일본대사관은 1975.4월 일본 후생성 관계관이 주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재한 원폭피해 원조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 재한 피폭자 원조문제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의료협력 아이템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한·일본 양국정부 사이에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다면 일본 후생성으로서는 이에 적극 응할 것임.

2. 보건사회부장관은 1975.8.7.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는 기회에 차기 한·일 각료회의 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정식의제로 제의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함.

3. 외무부는 1975.12월 일본 정부 당국이 한국내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한국이 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동건에 관한 계획안을 송부하여 주도록 보건사회부에 요청함.

4. 외무부는 1975.12월 보건사회부장관 명의 일본 후생대신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

- 일본 후생대신은 주일본대사관에 1976.1월 방한 희망의사를 전달함.

Sinnott, James P. 미국인 신부 출국 조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담당관
MF번호	C-86 / 9 / 1-46

1. 법무부(인천출입국사무소)는 1975.4.25. 미국인 신부 James Sinnott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고, 4.30.까지 출국하도록 통보함.

- 동 신부는 입국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3회에 걸쳐 법무부의 경고를 받은 바 있음.

2. Sinnott 신부는 1975.4.30. 자진 출국함.

- 메리놀회 한국지부(Maryknoll Fathers in Korea)는 4.29. 동 신부의 강제출국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3.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동 신부의 체류기간을 몇 달만이라도 연장하여 줄 것을 희망한바, 외무부장관은 동인이 입국목적 이외의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관계당국에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함.

- 슈나이더 대사가 동 신부에게 체류기간 연장 탄원서 및 상기 취지 서약서 제출을 종용하였으나, 동 신부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함.

75-0269

주요인사 접촉 기록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6 / 10 / 1-160

외무부는 외무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대리가 면담 또는 서신 왕래한 외국인사의 기록을 아래와 같이 청와대비서실에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함(동 자료 수록).

1. 1975.4월 송부(1975.3.4.~31. 기록)
   - 주요 외국인사 접촉기록카드 16매
   - 외무부장관의 구주, 미국 및 일본 순방중 주요 면담인사 명단

2. 1975.5월 송부(1975.4.1.~30. 기록)
   - 주요 외국인사 접촉기록카드 17매

3. 1975.6월 송부(1975.5.1.~30. 기록)
   - 주요 외국인사 접촉기록카드 10매

4. 1975.10월 송부(1975.7.1.~9.30. 기록)
   - 주요 외국인사 접촉기록카드 10매

외무부장관 연설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국제연합
MF번호	C-86 / 11 / 1-40

1975년 중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박동조 외무부장관의 연설문이 수록됨.

1. 김동조 장관 연설문

- 한·미 경제협의회(1975.10.2. 뉴욕)
  - '변천하는 세계 속의 한국의 안보'
- 동아일보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의 외무부장관 치사(11.28.)

2. 박동진 장관 연설문

- 취임사(1975.12.27.)

75-0271

함병춘 주미국대사 연설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6 / 12 / 1-33

1. 함병춘 주미국대사는 1975.2.18. 미국 유타주 Salt Lake City에 출장,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Korea and Asia:Crisis,Continuity and Change' 주제로 연설함(동 연설문 수록).

2. Korea Herald지는 1975.3.23.자 2면에 동 연설문을 게재함.

주한 프랑스대사 면담록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C-86 / 13 / 1-9

1.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1.15. 랑디 주한 프랑스대사를 면담함(면담요록 수록).

2. 동 면담시 논의사항

- 북한의 프랑스제 헬기도입 보도 문제
- 경제협력 문제
- 유엔 문제
- 프랑스 외무장관 방한 문제

75-0273

교황청(구 바티칸) 교황 메시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86 / 14 / 1-21

1. 주교황청대사는 1975.10월 교황 바울 6세의 1976년도 신년사를 보고함.
   - 신년사 제목: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PAUL VI for the Celebration of the DAY OF PEACE, 1 January 1976

2. 주한 교황청대사관은 1975.11월 상기 교황 바울 6세의 1976년도 신년사 사본이 동봉된 공한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각각 전달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연설문 및 기자회견 내용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6 / 15 / 1-251

1974~75년 중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연설문 및 기자회견 기록 등임.

1. 1974년

- 12.23. Business Week지 기자와의 회견 기록

2. 1975년

- 1.28. 기자회견 기록
- 3.26. 기자회견 기록
- 4.17.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오찬 회합시 연설문 및 기자회견 기록
- 4.29. 주월남 미국인 및 일부 월남인 철수완료에 관한 기자회견 기록
- 5.5. Barbara Walters(NBC-TV 'Today' Show)와의 대담기록
- 5.13. Kansas시에서의 기자회견 기록
- 5.21. 독일 베를린시 하원 연설문
- 8.14. Southern Commodity Producers Conference(Birmingham 개최) 연설문
  - 제목: American Unity and the National Interest
- 9.22. 유엔총회 연설문(한국관계 부분 요지)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조치가 강구되기까지 휴전협정을 존속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직접 관계 당사자가 회동할 것을 제의
- 11.24.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문(아시아관계 부분 골자)
  - 아시아에서 강력한 역할 수행
  - 일본과의 제휴강화, 중국과의 관계개선,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협정체결 촉구, 동남아에서의 새로운 안정구축

75-0275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1 사전준비철)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_{1}-32 / 1 / 1-237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가 1975.9.14.~15. 서울에서 개최됨.

1. 한·일본 양국정부는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를 1975.9.15.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8.29. 양측에서 공동 발표함.

- 당초 합의 발표에는 경제기획부,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4명의 각료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가로 양국 농수산각료도 참석하는 것으로 추후 결정됨.
- 일본 대장상이 국회 대책 등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대장성 재무관(차관급)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측에서도 재무차관이 참석하기로 함.

2. 회의 일정

- 9.14.
  - 일본대표단 김포 도착, 국립묘지 참배
  - 국무총리 예방, 양국 참석각료를 위한 국무총리 주최 만찬(총리공관)
  - 수행원을 위한 각부처별 주최 만찬
- 9.15.
  - 개회식, 제1차 전체회의, 각료 오찬 겸 회의, 제2차 전체회의(공동성명 채택 포함), 폐회식
  - 대통령 예방, 공동기자회견, 일본 측 주최 리셉션(일본대사관저)
  - 일본대표단 출발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2 경제관계 실무자회의. 동경, 1975.9.3.-9.)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_1-32 / 2 / 1-87

제8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대비한 한·일본 경제관계 실무회담이 1975.9.3.~9.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이선기 경제기획원 경제협력 차관보, 신동원 외무부 경제협력국장 등 7명

2. 동 실무회의에서는 각료회의 의제 조정, 공동성명(경제부문) 초안 작성, 1975년도 및 1976년도 프로젝트, 상업차관 추진문제 등을 협의함.
   - 공동성명(경제부문) 초안
     - 한국안을 기초로 일본 외무성과 공동안을 마련하고 일본의 각부처 대표와 협의함.
     - 양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름.
   - 1975년도 경협대상사업(한국 측 설명)
     - 농업개발, 통신시설 확장, 충북선 복선화, 수출산업육성에 관하여 일본 측에 설명함.
     - 서울 지하철의 경우는 일본 측에 의한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자본협력 대상이 됨을 감안, 일본 측이 조속히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요청함.
   - 1976년도 경협대상사업
     - 1975.10말경으로 예정된 양국 실무회담에서 1975년도 대상사업 협의 시 일괄 다루기로 함.
   - 상업차관 추진 문제
     - 한국 측은 새로이 조정된 우선순위를 일본 측에 제시하고, 석유화학, 종합제철 순으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 일본 측은 종합제철의 경우는 문제점이 없음을 시사하고,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통산성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함.

75-0277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3 회의결과)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_1-32 / 3 / 1-244

1975.9.14.~15.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결과임.

1. 제8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는 10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채택함.

- 1-2항: 개최일자·장소, 참석자, 의제
- 3-4항: 국제 정세 및 아시아 정세, 한반도 정세
- 5항: 한·일본 관계
- 6-7항: 양국 경제정세, 세계무역 정세
- 8-9항: 한·일본 경제협력
- 10항: 제9차 회의 동경 개최

2. 동 회의시 아래 연설문이 수록됨.

- 한국 측: 개회사(한국어), 외무부장관 연설문(일본어), 경제정세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 연설문(한국어, 일본어), 상공부장관 연설문(한국어), 폐회사(일본어)
- 일본 측: 양국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상 모두발언(일본어)

3. 한·일본 외무장관은 동 회의 폐회 후 약 40분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국 측은 서울신문 및 조선일보 기자, 일본 측은 아사히신문 및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질문하고 양국 외무장관이 교대로 답변함.

4. 농수산부와 수산청은 1975.9월 상기 회의시 농업·수산분야 토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대책을 주일본대사관 농무관 및 수산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4 회의운영 준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 -32 / 4 / 1-215

1975.9.14.~15.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운영준비 사항임.

1.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준비자료(행정관계 최종안)

- 기본사항
  - 일정, 의제, 한국 측 대표 명단 및 약력, 일본 측 대표 명단 및 약력, 일본 측 수행원 명단, 일본 측 대표·수행원 방배치
- 각종 행사관계
  - 공항 출영인사, 국립묘지 참배인사, 국무총리 예방인사, 국무총리 주최 만찬, 대통령 예방, 공항 환송인사, 공항 영송절차, 각료 오찬 및 회의, 외무장관 개별회담, 실무자 만찬
- 준비계획
  - 회의준비, 영접준비
- 보도관계
  - 일본 수행기자단 명단, 보도관계 안내사항
- 사무국
  - 한국 측 사무국 편성, 일본 측 사무국 편성, 사무국 방배치, 회의관계 전화번호
- 회의용 각종 표지
  - 회의장 표지, 대표 명단, 참석 대표단 표지, 공항 도착·출발시 일본 측 대표단 표지, 공항 출영송 인사 및 공항 취재기자 표지
- 회의장 등 안내도
  - 본회의장 배치도, 전체회의 좌석 배치도, 양측 프레스센터, 공항 영송도

2. 한국 측 사무국의 편성

-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사무총장, 아주국장을 사무차장으로 함.
- 기획·운용 총괄반, 의전반, 행정반, 연락반 등 4개반이 편성되고, 공보관이 홍보조·회견조·프레스센터조를 운영하도록 함.

75-0279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5 행정관계철)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_1-32 / 5 / 1-189

1975.9.14.~15.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행정 관련 사항임.

1. 행정사항(외무부 관련 실·국간에 협조 요청한 사항)

- 기자단(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출입기자단) 명단 송부
- 외빈차 협조, 일본대표단 국무총리 예방시 일본특파원 사진취재 협조, 일본 측 수행기자단 입국수속 협조, 국립묘지 참배 협조

2. 타기관 협조(외무부가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한 사항)

- 문화공보부: 홍보자료 지원,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 총무처: 공항 영송용 차단봉 사용, 중앙청 회의용 탁상 등 기물사용
-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호, 교통 편의 제공, 숙소주변 소음통제
- 법무부: 출입국 절차 편의제공
- 내무부: 경호, 야간통행증 발급
- 관세청장: 통관절차 편의제공
- 교통부: 공항 레드카펫, 연단 사용, 귀빈실 사용
- 국방부: 공항 도열병 배치
- 체신부: 숙소 임시전화 가설, 프레스센터 텔렉스 가설

3. 리셉션(외무부가 관계부처에 만찬 개최 요청한 사항)

- 문화공보부: 일본 수행기자단을 위한 만찬 개최
- 경제기획원, 상공부 및 농수산부: 각 부처별로 관련 수행원·실무자를 위한 만찬 개최

4. 예산

- 외무부는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외무부가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비를 지급하여 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요청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6 언론반응)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 -32 / 6 / 1-151

1975.9.14.-15.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언론보도 내용임.

1. 제8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일본 주요 신문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아사히신문
- 제8차 한·일본 각료회의에서 신한국 조항을 공식화함.
- 공동성명은 추상적 표현을 쓰고 있으나 사실상 신한국조항을 강조한바, 불투명한 표현은 일본 국회 논의에서 불씨를 피하려는 일본 측의 배려와 한국 측의 동조 결과임.
- 금번 회담은 한마디로 선린협력의 명세인바, 한·일본 관계에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치·경제 뿐 아니라 군사면에서까지 공동체의 길을 열었음.
- 1975.9.15. 기자회견에서 미야자와 일본 외상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인정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으며,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한·일본 양국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강조함.

● 산케이신문
- 공동성명에 일본 측의 구체적인 약속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일본 측 베이스로 끝난 모양임.
-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어디까지나 한·일본 우호의 기초 위에서 행할 것이라는 미야자와 외상의 발언이 주목됨.

2.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개최와 관련한 한국 주요 신문기사의 클리핑이 수록됨.

75-0281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8차. 서울, 1975.9.14.-15. 전7권 (V.7 자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_1-32 / 7 / 1-250

1975.9.14.-15.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자료임.

1. 외무부 부내자료(국제경제국, 영사교민국, 미주국, 정보문화국, 통상국, 구주국) 및 제8차 각료회의 주요 토의 및 면담자료(아주국)

2. 타기관 자료(과기처, 수산청,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교통부, 재무부, 상공부) 및 제8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의 의제1에 관한 토의계획자료

공관장회의, 1975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Paris, 1975.3.16.-18.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구주/통상2
MF번호 C, -32 / 8 / 1-312

1. 원칙재가 및 회의준비

- 외무부는 1975.1월 북미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대통령 재가를 득함.
  - 기간 및 장소: 1975.3월, 프랑스 파리
  - 참석자: 북미 및 구주지역 19개 공관장(총영사 제외), 외무부 및 관계부처 직원

2. 회의 일정

- 3.16. 정무관계 토의,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3.17. 경제관계 토의
- 3.18. 공보관계 회의, 정무 및 행정관계 회의

3. 회의 결과보고(토의 요지)

- 정무관계
  - 북한의 대구주 진출 저지, 북한 승인 또는 수교시 대책, 기존 외교망의 강화, 대동구권 관계 개선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토의
  - 1975년도 유엔대책에 관한 본부입장 시달
- 공보관계
  - 1975년도 해외홍보 시책의 설명과 병행하여 각 공관장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토의
- 경제관계
  - 본부의 통상진흥 정책의 방향과 시책을 설명하고 공관장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토의
- 결의문 채택
  - 공관장은 6.23 선언에 입각한 강력한 외교활동 전개와 수출진흥활동 전개를 다짐하고 헌신적 근무자세를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

75-0283

공관장회의, 1975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Paris, 1975.3.16.-18. 전3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구주/통상2
MF번호	C, -32 / 9 / 1-256

1. 북미·구주지역 공관에서 보고한 공관장 회의자료임.

2. 아래 공관의 회의자료가 수록됨.

- 주미국대사관(정무 관계), 주캐나다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 (공관장회의 참고자료)

공관장회의, 1975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Paris, 1975.3.16.-18. 전3권 (V.3 자료집)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구주/통상2
MF번호	C_1-32 / 10 / 1-384

1. 북미·구주지역 공관에서 보고한 공관장 회의자료(경제 관계)임.

2. 아래 공관의 회의자료가 수록됨.

- 주덴마크대사관, 주핀란드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그리스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 주미국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75-0285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아주지역. Jakarta, 1975.2.27.-3.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 -33 / 1 / 1-250

1. 기본 사항

- 1975년도 아주지역 공관장회의가 외무부장관 주재하에 1975.2.27.~3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 회의 일정
  - 2.27. 개회 및 제1차 회의(국무총리 치사, 외무부장관 훈시, 1975년도 외무부 업무계획 설명)
  - 2.28. 제2차 회의(정무), 업무오찬, 제3차 회의(정무, 공보), 제4차 회의(경제), 제5차 회의(행정)
- 참석자
  - 아주지역 공관장 20명
  - 외무부: 외무부장관(회의 주재), 아주국장 등 3명
  - 관계부처: 상공부차관 등 3명

2. 공관 건의사항 및 본부방침

- 외무부는 1975.3월 및 4월 각 공관별 경제관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을 해당공관에 통보함.
  - 관계부처(상공부, 재무부, 전매청, 농수산부, 수산청, 경제기획원)의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종합

3. 회의 결과

- 개회식
  - 국무총리 치사(대독), 외무부장관 훈시
- 정무 관계
  - 대통령 연두순시 시 지시사항 설명
  - 한국의 미수교국과의 수교 노력 및 북한의 침투저지 대책, 유력인사 초청, 친한단체 육성, 유엔 및 비동맹 대책에 관해 토의
  - 공보·문화관련 문공부 측 요망사항을 설명하고 각 공관별 건의사항 검토
- 경제 관계
  - 상공부차관은 1975년도 아주지역에서는 자원협력과 관련한 경제협력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 하고, 바이어 초청 적극시행과 박람회 적극참가를 강조
  - 각 공관별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 폐회식
  - 공관장 결의문을 서명 채택하고, 주일본대사가 이를 낭독한 뒤 폐회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아주지역. Jakarta, 1975.2.27.-3.1.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 -33 / 2 / 1-194

1975년도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임.

1. 연설문
   - 국무총리 치사(외무부장관 대독)
   - 외무부장관 훈시

2. 회의 자료
   - 각 공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자료(외무부 아주국)
   -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외무부)
     - 경제 기술협력 및 통상진흥 관계
   - 아주지역 공관장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문화공보부)
   - 아주지역 공관장에 대한 강조 요망사항(문화공보부)

75-0287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아·중동지역. 서울, 1975.1.27.-2.8.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중동
MF번호	C₁-33 / 3 / 1-311

1. 기본 사항

- 1975년도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가 1975.1.27.~2.8.서울에서 개최됨
  - 1.27.~2.1.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후는 각종 시찰 진행
- 회의 일정
  - 1.27.~29. 개회식 및 정무관계 회의
  - 1.29.~30. 경제관계 회의(부총리 주재 회의시 경제개발계획 및 경제발전 현황 청취, 상공부 장관 주재 회의시 수출진흥방안 토의)
  - 1.31. 홍보관계 회의(문공부장관 주재), 공관운영관계 회의
  - 2.1. 회의결과 종합 및 폐회식(결의문 채택)
- 참석 공관장
  - 아·중동국가 공관장 19명 및 주유엔대사 등 총20명

2. 공관건의사항 및 본부방침

- 아·중동 공관장회의 자료(공관별 주요 건의사항 및 추진방향)가 수록됨
- 외무부는 1975.2월 공관장회의시 입(立) 광고판 설치 건의에 대한 상공부의 계획을 해당 공관(12개)에 통보함.

3. 회의 결과

- 정무 관계
  - 아·중동 정세분석 및 1975년도 외교시책 브리핑
  - 토의사항: 외교망 정비 강화책, 미수교국 및 신생 독립국과의 수교 노력, 방문외교 효율화, 초청외교 강화, 의료 및 기타 원조, 친한단체 육성방안
- 경제 관계
  - 1975년도 세계경제의 전망과 문제점 및 1975년도 경제외교방침 설명
  - 경제·기술협력방안 토의
  - 경제개발계획 및 경제발전현황 설명
  - 1975년도 수출진흥시책의 활동지침 및 추진계획 설명
  - 1974년 수출실적 분석
  - 통상증대방안 토의

4. 연설문

- 국무총리 치사가 수록됨.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중남미지역. 서울, 1975.4.10.-2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통상2
MF번호 C, -33 / 4 / 1-288

1. 원칙재가 및 회의준비

- 1975년도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가 1975.4.10.~22. 서울에서 개최됨
  - 4.10.~16.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후는 각종 시찰 진행
- 회의일정
  - 4.10.~11. 개회식 및 정무관계 회의
  - 4.12. 및 4.14. 경제·통상관계 회의
  - 4.15. 홍보관계 회의, 공관운영 개선 및 행정사항 회의
  - 4.16. 회의결과 종합, 안보관계 브리핑
- 참석 공관장
  - 중남미지역 공관장(13명), 주미국대사(바하마 겸임), 주캐나다대사(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겸임) 등 15명
- 정무관계 회의 토의의제
  - 중점 교섭대상국에 대한 활용 계획, 유력인사 방한초청, 사절단 파견, 미수교국과의 수교추진, 독립 예정국(네덜란드령 수리남)에 대한 선제 접촉, 외교망 강화, 주한 상주공관 유치, 원조 및 협력, 친한단체 육성·활용, 명예영사 활용, 대겸임국 활동, 대쿠바 관계, 공관활동 강화
- 경제·통상·교민관계 회의 토의의제
  - 경제기술 협력, 통상증진책, 교민지도, 이민 및 인력 수출

2. 회의준비 자료

- 대중남미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안)(외무부 미주국)
- 외무부장관 훈시 요지
  - 인사, 국내외 정세, 1975년도 외교시책, 대북한 외교대결에서 승리
  - 제1~3차 회의(정무관계), 제4차 회의(경제·통상, 교민관계), 제8차 회의(공관 운영개선 및 행정사항), 제9차 회의(회의결과 종합)
- 외무부 회의 일정(장관용)
  - 각 공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정무 관계): 상주공관 설치, 유력인사 방한 초청, 사절단 파견
  - 제9차 회의(회의결과 종합 및 폐회식): 공관장 결의문 채택 포함
- 장관 폐회사 요지

3. 일정·공지사항

-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일정 및 안내서(외무부 미주국)가 수록됨.

75-0289

공관장회의, 1975년도 - 중남미지역. 서울, 1975.4.10.-20. 전2권 (V.2 통상관계 자료집)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통상2
MF번호	C_1-33 / 5 / 1-249

1. 1975년도 공관장회의와 관련하여 중남미지역 공관이 보고한 통상관계 자료임.

2. 아래 공관의 자료가 수록됨.

- 주페루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에콰도르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트리니다드토바고),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자메이카대사관, 주우루과이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한국 관계 세미나 및 학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 -33 / 6 / 1-176

1975년 중 미국에서 개최된 한국 관련 세미나 및 학회 현황임.

1. 제27차 아시아 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연차회의가 동 학회 회원인 미주지역 대학교수 2,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5.3.24.~26.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됨.
   - 동 학회에서는 '한국어의 재발견', '해방 한국에서의 리더십 유형'을 포함한 4개의 한국 관계 주제 발표가 있었음.

2. '주요 강대국의 대한국 정책' 세미나가 조지워싱턴대학 주최로 1975.5.1.~3. 워싱턴 근교 Key Bridge Marriott 호텔에서 개최됨.
   - 조지워싱턴대학 당국은 미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동 세미나 결론을 요약하여 제출함(동 한국어 요약 수록).

3. 외무부는 1975.7월 '미국의 대한국 정책방향의 수정을 주장하는 일부 이론에 대한 분석평가'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함(동 보고서 수록).

4. 제71차 미국 정치학학회 연차대회가 1975.9.2.~5.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됨..
   - 동 대회에서 한국의 정치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주제는 없었음.
   - 김세진 교수 및 양성철 교수 등이 공동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사회과학자'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함.

5. The Southwest Conference on Asian Studies(Oklahoma City University내에 본부를 둠)가 주최한 1975년도 학회가 1975.10.31.~11.1. University of Houston에서 개최됨.
   - 동 학회에는 한국인 교수 11명을 포함하여 약 60명의 회원이 참석함.

75-0291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_1-33 / 7 / 1-124

1974~75년 중 한·일본 협력위원회의 제12~13회 합동상임위원회가 개최됨.

1. 제12회 회의(1975.1.12..~14.,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백두진 한·일본 협력위원회 회장(국회의원, 전 총리) 등
  - 일본 측: 기시 노보스게 회장(중의원의원, 전 수상) 등
- 주요 일정
  - 1.12. 대통령 영부인 묘소 참배
  - 1.13. 회의 개최, 백두진 의장 주최 리셉션 및 만찬
  - 1.14. 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경제3단체 주최 만찬
  - 1.15. 국무총리 예방
- 주요 의제
  - 정치부: 데탕트와 아시아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국가의 안전보장문제
  - 경제부: 경제불황 타개를 위한 협력대책
  - 문화부: 문화교류촉진 방안

2. 제13회 회의(1975.12.8.~9., 동경)

- 대표단
  - 한국 측: 백두진 회장(유신회 총재, 전 총리) 등
  - 일본 측: 기시 노보스게 회장(중의원의원, 전 수상) 등
- 주요 일정
  - 12.8. 상임위원회 개최, 기시 노보스게 회장 주최 환영연
  - 12.9. 상임위원회 개최, 민사당위원장, 부수상, 자민당삼역 예방
  - 12.10. 외무대신 예방
- 주요 의제
  - 정치부: 베트남 전쟁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
  - 경제부: 랑부예선언과 자유주의 국가 간의 경제협력
  - 문화부: 한·일본 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박정희 대통령 이란 방문 추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7 / 1 / 1-13

1975~76년 중 박정희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국내사정으로 보류됨.

1. 주이란대사는 1975.6.21. 이란 왕실 의전장을 면담, 박정희 대통령의 이란 방문 가능성을 비공식 협의함. 동 의전장은 1976년말까지 국왕의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 1976년말까지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이전이라도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음.

2. 방문 추진경위

- 1975.6.21. 주이란대사는 왕실 의전장 면담후,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추진 필요성을 건의
  - 이란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및 이란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강화 추세 등 감안
- 1975.7.9. 외무부는 한국산 소나무 종자 수출건의 불가능성에 관해 주이란대사에게 통보
- 1975.12.9. 주이란대사는 왕실 의전장을 면담, 국왕의 박 대통령에 대한 이란 방문 초청 재가시에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 계획임을 보고
- 1975.12.14. 주이란대사의 왕실 의전장 접촉시 동 의전장은 이란 국왕의 대통령 초청 서한을 주한 이란대사대리가 전달하도록 발송함을 언급. 동 서한에는 1976년 가을 대통령의 이란 방문 희망을 포함
- 1976.1.20. 외무부는 대통령의 이란 방문건이 국내사정상 실현이 어렵다고 주이란대사에게 회신

75-0293

김종필 국무총리 일본 방문, 1975.5.8.-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7 / 2 / 1-105

김종필 국무총리는 중동 및 프랑스 순방 후 1975.5.8.~9. 일본을 방문, 미키 일본 수상과 회담함.

1. 수행원 및 주요 일정

- 수행원: 최규하 대통령특별보좌관 등
- 주요 일정
  - 5.8. 가나야마 전 주한대사 접견, 총리 주최 만찬
  - 5.9. 나카가와 이치로 자민당 의원 면담, 미야자와 외상 면담, 미키 수상 주최 오찬, 미키 수상과의 회담, 후쿠다 부총리, 오히라 대장상, 시이나 부총재 면담, 특파원단 회견 및 민단 간부 접견

2. 면담록

- 미키 수상과의 면담
  - 베트남 사태 후 동북아 정세, 한반도 평화, 각료회의 개최 등 한일협력 관계 등
- 미야자와 외상과의 면담
  - 베트남 사태, 김일성의 중국 방문 등 한반도 정세,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한·일본 협력관계 일반

3. 신문보도

- 일본 언론
  - 요미우리: “한국 총리, 8일 미키수상과 회담, 아시아 정책중심으로”
  - 마이니치: “한국 총리, 8일 대일관계 긴밀화 도모”
- 한국 언론
  - 중앙: “한·일 안보문제 협의”
  - 경향: “한·일 안보 경협 협의: 새 아주정세 의견교환”
  - 서울: “김총리, 일 미키 수상과 회담: 안보협력문제 협의”
  - 한국: “각료회담 조속 개최: 6월말 서울서 열릴 듯”

김동조 외무장관 인도 방문, 1975.4.20.-2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담당관
MF번호 C-87 / 3 / 1-231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4.20.~23. 인도를 방문함.

1. 경위

- 1975.3.18. 주인도대사는 인도 외무부 차관보를 면담,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인도 방문의사 전달
- 1975.3.25. 인도 외무장관의 인도 방문 초청장 접수
- 1975.4.1. 인도 방문 수락통보
- 1975.4.16. 인도 방문 공식발표

2. 인도 방문 내용

- 기간: 1975.4.20.~23.
- 수행원: 공로명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최동진 외무부 서남아과장
- 일정
  - 4.20. 도착(외무장관, 차관 및 교민 영접)
  - 4.21. 간디 묘 헌화, 외무장관 회담, 인디라 간디 수상 예방, 국방장관 면담, 외무장관의 답방
  - 4.22. 상무장관 면담, 대통령 예방, 하원의장 예방
  - 4.23. 공동발표문 발표

3. 주요 논의사항

- 외무장관회담: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유엔 한국문제, 비동맹 문제
- 간디 수상 예방: 대통령 친서 전달, 한국의 평화정책 설명,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의 인도 지지 요청
- 국방장관 면담: 한국의 비동맹 가입 추진

4. 인도 언론보도

- Indian Express, Statesman, National Herald는 외무장관의 간디 수상 면담 사진 등 게재, 한·인도 Joint Press Release 보도
- Hindustan Times는 “Near Yet Far”제하로 김동조 장관의 방인과 북한대사의 기자회견 및 사설 게재

75-0295

김동조 외무장관 인도 방문, 1975.4.20.-23. 전2권 (V.2 참고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담당관
MF번호	C-87 / 4 / 1-110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1975.4.20.~23. 인도 방문 관련 참고자료임.

1. 인도 방문자료

- 공식 일정
- 면담대상 이력사항
- 도착 성명
- 면담자료
- 공동발표문(안)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연설 등
- 인도 개황 및 참고자료

2. 인도에서의 남북한 대결 상황 비교

3. 남북대화 현황 자료

- 대화 배경
- 회담 경과: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
- 회담 재개 교섭
- 남북대화에 대한 양측 기본입장 등

4. 유엔 및 비동맹 관련 자료

- 유엔 한국문제 관련 인도의 태도

김동조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75.3.31.-4.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7 / 5 / 1-105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3.31.~4.2. 일본을 방문함.

1. 방문 일정

- 3.31. 하네다공항 도착, 후쿠다 부수상 주최 만찬
- 4.1. 사토 전수상 면담,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 면담, 오히라 대장상 면담, 미야자와 외상 주최 만찬
- 4.2. 미키 수상 예방

2. 주요 논의사항

- 외상과의 만찬
  - 제29차 유엔결의안 이행문제 및 제30차 유엔총회 대책, 한일 정기 각료회의 개최문제, 대륙붕 협정 비준, 조총련 규제문제, 대한국 섬유류 수입규제 문제 등
- 미키 수상 예방
  - 일본의 대한국 섬유류 수입규제 움직임 등 현안문제 관련 우리입장 설명 및 일본 측 협조요청 등

3. 언론보도

- 일본 언론
  - 요미우리: “한·일 외상, 새벽까지 회담”
  - 마이니치: “한·일 외상이 장시간 회담”
  - 아사히: “한·일 외상이 회담, 인도지나 정세도 협의”
- 한국 언론
  - 한국: “한·일 외상 심야회담”
  - 서울: “김 외무, 일 수뇌와 연쇄회담”
  - Korea Herald: "Kim returns from Tour"

4. 면담자료

- 양국간 정치 관계: 유엔총회 한국문제, 일본의 대북한 교류, 한일대륙붕협정 비준,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 경제 관계: 한·일본 간 무역불균형 시정문제, 양국간 경제협력
- 교민 문제: 신용조합의 은행승격문제, 범법자 강제송환, 조총련계 모국방문사업 등

75-0297

노신영 외무차관 일본 방문(연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7 / 6 / 1-108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5.12월 일본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외무부장관 경질로 보류됨.

1. 경위

- 일본 사토 외무차관은 호갱 및 도고 전 일본 외무차관들의 방한 초청에 대한 답례로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방일을 초청
- 1975.12.15. 외무부는 노신영 차관의 1975.12.21.~28. 방일 일정안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
- 1975.12.19. 외무부장관 경질로 인한 노 차관의 방일 일정 연기를 통보

2. 방문 주요 일정안

- 12.21. 하네다 공항 도착
- 12.22. 주일본대사관 방문, 법무상, 사토 외무차관 면담, 전 외무차관 주최 만찬
- 12.23. 사토 차관 면담, 주삿포로총영사관 방문
- 12.24. 홋카이도 민단본부 방문
- 12.25. 고베총영사관, 고베 민단본부 방문
- 12.26. 오사카총영사관, 오사카 민단본부 방문
- 이후 후쿠오카 방문

3. 방일 자료

- 한·일본 간 무역불균형 시정문제
- 한·일본 간 경제협력현황: 제8차 한일각료회의, 공공차관사업, 상업차관
- 일본과의 기술협력사업
- 유엔총회 한국문제
- 재일한국인 신용조합문제
- 각종 현안 참고자료: 한일대륙붕협정 비준문제, 사할린 교포 귀환 교섭현황, 재일신용조합 현황 등

김동조 외무장관 파키스탄 방문 추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7 / 7 / 1-13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4월 인도 방문과 연계, 파키스탄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파키스탄의 소극적 반응으로 실현되지 못함.

1. 경위

- 1975.4.15. 외무부는 1975.5월중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가능성 타진 지시
  - 1975.4월 하순 인도 방문과 연계
- 1975.4.17.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외무차관보를 면담, 5월중 김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제의
- 이후 총영사는 면담 및 리셉션 계기에 방문주선 협조를 요청
  - 차관보 면담(4.22.), 일본 국경일 리셉션 계기 차관보 접촉(4.29.), 아주총국장 면담(5.17.), 필리핀 국경일 리셉션 계기 아주총국장 접촉(6.12.), 차관보 면담(8.2.), 차관보 초청 만찬(8.13.), 인도네시아 국경일 리셉션 계기 차관보 접촉(8.17.) 등

2. 파키스탄 측 반응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주재국 인사접촉 계기에 김동조 장관의 방문주선 협조를 요청하고 촉구하였으나 파키스탄은 소극적 반응으로 대응
- 1975.8.18. 외무차관보는 수상, 외무담당국무상의 사우디 방문 등 국내외문제로 김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초청이 어렵게 되었다는 결정을 통보

75-0299

김동조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추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7 / 8 / 1-38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사우디 측 사정으로 연기됨.

1. 경위

- 1975.6.30. 외무부는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7월말 또는 8월초 사우디 공식 방문을 타진하도록 지시
- 1975.7.11. 주사우디대사는 사우디 외무부와 협의중임을 보고. 이슬람 외무장관회의 관계로 전직원이 동원되어 수락시기 결정이 지연될 사정
- 1975.7.11. 외무부는 김 장관의 8월초 방문교섭을 지시
- 1975.7.19. 주사우디대사는 사우디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 김 장관 방문을 협의. 동 국장은 Saud 외무담당 국무상의 이집트, 프랑스 방문 및 아랍권 국가 방문 등 분주한 일정을 언급하고 비동맹 및 유엔 관련 한국지지 입장이므로 김 장관의 사우디 방문 필요성에 의문 제기
- 1975.7.21. 주사우디대사가 면담한 사우디 외상대리는 8월초에 국왕 및 외상이 분주하며 김 장관의 방문접수가 어려운 형편임을 언급
- 1975.7.23. 외무부는 유엔 관련 사우디의 한국지지 입장 및 사우디 측의 분주한 일정 고려, 방문 보류
- 1975.8.14. 사우디 외무성은 10월말 방문 초청 공한 발송
- 1975.8.14. 외무부는 사우디 측 제의를 수락하도록 대사관에 통보
- 1975.8.29. Siraj 사우디 외무성 국장은 10월말 방문을 보류하고 연말 또는 명년초 필요시 방문 희망 제의
- 1975.9.1. 사우디 측 제의 수락

2. 사우디 방문 연기

- 사우디 국왕 및 사우디 외상의 분주한 일정, 유엔 문제에 관한 사우디의 대한국 지지 입장 등을 고려하여 김동조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연기

김동조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75.3.23.-3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국제연합
MF번호	C-87 / 9 / 1-95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북미 및 서구지역 공관장회의 참석 및 베네룩스 3개국 방문 후 1975.3.23.~30. 미국을 방문하여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키신저 미 국무장관을 면담함.

1. 유엔 방문(1975.3.23.~25)

- 주요일정
  - 3.24. 유엔사무총장 면담,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 주최 오찬
  - 3.25.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 사무총장 면담
  - 총회 결의안 실행문제 관련 한국입장 설명,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등 협의

2. 미국(워싱턴) 방문(1975.3.25.~30)

- 일정
  - 3.25. 주미국대사 주최 만찬
  - 3.26. 하비브 차관보, 버펌 국제기구 차관보 면담
  - 3.27. 주미국 특파원과의 조찬, 잉거솔 부장관, 시스코 정무차관 면담, 리셉션(대사관저)
  - 3.28. 키신저 국무장관 면담
- 키신저 장관 면담
  - 우리의 유엔 및 비동맹 대책, 아시아 및 중동 사태에 관한 미국의 견해 및 입장 청취, 의견교환
- 기타 국무부 고위인사 면담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대응, 유엔사 개편 및 휴전협정 체제, 한국의 유엔가입, 월남 사태, 한일각료회담 등

75-0301

노신영 외무차관 미국 방문, 1975.5.1.-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7 / 10 / 1-36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아프리카 순방 후 1975.5.1.~3. 미국을 방문, 미 국무부 고위인사와 면담, 비동맹회의 대책 등을 논의함.

1. 주요 일정

- 5.1. 워싱턴 도착
- 5.2. 버펌 국제기구 차관보 면담, 하비브 차관보 면담 및 동 차관보 주최 오찬, 잉거솔 부장관 면담, 주미국대사 주최 만찬

2. 면담 내용

- 미국 측 고위인사와의 면담시에 리마 비동맹회의 대비하여 미국의 적극적 역할 당부, UNC(유엔사) 문제 관련 미국 측 안 제시 요청, 유엔총회 대비 양국간 협력 및 contingency plan 마련 필요성 제기
- 미국 측은 빠른 시일내 유엔대책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예정
- 비동맹회의 대책에 관해서는 별 진전이 없음에 따라 여타 회의의 중요성 및 이의 유엔총회에 대한 영향을 역설

노신영 외무차관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4.10.-29.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서부아프리카/국제연
MF번호 C-87 / 11 / 1-272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1975.4.10.~29. 아프리카 6개국 순방을 위한 방문 일정 주선 등 사전준비 내용임.

1. 방문 목적

- 유엔대책 및 친선 강화
- 아프리카 중점 공관제도 활용책, 대아프리카 외교강화 점검

2. 방문국

- 방문국: 우간다,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세네갈(6개국)

3. 주요 일정

- 우간다: 대통령, 외무장관, 상공장관 예방, 공업도시 시찰
- 르완다: 외무장관, 외무차관 예방
-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말루쿠 제철공장 시찰
-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임시대행 겸 외무장관대리, 국회부의장 등 예방, 한국 원양어선단 순시
-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 세네갈: 수상, 외무장관 등 예방

4. 훈령

- 유엔총회 대비, 정부입장 설명 및 지지 교섭
- 비동맹회의에 대한 한국입장 설명
- 남북대화 현황 및 평화통일 외교정책 설명 등

5. 방문 교섭 활동

- 외무부는 노신영 차관의 방문 계획을 아프리카 각 지역공관에 통보하고 대통령, 외무장관 등 주요인사 예방 주선을 지시
- 교섭활동 공관 보고
  - 부르키나파소: 특사 방문 관련 외무부, 대통령실에 통보 협조 요청
  - 우간다: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가능, 리셉션 개최
  - 콩고민주공화국: 의전관례상 리셉션 또는 만찬 주최 불가, 모부투 대통령 방한 권유
  - 세네갈: 주세네갈대사의 대통령, 외무장관 면담시 특사 파견 통보 및 협조 요청
  - 르완다: 원조 관련 언급 준비 필요 건의

75-0303

노신영 외무차관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4.10.-29.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서부아프리카/국제연
MF번호 C-87 / 12 / 1-330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1975.4.10.~29. 아프리카 6개국 순방활동에 대한 결과내용임.

1. 방문국 활동사항

(우간다)
- 면담: 아민 대통령, 외무장관서리, 상무장관, 교통체신장관 등
- 관찰
  - 외무장관서리 8월중 방한 기회 활용

(르완다)
- 면담: 외무장관, 외무차관
- 관찰
  - 외교정책상 원조의 중요성, 원조협의 불능시 사절단 방문 무의미
  - 공관철수계획 시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면담: 모부투 대통령, 외무장관
- 관찰
  - 한국과의 관계개선 여지 충분
  - 대아프리카 외교 거점 국가로 활용 필요

(코트디부아르)
- 면담: 국무상(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담당 국무상
- 관찰
  - 대통령 지방순시, 외무장관의 외유로 면담 미실현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 면담: 대통령, 외무장관
  - 대통령은 외무장관의 방한을 승락
- 관찰
  - 29차 유엔총회 시 북한지지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및 소말리아 대통령의 영향에 기인
  - 공병대 군복 지원 요청

(세네갈)
- 면담: 디우프 총리, 외무장관

● 관찰
-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방한 실현으로 친북한 노선의 중화 가능
- 서방진영의 압력 및 국내우파의 반발로 좌경에서 중립으로 회귀 징조

2. 기타

● 감사서한 및 언론보도

75-0304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의전1
MF번호	C-87 / 13 / 1-143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1975.2.16.~3.7. 동남아 5개국 순방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기본 내용

- 내용
  - 2.22.~26. 네팔 국왕 대관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 2.17.~3.5.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
  - 1975년도 아태지역 공관장회의가 2.27. 및 2.28. 자카르타에서 개최
- 수행원
  - 아주국장, 동남아과장

2. 국별 방문 준비 공관보고

- 싱가포르
  - 대통령, 수상, 외무장관 예방시 외교관계 수립 촉구, 유엔 및 비동맹회의 협조요청
  - 도착성명, 기자회견 시행
- 필리핀
  -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시 지역협력 문제, 유엔대책 협의
  - 공동성명, 도착성명, 기자회견 시행
- 인도네시아
  -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시 유엔 및 비동맹회의 협조 요청
  -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 공동성명, 도착성명, 기자회견, 훈장 수여식
- 말레이시아
  - 수상 겸 외무장관, 외무담당 국무상 예방시 비동맹회의 협조요청, 지역협력문제 논의
  - 공동성명, 도착성명, 기자회견 시행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2 국별교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의전1
MF번호 C-87 / 14 / 1-438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1975.2.16.~3.7. 동남아 순방을 위한 국별 교섭활동에 관한 내용임.

1. 방문 교섭 지침

- 외무부는 방문일정 및 면담대상자를 포함한 세부일정을 보고하도록 1975.1.22. 관련 공관에 지시
  - 이·도착 성명, 기자회견, 공항영송행사, 예방인사 범위, 연회종류 및 참석범위 등

2. 국별 교섭활동

(싱가포르)

-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방문 환영 의사 표시 및 이스타나(대통령 관저)를 숙소로 제공
- 도착 및 공동성명은 관례상 하지 않으며 공항에서 기자회견 시행
- 면담(선물) 대상자는 대통령, 수상, 외무장관임.

(필리핀)

- 도착 당일 로물로 외무장관 주최 만찬, 복장은 블랙 타이
- 로물로 장관 주최 만찬 대상자의 범위로 전 대통령, 상·하원의장 등
- 이·도착 성명, 기자회견, 공동성명 시행

(인도네시아)

- 외무장관 서리(법무장관)가 공항 영접 예정
- 이·도착성명, 공동성명 시행
- 마리크 외무장관 만찬 답사 준비
- 김동조 장관에 대한 훈장 수여

(말레이시아)

- 수상이 외무장관 겸직하고 있어 외교에 관한 실질역할은 외무특무장관인 공보장관이 수행
- 공항 도착시 사열 등 공식행사는 없으며 공항 귀빈실에서 기자회견
- 도착성명

75-0306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의전1
MF번호	C-87 / 15 / 1-172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1975.2.16.~3.7. 동남아 순방 결과임.

1. 순방 4개국과의 공동발표문

- 4개국(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개최 후 공동발표문을 발표
- 공동발표문 요지
  - 한반도 정세 및 최근 지역정세 변화 등 공동관심사에 관한 의견교환
  - 남북대화에 대한 환영과 지지
  - 유엔 한국문제와 한국의 유엔가입 등에 관한 호응과 지지 요청
  -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에 관한 논의

2. 방문국 주요 활동

(싱가포르)
- 기간: 1975.2.17.~19.
- 내용: 대통령, 수상, 외무장관 면담, 주롱 공업단지 시찰

(필리핀)
- 기간 : 1975.2.19.~21.
- 내용: 대통령, 외무장관 면담, 명예박사 학위, 훈장 수여

(네팔)
- 기간: 1975.2.22.~26.
- 내용: 국왕, 수상, 외무장관 면담, 대관식 참석

(태국)
- 기간: 1975.2.26.(경유)
- 내용: 신임 외무장관과 비공식 만찬

(인도네시아)
- 기간: 1975.2.27.~3.2.
- 내용: 대통령, 외무장관, 국회의장, 국방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훈장 수여

(말레이시아)
- 기간: 1975.3.3.~6.
- 내용: 수상, 외무담당국무상, 상공장관, 농림장관 면담

3. 방문 활동 평가

- 8년만의 외무부장관의 동남아 순방으로 동남아 지도층과의 접촉을 통한 양국간 이해증진
- 한국 건설업체 진출 등 한국의 경제발전상 홍보
- 아세안과의 유대관계강화 등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추진

4. 감사서한 전달

- 방문시 협조에 감사하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 전달

75-0307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4 언론보도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의전1
MF번호	C-88 / 1 / 1-257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1975.2.16.~3.7. 동남아 순방시 언론보도와 연설문을 수록함.

1. 언론보도

(싱가포르)
- Strait Times: "Keeping foreign troops to deter surprise attack"
- 남양상보: “한국 외무장관은 싱가포르 경제발전에 인상”

(필리핀)
- Philippine Daily Express: "Minister Kim's visit is timely"
- The Times Journal: "RP, Korea reaffirm amity"
- Bulletin Today: "RP and S. Korea renewing ties"

(인도네시아)
- Suara Karya: "Korea negari, museum tanpa tembok"(Korea, museum without wall)
- Berita Buana: editorial "RI-Korea Relations"
- Kompas: editorial "Guest from Seoul and Harmony"
- Pelita: editorial "Dong Jo Kim in Jakarta"

(말레이시아)
- New Strait Times: "Need for an open road to peace"
- 중국보: “김 외무장관은 아주평화기구 문호개방을 강조”
- 남양상보: “한국, 원양어업훈련지도”
- 성주일보: “공동보도문 발표”

2. 연설문

(싱가포르)
- 공항도착 성명

(필리핀)
- 대통령 오찬 답례사
- 장관 주최 만찬 연설
- 로물로 외무장관 오찬 답례사

(인도네시아)

- 말리크 외무장관 만찬 답례사
- 도착 성명

(말레이시아)

- 후세인 온 부수상 주최 만찬 답례사
- 타작 외상 주최 만찬에 대한 답례 만찬 연설

75-0308

김동조 외무장관 동남아 순방, 1975.2.16.-3.7. 전5권 (V.5 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의전1
MF번호	C-88 / 2 / 1-301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1975.2.16.~3.7. 동남아 순방과 관련한 기본입장, 면담자료, 기자회견 및 참고자료임.

1. 기본입장
   - 공통사항
     - 남북대화 진전상황 등 한반도 정세와 한국입장
     - 유엔 한국문제에 대한 한국입장
     - 지역협력 문제
   - 각국별 사항
     - 필리핀: 전통적 우호관계 재확인, 유엔 한국문제, 경제자원협력, 지역협력체제 형성 문제
     - 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촉구, 유엔 한국문제 및 비동맹그룹 문제, 양국간 경제관계증진
     - 인도네시아: 우호관계 재확인, 유엔 한국문제 및 비동맹그룹 문제, 제1차 양국 각료회의 조기 개최, 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 체결교섭 촉구, 경제협력증진 방안 협의
     - 말레이시아: 대북한 관계 확대 견제, 유엔 한국문제, 경제통상관계증진 촉구

2. 면담자료
   - 공통사항: 한반도 정세 설명, 유엔 한국문제 설명 및 지지요청, 지역협력 문제
   - 국별사항: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
   - 주요인사 인적사항: 리콴유 싱가포르 수상,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압둘 라작 말레이시아 수상 등

3. 기자회견 자료
   - 국제화해무드가 한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 남북대화 진전 상황
   - 주한 유엔군의 장래문제
   - 한국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각국과의 경제관계 일반

4. 참고자료
   - 건설수출현황
   - 최근 동남아 정세

노신영 외무차관 서남아 순방, 1975.7.13.-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8 / 3 / 1-201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5.7.13.~24. 서남아지역을 순방, 유엔 및 비동맹 외교와 외교관계 수립 활동을 전개함.

1. 특별사절단 파견 결정

- 정부는 유엔총회 및 페루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하고 스리랑카 및 싱가포르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1975.7월중 스리랑카, 인도, 싱가포르에 파견하기로 결정

2. 방문 경위

(스리랑카)

- 외무부는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대통령 특사로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스리랑카 수상 면담을 위한 교섭을 1975.6.4. 주콜롬보통상대표부에 지시
- 6.6. 주스리랑카대사는 Mackie 스리랑카 수상 비서실장을 공관에 초치, 특사파견 계획을 설명하고 스리랑카 수상과의 면담협조를 요청
- 6.10. 동 대사가 면담한 Basnayake 스리랑카 차관보는 통상경제협력 고위인사를 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

(인도)

- 외무부는 노신영 차관이 1975.7.21.~24. 인도를 방문하여 비동맹 및 유엔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 공관장회의(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를 주재한다고 7.10. 관계공관에 통보
- Trivedi 인도 외무차관은 7.11. 주인도대사에게 멕시코 대통령 방문 일정과 국회 회기 등으로 노 차관의 비공식 방문을 공식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움에 대한 유감을 표명
- Gurbachan Singh 인도 외무성 동아국 차관보는 7.15. 주인도대사에게 간디 인도 수상 면담 주선은 어렵다고 하고 Trivedi 차관 주최 비공식 만찬을 계획한다고 언급

(싱가포르)

- 주싱가포르총영사는 7.11. 싱가포르 외무성 의전장에게 구술서를 수교하고 노 차관의 방문 중 면담 주선을 요청

3. 방문 활동

- 싱가포르(1975.7.13.~16.)
  - 외상,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및 비동맹회의 입장 설명 및 가입 지지 요청, 싱가포르와의 외교관계 수립 촉구

● 스리랑카(1975.7.16.~21.)
  - 수상과의 면담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부장관 등 면담,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 역설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지지 요청
● 인도(1975.7.21.~24.)
  - 외상, 차관, 국방상 면담, 한반도 정세 설명 및 비동맹 외교의 협조를 요청
  - 공관장회의를 주재, 비동맹회의와 유엔총회에 대비한 교섭방향과 요령에 관해 논의

노신영 외무차관 중동 순방, 1975.8.8.-1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8 / 4 / 1-87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5.8.8.~19. 중동을 순방, 비동맹 외교 및 유엔총회에서의 지지 교섭 활동을 함.

1. 방문 경위

- 외무부는 노신영 외무부차관이 제다 개최 한·사우디 합동위원회 참석 후 비동맹 및 유엔 외교를 위해 1975.8.8.~19.간 중동지역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을 순방 예정이며 주재국 인사 면담주선을 1975.8.5. 관계공관에 지시
  - 노 차관은 대통령 친서를 휴대, 국가 원수 예방 추진

2. 방문 활동

- 사우디 아라비아(1975.8.8.~13)
  - 주요 일정: 한·사우디 합동위원회 4회 개최, 국왕, 외무차관, 기획부장관, 상공장관, 외무담당 국무상, SAMA 총재 예방, 제다 항만 시찰
  - 사우디 측은 알제리 등 강경 아랍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노력 약속, 비동맹회의 대표단 파견 재고 약속,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지지 입장 표명
- 요르단(1975.8.13.~15)
  - 주요 일정: 국왕, 수상 겸 외무장관, 외무담당 국무상 등 예방
  - 비동맹회의에서의 지지 입장 재확약,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입장 반대 검토
- 쿠웨이트(1975.8.15.~17)
  - 주요 일정: 외무장관, 석유장관, 상공장관 등 예방
  - 비동맹회의에서 남북한에 대한 동일한 태도 표명, 남북한과의 외교관계 동시 미수립 태도 견지
- 레바논(1975.8.17.~19)
  - 주요 일정: 수상, 외무장관 예방
  - 비동맹 및 유엔 관련 한국입장의 타당성은 시인하였으나 명확한 태도 유보. 국교수립 시기가 아니라는 반응

3. 언론보도

- Al Dostour Newspaper(8.14.): "Message to Hussein from the South Korean president"
- The Daily Star(8.19): "Karami, Takla receive South Korean Minister"
- L'Orient le Jour(8.19): "Intense Activite diplomatique au Serail et au Palais Bustros"

75-0311

김동조 외무장관 구주 순방, 1975.3.14.-4.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C-88 / 5 / 1-343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3.14.~4.2. 구주지역(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을 순방함.

1. 방문 경위

- 외무부장관은 1975.3.17.~18.간 파리에서 개최되는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룩셈부르크, EC(구주공동체), 벨기에, 네덜란드 방문 계획임을 관련공관에 통보하면서 1975.1.31. 각 주재국 수상, 외상 등 인사 면담 교섭을 지시함.
- 방문 교섭
  - 네덜란드: 방문 환영 및 일정 조정 요청
  - 프랑스: 3.17. 수상, 외상 면담 확정
  - EC: 3.20. Ortoli 의장 및 Soames 부의장과의 면담 제시
  - 벨기에: 3.20. 수상, 외무장관 면담
  - 네덜란드: 3.21. 외상 면담

2. 방문국 및 주요 일정

- 프랑스(3.15.~18.)
  - 시라크 수상, Sauvagnargues 외상 예방
  - 외상 주최 오찬
  - 논의사항: 한반도 정세, 유엔 한국문제, 동구권 관계개선, 교역증진 및 경제협력 등
- 룩셈부르크(3.19.~20.)
  - Gaston Thorn 수상 겸 외상 예방
- EC(3.20.)
  - Ortoli EC 집행위원장 및 Soames 집행위 부위원장 예방
  - 논의사항: 한국 경제현황 설명, 섬유류 규제 교섭에 있어 한국의 특수한 입장 고려 요청
- 벨기에(3.20.)
  - 수상, Elslande 외상 면담 및 오찬
  - 논의사항: 유엔 한국문제, 유엔 가입문제, 서구의 북한승인 문제 등
- 네덜란드(3.21.~23.)
  - Stoel 외상 면담
  - 동 외상 주최 오찬
  - 논의사항: 유엔 대책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협의, 투자협정발효 추진

- 교황청(3.22.)
  - 로마 교황 바오로 6세 면담
  - 논의사항: 지 주교 석방 사의표명, 교회의 정치 불관여 입장 개진
- 미국(3.23.~30.), 일본(3.31.~4.2.) 경유

3. 자료

- 프랑스 수상, 외상, 벨기에 외상, 네덜란드 외상과의 면담록
- 기타: 프랑스 외상 주최 오찬사, 면담대상자 인적사항, 기자회견 참고자료 등

75-0312

노신영 외무차관 중남미 순방, 1975.5.27.-6.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8 / 6 / 1-281

노신영 외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5.27.~6.12. 중남미지역(페루, 아르헨티나, 자메이카)을 순방함.

1. 특별사절단 파견 경위

- 정부는 유엔총회 및 비동맹회의 대비 외교강화를 위해 1975.5.12. 중남미지역 등에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
- 외무부는 1975.5.14. 관계공관에 차관 파견을 통보, 수상, 외상 등 인사 면담 교섭을 지시
- 교섭 내용
  - 아르헨티나: 방문 환영, 외무장관 등 면담, 훈장 수여
  - 페루: 외무장관 면담 주선
  - 자메이카: 외무담당국무상 면담 등

2. 방문국 및 주요 일정

- 페루(1975.5.27.~31.)
  - 외무차관, 비동맹 준비위원장 면담, 훈장 수여
  - 외무차관대리 주최 오찬
  - 논의사항: 남북한의 비동맹 가입신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방침하달, 방한 초청 사의, 한·페루 간 통상협정 1개월내 비준 완료 예정
- 아르헨티나(1975.6.2.~5.)
  - 외무장관, 외무차관 면담
  - 내무장관 주최 만찬
  - 논의사항: 비동맹회의에서의 남북한 동등대우의 당연성, 한국의 비동맹 가입신청에 대한 정책결정, 방한 초청 사의
- 자메이카(1975.6.9.~12.)
  - 외무차관, 외무담당국무상, 농업장관 면담
  - 외무담당국무상을 위한 만찬 주최
  - 논의사항: 비동맹회의에서의 남북한 동등 대우 동감 표시, 남북한 대화 지지 표명, 경운기 기증 사의 표명, 방한 초청 사의

특별사절단 아프가니스탄 및 서남아 순방, 1975.8.5.-1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8 / 7 / 1-199

비동맹회의에 대비하여 정소영 농수산부장관을 대표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8.5.~19. 아프가니스탄 및 서남아지역(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구 버마))을 순방함.

1. 파견 경위

- 정부는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하여 1975.8월중 아주지역 특별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 정소영 농수산부장관이 아프가니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를 방문
- 외무부는 대통령 특사 파견을 관련공관에 통보, 1975.7.30. 고위인사 면담 교섭을 지시
- 1975.7.31. 아시아 4개국 비동맹 특사 파견에 대한 훈령을 지시
- 교섭활동
  - 미얀마: 1975.7.31. 주미얀마대사는 U Saw Hlaing 정무국장을 면담, 특사 방문협조를 요청. 사원복구 지원을 건의
  - 네팔: 1975.8.1. 주네팔대사는 네팔 외무성 정무담당 차관보를 면담, 특사 방문협조를 요청하고 8.4. 네팔 방문 수락 공식문서 접수
  - 아프가니스탄: 주인도대사는 주인도 아프간대사관을 통해 특사 방문 협조 요청
  - 방글라데시: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75.8.4. Ahmed 외무차관 면담 시 특사 방문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대통령 등 고위인사 면담 주선

2. 파견 목적

- 비동맹 외상회의 및 제30차 유엔총회 한국 지지 교섭

3. 방문국 및 주요 일정

- 네팔(1975.8.7.~9.)
  - 외상, 국회의장, 수상, 재무상, 식량농업상 주최 만찬, 정소영 특사 주최 만찬
  - 논의사항 및 반응: 한국의 비동맹회의 가입을 위한 협력 표명, 조정위에서의 지지 발언 고려, 유엔 한국결의안에 대한 적극적 고려
- 아프가니스탄(1975.8.10.~12.)
  - 대통령, 부수상, 상공장관, 경제기획장관, 외무차관 면담, 상공장관 주최 만찬, 정소영 특사 주최 만찬
  - 논의사항 및 반응: 비동맹에서의 동등 대우, 남북한 가입에 반대, 유엔결의안 검토 후 결정, 7개년 계획에 한국 전문가단 파견 요청

● 방글라데시(1975.8.13.~14.)
  - 대통령, 부통령, 농업장관 예방
  - 논의사항 및 반응: 비동맹 및 유엔 문제에 호의적 검토, 어업 및 농업분야의 협력협정 체결 희망
● 미얀마(1975.8.14.~17.)
  - 네윈 대통령, 수상, 부수상, 농림장관, 통상장관, 외상서리 예방, 외상서리 주최 만찬, 통상장관 주최 만찬
  - 논의사항 및 반응: 남북한 동등대우 및 유엔 문제 기권 시사

이용희 특사(대통령 특별보좌관) 브라질 방문, 1975.10.25.-2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미
MF번호	C-88 / 8 / 1-23

이용희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유엔총회 지지 교섭차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1975.10.25.~29. 브라질을 방문함.

1. 경위

- 정부는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 브라질, 그리스, 태국에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결정
- 외무부는 유엔에서 공산 측 안 반대 및 절차문제에서의 지지 확보를 위해 이용희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브라질에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1975.10.25. 이용희 특사의 브라질 대통령 및 외무장관 면담교섭을 주브라질대사에게 긴급 지시
- 1975.10.25. 대통령 친서 영역본을 공관에 타전, 포루투갈어로 번역 지시
- 외무부는 브라질의 태도 후퇴가 여타 중남미국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 1975.8.26. 대통령 및 외무차관 면담을 필히 주선하도록 재지시
- 주브라질대사는 대통령과 외무차관 면담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리오 A&A 회의 일정 및 공휴일인 관계상 면담 불가한 사정을 1975.10.26. 보고. 브라질 외무차관은 아주국장과 국제기구국장이 대리하여 면담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언급

2. 주요 방문일정

- 10.26. 브라질 도착, 특사단 및 일본대사 만찬(브라질의 대유엔 태도 의견교환)
- 10.27. 외무부 아주국장 및 국제기구국장 면담
- 10.28. 외무장관 서리 면담

3. 논의사항 및 반응

- 유엔 한국결의안 내용과 상황 설명
- 브라질 측은 709안에 대한 기권에 변동이 없다는 의사표명. 그 이유로 외무장관서리는 709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하므로 반대할 경우 브라질의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타국과의 친선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추측
- 이용희 특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표명

75-0315

장예준 특사(상공장관) 그리스 방문, 1975.10.26.-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2/국제연합
MF번호	C-88 / 9 / 1-50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유엔총회 지지 교섭차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1975.10.26.~28. 그리스를 방문함.

1. 경위

- 정부는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 그리스, 브라질, 태국에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결정
- 외무부는 유엔에서 공산 측 안 반대 및 절차문제에서의 지지확보를 위해 장예준 상공부장관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그리스에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1975.10.25. 주그리스대사에 통보
- 주이란대사에게도 동시에 쿠웨이트로부터 이란에 도착예정인 상공부장관의 특사 파견을 전달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특사 방문 관련 1975.10.27.~28. 대통령, 수상 및 외무장관과의 면담주선 교섭을 지시
  - 대통령 친서는 별전 통보 예정
- 외무부는 1975.10.25. 훈령을 특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 그리스는 한국 측 안 찬성, 한국 측 안 선표결권 지지는 확실시되나 공산 측 안에 대해 기권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바, 그리스가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공산 측 안에 반대하도록 교섭할 것
- 주그리스대사는 1975.10.28.은 제2차 대전 항전 선언기념일로 지정되어 10.27.~28.은 법정공휴일로 정부기관 접촉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
- 장예준 특사는 그리스 정부와의 면담에 대비, 내년도 그리스산 엽연초 1,000개 구입을 건의
- 외무부는 가격조정이 되어 타국산 수입과 유사한 조건일 경우 수입의사 하시

2. 방문 일정

- 10.26. 그리스 도착
- 10.27. 외무장관 면담

3. 논의사항 및 반응

- 한반도 안보문제 설명 후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그리스 외무장관은 한국 측 안 지지, 공산 측 안 기권 입장을 확정하였으며 공산 측 안 반대가 키프로스 문제처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언급
- 재차 한국 측 사정을 설명하고 작년과 같이 그리스의 공산 측 안 반대표명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이해를 표시하고 각료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

특별사절단 북예멘 및 쿠웨이트 방문, 1975.10.17.-2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8 / 10 / 1-236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유엔총회 지지 및 수교 교섭차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1975.10.17.~25. 북예멘과 쿠웨이트를 방문함

1. 파견 목적

● 유엔총회에서 중동지역 2개국(북예멘, 쿠웨이트)의 태도 호전을 기하기 위하여 장예준 상공부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함.

2. 방문국 및 주요일정

● 북예멘(10.17.~21.)
- Saba 기자회견(10.17.), 대통령 비서실장, 외무장관대리 면담(10.18.), 부수상, 수상 예방(10.20.), 외무장관대리 접견,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10.21.)
- 논의사항 및 반응
  - 최초의 각료급 대통령특사 파견으로 수교합의 촉구
  - 암염수입 등 일련의 경제협력방안 제시
  - 외교관계 수립 문제 시기의 성숙성 도래 관찰
  - 수교문제에 대한 입장불변 표명

● 쿠웨이트(10.21.~25.)
- 국왕, 부수상, 상공장관 예방(10.22.), 공공사업성장관, 국회의장, 보건장관 면담, KOC 시찰(10.23.)
- 논의사항 및 반응
  - 대통령 친서 전달 및 유엔총회 한국문제 지지요청
  - 조속한 국교정상화 협조 당부
  - 경제적 유대관계 등 양국간 우호관계증진

75-0317

최규하 특사(대통령 외무담당 특별보좌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1975.3.15.-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3/중동
MF번호	C-88 / 11 / 1-217

대통령 외무담당 특별보좌관인 최규하 특사는 1075.3.15.~24.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재정분야 등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함.

1. 경위

- 1975.1.6.~11. 사전교섭단(단장: 김정태 차관보) 사우디 방문, 외무장관대리 면담 협의
- 1975.1.25. 주사우디대사는 의전장 면담, 특사 파견 서면 통보 및 면담주선 협조 요청
- 1975.2.1. 사우디 의전장은 특사의 3.15. 이후 방문을 제시
- 1975.2.11. 주사우디대사는 특사의 3.15. 도착 공한을 의전실에 수교
- 1975.2.20. 주사우디대사는 사우디 외무부 아시아국장대리 면담, 특사방문 시 구체적인 협력 협의
- 1975.3.8. 사우디 의전장은 특사 방문 일정 확정통보

2. 특사 방문 활동

- 주요 일정
  - 3.16. 상공장관 면담
  - 3.17. 화이잘 국왕 알현, 석유장관 면담
  - 3.18. 보건장관 면담
  - 3.19. 재무담당 국무상, 기획장관 면담
  - 3.20. 카말 왕실고문 면담, 보건장관 접견
  - 3.22. 외무장관대리, 중앙은행 총재대리 면담
  - 3.23. 제다 항만 시찰
- 주요 논의사항 및 반응
  - 정부간 차관 및 재정협력 요청에 대해 사우디 측은 사우디 재원의 범위내 지원 의사 표명
  - 유류 파동 당시 사우디의 협조에 사의 표시, 지속적인 원유공급 요청
  - 한국업체의 정유공장 건설 참여 자료 수교 및 투자 희망
  - 재정협력에 대한 반대급부의 일환으로 기술협력 방안 제시
  - 100만 톤의 시멘트 수출 용의 설명에 대해 가격면의 견해차이로 추후 교섭 지속
  - 제1차 합동위원회의 조기 개최 필요성 강조
- 건의
  - 공식경로를 통한 교섭추진
  - 차후 차관 교섭방안 제안 등

심홍선 특사(총무처장관) 중동 및 스페인 순방, 1975.5.5.-2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9 / 1 / 1-281

심홍선 총무처장관은 대통령특사로 비동맹 및 유엔총회 대비 1975.5.5.~20. 중동(튀니지, 모로코) 및 스페인을 순방함.

1. 경위

- 1975.3.17. 정부는 유엔총회 및 비동맹회의 지지 교섭을 위해 총무처장관을 대통령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
- 1975.3.18. 외무부는 특사 파견을 공관에 통보, 면담 주선 등 지시
- 1975.3.31. 주튀니지대사는 외무부 정무국장의 특사방문 환영 등 반응 보고
- 1975.4.1. 주스페인대사는 의전장 면담, 특사 방문 공한 전달 및 협조 요청
- 1975.4.2. 주모로코대사는 왕실장관 및 외무부 의전장 면담, 특사 방문 일정 협조 요청
- 1975.4.29. 주튀니지대사는 특사의 방문 일정 보고
- 1975.4.30. 주스페인대사는 특사 방문 잠정 일정 보고

2. 특사 방문 활동

- 주요 일정

(튀니지)

- 5.6. 외무부 국무상 면담 및 오찬
- 5.7. 데스투르당 사무총장 겸 수상실 장관, 국회의장 면담
- 5.8. 대통령 예방

(모로코)

- 5.12. 모하메트 5세 묘 참배, 외무장관 면담
- 5.13. 하산 국왕 예방

(스페인)

- 5.16. 황태자, 수상 면담
- 5.19. 외무장관 면담
- 5.20. 프랑코 총통 예방, 관방장관 주최 오찬

- 주요 논의사항 및 반응
  -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공산 측안에 대해서는 스페인만 반대 표명, 아랍 2개국은 입장 불표명
  - 비동맹의 변질에도 불구, 튀니지와 모로코는 비동맹회의 기본취지 고수 입장. 제3세력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어려움 표시
  -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 표시

75-0319

최경록 특사(교통장관) 태국 방문, 1975.4.29.-5.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9 / 2 / 1-98

최경록 교통장관은 대통령특사로 태국과 북한간 수교 저지를 위해 1975.4.29.~5.3.간 태국을 방문함.

1. 경위

- 1975.4.25. 정부는 태국의 대북한 수교보류교섭을 위해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결정
- 1975.4.25. 외무부는 주태국대사에게 4.29. 특사 도착을 통보하고 교섭을 지시
- 1975.4.26. 특사 수행원에 대한 정부대표 임명
- 1975.4.27. 주태국대사는 외무부 의전장에게 특사 방문 통보 및 협조 요청
- 1975.4.28. 태국 외무장관 면담 일정이 4.30.로 연기 보고
- 1975.4.28. 본부는 특사의 태국 방문과 경과를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미국 측의 측면지원 요청

2. 특사 방문 활동

- 주요 일정
  - 4.29. 방콕 도착
  - 4.30. 외무장관 면담
  - 5.1. 외무장관 주최 오찬
  - 5.3. 수상 예방
- 주요 논의사항 및 반응
  - 특사는 태국의 대북한 수교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통령 친서 및 한국입장 설명 비망록 전달
  - 태국은 아세안차원에서 북한과 수교계획이 고려되어 왔으며 합의됨을 설명
  - 수상과 외무장관은 공히 한·태국 양국관계는 불변이며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모든 문제에 있어 한국입장을 지지할 방침
  - 태국은 북한과의 수교 발표 후 당장 사절단의 방북 계획은 없다고 함.

최규하 특사(대통령특별보좌관) 태국 방문, 1975.10.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89 / 3 / 1-88

최규하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대통령특사로 유엔총회 지지 확보를 위해 1975.10.26.~30. 태국을 방문함.

1. 경위

- 1975.10.25. 정부는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 최규하 대통령특보를 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
- 1975.10.25. 외무부는 대통령특사의 태국 파견을 주태국대사에게 통보하고 수상 및 외무장관 면담 주선을 긴급 지시
- 1975.10.25. 본부는 수상 및 외무장관 외 막후인물 비공식 접촉 주선 지시
- 1975.10.28. 태국 외무장관의 특사 면담 일정을 10.29.로 연기 조정

2. 특사 방문 활동

- 주요 일정
  - 10.27. 주태국 미국대사, 일본대사 면담
  - 10.29. 외무장관 면담
- 주요 논의사항 및 반응
  - 특사는 유엔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입장 지지 및 공산 측 결의안 반대를 강력 요구
  - 태국 외무장관은 우방결의안 선표결권 등 절차문제에는 한국입장 지지 표명. 다만, 태국의 외교정책이 중립정책이므로 공산 측 결의안 반대에는 난색 표명
  - 수상의 분주한 일정으로 면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 친서 전달을 외무장관에게 요청

75-0321

친선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8.2.-2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89 / 4 / 1-135

이원경 문화공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75.8.2.~21. 아프리카지역(세네갈,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및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를 순방함.

1. 방문 목적

- 1975.8월 페루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한국입장(남북한 동시 가입) 적극 지지 확보 교섭
-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한국입장 설명 및 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 교섭
- 비동맹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2. 방문 일정

- 세네갈(8.5.~7.), 라이베리아(8.7.~9.), 콩고민주공화국(8.11.~14.), 부르키나파소(8.19.)

3. 방문 결과

- 비동맹 가입
  - 세네갈은 남북한 동시가입 지지, 라이베리아는 남북한 동시가입안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 콩고민주공화국은 남북한 동시가입을 지지, 부르키나파소는 중립적 입장을 약속함.(부르키나파소 외상은 비동맹회의에 앞서 평양을 방문)
- 그러나 세네갈과 콩고민주공화국은 1975.3월 하바나 비동맹 조정회의에서 북한의 가입을 적극 지지한 바 있으며 북한도 고위사절단 파견과 경제원조 등으로 외교공세를 펴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들의 지지 약속에 대하여 사절단은 조심스럽게 평가함.
- 유엔 문제
  - 방문국 모두 관망적 입장을 견지

특별사절단 동부아프리카지역 등 순방, 1975.6.20.-7.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국제연합
MF번호 C-89 / 5 / 1-362

김영주 주캐나다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6.20.~7.12. 동부아프리카지역(가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및 보츠와나)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1975.8월 페루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한국입장 적극 지지 확보 및 결의안 가담 교섭
-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한국입장 설명 및 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 교섭
- OAU(아프리카 단결기구) 각료회의 및 정상회담 대비 교섭
- 방문국과의 관계 강화책 강구
- 비동맹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2. 방문 일정

- 가나(6.20.~24.), 시에라리온(6.24.~27.), 에티오피아(6.29.~7.2.), 케냐(7.2.~5.), 말라위(7.5.~9.), 보츠와나(7.10.~12.)

3. 방문 결과

- 전반적 반응
  - 경제개발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 방문국들은 특사 파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는 실리와 명분에 입각하고 있어서 한국이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 욕구를 만족시켜줄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비동맹 회원 가입
  - 한국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여 남북한이 모두 가입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국에 미군이 남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된다는 입장으로, 결의안에 대하여는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함.

75-0323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6.24.-7.1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국제연합
MF번호	C-89 / 6 / 1-255

윤석헌 주프랑스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6.24.~7.11. 서부아프리카지역(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니제르)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1975.8월 페루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한국입장 적극 지지 확보 및 결의안 가담 교섭
-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한국입장 설명 및 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 교섭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회의 및 정상회담 대비 교섭
- 방문국과의 관계 강화책 강구
- 비동맹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2. 방문 일정

- 중앙아프리카(6.24.~28.), 차드(6.28.~29.), 카메룬(6.29.~7.2.), 코트디부아르(7.2.~4.), 니제르(7.7.~11.)

3. 방문 결과

- 대아프리카 외교의 개선책 건의
  -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저자세 외교를 조기에 종식하고 실리에 입각한 대아프리카 중장기 정책을 시행할 필요
  - 경제적 실리국가, 정치적 우호 또는 중요국에 상주공관을 유지하고 그 외의 공관 철수
  - 친선협회 설치 등 구체적 대책 건의
- 유엔 및 비동맹회의 지지
  - 방문국 지도자들은 한국입장에 대한 지지 또는 신중한 검토 가능 입장을 표명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 1975.10.2.-1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국제연합
MF번호	C-89 / 7 / 1-313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10.2.~11.6. 아프리카지역(차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세네갈,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및 카메룬)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한국입장 설명 및 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 교섭
- 방문국과의 관계 강화책 강구
- 박정희 대통령 친서 및 유엔 비망록 전달

2. 방문 일정

- 차드(10.2.~5.), 부르키나파소(10.8.~10.), 니제르(10.10.~11.), 세네갈(10.11.~16.), 우간다(10.21.~23.), 중앙아프리카(10.27.~29.), 카메룬(11.3.~6.)

3. 방문 결과

-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등이 공산 측 유엔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의 참여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가나는 국내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사절단 접수를 거부하였으며, 베냉(구 다호메이)은 갑자기 한국과의 단교를 선언
- 방문국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안 동시 기권, 공산권 안 지지,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적대적 행동 자제 약속, 한국에 대한 지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아민 우간다 대통령은 남북한에 대한 중립을 약속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함.

75-0325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75.3.18.-4.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국제연합
MF번호	C-89 / 8 / 1-401

최경록 교통부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3.18.~4.12. 아프리카지역(감비아, 라이베리아, 차드, 가봉, 레소토, 스와질란드 및 모리셔스)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1975.8월 페루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한국입장 적극 지지 확보 교섭
- 제29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과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한국입장 계속적인 지지 확보 교섭
- 방문국에서의 대북한 외교 우위 확보책 강구
- 박정희 대통령 친서 전달

2. 방문 일정

- 감비아(3.18.~20.), 라이베리아(3.20.~23.), 차드(3.25.~27.), 가봉(3.29.~4.2.), 레소토(4.2.~4.), 스와질랜드(4.6.~8.), 모리셔스(4.9.~12.)

3. 방문 결과

- 대통령 특사가 방문한 7개국은 1974년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을 적극 지지한 국가들임(감비아 등 5개국은 한국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공산 측 결의안 반대).
  - 1974년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서 아프리카 36개국 중에서 한국 측 결의안 찬성국가는 9개국인데 반하여 공산 측 결의안 찬성국가는 21개국
- 특사 방문결과, 라이베리아, 가봉 등 4개국은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하였으나, 감비아와 레소토는 지지 대가로 대규모 원조를 요청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 입장 변화가 감지됨.
- 아프리카국가들은 경제개발에 최우선적 순위를 두고 우정과 원조를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절단은 평가함.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 1975.9.22.-10.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9 / 9 / 1-152

최경록 교통부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9.22.~10.8. 중남미지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에콰도르 및 파나마)을 순방함.

1. 방문 목적

- 양국간 우호증진을 희망하는 대통령 친서 전달
-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지지 확보 및 공동제안국 참여 교섭

2. 방문 일정

- 엘살바도르(9.22.~24.), 온두라스(9.25.~29.), 에콰도르(9.30.~10.4.), 파나마(10.4.~8.)

3. 방문 결과

- 에콰도르를 제외한 3개 방문국 수반들은 한국에 대한 지지는 물론 한국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함.
  - 에콰도르도 한국입장에는 지지

75-0327

특별사절단 북구 순방, 1975.9.5.-2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89 / 10 / 1-177

최규하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을 대통령 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9.5.~27. 북유럽지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및 아이슬란드)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결의안 찬성 및 공산 측 결의안(주한 유엔군 해체) 반대 확보
- 대통령 친서 전달

2. 방문 일정

- 덴마크(9.7.~9.), 노르웨이(9.9.~12.), 핀란드(9.12.~16.), 스웨덴(9.16.~19.), 아이슬란드(9.19.~23.)

3. 방문 결과

- 사절단이 방문한 북유럽 국가 지도자들의 공통적 반응은 한국 측 안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는 데에 이론이 없으며 공산 측 안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임.
  - 단, 중립을 표방하는 핀란드는 1974년과 같이 한국 측 안과 공산 측 안에 기권 전망
- 그러나,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최종 결정은 북구지역 국가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할 것임.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 이란 방문, 1975.1.7.-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89 / 11 / 1-44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이 1975.1.7.~16. 이란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은 1974년 중 이란 노빈당(Novin Party)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빈당 간부의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9월 이란을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이란 측에 전달함.
- 길전식 사무총장 일행의 이란 방문은 국내사정으로 연기되어 1975.1월에 실현됨.

2. 방문 결과

- 길전식 사무총장 부부와 국회의원 1인은 1975.1.7.~16. 이란을 방문하여 노빈방 전당대회 참석, 수상 및 외무차관 등 요인 예방 등 일정을 가짐.
  - 길 사무총장은 전당대회에서 당 총재의 축하 메시지를 낭독
- 이란 수상은 길 사무총장에게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와 주한공관 설치 추진을 약속하였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큰 관심을 표명함.

75-0329

국회의원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90 / 1 / 1-32

1975년 중 한국 국회의원들의 일본 방문 관련내용임.

1.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원장(1975.5.29.~6.10.)

- 일본 기자클럽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동경 주재 영국 언론특파원과의 인터뷰 등 대언론 접촉을 가짐.
- 세미나와 간담회에서는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있었음.
  - 미국의 대한공약, 한국의 안보태세, 공산 측의 유엔결의안(주한 유엔사 해체), 김대중 사건, 한·일본 관계 등

2.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원단(1975.7.14.~20.)

-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단이 일본 자민당 정조회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자민당 지도부 면담, 산업시설 시찰 및 자위대 공군부대 시찰 등 일정을 가짐.
  - 매년 상호 1회 교환 방문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90 / 2 / 1-58

1975년 중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일본 방문 관련내용임.

1. 김영삼 총재는 미국 방문 계기에 1975.1.17.~21. 일본을 방문, 외신클럽에서 "동북아의 장래와 한국의 민주주의" 제목의 연설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일본 NHK와 인터뷰를 가짐.

- 연설 요지
  - 박정희 대통령의 퇴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헌법 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강의 남북한 상호승인 제의 등
- 기자들의 질의 요지
  -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 가능성 등 한국의 정세, 인혁당 사건, 한국 정부에 대한 원조가 불필요하다는 김대중 발언, 북으로부터의 위협 등

2. 김영삼 총재는 미국 방문 후 귀국 전에 1975.1.26. 일본을 다시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국민투표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개헌안 발의를 주장함.

3. 김영삼 총재는 1975.8.11.~19. 일본을 방문하여 미키 일본 수상을 예방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아시아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75-0331

이철승 국회부의장 일본 방문, 1975.5.14.-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C-90 / 3 / 1-10

이철승 국회 부의장이 1975.5.14.~15. 일본을 방문함.

1. **일본을 방문한 이철승 부의장은 동경 국제관계공동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에 있어서 자유와 안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함.**
   - 한·미국·일본 3각 안보체제 확립을 위하여 한·미국 방위조약을 나토수준으로 보완하고, 한·일본 간 공동방위체제가 강구되어야 하며 미국·일본 간 안보체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이철승 부의장은 오히라 대장상, 공명당 국제부장, 민사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와 일본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한·일본 간 유대강화 필요성, 주한미군 필요성 등을 주장함.**

정일권 국회의장 미국·서구 및 일본 순방, 1975.4.30.-5.2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 북미1 / 동북아1
MF번호	C-90 / 4 / 1-373

정일권 국회의장이 1975.4.30.~5.21. 미국, 프랑스, 서독 및 일본을 순방함.

1. 미국(5.5.~8.)

● 워싱턴을 방문한 정일권 의장 일행은 포드 미국 대통령, 키신저 미 국무장관, 하원의장,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외무위원장 예방 등 행정부와 의회 고위인사들을 면담하고,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한국군 현대화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함.

2. 서독(5.12.~17.)

● 정일권 의장은 셀 서독 대통령과 겐셔 서독 외상을 면담하고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한반도에서 고조된 긴장상태에 따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서독의 지원을 요청한데 대하여 겐셔 외상은 한국의 6.23 선언에 대한 지지, 미군주둔 필요성에 동감을 표명하고 한국의 평화유지와 경제발전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함.

● 정 의장은 서독 의회 지도자와의 오·만찬, 서백림 방문 등 공식 일정을 가짐.

3. 일본(5.18.~21.)

● 유럽 방문 후 귀로에 일본을 경유하게 된 정일권 의장은 일본 체재동안 미키 일본 수상 등 일본 정계 지도자들과 면담함.

- 미국에서 일고 있는 신고립주의를 경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조하여 이러한 신고립주의의 증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군철수는 한반도 에서의 세력균형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언급
- 한·일본 간의 경제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줄 것을 요청
- 양측은 한·일본 관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국 의회 지도자들의 교류 확대와 양국 국민들의 교류와 상호이해 촉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합의

75-0333

이철승 국회 부의장 미국 방문, 1975.2.24.-3.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90 / 5 / 1-14

이철승 국회 부의장이 1975.2.24.~3.6. 미국을 방문함.

1. **이철승 부의장은 미국 방문에서 Zurhellen 국무부 아·태차관보대리 등 행정부 인사, Albert 하원의장 및 Scott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의회 지도자들을 면담함.**
   - 한국의 정치 상황(국민투표 실시, 긴급조치 위반자 구속해제 조치 후의 정국 수습방안)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정치노선인 중도노선을 소개함.
   - 인도차이나 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태 고조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FY75 대한군원에 조건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2. **이철승 부의장은 컬럼비아대학 동아시아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한국에 있어서 안보와 자유"에 관한 오찬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도차이나 사태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안전보장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미군주둔과 군사원조 필요성을 강조함.**

6.25 참전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675.6.3.-2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90 / 6 / 1-224

최영희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25 참전 국회의원단이 1975.6.3.~25.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경위 및 목적

- 청와대는 1974.11.20. 외무부에 보낸 공한에서 11월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 또는 재선된 한국전쟁 참전자 36명을 대상으로 미국의회 대책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유신정우회는 12.30. 무임소장관실을 통하여 6.25 참전의원 친목회가 1975년에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전 참전 출신 미국 국회의원과 유대강화를 모색하고자 할 계획임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협조를 요청함.
  - 한국전쟁 25주년 되는 1975년에 참전의원 10여명을 방한 초청하고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참전용사들에게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림.

2. 주요 일정

- 행정부 및 의회 고위인사 면담, 참전의원을 위한 연회개최 등 접촉활동, 군사학교 및 한국전 참전 군부대 시찰, 6.25 한국전 25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언론과의 회견 등

3. 활동 내용

- 의원 방문단은 국무부 차관, 아·태차관보, 국방차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와 하원의장, 상·하원 원내총무 등 의회 지도자들을 예방하였으며, 유엔군 사령관 및 참전의원을 위한 행사, 트루만 대통령 묘소 헌화, 맥아더 장군 묘지 헌화, 무명용사 묘지 헌화, 6.25 기념 리셉션 개최 등 활동을 가짐. 또한 의원들은 출신군별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부대를 방문함.
  - 포드 미국 대통령은 6.25 한·미국 참전의원을 초청하여 Rose Garden에서 기념행사를 개최

4. 기타 자료

- 참전 의원단 미국 방문에 관한 국내외 언론 보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유엔참전협회에서 작성한 캐나다군 참전 전적비 건립 관련자료, 참전의원 친목회의 미국 방문 관련자료, 6.25 제25주년 기념협회의 미국, 캐나다 해외활동보고가 수록됨.

75-0335

6.25 참전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675.6.3.-25. 전2권 (V.2 활동보고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90 / 7 / 1-223

6.25 참전 국회의원단의 1975.6.3.~25. 미국 방문 결과보고서임.

1. 엄영달 의원 보고서

● 방미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엄영달 의원은 24명의 미국 의원들을 접촉하여 한국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 한국에 대한 원조 등 반응을 정리하여 제출함.

2. 방미 의원단 활동 결과보고서

● 보고서는 방미기간 중 접촉한 인사들의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반응을 행정부, 의회, 군부 및 언론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반응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건의를 제시함.
- 행정부 인사들은 미국의 대우방국 안보공약을 명백히 재확인. 그러나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한국 측의 계속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미국 내 여론의 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언론 대책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권고
- 의회 지도자들은 한국 안보문제의 중요성 및 미국의 대한지원의 긴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보문제와 국내정치문제의 상호연관성을 중요시하는 측면도 보임. 한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안보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며, 미국 의회 및 여론 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
- 군 지도자들은 인도차이나 패배로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종래의 일본 방위를 위한 전초 방어선이라는 소극적 관념에서 4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의 핵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방어의 필수적인 방어선으로서 보다 세계적인 전략면에서의 적극적인 관념으로 평가
- 언론계는 국내정치문제를 확대 보도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깊은이해의 결여로 한국의 안보문제를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인상

● 한국에 대한 이해 강화를 위하여 의원, 언론 등 여론 형성층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등 홍보활동 강화를 건의함.

국회의원단 중동 순방 계획(연기)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서남아대양주
MF번호	C-90 / 9 / 1-208

1974~75년 중 국회의원단이 중동지역 순방을 추진하였으나 취소됨.

1. 국회사무처는 1974.3.6. 외무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1974년 의원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김진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단이 1974.5월경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방문 가능여부 파악 등 협조를 요청함.

2. 추후 방문기간이 1974.7월로 연기되면서 파키스탄, 이집트, 쿠웨이트, 요르단 및 터키로 방문 대상국가가 변경되었으며, 국회사정에 의하여 다시 방문일자가 9월 이후로 연기되었다가 방문국 사정 등 이유로 국회의원단 방문은 해를 넘겨 1975.4월에 이집트, 쿠웨이트, 요르단으로 다시 추진됨.

3. 의원단 방문을 앞둔 1975.3월에 파이잘 사우디 왕이 암살되어 쿠웨이트 측에서 연기를 요청하고 이집트도 미국의 중동 중재안 협상중재로 인한 사태악화로 접수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의원단 중동 방문은 취소됨.

75-0337

신도성 국토통일원장관 독일 및 오스트리아 방문, 1975.6.13.-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90 / 10 / 1-21

신도성 국토통일원장관이 1975.6.13.~26. 독일 및 오스트리아를 방문함.

1. 독일(1975.6.15.~22.)

- 신도성 장관은 분단국문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독일을 방문하였으며, 그 계기에 독일 정부 내독성장관과 하원의원 등 주요인사와 접촉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일 측으로부터 동독과의 교섭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청취함.
- 영남대학교와 뮌헨대학 공동으로 주최하는 "분단국 문제 한·독일 심포지엄"은 통일원이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의 당위성과 현실적 합리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고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계획함.

2. 오스트리아(1975.6.22.~24.)

- 신도성 장관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개최되는 한·오스트리아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를 방문함.

구자춘 서울시장 터키·이란 및 대만(구 중국) 순방, 1975.10.12.-2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구주2
MF번호	C-90 / 11 / 1-127

구자춘 서울시장이 1975.10.12.~20. 터키, 이란 및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함.

1. 방문 일정

- 터키(10.12.~15.), 이란(10.15.~17.), 대만(10.19.~20.)

2. 방문 목적

- 자매도시인 앙카라시와 대북시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 등 우의 증진을 도모함.
  - 자매도시인 앙카라시 시장의 1974년 한국 방문 답방형식
- 테헤란시장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구자춘 시장은 테헤란을 방문하여 경제교류, 도시 건설계획 등 상호 경험 교환과 우의를 도모함.

75-0339

국방대학원 교수 그리스 방문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C-90 / 12 / 1-12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는 1975.8.21. 외무부를 통하여 주그리스대사관에 안보문제연구소 부소장 등 국방대학원 교수가 9월에 그리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리스 국방대학 방문이 추진됨.

특별사절단 카타르 방문, 1975.10.22.-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90 / 13 / 1-49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10.22.~24. 카타르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 지지 확보(한국 측 안에 찬성, 공산 측 안에 반대, 표결우선권 북한 측 주장에 대한 반대) 교섭
  - 한국과 카타르는 1974.4.18. 외교관계 수립. 주사우디대사가 겸임
- 카타르는 제29차 회의에서는 한국 측 안 찬성, 공산 측 안 투표에 불출석하였으며, 6월 정무차관보 현지 방문 시 유엔총회와 비동맹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2. 방문 결과

- 김동휘 차관보는 도하를 방문하여 외상 등 외무부 고위인사와 협의를 가졌으며, 카타르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한 찬성은 약속하였으나 북한 측 안과 북한 측 표결우선권 문제에 대한 반대요청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유엔 현지에서 카타르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함. 사절단은 카타르가 공산 측 안에 작년과 같이 기권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뉴욕 현지에서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본부에 건의함.
  - 사절단 방문 시기에 북한대표단도 카타르 방문
- 김 차관보는 카타르 측에 경제·기술협력 협정안에 대하여 카타르 측의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에 대하여 카타르 측의 관심을 촉구함.

75-0341

정세조사단 수리남 및 안티레스(네덜란드령) 방문, 1975.1.13.-17.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경제협력
MF번호	C-90 / 14 / 1-79

조광제 주네덜란드대사관 참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조사단을 1975.1.13.~17. 네덜란드 자치영토인 수리남과 앤틸리스의 정세판단을 위하여 동지역에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독립을 앞둔 수리남과 앤틸리스의 정세파악 및 자료수집

2. 방문 결과

- 수리남을 방문한 조사단은 자치정부 수반 등 정부요인을 면담하고 정당 관계, 독립준비 등의 정치상황과 향후 전개전망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경제면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경제개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한국 원양어업회사의 진출현황과 문제점 등도 파악함.
  - 앤틸리스도 동일
- 수리남에서는 조기 독립을 서두르는 현 자치정부에 대해서 인도족 야당의 반대가 있으나 포리올계가 주축이 되고 있는 현 자치정부가 1975년 이내에 독립할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독립 후에 수리남이 가이아나처럼 급작스러운 좌경화는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가이아나가 인접해 있고 자치 정부 제2인자가 공산주의 신봉자임을 감안하여 독립 수리남과 미리 관계를 맺음으로써 독립 후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건의함.
  - 독립 이전에 영사관 설치 또는 명예영사 임명, 친선 및 경제사절단 파견, 수리남 기술훈련생 초청 및 새우 냉동포장시설 합작 투자 건의
- 앤틸리스는 여러가지 이유로 1980년 이전에는 독립이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치적으로 당장 신경을 써야할 필요는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자연자원이 전혀 없는 이유로 협력분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김용우 한국적십자사 총재 터키 방문, 1975.7.29.-8.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90 / 15 / 1-24

김용우 한국적십자사 총재 일행은 1975.7.29.~8.3. 터키적십자사와의 유대 강화와 한국과 터키 양국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터키를 방문하였으며, 터키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와 터키적십자 총재 면담과 유적지, 급식소 및 구호물자 저장고 시찰 등 일정을 가짐.

75-0343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5.5.18.-6.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90 / 16 / 1-137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5.18.~6.9. 중동국가(리비아, 요르단, 북예멘)를 방문함.

1.방문 경위와 목적

- 정부는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한국입장 대변 및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 획득을 위한 교섭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사파견을 결정함.

2. 훈령

- 유엔총회와 비동맹 회의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 설명, 북한의 대남무력 도발, 특히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증대된 북한의 남침위협 등 최근의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 리비아와 북예멘과는 국교수립 교섭

3. 방문 일정

- 리비아(5.18.~20.), 요르단(6.1.~3.), 북예멘(6.5.~9.)

4. 방문 결과

- 김동휘 차관보는 리비아 측과 수교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리비아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을 표명함. 그러나 유엔총회 및 비동맹회의와 관련하여서는 남북대화 계속을 전적으로 지지하나 미군주둔에 대하여는 반대의사를 표명함.
- 요르단 정부 고위인사들은 국제 외교문제에서의 한국입장 계속 지지를 약속하면서도, 비동맹회의와 관련하여서는 아랍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북예멘 측은 수교 제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명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음을 시인함(북한의 원조단절). 유엔총회와 관련하여 제30차 총회부터는 완전중립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표명하였으나, 비동맹회의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함.
- 사절단은 방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함.
  - 인사 방한 초청, 경제협력 등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5.6.12.-7.11.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90 / 17 / 1-205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5.6.21.~7.11. 중동국가(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및 오만)를 순방함.

1. 방문 경위와 목적

- 정부는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에서의 한국입장 대변 및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 획득을 위한 교섭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사파견을 결정함.
  - 중동 지역은 2개 반으로 편성

2. 훈령

- 유엔총회에서 공산 측이 결의안을 재상정하려는 움직임과 한국의 입장 설명
- 8월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이 가입 신청함에 따라 한국도 가입을 신청하게 되었음을 설명
- 북한의 대남무력 도발, 특히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증대된 북한의 남침위협 등 최근의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설명
- 방문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 모색
- 외무부장관 친서 전달

3. 방문 일정

- 쿠웨이트(6.21.~24.), 바레인(6.24.~28.), 카타르(6.28.~7.1.), 아랍에미리트(7.1.~4.) 및 오만(7.4.~8.)

4. 방문 결과

- 쿠웨이트 인사들은 사절단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동맹 외교입장에서 외국군대 주둔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함에 따라 사절단은 유엔과 비동맹회의에서의 쿠웨이트의 입장 변화에 대하여 비관적 평가를 함.
- 사절단은 바레인 측에 수교를 제의하였으나, 인근 아랍국가들과의 협조와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유엔과 비동맹회의에서 한국입장에 대하여는 동정적 태도를 보임.
- 카타르 측은 한국의 비동맹 가입신청에 대하여 아랍국가와 상의하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유엔에서는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사절단은 카타르가 남북한 공히 가입 자격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
-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절단의 입장 설명과 지지 요청에 대하여 비동맹 가입지지, 유엔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한 기권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오만 측은 유엔과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입장 지지를 표명함.

75-0345

김종필 국무총리 장개석 대만(구 중국) 총통 장례식 참석, 1975.4.15.-1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C-91 / 5 / 1-82

김종필 국무총리가 1975.4.15.~18. 장개석 대만(구 자유중국) 총통 장례식에 참석함.

1. 대만 정부는 장개석 총통이 1975.4.5 서거하였으며 장례식을 4.16 거행한다고 발표함.

2.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대통령,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명의의 조전을 주대만대사관을 통하여 대만 정부에 전달함.

3. 대만 정부의 장례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의사절단 구성 소식이 보고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김종필 총리를 사절단장으로 조의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대만 정부에 통보함.

4. 김종필 총리는 장례식에 참석한 기회에 장경국 대만 행정원장, 록펠러 미국 부통령 등 조문사절들과 개별 회담 등 외교활동을 가짐.

김종필 국무총리 사또(佐藤榮作) 일본 수상 장례식 참석, 1975.6.15.-1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C-91 / 6 / 1-52

김종필 국무총리가 1975.6.15.~17. 사토 전 일본 수상 장례식에 참석함.

1. 사토 전 수상이 1975.6.3. 서거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6.16. 국민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키 일본 수상이 장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실상 국장이 됨.

2. 한국 정부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는 한편 김종필 총리를 조의사절로 파견하기로 결정함. 여타 국가들은 국장이 아닌 국민장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지대사를 참석시킴.

75-0347

김동조 외무장관 Birendra Bir Birkram Shah Dev 네팔 국왕 대관식 참석, 1975.2.22.-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의전1
MF번호	C-90 / 18 / 1-289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1975.2.22.~26. Birendra Bir Birkram Shah Dev 네팔 국왕 대관식에 참석함.

1. 네팔 국왕은 1974.9.1.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박 대통령의 대관식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답신에서 국무총리 또는 각료급 경축특사 파견을 통보함.
   - 한국과 네팔은 1974.5.15.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주네팔대사는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와 대북한 제압 외교를 위하여 특사파견을 강력하게 외무부에 건의

2. 정부는 1974.11월 네팔 정부에 국무총리 참석을 통보하였으나, 1975.1월 국내사정을 이유로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대신 파견하기로 하고 그 기회에 동남아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동남아 순방을 추진함.

3. 김동조 장관은 특사로 대관식에 참석한 기회에 네팔 수상과 외상을 면담하고 양국간 유대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유엔과 비동맹회의에서 한국입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함.

김종필 국무총리 Khalid Ibn Abdul Aziz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즉위식 참석, 1975.5.2.-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통상3
MF번호 C-91 / 1 / 1-254

김종필 국무총리가 1975.5.2.~5. Khalid Ibn Abdul Aziz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함.

1. 1975.3월 파이잘 사우디 왕 서거로 동생인 Khalid 왕자의 왕위 승계가 결정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선왕 서거에 대한 조의 및 할리드 왕 즉위 축하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사우디 측에 통보하였으며 사우디 측이 접수에 동의함.

2. 할리드 왕을 접견한 총리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 긴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할리드 왕은 선왕의 협력관계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재정 협력에 대하여 사우디 재무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약속함.
   - 한국 정부가 사우디에 제시한 관심 협력사업은 사우디 개발기금 사용을 통한 현금재정차관 제공과 정유공장건설로 안정적인 원유공급 보장

3. 김종필 총리는 그 외에도 부수상, 외무담당 국무상 등 고위인사와의 면담에서 양국간 친선유대 관계의 계속적 유지 방침에 대한 사우디 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를 방문하여 격려함.

75-0349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 수리남 독립경축식 참석, 1975.11.20.-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1 / 2 / 1-83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가 신생독립국가인 수리남의 독립경축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1975.11.20.~28. 수리남을 방문함.

1. 네덜란드 자치령이었던 수리남이 1975.11.25. 독립을 하게 되면서 10.29. 한국 정부에 독립 경축식 특사파견 초청장을 발송함에 따라 정부는 수리남을 겸임하는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를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함.

2. 한국 정부는 좌경 가이아나를 통한 북한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 수리남과 서둘러 외교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975.5월 총영사관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10월에는 개설 실무요원을 수리남에 파견하여 준비작업을 진행함. 또한 신생독립국 수리남에 대한 국가승인을 위한 국내조치도 마무리함. 정부는 특사에 대한 훈령에서 양국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도록 지시함.

3. 송광정 대사는 수리남 신정부 수상과의 교섭을 통하여 양국간 국교수립에 합의하였으며, 양국은 1975.11.27. 국교수립을 각각 발표함.

강춘희 주뉴질란드대사 통가 헌법제정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1975.11.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91 / 3 / 1-26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가 겸임국인 통가의 헌법제정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1975.11.1.~6. 통가를 방문함.

1. 통가 정부는 1975.9월 주뉴질랜드대사관을 통하여 100주년 기념식 개최 계획을 알려오면서 한국 정부의 경축사절 파견을 요청함.

2. 정부는 당초에 경축사절 파견 대신 대통령의 축전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으나 1975.10.14. 소련이 통가와 수교함에 따라 북한이 이에 편승하여 수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춘희 대사가 경축사절로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북한의 수교 기도를 막을 것을 지시함.

3. 강춘희 대사는 통가 수상 등 고위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평화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 경위와 여타 공산국가와의 관계수립 가능성을 문의한바, 통가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만약 북한과의 관계수립을 위한 교섭을 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할 것을 약속함(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도 공식적 발표 유보).

75-0351

강춘희 주뉴질란드대사 사모아(구 서사모아) 독립기념행사 참석, 1975.5.31.-6.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91 / 4 / 1-20

1.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는 1975.5.19. 동 대사의 1974.10월 사모아(구 서사모아) 국가원수에 대한 신임장 제정 시 1975.6.1.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바 있었으며, 금년도 행사가 6.2.~4. 개최되므로 동 기간 중 사모아를 그리고 귀로에 겸임국 통가를 방문하고자 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건의함.

2.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5.6.18. 강춘희 대사의 1975.5.30.~6.10. 사모아 및 통가 방문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양국은 금번 겸임국 방문에 대해 사의 표명
  - 특히 사모아에서는 독립 경축행사 및 Mata'afa 전 수상 위안예배에 참석하여준데 대해 국가원수, 수상 등이 누차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고 자주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
- 금번 방문시 사모아, 통가 양국의 정치, 경제 정세에 별 변동사항이 없음을 발견하였으며 양국 모두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공산주의를 혐오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북한이 동 국가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 양국은 아직 경제자립이 곤란한 국가들로서 외국원조 의존도가 높은 점과 한국의 양국에 대한 수출액이 급증(1974년 대사모아 수출 54만 달러, 대통가 수출 19만8천 달러)하고 있음에 비추어 양국과의 유대강화 등을 위해 국산 피아노 또는 재봉틀을 양국 학교 또는 부인회에 기증하는 것을 검토 요망

Bongo, El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1975.7.5.-8.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의전1
MF번호 C-91 / 7 / 1-218

ElHadj Omar Bongo 가봉 대통령이 1975.7.5.~8. 방한함.

1.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대통령 주최 리셉션 및 만찬(7.5.),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헌화, 특수전사령부 시찰, 산업시찰(7.6.), 서울대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경희대 방문, 가봉 대통령 주최 만찬(7.7.), 대통령에 대한 이한인사, 이한(7.8.)

2. 한·가봉 간 정상회담(7.5.)

- 박정희 대통령 언급사항
  - 과거 양국간의 우의관계에 만족표명 및 앞으로 양국관계 증진 희망 표시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6.23 특별선언, 1974.1월 불가침조약 제의내용 등 설명
  - 제30차 유엔총회 한국 측 결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 요청 및 비동맹 회의에서의 한국 측 입장 지지 요청
- 봉고 대통령 언급사항
  - 북한은 차우체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을 통해 한반도에서는 북한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서울 방문을 취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가봉은 유엔에 이미 남북한 2개 대표부가 있고 자국에도 남북한 2개 대사관이 있으므로 사실상 2개의 Korea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동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그 후 중국(구 중공) 방문중에도 중국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으나 이를 가봉에 대한 주권 무시로 간주, 이를 일축하고 북한 방문을 취소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 측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금추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작년과 같이 공동제안국이 될 것임을 약속

3. 한·가봉 간 각료회담(7.7.) 결과 요지

-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는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은 가봉 횡단철도 건설계획에 참여의사 표명
- 자원협력 관련 한국 측 질의에 대해 가봉 측은 외국인에게 탐사·개발권을 부여하나 국내문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투자는 특정기준과 양을 정하여 case by case로 검토해 허용된다는 답변 등

4. 대가봉 원조

- (7.7. 봉고 대통령 주최 만찬시 가봉 측이 수교한 원조요청 내용) walky talky 600세트, 군복지 12,000명분, 태권도복 및 군화 각12,000명분 등
- 동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얼룩무늬 군복지 1,000명분, 태권도복 200명분, 군화 1,000명분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동 내용을 주가봉대사를 통해 문서로 전달

Bongo, El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1975.7.5.-8. 전3권 (V.2 의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의전1
MF번호 C-91 / 8 / 1-217

ElHadj Omar Bongo 가봉 대통령의 1975.7.5.~8. 방한 관련 준비사항임.

1. 주가봉대사관이 1975.6.3. 봉고 가봉 대통령 방문일정을 탐문한 바에 의하면 6.22. 가봉을 출발, 6.23.~24. 루마니아 방문, 북경 경유로 6.29. 평양 도착, 7.2. 홍콩으로 출발, 7.3. 동경으로 가서 7.5. 아침 서울로 향발, 7.8. 오후 서울에서 파리로 직행할 것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1975.6.13. 영접위원회에서 작성한 봉고 대통령 내외분 방한 영접계획임.
   - 영접위원회
     - 위원장: 외무부장관
   - 영접계획
     - 방한기간: 1975.7.5.~8.
     - 수행원: 공식수행원 18명, 비공식수행원 37명 등
     - (체한일정) 김포공항 도착 및 공항환영행사, 숙소(조선호텔) 도착, 대통령 예방 및 정상회담, 대통령 주최 리셉션, 만찬 및 민속공연(7.5.),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참배 헌화, 특수전사령부 시찰, 산업시찰(7.6.), 서울대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기념식수, KIST 시찰, 경희대 의료원(건강진단) 방문(7.7.), 이한 예방, 공항 환송행사 및 이한(7.8.)

3. 주홍콩총영사관은 1975.6.27. 주재국 경찰당국에 의하면 봉고 대통령 일행은 현재 중국(구 중공)을 방문 중이며 원래 예정되었던 북한 방문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앞당겨 6.29. 중국으로부터 홍콩에 도착, 7.3. 일본 향발시까지 홍콩에 체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354

Bongo, El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1975.7.5.-8.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의전1
MF번호	C-91 / 9 / 1-202

1975.7.8. 박정희 대통령과 봉고 가봉 대통령 간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임.

1. 봉고 대통령 내외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1975.7.5.~8. 공식 방한

2. 봉고 대통령은 방한시 Okumba 외상 등 수행원을 대동

3. 박정희 대통령은 봉고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였으며, 봉고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적도성 십자훈장을 수여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음.

4. 양국 원수는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와 국제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근 정세를 검토함.
   - 한반도 사태에 관하여 양국 원수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유지가 국제평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가봉 대통령은 한국입장에 대한 유엔에서의 계속적인 지지를 재천명
   - 아프리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원수는 모잠비크의 독립을 치하하였고 포르투갈 구식민지 중 앙골라, 카보베르데 및 상투메프린시페가 앞으로 독립을 성취하게 된 것을 환영

5. 양국 원수는 수년전부터 양국간에 시작된 협력사업이 많은 진척을 보았으므로 이를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공히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양국 외상은 아래 협정에 서명
   - 경제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한·가봉 혼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6. 그 외에도 한국은 현재 가봉에서 활동중인 의료단의 인원 증가와 태권도사범 파견을 하기로 하였으며 가봉 횡단철도 건설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등

De Roburt, Hammer 나우루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취소)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91 / 10 / 1-50

1970~75년 중 Hammer De Roburt 나우루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호주대사관은 1970.8.4. Hammer De Roburt 나우루공화국 대통령 겸 상공상이 한국 정부 및 비료회사 측과의 상담을 위해 8월말~9월초 중 방한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호주대사관은 8.20. 동 상공상은 나우루 대통령을 겸하고 있으나 금번 1970.9.30.~10.3. 방한은 국가원수 자격이 아닌 상공상 자격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
- 주호주대사관은 9.25. 주호주 나우루대표부를 통해 한국 국내사정을 이유로 방한시기 연기를 요청했으며 동 대표부는 본국 정부와 긴급연락 후 방한시기를 다음 적당한 시기로 연기하는데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 주호주대사관은 10.2. 주호주 나우루대표부는 동 상공상이 한국 측에서 동의하는 경우 11월 중순경 방한을 희망한다는 서한을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인의 방한문제와 관련하여 상사 간 거래 알선을 선행시켜야 한다면 어느 회사와 접촉하여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건의

2. 1975.12.9. 외무부 작성 나우루 대통령 방한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문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구시 소재 한국사회사업대학이 외무부에 통보해온 바에 의하면 Hammer De Roburt 대통령은 동 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1975.12.13. 방한할 예정이라고 함.
  - 동 학위 수여문제는 동 대학 설립자가 금년 11월 동 대통령의 괌 방문시 논의한 결과라고 함.
- 한편, 외무부가 동 내용을 주호주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동 대통령은 타이베이에 취항하게 된 나우루 항공기 취항식 참석차 12.9. 대만(구 자유중국) 도착, 3일간 체류후 홍콩을 경유하여 12.14. 귀국 일정으로 되어 있는바, 주대만대사관을 통해 동 대통령의 여정을 확인중에 있음.
- 나우루는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공동신탁통치로부터 1968.1.31. 독립, 한국은 3.26. 동국을 국가 승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외교관계는 없으나 매년 국경일에 양 국가원수 간의 축전을 교환해 왔으며 1974년 한국어선이 동국 근해에서 해난사고 당시 구조에 협력해준 바 있음.
- 동 대통령이 상기 학위 수여관계로 방한시는 미수교국의 국가원수로서 사적으로 방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적당한 예우를 검토중이며 가능하면 동 기회를 이용, 한국과의 국교수립을 모색할 예정

3. 주호주대사관은 1975.12.9. 주호주 나우루총영사관에 확인한 결과 동 대통령의 방한계획이 취소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356

Macapagal, Diosdado 전 필리핀 대통령 방한, 1975.12.12.-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91 / 11 / 1-39

Diosdado Macapagal 전 필리핀 대통령이 1975.12.12.~15. 방한함.

1. **주필리핀대사관은 1975.7.7. 필리핀 부통령(1957~61년)과 대통령(1961~65년)을 역임한 Macapagal 전 대통령 부부가 1975.12.12.~15. 한국을 친선 방문한다고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인의 아래 요지 대한국 공적을 참고, 적절한 훈격의 훈장 수여를 건의함.**
   - Macapagal 전 대통령은 현재 주재국 외교 및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위원과 국회의원으로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자문역할을 하는 동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적극적 친한파로서 한국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
   - 한국전쟁 시 주재국 상원의원으로서 당시 상·하 양원합동위원회에서 필리핀의 한국 파병여부에 관한 토의 시 자유 수호를 위한 필리핀군의 파병을 강력히 호소함으로써 파병이 실현되었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한국입장을 강력 지지

2. **외무부는 1975.11.22. Macapagal 전 대통령이 세계대학 총장회의에 초청된 경위 등을 보고하도록 주필리핀대사관에 지시함.**
   - 주필리핀대사관은 11.25. 동인은 경희대학교에서 1965년경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바 있고 동 대학 총장과 친분이 있으며, 경희대학교는 주재국 University of St. Thomas 등과는 자매결연 관계에 있고 Macapagal 전 대통령은 과거 동 대학에서 1941~57년 법학교수를 역임한 바 있음 등을 외무부에 보고

3. **외무부는 1975.12.15. Macapagal 전 대통령 일행은 하기 일정을 마치고 홍콩 향발하였음을 주필리핀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12.12.), 대통령 예방, 국회의장 예방 및 국회의장 주최 오찬, 경희대 총장 주최 만찬(12.13.), 판문점 시찰 등(12.14.), 국무총리 예방 및 국무총리 주최 오찬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근동담당관/경제협력
MF번호	C-91 / 12 / 1-86

1. 외무부는 1975.1.31. 한국 건설업의 대사우디 진출 협의를 위해 건설부장관 명의로 Nawaaf Al-Faisal 왕자를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초청장을 별도 방한한 주재국 '알 메지나'지 주필인 모하메드 사라우딘씨 편으로 전달하였다고 건설부가 전달해왔음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통보함.

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5.5.17. Nawaaf 왕자와의 동일 오찬 결과를 아래 요지로 국무총리에게 보고(외무부 경유)함.
   - 방문성격
     - 국왕의 개인고문 자격으로 양국간의 일반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 모색 및 Quodrga사의 회장으로서 동 회사의 사업추진을 겸한 방한
   - 동 왕자는 현 국왕의 36명 형제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동적으로 국왕 및 왕족을 대표
     - 동인은 전 왕 고문을 역임한 바 있고 현 국왕의 개인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우디에서의 지위가 민간 장관급 이상임을 감안, 방한기간 중 의전상 특별한 배려 요망 등

3. 1975.6.9. 동 왕자 일행은 5.26. 내한, 8박 9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출국함.

4. 주사우디대사관은 1975.8.5. 주재국 왕실고문이며 전 국왕의 영식인 Turki Al-Faisal 왕자가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방문 후 1975.9.19.~24. 방한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최규하 특별보좌관 명의로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외무부는 8.20. 동인을 Guest of the Government로 초청하고자 함을 서면으로 동인에게 알릴 것을 주사우디대사관에 지시

5. 외무부는 1975.9.22.~25. 방한 중인 사우디왕실고문 Turki Al-Faisal 왕자가 9.23. 대통령 예방 시 사우디는 시리아, 수단, 이집트, 북예멘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한국이 이들 4개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적극적인 측면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국무총리 예방 시 국무총리 명의로 방한 초청한 제1부수상 겸 내무상인 Fahed 황태자의 방한이 명년 중 가능하도록 주선하겠다고 하였음.

75-0358

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91 / 13 / 1-12

1974~75년 중 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튀니지대사관은 1974.11.30. Habib Bourguiba 주재국 대통령에 대한 방한 초청문제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방문은 6월 출발 직전에 연기된 바 있으며 주된 이유는 미국을 동시에 방문하려던 당초 계획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었던 것으로 관측
- 11.23. 주튀니지 미국대사에 의하면 동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1975.4월에 실현될 것이라고 하며 그 때 소련, 중국 등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상금 확정되지 않았다고 함.
- 상기에 비추어 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함이 우호관계 표시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니 검토 요망
  - 방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아랍 외교기반 구축 및 북한진출 저지 등의 유리한 효과가 예상되나 방한 실현 가능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초청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

2. 외무부는 1975.1.7. 튀니지 정부가 Bourguiba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정식 표명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통령 명의 초청장 발송 건의를 수락할 수 없음을 주튀니지대사관에 통보함.

Biya, Paul 카메룬 수상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91 / 14 / 1-9

1975년 중 Paul Biya 카메룬 수상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5.7월 외무부 작성 Paul Biya 카메룬 수상 방한 초청에 관한 아래 요지의 건의 문서를 재가함.

- 카메룬 정부는 7.1. 수상제 신설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하고 초대 수상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Paul Biya씨를 임명
- 동인은 대통령비서실장 재직시 한국대사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지한인사로서 수년전부터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을 받은 바 있으나 분망한 일정으로 방한 지연
- 1975.6.29.~7.2. 카메룬을 방문한 윤석헌 특사는 국무총리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재차 송부할 것을 건의
- Paul Biya 수상의 취임초기에 방한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 수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을 표시하는 뜻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며 금년 유엔총회 등에 대비하여 카메룬의 태도 변화를 위한 지지 교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활용가능

2. 주카메룬대사는 1975.8.26. Paul Biya 수상을 동일 방문, 국무총리 명의 방한 초청장을 직접 수교하면서 조속한 시기에 방한하여 줄 것과 유엔총회에서의 한국결의안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동 수상은 아래 요지로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방한 초청에 감사하며 주재국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적절한 시기에 방한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현재로서는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카메룬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과거 분단된 국토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처지로서 한국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

75-0360

Mancham, James R. 세이셸 수상 방한, 1975.8.27.-3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91 / 15 / 1-139

James R. Mancham 세이셸 수상이 1975.8.27.~31. 방한함.

1. **외무부는 1975.5월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James R. Mancham 세이셸 수석장관(수상급) 내외를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 내년초 독립예정인 세이셸의 Mancham 수석장관은 2월 세이셸을 방문한 주케냐대사와의 면담시 5월 미국 및 일본 방문계획을 밝히고 그 기회에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고자 한다는 희망 피력
   - 이에 따라 외무부는 동 방한 초청(체재비 한국 측 부담)을 결정하고 주케냐대사로 하여금 방문초청장을 전달하게 하였는바, Mancham 장관은 4.28. 주케냐대사 앞 답신에서 국내사정으로 5월중 방문은 어려운 실정이며 7월말 또는 8월초 방한 희망
   - 동 장관은 세이셸 독립 후 행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독립 후 한국입장 지지를 약속하고 있음에 비추어 7월말 또는 8월초 항공료, 체재비 한국 측 부담으로 방한 초청 건의

2. **외무부는 1975.9.2. Mancham 수상은 8.27.부터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8.31. 예정대로 출국하였음을 주케냐대사관에 통보함.**

3. **동 수상의 방한(1975.8.27.~31.) 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장관 예방, 국무총리 예방(8.27.), 판문점 시찰, 외무부장관대리 내외 주최 만찬(8.28.), 부산, 울산지역 산업시찰(8.29.), 대통령 예방(8.30.)

Arron, H.A.E. 수리남 수상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1 / 16 / 1-30

1975~76년 중 H.A.E. Arron 수리남 수상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네덜란드대사는 1975.4.2. 수리남 독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중인 Arron 수리남 수상을 예방, 양국간의 우호관계 유지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교환을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수상의 방한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건의함.**
   - 주네덜란드대사는 일본 정부 초청으로 일본 방문기회에 방한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
   - 이에 대해 Arron 수상은 방한 가능여부를 Vanzeer 주네덜란드 수리남장관을 통해 회답하겠다면서 가능하면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사 표명
   - 일본 방문은 5월 후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방한하는 경우 5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한 초청 건의

2. **주네덜란드대사는 1975.4.4. 일본 정부의 Arron 수상 초청은 일본 외무성의 빈객(Guest of the Foreign Ministry)으로 초청하였다고 하며 동 수상이 아직 독립전 수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정부 또는 외무부 명의로 초청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4.9. 동 수상을 한국 정부의 빈객으로 공식 초청하는 내용으로 할 것을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지시
   - 주네덜란드대사관은 4.18. 동 수상 앞 방한 초청 서한을 Vanzeer 장관에게 전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3. **주네덜란드대사는 1975.4.23. Vanzeer 장관은 Arron 수상의 방한 초청에 관한 답신 전달 계기에 언급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Arron 수상의 일본 방문은 수리남 독립 후인 1976.2월로 일본 측과 방문일정을 조정중이며 동 기간중 방한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만일 초청할 경우 독립 후의 수상이므로 그에 맞는 공식초청(국무총리 명의 초청)이 되어야 함을 언급
   - 외무부는 5.1. 동 수상의 일본 방문기회에 방한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한국입장을 수리남 측에 전달할 것을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지시하고 초청자 명의 변경 문제는 수리남이 독립하고 수상 취임 후에 조치할 수 있을 것임을 통보

4. **주네덜란드대사는 1975.8.12. Vanzeer 장관을 방문, 수리남 독립문제 및 Arron 수상 방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동 장관은 동 수상의 방한 문제는 일본 방문계획과 관련되어 있어 아직 일정을 확정지울 수 없으나 1976.5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1976.1.14. Arron 수상 방한 문제 관련 아래 요지로 주수리남대사관에 통보함.**

- 정부는 수리남 독립전 주네덜란드대사관을 통해 동 수상 일본 방문기회에 방한하도록 초청한 바 있고, Vanzeer 장관은 1975.4.21. 공한으로 독립 후 방일일자를 확정하는 즉시 한국 측에 통보할 것임을 알려온 바 있음.
- 따라서 동 수상 방한은 일본 방문 확정 연후 추진될 수 있는 문제이며, 또한 1976.7월 수리남 총선이 있을 것임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한국 측이 먼저 제기하지 않기 바람.

Yahya Gegham 북예멘 외교·경제담당 부총리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91 / 17 / 1-16

1975년 중 Yahya Gegham 북예멘 외교·경제담당 부총리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5.6.13.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북예멘 정부 주요인사를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 1975.6.5.~8. 특별사절단으로 북예멘을 방문한 김동휘 경제차관보의 건의에 따라 하기 주요인사를 방한 초청
     - Abdallah Al-Asnag 외상(외무부장관 명의 초청)
     - Yahya Gegham 외교·경제담당 부수상(정부 빈객으로 초청하되 초청장은 외무부장관 명의로 발송)
     - Ali Lutf Al-Thawr 경제상(상공부장관 명의로 초청하도록 상공부 측과 협의)

2. 주사우디대사관은 1975.6.21. 북예멘 외상, 외교·경제담당 부수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대사관 공한으로 작성하여, 주사우디 북예멘대사관에 전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사우디대사는 1975.7.14.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이슬람 외상회의에 참석중인 북예멘 외상을 7.13. 면담하고 방한 조기실현과 비동맹회의 및 유엔에서의 협조를 요망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 외상은 하기 요지로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자신이 방한을 희망하나 외교·경제담당 부수상이 방한을 희망하므로 동 부수상의 방한이 먼저 이루어질 것임.
   - 비동맹 문제는 중립을 지키는 방향에서 연구하겠음.
   - 유엔 문제는 이미 주유엔 사우디대사에게 남북한 안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달함.

4. 외무부는 1975.8.20. 상기 방한 초청 관련, 동인들의 방한 시 왕복항공료를 한국 측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방한의 조속 실현을 위해 주사우디 북예멘대사에게 재요청할 것을 주사우디대사관에 지시함.

75-0363

Vigness, Alberto J.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미
MF번호	C-91 / 18 / 1-10

1975년 중 Alberto J. Vigness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5.1.29. 1974.8월 윤주영 특사의 아르헨티나 방문 시 Vignes 아르헨티나 외상을 구두로 방한 초청한 바 있으며, 동 외상이 방한 의사를 Rasmussen 주한 아르헨티나대사대리에게 전달하였음을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통보하고,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파우치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니 동 외상의 방한이 조속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함.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5.4.29. Vignes 외상의 요청에 따라 동일 외무성 아주국장을 방문하고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에 대한 동 외상의 방한 수락 공한을 전달받았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국장은 방한시기 관련, 동 외상이 5.8. 미주외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이번 기회에 방한이 가능할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유엔총회 이전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Willesee, Donald 호주 외상 방한, 1975.6.19.-22.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91 / 19 / 1-291

Donald Willesee 호주 외상이 1975.6.19.~22. 방한함.

1. 1975.4.4. 외무부 작성 호주 외상 방한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Donald Willesee 호주 외상은 주한 호주대사관을 통해 1975.6.10.~13. 방한을 제의해 온데 대해 호주와의 관계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제의를 수락할 예정임.

2. 주호주대사관은 1975.5.6. 호주 외무성 당국자가 동일 Donald 외상의 동북아 순방일정 및 방한일자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고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북경 도착(6.6.), 평양 도착(6.12.), 동경 도착(6.15.), 서울 도착(6.19.), 서울 출발(6.22.)

3. 1975.6.17. 외무부 작성 Donald 외상의 북한 방문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북한체류 일정
- 정무원 주최로 인민문화궁전에서 만찬(6.12.), 만경대 등 참관, 제1차 외상회담(6.13.), 강양욱 예방, 제2차 외상회담, 호주 외상 주최 연회(6.14.)

● 평가
- 서방국 외상으로서는 최초의 남북한 동시방문으로, 북한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김일성의 중국, 동구 및 아중동 순방 직후인 현시점에서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주한 호주대사관 관계관에 의하면 동 외상은 북한 측에 대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 한반도 평화정착 필요성 등에 대한 호주 측 견해를 강력하고 솔직하게 피력하였다고 하는 바, 차제에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서방 측의 결의를 직접 전달한 것은 의의 있는 일임.
- 김일성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4. Donald 외상의 방한 일정

● 기자회견, 외무부장관 예방, 국무총리 예방, 서울시장 예방(행운의 열쇠증정),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6.19.),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지 헌화,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오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찰, 주한 호주대사 주최 리셉션(6.20.), 전북소재 운봉목장 시찰(6.21.), 외무부장관 방문 및 이한인사

75-0365

Aladaye, Michel 베냉(구 다호메이) 외무장관 방한 추진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91 / 20 / 1-27

1973~74년 중 Michel Aladaye 베냉(구 다호메이)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1. 주유엔대사는 1973.10.10. Aladaye 베냉 외상 면담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Aladaye 외상은 1972년 평양을 방문한 바 있고 10.8.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한국문제에 관해 동 대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UNC 문제에 대해 재고하여 주유엔 베냉대사에게 재훈령하도록 하겠다고 함.
- 주유엔대사는 동 외상을 방한 초청한바, 동 외상은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희망
- 주코트디부아르대사로 하여금 동 외상에 대한 초청장을 휴대하고 베냉에 출장, 한국문제에 관한 지지 교섭을 재실시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

2. 외무부는 1973.10.15. Aladaye 외상 방한 초청장을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송부하고 겸임국인 동국에 출장, 동 초청장을 전달함과 아울러 훈령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교섭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3. 주유엔대사는 1973.10.19. Adjibade 주유엔 베냉대사를 동일 오찬에 초청한 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Adjibade 대사는 알제리회의 조정위원회로부터 공산 측 안건에 공동제안국이 되도록 계속 적지 않은 압력을 받고 있으나 자신이 대사로 있는 한 공동제안국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냉이 중립을 지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
- 건의
  - 동 대사는 Aladaye 외상 방한 초청장과 왕복항공권을 자신이 직접 동 외상에게 파우치편으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동 초청장 등을 대표부로 송부 요망

4. 외무부는 1973.10.20. 베냉 출장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할 것을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지시함.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0.25. 동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반송 조치

5. 주유엔대표부는 1973.10.29. 김창훈 주유엔대표부 공사가 동일 Adjibade 대사에게 Aladaye 외상 방한 초청장과 외상 내외에 대한 항공권, 동 대사내외 방한항공권을 전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6. 주유엔대표부는 1974.3.23. Adjibade 대사가 Aladaye 외상의 방한이 다망한 일정관계로 후일로 연기되었다고 3.22. 공한으로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이후 3.30. 주유엔 베냉대사대리는 주유엔대표부에 상기 공한이 사무착오로 잘못 발송되었다면서 동 외상이 4월 특별총회에 직접 참가할 것이며 그때 방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7. 주유엔대표부는 1974.4.19. 베냉 외상 대신 베냉 재정경제상이 동 특별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방한문제는 교섭할 수 없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366

MacEachen, Allan J. 카나다 외무장관 방한, 1975.6.26.-2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91 / 21 / 1-162

Allan J. MacEachen 캐나다 외상이 1975.6.26.~27. 방한함.

1. 1975.6.5. 캐나다 외무성은 Allan J. MacEachen 외상의 1975.6.26.~27. 방한을 결정하고 한국 측의 편의를 주캐나다대사관을 통해 문의해 왔으며, Gillespie 캐나다 상공장관도 상공부장관의 초청에 응해 동기간 방한하고자 함을 알려옴.

2. 외무부는 1975.6.7. MacEachen 외상 및 Gillespie 장관의 방한일정에 이의 없음을 주재국 측에 통보할 것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지시하고 주한 캐나다대사가 알려온 외상회담 의제를 함께 전달함.

- 한국의 현 안보정세, 제30차 유엔총회 대책(UNC 장래 및 유엔가입 문제 포함), 기타 양국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

3. MacEachen 외상 방한일정

- 수행원: Henry Basil Robinson 외무차관 등 외무성 관계관 5명
-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6.26.), 외무부장관 방문,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및 국무총리 주최 오찬, 기자회견(공항)

4. 외무부는 1975.6.27. 한·캐나다 외상 간 발표된 공동코뮤니케를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 양국 외상은 세계정세에 관해 매우 유익한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양국간 관계를 검토
  - 토의과정에서 양 외상은 특히 한반도의 정세에 관해 중점을 두었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합의
- 양 외상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해서도 토의
  - MacEachen 외상은 캐나다가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국민의 자유롭게 표시된 의사를 기초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함을 재확인
- 양 외상은 또한 한국의 캐나다 원자로 도입에 관한 교섭현황에 관해 검토
  - MacEachen 외상은 캐나다가 가장 효과적인 안전조치하에서 핵에너지의 혜택을 보급하는데 협력하고자 함을 밝힘.
  - 양 외상은 캐나다가 제공하는 원조가 평화적인 비폭발성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캐나다 측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포함한 양국간 안전조치에 관한 양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기대

- MacEachen 외상은 한국 정부가 금년 핵무기 비확산조약을 비준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외무부장관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 또는 취득하지 않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하의 의무를 한국이 존중할 것이라고 확약

5. 1975.6.27.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MacEachen 외상 면담요록, 외무부 미주국 작성 하기 목차의 회담자료 등이 수록됨.

- 면담자료
  - 인사말, 한반도 정세, 유엔 및 비동맹회의, 북한진출 기도에 대한 저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월남 피난민 문제 등 기타 토의사항
- 참고자료
  - 일정, 외상약력, 수행원 명단, 주토론토영사관 개설 등 주요현안, 한·캐나다 관계, 캐나다 현황 및 기타자료

75-0367

Roman, Victor Hugo 코스타리카 외무차관 방한, 1975.6.24.-3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의전1
MF번호	C-91 / 22 / 1-102

Victor Hugo Roman 코스타리카 외무차관이 1975.6.24.~30. 방한함.

1. **외무부는 1975.2.5. Facio 코스타리카 외상의 방한이 금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하되 동 외상의 방한이 연내 실현 불가능할 경우 Roman 코스타리카 외무차관에 대한 방한을 추진할 것을 주코스타리카대사관에 지시함.**

2. **주코스타리카대사대리는 1975.3.17. 상기 주재국 인사의 방한추진 관련 3.13. 및 3.17. Roman 외무차관을 접촉한 결과, 하기 요지의 주재국 측 통고를 접수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Facio 외상은 3월말 제네바 해양법회의 참석 후 체코 및 루마니아를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으로 금차 방한은 불가능
   - Roman 차관 자신이 부인 동반, 5.20.경 방한을 위해 출발 예정

3. **외무부는 1975.3.19. 노신영 외무부차관 명의의 Victor Hugo Roman 외무차관 앞 초청장을 전달할 것을 주코스타리카대사관에 지시함.**

4.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75.5.6. Roman 차관을 면담하고 북한사절단의 주재국 입국 시도에 대해 동 차관 자신의 관심으로 거절 조치를 내린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 동 차관은 5월말로 연기된 중미카리브 상선단 설립회의를 자신이 주재해야 하므로 자신의 방한을 약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동 방한에 대해 이미 대통령, 외상의 재가를 받고 관보에도 게재되었다고 언급함.

5. **주코스타리카대사는 Roman 차관의 요청으로 5.21. 동인을 면담하고 1975.6.24.~30. 방한일정을 확정했음을 1975.5.27.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차관의 제29차 유엔총회 때의 공로를 감안, 서훈 등을 건의함.**
   - 외무부는 6.14. 동 차관에 대한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을 총무처에 추천

6. **1975.6월 외무부 미주국에서 작성한 Roman 차관 내외의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차관 방문, KIST 방문,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외무부장관 예방, 코트라 방문(6.25.), 판문점 등 시찰(6.26.), 국무총리 예방(훈장 수여), 부산 향발(6.27.), 부산, 울산산업시찰(6.28.), 외무부 주최 만찬(6.29.)

Bozanga, Simon-Narcisse 중앙아프리카 외무차관 방한, 1975.11.3.-7.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91 / 23 / 1-97

Simon-Narcisse Ozanga 중앙아프리카 외무차관이 1975.11.3.~7. 방한함.

1.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1975.9.6. Bozanga 중앙아 외무차관이 9.4. 주중앙아 장 참사관을 초치, 자신의 11월중 방한 의사를 표명하는 긴급 공식서한을 수교하였음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본건은 작년 9월 당시 외무차관이 방일하는 기회에 한국도 방문할 것을 희망하여 정식 초청(항공료, 체재비 등 한국 측 부담)한 바 있었으나, 동 차관의 경질로 실현을 보지 못했음.
- Bozanga 외무차관은 9.4. 주중앙아 일본대사 및 대만(구 자유중국)대사대리를 초치, 동국 방문을 희망하는 공식서한을 수교
- 주중앙아 일본대사에 의하면 10.20.경 출발, 약 10일간의 체재예정으로 동 차관의 방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며, 주중앙아 대만대사관도 작년 초청을 다시 되살려 방일하는 기회에 대만을 방문하도록 대만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함.
- 한국 측이 이미 주재국 외무차관을 정식 초청한 바 있고 또한 주재국은 최근 리마 및 유엔에서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감안, 작년과 같은 조건으로 금년 11월초 방한을 건의

2. 외무부는 1975.9.18. 주중앙아프리카대사에게 동 차관을 체재비 등 한국 측 부담조건으로 방한 초청할 것을 지시함.

3.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차관, 외무부장관 예방, 실무자회의(경협관계 협의),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11.4.), 판문점 등 시찰, 부산 향발(11.5.), 부산·울산 산업시찰, 서울 향발(11.6.)

4. 1975.11.4. 개최된 한·중앙아프리카 실무자회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참석자
  - 중앙아프리카 측: 상기 외무차관 및 주한 중앙아프리카대사
  - 한국 측: 신기흠 아중동국장 등
- 회의 주요요지
  - 한국 측은 농업기술자 1명이 중앙아프리카에서 대두 시험재배중임을 설명하고 새마을 시찰을 위한 '보카사 운동' 지도자 방한 제의
  - 중앙아프리카 측은 한국 측의 원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회부문협조(수해복구를 위한 토목기사 파견 등)를 희망하고 문화협정 체결 및 혼성위원회 소집 필요성 강조

75-0369

Castaneda Comejo, Ricardo Guillermo 엘살바도르 외무차관 방한, 1975.3.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1 / 24 / 1-41

Ricardo Guillermo Castaneda Comejo 엘살바도르 외상이 1975.3.2.~4. 방한함.

1. 외무부는 1975.1.17. Castaneda 엘살바도르 외상이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을 전후하여 한국도 방문하도록 교섭할 것을 주멕시코대사관에 지시하고 초청장이 필요하다면 외무부차관 명의로 작성, 송부할 예정임을 통보함.

2. 주멕시코대사는 1975.1.28. 엘살바도르 외무성 의전장과 통화한 결과, 동 외상이 외국 출장중이므로 귀국 즉시 방한여부에 관해 결정 통보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75.2.10. Beneke 주한 엘살바도르대사(일본 상주)가 1975.2.9.~10. 방한중 미주국장과의 면담시 Castaneda 외상이 1975.3.2.~4. 방한할 것이라면서 자신도 수행예정이며, 중미경제사절단은 예정대로 1975.3.4.~8. 방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음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함.

4. 주멕시코대사관은 1975.2.19. Castaneda 차관이 동경 주재 주한 엘살바도르대사를 대동, 3.2. 서울 도착, 3.4. 뉴욕 향발한다고 하며 동 차관은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초청서한에 대해 수락 회신을 보내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5. Castaneda 차관의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경복궁 등 관람, 주한 엘살바도르명예총영사 주최 만찬(3.2.), 외무부차관 예방, 상공부장관 예방, 코트라 방문,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국무총리 예방, 산업시찰, 외무차관보 주최 만찬(3.3.)

Okumba D'okwatsegue, El Konighi 가봉 외무장관 방한, 1975.4.13.-18.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의전1
MF번호	C-92 / 1 / 1-259

El Konighi Okumba D'okwatsegue 가봉 외상이 1975.4.13.~18. 방한함.

1. 주가봉대사는 1974.9.11. 정무협의차 일시귀국중인 주유엔 가봉대사가 동일 Okumba 외상과 자신이 명년 2월에 함께 방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가봉대사는 1975.1.10. Okumba 외상을 1.9. 방문, 유엔총회에서 주재국의 적극 지지에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동 외상은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는 봉고 가봉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형제국으로 당연한 일이라면서 자신의 방한 시기는 1975.3.10.~20.이 좋겠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가봉대사는 1975.3.3. Okumba 외상과의 조찬 시 동 외상이 봉고 대통령의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금년에 쿠바대사관 설치에 이어 머지않아 북한대사관도 설치될 것이나 가봉은 언제나 한국 편임을 믿어달라면서 자신의 방한시기로 1975.4.11.~20.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가봉대사는 3.27. 동 외상은 3.26. 봉고 대통령 주재 각의에서 자신의 방한 건이 승인되어 되었다면서 방한일자가 1975.4.13.~18.로 정해졌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외상에 대한 서훈 및 명예학위 수여 등을 건의
   - 외무부는 3.28. 동 외상의 방한을 환영함을 주가봉대사관에 통보

4. 동 외상(부인동반)의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수행원: Adande 외무차관 등 8명
   - 외무부장관 예방, 국무총리 예방, 전방시찰,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4.14.), 국립묘지 헌화, 서울시장 예방(행운의 열쇠 증정),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및 오찬, 대통령 예방(훈장 수여), 주한 가봉대사 주최 리셉션(4.15.), 부산, 울산산업시찰(4.16.), 경희대학교 방문(학위 수여), 외무부장관 방문 및 협정 서명, 기자회견, 외무부장관 주최 비공식만찬(4.17.)

5. 1975.4.18. 양국 외상 간 서명된 공동성명서의 한국문제 관련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장관은 Okumba 외상에게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에 관해 설명했으며, 동 외상은 한국문제에 관한 가봉 정부의 기본입장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한국의 정당한 입장을 유엔에서 계속 전폭 지지할 것임을 확언

75-0371

Wills, Fred R. 가이아나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6-101 / 5 / 1-16

1975~76년 중 Fred R. Wills 가이아나 외상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5.12.12. Fred Wills 가이아나 외상의 방한 희망에 대해서는 이미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10.3.)한 바 있고, 동 외상의 방한을 위해 가이아나 정부가 승인하였으므로 동 외상이 내년 일본, 중국, 북한 방문기회에 한국 방문을 주가이아나대사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지시함.

2.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75.12.16. 대가이아나 외교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정부는 가이아나 정부의 중립적 태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제29차 유엔총회시 한국안 기권, 북한안 지지로부터 제30차 유엔총회 시 한국안 반대, 북한안 지지로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반비례하며 동국의 태도가 악화
- 가이아나는 국가목표를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두고 공산국가는 아니나 수상 이하 동무(comrade)라고 호칭하고 있을 정도로 좌경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동맹국가중에도 좌파에 속하면서 중국(구 중공), 쿠바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중국의 대가이아나 영향력에 편승하여 북한은 가이아나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금년 유엔총회를 앞두고 경제협력(250만~350만 달러)을 제공함으로써 외교목표 달성에 성공
- 이러한 사정하에서 한국이 가이아나의 태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쿠바, 북한 등의 연합된 경제원조를 능가할 정도의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해야 가능성이 있으나 그와 같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
- 따라서 Wills 외상의 방한으로 가이아나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3. 외무부는 1976.5.29. Wills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이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명의로 전달되어 있으므로 절차상 장관 명의로 초청장을 재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 주유엔대사의 건의를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전달함.

4. 외무부는 1976.6.2. Wills 외상 방한추진에 대해 주베네수엘라대사의 아래와 같은 건의 내용을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함.

- 현 단계에서는 방한 실현성이 없으며, 가이아나 정부의 급진사회주의노선, 비동맹국과의 유대강화 고수 및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립입장 고수로 방한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Pineda Milla, Ricardo Arturo 온두라스 외무차관 방한, 1975.6.27.-7.1.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2 / 2 / 1-50

Ricardo Arturo Pineda Milla 온두라스 외무차관이 1975.6.27.~7.1. 방한함.

1. 주멕시코대사는 1975.6.13. Pineda 온두라스 외무차관이 부인동반, 1975.6.18.~21. 방한할 것을 통보하여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하고 우선 현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수교할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6.13. Pineda 차관 내외의 항공권을 대사관에서 구입, 전달할 것을 주멕시코대사에게 지시
- 주멕시코대사는 6.16. 동 차관은 사정에 의해 방한을 연기, 6.27. 서울 도착하는 일정을 요청해 왔으며 약 5일간 체한 후 일본 및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 미주국은 1975.6.18. 정부 초청으로 1975.6.27.~7.1. 방한하는 Pineda 외무차관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요청을 의전실에 통보하고 주선을 요청함.

- 동 차관은 제29차 유엔총회 시 온두라스 외상서리로서 한국입장을 지지하도록 주유엔 온두라스 대사에게 훈령, 한국안에 찬성
-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온두라스 접근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온두라스 정부내 친한세력 확보 긴요 등

3. 동 차관의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차관 방문, 외무부장관 예방(6.27.), 코트라 방문, 판문점 시찰,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6.28.), 국립박물관 등 관람, 주한 온두라스명예영사 주최 만찬(6.29.), 국무총리 예방(훈장 수여), 산업시찰, 외무부 주최 만찬(6.30.)

4. 외무부는 1975.7.8. Pineda 차관의 방한중 주요인사 면담시 발언요지를 주멕시코대사관에 함.

- 6.27. 노신영 외무부차관 면담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전통적으로 지지한 온두라스의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금추 유엔총회에 제출될 서방 측 결의안에 단순한 지지뿐만 아니라 공동제안국이 되도록 요청한데 대해 귀국 즉시 자국 외상 및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75-0373

Brutus, Edner 아이티 외무장관 방한, 1975.9.9.-12.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남미/ 의전
MF번호	C-92 / 3 / 1-178

Edner Brutus 아이티 외상이 1975.9.9.~12. 방한함.

1. 1975.9.12. 외무부 작성 Brutus 아이티 외상 방한(1975.9.9.~12.)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아이티 외상회담(9.10.) 요지

- (유엔 문제) 아이티 측은 종래와 같이 계속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한국 측은 금년에도 변함없이 한국 측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되어준데 대해 사의 표명
- (한반도 정세) 한국 측이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한데 대해 아이티 측은 현 한반도 정세분석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면서 하나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협상에 의한 평화적통일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기도하는 무력통일정책으로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자신의 무력통일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
- (양국간 협력문제) 아이티 측은 현재 자국내에 대만(구 자유중국) 및 이스라엘에서 농업기술 지도단이 와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도 농업분야 또는 경공업분야에서 기술지도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데 대해 한국 측은 상호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력증진이 바람직하며 우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이티 연수생(방직분야 또는 수산분야) 1~2명을 한국에 초청 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

● 공동코뮤니케(9.12.) 내용중 유엔 관련사항 요지

- 양 외무장관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하여도 협의하였으며, 아이티 외상은 유엔에서의 한국입장에 대한 아이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
-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아이티 정부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여 준데 대해 한국 정부의 사의표명

2. Brutus 아이티 외무장관(부인동반)의 주요 방한 일정 등은 아래와 같음.

● 수행원

- Hyppolite 아이티 외무성 의전장(부인 동반) 및 Anglade 주아이티 한국명예총영사(부인동반)

● 주요일정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 여사 묘소 헌화, 외무부장관 방문, 국무총리 예방, 대통령 예방(훈장 수여), 외무부장관내외 주최 만찬(9.10.), 경희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수여, 산업시찰 및 경복궁 등 관람(9.11.)

도오고오 후미히꼬(東鄕文彦)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975.10.7.-1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92 / 4 / 1-33

도고 후미히코(東鄕文彦) 전 일본 외무차관이 1975.10.7.~11. 방한함.

1. 외무부 아주국은 1975.10.1. 도고 후미히코 전 일본 외무차관(주미국 일본대사 내정)이 부인을 동반하여 10.7.부터 약 4박 예정으로 비공식 방한을 희망하고 있어 외무부차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 발송 예정임을 의전실에 통보하고 동인의 체한기간 중 국무총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10.2. 도고 전 차관에 대한 노신영 외무부차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 전달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3. 외무부는 1975.10.7. 도고 전 차관 내외의 하기 방한일정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차관 내외 주최 만찬(10.7.), 제2땅굴 시찰, 니시야마 주한 일본대사 주최 만찬(10.8.), 속리산 시찰,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 주최 만찬(10.9.), 외무부차관 예방, 국무총리 예방(신청중), 시내 관광(10.10.)

75-0375

미야자와 기이찌(宮澤喜一) 일본 외상 방한, 1975.7.23.-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92 / 5 / 1-264

1. 외무부는 1975.7.24. 미야자와 일본 외상의 주요 방한일정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외무부장관 예방 및 한·일본 외상회의, 주한 일본대사 주최 리셉션,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7.23.),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대통령 예방, 기자회견, 외무부장관에 대한 이한 예방

2. 외무부는 1975.8.14.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외상회의 종합보고 자료를 주일본 대사관 등에 송부한바, 동 외상회의 종합평가 및 전망에 관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분위기

- 금번 한·일본 외상회의는 양국간의 특정 현안문제 해결을 교섭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금후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어떠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인지에 대한 기본문제의 토의가 그 목적이었고, 특히 미키 일본 수상의 8월초 방미와 관련,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한국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정리가 중요 의제였음.

● 주요 성과

- 금번 회의는 양국이 과거 불행한 일들을 씻고 높은 차원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
- 일본 측은 현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국 측의 분석결과와 입장을 경청한 후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인식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8월 미국·일본 정상회담에 임할 뜻을 표명
- 한국 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문제가 처음으로 양국간에 공식 논의된바, 실제 적용은 제반 사정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될 것이나 동 문제가 공식 논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있음.
- 상기 관련, 미야자와 외상은 이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서는 헌법상 제약 때문에 양국간에 미국·일본 및 한·미국 간에서와 같은 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정책결정의 기본요인의 하나로 삼을 것임을 천명
- 일본 측은 대북한 경제교류 및 조총련 규제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할 뜻을 시사하고, 한·일본 대륙붕협정 비준안을 차기 국회회기중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

● 금후 한·일본 관계 전망

- 금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수뇌들의 격의 없는 대화의 기회가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제8차 각료회의도 9월중 무난히 개최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측으로서는 헌법상 제약과 국내정치 정세 때문에 양국간 안보협력이라는 개념을 표면화 시키기 곤란한 입장이므로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증진이라는 형식으로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Sapena-Pastor, Raul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1975.7.28.-31.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남미/의전1
MF번호 C-92 / 6 / 1-161

Raul Sapena Pastor 파라과이 외상이 1975.7.28.~31. 방한함.

1. 1975.7.31. 외무부에서 작성한 Raul Sapena Pastor 파라과이 외상과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회담(1975.7.28.) 내용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파라과이 대통령 방한 문제
- 파라과이 대통령의 금년 9월경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는 의향을 주일본 파라과이대사(한국 겸임)가 주일본대사관에 전달한데 대해 한국 측은 한국 대통령의 형편이 어떨지 지금 말할 수 없으나 파라과이 대통령의 대만 방문이 확정되면 알려주기 바란다고 입장 표명

● 주파라과이 상주대사관 설치문제
- 한국 측은 몇년전 파라과이 측에 알린 바 있는 주파라과이 상주대사관을 금년에는 실현시킬 계획임을 통보한데 대해 파라과이 측은 이를 환영하고 상주대사관 설치는 양국간 관계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유엔문제
- 한국 측은 파라과이 정부가 유엔에서 계속 한국입장을 지지해 주고 금년 제30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한국 측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되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바, 파라과이 측은 양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

● 과학기술협정 체결
- 파라과이 측이 제의한 동 협정 체결에 관해 금번 파라과이 외상 방한 중 동 협정을 서명하고, 또한 문화협정 비준서를 교환

● 혼성위원회 설치
- 파라과이 측은 통상,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민간 포함)들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시로 회합하도록 제의한데 대해 한국 측은 이에 동의하고 동 외상의 방한중 각서교환 형식으로 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2. 주요 방한일정

● 주요 방한일정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외무부장관 방문, 서울시장 예방, KIST 방문,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7.28.), 국회의장 예방, 국무총리 예방 및 오찬, 연세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 국회의장 주최 만찬(7.29.), 부산, 울산 산업시찰, 파라과이 외상 주최 만찬(7.30.)

75-0377

Collantes, Manuel 필리핀 외무차관 방한, 1975.12.15.-18.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92 / 7 / 1-83

Manuel Collantes 필리핀 외무차관이 1975.12.15.~18. 방한함.

1. 외무부는 1974.6.5. 주한 필리핀대사를 통해 노신영 외무부차관 명의의 Manuel Collantes 필리핀 외무차관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였음을 주필리핀대사관에 통보함.

- Collantes 차관은 6.10. 노신영 차관 앞 답신을 통해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명하고 금후 12개월간 바쁜 업무로 방한이 어려움을 설명

2. 주필리핀대사관은 1975.12.2. Collantes 차관이 1975.12.15.~17. 방한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 차관에 대한 경희대학교의 박사학위 수여계획이 1974년초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동 차관의 업무사정으로 지연되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2.4. 동 방한에 이의 없음을 주필리핀대사관에 통보

3. 주요 방한일정

- 국립묘지 헌화, 외무부차관 방문, 외무부장관 예방, 국회 외무위원장 예방 및 오찬, 새마을 시찰,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12.16.), 경희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 판문점 시찰, ASPAC Cutural and Social Center 주최 리셉션(12.17.), 외무부차관에 대한 이한 예방

4. 노신영 차관의 Collantes 차관과의 면담요지

- 한국 측은 필리핀 측이 지난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치열한 남북대결에서 한국에게 협력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 사의표명
- 필리핀 측은 현재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비동맹그룹으로부터 강한 압력이 있었다면서, 특히 비동맹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알제리로 부터 북한입장을 지지하라는 압력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2개의 결의안이 채택된데 대한 앞으로의 동향에 관심 표명

De la Flor Valle, Miguel 페루 외상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2 / 8 / 1-20

1974~75년 중 Miguel De la Flor Valle 페루 외상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5.2.14. 외무부장관이 작년 제29차 유엔총회 참석 시 방한 초청한 바 있는 De la Flor 페루 외상에 대한 초청장을 주페루대사관에 송부하고 전달할 것을 지시함.**
   - 주페루대사관은 2.21. 동 외상에 대하여는 1973년부터 방한 초청을 하고 있으나 동 외상의 금년중 방한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초청장을 송부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
     - 동 외상은 2.14. 주페루대사 면담시 인도 및 태국으로부터도 초청을 받고 있다면서 동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한국도 방문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
   - 외무부는 3.5. 동 외상에 대한 초청장은 이미 송부하였음을 주페루대사관에 통보

2. **주페루대사관은 1975.7.10. De la Flor 외상이 일본 경유, 비동맹국 순방을 위해 7.11.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재국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동 외상은 광업동력장관 및 상무장관과 함께 일본, 스웨덴, 이집트 및 알제리를 순방할 예정이라고 하며 현지 주재 일본대사도 동 외상이 일본 방문 후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75.7.11. 상기 사실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페루에 대하여는 동국 수도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외상회의(1975.8.25.~29.) 및 금추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집중적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동 외상 일행의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하기 사항을 조치할 것을 지시함.**
   - 일본 외무성 측의 페루 외상 면담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비동맹 외상회의 및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고 협조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외무성 당국과 교섭 등

4. **주페루대사관은 1975.7.11. 주재국 외상비서실에 의하면 동 외상이 1975.7.12.~15.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5. **주페루대사관은 1975.11.16. De la Flor 외상 방문 추진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재국 외무성 정무국장에 의하면 동 외상이 명년 1.15.이후 아세안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 방문국중에는 한국도 포함시킬 것을 동 국장 자신이 건의하고 있다고 함.
   - 풍문에 의하면 동 외상(현역 군인)이 상기 아세안지역 방문 후 민간인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설도 있으므로 동 외상의 거취문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때까지는 한국 방문 추진교섭을 신중히 검토 후 건의할 예정

75-0379

Garcia Bedoya, Carlos 페루 외무차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미
MF번호	C-92 / 9 / 1-10

Carlos Garcia Bedoya 페루 외무차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페루대사는 1975.6.17. 비동맹 가입문제 관련 동일 Bedoya 주재국 외무차관 면담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하고, Bedoya 차관 내외에 대한 노신영 외무부차관 명의의 방한 초청장 전달을 건의함.**
   - 동 대사는 노신영 차관의 주재국 방문시 De la Flor 외상이 약속한대로 남북한의 가입신청이 동등하게 취급되기 위하여는 주유엔 페루대사가 6.18.경 계속되는 조정위 대사급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신청을 외상회의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도록 훈령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
   - Bedoya 차관은 한국의 요청을 잘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금일 주유엔 페루대사와 연락해 현지 동향을 알아보겠다면서 북한이 한국보다 한걸음 앞서 비동맹그룹에 진출하여 북한의 비동맹 가입신청을 리마 외상회의 의제에 상정하도록 이미 기정사실화시킨 것이 현재의 상태이나, 한국입장 동조국가를 포함한 중요 조정위 국가들과 접촉하는 한편, 남북한의 동등대우를 위해 페루가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검토한 후 페루 정부의 입장을 알려줄 것임을 언급
     - 이에 대해 동 대사는 남북한에 대한 동등취급을 위해 한국의 가입신청이 리마 외상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므로 페루의 적극적인 지지 발언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을 역설

2. **외무부는 1975.6.27. 노신영 차관이 페루 방문 중 구두로 방한 초청한 바 있는 Bedoya 차관에 대한 초청장을 주페루대사관에 송부하고, 동 차관의 방한이 연내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함.**

Nsekalije, Aloys 르완다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92 / 10 / 1-41

1973~75년 중 Aloys Nsekalije 르완다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르완다대사관은 1973.12.11. Nsekalije 외상 방한추진과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1972.8월 동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정식 방한 초청장이 전달된 이후 방한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르완다 측이 4개 원조안에 대한 한국 측의 확정 회답을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1973.7.5. 군사 쿠데타로 신정권을 수립
   - 르완다 제2공화국 발족 후 동 외상과 비공식적으로 방한 가능성을 타진하여 오던 중 르완다 재무장관 주최 리셉션에서 동 외상은 정식 초청서한을 보내주면 방한 가능시기로 5월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2. **외무부는 1973.12.31. Nsekalije 외상을 외무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르완다대사대리에게 통보하고 이에 관한 공식서한을 작성, 동 외상에게 수교할 것을 지시함.**

3. **주르완다대사대리는 1974.1.10. Nsekalije 외상을 동일 방문, 동 대사대리 명의 서한을 전달한데 대해 동 외상은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회답하여 줄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유엔대사는 1974.4.19. Nsekalije 외상과 동일 접촉했으며 동 외상은 방한 초청에 감사한다면서 자국 대통령의 허가를 얻는 대로 주르완다대사대리와 연락, 상호 편리한 시일을 정해 방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5.1. 상기 내용을 주르완다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외상의 방한 조기 실현을 촉구할 것을 지시

5. **주르완다대사대리는 1974.8.19. Nkarukiyintwali 르완다 외무차관을 면담, Nsekalije 외상의 8.20. 북경 방문 기회에 평양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한국 측이 동 외상을 초청한지가 오래됨에도 불구, 평양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순서가 옳지 않다고 한데 대해 동 차관은 하기 요지로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중국(구 중공)으로부터는 외교관계 수립 시부터 초청되었고 북한으로부터도 수교사절단이 방문했을 때부터 초청되었으므로 한국 정부보다 먼저 초청되어 있는 것인바, 극동지역이 원거리 이므로 북경을 가는 길에 평양도 방문하게 된 것으로, 기회를 내어 꼭 방한할 것임.

6. **외무부는 1975.3.20. 및 3.24. 각각 내부건의를 통해 4월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르완다 방문시 르완다 외무차관 및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함.**

75-0381

Chatichai Choonhavan(챠차이 춘하완) 태국 외무장관 방한, 1975.11.30.-1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92 / 11 / 1-169

Chatichai Choonhavan(챠차이 춘하완) 태국 외상(부인 동반)이 1975.11.30.~12.3.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외무부장관 방문, 서울시장 예방(행운의 열쇠 증정), KIST 시찰,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12.1.),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및 오찬, 고려대학교 명예학위 수여, 주한 태국대사 내외 주최 리셉션 및 만찬(12.2.)

2. 1975.12.3. 외무부 작성 한·태국 외상 간의 공동성명 발표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임.

-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Chatichai 외상이 1975.11.30.~12.3. 방한하였으며, 양국 외상은 12.1. 및 12.3. 2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최근 지역내 사태발전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관계증진을 위한 제반 방안을 검토
- 양국 외상은 12.3.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는바, 동 성명서에서 특히 태국 측은 한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정책을 확인하고 양측은 아시아국가 간의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협의하기로 합의
- 양측은 통상, 경제, 기술 및 민간항공분야와 이중과세방지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력을 가일층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전문가들로 하여금 비료생산분야의 각종 기술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게 하기로 합의 등

3. 1975.12.1. 김동조 장관과 Chatichai 외상 면담요록 중 아세안 및 Asian Forum 관련 내용의 요지임.

- (아세안 기구에의 참여문제) 한국 측은 필리핀 외상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아세안 기구에 옵서버나 기타의 자격으로라도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한데 대해 태국 측은 아세안은 현재 5개 회원국 외에 인도차이나 4개국과 미얀마(구 버마)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한국의 참여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함.
- (Asian Forum) 태국 측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동 포럼 구상을 지지하나 이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이 참가하겠다고 할까 두려우며 중국(구 중공)도 문제임을 지적한데 대해 한국 측도 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그룹을 재편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언급
- (ASPAC 사회문화센터) 한국 측은 동 센터가 정치색이 없는 기구임을 들어 태국의 계속 참여를 요청한데 대해 태국 측은 호주, 뉴질랜드가 탈퇴하고, 대만(구 자유중국)은 탈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답을 피함.

Zerbo, Saye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외무장관 방한 계획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92 / 12 / 1-11

1974~75년 중 Saye Zerbo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외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4.2.28. Saye Zerbo 부르키나파소 신임 외상을 방한 초청하고자 함을 주부르키나파소 대사관에 통보하고 방한 의사를 사전 타진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975.4.2. 내부건의를 통해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Zerbo 외상에게 방한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결정함.**
   - 동 외상 방한 초청 경위
     - 동 외상은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접하고 1974.7월 주부르키나파소대사대리에게 방한 의사 피력
     - 금추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동 외상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방한할 수 있도록 초청장 발송

3.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1975.6.30. Zerbo 외상을 동일 면담한 계기에 한국 정부가 동 외상의 조기 방한에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설명하고 의사를 타진한바, 동 외상은 연내에 방한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검토하여 회답하겠다고 함.**
   - 동 대사가 비동맹회의 관련 한국의 가입에 관한 주재국 측의 지지 입장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제 동 문제가 리마회의로 옮겨진 이상 한국가입 실현을 위해 주재국 측이 여타 국가에 대한 협조도 바란다고 한데 대해 동 외상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임.

75-0383

Mohamed Abdul Kader HATEM 이집트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전 부수상 및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92 / 13 / 1-153

1975년 중 Mohamed Abdul Kadel Hatem 이집트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75.3.18. 국가 장기발전계획을 담당하는 National Council 사무총장(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 Abdul Kadel Hatem 박사의 방한추진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총영사는 북한이 4.15. 예정된 김일성 생일잔치에 Hatem 사무총장 일행을 초청하는데 성공한 것을 알고 동인의 측근인 Munir 박사의 주선에 따라 3.17. 동 사무총장을 면담, 방한을 요청한데 대해 동인은 Munir 박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해 달라고 언급
   - Munir 박사와 협의한 결과, Hatem 박사 외 5명은 4.15. 이전 방북 후 방콕에서 한국 입국비자를 받아 방한할 예정으로 동 방한사실이 일반에게 보도되지 않을 것을 절대조건으로 하며 동 일행에 대한 방콕-서울, 서울-뉴욕 등 경유지-카이로 일등 항공권 등의 부담을 요망

2. **외무부는 1975.3.22. 동 일행의 방한에 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주카이로총영사관에 지시함.**

3. **주카이로총영사는 1975.4.4. Munir 박사에 의하면 동 일행의 평양 방문이 1개월간 연기되어, 5.10.경 카이로 출발, 평양에서 약 1주일간 체류할 예정으로 방한시기도 5.23.전후가 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 주카이로총영사는 4.15. 이집트 대통령은 대통령특별보좌관제도를 폐지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동 총영사는 4.17. Hatem 박사는 4.16. National Council 사무총장(종전에는 의장)으로 재임명 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

4. **주카이로총영사는 1975.4.26. Hatem 사무총장 일행 6명을 관저에 초청, 만찬을 개최하였으며 동 일행은 홍콩 경유 5.18.경 방한할 예정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서울-카이로 간 1등항공료 등을 주홍콩총영사관에서 Munir 박사에게 직접 수교할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5.10. 주홍콩총영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였음을 주카이로총영사에게 통보

5. **주홍콩총영사는 1975.5.18. Munir 박사 등과의 7.17. 및 18. 접촉결과와 관찰을 하기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Munir 박사 측은 Hatem 사무총장 내외가 18일간의 장기여행으로 피로하여 금번 방한을 연기하여 10월중 한국만을 방문하기로 하고 주카이로총영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함.
- 동인들은 북한 및 중국(구 중공)을 방문해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직후에 방한한다는데 대한 심리작용과 방한사실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야기될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방한을 연기하는 것 같음.

7. 외무부는 1975.9.23. Hatem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나 동인의 방한 희망시기인 10월하순에는 외무부장관의 유엔 출장 등으로 분망하므로 금년말 또는 명년초로 연기함이 좋겠다는 입장을 Nasr 일본 주재 아랍연맹대표에게 전달하도록 한 바 있음을 주카이로총영사에 통보함.

75-0384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2 / 14 / 1-49

1975년 중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방한을 추진함.

1. 아르헨티나 상원의원 일행

- 외무부는 1975.4.3. Martiarena 주재국 집권당의 상원 원내총무 및 Cornejo Linares 상하양원 회계감사위원장이 1975.5.15.~6.30. 기간중 한국 측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부부동반 방한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국회사무처에 통보하고 아래 사유를 감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아르헨티나는 북한 상주대사관이 주재하는 대치국이며, 특히 북한은 작년 아르헨티나 상원 유력의원 6명을 초청하는 등 집요한 대의회 접근활동을 전개
- 국회사무처는 4.8.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 명의로 동 상원의원 일행을 1975.6.17.~21. 방한 초청하기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
- 국회사무처는 6.11. 동 상원의원 일행의 방한(1975.6.23.~29.) 관련 외무부장관 예방(6.24.) 및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6.27.) 일정 주선을 외무부에 요청

2. 아르헨티나 하원 Patagonia 개발추진위원장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5.3.13. Adriano Ariani 주재국 하원 Patagonia 개발추진위원장 방한추진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
  - 동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동 대사는 외교단장 직책으로 현지주재 외국대사들을 인솔하여 1975.3.7.~12. Chubut주 등을 시찰하고 이들 각 주에 대한 한국 농업이민 송출문제, 양국간 수산협력 문제 등 협의
  - 동 위원장은 한국과의 제반 협력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을 방문, 관계당국과 구체 협의를 희망하는바, 양국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동인의 주재국 의회에서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 방한 초청을 건의
- 외무부는 4.10. 동 위원장 방한 초청 건에 대해 수산청은 현재 1975년도 유력인사 초청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예산전용을 검토중이라고 함을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통보

Gillet, Roland 벨기에 국회의원 방한, 1975.12.7.-11.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C-92 / 15 / 1-18

Roland Gillet 벨기에 국회의원이 1975.12.7.~11. 방한함.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74.6.8. Gillet 의원의 서울 도착 일정이 6.9. 19:30으로 변경되었으며, 서울 체류기간중 성동구청장과 만나 주재국 볼뤼베 생피에르 구청과의 자매결연 문제를 협의하길 희망하고 사업상 이유로 상공부 당국자와의 면담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
   - 동 의원은 자유진보당 당수, 볼뤼베 생피에르 구청 행정관이며 한국산 섬유수입업자이고 한·벨기에 친선협회 발기인임.

2. 주벨기에대사는 1975.12.3. 주재국 IPU(국제의원연맹) 위원인 Gillet 의원이 동 대사를 12.1. 방문, 1975.12.7.~11. IPU 관계로 방한할 예정으로 외무부 경제차관보, 상공부 상역차관보 및 의류수출조합 상무를 만나 EC(구주공동체) 섬유협상 대상품목의 쿼터 배정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동 의원은 친한파 의원으로서 한국으로부터 셔츠류를 많이 수입

3. 외무부는 1975.12.12. Gillet 의원이 1975.12.7.~11. 방한하여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면담하고 경제차관보와의 만찬 일정 등을 가진바 있음을 주벨기에대사관에 통보

75-0386

콜롬비아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2 / 16 / 1-93

1974~75년 중 콜롬비아 국회의원단이 방한함.

1. Hector Charry Samper 콜롬비아 하원 외무위원장(1975.1.26.~29.)

- 방한 대표단
  - Hector Charry Samper 하원 외무위원장
  - Heraclio Fernandez Sandoval 하원 외무위원
  - Fernando Sanclemente Molina 하원 외무위원
- 주요 방한일정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
  -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 판문점, 한국수출입공단 시찰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2. Gustavo Duque Ramirez 콜롬비아 하원 외무위원회 부위원장(1975.4.28.~5.4.)

- 방한 대표단
  - Gustavo Duque Ramirez 하원 외무위원회 부위원장
  - Eugenio Sanchez 하원 외무위원
  - Maria Victoria Maya 하원 외무위원
  - Ligia Uribe de Gutierrez 하원 외무위원
  - Miguel Duran Ordonez 하원 외무위원
- 주요 방한일정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
  -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 판문점, 포항종합제철, 현대조선소 시찰
  - 코트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3. Hernando Barjuch Martinez 콜롬비아 하원 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및 Miguel Santamaria Devila 재경위원이 1975.5.14.~16. 방한 예정이었으나, Barjuch 부위원장은 주이란대사로 임명되어 방한하지 못하고 Santamaria 의원만 동 기간에 방한함.

Carro Zuniga, Alfonso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방한, 1975.5.28.-6.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C-92 / 17 / 1-101

Alfonso Carro Zuniga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일행이 1975.5.28.~6.2. 방한함.

1. 방한 대표단

- Alfonso Carro Zuniga 국회의장
- Alvaro Suarez Bolanos 국회의원
- Carlos Luis Rodriguez Hernandez 국회의원
- Carlos Manuel Alvarez Murillo 국회의원
- Emiliano Odio Madrigal 국회의원
- Juan de Dios Fernandez Rothe 국회의원
- Carlos Lius Fernandez Fallas 국회의원
- Enrique Motiel Gutierrez 국회의원
- Miguel Angel Quesada Nino 국회의원

2. 방한 경위

- 1975.2월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이 Carro 국회의장 일행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
- 1975.3월 국회사무처가 Carro 국회의장 일행의 방한 초청 의사를 외무부에 통보
- 1975.3월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이 방한 초청장을 코스타리카 측에 전달
- 1975.4월 Carro 국회의장이 방한 초청에 대한 회신을 한국 측에 송부

3.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국회의장, 외무위원장,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코트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 판문점, 한국기계인천공장, 태평양화학, 인천항 시찰
-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민속촌 관람

75-0388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75.9.27.-10.3.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C-92 / 18 / 1-93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75.9.27.~10.3. 방한함.

1. 방한 대표단

- Robert-Andre Vivien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하원의원)
- Claude Roux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부회장(하원의원)
- Pierre de Montesquiou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부회장(하원의원)
- Frederic Gabriel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이사(하원의원)
- Antoine Gissinger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원(하원의원)
- Marc Becam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원(하원의원)
- Danie Garrigue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전문위원

2. 방한 경위

- 1974.3월 주프랑스대사관이 Vivien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에게 한국 측의 방한 초청장 전달
- 1974.11월 Vivien 회장이 1975.9~10월 방한 의사를 주프랑스대사에게 표명
- 1975.6월 한국 측이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의 방한을 위하여 국회의장 명의 프랑스 하원의장 앞 초청서한 송부

3.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 국회의장,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회장, 부산시장 주최 만찬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 판문점, 아주공대, 선경합섬, 현대조선소, 대한알미늄공장 시찰
-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관람
- 프랑스 한국참전 기념탑, 유엔군 묘지 헌화

De Nurville, Couve 프랑스 외무위원장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C-92 / 19 / 1-9

1975년 중 Couve de Nurville 프랑스 국회 외무위원장의 방한을 추진함.

1. **주프랑스대사는 1975.5.16. Couve de Nurville 프랑스 국회 외무위원장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75.5.19. 국회사무처에 한·프랑스 간 우의증진을 위하여 동 위원장을 방한 초청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초청자는 국회의장 또는 외무위원장으로 하고 한국 측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3. **국회사무처는 Couve de Nurville 외무위원장 초청 문제에 대해 1975.5.28.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회신함.**
   - Couve de Nurville 외무위원장 초청 취지에 동감함.
   - 방한 시 외무부의 항공료 부담이 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이 초청하고자 함.
     - 초청자 명의: 김세련 국회외무위원장
     - 피초청자: Couve de Nurville 프랑스 국회 외무의원장
     - 초청기간: 적절한 시기
     - 초청경비: 체재비는 국회에서 부담

75-0390

독일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92 / 20 / 1-82

1973~75년 중 독일 국회의원이 방한함.

1. Hermann Schmitt-Vockenhausen 독일 하원 부의장(1975.1.3.~17.)
   - 방한 목적
     - 서울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참석
   - 주요 방한 일정
     - 학위수여식, 국회의장 면담 및 국회의장 주최 만찬(1.4.)

2. Gerhard Schroeber 독일 하원 외무위원장(1975.5.31.~6.1.)
   - 방한 경위
     -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
   - 방한 일정
     - 국회 측은 방한기간이 주말(토, 일요일)이므로 국회의장 면담 외의 다른 일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전달해 옴.

3. Richard von Weizsacker 독일 하원의원(1975.5.30.~6.2.)
   - 방한 목적
     - WCC(세계교회협의회) 이사자격으로 한국 종교계인사 면담
     - 독일 하원의원자격으로 한·독일 관계 등에 관해 한국 정부 지도층인사 면담
   - 방한 전 주독대사 건의사항
     - Richard von Weizsacker 의원의 국무총리 면담
     - 동 의원을 위한 국무총리 주최 조찬 또는 오찬
     - 동인의 방한일정을 국회의장에게 통보

4. Werner Mertes 독일 하원의원(자민당 원내총무)(1975.9.29.~10.7.)
   - 방한 목적
     - 건국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참석
   - 주요 방한일정
     -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참석
     - 국무총리, 국회의장,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국회의장, 외무위원장, 건국대 총장 주최 만찬
     - 판문점, 포항종합제철, 현대조선소, 한국기계인천공장, 인천항 시찰
     - 국군의 날 행사 참관

Ponce Monroy, Ramiro 과테말라 제1부의장 및 Castillo Valdez, Rafael 외무위원장 방한, 1975.11.16.-1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C-92 / 21 / 1-55

Ramiro Ponce Monroy 과테말라 국회 제1부의장 및 Rafael Castillo Valdez 외무위원장이 1975.11.16.~1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10.7. 주과테말라대사관이 Ponce 과테말라 국회 제1부의장과 Castillo 외무위원장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 양 의원은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1975.11.6.~13.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며, 동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기를 희망
  - Ponce 부의장은 과테말라 시장 등을 역임한 유력 정치인이며, Castillo 외무위원장은 현지 친한단체조직의 중심적 인물
- 1975.10.18. 외무부가 양 의원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과테말라대사관에 통보함.

2. 주요 방한일정

- 11.16.
  - 서울 도착
- 11.17.
  -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예방
  - 국회부의장 주최 만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방문
- 11.18.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 구로공단 시찰
- 11.19.
  - 코트라 방문
  - 서울 출발

75-0392

고다이라 다다시(小平忠) 일본 민사당 부위원장 일행 방한, 1975.7.4.-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92 / 23 / 1-14

고다이라 다다시 일본 민사당 부위원장 일행이 1975.7.4.~6.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 신민당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일본 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2. 방한단(단장)

- 고다이라 다다시 민사당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

3. 주요 방한일정

- 신민당과의 간담회 개최
- 공동기자회견
- 판문점 및 땅굴 시찰
- 공동담화문 작성

4. 공동담화문 요지

- 인도차이나반도에 있어서 월남, 캄보디아의 급격한 적화는 아시아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줌.
- 이러한 사태에 고무된 북한의 무력도발 징후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
- 한반도 정세는 일본의 안전에도 관련되므로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극동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단 방한계획(취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C-92 / 24 / 1-21

1975년 중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단의 방한계획이 취소됨.

1. 일본 외무성은 1975.4.19. 주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초치하여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단의 방한 문제를 극히 비공식적이고 예비적인 타진임을 전제로 제기함.

- 중위원 외무위원회 이사(간사) 약 5명이 4월말부터 5월초에 걸쳐 3~4일간 방한하기를 희망함.
- 방한 목적은 대륙붕협정 심의와 관련된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기 위한 것임.
- 동 방문단은 외무위원회 소속 자민당, 사회당, 공명당 및 민사당의 의원들로 구성될 것임.

2. 외무부는 1975.4.25.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단의 방한에 이의가 없음을 일본 외무성에 통보함.

3. 일본 외무성은 1975.4.26. 주일본대사관에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단의 방한계획이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옴.

- 사회당 측이 동 당 의원들의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알려옴에 따라 자민당이 동 계획을 일단 취소함.
-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일본 외무위원단의 방문 문제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함.

75-0394

Kamal El Assad 레바논 국회의장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92 / 25 / 1-73

1971~75년 중 Kamal El Assad 레바논 국회의장의 방한을 추진함.

1.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가 1971.5월 Kamal El Assad 레바논 국회의장 일행의 방한 초청을 건의하였으나, 국회의 예산 사정으로 진전되지 못함.

2.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2.2월 Kamal El Assad 국회의장 일행의 방한 초청을 재차 건의함.

3. 국회가 1972.5월 백두진 국회의장 명의의 방한 초청장을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를 통하여 레바논 측에 전달하였으나, 10.17. 제8대 국회가 해산됨으로써 Kamal El Assad 국회의장 일행의 방한 초청계획이 중단됨.

4. 국회가 1973.6월 정일권 신임 국회의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를 통하여 레바논 측에 전달함.
   - 이에 대해 레바논 측이 11월 방한 의사를 표명하고, 국회도 11월초 방한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레바논 측에 전달하였으나 진전되지 못함.

5.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4.1월 Kamal El Assad 국회의장 일행의 방한이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6.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4.3월 레바논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Kamal El Assad 국회의장 일행의 방한시기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미국 의회의원 방한.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92 / 26 / 1-319

1975.1~8월 중 미국 의회의원이 방한함.

1. Leo Ryan 하원의원(1975.1.4.~8.)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등 예방

2. Otto Passmam 하원의원(1975.1.9.~11. 및 8.28.~30.)
   - 대통령, 국회의장 등 예방

3. Sam Nunn 상원의원(1975.1.16.~18.)
   -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예방

4. John M. Murphy 하원의원(1975.2.14.~18.)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등 예방

5. Charles E. Wiggins 하원의원(1975.3.9.~12.)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등 예방

6. Mamoru Yamasaki 상원의원(1975.5.17.~20.)
   - 외무부차관, 서울시장 등 예방

7. Edward J. Derwinski 및 Dominick V. Daniels 하원의원(1975.5.25.~27.)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등 예방

8. Dawson Mathis, Thad Cochran, David R. Bowen 하원의원(1975.5.31.~6.3.)
   -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등 예방

9.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의원단(1975.8.8.~11.)
   - Lester Wolff 위원장 등 11명의 의원단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예방

10. Clair W. Burgener, George M.O'Brien, Shirley Pettis 하원의원(1975.8.11.~14.)

-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등 예방

11. Robert Skies 하원의원(1975.8.17.~19.)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예방

12.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 의원단(1975.8.18.~21.)

- Joseph P. Addabbo 의원 등 8명의 의원단
- 대통령, 국회의장 등 예방

13. Paul Findley 하원의원(1975.8.20.~22.)

- 대통령, 국회의장 등 예방

14. Thomas Eagleton 상원의원(1975.8.28.~30.)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예방

한국전쟁 참전 의원단 방한, 1975.10.23.-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93 / 2 / 1-270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의원단이 1975.10.23.~28. 방한함.

1. 방한 목적

-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한정책 전환에 따르는 실정 파악 및 정책자료 수집
- 한국의 한국전 참전 의원단의 방미에 대한 답방

2. 방한단(단장)

- John M. Murphy(단장) 하원의원

3. 주요 방한일정

- 10.24.
  -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한 유엔군 사령부 방문
  - 한미 1군단 및 미 육군 제2사단 방문
  - 참전의원 친목회장 주최 만찬
- 10.25.
  - 국회의장 예방
  - 국방부, 특수전 사령부 및 판문점 방문
  - 미국 참전 기념비 헌화
  - 국회의장 주최 만찬
- 10.27.
  - 경제기획원 방문
  - 대통령 예방

75-0397

Fraser, Donald M. 미국 하원의원 방한, 1975.3.30.-4.2.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
MF번호	C-93 / 3 / 1-77

Donald M. Fraser 미국 하원의원이 1975.3.30.~4.2. 방한함.

1. 방한 목적

-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기구활동분과 위원장인 Fraser 의원이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한 한국의 실정파악을 위해 Boettcher 전문위원, Salzburg 보좌관, Richardson 국무성 의회 연락관을 대동하고 방한함.
  - 미국 민주당 내 자유진보파에 속하는 Fraser 의원은 한국의 인권 문제와 대한국 군사원조에 관하여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옴.

2. 주요 방한일정

- 국회의장 예방 및 만찬
- 국무총리 예방
- 공화당 정책위의장 면담
- 법무부장관 면담
- 김영삼, 김대중, 윤보선 별도 면담

3. 방한 후 소감

- Fraser 의원은 방한 후인 1975.4.8. 주미국대사대리 면담 시 한국 국민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것이 김일성이 노리는 사태를 막는 첩경임을 확신한다고 언급함.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 창립, 1975.12.17.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93 / 4 / 1-14

1. 벨기에·한 의원친선협회가 1975.11.27. 창설됨.

- Rolland Gillet 벨기에 하원의원은 1975.12.8. 김동휘 외무부차관 면담 시 11.27. 개최된 IPU(국제의원연맹) 벨기에 의원협회 총회가 벨기에·한 의원협회의 창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언급함.
  - 회원: 약 40명
  - 회장: Gillet 의원
  - 부회장: Urbain 의원

2.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가 1975.12.17. 창설됨.

- 국회사무처는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가 1975.12.17. 창설되었음을 12.19. 외무부에 알려옴.
  - 회원: 재적 국회의원 전원(총 214인)
- 외무부는 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가 창설되었음을 1976.1.7. 주벨기에대사관에 알리면서 이를 벨기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75-0399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추진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93 / 5 / 1-5

1. 외무부는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추진 문제에 관하여 1974.9.11. 아래와 같이 주카메룬 대사에게 지시함.

- 김용식 특사의 카메룬 방문 시 Muna 카메룬 국회의장은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 구성제의에 대하여 찬성한 바 있으며, 국회 개최 시 정식으로 토의에 회부, 결정하기로 하였다 함.
- 귀하는 동 협회의 구성 및 발족 실현을 위해 귀주재국 당국과 교섭 후 결과 보고바람.

2. 주카메룬대사는 외무부의 지시에 대해 1974.9.14.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본직은 지난 8.20. Muna 국회의장 면담 기회에 김용식 특사가 제의한 카메룬·한 의원친선협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동 국회의장은 카메룬 정기국회가 11월 개원되면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함.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결성, 1975.12.17.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93 / 6 / 1-35

1. 국회는 1973년 이후 한국·이란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추진해 옴.

- 양국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의하는 1973.11.8.자 국회의장의 서한을 주이란대사관을 통해 이란 하원의장에게 전달
-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조기 결성을 위해 1975.2월 한·이란 의원협회 규약(안)을 작성하여 주이란대사관을 통해 이란 측에 전달

2. 주이란대사관은 1975.7월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결성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한·이란 의원협회 규약(안)을 이란의회 당국에 전달하고 조속한 결성을 촉구하여 왔으나, 이란 측 사정, 특히 6.20. 총선 관계로 진전을 보지 못함.
- 본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해 온 Rashti 의원이 금번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동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9.8. 신의회가 개회된 이후 재추진하고자 함.

3. 국회는 1975.12.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의원 전원(214인)을 회원으로 한·이란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함.

- 외무부는 12.23. 한·이란 의원친선협회의 결성을 주이란대사관에 알리면서 이를 이란 국회에 통보하여 이란 측에서도 조속히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함.

75-0401

한·일본 의원 간친회 총회, 제4차. 동경, 1975.1.22.-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93 / 7 / 1-163

제4차 한·일본 의원 간친회 총회가 1975.1.22.~23.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단장)

- 한국 측: 이병희 의원
- 일본 측: 모리 마쓰헤이 의원

2. 공동성명 요지

- 심각한 세계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지역협력기구 형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 8.15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방지책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건이 양국 우호와 안전을 해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일본 국내에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조총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시나 특사 메모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함.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물자로 활용되는 품목의 대북한 수출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함.
- 소련, 중국(구 중공)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한국승인에 앞선 일본의 성급한 대북한 접근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는데 합의함.
- 차기 제5차 총회를 금년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 제1차. 서울, 1975.7.9.-1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93 / 8 / 1-93

제1차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가 1975.7.9.~11. 서울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단장)

- 한국 측: 이병희 의원
- 일본 측: 야마나카 사다노리 의원

2. 공동성명 요지

- 인도차이나 사태는 아시아 자유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것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가 실로 긴박한 실정에 비추어 금후 정세 추이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함.
-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을 기본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방위공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전쟁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
- 한·일본 의원연맹이 주축이 되는 한·미·일 3개국 의원들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차기 제2차 총회를 1976년 조속한 시기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75-0403

한·영국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C-93 / 9 / 1-27

1. 국회는 1974년 이후 한·영국 의원친선협회 임원들의 영국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영국 의회 해산 등의 사유로 성사되지 않음.

- Roberts 영국·한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한·영국 의원친선협회 임원들의 영국 방문 문제를 영국 의회 해산 및 총선에 따라 신의회가 소집된 후 다시 협의할 것을 1974.2.7. 주영국대사관에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국회의 1975년도 외국의원 방한 초청계획에 주영국대사가 건의한 영국의원의 방한 초청을 포함시켜 줄 것을 1975.4월 국회에 요청함.

- 주영국대사는 영국의회 내 친한세력 확대를 위하여 다수의 영국 의회의원을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한 바 있음.

3. 국회는 1975.4.24. 영국의원 방한 초청 문제에 대해 한국 체재비 국회부담 조건으로 1975년도 국회 외빈초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 외무부는 4.25. 이러한 국회의 입장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함.

4. 주영국대사는 1975.5.8. 체재비와 항공료 한국 측 부담 조건으로 영국의원들을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동 대사는 5.7. 영국·한 의원친선협회 회원들을 위한 만찬에서 회원들과 방한 초청 문제를 협의하였는바, 다수 의원들이 항공료 자비부담 조건으로는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5. 외무부는 주영국대사의 건의에 대해 국회와 협의 후, 영국·한 의원친선협회 회원의 방한 초청에 있어서 체재비외 항공료 부담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1975.6.18. 동 대사에게 통보함.

대만(구 중국)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93 / 10 / 1-31

1975년 중 대만(구 자유중국)의 주요인사가 방한함.

1. 장군 총통부 자정

- 1975.7.3.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여 한반도 문제, 동북아 정세, 양국관계 등 협의

2. 국민당사절단

- 단장: 진효의 대만 국민당 부비서장
- 1975.8.25.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양국관계 등 협의
- 동 사절단은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1975.8.20.~25. 방한함.

3. 송시선 청년구국단 집행장

- 1975.9.26.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양국관계, 청년문제 등 협의

4. 왕임원 사법행정부 부장

- 1975.10.15.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양국관계, 중국(구 중공)·소련 분쟁 등 협의
- 10.17.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관계, 공산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새마을운동 등 협의

5. 장언사 교육부장

- 11.10.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양국의 교육정책, 청년교류 등 협의

75-0405

Hernandez Almanzar, Homero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성 유엔국장 방한, 1975.7.19.-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3 / 11 / 1-31

Homero Hernandez Almanzar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성 유엔국장이 1975.7.19.~23.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7.19.
  - 서울 도착
- 7.20.
  - 국립박물관 및 민속촌 방문
- 7.21.
  - 외무부 정무차관보, 방교국장, 미주국장 예방
  - 정무차관보 주최 오찬
  - 코트라 방문
- 7.22.
  - 유엔군 묘지 참배
  - 금성사 및 현대조선소 시찰
- 7.23.
  - 외무부장관 예방
  - 서울 출발

2. 외무부장관 언급사항

-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증진에 만족표명
- 1968년 유엔국장 부임 이래 한국 측 입장을 계속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표명
- 제29차 유엔총회 시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가담하고, 이번에도 가담하도록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표명

Chiriboga, Jorge 에콰도르 외무성 국제경제국장 방한, 1975.11.10.-16.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3 / 12 / 1-25

Jorge Chiriboga 에콰도르 외무성 국제경제국장이 1975.11.10.~16.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예방 및 면담
  - 외무부장관대리, 경제차관보 예방
  - 경제기획원, 건설부 및 상공부 관계관 면담
- 시찰 및 방문
  -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공장, 금성사, 포항종합제철, 쌍용시멘트, 태평양화학, 판문점 시찰
  - 한국과학기술원, 코트라 방문
- 연회
  - 외무부 주최 만찬
  - 건설부차관 및 한일기공 주최 만찬

2. Chiriboga 국장 언급내용

- 동 국장은 금성사, 현대조선소 및 현대자동차공장 시찰 후 한국 전자제품, 중형유조선 및 승용차 수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귀국 후 현안인 한·에콰도르 경제기술협력협정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75-0407

Astacio, Julio E. 엘살바도르 보건장관 및 Vieytez Canãs, Atilio 국가계획청장 방한, 1975.3.27.-3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3 / 13 / 1-14

Julio E. Astacio 엘살바도르 보건장관 및 Atilio Vieytez Canãs 국가계획청장이 1975.3.27.~30.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부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예방
- 보건사회부장관 주최 오찬
- KDI(한국개발원) 방문

2. 주요 면담사항

- 양국간 우호관계증진
- 유엔에서의 지지에 사의표명
- 통상관계: 1975.3.4.~8. 중미경제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과 중미국가 간의 관계증진을 위해 제반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Martin, Claude 프랑스 외무장관 보좌관 방한, 1975.3.21.-2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93 / 14 / 1-15

Claude Martin 프랑스 외무장관 보좌관이 1975.3.21.~25.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3.21.
  - 서울 도착
  - 국립박물관 방문
  - 외무부 구주과장 주최 만찬
- 3.22.
  - 현대조선소, 포항종합제철 시찰
- 3.23.
  - 경주 및 대구 방문
- 3.24.
  - 외무부 연구원장 주최 만찬
- 3.25.
  - 서울 출발

2. Martin 보좌관 언급내용

- 동 보좌관은 자신이 금번 한국 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발전상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외무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함.

75-0409

Soto Reyes, Arturo 온두라스 외무성 의전장 방한, 1975.8.18.-2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3 / 15 / 1-29

Arturo Soto Reyes 온두라스 외무성 의전장이 1975.8.18.~22.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8.18.
  - 서울 도착
- 8.19.
  - 외무부 의전장 면담
  - 외무부 정무차관보 예방
  - 판문점 시찰
  - 외무부 의전장 주최 만찬
- 8.20.
  - 한국과학기술원 방문
- 8.21.
  - 코트라 방문
  - 기아자동차, 선경합섬 시찰
  - 외무부 미주국장 주최 만찬
- 8.22.
  - 서울 출발

2. 주요 면담사항

- 한·온두라스 간 우호관계에 만족표시
- 북한 침투저지를 위한 협조에 감사
- 유엔총회에서 계속적인 지지 요청

Rossi, Agnelo 바티칸 추기경(포교성 장관) 방한, 1975.7.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93 / 16 / 1-12

Agnelo Rossi 바티칸 추기경(포교성 장관)이 1975.7.15.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 천주교 방문 및 천주교 관계자 세미나 참석

2.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3. 주요 면담사항

- 국내 종교인 문제
  - 지학순 주교: 헌법 및 정부비방, 반정부단체 지원
  - 김지하: 헌법 및 정부비방, 반정부단체 조직 지원
  - Synott 신부 등의 강제출국 이유: 입국목적(선교활동)과 다른 반정부 활동

75-0411

Naseri, Freydoon 이란 노동성차관 방한, 1975.1.9.-12.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93 / 17 / 1-37

Freydoon Naseri 이란 노동성차관이 1975.1.9.~12.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으로부터의 기술인력 도입 가능성 조사

2. 주요 방한일정

- 예방 및 면담
  - 외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예방
  - 외무부차관, 노동청장, 상공회의소장, 한국해외개발공사이사장 면담
- 시찰
  - 중앙직업훈련원
  - 인천항
  - 경인고속도로
  - 한국기계공업 인천공장

3. 주요 협의내용

- 주한 이란상주대사관 설치 문제
  - 한국 측이 주한 이란상주대사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
  - Naseri 차관은 한국 측 의사를 본국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
- 한·이란 노동협정 체결 문제
  - 동 차관은 노동협정 체결 필요성을 인정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는데 동의
- 한국인력수입 문제
  - 동 차관은 자국 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일부를 한국에서 모집할 것을 희망
  - 동 차관은 노동협정 체결 전에라도 한국 인력수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 천명

일본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C-93 / 18 / 1-66

1975년 중 일본 주요인사가 방한함.

1. 외무부는 1975.6월 사카이 도키다다 일본 효고현 지사의 방한을 추진함.

- 방한 추진배경
  - 사카이 도키다다 지사의 1975.7월 북한 방문 예정 정보에 따라 그 이전에 동인을 초청하기로 결정
- 방한 초청경과
  - 주고베총영사가 1975.6.7. 사카이 도키다다 지사를 예방하고 경기도지사 명의 방한 초청장을 수교
  - 동 지사는 6.20.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하여 업무량 과중으로 당장 임지를 떠날 수 없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1975년 가을 또는 1976년 봄 방한할 것을 희망

2. 오오하시 마사오 일본 와카야마현 지사가 1975.9.2.~5. 방한함.

- 방한 목적과 경위
  - 제주도지사 초청으로 감귤재배, 축산 등 상호 산업육성을 위한 학술 및 기술교류 협의
- 주요 방한일정
  - 무임소장관 예방 및 만찬
  - 외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방문
  - 제주도 감귤재배 현장, 수산 및 축산시험장 시찰

75-0413

Bruce, L.S. 자메이카 수상 개인보좌관 방한, 1975.4.21.-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C-93 / 19 / 1-9

L.S. Bruce 자메이카 수상 개인보좌관이 1975.4.21.~2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4.13.~21. 홍콩에서 개최된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회의 참석 후 방한
- Bruce 보좌관 방한 시 동 회의에 참석한 약 75명의 각국 대표들도 방한

2. Bruce 보좌관 전문분야

- 총무, 예술, 문화, 경제 및 기획분야에서 수상을 보좌하며, 수상의 해외여행 시 수행

3. 주요 방한일정

- 재무부 등 관련기관 방문
- 외무부 정무차관보 주최 만찬

Rookmarker, Jacobus 네덜란드 외무부 아주국장, 1975.1.13.-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C-93 / 20 / 1-25

Jacobus Rookmarker 네덜란드 외무부 아주국장이 1975.1.13.~16. 방한함.

1. 방문 목적

- 한·네덜란드 양국관계 현안문제 협의

2. 주요 방한일정

- 1.13.
  - 서울 도착
  - 외무부 구아국장 주최 만찬
- 1.14.
  -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차관 예방
  -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외무부 방교국장 면담
- 1.15.
  - 판문점 시찰
  - 주한 네덜란드대사 주최 만찬
- 1.16.
  - 서울 출발

75-0415

필리핀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
MF번호	C-93 / 21 / 1-75

1975년 중 필리핀 주요인사가 방한함.

1. Roberto V. Reyes 대통령 비서실 차장(1975.7.2.~5.)

● 주요 방한일정

- 7.2. 서울 도착, 국립묘지 참배, 최규하 대통령특별보좌관 예방
- 7.3. 수원 농촌진흥청 및 선경직물 방문, 대통령 비서실장 및 외무부장관 예방, 최규하 특별보좌관 주최 만찬
- 7.4. 판문점 및 제25사단 시찰, 외무차관 주최 오찬, 국방부장관 예방
- 7.5. 재향군인회 방문 및 오찬, 서울 출발

2. Alejandro Melchor 관방장관(1975.8.25.~27.)

● 주요 방한일정

- 8.25. 서울 도착, 국무총리 및 부총리 예방,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만찬
- 8.26. 포항종합제철 및 울산현대조선소 시찰, 부총리 주최 만찬
- 8.27. 외무부장관 예방, 판문점 시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서울 출발

Abdul Wahab Ahmed Abdul Wassie 사우디아라비아 감사원장 방한, 1975.10.3.-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93 / 22 / 1-46

Abdul Wahab Ahmed Abdul Wassie 사우디아라비아 감사원장이 1975.10.3.~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66년 문교차관 시절 비공식 방한한 바 있음.
- 한국의 급속한 발전상을 전해 듣고 금번 태국, 중국(구 중공) 방문 기회에 재차 방한을 희망함.

2. 주요 방한일정

- 10.3.
  - 서울 도착
- 10.4.
  - 감사원장 및 문교부장관 예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선경합섬 시찰 및 만찬
- 10.5.
  - 문교부장관 주최 만찬
- 10.6.
  -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서울대학 및 이화여자대학 방문, 감사원장 주최 만찬
- 10.7.
  - 총무처장관 및 건설부장관 예방, 서울 출발

75-0417

스리랑카 불교 Malwatte 종정 일행 방한, 1975.6.30.-7.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93 / 23 / 1-125

스리랑카 불교 Malwatte 종단의 종정 일행이 1975.6.30.~7.7. 방한함.

1. 방한초청 목적

- 한·스리랑카 불교계 교류를 통한 양국간의 친선관계 증진
- 스리랑카와의 외교관계 수립 대책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국내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교계 인사 초청

2. 주요 방한일정

- 예방 및 방문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예방
  - 조계종 및 동국대학교 방문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 참석
- 사찰 방문
  - 조계사, 직지사, 범어사, 통도사, 불국사, 도선사 등
- 산업 시찰
  - 부산 금성사, 울산 현대조선 등

Bentley, William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 방한, 1975.12.5.-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C-93 / 24 / 1-24

William Bentley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이 1975.12.5.~9.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12.5.
  - 서울 도착
  - 외무부차관 면담 및 만찬
- 12.6.
  - 공화당 정책위 의장 주최 오찬
  - 주한 미국대사 주최 만찬
- 12.8.
  -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 방문
  - 교통부장관 주최 오찬
  - 대통령 국제정치특별보좌관 면담
  - 주한 일본대사 면담
- 12.9.
  - 신민당 총재 면담
  - 서울 출발

2. Bentley 발언 요지

- 유엔 문제에 관하여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므로 한국과 그 우방이 자리를 같이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
- 중국(구 중공)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모색하는 것만은 틀림없음.
- 중국·소련 분쟁은 한국에 대하여는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소련 양국은 상호 경쟁적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을 견제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음.
- Spey Engine이 중국에 판매되어도 북한 전력증강에는 영향이 없음.

75-0419

Wilford, K. Michael 영국 아주담당차관보 방한, 1975.5.10.-1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C-93 / 25 / 1-34

K. Michael Wilford 영국 외무성 아주담당 차관보가 1975.5.10.~14. 방한함.

1. 방한 경위

- Wilford 차관보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수행하여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을 방문

2. 주요 방한일정

- 5.10.
  - 서울 도착
  - 주한 영국대사 주최 오찬 및 만찬
- 5.11.
  - 지방 시찰
- 5.12.
  - 부총리,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외무부 차관보 면담
  - 한국과학기술원 방문
  -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 5.13.
  - 판문점 시찰
- 5.14.
  - 서울 출발

미국 국무부 동부아시아 및 태평양담당차관보 및 부차관보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93 / 26 / 1-87

1975년 중 미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차관보 및 부차관보가 방한함.

1. Joseph Owen Zurhellen 부차관보(1975.6.22.~27.)
   - 주요 방한일정
     - 6.22. 서울 도착
     - 6.23.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6.24. 국회의장 예방
     - 6.27. 서울 출발

2. Philip C. Habib 차관보(1975.10.23.~24.)
   - 방한 목적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을 수행하여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후 귀로에 방한하여 동 방문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
   - 대통령 예방 및 중국 방문 결과 설명

3. Philip C. Habib 차관보(1975.12.8.~9.)
   - 방한 목적
     - 포드 미국 대통령을 수행하여 중국을 방문한 후 귀로에 방한하여 동 방문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
   - 주요 방한일정
     - 12.8. 서울 도착
     - 12.9. 외무부장관 면담, 대통령 예방, 서울 출발

75-0421

미국 국무부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2010-87 / 20 / 1-9, C-93 / 27 / 1-41

1. C. Maw 미 국무부 안보원조담당차관 및 S. Nunn 미 상원의원이 군원(軍援) 사용실태, 주한미군 현황 및 극동정세 파악을 위해 1975.1.15.~17. 방한함.

- 주한 미국대사관 브리핑,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및 브리핑,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주한 미국대사 주최 만찬(1.16.)
-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 예방 등(1.17.)

2. 조선일보 등 국내언론은 1975.1.11.~17. Maw 차관의 방한 동정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

- Maw 차관 등 일행이 군사원조계획을 재검토하고 한국 정부 및 미국기관 고위관리들과 회담을 위해 방한
- Nunn 상원의원은 주유엔사령부의 장래문제를 포함하여 1976년 미국 회계연도 중 미국 정책 변경을 위한 기초작업을 위해 방한
- 김종필 국무총리는 1.16. 동 차관과 면담하고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비롯한 미국의 대외군원 문제에 관해 협의
  - 김 총리는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더 늦어지지 않고 되도록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배전의 힘을 써주도록 요청
  - 동 차관은 포드 미국 대통령 방한시 약속대로 미국 행정부는 최선을 다해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문제는 국회의 승인을 얻는데 있으며 군원에 대한 국회승인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대외군원에 대한 미국민의 태도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
- 박정희 대통령은 1975.1.17. 방한중인 동 차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함.

3.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975.6.4. 미 NSC(국가안보회의) R. Solomon 및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M. Armacost를 면담함.

- 한·일본 관계에 관한 평가 및 각료회담 개최전망
  - 8.15 사건 이후 양국관계에 긴장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우호관계를 유지, 현재의 분위기는 각료회담을 개최하기에 충분
- 미국·중국 국교정상화 전망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중국(구 중공) 방문 후 1975년내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예정
  - 중국 측은 미국과 국교정상화 강화를 희망하나, 미국 측은 대만 문제로 정치적 접근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
- 한·중국 관계개선 전망
  - 미국은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
- 남북한 힘의 비교 등 의견교환

미국 Georgia주 주지사 및 무역사절단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담당관
MF번호 C-93 / 28 / 1-107

1975년 중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및 무역사절단이 방한함.

1. G. Busbee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일행(1975.10.26.~28.)
   - 대한상공회의소장 주최 만찬(10.26.)
   - 대통령 예방, 한국무역협회장 주최 오찬,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10.27.)
   -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10.28.)

2. 미국 조지아주 무역사절단(1975.11.5.~8.)
   - 단장: Z. Miller 조지아주 부지사
   - 부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상공부 방문 및 간담회(11.6.)
   - 코트라 및 한국무역협회 방문, 산업시찰,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11.7.)
   - 판문점 시찰 및 개별상담(11.8.)

75-0423

Kell, Raymond M. 주Portland(미국) 명예총영사 방한, 1975.2.17.-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93 / 29 / 1-28

Raymond M. Kell 주포틀랜드 명예총영사가 1975.2.17.~23. 방한함.

1. 주요 방한활동

- 경제관계
  - 교통부장관, 해운국장 등 면담, 오레곤주 소재 LASCO 선박회사의 한국선원 고용문제 협의
  - Port of Portland Commission의 한국사무소 개설문제를 한국기업과 협의(1975.10월 동 사무소 개소식 거행 예정)
  - 펄프산업의 대한투자 전망 협의
- 정무관계
  - 오레곤지역 언론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한국문제 세미나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동 계획안을 주미국대사관에 제출
  - Port of Portland Commission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오레곤주 출신 상원의원 또는 주지사 방한초청계획 설명
- 영사관계
  - 한국 정부가 원산지 증명발급 대상품목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 사무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인지

2. 외무부는 1975.2.22. 주미국대사에게 주포틀랜드 명예총영사의 상기 언론인 초청세미나계획에 관해 검토하고, 필요시 경비지원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관해 건의하라고 훈령함.

PuigLanza, Barrett 우루과이 대통령 공보실장 방한, 1975.4.15.-1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93 / 30 / 1-31

B. PuigLanza 우루과이 대통령 공보실장이 1975.4.15.~18. 방한함.

1. 초청 경위

- 주우루과이대사의 건의에 따라 동인이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초청으로 대만 방문계기에 한국측이 방한 초청

2.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예방, 해외공보관장 방문,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한국방송공사 및 중앙매스콤 방문(4.16.)
- 코트라 방문, 판문점 및 기타 산업시찰, 시내관광(4.17.~18.)

3. 외무부장관, PuigLanza 공보실장 면담(4.18.)

- 외무부장관 언급요지
  - 방한 환영
  - 우루과이 양모(羊毛)수입에 관해 적극협조 약속
  - 한·우루과이 간 경제 및 제반분야에서의 관계신장에 만족
  - 국제무대에서 항상 한국 지지에 대해 사의 표명
- 공보실장 언급요지
  - 한국 초청에 사의 표명
  - 양모의 한국수입 확대 희망

75-0425

북한·알제리 관계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6-22 / 2 / 1-22

1972~75년 중 북한·알제리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예술단이 1972.1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피바다 공연

2. 허담 북한 외상이 1973.3.2.~7. 알제리 공식 방문 후 공동성명 발표

3. 1973~74년 북한·알제리 간 문화과학협력의정서 서명

- 양국 국경일에 즈음한 문화주간행사 개최
- 기타 교육, 문화, 공보, 보건, 체육분야 협력 규정

4. 부메디엔 알제리 대통령이 1974.3.3.~5. 북한 방문

- 김일성과 함께 인민대회에 참석, 양인은 연설에서 양국간 유대관계와 향후 협력을 치하하고, 부메디엔 대통령은 한국 재통일 염원을 표명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부메디엔 환영 리셉션(1974.3.4.) 시 김일성 환영사 및 동 대통령 답사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배포

5. 북한·알제리 간 공동성명서

-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만장일치 결의 확인, 제28차 유엔총회에서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결의 환영, 미국·일본 반동세력과 남한 통치자의 국가분열 획책에 의한 긴장고조, 김일성의 5개항 통일방안 지지, 남한으로부터의 유엔군 즉각 철수 및 남한 반동세력의 국제적인 고립 촉진 강조, 남한 국민의 독재에 항거하는 투쟁에 대한 단결 강조 등

6. 허담 북한 제1부수상 겸 외상이 1974.6.3.~4. 알제리 방문

- 김일성 친서를 부메디엔 대통령에게 전달한 뒤, 대통령 면담이 양국간 여러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으며, 방문 성과에 만족한다고 언급

7. 1974.7.6.~12. 수도 알제에서 제3세계 청년회의 개최

- 회의 주제는 반(反)제국주의 청년운동 행동 통일
  - 중앙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한 27개 회원국 선출

8. 1975.9월 알제리 공군사령관 등 군사사절단이 북한 국방장관 초청으로 평양 방문

북한·앙골라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D-19 / 1 / 1-36

1975년 중 북한·앙골라 간의 관계 동향임.

1. 김병호 주이집트 북한대사 일행이 앙골라 독립기념일 참석을 시도했으나 내전으로 인해 실패한 뒤 포르투갈로 회항

2. 북한 군사교관단의 앙골라 훈련지원(언론보도)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에 파견된 북한 군사교관단 수백명이 1975.11.10. 철수한 중국 군사고문단을 대신하여 FNLA(앙골라 민족해방전선)를 지원함으로써 앙골라 내전에 개입
  - 북한은 앙골라 내전에서 외교적으로는 MPLA(앙골라 해방인민운동) 승인, 군사적으로는 UNITA(앙골라 완전독립 연맹) 지원

3. 북한 군사교관단의 앙골라 훈련지원(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보고)

- 중국 군사고문단의 철수정보는 있으나, 북한 군사교관단이 동 훈련업무를 인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북한은 앙골라 사태와 관련, 대콩고민주공화국 및 대소련 관계에 있어 어려운 입장에 있음.
  - 소련의 압력에 못이겨 MPLA를 승인하면서도 FNLA를 지원하는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계속해야 할 필요
  -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비하여 유엔총회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4. 북한 군사교관단 앙골라 훈련지원 관련, 미 국무부 담당관 언급내용(주미국대사 보고)

- FNLA를 지원하고 있는 인접 콩고민주공화국에는 100여명 이상의 북한 군사고문단이 주둔하여 콩고민주공화국군의 군사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북한이 직접적으로 앙골라 사태에 개입되었다는 정보는 없음.

5. 북한 군사교관단 동향(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보고)

- 콩고민주공화국 키로나기지에서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북한 교관단 중 106명이 1년 임기를 마치고 평양으로 출발
  - 이번 철수가 동 군사고문단의 축소 또는 향후 계속적인 단계적 철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6. 북한의 앙골라 MPLA 승인 축전에 대해 네토 MPLA 대통령의 답전 접수(조선중앙방송 보도)

75-0427

북한·아르헨티나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19 / 2 / 1-34

1975년 중 북한·아르헨티나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아르헨티나 홍수피해 복구원조 지원

- 홍수피해 복구를 위해 당초 시멘트 5천 톤 제공계획을 변경, 현금 6만 파운드 원조

2.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관 현황

- 인원: 정광순 대사 외 11명
- 공관 건물 및 숙소: 월 임대료 3천 달러 건물을 공관 사무실 및 숙소로 운영
- 1975년도 북한공관 주요 활동목표
  - 아르헨티나 좌파단체와 조직내에 친북한 인사 확대운영 및 비밀지원 체제 확립
  - 북한 선전활동 증대와 대한 비난선전으로 한국공관 고립
  - 아르헨티나 및 인접 남미국가로부터 북한 지지 획득을 위한 활동 확대

3. 북한 어린이단 아르헨티나 방문예정

- 축구팀, 체조팀, 합창단 등 100여명으로 구성. 1975.5.3.~22. 체류예정
  - 체류기간중 대통령 예방, 극장공연, TV녹화 등 활동
  - 동 방문은 1974년 여름 북한이 아르헨티나 어린이 38명을 초청한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

4. 북한의 대아르헨티나 침투저지를 위한 건의

- 리틀엔젤스 파견, 공연기간 연장 및 유명 관광도시 순회공연
- 교포학생 장학기금 설치 및 교포학생 모국방문 초청
-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화보의 정기적 송부

5. 북한대사관 증원

- 현 요원 11명에 추가로 통상요원 4명 증원

6. 1974년도 북한사절단 파견 및 접수 현황

- 1974.10.5.~16. 북한을 방문한 아르헨티나 국회의원단(총 7명)

북한·호주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D-19 / 3 / 1-387

1975년 중 북한·호주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호주 북한대사관 개설

- 북한 공관 창설요원(총 8명) 호주 입국, 주호주 북한대사관 개설(1974.12.30.)

2. 주북한 호주대사관 개설

- 주북한 호주대사관 창설요원이 1975.4.29. 평양 도착
  - 주중국 호주대사가 북한 겸임

3. 북한 만수대예술단 호주 방문

4. Willesee 호주 외상 북한 방문(1975.6.14.~16.)

5. 호주 외무성, 대북한 주의 조치

- 북한 공관 선전물의 호주 외무성 가이드라인 위반 지적

6. 북한대사관 주최 9.9절 행사

- Whitlam 호주 수상 등 고위인사 참석

7. 주호주 북한공관원 철수

- 북한은 호주 측이 유엔에서 공산 측 결의안에 반대할 경우 국교단절의사 기표명
  - 호주 측은 공산 측 결의안에 기권

8. 북한, 주북한 호주대사관 철수 요청

- Willesee 외상은 1975.11.6. 평양 주재 호주대사관 철수 발표

9. 호주·북한 관계악화(주호주대사관 보고)

- 경위, 외무성의 반응, 북한의 입장표명과 새로운 사태발전, 북한태도의 저의와 배경, 호주·북한 관계의 영향과 금후 전망, 건의사항 등

75-0429

북한·방글라데시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정보1/동남아
MF번호	D-19 / 4 / 1-109

1974~75년 중 북한·방글라데시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방글라데시 북한대사관 설치(1974.9.7.)

- 북한은 방글라데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했음을 공식 통보하고 동 사실을 다카 주재 각급 외교공관에 통보
  - 유성진 주인도 북한대사가 겸임
- 북한은 한국보다 먼저 상주공관을 다카에 개설했음을 강조

2. 방글라데시 측의 주북한대사 임명(1974.9.24.)

- 주미얀마대사를 주북한 겸임대사로 임명

3. 북한의원사절단 방문(1975.3.25.~29.)

- 황장엽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IPU(국제의원연맹) 국내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
  - 대통령, 국회의장 등 주요요인 면담 및 산업시찰
  - 방글라데시 외상 면담 시 종전주장 반복: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찬양, 양국간 동질성 강조, 외세간섭 없는 평화통일, 미군철수
- 북한은 방글라데시 국회의장의 북한 방문 초청
- 북한의원단의 방문 목적은 콜롬보 IPU이사회를 앞두고 주재국 의회의 지지확보에 있었으나, 방글라데시 측이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접촉만 하고 돌아감.

4. 양형섭 북한특사 방문(1975.8.1.~5.)

- 주요일정
  - 대통령, 수상, 외상 등 예방
- 주요인사 면담 시 북한 언급요지
  - 한국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은 오직 미군주둔이므로 미군철수가 시급
  - 비동맹 회의 가입에 대한 지지 요청
- 방글라데시 측 대응요지
  - 한국문제는 한국인들 사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기본입장 제시
  - 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하바나회의에서의 결의, 각 회원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5. 북한, 방글라데시 신정부 승인(1975.9.19.)

- Ahmed 방글라데시 대통령에게 취임축하 및 우호관계 계속을 희망하는 김일성의 메시지를 송부함으로써 신정부 승인

북한·벨기에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D-19 / 5 / 1-23

1974~75년 중 북한·벨기에 간의 관계 동향임.

1. 전창준 북한 해외문화위원회 및 평화위원회 부회장 일행 벨기에 방문(1974.6.10.)

- 벨기에 사회당소속 인사 초청으로 방문
- 벨기에 외무성 담당국장은 벨기에의 대한국 입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명백히 함.

2. 북한 통상요원 벨기에 방문(1974.12.24.~75.1.11.)

- 선박용 엔진 및 부속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상사 접촉목적

3. 북한 통상요원 벨기에 방문(1975.2.24.~3.21.)

- 대규모 제철 압연시설 장비구입 목적

4. 북한 중앙노동위원 일행 벨기에 비공식 방문(1975.7.5.~9.)

- 벨기에 공산당 초청으로 방문, 공산당 요인 면담 및 공산당기관지 신문사 방문 등

5. 북한인사 벨기에 방문(1975.9.24.~25.)

- 벨기에 소재 Association International des Juristes Democrates 사무국장 초청으로 동 기구회의(1975.10.24.~25., 다마스쿠스) 참석차 경유

75-0431

북한·미얀마(구 버마)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D-19 / 6 / 1-115

1975년 중 북한·미얀마(구 버마)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통상사절단 미얀마 방문(1975.4.8.~14.)

- 김석진 대외무역성 차관 등 2명, Ywama 철강공장과 부두 및 북부지방 시찰

2. 북한 특별사절단 미얀마 방문(1975.7.21.~26.)

- 단장: 양형섭 노동당 중앙위 정치위원
- 대통령, 수상 및 외무장관 예방
  - 북한의 유엔정책 및 비동맹회의 가입 지지요청 등

3. U Hla Phone 미얀마 외상 북한 방문(1975.8.15.~19.)

- 양국 외무장관 회담 개최
- 북한 주최 만찬 시 허담 북한 외상 만찬사 요지
  - 미얀마의 비동맹 원칙에 기초한 대외정책 지지
  - 남한의 미군 철수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의지천명
- 미얀마 외상 답사 요지
  - 미얀마의 북한 비동맹운동 적극 지지
  - 한국문제가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염원
  -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은 친선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 전개

4. 북한 농업시찰단 미얀마 방문(1975.9.15.~29.)

- 미얀마 관개(irrigation)사업에 대한 기술협력 조사, 북한 재배 가능한 작물조사 등

북한·브라질 관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남미
MF번호	D-19 / 7 / 1-24

1975~76년 중 북한·브라질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브라질 외교관계 수립 동정(1975.12.11.)

- 브라질 정부는 현재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불고려
  - 북한은 수차에 걸쳐 통상사절단 교환을 제의해왔으나, 브라질은 이를 회피
- 그러나 앞으로 브라질이 북한과 교역관계를 맺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방침

2. 북한·브라질 외교관계 수립 정보(브라질외무성 아주국장 면담)

- 북한과 관계수립을 위한 구체적 교섭에 대해서 아는 바 없으며, 유엔 등에서 북한과의 접촉 움직임은 양국 공관원이 일상적 접촉을 가진데서 오는 추측에 불과함.
-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가 브라질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동 대사의 관광여행 가능성은 있음.
  - 북한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브라질 재외공관이 여행증명서 발급 가능

3. Bueno 브라질 외무성 아주과장 접촉(1975.12.17.)

- 북한과 관계수립을 위한 여하한 접촉을 가진 바 없으며, 검토한 바도 없음.
  - 북한이 이를 위해 문호개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브라질이 이에 호응하여 관계수립을 고려해야 할 국가적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차도 그러한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봄.

75-0433

북한·보츠와나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9 / 8 / 1-8

1975년 중 북한·보츠와나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북한방송에 의하면 정승규 주보츠와나 북한대사가 Khama 보츠와나 대통령에게 1975.8.5. 신임장을 제정하였다고 하는바, 외무부는 주케냐대사관에 이에 대한 확인을 지시
  - 정승규 대사는 7.31. 보츠와나에 신임장을 제정함.

2. 북한사절단 일행(단장: 김석기 북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보츠와나 방문(1975.9.5.)

- 북한사절단은 Khama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보츠와나가 독립과 국가발전을 이룩한데 대해 찬양하며, 향후 더 큰 번영을 희망한다고 언급
- 동 방문이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와 발전 및 제3세계의 단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첨언

북한·베냉(구 다호메이)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아프리카
MF번호 D-19 / 9 / 1-18

1974~75년 중 북한·베냉(구 다호메이) 간의 관계 동향임.

1. 베냉 주재 북한공관원 현황

- 독고문홍 대사 외 5명
  - 독고 대사는 1973.10.25. 신임장 제정

2. 북한의 대베냉 원조현황

- 1973.1월 북한·베냉 간 경제기술협정 체결
- 1973.10월 북한 전문가 10명 베냉 파견, 현지답사
- 1973.11월 북한 농업기술자 10명 파견, 북부지방에 농장건설

3. 북한·베냉 간 협력협정 체결

- 제1차 경제기술협정
  - 베냉 관개수리시설 및 농기구 수리소 건축 및 기자재 재정지원
  - 문화관(Maison de culture) 건설
- 제2차 경제기술협정
  - 베냉 Abomey-Calavi 대학에 기숙사 건축
  - Quidah 기술고등학교에 기자재 제공
  - 운동기구 무료제공
- 상기 서명식에 알라메이 베냉 외상, 북한 측은 정광원 문교차관 및 북한대사대리가 참석
  - 알라메이 외상은 동 협정으로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고 논평

4. 북한 동향

- 북한 공관원은 5~6명이나, 실제로는 선전, 경제기술원조 등으로 더 많은 인원이 활동
  - 방대한 선전 출판물을 정보기관 등 다수 기관에 배포
  - 선전영화 상영 및 사진전시회 개최
- 경제기술원조 사업 현황
  - Azala지역 농지(총 1,000ha)중 400ha 개간 1975.12월 완료예정
  - 사상교육 및 정보수집 훈련을 위한 정보전문가 1명 경찰에 파견

75-0435

북한·콜롬비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19 / 10 / 1-23

1975년 중 북한·콜롬비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선전광고 게재

- 북한은 1975.4.23. 현지 공산당 신문에 김일성 선전광고를 포함, 북한의 경제발전사항 및 한국 대통령을 모함하는 전면광고 게재
  - 임제태 주콜롬비아대사관 참사관은 5.6. 콜롬비아 외무성을 방문, 북한의 주재국 내에서의 악랄한 선전공작활동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 강구요청

2. 북한 친선사절단 파견교섭(1975.8월)

- 주소, 주유엔 및 주아르헨티나 콜롬비아대사는 북한의 친선사절단 파견교섭에 대해 콜롬비아 외무성에 청훈
  - 외무부차관은 한국과의 우호관계, 군부 지도급 인사의 상당수가 참전용사라는 점,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현 시점에서 무익하다는 점을 신임장관에게 역설하여 이를 불허하도록 해당공관에 훈령

3. 북한 기자방문(1975.8.25.)

- 좌익성향의 기자협회는 북한기자 방문 계기에 북한·콜롬비아 간 문화, 외교, 통상 등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4. 북한 광고기사 게재

- 북한은 1975.10.7. 콜롬비아 유수신문 El Espectador에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통령의 북한 방문시 김일성의 환영 연설문 전면게재

북한·카메룬 관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MF번호 D-19 / 11 / 1-47

1975~76년 중 북한·카메룬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대사관 영사회 개최

- 북한대사관은 조선인민군 창설 제27주년 계기로 1975.2.7. 영사회를 개최
  - 북한 관광, 산업, 수산업 등 소개와 북한의 군대행진 등이 주내용임.

2. 협정체결 동향 등

- 북한은 카메룬 정부에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 제의
  - 농업 및 청소년운동 분야 등
- 북한서커스단의 카메룬 공연 허가신청

3. 북한 집단체조 교관단 카메룬 방문

- 카메룬 국경일 행사의 일환인 매스게임 지도 목적으로 북한 교관 12명이 1975.4.29. 방문
  - 단원 중 일부는 체육부문 전문가로서 카메룬 청소년의 집단매스게임 지도

4. 북한사절단 카메룬 방문

- 공진태 북한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6명이 1975.7.16.~20. 방문
  - 아히죠 카메룬 대통령 면담, 외무차관 예방 등
  - 외무차관 면담 시 북한 측은 남북한 문제에 관해 전반적인 북한입장 설명

5. 북한대사관 리셉션 개최

- 북한대사관은 북한 정부 수립 27주년을 계기로 1975.9.9. 리셉션 개최

6. 북한사절단 카메룬 방문

- 전명수 북한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 3명이 1975.10.21.~25.간 방문
  - 아히죠 카메룬 대통령 및 수상, 외상 등 주요인사 면담
  - 북한 측은 아히죠 대통령의 북한 공식방문을 요청
  - 기타 유엔에서의 북한입장 지지 요청,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전가, 미군철수 주장, 북한의 평화통일정책 역설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제의

75-0437

북한·캐나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D-19 / 12 / 1-18

1975년 중 북한·캐나다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제의

- 북한은 쿠바 및 주제네바 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캐나다 정부에 양국간 통상대표부 상호설치 제의
  - 캐나다 측은 통상문제는 비엔나에서 접촉할 용의가 있으나, 통상대표부 설치는 현재 필요 없다고 회답

2.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제의

- 1975.1.9.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위한 신년식에 참석한 케슬리 주오스트리아 캐나다대사는 북한 측이 여러 곳에서 캐나다 측에 접근하여 통상대표부 설치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언급

3. 북한 김일성 광고게재

- 북한은 토론토 발간 The Globe and Mail 일간지에 1975.4.21.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광고를 게재
- Whitehead 한·캐나다 실업협회 회장은 7.11. 상기 북한의 김일성 광고게재에 항의하고 향후 광고게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을 상기 일간지 사장에게 발송

4. 북한대표단 캐나다 방문

- 정준기 북한대표단 일행은 1975.7.25. Williams 캐나다 수상, 유류 및 광산장관, Abdullam 외무차관을 면담
  - 캐나다 외무성 측은 Williams 수상 면담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주캐나다 중국(구 중공)대사관 알선으로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보임.

5. 주알제리 북한대사 면담요청

- 외무성 당국자에 의하면 최근 주알제리 북한대사가 주알제리 캐나다대사 면담을 요청했으며, 주알제리 캐나다대사는 대응방안에 대해 본국 정부에 청훈
  - 캐나다 외무성은 주알제리 북한대사의 면담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내용이면 유엔, 통상에 관한 문제이면 비엔나에서 협의하고 비공식 면담이라면 공관 밖에서 만나도록 지시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19 / 13 / 1-146

1975년 중 북한·코스타리카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상주공관 설치

- Antillion 코스타리카 외무성 정무국장은 1975.1.6. 북한 상주공관 설치문제는 현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
- Facio 코스타리카 외상은 1.8. 유엔정책에서 한국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2. 북한사절단 입국 저지

-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은 페루를 방문중인 북한사절단(박논석 등 4명)에 대한 코스타리카 입국 사전저지활동을 외무성, 안전성, 이민국 등을 상대로 전개함.

3. 코스타리카·북한 친선협회대표단 평양 방문

- Bulgareli 협회장(단장) 등 대표단이 1975.4.1. 평양도착
  - 만경대와 중앙공업전람관 시찰 및 북한·코스타리카 친선협회 결성 등 활동

4. Facio 코스타리카 외상 면담(1975.5.5.)

- Facio 외상은 대유엔 문제에 대한 한국입장 지지 태도 재차 표명
  - 북한 상주공관 설치 건은 명백히 불허방침 강조

5. 북한공작원 코스타리카 입국 및 추방

- 입국경위
  - 김휘선 북한·라틴아메리카친선협회 회장 등 4명이 코스타리카국립대학 교수 초청으로 1975.5.15. 입국
- 외무성 특별성명 발표(5.16.)
  - 이들이 본 목적 이외의 행동 또는 코스타리카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이 발각되면 즉각 추방할 것
- 코스타리카 정부는 이들의 반정부활동 특히 학원침투를 이유로 5.18. 추방

6. Facio 외상 기자회견(1975.6.10.)

- 북한이 내정간섭차 입국을 시도하는 것 등을 비난
- 코스타리카 정부가 최악의 사태에도 개의치 않고 단호한 조치를 계속 취할 뜻을 밝힘.

7. 코스타리카 사회당 대표단 북한 방문

- 알바로 몬테로 비히야 사회당 중앙위 총비서(단장) 등 대표단이 1975.9.30. 평양도착

75-0439

북한·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D-19 / 14 / 1-62

1975년 중 북한·중국(구 중공) 간의 관계 동향임.

1. 김일성 중국 방문(1975.4.19.~24.)

- 모택동과 회담 및 등소평 주최 환영 만찬 참석
- 등소평과 4차례 회담
- 남경 등 지방시찰

2. 북한 군사사절단 중국 방문(1975.6.10.~30.)

- 단장: 조명손 북한군 부참모장
- 군부대 및 군수품공장 시찰

3. 북한 양현섭 특사 중국 방문(1975.7.20.)

4. 중국 공산당대표단 북한 방문(1975.9.21.~27.)

- 단장: 장춘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김일성 등과 회담, 공장 및 협동농장 시찰

5. 중국 인민우호대표단 북한 방문(1975.10.24.~29.)

- 단장: 이지민 중국 중앙위원
  - 중국인민해방 지원군의 한국전쟁 참가(1950.10.25.) 25주년 계기
  - 평양시 행정위 주최 군중대회 참가 및 북한의 자주평화통일정책 지지 연설

6. 중국, 북한의 노동당 창건 30주년(1975.10.10.) 계기 동향

- 인민일보, 북한이 패권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한다는 요지의 사설 발표
- 아래요지의 축전 발송
  - 북한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패권주의를 반대
  - 중국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정책을 적극지지, 외세의 간섭 없는 조국통일의 실현을 믿음.

북한·코모로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아프리카
MF번호	D-19 / 15 / 1-10

1975년 중 북한·코모로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코모로 간의 외교관계 수립(1975.11.13. 북한 공동성명 발표)

- 북한과 코모로는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염원에서 대사급 외교관계에 합의함.
  - 이종옥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알리 소히하드 코모로 외교대표 간 협정 조인
- 분석
  - 금후 쌍방 수교의 배경에는 코모로의 주산업이 농업임과 신생국으로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11.19. 유엔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지태도 등을 감안할 때 농업 및 어업분야에 북한의 상당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수교사실 확인

- 1975.11.20. 홍콩발 로이터통신은 북한과 코모로가 11.13.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신화사 통신보도를 인용 보도함.
- 주프랑스대사는 11.21. 프랑스 해외영토성에 확인한바, 중국의 대사관 설치에 관한 소식은 알고 있으나,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하고, 현재 프랑스와 코모로 정부 간에 접촉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함.

75-0441

북한·덴마크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정보1
MF번호	D-19 / 16 / 1-186

1975년 중 북한·덴마크 간의 관계와 관련한 주덴마크대사의 보고내용임.

1. 덴마크 통상사절단, 북한 방문(1975.3.14.~21.)

- K. Andersen 덴마크 외무성 통상국 제2부장(단장) 외 경제인 수행
- 허담 북한 외상과 계응태 북한 대외무역상 면담, 기타 수출상담 진행
  - 북한 측이 경제분야보다 정치문제에 치중함으로써 통상증진 문제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갖지 못함.

2. 북한 선박장비교섭을 위한 사절단 덴마크 파견(1975.3월)

- 북한은 구명용 주정 34척 구입계약

3. 북한 문화사절단 덴마크 파견(1975.3.17.~21)

- 북한은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나, 덴마크 정부는 민간차원의 문화교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4. 북한 기술자 연수

- 북한 기술자 10명이 시멘트공장 건설에 사용될 발전기 조작법 습득 연수

5. 북한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행사

- 북한대사관 및 정조협회는 노동당 창건 30주년(1975.10.10.) 행사로서 북한주간을 실시
  - 경축리셉션 개최, 영화상영 및 강연회, 사진전시회 등 개최
- 동 행사의 성과는 미약하며, 북한의 선전홍보활동의 성과가 저조함을 실증하였다고 평가

6. 김홍철 주덴마크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7. 북한 대외부채 상환관련 보도

- 사민당 기관지 Aktuelt지는 북한의 대외부채 상환문제와 관련, 서방 측 수개 채권국과 북한대표단 간에 회의를 한 바 있으나, 아무런 결과 없이 휴회했다고 보도

북한·도미니카공화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D-19 / 17 / 1-14

1975년 중 북한·도미니카 간의 관계와 관련한 주유엔대사의 보고내용임.

1. 북한의 도미니카 침투기도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북한사절단의 도미니카 입국요청 공한을 전달하면서 도미니카 외상의 평양 방문을 재초청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1975.2.10. 공한을 통해 북한·도미니카 간 관계증진과 공동관심사 협의를 위하여 제3국 주재 북한대사가 수행원 2~3명을 대동, 도미니카를 방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도미니카 정부는 북한사절단 접수 및 외상의 평양초청을 거부

2. 북한동정

- Dipp-Gomes 주유엔 도미니카대표부 참사관 언급내용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Gomez 도미니카 외상 및 Moreno 주유엔 도미니카대사에 대한 평양 방문 초청장 전달
  - 도미니카와의 외교관계 수립 제의

75-0443

북한·에콰도르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미/정보1
MF번호	D-19 / 18 / 1-43

1975년 중 북한·에콰도르 간의 관계와 관련한 주에콰도르대사의 보고내용임.

1. 북한 문화전시회 개최

- 에콰도르 공산당 P. J. Vera 서기장의 주선으로 과야킬 및 키토에서 각각 전시회 개최
  - 북한의 사진, 그림, 서적, 공예품 등을 전시

2. 북한 문화공세에 대해 1975.2.6. 주에콰도르대사관이 외무부에 대처방안을 건의함.

- 북한은 종래의 통상, 외교사절 상주교섭에서 기자단 파견, 문화전시회 등으로 침투양상을 변경
- 북한 문화공세에 대한 대처방안
  - 양국간 기자 상호방문을 통한 언론인간 유대강화 및 홍보활동
  - 한국 연예인단(리틀엔젤스) 또는 여자 체육인단(탁구) 파견을 통한 문화홍보 증진
  - 과야킬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

3. 북한대표단 에콰도르 방문

- 송호경 북한 직업총동맹 부위원장(단장) 등 방문
  - 1975.2.16. Riobamba 시에서 개최된 제13차 에콰도르 노동자회의에 참석, 남북한의 노동조직 비교를 주제로 연설
  - 여타국 대표와 함께 Rodriguez 대통령 예방(2.18.)

4. 정광순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 에콰도르 방문

- 정광순 대사가 1975.8.16. 에콰도르 외상을 면담, 1975년 가을 유엔총회에 임하는 북한입장을 설명할 예정

5. 북한, 에콰도르와 외교관계 수립 제의

- 벨레서 안다 에콰도르 국제기구국장은 뉴욕체재 북한대사(성명 미상)가 동 국장을 평양으로 초청한다고 말하고 양국간 수교문제를 제의해 왔다고 언급

북한·이집트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19 / 19 / 1-84

1974~75년 중 북한·이집트 간의 관계와 관련한 주카이로총영사의 보고내용임.

1. 북한·이집트 통상의정서 서명

- 북한 상업성차관과 Matbuly 이집트 상업성장관 간에 1975.3.24. 통상의정서 서명
  - 이집트는 연간 약 1천만 달러 상당의 선철, 아연 및 변압기 등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원면, 인산비료 및 TV 등을 수출

2. 박성철 북한 부수상 이집트 방문(1975.7.10.~13.)

- 이집트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전폭 지지하는 성명 발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친서 전달
- Fahmy 이집트 외상과 회담 시 미제 축출을 위한 투쟁에 적극 외교적 지원을 요청

3. 이집트 의회대표단 북한 방문

- 동 대표단은 1975.9.1. 북한 의회대표단과 회합
  - 북한은 사다트 대통령의 정책과 아랍국가의 권리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IPU(국제의원연맹)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

4. 김병호 북한대사 기자회견

- 한국과 미국을 괴뢰정권과 제국주의라고 비난
  - 남한내 소위 반파쇼 투쟁, 실업자, 외채상황 등을 과장 선전
  - 남한의 외교적 고립 주장

5. 북한 조종사 등 철수

- 이집트에 파견된 북한 조종사 및 정비요원 약 40명이 1975.6.15. 완전 철수

6. 이집트·북한 무역의정서 체결

- 1976년도 양국간 교역량(약 35백만 달러) 책정
  - 북한은 이집트에 기계류, 주철 및 마그네슘 수출, 이집트는 북한에 면화, 파이프 제조용 인회석 등 수출

75-0445

북한·에티오피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정보1
MF번호	D-19 / 20 / 1-89

1975년 중 북한·에티오피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정준기 북한 부수상 에티오피아 방문(1975.1.29.~2.2.)

- Taferi 에티오피아 군사위원회 의장 면담 및 군사정부 주최 만찬

2. 북한·에티오피아 수교방침

- Wodajo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은 1975.5.29.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에티오피아 신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방침임을 통보

3. 북한·에티오피아 수교발표

- 에티오피아 정부는 북한과 수교 및 대사교환에 합의했다고 발표
  - 1975.6.5. 박성일 주수단 북한대사와 Wodajo 외무장관 간에 국교수립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서 서명

4. 북한사절단 에티오피아 방문(1975.7.14.~17.)

- 단장: 박성철 북한 부수상
  - Taferi 의장 면담 및 외무, 재무, 토지개혁성장관 등 연석회의

5. 북한 경제사절단 에티오피아 방문(1975.8.23.~28.)

- 단장: 공진태 북한 부수상
  - 경제기획장관 등 주요인사 면담 및 농협협동조합 시찰

6. 박성일 주수단 북한대사 에티오피아 방문(1975.9.16.~20.)

- 북한의 비동맹가입에 대한 감사 메시지 주재국 정부에 전달

7. 박성일 주수단 북한 겸임대사 신임장 증정

- 박성일 대사의 에티오피아 겸임 아그레망이 1975.11.25. 발급됨.
  - 동 대사는 12.27. 임시군사 행정위원회 의장에게 신임장 제정

북한·피지 관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D-19 / 21 / 1-25

1. 북한 통상사절단, 주호주 피지 고등판무관 면담(1973.7.8.)

- 북한사절단(단장: 박수곤)은 동 고등판무관을 면담, 피지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북한승인을 희망

2. 이장화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 호주 방문(1974.8.24.~29.)

- 이장화 대사는 호주 방문기간 중 Nair 주호주 피지 고등판무관을 면담, 피지의 반제국주의 투쟁 찬양과 독립을 축하

3. 피지·북한 수교발표(1975.4.14. 북한 중앙통신 보도)

- 수교경위와 배경
  - J. Forace 주호주 몰타대사와 주호주 피지 고등판무관이 비밀리에 북한과 수교협의를 진행
- 피지의 대북한 수교 이유 및 대한국 태도
  - 동 고등판무관은 주호주대사에게 대북한 수교는 피지의 보편주의 외교정책에 따른 것이며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
- 외무부 조치
  - 피지가 북한과 수교하였다고 하나,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에 반대할 것을 목표로 적극 교섭할 것을 1975.4.14. 주호주대사에게 훈령

4. S.Sikivou 주유엔 피지대사 북한 방문

- Sikivou 대사가 북한 초청으로 1975.6월 평양 방문
  - 6.28. 동 대사는 허담 북한 외상과 회담

75-0447

북한·핀란드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D-19 / 22 / 1-45

1975년 중 북한·핀란드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핀란드 교역현황

- 1973년도 : 북한의 대핀란드 수출 47.8만 달러, 수입 6만 달러
- 1974년도(1~10월) : 북한의 대핀란드 수출 302.5만 달러, 수입 3,170.1만 달러

2. 북한·핀란드 간 지불결제 교섭

- 핀란드교섭단(단장: T. Kekonen 외무성 심의관) 북한 방문(1975.1월)
  - 북한의 제지플랜트 도입금 중 미수금 약 1억2천만 핀 마르크(약 3,240만 달러) 수령교섭
  - 동 교섭단은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
- 북한경제사절단(단장: 이기선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핀란드 방문(1975.9.5.~10.4.)
  - 북한의 제지공장 미수금 문제를 포함한 북한·핀란드 간 교역증진 협의
  - 금번 교섭 시 미수금 문제 미해결, 향후 1~2개월내 재교섭 예정

3. 핀란드 의원사절단 북한방문

- Suksekainen 핀란드 국회의장(단장) 등 6명의 의원사절단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1975.4.13.부터 약 1주일간 북한 방문
  - 김일성 생일축하 행사 참석 등

북한·프랑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경제협력
MF번호 D-19 / 23 / 1-55

1975년 중 북한·프랑스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통상사무소 지위문제

- Landy 주한 프랑스대사는 파리 주재 북한통상사무소의 지위 관련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언급
  - 영국에서의 북한대표부 설치문제와 균형을 기하기 위해 영국과도 협의 중이나, 현재 북한이 소극적 태도임.

2. 북한의 프랑스 헬기 구매교섭

- 한국 측은 최근 북한의 프랑스 Licence 헬기 구매교섭 관련, 동 헬기의 민수용이나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에 주의를 환기하고 프랑스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건의해 줄 것을 요청

3. 북한통상사무소 지위승격

- 프랑스 외무성은 1975.6.27. 파리 주재 북한통상사무소의 지위를 제한된 범위 내 승격시키기로 결정했음을 통보
- 승격 합의내용
  - 종래 "평양 대외무역촉진위원회 상설대표부"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통상대표부"로 개칭
  - 대표부 공관장 차량에 CD(외교감찰) 부여, 국경일에 한해 국기게양 허용

4. 김응철 북한 무역은행부총재 프랑스 방문

- 김응철 부총재 등이 북한의 대프랑스 연체상환 문제 협의차 프랑스를 방문, 1975.7.19. 프랑스 은행단과 상환조건 등 합의

5. 북한의 부채상환 곤경(1975.10.7., 프랑스 르몽드지 보도)

- 북한은 대서방 부채가 약 4.3억 달러 수준
  - 이러한 곤경은 주로 내부 경제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
  - 대북한 주요 차관제공 서방 11개국은 최근 비공식 회담을 갖고, 동 문제를 검토

75-0449

북한·가봉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정보1
MF번호	D-19 / 24 / 1-45

1975년 중 북한·가봉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가봉 북한대사관 개설 동향

- 이자경 주카메룬 북한대사가 김일성 친서를 휴대하고 1975.2.21. 가봉 입국
- 이자경 대사는 2.22. 봉고 가봉 대통령을 예방,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 개설 허가를 얻음.

2. 주가봉 북한대사관 개설

- 북한은 1975.3.1. 외교공한으로 주가봉 북한대사관이 개설되었음을 북한 외교단장에게 통보
- 가봉 정부는 4.23. 김진기 주가봉 북한대사 예정자에게 아그레망 부여
  - 김진기 대사는 6.5. 신임장 제정

3. 북한 노동당대표단 가봉방문

- 북한 노동당대표단(단장: 김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1975.5.31.~6.4. 가봉 방문
  - 봉고 대통령 예방 및 양국간 협력방안 협의

4. V. Ignac 주북한 가봉대사 소환(1975.11.14.)

- 봉고 대통령은 1975.11.12. 국회에서 3개월 전에 정무협의를 위해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Ignac 대사가 아직 귀국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 오쿰바 가봉 외상에게 동 대사가 즉시 귀국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
  - 북한이 동 대사의 귀국을 계속 방해할 시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동 대사는 12.1. 정무협의차 귀국

북한·독일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D-19 / 25 / 1-20

1975년 중 북한·독일 간의 관계 동향임.

1. 서구국가의 대북한 태도에 관한 독일 측 견해

- 독일 외무성 당국자 언급내용
  - 서구 일부 중립국(스위스, 오스트리아)이 북한을 승인했다고 해서, EC(구주공동체) 회원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사전에 알게 될 것

2. 북한의 대독일 무역대금 지불지연

- 독일 외무성 경제국 담당자 언급내용
  - 1974년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국가에서 무역대금 지불지연 사태 일부 발생
  - 검토 결과 북한의 외화부족, 무역증가에 못미치는 행정체제 미비 등이 원인으로 추정
- 독일 정부는 1975.2.4. 독일정부 보증보험회사인 Mermes로 하여금 대북한 차관에 대한 전면적 보증 중단조치 단행

3. 북한의 독일(구 서독) 잠수정 도입설

- 북한이 국지전이나 간첩침투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 쾌속잠수정을 독일로부터 구입한다는 정보 입수
- 외무부는 1975.5.9. 주한 독일대사에게 상기 사실여부 문의
  - 독일 정부 당국자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보았으나 잠수정을 북한에 수출한 일이 없으며, 동 정보의 출처가 북경임에 비추어 이 정보가 중국(구 중공) 측의 조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

4. 북한의 지불연체(1975.10.7., Die Welt지 보도)

- 북한은 서방 11개국에 대해 약 4억3천만 달러의 지불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리에서 열린 비공식 채권단회의에서 확인됨.
- 프랑스대표는 북한과의 상거래는 더 이상 프랑스의 보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 북한은 전후 지불불능에 빠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임.

75-0451

북한·그레나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D-19 / 26 / 1-13

1975년 중 북한·그레나다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사절단 그레나다 방문

- 북한사절단은 김국현 주쿠바 북한대사 외 2명으로 구성
- 상기 사절단은 주유엔 그레나다대표부와 입국교섭 허가를 득하여 방문, 체재기간 중 Gairy 그레나다 수상 면담
  - 면담내용은 비공개

2. 북한사절단 그레나다 방문 세부사항

- 방문경위
  - 주쿠바 북한대사가 1975.4월중 카리브지역 국가를 순방하는 기회에 그레나다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
  - Gairy 수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나, 계속 요청해 와 이를 접수
- 북한사절단 면담 시 북한 측 언급내용
  - 1975년초 초청한 바 있는 그레나다 수상 및 McIntyre 주유엔 그레나다대사의 북한 방문 초청에 대한 확답을 요구
  - 북한·그레나다 간 외교관계 수립 촉구
  - 북한의 대그레나다 원조공여를 제의
- 입국허가 경위
  - 북한사절단 방문교섭 과정에서 주유엔 그레나다대표부의 입국허가 또는 지원에 대해 이를 완강하게 부인
  - 하바나에 있는 대부분의 외교사절은 카리브지역 국가를 별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모든 입국교섭이 Habana와 St.Georges 간에 직접 이루어진다고 함.

북한·감비아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9 / 27 / 1-16

1974~75년 중 북한·감비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황철수 주감비아 북한대사(세네갈 상주) 신임장 제정

- 황철수 대사는 1974.3.29. 감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2. 북한사절단 감비아 방문 제의

- 주세네갈 감비아대사는 1975.4.13. 주세네갈대사에게 감비아 정부 입장 전달
  - 북한이 최근 감비아에 상주공관 설치 및 국회의사당 건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월 하순 사절단 파견을 제의
- N'Jie 감비아 외상은 상기 북한제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듣기 위해 4.15. 주세네갈대사가 감비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

3. 북한 상주공관 개설

- 북한은 1975.5.26. Banjul에 상주공관을 개설했다고 감비아 외무성에 통보
  - 장두호 대사대리 등 5명의 공관원 상주

4. 주감비아 북한대사관 리셉션 개최

- 장두호 주감비아 북한대사대리는 1975.6.26. 주감비아 북한대사관 개관 기념 리셉션을 개최
- 동 리셉션 시 N'Jie 외상 발언요지
  - 양국간의 이해와 협력에 의해 북한 상주대사관 창설
  - 감비아는 어떠한 형태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인종차별에도 반대하며 이러한 투쟁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계속할 것
  - 한국의 통일문제가 독립, 민주적 기초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

75-0453

북한·과테말라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정보1
MF번호	D-19 / 28 / 1-38

1975년 중 북한·과테말라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경제사절단 파견 제의

- 북한대표부는 1975.2.13. 주유엔 과테말라대표부를 방문, 과테말라의 수출희망 품목표를 요청하면서 북한 민간경제사절단 파견을 제의

2. 북한 경제사절단 파견제의에 대한 과테말라 반응

- Molina 과테말라 외상 및 Galvez 국제기구국장
  - 북한의 통상사절단 제의가 있는 대로 신중히 검토
- Morgan 과테말라 정무국장
  - 북한사절단을 접수하지 않도록 동 외상에게 건의할 것

3. 과테말라의 대북한 방침

- Morgan 정무국장이 아래 방침을 주과테말라대사관에 통보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제3국에 있는 북한대사의 1975.3~4월중 과테말라 방문을 요청함.
  - 과테말라 외무성은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현 상태에서 남북한 공동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동 북한대사의 입국을 보류하도록 지시

4. Molina 과테말라 외상 면담결과

- Molina 외상은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방문을 받지 않을 것이며, 동 방침을 전재외공관에 시달했다고 언급

5. 북한의 대과테말라 접촉

- 북한대표부는 1975.3.13. Maldonado 주유엔 과테말라대사를 방문, 과테말라 외상 및 정무국장의 평양 방문을 촉구하면서 동 대사도 평양 방문 초청
  - 아울러 북한 외무차관 외 고위인사 3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의 파견을 제의, 과테말라 정부가 수락해 줄 것을 요청

북한·가이아나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D-19 / 29 / 1-22

1975년 중 북한·가이아나 간의 관계 동향임.

1. 김국헌 주쿠바 북한대사(가이아나 겸임) 신임장 제정

- 김국헌 대사는 1975.2.26. 가이아나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2. 가이아나 당대표단 북한방문

- Ramsaroop 가이아나 인민의회당 의장 겸 의회담당 국무상(단장) 등 대표단이 1975.10.7. 평양도착
  - 북한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식 참가 목적

3. 가이아나 무역사절단 북한 방문

- A. King 가이아나 재정무역장관(단장) 등 무역사절단 북한 방문(1975.10.24., 조선 중앙방송 보도)
- 주요 활동내역
  - 김일성 면담, 훈장 수여
  -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과학문화협정 체결
- 경제·기술협력협정 주요내용
  - 280~291만 달러 상당의 무이자 차관 제공(15년 상환)
  - 트랙터 및 부속품 생산공장 건설, 농경용 트랙터 30대 제공 등 사업진행
- 과학문화협정
  -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사절단이 가이아나 방문예정(1975.12~76.2월)

75-0455

북한·온두라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19 / 30 / 1-13

1975년 중 북한·온두라스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멕시코대사, Soto 온두라스 의전장 면담

- 1975.3.20.~27. 멕시코를 방문한 Soto 의전장의 언급요지
  - 대통령 주변 좌경보좌관과 일부 각료들이 공산 지하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인사들이 있으므로 계속 경계를 요함.

2. 북한의 대온두라스 접촉

- Martinez 주유엔 온두라스대사는 1975.5월 평양을 방문하고자 본국에 청훈
  - 온두라스 외무성으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접함.
- 동 대사는 북한 외무차관 일행의 온두라스 방문도 본국에 건의

3. 온두라스·북한 친선협회대표단 북한 방문(1975.5.17., 조선 중앙방송 보도)

- 달라시오스 온두라스·북한 친선협회장 등 대표단이 평양도착

4. 북한의 대온두라스 접촉

- 권민준 주유엔 북한대사는 온두라스 신정부와의 접촉을 위해 Martinez 대사에게 온두라스 방문을 요청, 이에 동 대사는 이를 본국에 청훈
  - 온두라스 외무성은 동 방문 요청을 거절
- Martinez 대사는 OAS(미주기구)회의 참석차 워싱턴에 체재중인 Galvez 온두라스 외상에게 자신의 북한 방문을 허가해 주도록 재차 요청했으나, Galvez 외상은 이를 거절

북한·인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1/정보1
MF번호 D-19 / 31 / 1-32

1975년 중 북한·인도 간의 관계 동향임.

1. 인도 주요인사 북한 방문

- 1975.2월 인도 통상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간 무역의정서에 서명함.

2. 북한 주요인사 인도 방문

- 북한 무역사절단이 1975.3월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 외상 및 외무성 차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비동맹 가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또한 황장엽을 대표로 하는 인민회의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하여 수상 접견 등 활동을 하였으며 5월에는 김일성 특사로 양형섭이 인도를 방문함.
- 북한은 9~10월 뉴델리에서 상업전시회를 개최하여 북한 생산물을 전시함.

75-0457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정보1
MF번호	D-19 / 32 / 1-71

1975년 중 북한·인도네시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주요인사 인도네시아 방문

-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은 1975.1.8. 북한 외무성이 1974.12.20. 발표한 대변인 성명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인도네시아 외무성에 전달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외무성은 워싱턴 주재 인도네시아대사관에 사실 확인을 지시함.
  - 주한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핵무기를 배치, 저장하고 있다는 미 하원 공청회 내용을 인용하면서 핵무기를 포함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 6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 북한은 대규모 대표단을 참여시킴.
-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은 주체사상 및 6개년 경제개발계획 성과를 홍보함.

2.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북한 방문

- 김일성은 1975.3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청함. 또한 인도네시아 의회는 7월에 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였으며 북한 인민회의사절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초청하여 양국의회간 초청외교가 추진됨.

북한·이란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북미1
MF번호	D-19 / 33 / 1-103

1975년 중 북한·이란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주요인사 이란 방문

- 박성철 북한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친선사절단이 1975.3월 이란을 방문하여 양국간 통상·경제협력 증대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통상·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함.
  - 5년간 7억 달러 상당의 교역을 추진하며 북한은 이란에 강철과 시멘트 등을 공급하고 이란은 북한에 수입물자 대금의 선금으로 2억 달러 차관 제공
- 북한 통상교섭단이 7월에 이란을 방문하여 철강재 등 물자 공급에 관하여 구체적 상담을 진행함.
- 북한 인민회의 부의장 일행이 9월 이란을 방문하였으며, 북한과 이란은 9월에 양국 수도에 문화센타 설치를 포함하는 문화협정을 체결함.
- 정준기 북한 부총리 일행이 10월에 김일성 특사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유엔에서의 지지를 요청하고 김일성의 이란 방문에 관하여 협의함.

2. 이란 주요인사 북한 방문

- Ashraf 이란공주가 김일성의 초청으로 1975.5월 평양을 방문함.

3.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간 경제협력이 급격하게 증대하는 점에 주목하고 주이란대사를 통하여 북한이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이란 측에 설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차관제공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함.
- 주이란대사는 김일성의 이란 방문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방문시기를 최대한 지연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1975.11월에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이란 언론이 김일성의 12월 이란 방문을 보도하자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2.15. 주한 이란대사대리를 초치하여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함.

75-0459

북한·이탈리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구담당관/경제협력
MF번호	D-19 / 34 / 1-16

1975년 중 북한·이탈리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통상대표부 설치

- 북한과 이탈리아는 1974.6월 민간급 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였는데 북한은 외교특권을 부여받는 정식 통상대표부로의 승격을 위하여 이탈리아 측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이탈리아 측의 거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함.
- 북한 노동당대표단이 1975.3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이태리 공산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로마를 방문함.

2. 한국 정부의 대응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5.3월 북한의 이탈리아에 대한 외교공세에 대응하여 친선협회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외무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함.

북한 경비정의 일본어선 쇼세이 마루호(松生丸) 나포사건, 1975.9.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19 / 35 / 1-121

북한 경비정의 1975.9.2. 일본어선 쇼세이 마루호 나포사건 관련 내용임.

1. 경위

- 일본 외무성은 서해 대련 동북방 공해에서 조업중이던 일본어선 쇼세이 마루호가 1975.9.2. 국적 불명의 경비정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선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선박과 생존 승무원은 경비정에 의하여 연행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힘. 일본 측은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나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십자를 통한 진상파악과 나포선원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소련과 중국(구 중공)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중앙통신은 일본어선 나포사실을 발표하였으며, 북한 적십자사는 일본 적십자사에 1975.9.5. 북한 경비정이 어선을 미국 또는 한국 간첩선으로 오인하였다고 알려옴.
  - 피격지역에 대한 일본과 북한 간 견해 차이 발생

2. 선원 석방을 위한 노력

- 일본 정부와 국민은 이 사건이 국제법상 그리고 인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견지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정부가 선원석방을 위하여 적십자사를 통한 접촉 외에도 북한과 직접교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 북한을 방문한 일본 사회당 간부는 김일성과의 면담 시 그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선원석방을 지시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밝힘.
  - 부상자를 제외한 선원과 선체를 1975.9.11. 송환
- 부상 선원 2명이 석방되어 11.14. 귀국함으로써 선원전원이 귀국함.
- 일본 외무성은 북한에 대한 외교조치로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11.19. 발표하고 엄중한 항의를 북한 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북한과 접촉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접촉을 거부하였다고 함.

3. 한국 정부의 관심

- 한국 정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일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공식접촉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고 일본 측에 공식접촉을 가지지 않겠다는 기존약속 준수를 요청함.

75-0461

북한선박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D-19 / 36 / 1-17

1975년 중 북한선박 만경봉호의 일본 기항 및 민단과 조총련 간의 충돌에 관한 내용임.

1. 니가타, 오사카 등 항구에 북한 만경봉호 입항, 북송희망자 수송, 화물수송 동향 등에 대한 공관 보고내용임.

2. 만경봉호 기항지인 오사카와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관은 만경봉호의 입항과 승무원의 상륙 반대를 위해 민단을 동원하여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항의하였으며, 요코하마에서는 1975.6.16. 만경봉호의 방문을 환영하는 조청련계 교포들과 반대하는 민단계 교포 간에 충돌사태가 발생하여 태극기 파손과 민단소속 교포 부상이 발생함에 따라 외무부는 폭행자에 대한 엄중수사를 사법당국에 요청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함.

북한·일본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19 / 37 / 1-229

1975년 중 북한·일본 간의 관계 동향임.

1. 일본 정부의 북한과의 외교접촉 채널 모색

-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채널 구축을 계속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의 일본어선 피랍 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북한과 협상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접촉을 시도함.
  - 이러한 정치·외교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북한 외교적 접촉 추구에 대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한국 정부의 강한 저항과 일본 안보의 제1방어선으로 여겨지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고려임.
- 일본과 북한의 교류확대는 정치적으로는 사회당과 조총련이 주가 되어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며, 경제적으로는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을 이용한 대북한 수출, 무역사무소 개설 검토, 제철 및 중기계 등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직결된 중화학 산업기기 수출, 언론, 문화, 학술교류 확대 등 다방면으로 진행됨.

2. 한국 정부의 입장

- 한국 정부는 인도차이나 공산화와 미국의 아시아 개입 축소 등 급변한 안보 환경에서 일본의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이 외교관계 수립 등 한국의 고립화를 초래할 위험으로 인식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일본·북한 관계정상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사회적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함.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 접촉 금지요구에 대하여 약속을 하면서도 제3국 수도에서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은 계속 시도함.
  -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11월 참의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요령 개정검토 필요성을 언급함.

75-0463

일본내에서의 북한간첩 활동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D-20 / 1 / 1-32

1975년 중 일본내에서의 북한 간첩활동 내용임.

1. 1975.4월 일본 경찰당국은 일본을 기지로 한 한국에 대한 파괴공작 총책 등 공작원 3명을 체포하고 난수표 등 증거품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2. 일본 외무성은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1975.7월 아오모리현에서 출입국관리령 위반혐의로 체포된 북한공작원 이민철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달함.

3. 일본 경찰청이 작성한 일본에 대한 간첩밀파에 관한 설명책자인 “잠입하는 북한간첩”은 북한 간첩의 활동양태를 간략하게 기술함.

북한·요르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D-20 / 2 / 1-30

1975년 중 북한·요르단 간의 관계 동향임.

1. 한국 정부는 우방국인 요르단에 1975.3월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1974년 요르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북한은 4.11. 요르단 정부에 상주대사관 개설방침을 통보함.

2. 주요르단 북한 상주대사관이 1975.5.24. 개설되었으며, 7월에는 박성철 북한 부수상이 요르단을 방문하여 요르단으로부터 인산 수입, 요르단 경제사절단의 파견요청 등 양국관계 강화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75-0465

북한·케냐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20 / 3 / 1-64
	5

1975년 중 북한·케냐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은 1975.2월 주유엔 케냐대표부대사에게 보낸 공한에서 케냐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하면서 동 대사의 북한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Waiyaki 케냐 외상은 4월 케냐 정부는 비동맹 중립과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문호개방원칙을 수립하였음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북한도 포함됨을 4.17. 주케냐대사에게 언급함.

2. 한국 정부는 1975.4.23. 케냐 각의에서 북한과의 수교가 결정되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4.24. 주케냐대사에게 최선을 다하여 수교를 지연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동 대사는 정부요인들을 접촉하여 북한의 소말리아 반군 지원 등 수교시 불안요인 등을 강조하면서 수교저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

3.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75.5.15. 북한과 케냐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가 5.12. 뉴욕에서 서명되었다고 보도함. 이에 주케냐대사는 5.17. Waiyaki 외상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언급한 반면(5.24. 케냐 외무성 부국장도 서명 부인)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5.20. 양국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보도문을 배포하여 혼선이 발생함. 동 외상은 5.29. 주케냐대사와의 면담 시 뉴욕으로부터 5.26. 파우치편으로 받은 연락에 의하면 주뉴욕 케냐 및 북한대표부에서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말하면서 케냐 외무성으로서는 이 사실을 이제야 연락을 받았기에 종전에 주케냐대사에게 공동성명 사실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함.

4. 주케냐대사가 정부 인사들을 접촉한 바에 의하면 정부 각료들 사이에 북한과의 수교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1975.7월 대통령 특사의 케냐 방문 시에도 정부 주요 인사들은 북한과의 수교문제가 재고될 가능성을 시사함.

북한·쿠웨이트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근동담당관
MF번호	D-20 / 4 / 1-23

1975년 중 북한·쿠웨이트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재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7월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쿠웨이트 국왕, 재무장관, 외무차관 등 정부인사와 회담을 가졌으며, 동 사절단은 1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쿠웨이트로부터 차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함.

2. 북한이 쿠웨이트 재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초청함에 따라 쿠웨이트 정부는 1976.10월 마닐라 개최 IMF(국제통화기금) 총회 직후에 방문을 추진함.

75-0467

북한·레소토 관계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D-20 / 5 / 1-26

1975~76년 중 북한·레소토 간의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북한과 레소토가 수교할 것이라는 정보에 의거하여 1975.12.11. 관할공관인 주케냐 대사에게 사실 확인과 저지를 지시하였으며, 주케냐 레소토대사는 한국대사에게 북한과 비상주 외교관계 수립에 관하여 레소토 정부가 결정을 하였으나 발표는 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함.
   - 북한과의 수교 합의가 없는 일방적 결정
   - 북한은 1975년 초부터 레소토에 외상 초청, 경제사절단 방문 초청, 원조제공 언급 등 접근을 시도

2. 외무부는 1975.12.13. 주케냐대사에게 레소토 긴급 출장을 지시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에게도 수교 저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 주케냐대사는 12.19. 현지에 출장하여 수상, 외상, 문교상 등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번복을 설득
   - Molapo 레소토 외상은 12.23. 각의에서 재검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원조제공 제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국이 원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

3. 조나단 레소토 수상으로부터 1976.1월 레소토를 긴급 방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주케냐대사는 레소토 방문시 조나단 수상으로부터 대북한 수교를 결정하지 않기로 한 각의결정을 확인함. 한편 Molapo 외상은 주유엔 레소토대사에게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언급한 뒤 주택건립을 위한 한국 건설기업 진출을 희망함.

북한·라이베리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정보1/서부아프리카
MF번호	D-20 / 6 / 1-21

1975년 중 북한·라이베리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5.6.13. 주재국 외상 등 외무성 간부와의 면담을 통하여 북한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임을 전해 듣고 양국간에 1973.12.10. 합의된 외교관계 수립 원칙 실현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라이베리아와 북한은 1975.7.3. 공동성명을 통하여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3. 북한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5.8월에 라이베리아를 방문하여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 북한 측 입장 지지를 요청함.

75-0469

북한·라오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D-20 / 7 / 1-11

1975년 중 북한·라오스 간의 관계 동향임.

1. 라오스는 1975.4.3. 연립 정부를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정치자문위원회의 해외파견의 일환으로 4월 평양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5월에는 평양 주재 신임 라오스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함.

2. 주라오스 북한대사관은 1975.4월에 개최한 김일성 생일축하 행사내용을 라오스 언론에 보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함.

북한·말레이시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D-20 / 8 / 1-33

1975년 중 북한·말레이시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주요인사의 말레이시아 방문

- 북한은 수교 후에 대사대리가 대표해온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을 1975.4월 대사급으로 승격함.
- 북한상품전시회가 10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됨.

2. 말레이시아 주요인사의 북한 방문

- 말레이시아 장관급 인사의 평양 방문으로는 처음으로 Ghafar 농업 및 농촌개발성장관이 10월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등 주요인사를 면담하였으며, 김일성은 라작 말레이시아 수상의 북한 방문을 요청함.
  - Ghafar 장관은 북한 방문 후 귀로에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함.

75-0471

북한·마카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D-20 / 9 / 1-6

1975년 중 북한·마카오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은 1975.4월에 마카오에 상사를 설치하였는바, 중국(구 중공)을 통하지 않고 서방물품을 직구입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됨.
   - 홍콩과는 외교·무역관계 부재

2. 외신은 북한이 마카오에 설치한 상품판매소가 북한의 무역센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마카오에 서방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기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

북한·모로코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D-20 / 10 / 1-50

1975년 중 북한·모로코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주요인사의 모로코 방문

- 모로코에서 1975.4월에 개최되는 박람회에 북한의 참석과 북한통상대표부 설치 추진
  - 박람회 참가차 모로코를 방문한 이태백 북한 무역부차관은 5.2. Ghissassi 모로코 상공상과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Laraki 외무담당 국무상 면담 등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Bisbis 모로코 외무성 아주국장은 주모로코대사에게 북한통상대표부 설치 가능성을 시사함.
- 박성철 북한 부수상이 이끄는 북한사절단이 1975.8.10. 카사블랑카를 방문하여 모로코 측에 국교수립을 제의하였으나 모로코 측은 거부함.
  - 모로코는 비동맹 개방정책에 의거하여 북한을 대할 것이나 남북한이 스스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북한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무역대표부 설치 또는 그 이상의 관계수립을 도모할 것을 우려하여 주모로코대사관에게 특별 노력을 지시하는 한편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저지를 시도
  - 튀니지가 7월 북한과의 수교를 발표하는 등 중동·아프리카국가들은 인도차이나 적화로 인한 아시아 정세변화를 둘러싼 대외정책 조정을 추진

2. 모로코 주요인사의 북한 방문

- Ali Yata 모로코 진보사회주의 정당 사무총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1975.7.22.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의 회담 등 일련의 회담을 통하여 양국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함.
  - 동인은 귀국 후 북한과의 수교 촉구

75-0473

북한·모리셔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아프리카
MF번호	D-20 / 11 / 1-7

1975년 중 북한·모리셔스 간의 관계 동향임.

1. 한국 정부는 1975.5.7. 람글람 모리셔스 수상의 북한 방문을 사전 저지 또는 방문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람글람 수상의 재방한 초청을 추진함.

2. 람글람 수상은 1973.8월 방한하였으며 한국은 모리셔스에 상주대사관 설치를 추진 중임.

북한·몰타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D-20 / 12 / 1-34

1975년 중 북한·몰타 간의 관계 동향임.

1. 몰타 주요인사의 북한 방문

- 민토프 몰타 수상(노동당 당수)이 1975.1.10.~13. 북한을 방문함.
  - 동 수상은 노동당 당수로 1971년 취임한 후에 공산국가와 급속히 가까워져 나토 지중해 사령관 추방, 영국과의 기지협정 폐기, 미 6함대의 기항금지, 영국제독 추방 등 서방에 대한 강경정책을 취함.
  - 북한과는 1971.12.20. 수교하였는바, 동 수상의 평양 방문 시 양국은 경제 및 기술협조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북한은 몰타 건설공단을 위한 장비제공을 약속

2. 북한 주요인사의 몰타 방문

- 최재규 북한 부수상이 1975.2.23.~27. 몰타를 방문하여 민토프 수상 평양 방문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함. 9월에는 북한 대외경제부 관리들이 방문하여 연필공장 및 금속제품 공장 설립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
- 허담 북한 외상이 1975.7.21.~23. 몰타를 방문하여 A. Mamo 몰타 대통령 등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몰타에 대한 농기계 등 원조를 약속함.

75-0475

북한·멕시코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D-20 / 13 / 1-17

1974~75년 중 북한·멕시코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이 북경 주재 멕시코대사관을 통하여 국교수립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였으나 멕시코 측이 거절하였다고 1974.6월 북경 주재 미국대표부가 미 국무부에 보고함.

2. 북한사절단이 1975.4월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 외무차관 등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수교제의 등 북한 정책을 설명함.
   - UPI 통신은 5.16. 멕시코발 기사에서 멕시코 정부는 월남 신정부 및 캄보디아와의 수교를 비롯하여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멕시코는 5.19. 월맹을 승인

3. 주멕시코대사가 1975.5.6. 멕시코 외상 및 외상 특별보좌관의 접촉 등을 통하여 멕시코 정부의 대한정책 변화 여부를 문의한데 대하여 멕시코 정부는 정책 변화를 부인함.

북한·모잠비크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D-20 / 14 / 1-8

1975년 중 북한·모잠비크 간의 관계 동향임.

1. 모잠비크 해방전선 친선사절단이 1975.3월 북한을 방문하여 독립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2.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 중인 해방전선임시정부는 1975.6.25. 독립을 쟁취함.

75-0477

북한·네팔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정보2
MF번호	D-20 / 15 / 1-47

1975년 중 북한·네팔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주요인사의 네팔 방문

- 1975.2월 강양욱 북한 부주석이 네팔 국왕 대관식에 참석차 방문하였으며, 7월에는 양형섭 노동당 정치위원이 김일성 특사로 네팔을 방문하여 비동맹 가입과 유엔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추측됨.
- 북한은 실내체육관 건설 제공을 추진하는 한편, 8월에는 북한 경제사절단이 네팔을 방문하여 네팔 관개수리사업 지도를 위한 기술자 제공을 제의하였으나, 네팔 측이 정치선전 활동을 우려하여 거부함.

2. 네팔 주요인사의 북한 방문

- 네팔 문화사절단이 1975.6월에 북한을 방문함.

북한·노르웨이 관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D-20 / 16 / 1-33

1973~75년 중 북한·노르웨이 간의 관계 동향임.

1. 1973년도

- 2월에 노르웨이를 방문한 북한 경제사절단은 노르웨이 조선소제작 소형잠수함(5~10인승) 매입 가능성을 탐색함.
- 노르웨이는 6.22. 북한을 승인하였으며 북한은 노르웨이에 비상주대사관을 개설함.

2. 1974년도

- 북한사절단이 5월에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북한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통상사절단은 8월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징크공장 설비 수입교섭을 함.
- 노르웨이 사회인민당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6월에 평양을 방문함.
- 노르웨이 상무장관이 10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노르웨이 유수의 방산업체 간부가 수행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경계심을 표명함.
  - 한국 정부는 1973년 동사로부터 고속정 구입을 추진하였으나 분쟁지역 비수출 정책에 의하여 거부됨.

3. 1975년도

- 노르웨이는 북한에 대한 징크공장 설비 수출대금 조달을 위하여 노르웨이 국내 차관공여자를 선정하여 융자를 신청하였으며 융자결정이 이루어지면 5월중에 구체적인 상담진행을 위하여 수출업체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
- 북한 전력발전 기술자들이 4월에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수력발전 관계자를 접촉하고 발전시설을 시찰함.

75-0479

북한·네덜란드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D-20 / 17 / 1-7

1974~75년 중 북한·네덜란드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네덜란드대사는 1975년 봄 북한이 대규모 의원단의 서유럽국가 순방을 추진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주재국 사증발급 여부 등을 주시하던 차에 북한사절단이 1975.7월 네덜란드를 방문함.

2. 네덜란드는 북구지역 국가와는 달리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는바, 네덜란드의회는 1975.11월 회의 시 북한 승인문제와 한국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주네덜란드대사관이 11.8.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니제르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D-20 / 18 / 1-7

니제르를 겸임하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975.11월에 정준기 북한 부수상이 김일성 특사로 니제르를 방문하기 위하여 현지에 도착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외무부에 보고함.

75-0481

북한·뉴질랜드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대양주담당관
MF번호	D-20 / 19 / 1-36

1975년 중 북한·뉴질랜드 간의 관계 동향임.

1. 1975.4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북한 친선협회 지부가 설치되어 북한 선전활동을 강화함.

2. 인도차이나 적화 후인 1975.5월 뉴질랜드가 월맹을 승인한 것에 고무되어 북한은 제3국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뉴질랜드와 접촉하고 외무성 등 각종 공식사절단 파견을 제의하였으나 뉴질랜드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제의를 거부함(민간교류는 허용).

- 뉴질랜드 외무성 고위인사들은 뉴질랜드의 북한승인은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에 대하여 접근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조건 충족여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의회 좌파 의원과 일부 각료들은 북한과의 접촉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고 설명함.

3. 1975.5.12. 개최된 제59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북한승인 결의에 대하여 뉴질랜드 당수이자 수상인 로링은 당분간 승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는 않을 것이나 11월 총선 승리 시에는 노동당 정부가 북한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무부는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도 조만간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1.27. 주뉴질랜드대사에게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함.

북한·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남아/정보1
MF번호 D-20 / 20 / 1-181

1974~75년 중 북한·파키스탄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주요인사의 파키스탄 방문

- 1974.3월 강양욱 북한 부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등 대미정치협상 제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 5월 북한 조선민간항공대표단이 조선 민항사와 파키스탄 국제항공사 간의 항공근무협정과 대리점 설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은 북경노선을 연장하여 카라치까지 운행이 가능해짐. 6월에는 무역사절단이 방문하여 새로운 바터무역협정을 체결함.
- 1975.5월에는 파키스탄으로부터 화물선 구입을 위한 상담차 북한대표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함.
- 카라치발 AP합동은 김일성이 부토 파키스탄 수상의 방문 초청을 수락하였음을 주파키스탄 북한총영사가 발표하였다고 7.25. 보도함.
- 10월 정준기 북한 부수상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유엔에서의 북한입장 지지를 요청함.

2. 파키스탄 주요인사의 북한 방문

- 파키스탄 집권당인 인민당 대표단이 1974.10월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민간항공대표단이 1975.1월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에 합의함.
- 파키스탄 외무성 차관보 일행이 1975.4월 친선사절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함.

75-0483

북한·필리핀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D-20 / 21 / 1-235

1975년 중 북한·필리핀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접촉 시도와 필리핀 정부의 반응

- 1975.2월 네팔 국왕 대관식에 참석한 강양욱 북한 부주석은 이멜다 필리핀 대통령 부인과 면담시 부인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고 필리핀과의 국교수립 희망을 표명함.
- 북한은 싱가포르 등 제3국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필리핀에 접근하고 수교 및 통상사절단 파견을 시도하였으며 5월에는 호주 등 아세안국가 순방중인 북한사절단이 필리핀 방문을 추진하자 필리핀 정부는 입국을 허용함.
  - 북한대표단은 방문하지 않고 귀국
- 필리핀 정부가 중국(구 중공)과의 수교를 추진하는 등 대공산권 관계강화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리핀의 북한승인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주필리핀대사는 5월 외무부에 보고함.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7월 국방대학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등 공산국가와의 수교를 언급하였다고 필리핀 언론은 보도함(대통령은 외상을 통하여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 부인).
- 주호주 북한대사가 10월에 주호주 필리핀대사에게 양국 수교를 제의하여 동 대사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하자 동 대통령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도 및 미얀마(구 버마) 등 주재 북한대사가 국교수립 협의를 위하여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의 필리핀 방문을 제의함.

2.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우방인 필리핀의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한 설득 노력을 기울었으며 1975.3월에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Aide-Memoire를 필리핀 측에 전달함.
  - 5월에 북한사절단의 필리핀 입국허가 결정이 밝혀지자 충격을 받은 정부는 주필리핀대사에게 북한대표단 방문을 저지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에게도 필리핀·북한 간 접근을 저지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북한의 파상적인 공세에 직면한 외무부는 접촉가능 공관에 경계지시를 보내는 한편,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로물로 필리핀 외상을 외무부장관이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모색함.

북한·파나마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담당관/정보1
MF번호	D-20 / 22 / 1-86

1975년 중 북한·파나마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접촉 시도와 파나마 정부의 반응

- 북한은 2월 파나마에 친선협회를 결성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친선협회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하여 격려함.
- 또한 페루 및 쿠바 등 자국 공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입국 비자를 취득한 뒤 대표단을 파나마에 파견하여 군부 지도자, 외무성 등 정부 고위인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함. 파나마산 바나나 수입 등 통상관계를 구실로 통상대표부 설치 등을 계속 모색함.
- 파나마 운하조약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나마 정부는 유엔에서의 표결 시 한국과의 오랜 우호적 관계를 떠나 공산 측 안 찬성으로 태도가 급변함.

2. 한국 정부의 대응

- 북한이 중남미 미수교국과의 수교를 위한 순회교섭단을 상시로 파견하여 파나마와의 관계수립을 모색하자, 한국 정부는 북한대표단의 파나마 고위인사 접촉차단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친선협회를 통한 선전활동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함.

75-0485

북한·파푸아뉴기니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D-20 / 23 / 1-23

1975년 중 북한·파푸아뉴기니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접촉 시도와 파푸아뉴기니(PNG) 정부의 반응

- 북한은 새로 독립하는 PNG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하여 공관이 소재한 호주와 인도네시아 PNG대사와의 면담을 시도하는 한편, 1975.9월에는 PNG 독립을 축하하는 북한 국무원 총리 명의의 축전을 PNG 새 수상에게 발송함.
- 또한 10월에 주호주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PNG에 파견하여 수상 등 인사를 접촉함.
  - 사절단 방문에 관한 Press Release는 북한사절단이 방문 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PNG 정부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2. 한국 정부의 대응

- 북한에 앞서 신생독립국 PNG와 국교수립을 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려는 한국 정부는 주호주 대사관을 통하여 PNG와의 국교수립 교섭을 구상하였으나 PNG 정부의 주호주대사관을 통한 교섭거부입장에 따라 교섭창구를 인도네시아와 유엔으로 교체함.
  - PNG 정부는 주호주대사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음.

북한·포르투갈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구담담관
MF번호	D-20 / 24 / 1-13

1975년 중 북한·포르투갈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포르투갈 외교관계 수립

- 리스본발 로이터통신은 1975.4.22 북한과 포르투갈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함.
  - 9월에 주체코 북한대사가 신임장 제정

2. 한국 정부의 대응

- 1975년 군부 쿠데타로 좌익정부가 포르투갈에 들어서자 한국 정부는 신정부의 외교기조가 좌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우려하면서 포르투갈에 상주대사관 설치를 추진함.

75-0487

북한·페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정보1
MF번호	D-20 / 25 / 1-210

1975년 중 북한·페루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과 페루간 교류

- 1975.1월 북한은 페루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여 남미 미수교국에 대한 교섭의 교두보를 마련함. 북한은 대표단 파견, 페루 정부인사의 평양 초청 등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
  - 페루 정부의 좌경중도 정책에 편승
- 또한 8월 리마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정상회담을 계기로 페루 정부에 비동맹 회의 전에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는 한편, 비동맹 가입을 신청함.
  - 페루는 비동맹회의 이전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 미수교국 다수와 수교할 예정이라는 정보입수

2. 한국 정부의 대응

- 정부는 북한이 1970년에 페루에 설치된 친선협회를 통한 페루에서의 선전공세를 활발하게 전개함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통상사무소 개설이 외교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페루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조사단 파견과 페루 고위인사 방한 초청을 추진함.

북한·루마니아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D-20 / 26 / 1-7

Macovescu 루마니아 외상이 1974.7.30.~8.1. 북한을 방문함.

1. 주요 일정

- 7.30. 환영연회
- 7.30.-31. 루마니아·북한 외상회담

2. 주요 언급 내용

- (허담 외상)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남한 단독 유엔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남한에서 유엔군을 철수시킬 때가 되었음.
- (Macovescu 외상) 루마니아는 7.4. 공동성명, 6.23. 북한 제의,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제안한 자주적 통일방안을 지지

75-0489

북한·르완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아프리카/국제연합
MF번호	D-20 / 27 / 1-17

1975년 중 북한·르완다 간의 관계 동향임.

1. 르완다 정부대표단이 1975.2월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은 수도 Kigali에 청년회관 건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르완다 외상도 9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농업분야 협력 등을 협의함.

2. 북한은 1975.8.13. 르완다에 대사관을 개설함.

북한·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20 / 28 / 1-8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5.1.27.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전 이후 제정한 이스라엘 보이콧법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및 남아공과 교역하는 외국상사 및 선박에 대한 거래제한과 국가별 교역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중국(구 중공), 북한, 남아프리카와의 교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한 수출입 실적이 없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491

북한·싱가포르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정보2
MF번호	D-20 / 29 / 1-33

1974~75년 중 북한·싱가포르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 평양예술단이 1974.12.12.부터 일주일간 싱가포르에서 공연함.

- 공연은 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임.

2. 싱가포르는 1975.11.8.자로 북한과 수교함.

- 주싱가포르 북한총영사대리는 10.31. 싱가포르 외무부 측에 구두로 수교의사를 표명하고, 11.1.자 공한으로 수교의사를 통보함.
- 싱가포르 외무부차관 및 차관보는 주싱가포르대사에게 북한과의 수교가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싱가포르의 입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북한·시에라리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D-20 / 30 / 1-177

1975년 중 북한·시에라리온 간의 관계 동향임.

1. 김경련 북한 재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사절단이 1975.2.26.~3.7. 시에라리온을 공식 방문함.

- 방문기간 중 대통령, 수상 겸 부통령, 외무장관, 재무장관 등을 면담

2. 주시에라리온대사는 1975.3.20. 신임장 제정차 시에라리온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하여 오래 기다렸으나 끝내 신임장을 제정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함.

- 동 대사는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북한의 방해공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함.

3. 주시에라리온대사는 1975.5.22. 시에라리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통령은 신임장 접수 후 동 대사에게 그간 기다리게 하여 미안하다고 하고, 일부 오해가 있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표명함.
- 외무부는 전재외공관에 동 건의 경위를 아래 요지로 통보함.
  - 북한 측이 시에라리온의 수상, 재무장관 등을 매수하여, 주시에라리온대사를 추방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철수하겠으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홀 건설사업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여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이 지연됨.

4. 북한곡예단 63명이 1975.5.2.~12. 시에라리온을 방문, 공연함.

- 시에라리온 국회의장, 재무장관, 사회복지장관 등이 참관함.

75-0493

북한·스리랑카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남아담당관/정보1
MF번호	D-20 / 31 / 1-89

1974~75년 중 북한·스리랑카 간의 관계 동향임.

1. 스리랑카 수상의 아들 아누라 반다라나이케 집권당 청년조직부장이 1975.3.7.~15. 북한을 방문함.
   - 북한은 100만 달러 상당의 원조(트랙터, 양수기, 농기구 등)를 약속

2. 북한은 스리랑카와의 비상주대사 관계를 재개하기로 하고 1975.3.18. 주인도 북한대사를 주스리랑카대사로 겸임 발령함.
   - 동 대사는 4.3. 신임장을 제정함.

3. 허담 북한 외교부장이 1975.8.2.~5. 스리랑카를 방문함.
   - 스리랑카 수상, 내무장관 겸 법무장관, 외무부 부장관등을 면담하고, 내무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함.

4. 북한의 양수기 기증식이 1975.8.2. 스리랑카 Trading Corporation에서 개최됨.
   - 북한대사(비상주)가 아누라 반다라나이케 집권당 청년조직부장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거행됨.

5. 주북한 스리랑카대사(북경 상주)가 1975.10.28. 신임장을 제정함.

북한·세네갈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20 / 32 / 1-24

1974~75년 중 북한·세네갈 간의 관계 동향임.

1. 셍골 세네갈 대통령이 1974.5.13.~16. 북한을 방문함.

- 주요 일정
  - 김일성 공항 영송
  - 김일성과의 회담(2차), 군중대회 참석, 평남 인민위원회 주최 연회 참석
- 협정 서명(셍골 대통령과 김일성 참석) 및 공동성명 발표
  - 경제기술협정, 통상협정, 문화협력협정 서명
  - 셍골과 김일성 간 공동성명 발표

2. 북한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1974.8.13.~15. 세네갈을 방문함.

- 북한 측이 세네갈 측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주한 유엔군 철수, 북한결의안에 세네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한바, 세네갈 측은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3. 세네갈 여당인 U.P.S.의 정치국 서기장 겸 국회담당 국무상인 Magatte LO가 인솔하는 세네갈 정당대표단이 북한의 초청으로 1975.9.5.~12. 북한을 방문함.

75-0495

북한·스위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20 / 33 / 1-37

1975년 중 북한·스위스 간의 관계 동향임.

1. **스위스 정부는 1975.4.23.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동일자로 Albert-Louis Natural 주중국(구 중공) 스위스대사를 주북한 스위스대사(겸임)로 임명함.**
   - 스위스 정부는 7.9. Natural 대사 후임으로 Langenbacher 대사를 주중국 스위스대사 겸 주북한 스위스대사로 임명함.

2. **북한은 1975.9.1.자로 취리히 주재 북한통상대표부 폐쇄와 주스위스 북한대사관(상주) 개설을 스위스 외무부에 통보하고 임시 대사대리 임명을 아울러 통보함.**

3. **스위스 베른에서 발행되는 Der Bund지는 1975.10.14. 김일성 전면광고를 게재함.**
   - 동 지는 독자들의 거센 항의를 접한 뒤 외신부장 명의로 '김일성에 대한 공개장'이라는 해명기사를 게재함.

북한·태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D-20 / 34 / 1-112

1975년 중 북한·태국 간의 관계 동향임.

1. 태국 외무부 관계자는 1975.4월 주태국대사관 직원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피력함.

- 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제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수립한다는 방침임.
- 태국이 중개인 없이 북한과 직접 교역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는 생각에서 북한과의 통상관계 수립에 합의함.
- 북한 측이 1971년 이래 집요하게 태국에게 접근하여 왔으나 태국 정부가 일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한 반응이 늦게 나타남.

2. 태국과 북한은 1975.5.8.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과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북한 외무성 사절단(단장: 차병옥 외무성 순회대사)의 1975.5.7.~10. 태국 방문기간 중 상기 공동성명 서명식이 개최됨.
  - 태국 외무부 대표와 북한사절단장이 공동성명에 서명
- 북한사절단은 태국 수상, 외무장관, 상무장관을 예방함.

75-0497

북한·튀니지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마그레브담당관
MF번호	D-20 / 35 / 1-51

1974~75년 중 북한·튀지니 간의 관계 동향임.

1. 튀니지 정부는 1975.7.16. 방송을 통해 외무부 발표형식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외무부는 주튀니지대사에게 튀니지의 대북한 외교관계 수립으로 인하여 비동맹 외무장관회의 및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에 대한 튀니지의 태도 변경이 초래되지 않도록 튀니지 측의 확약을 받도록 지시함.

2. 박성철 북한 부총리가 1975.7.28.~8.2. 튀니지를 방문, 튀니지 대통령·수상·외무담당 국무상 등을 면담함.

- 북한 측은 비동맹회의 가입에 대한 북한의 입장 및 유엔총회에서 북한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튀니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방북 초청함.
- 튀니지 측 반응
  -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입장을 지지할 수 없음.
  - 유엔총회 문제는 검토 중임.
  - 한국통일 관련 여하한 경우에도 무력사용을 반대함.
  - 남북한이 공히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북한·상투메프린시페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D-20 / 36 / 1-26

1975년 중 북한·상투메프린시페 간의 관계 동향임.

1. Costa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이 1975.12.25.~29. 북한을 방문함.
   - 주요 방문일정
     - 김일성 면담, 김일성 주최 연회 참석
     -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 전람회 참관, 평양지하철 시찰, 혁명가극 관람, 만경대 혁명학원 참관, 평양소년궁전 참관, 평양시 환영군중대회 참석
   - 협정체결
     - 경제기술협정

2. 북한과 상투메프린시페는 1975.8.9. 외교관계를 수립함.

75-0499

북한·터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D-20 / 37 / 1-27

1975년 중 북한·터키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파키스탄 터키대사는 1975.5월 북한이 각국에 주재하는 터키 공관원 접촉을 시도해오고 있음을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에게 알려옴.

- 북한은 유엔, 파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등에 주재하는 터키 공관원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인사의 방문 및 초청을 제의함.
- 터키 외무부는 북한의 접촉시도와 관련한 입장을 전재외공관에 시달함.
  - 공산국가가 한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는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수교는 있을 수 없는바, 북한 측의 문의 및 접촉에 무회답·불참석의 원칙을 지키도록 함.
- 주파키스탄 북한대사대리가 주파키스탄 터키대사에게 북한 외무성 부부장급 친선사절단 파견을 제의하였으나, 하등의 언질을 주지 않음.

2. 터키 앙카라 소재 '테오리' 출판사는 1975.5월 김일성 연설을 수록한 136면 규모의 터키어판 책자를 발간하고, 1975.6.6.자 터키 좌익 일간지에 동 책자 광고를 게재함.

- 주터키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상기 '테오리' 출판사는 무명의 출판사이며 공산주의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함.

북한·탄자니아 관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20 / 38 / 1-7

1974~75년 중 북한·탄자니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정준기 북한 부수상이 1974.4.11.~12. 김일성의 특사자격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함.
   - 정준기 부수상은 탄자니아 대통령 예방 시 김일성의 메시지를 전달한바, 탄자니아 대통령은 김일성의 메시지에 사의를 표하고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함.

2. 탄자니아의 Zanzibar 라디오방송은 Zanzibar 지방정부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Institute of Political Affairs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1975.4.9. 보도함.

75-0501

북한·우간다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20 / 39 / 1-86

1975년 중 북한·우간다 간의 관계 동향임.

1. 정준기 북한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축하사절단이 우간다 제2공화국 4주년 기념행사차 1975.1.23.~29. 우간다를 방문함.

- 정준기 부수상은 상기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아민 우간다 대통령을 개별 예방함.
- 북한사절단 방문에는 63명으로 구성된 북한서커스단(국립평양곡예단)이 동행함.

2. 북한 보건성 보건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료사절단(8명)이 1975.4.24.부터 10여 일간 우간다를 방문함.

- 우간다 보건장관 및 차관 예방
- 우간다 보건당국 실무자와 북한·우간다 협력문제에 관하여 협의

3. Kyemba 우간다 보건장관은 북한 방문기간 중 1975.10.10. 김일성을 예방하고 아민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10.13. 북한·우간다 보건분야 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

- 아민 대통령 친서 요지
  - 북한 노동당 창당 30주년 축하,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 희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원
- 북한·우간다 보건분야 기술협력협정 요지
  - 1976년초 북한의사 8명을 우간다에 파견, 병원 1개 경영

4. 정준기 부수상이 1975.11.13.~14. 우간다를 방문함.

- 우간다 외무장관, 공업장관, 보건장관 등이 공항 영접하고 의장대 사열을 하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음.
- 아민 대통령과 2차례 회담 및 외무장관 면담
- 동 대통령이 북한 부수상 일행을 위해 비공식만찬 주최

북한·영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경제협력
MF번호	D-20 / 40 / 1-81

1975년 중 북한·영국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영국대사는 1975.3.13. 북한이 최근 북한무역은행을 통하여 유로시장에서 아래와 같은 Bank Loan을 추진한 바 있다고 보고함.

- 간사은행: 영국 소재 Morgan Granfell & Co.
- 금액: 50백만 마르크
- 기간: 3년
- 금리: 2%

2. 북한무역은행대표단 4명(단장: 김용철 부총재)은 1975.6.6.~21. 영국을 방문, KBTC(영국·북한 무역회) 주선으로 북한과 관련이 있는 상사 및 은행대표들과 회합함.

- KBTC와 북한 무역은행 간 긴밀한 관계유지에 합의
- 영국의 은행대표단과 북한무역은행은 현 외채의 상환기일 재설정에 합의
- 북한무역은행 측은 장차 KBTC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더 많은 부문의 상담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3. 영국 하원의원 25명이 서명한 북한승인 촉구 결의안이 1975.7월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안건이 산적한 관계로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됨.

- William Wilson 노동당 의원이 결의안 제출을 주도
  - 동 의원은 영국·소련 친선협회 부회장으로 친북 성향이며, 1974.12월 하원에서 서면질의로 북한승인 문제 제기
- 동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 25명 중 22명은 노동당 좌파그룹인 Tribune Group 소속 의원임.

75-0503

북한·소련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특수지역
MF번호	D-20 / 41 / 1-6

1975년 중 북한·소련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은 1975.5.7. 외무부 구주3과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소련 관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북한은 최근 2개의 경제사절단을 모스크바에 파견, 소련 측에 북한의 대서방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함.
- 소련 측은 북한이 옵서버로서 항상 CMEA(경제상호원조회의)에 참석하여 경제적 일체성을 과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산국가로서 유례없이 대서방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은 공산권의 위신문제도 된다는 생각에서 대북한 재정지원을 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함.

2. Paul Cook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소련동구과장은 1975.11월 주미국대사관 직원에게 북한·소련 관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최근 북한과 소련 간의 관계가 호전되는 징조를 보임.
  - 북한은 종래의 비판적인 자세를 많이 완화
  - 모스크바에서 북한외교관과 소련관리 간의 사교적인 접촉이 과거보다 다소 활발해진 인상
- 북한과 소련이 곧 고위 경제사절단을 교환할 것임에 비추어 북한의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련에 의존하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함.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제한 조치 연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D-20 / 42 / 1-34

1. 미 국무부는 1975.9.18.자로 북한에 대한 여행제한조치를 6개월간 연장함.

- 동 조치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시민의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형식적인 이유가 있지만 여행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2. 한국 정부는 상기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 등에 아래와 같이 요청한 바 있음.

- 주미국대사는 1975.9월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에 대한 여행제한조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계속 제한하도록 강력히 요청함.
- 외무부장관은 9.12.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대북한 여행제한조치 재연장을 강력히 요청함.

75-0505

북한·미국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동북아1
MF번호	D-20 / 43 / 1-67

1975년 중 북한·미국 간의 관계 동향임.

1. 동경발 외신은 1975.8.16. Mansfield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8월말이나 9월초에 평양을 방문할지 모른다고 보도한바, 미 국무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등은 상기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말함.

2. 동경발 APP통신은 1975.10.8. 미야자와 일본 외상이 미국·일본 외무장관회담 시 키신저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을 조언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일본 외무성 고위간부는 미국과 북한 간 접촉 종용설을 부인하고 종용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함.

3. 주미국대사는 1975.11.10. Mansfield 상원의원을 면담한바, 동 상원의원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 의원은 일본 신문들이 자신의 평양 방문설을 보도한 것에 대해 1975.8월중 평양을 방문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또한 그러한 의도도 없었으며 뉴욕의 북한대표부 직원과의 접촉사실도 없었다고 말함.
   - 북한 측의 초청을 받으면 행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임.

북한·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20 / 44 / 1-74

1975년 중 북한·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간의 관계 동향임.

1. 손태호 주부르키나파소 북한대사(초대 상주대사)가 1975.7.25.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10월 교통사고로 부르키나파소에서 사망함.

2. 강양욱 북한 부수석이 1975.8.7.~11.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하여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3. Zerbo 부르키나파소 외무장관은 북한 방문중 1975.8.19. 허담 북한 외교부장 주최 만찬시 연설에서 부르키나파소는 유엔에서 공산 측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동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4. Lankoande 부르키나파소 문교장관은 1975.11.13. 기자회견에서 4일간의 북한 방문 소감을 피력한바, 전반적으로 북한의 교육제도를 칭찬함.

5. 정준기 북한 부수상은 1975.11.18.~20. 부르키나파소를 방문, Zerbo 장관 배석하에 대통령을 면담함.

75-0507

북한·우루과이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20 / 45 / 1-9

1975년 중 북한·우루과이 간의 관계 동향임.

1. 알바레스 우루과이 외무부 정무국장은 1975.4.2. 주우루과이대사에게 북한이 모스크바와 스칸디나비아국가 주재 우루과이대사관을 통하여 입국사증을 신청한 바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2. 우루과이 보수계 일간지 El Pais지는 1975.11.9.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와 참사관이 유엔에서의 지지획득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부인에게 1,000달러를 건네려다가 아르헨티나 외무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함.
   - 동 일간지는 11.11. 상기 비행을 규탄하는 '북한의 외교' 제하의 사설을 게재함.

북한·베네수엘라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정보1
MF번호	D-20 / 46 / 1-9

1975년 중 북한·베네수엘라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5.4.1. Diaz Gonzalez 베네수엘라 외무부 정무국장을 면담한바, Diaz Gonzalez 정무국장 언급내용 중 북한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음.**
   - 얼마전 주미국 베네수엘라대사가 북한사절단의 베네수엘라 방문접수를 요청하였으나, 분주하다는 이유로 거절함.
   - 3월초 알제리 OPEC(석유수출국기구) 정상회담 당시 알제리를 방문 중이던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Salom 베네수엘라 외상을 면담하고 북한 방문을 초청하였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2. **Dubuc 주유엔 베네수엘라대표부 서기관은 1975.4.1.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에게 북한이 1975년 들어 주유엔 베네수엘라대사를 방북 초청하는 등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동 대사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으며 북한의 지나친 접근을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말함.**

75-0509

북한의 구주지역 진출 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20 / 47 / 1-56

1975년 중 북한의 유럽내 진출현황임.

1. 구주지역 내 친북단체 현황(10월)

- 영국
  - 영국·북한 친선협회: 1971.11월 설립, 영국·북한 친선위원회에 병합
  - 영국·북한 친선위원회: 1973.11월 설립, 김일성 책자 출판과 북한 광고게재 등의 활동
  - 영국·북한 무역회: 1974.1월 설립
- 이탈리아
  - 이탈리아·북한 친선협회: 1968.2월 설립, 회원 수 약 500명으로 북한선전물 배포, 월간지 발행, 방문주선 등의 활동
- 독일
  - 남·북 사회연구회: 1974.1월 창립, 계간지 '주체' 발간, 친북한 홍보활동 전개
- 프랑스
  - 프랑스·북한 친선협회: 북한선전 및 북한 지지세력 형성이 주목표
  - 프랑스·북한 경제인 협회: 1969.10월 설립, 회원사는 37개 상사
  - 프랑스 하원 내 북한연구소: 1973.4월 설립
  - 프랑스 상원 내 북한연구소
- 기타
  - 북한과의 친선을 위한 구주위원회: 1974.12월 설립, 서구국가의 북한승인 촉진이 목적

2. 1975.10.9. 북한 공산당 창건 30주년 기념대회에 구주국가에서 참석한 대표단은 아래와 같음.

- 스페인 공산당, 루마니아 공산당, 헝가리 애국인민전선,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북한·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D-20 / 48 / 1-8

1975년 중 북한·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김일성은 1975.6.5.~8.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한바, 주요 방문일정은 아래와 같음.

-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주최 오찬(6.6.)
  - 김일성과 티토 대통령은 공히 북한의 비동맹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비동맹 가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함.
- 당 수뇌부와의 회합(6.7.)

2. BBC 방송에 의하면 허담 북한 외교부장이 1975.7월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한 바,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음.

- Minic 유고 외상과의 2차례 회담(7.17. 및 7.20.)
  - 김일성 방문 시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 시행 문제와 8월 리마개최 비동맹 외무장관회의 관련사항 토의
  - 양측은 비동맹의 활동 강화 문제에 의견 일치
-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 발표(7.21.)
  - 양국 외무장관은 김일성 유고 방문 시 합의된 모든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토의
  - 유고·북한 관계가 보다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인식
  - 양측은 특히 리마 개최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와 관련하여 비동맹 활동에 관심 집중

75-0511

북한·잠비아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아프리카
MF번호	D-20 / 49 / 1-8

1975년 중 북한·잠비아 간의 관계 동향임.

1. 외신보도에 의하면 잠비아와 북한은 1975.2.3. 통상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 체결로 북한은 잠비아에 기계류와 유리제품, 잠비아는 북한에 동과 아연을 제공하게 됨.

2. 평양방송은 북한이 최근 잠비아 개최 무역박람회에 참가하였다고 1975.7.13. 보도함.

3. 평양방송은 주잠비아 북한대사가 1975.8.9. 및 8.28. 카운다 잠비아 대통령을 예방하였다고 보도함.

4. 평양방송에 의하면 잠비아 친선군사대표단이 1975.9.19.~26. 북한을 방문, 아래 방문일정을 가짐.

- 북한 군사대표단과 회담
  - 군사분야 협조 증진 및 상호 관심사 토의
- 김일성 예방
  - 훈장 및 메달 수여

북한·자이르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20 / 50 / 1-74

1975년 중 북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관계 동향임.

1. 주일본대사는 1975.1.30. 일본에서 발행되는 북조선연구 1974.12월호가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1974.12월) 결과를 게재하였다고 보고함.

2. 북한집단체조대표단 20명이 1975.2.6.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함.
   - 지방교육기관 등을 시찰함.

3. 평양서커스단 60명이 1975.2.20.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 킨샤사 및 지방에서 2주간 공연을 함.

4. 북한경제사절단 4명이 1975.3.10.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바, 주요 방문일정은 아래와 같음.
   - 대통령 및 외무장관 예방, 경제부처 관계관들과 각 분야의 협력문제 협의
   - 항만시설, 수력발전소 건설현장 시찰

5. 북한 외무성 부부장이 1975.3.13.~16.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한바, 주요 방문일정은 아래와 같음.
   - 모부투 대통령에게 김일성 메시지 전달, 외무장관 예방, 대통령 농장 및 제철공장 등 시찰

6. 북한군사사절단이 1975.3.31.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 모부투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간 군사교류 문제를 협의함.

7. 공진태 북한 부수상이 김일성 특사자격으로 1975.7.13.~15.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함.
   - 모부투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일성의 특별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함.

8.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1975.11.8. 북한 여군 교관 7명이 콩고민주공화국 여군 훈련소에 배치되어 약 400명의 훈련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함.

9. 박성철 북한 부수상은 1975.11.24. 개최되는 콩고민주공화국 제2공화국 수립 10주년 기념행사에 경축사절로 참석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함.

75-0513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3권 (V.1 각국 반응)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동북아1/정보1
MF번호	D-21 / 1 / 1-313

김일성 북한 주석의 1975.4.18.~26. 중국(구 중공) 방문과 관련하여 주요 공관이 보고한 각국 정부 반응 및 언론 반응임.

1. 일본

● 주일본대사는 1975.4.18. 도고 차관을 방문하여 면담한바, 동 차관은 북경 주재 일본대사관에 김일성 방문과 관련한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특별훈령한 바 있다고 언급함.

2. 영국

● 1975.4.19.자 가디언즈지는 김일성과 중국지도자 간 면담시 캄보디아 및 월남에서 공산혁명군 성공 후 변화된 아시아 정세가 논의될 것이며, 중국은 새로운 정세가 한국의 통일을 허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함.

3. 오스트리아

● 1975.4.20.자 쿠리어지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으로부터 남침계획을 위한 지지를 확보하고 형제지우를 공고히 하였으며, 아시아에서 공산군의 침공은 연합전선을 형성, 장기화하여 월남에서 공산군의 사이공 함락 전투가 사실상 종료된 지금, 남침시기는 점차 입박하여 오고 있다고 보도함.

4. 독일

● 독일 외무성 당국자는 1975.6.22. 주독일대사관 직원과의 면담시, 김일성은 중국 방문 연설에서 한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경우 이를 봉쇄할 것이며, 한국내에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 적절한 단계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으로 전쟁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등소평은 중국은 한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지원하겠다고 연설하여 양측의 이견을 노출하였다고 언급함.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3권 (V.2 방문결과 대통령 보고)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동북아1/정보1
MF번호 D-21 / 2 / 1-202

외무부는 1975.4월 김일성 북한 주석의 중국(구 중공) 방문결과를 2차례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동 보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 초청으로 1975.4.18.~26. 중국을 방문함.

- 모택동 면담 및 환영연회 참석(4.18.), 주은래 면담(4.19.) 및 등소평 부총리와 3차례 회담(4.19.~21.), 지방시찰(4.22.~24.)

2. 김일성의 방문기간 중 표명된 양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주한미군 철수
  - 등소평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조선인민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함.
- 북한의 소위 평화통일방안(남북협상을 통한 평화통일)
  - 등소평은 김일성의 평화통일 3원칙과 5개항 원칙은 조선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언급
- 대남혁명 및 무력행사(전면전에 의한 적화통일)
  - 김일성이 남한에서 혁명이 나면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등소평은 언급하지 않음.
- 한국 국내문제
  - 김일성이 남한사회의 불만과 분노를 무력으로 억누르면 혁명이 폭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등소평의 언급은 없음.

3. 각국 정부 및 언론 등은 김일성의 중국 방문 의도를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인도차이나 사태와 한반도 사태를 중심으로 한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중국 고위층 간에 정세 검토와 정책협의
-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전략추진에 대한 지원요청 및 설득(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역점)
- 비동맹권 진출과 1975년 유엔 문제와 관련한 협의 및 지원요청
-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신경제 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중국 측의 지원요청

4. 김일성 방중에 관한 미 국무부의 분석 요지는 아래와 같음(주한 미국대사의 수교문서).

- 김일성의 중국 방문 중 나타난 양측의 주장은 한반도 문제 및 북한·중국 관계에 관해 이미 확립된 양국의 노선과 괘를 같이 하는 의례적인 것으로 새로운 점이 없음.

75-0515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3권 (V.3 자료집)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동북아1/정보1
MF번호	D-21 / 3 / 1-265

김일성 북한 주석의 중국 방문 관련 자료임.

1. 연설문
   - 1975.4.18. 환영 연회 시 김일성 연설 및 등소평 연설
   - 1975.4.25. 연회 시 등소평 연설 및 김일성 연설

2. 공동성명
   - 1975.4.26. 중국·북한 공동성명(국문, 영문)
   - 중국·북한 공동성명 발표에 즈음한 외무부 성명(1975.4.29)
   - 1970년 및 75년 북한·중국 공동성명 내용 비교
   - 김일성의 연설, 인민일보 사설 및 등소평 연설요지
   - 북한·중국 공동성명 요지 및 평가
   - 북한·중국 공동성명 분석(외교연구원)
   - 북한·중국 공동성명에 대한 미 국무부 분석
   - 대공보 논평보도(1975.4.29.)에 대한 주홍콩 미국총영사관 평가
   - 북한·중국 공동성명에 대한 미 국무부 대변인 논평

3. 분석자료
   - 김일성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주한 영국대사관이 전달한 문서
   - 김일성 중국 방문에 관한 미 국무부의 분석(주한 미국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전달)
   - 김일성 중국 방문에 대한 각국의 반응

북한대표단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21 / 4 / 1-23

1975년 중 북한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함.

1. 북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대표단(1975.2.18.~28.)
   - 주요 활동
     - 사회당 방문, 동경도지사 예방, 사회당 주최 환영회 참석
     - 대학 방문, 동경·교토 관광
     - 철도공장, 전기공장, 교통기관 등 견학

2. 북한체육대표단(1975.4.1.~10.)
   - 주요 활동
     - 일본 체육협회 방문
     - 올림픽 관계 공연 및 마사협회 관계 공연 견학, 수영선수권대회 참관
     -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시찰

75-0517

김일성 북한 주석 소련 방문 추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담당관
MF번호	D-21 / 5 / 1-33

1975년 중 김일성 북한 주석의 소련 방문을 추진함.

1. 주일본대사관이 1975.5.27.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소련 정부는 김일성의 소련 방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함.

- 일본 외무성이 분석한 소련 측의 방문 거부 사유
  -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와병중이고, 김일성의 방소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인도차이나 사태 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는 시기에 소련이 중국에 이어 김일성을 받아들여 중국과 소련이 함께 중국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함.

2. 주소련 미국 대사관의 '대한반도 소련태도 분석'(1975.5.14.)은 김일성의 소련 방문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전망함.

-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악화 및 분쟁으로 인한 대미·대일 관계의 악화나 대결을 현시점에서 회피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도차이나 사태의 여운이 가신 다음에야 김일성의 방소를 받아줄 것임.

북한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동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21 / 6 / 1-46

강양욱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5.7~8월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및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함.

1. 시에라리온(1975.7.30.~8.5.)
   - 주요인사 예방
     - 대통령, 수상 예방
   - 부통령과 회담
     - 북한 측은 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지지 재확인 및 유엔에서 북한 측 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요청
   - 부통령 주최 리셉션

2. 부르키나파소(1975.8.7.~12.)
   -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만찬, 주요부처 장관 등과 회의
     -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북한의 비동맹 가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약속
   - 북한 원조 농장 방문, 여성 직업훈련소 방문, 박물관 방문

3. 코트디부아르(1975.8.11.~13.)
   - 공항에서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고 쿠체 의장(국가원수)을 면담함.

75-0519

북한 외교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동남아
MF번호	D-21 / 7 / 1-93

1975년 중 북한 외교사절단이 동남아 및 서남아를 순방함.

1. 차병옥 북한 외무성 제4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 5명이 1975.5.7.~22.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를 방문함.

- 방문기간
  - 태국(5.7.~10), 인도네시아(5.10.~13.), 호주(5.13.~22.)
- 동 북한사절단은 호주 방문 후 피지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피지 측의 입국 중지 조치로 방문이 좌절됨.

2. 허담 북한 외교부장이 1975.7.30.~8.11.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 인도(7.30.~8.2.)
  - 대통령·수상 예방, 외무장관 회담, 산업시찰
- 스리랑카(8.2.~4.)
- 말레이시아 방문(8.5.~7.)
  - 수상·부수상·농업장관 등 예방, 외무장관 예방 및 외무부 간부와 회합
- 인도네시아(8.7.~11.)
  -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 회담
  - 허담 외교부장은 대통령 예방 시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비동맹 가입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김일성 친서를 전달함.
- 싱가포르 방문 추진(취소)
  - 싱가포르는 북한 측 요청대로 허담의 싱가포르 방문일자(8.11.~13.)를 확정하였으나,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전화로 방문 취소를 통보함.

김일성 북한 주석 동구 및 중동지역 순방, 1975.5.22.-6.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정보1/구주3
MF번호 D-21 / 8 / 1-391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75.5.22.~6.9. 동구 및 중동지역(루마니아, 알제리, 모리타니아, 불가리아 및 유고슬라비아)를 순방함.

1. 루마니아(5.22.~26.)
- 체우셰스쿠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
  - 양국간 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과 상호관심사인 국제문제 토의
- 공동성명
  - 루마니아는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 강령 지지 및 남한으로부터 외국군 철수 주장
- 북한·루마니아 간 친선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2. 알제리(5.26.~30. 및 6.1.~2.)
- 부메디안 알제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3회)
  - 양국간 친선협조관계 발전 문제 및 국제문제 토의
- 공동성명
  - 알제리는 비동맹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북한의 자주적인 대내외 정책을 높이 평가
  - 양측은 남한으로부터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의 자주적·평화적 통일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가 공동노력할 것을 호소

3. 모리타니아(5.30.~6.1.)
- 다다흐 모리타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 상호 친선협조관계 발전 문제 및 공동 관심사 토의
- 공동성명
  - 모리타니아는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4. 불가리아(6.2.~5.)
- 주코프 불가리아 공산당 제1서기와의 정상회담(3회)
  - 양국간 친선협조관계 발전 문제 및 국제문제 토의
- 공동성명
  - 불가리아는 김일성의 통일 5대 강령을 지지하고 남한으로부터 외국군대 철수 주장

5. 유고슬라비아(6.5.~9.)

-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2회)
  - 양국 친선협조관계 발전 문제 및 국제문제 토의
- 공동성명
  - 유고는 북한의 대외정책과 비동맹 원칙 간의 일치를 강조하고 남한으로부터 외국군 철수 주장

북한사절단 중남미 순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2010-87 / 25 / 1-264

1975년 중 북한사절단이 중남미지역을 순방함.

1. 이종목 북한 외무성 부부장이 1975.3.23.~4.12. 파나마, 페루, 멕시코를 방문함.

- 파나마(3.23.~4.2.)
- 페루(4.2.~8.)
- 멕시코(4.8.~12.)
  - 내무장관, 외무차관, 외무부 정무총국장 등 면담

2. 권민준 주유엔 북한대사가 니카라과와 볼리비아를 방문함.

- 니카라과(4.15.~18.)
- 볼리비아(6.12.~13.)
  - 외무장관과 차관을 예방, 외교관계 수립 및 비동맹회의 시 북한지지를 요청하고 볼리비아 사절단 북한 방문 초청

3. 손성필 북한 정무원 고등교육부장이 1975.6.2.~7.3. 중남미 4개국(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을 순방함.

- 페루(6.2.~6.)
- 베네수엘라(6.6.~12.)
  - 대통령 예방, 외무차관, 문교장관 등 면담 및 국회 방문
- 콜롬비아(6.21.~29.)
- 에콰도르(6.29.~7.3.)
  -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4. 북한 언론인단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자메이카를 방문함.

5. 정준기 북한 부수상이 1975.7.17.~8.12. 중남미 6개국(가이아나,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페루)을 방문함.

- 가이아나(7.17.~21)
- 자메이카(7.21.~25.)
- 트리니다드토바고(7.25.~31.)
  - 수상, 유류광산장관, 외무차관 면담

- 베네수엘라(7.31.~8.5.)
- 아르헨티나(8.5.~11.)
  - 대통령, 외무장관, 상원의장, 경제장관 등 면담
- 페루(8.11.~12.)

6. 권희경 주소련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를 방문함.

- 베네수엘라(10.21.~23.), 에콰도르(10.23.~24.), 콜롬비아(10.24.~)

7. 오만석 북한 외교부장 정치고문이 1975.10.21.~11.2. 페루와 파나마를 방문함.

- 페루(10.21.~22)
- 파나마(10.22.~11.2.)

Bonge, El Hadj Omar 가봉 대통령 북한 방문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D-21 / 10 / 1-25

봉고 가봉 대통령의 북한 방문 추진 관련사항임.

1. 봉고 대통령은 1975.6.29.~7.2.로 예정되었던 북한 방문을 취소함.

2. 봉고 대통령은 1975.7.10. 귀국 기자회견 시 북한 방문 취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 루마니아와 중국(구 중공) 방문기간 중 북한 측은 자신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도록 루마니아, 중국, 가봉상주 북한대사 및 평양상주 가봉대사 등을 통해 강요하여 매우 불쾌함.
   - 자신으로서는 당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 양방을 방문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평양 방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음.

75-0523

Ashari, D. 인도네시아 외무차관 북한 방문, 1975.6.21.-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
MF번호	D-21 / 11 / 1-12

Ashari 인도네시아 외무차관이 1975.6.21.~24. 북한을 방문한바, 동 기간에 개최된 인도네시아·북한 외무차관 회담의 주요내용임.

1. 이성희 부부장 언급내용

- 인도네시아 측에게 비동맹회의에 북한만 가입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
- 북한 측은 조국의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표명

2. Ashari 차관 언급내용

- 인도네시아의 중립외교 정책상 분단국 문제에 엄정 중립입장
- 한국문제 해결방안으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우쓰노미야(宇都宮德馬) 일본 자민당 의원 북한 방문, 1975.7.12.-2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정보2
MF번호	D-21 / 12 / 1-120

우쓰노미야(宇都宮德馬) 일본 자민당 의원이 1975.7.12.~20. 북한을 방문함.

1. 우쓰노미야 의원은 1975.8.9. 자민당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방문기간 중 김일성으로부터 부탁받은 미키 일본 수상 앞 전언을 미키 수상에게 전하였다고 밝힘.

- 동 전언은 7.15. 김일성과의 비밀회동 시 김일성의 발언내용을 정리하여 동석한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과 협의하여 작성됨.
  - 남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불변
  - 무력에 의한 남진은 하지 않음.
  - 대화상대와는 언제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
  - 남북 조절위의 중단은 한국의 대북 적대행위와 왜곡선전 때문임.
- 우쓰노미야 의원은 7.30. 동 전언을 문서형식으로 미키 수상에게 수교하고 일본·미국 수뇌회담 시 미국 측에도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미키 수상은 1975.7.31. TV 인터뷰에서 자신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역을 담당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의 참여 없는 미국·북한 접촉은 무익한 일이라고 밝힘.

75-0525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문제연구회 의원단 북한 방문, 1975.7.22.-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정보2
MF번호	D-21 / 13 / 1-55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 의원단이 1975.7.22.~28. 북한을 방문함.

1. 방문단
   - 중의원 의원 10명. 참의원 의원 3명 등 13명으로 구성
   - 자민당은 동 방문단을 공식대표단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간주함.

2. 주요 방북활동
   -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 면담
     - 양측은 일본·북한 관계개선, 무역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관해 논의
   - 김일성 면담(김일성 언급내용)
     - 일본의 대한국 경제협력 비난
     - 일본의 대북한 정책전환 촉구
     - 휴전선의 땅굴은 조작이라고 책임전가

3. 동 의원단 중 일부 의원은 김일성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친북한·친김일성 발언을 함.

일본 주요 대표단 북한 방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D-21 / 14 / 1-42

1975년 중 일본의 주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함.

1. 마이니치신문 편집국장

- 북한은 노동당 설립 30주년을 기해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언론간부의 초청 추진
- 고미 미쓰오 마이니치신문 편집국장은 1975.7.15. 평양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 방북을 중지

2. 무역진흥회조사단

- 일본 외부성은 평양 개최 일본 산업전 관련 협의차 일본무역진흥회 직원 등 조사단이 1975.1.13. 북한 방문예정임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 주일본대사관 공사는 1.10.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방문, 일본·북한 간 견본시 상호개최의 문제 등 한국입장을 전달

3. 일본 청년주체사상연구회

- 일본 방위청 관계관에 의하면 동 연구회는 1973년 이래 매년 친선교류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1975.4.7.부터 방문 활동 중임.

4. 일본·조선 국교정상화 국민회의대표단

- 일본·조선 국교정상화 국민회의대표단(단장: 산다쿠 사회당 전부위원장)은 1975.4.27.~5.12.간 북한을 방문
- 방북 중 5.8. 김일성을 면담, 한반도 통일 및 인도차이나 정세에 따른 동북아 정세변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언론이 보도

5. 사회당대표단

- 사회당대표단(단장: 다테 조선문제대책 특별위원장)은 1975.7.6.~16. 간 북한을 방문
- 5.13.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동맹 참가, 남북한 통일문제 등 논의

6. 요미우리신문대표단

- 동 신문대표단(단장: 스쿠다 사회부 부부장)은 1975.10.3.부터 북한을 방문.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 등 면담

75-0527

일본·북한 경제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정보1
MF번호	D-21 / 15 / 1-97

1975년 중 일본·북한 간 경제관계 동향임.

1.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통산성 무역국 수출보험기획과에서 작성한 북한의 최근 경제 동향 및 대북한 수출보험 관련 자료를 1975.3.5. 외무부에 송부함.
   - 인구, 국민총생산, 무역액 등 기본사항
   - 1973~74년 북한의 경제동향 일반
   - 북한의 대외무역 기본방침 등

2. 주일본대사관은 집무자료 "최근 일본·북한 경제교류 동향"을 1975.4.21. 외무부에 송부함.
   - 일본·북한 무역거래 동향
   - 북한의 대일 무역결제지연 문제
   - 대북한 플랜트 등 수출 관련 수출은행자금 사용문제
   -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저지 문제
   - 대북한 강관 수출저지 문제 등

3. 외무부는 일본·북한 간 무역대표부 설치 관련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1975.9.6. 주일본대사에게 일본 측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일본 간 우호관계에 비추어 무역대표부의 상호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우리의 강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지시함.

4. 주일본대사관 경제담당관실은 1975.10.13. "북한의 대일 무역현황" 자료를 작성함.
   - 1970년 이후 일본·북한 간 무역거래 동향
   - 주요 품목별 수출입 실적 및 동향 분석
   - 일본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경쟁전망 및 분석평가
   - 일본의 북한에 대한 교역상의 대우 및 협정체결현황 등

일본·북한 어업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D-21 / 16 / 1-93

1975년 중 일본·북한 어업 관련 사항임.

1. 일본 수산관계자 북한 방문 계획

- 주일본대사는 일본 수산청 관계자 등 8명의 9월 북한 방문계획 언론보도를 1975.7.15. 외무부에 보고
- 수산청은 일본 수산청대표단의 방북 목적 등 조사를 7.24. 외무부에 요청
- 주일본대사관이 8.22. 전어련을 접촉, 확인 결과 수산청대표단의 방북 보도는 근거가 없음을 보고

2. 북한의 대일 어업대금 상환문제

- 북한을 방문 중인 다무라 자민당 의원이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 면담 시 북한은 대일 어업대금 조속상환계획을 언급하였다고 1975.7.26.자 마이니치신문이 보도

3. 북한 경비정의 일본어선 총격사건

- 북한 경비정은 1975.9.2. 북한 근해에서 조업 중인 일본 연승어선에 무차별 총격, 선원 2명 사망, 2명 부상
- 동 사건 관련 아베 일본 농상은 9.9. 기자회견에서 사상자수와 사실확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4. 일본의 대북한 민간어업협정 추진

- 수산청은 일본이 북한과 민간어업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1975.9.9. 외무부에 요청
-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이 9.9.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에게 확인한바, 어업협정 체결에 관한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함.

5. 일본어선 석방

- 북한 중앙통신은 1975.9.11. 북한에 억류된 일본어선 쏘세이마루호를 석방한다고 발표
- 미야자와 일본 외상은 동일 기자회견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어업협정보다는 북한의 영해범위 파악이 우선이며 유가족에 대한 북한 조의금 송금을 평가

6. 일본 사회당 부위원장 북한 방문

- 일본 사회당 부위원장 등은 1975.10.9. 북한을 방문, 민간어업협정 및 공적기관 설치 등 협의
- 김영남 국제부장은 일본 사회당대표단에게 동경무역사무소 설치 백지화, 일본 정부의 보증 없는 민간어업협정 체결 불가능을 언급

75-0529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저지 교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21 / 17 / 1-131

1975년 중 대북한 플랜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저지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내용

- 주일본대사는 1975.1.18. 도고 일본 차관 주최 오찬에 참석, 대북한 플랜트 수출문제 등 협의, 동 차관은 통산성이 7~8건의 플랜트 수출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나 외무성은 모르고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
- 외무부는 일본 측에 대해 플랜트 수출이 북한의 전력을 증강시킴을 지적하고 재고하도록 1.22. 주일본대사에게 지시
- 주일본대사는 1.30.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를 면담, 수은 자금사용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 동 부총재는 자금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
- 주일본대사는 2.6. 외무차관을 방문, 일본 국회에서 논의된 한국의 부실기업자료 국회제출 및 대북한 수은 자금 사용문제를 협의
- 주일본대사는 2.13. 스미다 수은 총재를 면담, 수은 자금사용 문제에 관한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수은 측의 협조를 촉구
- 외무부는 2.17. 대북한 수은자금 사용반대 입장을 전제로 10건의 수은자금 사용승인 불허 노력을 지시
- 도고 차관은 2.19. 주일본대사에게 10건 중 제일 큰 1건의 중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언급

2. 언론 보도

- 1975.1.6. 아사히신문은 '대북한 수은융자 당분간 불인정, 외무성 방침' 제하로 일본 외상은 한·일본 관계 정상화 최우선 추진 보도
- 5.20.자 중앙일보는 동경특파원발 기사로 일본 정부는 대북한 수은 자금사용을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

북한의 대서구 채무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철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21 / 18 / 1-81

1975년 중 북한의 대서구 채무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 내용임.

1. 해외 언론

- 핀란드 Turun Sanomat지(1975.2.11.): Money and Friend 제하 사설
- 핀란드 Satakunnan Kanea지(2.11.): Friendship and Money 제하 사설
- Los Angeles Times(2.10.): 사설
  - 대서방 외채 미상환 첫 사회주의 국가로 언급
- 일본 경제신문(7.5.): 런던특파원발로 유로시장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경우 6개월 정도 지불지연이 되며 변제기한 연기교섭 차 대표단이 구주 각국을 순방하고 있다고 보도
- 영국 The Times(3.13.): 국제금융업자는 북한 등 개도국에 의한 유로차관 이자연체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요미우리신문(5.22.): 일본 정부는 북한의 외화사정의 급속한 악화로 수출보험 인수의 정지 의향 시사
- The Far Eastern Economic Review(6.6.): 북한의 재정능력 없음이 판명되자 서방국들은 경제적 거래를 꺼림.
- The New York Times(8.8.): 북한은 작년 7월 이래 외채상환을 불이행
- Le Monde(10.7.): 북한에 대한 11개국 채권국 대표들은 부채상환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식 회합을 파리에서 개최

2. 국내 언론

- 동아(11.24.): 외채위기에 빠진 북한
- 조선(11.21.): 북한 외채위기 심각
- 서울경제(11.25.): 북한 채무불이행, 골치 앓는 서방은행
- 서울(12.25.): 외채로 곤경에 몰린 북한

75-0531

북한의 대미국 직접 평화협정 체결제의 및 대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국제연합
MF번호	D-21 / 19 / 1-23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유엔사무총장과 미 국무장관 간의 서한 등에 관한 내용임.

1.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대한 검토문서

- 개황: 평화협정체결 제의 시초, 거론 중단, 제거론, 평화협정체결 상대방 변화
- 일지
  -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의 제안
  - 1955년 외무성 대유엔 성명
  - 1960년 8.15 경축 김일성 연설
  - 1973년 김일성 9.9절 경축 연설 등

2. 휴전협정의 대미평화협정 대치 제의의 부당성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제출 한국 측 각서 및 한국대표 연설문

3. 대미 평화협정체결 저의(1974년 제29차 유엔총회 교섭대비 훈령)

- 한국을 대내외적으로 중상하고 한·미국 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려는 처사
- 주한 유엔군과 미군의 철수를 통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 초래 기도

4.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의 서한 및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회신

- 발트하임 사무총장은 1975.10.14.자 서한에서 주유엔 북한대사와의 회합 시 북한 측이 미국과의 직접 접촉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고 언급
- 키신저 국무장관은 10.20. 한국의 참가하에 한반도의 문제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회신

동구권과의 인사교류 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E-13 / 1 / 1-28

1975년 중 동구권과의 상호교류 현황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인의 동구권 방문

- 유고슬라비아: 한국적십자사 부총재의 1975.6월 세계평화회의 참석 등 32건
- 동독: 동아일보 기자의 관광 방문 등 3건 3명
- 루마니아: 보사부차관의 1974.8월 세계인구회의 참석 등 4건 23명
- 헝가리: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1975.2월 헝가리 중앙은행과의 거래가능성 타진 등 7건 7명
- 불가리아: 제18회 세계체조선수권대회(1974.10월) 참가 등 8건 23명
- 폴란드: 학술교류협의 등 9건 49명
- 체코: 취재 등 7건 27명

2. 동구권 인사의 한국 방문

- 불가리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사업평가단 등 2건 2명
- 체코: 중립국 감시위 장교 등 11건 24명
- 폴란드: 중립국 감시위 대표 등 11건 11명
- 루마니아: ABC 여자농구대회 참석 등 6건 7명
- 유고슬라비아: 상담 등 39건 48명

75-0533

대동구권 관계개선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E-13 / 2 / 1-240

1974~76년 중 동구권 인사 방한 초청 및 대동구권 홍보 등 대동구권 관계개선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임.

1. 동구권 관계개선 강화방안

- 공관의 대동구권 관계개선 계획 보고: 주오스트리아, 일본대사관 등

2. 국제기구 근무 동구권 인사 방한 초청 추진

- 외무부는 ILO(국제노동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근무 동구권 인사 명단조사를 1975.9.27. 관계공관에 지시
- 외무부는 한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원조 및 기술훈련사업 등으로 연계가 있는 동구권 인사의 방한 초청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관련공관에 지시
- 관계부처 및 공관은 WHO,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근무 동구권 인사의 방한을 추천

3. 언론인 방한 초청 추진

- 외무부는 동구권 특파원의 주재현황을 조사하도록 관계공관에 1975.9.15. 지시
- 문화공보부는 1972년 이래 동구권 언론인 초청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하고 방한 초청 확정시 최대한 협조제공 표명

4. 동구권 공관에 대한 홍보활동

- 외무부는 동구권 공관에 대한 홍보자료 발송여부 및 반응을 보고하도록 1974.11.28. 지시

5. 동구권 연구기관 접촉 활동

- 동구권 해외연구기관
  - 오스트리아: 도나우 유럽연구소, 동구 및 동남 유럽연구소 등
  - 이탈리아: CESES
  - 프랑스: 슬라브학연구소 등
- 국내연구기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우방국을 통한 대동구권 관계개선 추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E-13 / 3 / 1-13

1975년 중 대동구권 관계개선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5.3.28. 루마니아 대통령의 4.9. 필리핀 방문 시 우리의 대동구권 관계개선 의사를 루마니아 측에 전달하여 주도록 주필리핀대사에게 지시함.

2. 주필리핀대사는 1975.3.31. 상황 허용 시 루마니아 대통령을 직접 예방, 전달해도 무방한지를 청훈함.

3. 외무부는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나 예방을 시도할 수 있음을 회시함.

4. 로물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1975.4.15. 주필리핀대사에게 한국문제를 제기하여 본바, 자신의 느낌으로는 소련의 입장불변으로 여타 동구권 국가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5.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단이 1975.9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 5개국 순방 중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바, 동구권 측은 한국인 자신의 한반도 문제 결정, 외국군 철수, 유엔가입으로인한 분단고착화 등 반응을 보임.

6.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체코 외무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시 한국문제를 거론하고 관계개선을 종용하였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고 네덜란드 아주국장대리가 1975.12.11. 주네덜란드대사에게 언급함.

75-0535

공산권지역 경유 여행 - 불가리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E-13 / 4 / 1-5

1975년 중 공산권지역 경유 여행 관련 사항임.

1. 불가리아 경유 중 교통사고

- 한국인 운전공이 스페인을 출발, 1975.11.17. 불가리아를 통과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류되는 사건이 발생

2. 재발방지

- 주이란대사는 유의사항 주지 등을 통한 사후 재발방지 강구 필요성 건의

공산권 여행허가 - 폴란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E-13 / 5 / 1-17

1975년 중 폴란드 방문 관련 사항임.

1. 복싱 임원 폴란드 파견

- 문교부는 1975.3.20. 국제 복싱경기의 발전 및 스포츠를 통한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4월 소련 개최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 집행위 및 심판위원회에 대한 아마추어복싱연맹 부회장 파견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
- 외무부는 대공산권 관계개선에 유익할 것이라고 회신
- 문교부는 심판위원회가 6월 폴란드에서 개최된다고 통보하면서 방문 허가를 문의
- 외무부는 폴란드 방문허가를 회신
- 문교부는 주일본 폴란드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5.12.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
- 외무부는 이 사항을 주일본대사에게 통보, 비자발급 협조제공을 지시

2. 태권도사범 폴란드 방문

- 독일 거주 태권도사범은 태권도 시범경기 참가 차 1975.11월 폴란드 방문

75-0537

동구권 교류 - 소련인 입국허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E-13 / 6 / 1-9

1975년 중 소련인 입국허가 관련 사항임.

1. 국제기구 근무 소련인 방한

- 유네스코 사회과학국제개발과장인 소련인은 1975.10.21.~24. 방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사업협의, 문교부장관 예방, 서울대학교 방문, 유네스코 위원회 세미나 참석 등 활동

2. 소련 레슬링선수단 초청

- 대한아마추어레슬링협회는 1975.12월 및 1976.1월 교환경기차 일본을 방문하는 소련아마추어 레슬링선수단을 방한 초청, 친선경기 추진을 위한 방문허가를 1975.10.31. 외무부에 신청

공산권 여행허가 - 동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홍보문화
MF번호	E-13 / 7 / 1-8

1975년 중 공산권 여행허가 관련 사항임.

1. 주터키대사는1975.8.28. 국방부 지시에 따른 무관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방문을 위해 사증신청 공한을 동구권 국가에 발송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외무부에 청훈함.

2. 주터키대사는 1975.10.15. 외무부 훈령에 따라 여행국 공관에 관광사증 발급 공한을 발송함을 보고함.

75-0539

동구권 교류 - 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E-13 / 8 / 1-57

1975년 중 동구권과의 교류 관련 사항임.

1. 태권도사범 유고 방문

- 동아대 조교인 태권도사범은 오스트리아에서 태권도 보급 활동 후 1975.2.15.경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 3개국 시범 활동차 여행허가를 신청
- 방문 일정
  - 2.19. 유고 입국, 1차 시범
  - 2.20. 카라데 학원에서 수련생 대상 시범지도, 나이트클럽에서 2차 시범

2. 유고 기술자 방한

-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사무소 초청으로 유고 기술자 9명의 고리 원자력단지건설 시설 시찰차 1975.6.7.~15. 방한을 신청
- 외무부는 동구권과의 실질적 관계증진을 고려, 입국 허용

3. 한국선박 유고기항 허가

- 선장 외 30명 전원 한국선원 승선선박의 화물 수송차 유고 기항 허가신청
- 외무부는 대동구권 관계개선 정책에 비추어 허가

4. 한국 기업인 유고 방문

- 삼본산업사장은 1975.8.7.~8.11. 유고를 방문, 상담 및 공장견학

5. 기타 한국인 유고 방문

- 서독 여자배구팀 코치는 1975.10월 유고 개최 유럽선수권대회 참가차 유고 방문을 신청
- 인하대 교수 등 학계인사 2인은 회의 참석차 유고 방문을 신청
- 한국나일론 직원 1인은 상담차 10월 유고를 방문

국제회의 등을 통한 동구권 교류 - 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E-13 / 9 / 1-72

1975년 중 동구권 교류 관련 사항임.

1. IDRC(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 주관 국제회의 참가차 유고 방문

- 한국과학원 교수는 1975.4.4.~7. 유고 개최 국제회의에 참가

2. 국제적십자평화회의 참가차 유고 방문

- 국제적십자사는 유고적십자사와 공동주최하는 세계적십자평화회의(1975.6.11.~13., 베오그라드)에 대한적십자사를 초청
- 이범석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3명이 동 회의에 참가

3. 한국과학원 주최 국제회의 유고인 참가

- 한국과학원은 1975.7.10.~19.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4차 과학기술정책수단연구회의 11개국 공동연구 참가국에 유고인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초청 가능 의견을 문의
- 유고인 교수는 1975.7.7.~16. 방한

75-0541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1 기본대책 I: 2~4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6 / 1 / 1-297

1975.8.25.~30.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한 기본대책임.

1. 교섭경위
- 외무부는 1975.1.24. 리마에서 8월 개최 예정인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하여 페루 외무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주페루대사에게 지시
- 외무부는 1975.3.6. Talking Paper를 주유엔대표부 등 공관에 송부, 외교활동에 활용하도록 지시
- 외무부장관은 1975.3.25. 뉴욕에서 라이베리아 외무장관과 면담, 비동맹조정위회의 및 방한 문제 등을 협의
- 주페루대사는 1975.4.4. 외교단장, 외교단 사무국장, 페루 외무부 차관보 등 면담, 비동맹 관계를 협의
- 외무부는 하바나회의 경과 및 국별태도를 관련공관에 1975.4.11. 통보
- 외무부는 비동맹 가입신청을 신중하게 검토 중임을 관련공관에 1975.4.12. 통보

2. 비동맹 특수대책자료(1975.3.31., 아중동국 서부아프리카과)
- 유형별 대책: 고위특사 파견, 유력인사 방한 초청, 원조제공,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기술원조 등
- 국별 대책: A그룹(중앙아, 차드, 가봉 등), B그룹(카메룬, 가나), C그룹(니제르, 세네갈 등)

3. 비동맹회의 자료(1975.4월, 외무부)
- 비동맹정상회의 연혁과 성격, 제4차 비동맹정상회의 이후 동향
- 비동맹회의 참가자격 및 가입절차, 참고자료 등

4. 1975년도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비동맹 대책(1975.4.11., 방교국)
- 관련 정세 및 문제점, 기본대책, 대책 시행방안, 국별 교섭목표, 참고자료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2 기본대책 II: 5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6 / 2 / 1-259

1975.8.25.~30.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한 기본대책임.

1. 교섭경위

- 외무부는 1975.4.30. 1976.9월 개최예정인 스리랑카 비동맹정상회의 관련 알제리 또는 말레이시아로의 장소변경을 주장하는 아랍국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주유엔대표부 등에 지시
- 외무부는 1975.5.12. 비동맹외무장관회의 기본대책으로 북한의 비동맹 단독가입 저지 및 북한지지 결의안 채택 봉쇄를 위한 방안을 수립, 한국의 정식 가입신청서 제출 및 특별·중점 교섭대상국 결정
- 외무부는 특별(20개국) 및 중점 교섭대상국(31개국)과 교섭목표를 1975.5.15. 관련공관에 통보
- 외무부는 비동맹 74개국의 구성성분 등 감안한 교섭지침을 1975.5.16. 관련공관에 훈령
- 외무부는 주최국인 페루 외무장관 및 비동맹 조정위 의장 앞으로 정회원국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1975.5.19. 관련공관에 훈령
- 외무부는 1975.5.24. 비동맹 관련 Aide-Memoire를 전 공관에 타전, 활용을 지시

2. 비동맹외무장관회의 대책자료(1975.5.7. 방교국)

- 비동맹외무장관회의 대책: 목표, 방안, 조치사항
- 특별 및 중점교섭 대상국
- 주요 비동맹 반응 및 태도분석

75-0543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3 기본대책 III: 6~8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6 / 3 / 1-470

1975.8.25.~30.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한 기본대책임.

1. 교섭경위
- 정부는 주유엔대사를 통해 비동맹조정위 의장 앞으로 1975.6.2. 가입신청서를 제출
- 주유엔대사는 1975.6.11. 비동맹조정위내 한국가입 신청 토의경과를 외무부에 보고
- 뉴욕 비동맹조정위 대사급회의를 1975.6.27. 개최, 가입신청은 리마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
- 외무부는 1975.7.16. 비동맹외무장관회의 의제10항의 한국문제에 대한 대주재국 교섭방침을 관련공관에 하달
- 외무부는 비동맹 가입교섭 중간결과를 관련공관에 통보
- 외무부는 1975.7.24. 한국입장 관철을 위한 페루 외교교섭 강화를 주페루대사에게 지시
- 겸임국(관할국) 지지 확보를 위한 외무부장관 명의 친서를 1975.8.11. 관련공관에 송부

2. 비동맹회의 현황자료(청와대 브리핑)
- 관련 정세
- 정부대책: 단기 및 중장기 목표, 비동맹 조정위원국 대상 한국입장 설명 각서전달, 특사파견
- 한국가입 신청처리 현황, 전망

3. 비동맹외무장관회의 대비 교섭단 파견건의(안)(1975.7.26., 외무부)
- 아주, 아프리카 각료급 교섭사절단, 아세안 5개국 비동맹 유엔관계 실무자 파견
- 외무장관회의 페루 교섭단, 카이로 및 아랍연맹사무총장 방문

4. 리마 비동맹회의 대책 현황자료(1975.8.19., 방교국)
- 관련 정세 및 평가, 정부기본방침, 조치사항, 교섭결과 및 평가, 전망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4 국가별 지지교섭 I: 아주·미주지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6 / 4 / 1-531

1975.8.25.~30. 페루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한 아주 및 미주지역 지지교섭 내용임.

1. 아주지역

- 대상국: 네팔, 말레이시아, 미얀마(구 버마), 방글라데시 등 12개국
- 주요 활동내용
  - 주네팔대사의 1975.7.14. Krishnarajaryal 외상 면담 등 교섭활동, 네팔은 모든 국가의 가입 지지
  - 주말레이시아대사의 3.5. 라작 수상, 외무장관 등 면담,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비동맹가입 지지
  - Hossin 방글라데시 외상은 6.26. 주방글라데시대사 면담시 한국가입에 대한 입장 이해 표명
  - 부탄대사는 6.21. 부탄의 한국가입 지지 결정공한을 주인도대사에게 송부
  - Bogaars 싱가포르 외무차관은 6.23. 주싱가포르총영사 면담 시 한국가입 지지 언급
  - 주인도대사는 5.22. 차반 외상 면담 등 교섭활동, 인도는 가입이 양자적 차원이 아니라 다자적 차원의 문제이며 가입여부는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반응
  - 주인도네시아대사의 말리코 외상(7.10.), 수하르토 대통령(8.11.) 면담 등 활동, 국제기구국장, 정무차관보는 남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
  - 주필리핀대사는 5.9. 로물로 외상 면담 등 교섭 활동

2. 미주지역

- 대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9개국
- 주요 활동내용
  - 주멕시코대사의 1975.5.6. 라바사 멕시코 외무장관 면담시 멕시코는 옵서버이기는 하나 타국과 협조 지원할 의사 표명
  -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외무장관 면담시 여타 비동맹국들의 의사 타진 후 결정. 미군 주둔의 문제성 지적
  - 주페루대사의 8월 가이아나 출장시, 가이아나 외무장관은 남북한의 동등한 대우 언급
  - 코스타리카 외무장관은 8.14.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한국가입 지지 입장 표명
  - 주파나마대사의 8.22. 파나마 외무장관서리 면담 등 활동

75-0545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II: 중동·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6 / 5 / 1-518

1975.8.25.~30. 페루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한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지지교섭 내용임.

1. 중동지역

- 대상국: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등 10개국
- 주요 활동내용
  - 하산 모로코 국왕은 1975.5.13. 특사에게 한국의 조속 가입 및 우방국의 지지 획득 권유
  - 사우디 측은 한국가입 지지를 아랍국가에 서면 종용할 용의 표명
  - 요르단 정무국장은 8.2. 주요르단대사대리에게 문서로 통보한 바에 따라 한국가입을 지지
  - 화미 이집트 외무장관은 8.16. 주이집트대사에게 가입 문제는 컨센서스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대세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
  - 쿠웨이트 외무장관은 6.11. 주쿠웨이트대사에게 한국가입에 동정적이나 노골적으로 두둔할 수 없다는 입장
  - 튀니지 외무담당 국무상은 8.6. 주튀니지대사에게 남북한 동시가입 지지 결정 언급

2. 아프리카지역 교섭 내용

- 대상국: 가나,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등 23개국
- 주요 활동내용
  - 가봉 사무차관은 1975.8.4. 한국지지 입장 불변 표명
  - 감비아 외무장관은 7.7. OAU(아프리카단결기구)에서 한국문제 거론시 한국입장 대변 언급
  - 라이베리아 외무장관은 6.5. 주유엔대사에게 북한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지는 않되 반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부르키나파소 외무장관 및 사무총장은 각기 6.2. 및 5.31. 남북한의 비동맹 동시가입 지지
  - 세네갈 외무장관은 4.28. 외무부차관 방문시 한국가입 제안을 지지
  - 시에라리온 외무부는 7.24. 한국의 비동맹가입 지지 구상서 송부
  - 우간다 외무장관은 5.27. 주우간다대사에게 비동맹 관련 남북한 균형된 입장에 찬의 표시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외무장관은 8.18.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게 지지 입장 원칙 재강조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6 현지교섭 및 회의경과)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7 / 1 / 1-376

1975.8.25.~30. 페루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 대비한 현지교섭 및 회의 경과에 관한 내용임.

1. 현지 교섭

-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교섭단 페루 파견을 1975.7.30. 결정
- 여타 지역 교섭단 파견
  - 1975.8.1.~15. 아주(농수산부장관), 아프리카(문공부장관)
- 외무부장관은 8.20. 페루 외무장관과 양국간 관계강화 및 비동맹회의 관련 제1차 회의 개최
- 외무부장관의 8.23. 면담 활동
  - 세네갈 외무장관: 세네갈은 한국입장 지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으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
  - 라이베리아 외무장관: 조정위 및 외무장관회의에서 한국입장 지지 및 발언 약속
  -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하바나 및 뉴욕에서 한국입장을 많이 대변하였으므로 리마에서는 더 이상의 발언 자제 표명
  - 아프가니스탄 외무장관: 가입자격 기준의 엄격한 적용 발언 표명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외무장관: 남북 동등 취급 원칙 지지 다짐
- 외무부장관은 8.24. 튀니지 및 가이아나 외무장관과 면담

2. 회의 경과

- 조정위 회의 진행
  - 1975.8.24. 외무장관급회의: 오스트리아 등 8개국 초청 결정, 가입 문제 논의
  - 1975.8.25. 외무장관급회의: 한국가입 문제는 컨센서스로 본회의에 회부. 북한가입 신청은 하바나회의 권고를 토대로 본회의 회부
- 외무장관회의 진행
  - 1975.8.25. 외무장관회의 개막식: 페루 대통령 연설, 의장단 선출, 의제 채택, 가입문제
  - 1975.8.26. 외무장관회의 본회의: 비공식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가입은 일부 유보하에 승인하고 한국가입은 컨센서스로 부결
  - 1975.8.28. 정치위원회 작업반회의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페루 측 시안을 심의하고 북한 지지 세력은 수정안 제기

75-0547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7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7 / 2 / 1-157

1975.8.25.~30. 페루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 대한 결과분석, 평가 및 후속조치임.

1. 결과분석 및 평가

- 전략목표
  - 북한 단독가입 최대한 저지
  - 비동맹내 한국지지 확보로 유엔총회에 미칠 영향 최소화
- 교섭성과 및 전략
  - 한국입장 지지 발언 확약 7개국 등 42개국으로부터 유리한 반응 확보
  - 알제리 등 비동맹 내 북한지지 주도세력 완화 시도 어려움
- 평가
  - 막후 협상을 통한 일괄 연기안 등이 알제리 등 북한지지 세력의 극렬 반대로 좌절되는 등 한국의 전략에 차질
  - 비동맹회의에서 최초로 비동맹국의 한국입장 지지 발언을 통해 한국문제에 관한 비동맹 내 대립을 공식화하는 성과

2. 후속조치

- 성명 발표
  - 외무부장관 성명 발표(1975.8.26., 페루): 한국의 가입신청을 지지하는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한가입안만 승인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비동맹회의가 한반도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긴장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
  - 리마 비동맹외무장관회의 채택 최종문서 중 한국조항에 대한 대한민국 대표단 성명(8.30.): 동 문서가 한국 통일문제에 관해 북한만을 언급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처사로 남북한 간의 민족적 화해과정을 저해할 것을 우려
- 친서 발송: 입장 지지 사의 등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8 친서 및 회의 준비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7 / 3 / 1-251

1975.8.25.~30. 페루 비동맹외무장관회의 관련 대통령 친서, 면담자료 등을 수록함.

1. 대통령 친서
- 대통령 친서 발송 건의(1975.7.28.)
  - 비동맹 24개국 국가원수 또는 수상 앞 발송
  - 아울러, 비동맹 20개국 외무장관 앞으로 외무부장관 친서 발송

2. 교섭단 자료
- 비동맹 기본입장
- 면담자료
- 참고자료: 한국입장 설명 Aide-Memoire, 한국문제 Position Paper, 우방제출 가입결의안, 우방제출 한국문제 결의안, 북한 가입신청 서한, 외무장관회의 한국관계 선언문안 등

3. Memorandum
- 비동맹 가입문제
- 한국문제에 대한 비동맹의 입장
- 한국의 비동맹 참여를 위한 능동적 역할 요청

4. Talking Paper
- 한국의 비동맹에 대한 관심 표명과 능동적 참여 희망
- 비동맹회의의 한국문제에 대한 건설적, 현실적 접근을 희망

5. 비동맹 가입신청서

75-0549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9 회의결과 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중동]
MF번호	F-7 / 4 / 1-363

1975.8.25.~30. 페루 비동맹외무장관회의 관련 회의결과 자료임.

1. 회의 문서
   - 회의 준비문서: Lima Programme for Mutual Assistance and Solidarity
   - 환영 메시지: 유엔사무총장, 중국(구 중공) 외교장관, 아랍연맹사무총장 등
   - 의제
     - 정치위원회: 중동, 비식민지화, 남아공, 키프러스 등
     - 가입 문제 및 임원 선출
   - 제안서: 제3세계 경제발전을 위한 기구 창설 제의(멕시코)
   - 결과문서: Lima Programme for Mutual Assistance and Solidarity
   - 토의요록

2. 보도자료

3. 각국대표 연설문
   - 페루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부통령,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우간다 외무장관, 기니비사우 외무장관, 인도 외무장관 등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vana(쿠바), 1975.3.17.-1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7 / 5 / 1-469

하바나 개최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가 1975.3.17.~19. 개최됨.

1. 경위

- 1975.1.21. 비동맹조정위 회의가 유엔에서 개최, 하바나 비동맹조정위 외무장관회의 개최 일정을 잠정적으로 1975.3.3.~5.로 결정
- 1975.2.4. 외무부는 비동맹조정위 외무장관회의 대비, 주재국에 대한 한국입장 설명을 관련 공관에 지시
- 1975.2.28. 외무부는 동 회의가 1975.3.17.~19.로 연기됨을 관계공관에 통보
- 1975.3.15. 외무부는 외국 정부의 반응 등 공관 활동상황을 통보
  - 말레이시아 외무담당 국무상, 주일본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면담, 인도 외무장관 공항 환송 등

2. 회의 경과

- 회의 첫날에 1975.2.15.자 허담 북한 외상 명의 비동맹조정위 의장 앞 구상서(가입 신청)를 회의문서로 회람
- 북한입장 지지하는 한국문제 관련부분을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 3.19. 콩고민주공화국대표단 명의의 북한가입 제의 서한이 회람, 본회의에서 3.20. 새벽 2시에 처리

3. 회의 결과

- 북한의 비동맹가입 권고안 채택, 1975.8월 페루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서 가입 결정하도록 권고
- 채택 선언문 중 한국 부분: 북한의 자주평화통일정책 지지, 남한주둔 미군철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4. 관찰

- 북한의 비동맹가입 지지 분위기 팽배
- 북한의 가입신청에 대해 수개국이 사전공모, 각본에 따른 추진
- 북한의 비동맹가입 기정 사실화

75-0551

비동맹그룹 주관 원자재에 관한 개발도상국회의. Dakar(세네갈), 1975.2.3.-8.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7 / 6 / 1-141

1975.2.3.~8. 세네갈 다카르에서 비동맹그룹 주관 원자재에 관한 개발도상국 회의가 개최됨.

1. 경위

- 1974.3월 알제리 비동맹조정위원회 외무장관회의에서 "원자재에 관한 개도국회의" 개최 결정
- 1974.12.19. 뉴욕 개최 비동맹조정위원회에서 초청범위 결정
  - 비동맹 회원국(정대표), 비동맹운동 옵서버, 77그룹 참석 희망국
  - 한국, 월남 등 4개국 제외(알제리, 쿠바 주장)
- 1975.1.21. 비동맹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뉴욕)
- 1975.1.30. 북한 재정부장 등 북한대표단 세네갈 도착
- 1975.1.31. 77그룹 아시아그룹회의 개최(제네바)

2. 참가 교섭활동

- 외무부는 1974.12.19. 비동맹조정위 결과를 관련공관에 통보
- 주세네갈대사는 1975.1.7. 알제리 등 친공국가의 한국 등 회의참가 배제 움직임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1.9. 회의 참가 초청 필요성을 강력 제기하도록 주세네갈대사에게 지시
- 주세네갈대사는 1.9. 외무성 관방장 겸 섭외국장 면담, 문서 전달 및 설명
- 주유엔대사는 1.14. 개도국 회의 참석범위를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1.23. 초청 문제를 관련공관에 지시
- 주제네바대사는 1.31. 77그룹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한국 등 불초청 문제 논의 보고

3. 원자재 개도국회의

- 기간 및 장소: 1975.2.3.~8., 세네갈 다카르
- 참가현황: 110개국
- 행동계획 및 결의안 채택
  - 행동계획: 일차산품 대공산품의 가격 평준화 내지 공급 카르텔을 구축하는 실행계획의 촉구. 즉, 공산품 가격과 연관한 일차산품 가격지수화, 원자재별 생산국 동맹 구성 및 강화, 원자재 생산국 동맹활동을 조정하는 중추기구의 설치, 원자재 수출국의 단합 촉구 등
  - 결의안: 행동계획의 시행 촉구
- 관찰
  - 한국은 월남, 캄보디아(구 크메르) 등과 함께 초청대상에서 제외
  - 북한은 절대 다수국의 지원으로 초청, 회의 참석하여 김일성 메시지 발송 활동

한국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G-40 / 1 / 1-77

1975년 중 한국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임.

1. 일본 주요인사의 한국안보 관련 발언

- 미야자와 일본 외상은 1975.2.13. 참의원 외무위에서 미 국방장관의 국방보고 중 오키나와는 한국방위의 거점이라는데 대해 오키나와 미군을 한반도 안정유지세력으로 이해한다는 긍정적 발언
- 미키 일본 수상은 6.9. 중의원 예산위 질의 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
- 미야자와 외상은 6.16. 중의원 외무내각 과학기술 연합심사 질의답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언급
- 미키 수상은 6.18. 중의원 발언에서 한반도의 분단상태 장기지속 불원

2. 일본 언론의 한국관련 보도

- 1975.2.12. 아사히신문: 오키나와 주둔 미국 해병대, 한국에서 협동연습
- 2.13. 아사히신문: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의 미국의회 제출 국방보고 관련 “국방보고와 일본의 입장” 제하 논평
- 2.27. 요미우리: 미·한·일 기지강화 기사에서 포드 미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 재검토
- 6.3. 마이니치: 일·중·소·미의 한반도 분단 시인, 주한미군 철수 전제
- 6.11. 아사히신문: 한국의 안정, 일·미·중·소 간의 협의
- 6.16. 요미우리: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미군 투입 불사
- 6.24. 아사히신문: 한국 핵개발 가능성
- 7.10. 도쿄: 한반도의 대규모 분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8.28. 일간지: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및 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75-0553

일본·미국 안보 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동북아1
MF번호	G-40 / 2 / 1-56

1975년 중 미야자와 일본 외상이 미국을 방문함.

1. 주요 일정

- 4.10. 워싱턴 도착
- 4.11.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회담, 차관 등 국무부 인사 및 의원 면담, 포드 미국 대통령 예방

2. 주요 의제

- 미·일 방위협정 이행과 핵확산 방지조약 비준문제
- 인도차이나 사태, 중동 문제, 경제 및 에너지 문제

3. 평가

- 미국의 일본방위공약 이행 재확인
-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방위공약 및 능력을 재확인
- 미키 일본 수상의 8월초 방미 잠정 합의

4. 공관 보고

- 일본 외무성 미주국장은 1975.4.8. 미야자와 외상의 방미 목적이 금년 가을 미키 수상의 방미에 대비, 양국 외상 간의 대화채널 강화, 미국에 의한 일본방위보장 확인 등이라고 언급
- 주미국 일본참사관은 양국 외상회담에서 인도차이나 사태, 비확산조약, 중동 문제,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키신저 장관은 미국의 대일방위공약 확인, 유사시 재래식 및 핵무기로 일본을 방위 확약하였다고 언급
- 외상회담에서 일본·미국 안보조약의 유지, 미국의 핵능력이 일본방위 억지력 제공, 미국의 대일본 조약상의 의무 중요시, 일본의 안보조약상의 의무 지속적 이행 등 4개항 포함
- 동 외상은 포드 대통령을 예방,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양국 외상 간의 협의를 확인

5. 일본 언론보도

- 요미우리(4.11.): 일·미 외상회담 시 한국조항 재확인
- 요미우리(4.14.): '일본에 대하여 한국의 안전이란 무엇인가'에서 1969년의 미일공동성명의 한국조항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불변함을 표명
- 마이니치(4.14.): '미야자와 외상의 방미가 남긴 것'에서 일본 독자의 정책을 성명한 것은 획기적인 대미 자주외교의 일보로 평가

미국의 전쟁수행권법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09-38 / 10 / 1-130

1975년 중 미국상선 마야게즈호 구출작전과 관련, 미국의 전쟁수행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임.

1. 마야게즈호 구출사건 경위

- 미국상선 마야게즈호는 1975.5.12. 캄보디아(구 크메르) 해안으로부터 96km 공해상에서 나포
- 미국 해병대 1천명 투입, 1975.5.13.~14.간 폭격 등 군사작전 개시
- 1975.5.15. 캄보디아 측은 39명의 승무원을 태국어선에 승선, 송환

2. 군사작전 관련 미 행정부의 대의회 조치

-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5.5.13. 캄보디아선박 포격문제에 대해 백악관 의회 연락관을 통해 의회 중진급의원과 협의
- 동 대통령은 5.14. 의회 중진들을 백악관으로 초치, 협의
- 동 대통령은 전투개시 48시간 이내인 5.15. 아침에 하원의장 앞으로 보고서 제출

3. 전쟁수행권법

- 전쟁수행권에 관한 법률의 성격
  - 유사시 미군을 전투에 투입시키는 등 전쟁수행결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의 어느 쪽에 있는지 불분명
  - 전쟁수행권법은 헌법상 불분명한 규정을 해석하여 전쟁수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한미방위조약과의 관계
  - 조약은 연방법률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관계로 효력의 우열은 후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결정
  -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의거 전쟁수행권의 소재 및 기타 부수적 절차 등을 규정한 전쟁수행권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
- 마야게즈호 구출작전 문제
  - 미국 행정부는 우선 의회 중진들과 사전협의, 사건처리 후 서면으로 하원의장에게 보고
  - 미국 정부로서는 강경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도차이나로부터 패퇴한 미군의 불명예를 씻고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우방의 신뢰회복의 계기 마련

75-0555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지출법 및 계속지출결의안)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3 / 1-178

1974~75년 중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 관련 사항임.

1. 대외원조 지출법

- 하원 세출위원회 대외활동소위원회는 대외원조 지출법안 심의를 위해 1975.2.2. 공개청문회 개최
- 상하양원협의회는 3.21. FY75 지출법안 합의
- 포드 미국 대통령은 3.27. 법안을 서명, 확정
  - 총액: 36억 달러
  - 내역: 무상군원(4.7억), 군사차관(3억), 안보지원원조(6.6억), 인도차이나 복구원조(4.4억), 중동특별기금(1억), 경제원조(3억) 등

2. 계속지출결의안

- 미국 의회는 신회계연도 이전에 FY75 연방정부 예산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1974.6.27. 양원협의회를 거쳐 FY75 잠정 지출결의안 채택
- 상원 세출위원회는 1975.2.28. FY75 계속지출결의안 재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3.1.부로 사실상 폐기
- 상원 본회의는 3.3. 세출위원회안 채택
- 양원 협의회는 3.10. FY75 계속지출결의안 가결

FY76 미국 국방백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4 / 1-230

1975년 중 FY76 미국 국방예산과 국방백서 관련 사항임.

1. 미국 FY76 국방예산 잠정 승인

- 포드 미국 행정부는 FY76 국방예산으로 950억 달러를 잠정 승인
- 동 예산에는 인플레 등 구매력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110억 달러를 포함

2. FY76 국방예산 편성 관련 국방정보센터보고서

- 미국 국방정보센터는 1975.1.20. “Guideline for the New Defense Budget"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 내의 경제위기 및 미국의 방위와 관련하여 FY76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16개 방안을 제시
- 내용
  - FY75 대비 FY76 국방예산안
  - 한국 관련 현실적인 국방예산 방안: 새로운 해외기지의 설치 금지, 해외주둔 병력의 감소, 불필요한 군사원조의 삭감

3. FY76 미국 국방백서 요지

- 개관
  - 미국의 국제정세관, FY76 방위정책 목표, 방위계획 지침
- 주한미군 문제
  - 북한의 공격 격퇴 보장 제공, 동북아지역 비상사태 시 대량의 병력투입 근거제공, 아시아지역의 가상적에 의한 도전저지 등
- 분석
  - FY75 대비 강조사항: 태평양지역 거점 확보, 우방국에 대한 방위강조, 재래식 병력의 증강 강조, 미국 해군력 발전 강조 등

75-0557

월남 공산화 이후의 동남아 안보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G-40 / 5 / 1-158

1974~75년 중 월남 공산화 이후 동남아 안보정세 관련공관의 보고임.

1. 뉴질랜드

- 주둔 외국군은 없으며, 통가 및 피지의 군인 훈련생 접수 훈련

2. 말레이시아

- 인도차이나 적화 이후 말레이시아가 제창해온 동남아 중립화 실현 노력 박차
- 캄보디아(구 크메르) 및 공산 월남정권의 조기 승인 및 외교관계 정상화 노력 경주
- 국내 공산 게릴라운동 진압 태세 강화

3. 싱가포르

- 영국군 1,500명, 뉴질랜드군 1,200명 주둔, 호주 군대의 완전 철수
-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 최후에 중국(구 중공)과 수교할 방침 견지

4. 인도네시아

- 외국 주둔기지는 없으며, 방산품 수출 관련 40명의 미군 연락관, 14명의 호주군 연락관 주둔
- 인도네시아의 이니셔티브로 아세안의 정치적 내지 안보적 협력기구로 발전, 강화 움직임 전개

5. 태국

- 2.7만 명의 미군 주둔
- 1969년 이후 연례적으로 200명 규모의 캄보디아군, 소규모의 라오스군 훈련
- 아세안과 협의 체제 구축. 베트남 및 중국과 수교 이후 미국의 원조 지향 전망

6. 필리핀

- 클라크 및 수빅기지에 미군 1.4만 명 주둔
- 지역세력 균형 재편성까지 안보유지상 국내통치 체제 강화, 국내 공산세력 활동 격퇴
- 대내적인 자주국방력 강화, 대외적으로 중국·소련 등 공산권과의 수교 등 다원화 추진

7. 호주

- 미국 해군 통신소 위치

청와대 안보정세 보고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G-40 / 6 / 1-56

1975년 중 청와대 안보정세 보고자료 내용임.

1. 대미관계 관련 국내인사의 발언(1975.4.7.)

- 일부 국내인사들이 미국의회나 언론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대한 반감으로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대한군원 등 안보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관해서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적

2. 미국 외교의 후퇴

- 캄보디아(구 크메르), 월남 등 인도차이나 사태, 중동협상의 실패 등 미국 외교의 차질 직면
- 미국이 외교적 후퇴를 계속 감수할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정세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3. 인혁당 범인 8명 처형 관련 미국 측 반응

- 미 국무부 대변인 논평(1975.4.9.)
  - 한국 정부의 극단적 조치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
-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의 외무부장관 면담시
  - 충격을 받았으며 미 의회와 언론의 반응이 심히 우려됨.

4. 안보대책 회의자료(1975.4.22.)

- 미국의 아시아 방위재편에 관한 신문보도
  -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방위선을 후퇴시켜 일본, 필리핀 및 괌도를 연결하는 선으로 구축한다는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전혀 허위라고 부인
- 필리핀의 대미 안보체제 재검토 성명
  - 필리핀 정부는 국가이익상 필요시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미군기지를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연설에서 대외정책 재평가를 환영하나 감정적이거나 목전의 상황에 근거하지 말기를 권고

75-0559

한국 안보관계 자료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7 / 1-64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보고서 "East Asia and U.S. Security" 중 한국 안보정세 관련 내용임.

1. 사설

- 4대 강국의 한반도 분쟁 개입 가능성
- 한반도 위협 감소 방안모색이 미국·일본 등 열강의 관심사

2. 남북한 간 군사력 균형

- 북한은 지난 4년간 전쟁 준비에 전념하나, 남한 대비 압도적 우세는 아님.
- 한국은 미국의 공군지원과 군사원조로 북한의 침략저지 가능

3. 남북한 간 정치적 대치

- 남북한은 각자 자신의 제도하의 통일을 희망
- 북한의 간첩 남파와 남한 비난공격이 북한의 통일제안에 대한 의심과 남한의 반공의식 강화 등 역효과 초래

4. 남북대화

- 촉진요인: 대남혁명 부진, 북한의 경제성장 둔화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미국·중국(구 중공)·소련 관계개선으로 냉전외교 지속 불능
- 결과: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정치대결 중점, 분쟁 위험성 상존

5. 강대국과 한국통일

-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한 군사력 균형 도모, 일개 강대국에 대한 군사력 의존 지양
- 남북한 간 군비축소를 위한 강대국 간의 군사장비지원제한협정 체결 등 바람직

6. 미국정책의 의미

-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분규 방지
-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에 대한 4개 강국의 이익 강화

7. 연구서 평가

-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서 화해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정책모색의 일환으로 연구서를 발간
- 남북대화의 진전 및 한반도의 평화 보장시까지 미국의 각종 공약준수 필요성 주장

1971년 대여 미국 해군 보조예인선 '틸라묵'호(ATA-192) 반납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8 / 1-9

1974~75년 중 미국 해군 보조예인선 사용을 위한 한·미국 간 협정 체결 및 반납 경위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로 미 해군 보조예인선 “틸라묵”호를 1971.7.1.부터 5년간 해양조사선 “탐양호”로 개칭, 운항 관리함.

2. 국립지질광물연구소는 대여협정의 종료일인 1976.7.1.부로 대여기간 내에 반납조치할 계획이라고 1975.3.5. 해양개발연구소에 통보함.

3. 해양과학기술연구소는 조사선 반납계획을 1975.3.19. 외무부에 통보함.

4. 공업진흥청은 한국 정부의 조사선 건조로 미 해군 예인보조선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협정 제9항에 의거, 미국 정부에 조기에 반납하고자 1975.11.6. 외무부에 통보함.

75-0561

미국산 군수물자구매 추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11 / 1-26

1975년 중 미국산 군수물자 구매를 추진함.

1. 외무부는 1975.1.8. 나이크 및 호크유도탄에 사용되는 발사화약의 한국 내 제조문제가 미 국무부의 반대로 난항에 처해 있다고 하여 주미국대사가 1.7.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를 방문, 호의적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동 차관보는 아래 요지로 언급함.

- 동 건은 일종의 기술수출인바, 동 기술은 방위적인 유도탄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활용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공에 문제가 있음.
- 경제적인 면에서 일부 시설이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증가를 가져온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배경으로 한 일부 상원의원의 압력이 있어 신중히 검토 중임.

2. 박근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1975.1.10. 아부라모비츠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면담한 계기에 동 부차관보가 쾌속정미사일 구입문제 등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정부가 건조 및 도입할 예정인 쾌속정에 프랑스제 Exocet미사일 장착계획 관련,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쾌속정미사일 연구를 촉진하고 있어 실용품이 빨리 생산될 것이며 미사일을 프랑스에서 도입하는 경우 무상군원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 영국에서의 잠수함 도입문제
  - 한국이 영국으로부터 5척의 잠수함 도입을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잠수함은 한국군 방위소요계획에서 185번째 순위인바, 미국 측과의 사전협의 없는 품목구입 결정은 잘못하면 미국 내의 정치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산 F4E 및 F5E 전폭기 도입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12 / 1-39

1974~75년 중 미국산 F4E 및 F5E 전폭기 도입 관련 사항임.

1. 주미국대사는 1974.5.31. F4E 전폭기 구입문제에 관해 잉거솔 미 국무부 차관보를 면담하였는바, 미국 측은 아래 요지로 답변함.

● 동 전폭기 관련 아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함.
- F4E 전폭기는 가격과 유지비가 큰 것이므로 차관형태,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과의 관련성 검토
- 정책적인 면에서는 동 전폭기가 공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및 한국의 전폭기 보유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관계 등 검토

2. 1974.7.23. 주미국대사대리는 슈나이더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면담한바, 슈나이더 부차관보는 아래 요지로 언급함.

● 전폭기 구입자금을 한국 정부가 어디에서 염출하는지가 문제라고 보며,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합작조립 및 설립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정식 제안이 있으면 좋겠음.

3. 외무부는 1974.7.29. 아래 요지의 국방부의 요청사항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F4E 획득 목표량은 3개 대대분(57대)이며 전량을 FMS 차관으로 획득하되 1개 대대분은 완제품, 잔여 2개 대대분은 한국에서 공동생산에 의해 획득하고자 함.

4.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74.8.13. 레나드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면담, 미국 측의 조속한 검토를 요청한데 대해 동 과장은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한국 측 제의는 현재 검토 중이나 본건에 관한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정책적인 결정문제(F4E 도입이 가져오는 한반도내 군사적 균형면에서의 의미, 국군 현대화계획 지원과의 관련 등)와 자금출처를 구하는 문제가 있음.

5. 1974.8.27.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레나드 한국과장을 면담했는바, 동 과장은 A7에 관한 한국 측의 요청 관련, F4E 문제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자신이 보기에는 전망이 불분명 하다면서 특히 자금출처에 관해 전적으로 FMS에 의존하고 현금지출은 조금도 없다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함.

6. 1975.10.10. 미국 국방부는 Foreign Military Sales Act에 따라 한국에 대한 205백만 달러 상당의 F5E(54대) 및 F5F(6대) 전투기 판매계획안을 미국의회에 제출함.

75-0563

한·미국 간의 FMS(대외군사판매) 차관협정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13 / 1-63

1975년 중 한국과 미국 간의 FMS(대외군사판매) 차관협정에 관한 사항임.

1. 외무부는 1975.6.24. 미국의 FY75 대한국 FMS에 의한 55백만 달러 차관협정과 관련,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미국대사가 정부대표로 위임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차관협정 체결을 지시함.

2. 국방부는 1975.6.24. FY72, FY73 FMS 차관협정 관련, 동 협정 지출기간 재연장을 교섭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주미국대사관은 7.3. 동 지출기간이 1년간 연장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

3. 1975.12.29. 워싱턴포스트지는 'Korea Asks 1.5 Billion Dollar in U.S. Loans for Arms' 제하 Don Oberdorfer 기자의 아래 요지 기사를 게재함.

- 한국은 새로운 전략증강 계획을 위해 향후 5년간 15억 달러의 정부지원 차관제공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며 미 국무부 및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바, 종국적으로는 지원할 것임을 시사
- 전력증강계획의 130개 사업 중에는 소규모 무기의 급격한 생산증가와 M60 탱크 및 고성능 제트기의 한국생산을 포함
- 5개년 전력증강계획 소요자금은 50억 달러로 이중 20억 달러는 방위세를 통한 내자로 30억 달러는 외자로 각각 충당

주한미군 병력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안보
MF번호	G-40 / 14 / 1-17

1975년 중 주한미군 병력현황임.

1. 1975.1.31. 현재
   - 군인: 40,814명
   - 군속: 1,259명
   - 총계: 42,073명
   - 1974.12.31. 대비 40명 증가

2. 1975.12.31. 현재
   - 군인: 40,386명(전월말 대비 -207명)
   - 군속: 1,629명(전월말 대비 +2명)
   - 총계: 42,015명(전월말 대비 -205명)

75-0565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1 1-3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15 / 1-188

1975.1~3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사항임.

1. 맨스필드 미국 상원의원(민주당 원내총무)의 중국(구 중공) 방문보고서 중 한국 관련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보고서 제출경위
- 맨스필드 의원은 1974.12.9.~30. 중국을 방문하고, 1975.2.3. 상원 외교위원회에 동 보고서 제출

● 맨스필드 보고서의 한국 관련 요지
- 한국 관련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며 수년 전에 중국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하였듯이 미군도 한국에서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임.

● Valeo 미국 상원 사무총장 보고서의 한국 관련 요지
- 한국 정부가 계속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정치적 음모는 북한의 위협, 조총련의 책략 및 한국 내부의 혁명활동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바, 동 견해는 일반국민의 수긍을 받지 못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야기하고 있음.

● 분석
- 주한미군의 지체 없는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공식입장이나 중국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미군철수를 주장하느냐가 문제이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려는 입장이며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갖고 있다는 점을 동 보고서는 재차 분명히 하고 있음.

2. 1975.2.7. 주재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FY76 국방예산 관련 Callaway 미국 육군장관 등의 증언을 청취했으며, 질의응답 중 Strom Thurmond 의원의 주한 미2사단의 본국 철수 시 예산상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Callaway 장관은 한국 주둔보다 미국에 주둔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나 미군의 한국주둔은 경비절약을 위한 것이 아니며 주한미군 존재의 기본이유인 동북아지역의 안정유지에 있다고 답변함.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2 4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16 / 1-185

1975.4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사항임.

1. 1975.4.2. 함병춘 주미국대사의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의 언급요지임.

- 월남 사태
  - 월남 자신이 효과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도와줄 방도는 없으며 월남이 충분한 군사물자를 갖고 있으므로 물자지원은 현재 문제되지 않으나 군사적으로 손을 쓰는 것은 불가능
- 기타지역
  - 월남이 무너지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임.
- 한국 관계
  - 한국은 국민의 단결력과 강한 반공체제를 바탕으로 안보태세가 튼튼히 되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방어체제가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2. Dellums 미국 하원의원의 군사수권법 개정안 제의 관련, 1975.4.14. 주미국대사대리가 동 의원 사무실 Duberstein 외교문제담당관과 접촉한 내용임.

- Dellums 의원은 10만 해외주둔 병력감축에 관한 군사수권법 개정안을 금년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상을 받음.
- 주한미군에 관한 언급요지
  - 1만6천 명의 주한미군 철수는 2사단 및 지원부대 등의 병력으로 행해지나 여전히 한국에는 상당한 화력 및 지원부대 잔존

3. 주미국대사관은 1975.4.18. 군사수권법 개정안이 병력소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하원 민주당 정책회의는 Dellums 의원이 동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시키도록 결정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산케이신문은 1975.4.21. 워싱턴특파원발 미국의 신아시아정책 구상에 관한 기사에서 미국 정부는 인도차이나 붕괴이후 아시아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였으며 동 정책의 기본방향 으로서 동남아를 미국의 방위선으로부터 떼어놓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미군의 군사방위선은 일본, 필리핀 및 괌 등 서태평양도서로 연결되며, 한국과 대만(구 자유중국)은 이러한 방위선의 주력이 아니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가까운 '가지'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도함.

5. 상기 보도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 및 국방부는 동일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논평함.

75-0567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3 5-6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17 / 1-274

1975.5~6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사항임.

1.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1975.5.15.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고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대한국 방위공약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함.**
   - 키신저 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중국(구 중공) 외교관과 접촉, 여러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 기회에 동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처지인 바,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함.

2. **1975.5.20. 미국 하원 본회의는 Dellums 의원이 제출한 해외주둔군 감축안을 311:95로 부결시킴.**
   - 동 의원은 주둔국가별로 한국 15,500명, 필리핀 8,000명, 대만(구 자유중국) 2,000명, 오키나와 20,000명 등의 감축을 주장

3. **1975.5.27. 워싱턴포스트지는 'Mansfield Wary on U.S. Role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동 상원의원의 하기 발언요지를 보도**
   - 주한미군은 무한정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주한 2개 사단 미군병력을 사용해야 하는 사태에 대비, 미국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를 희망

4. **1975.5.28. 동경발 AP통신에 의하면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Jimmy Carter가 동경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38,0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이 미국 국민의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한국 공군이 강화되고 북한의 남침억제 제안이 소련이나 중국에 의해 수락된다면 5년내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외무부는 5.29. 주일본대사에게 동 연설 Text 입수를 지시함.**

5. **1975.6.20. 외무부 작성 한국 피침 시 지원에 대한 미국 여론 조사결과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 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국이 북한에 의한 침략을 받을시 미국이 지상군과 해·공군을 동원하여 한국을 방위하는데 대해 금년 5월의 '해리스' 여론 조사결과, 43%가 찬성, 37%가 반대, 20%는 태도불명의 반응을 보임.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4 7-12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0 / 18 / 1-218

1975.7~12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사항임.

1. 미국 의원들의 한국 관련 발언

- 1975.6.27. Goldwater 미국 상원의원은 본회의에서 한국은 월남에서 지상군을 투입하여 미국을 지원한 가장 진실한 우방국이며 미국의 일부언론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원조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믿게 하고 싶다고 발언
- 7.22. Alan Cranston 상원의원은 함병춘 주미국대사 면담시 동 대사가 한국의 안보문제 등에 관해 설명한데 대해, 정중한 태도로 주의 깊게 들은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한국내 인권문제, 주한 미군을 휴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재배치시키는 문제 등에 관한 동 대사의 설명을 요청
- 7.23. Morris Udall 하원의원(민주당)은 동일 개최된 리셉션에서 한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하고 재래식 군사력도 삭감해야 한다면서 아시아에서의 미군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공군이면 충분하며 육군은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

2. 1975.9.25.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FY76 국방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대한국 방위공약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 위원회 견해를 제시함.

-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최근 대한국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이를 지지

3. 1975.12.15. 미국의회의 FY76 군사수권법안 심의와 관련한 한국 관계 수정안(인권, 주한미군 철수계획, 기타)에 관한 자료 중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관한 수정안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FY77(1976.10.1.~77.9.30.)부터 상당규모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계획을 작성, 본 조항 발효후 6개월내 의회에 제출
  -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시기는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상당히 진전되어 북한의 공격에 대해 한국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로 하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이 변경된 경우 동 철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75-0569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5 언론보도, 1-4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1 / 1 / 1-126

1975.1~4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하여 1975.4.26. 뉴욕타임즈는 Bernard Gwertzman 기자의 'US is concerned over ties in Asia' 제하 한국관계 기사를 아래 요지로 게재함.

1. 포드 미 행정부는 인도차이나 사태가 아시아 우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수주일 또는 수개월내에 한국, 일본 및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유대관계를 견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2. 미국의 대아시아 방위공약과 관련하여 최근 취하여진 조치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미야자와 일본 외상에게 대일본 방위공약을 확인
- 최근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관련, 미국은 대한국 방위공약을 다짐
- ANZUS(태평양안전보장조약)회의에서 미국은 동 조약의 중요성을 재강조
- 포드 미국 대통령은 5월초 경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수상을 각각 면담, 방위공약을 확인할 것이며 미키 일본 수상은 8월경 방미 예정
- 미국 측은 필리핀과는 미·필리핀 안보체제 및 군사기지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할 용의 표명

3. 미 국무부 관리들은 인도차이나 사태가 한국에 대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최근 김일성의 중국(구 중공) 방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4. 4만3천 명의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 헌법절차에 따라 대처하기로 되어 있는바, 미 국무부 관리들은 한국은 미국의회가 주한미군의 개입을 지지할건지 염려하고 있다고 말함.

5. 포드 미 행정부는 미국의 대아시아 방위공약과 관련, 해당 국가들이 동 건에 대한 미국의 관심 상실을 우려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소련 및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초래하는 심리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6 언론보도, 5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1 / 2 / 1-265

1975.5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한 언론보도임.

1. 1975.5.21. 영국 Times지는 'Relief and Scepticism in Seoul after Schlesinger warning to North Korea' 제하 Peter Hazelhurst 특파원의 아래 요지 기사를 게재함.
   -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의 북한에 대한 경고성명에 대해 한국에서는 각 신문이 일면에 크게 보도하고 있으나 서울 시민들은 안도감과 회의감이 섞여 있는 것 같음.
   - 한국정부 관리나 일반시민들은 동 경고가 북한의 즉각적인 공격에 대한 억제조치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동 기자가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앞으로 미국의 방위공약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깨닫고 있음.
   -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의 패배 이후 북한의 공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래 두 가지 이유 때문임.
     - 남침 지원 요청을 위한 김일성의 중국(구 중공) 방문
     - 비무장지대에서의 최근 13개의 터널 발견
   - 최근 김일성을 방문한 바 있는 다케오 타카기 일본문화협회 회장에 의하면 김일성은 북한 군대가 농번기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고 함.

2. 1975.5.21. 워싱턴포스트지는 Don Oberdorfer의 'Seoul asks Aid to show U.S. Resolve' 제하 서울발 기사를 게재함.
   - 국회 공동결의문에서 인도차이나에서의 실패한 전례를 한반도에서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결의를 행동으로 시현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
   - 동 행동의 일환으로 현재 지연되고 있는 대한국 군원계획의 조속 이행과 제7함대 및 미국 전략공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제의
   - 한국정부 관리들은 공적으로는 미국 방위공약의 신뢰에 믿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적으로는 결국에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

75-0571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7 언론보도, 6-12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1 / 3 / 1-268

1975.6~12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언론보도임.

1. 1975.5.31. 영국 The Daily Telegraph지는 'North Korea Sub Fleet Tips Power Balance' 제하 Iwan Ward 특파원의 아래 요지 서울발 기사를 게재함.
   - 미국 인공위성은 북한이 적어도 2척의 RL급 잠수함(소련 설계)을 건조중에 있음을 포착
   - 서방 측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 세력을 급진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이 건조중인 R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바, 동 잠수함 확보로 한반도에서의 해군력 균형은 완전히 불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분석
   - 최근 첩보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1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척은 북한 자체가 건조한 것으로 보고 있음.

2. 1975.12.29. Christian Science Monitor지는 'U.S. Troops Not Needed on Korean DMZ?' 제하 아래 요지의 워싱턴발 기사를 게재함.
   - 11명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의회 조사단은 휴전 후 주한미군이 최전방지역에 더 이상 배치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한 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동 위원들은 미국이 휴전선지역에 미군을 밀집하여 붙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시사하면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현재로서는 소규모 정도는 유지시키도록 주장함.
   - 동 위원들은 한국이 일본의 중심을 겨누는 단검과 같이 되어 있어서 태평양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지상군과 해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고 언급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Helsinki(핀란드), 1975.7.30.-8.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G-41 / 4 / 1-186

1975.7.30.~8.1. 개최되는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관련 사항임.

1. CSCE 정상회담 경위
   - 1954.2월 베를린 4개국 외상회의에서 소련 외상이 동·서독을 포함한 전유럽국가 간 집단안보조약 체결 제의, 미국·영국·프랑스 서방 3개국은 동 제의거부
   - 1968.5월 나토이사회는 베를린 문제의 조기타결과 동·서 감군회담 개최를 전유럽 안보협력회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 1972.1월 소련은 상기 서방 측 제의에 동의
   - 1973.7월 CSCE 제1단계 외상회의를 헬싱키에서 개최, 의제(유럽안전보장과 협력, 동·서 경제협력, 인간·정보·문화교류) 확정, 1973.10월 동·서 상호감군회의 본회의 개최
   - 1973.7.14. 제3단계 정상회담 개최일자 및 장소(1975.7.30., 헬싱키) 합의

2. 1975.7.21. 뉴욕타임즈지는 'Road to Helsinki: Moscow hung on, sacrificed some, won most of its goal' 제하 CSCE 정상회의에 관한 아래 요지의 해설기사를 게재함.
   - 소련은 회의참가국이 전후 유럽의 정치적 및 지리적 현상을 수락하도록 한 이익을 얻은 반면 군사훈련실시의 사전통보 및 보다 자유로운 인적 및 문화교류에 관해 양보
   - 소련이 CSCE를 서두른 것은 브레즈네프 소련 당 서기장이 1971년 공산당대회에서 전후 문제처리 종결을 약속했으며 다음 당 대회가 1976.2월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
   - 금번 회의가 종결되면 소련은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주장한 바 있는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위한 유사한 안보회의 개최 압력을 가중할지도 모름.

3. 1975.7.30. 헬싱키 Finlandia Hall에서 35개국 3단계 CSCE가 개막되었으며 동 회담은 3일간에 걸쳐 참가국 원수 또는 수상들의 기조연설 후 2단계 회담에서 합의된 문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유럽안보에 관한 헬싱키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릴 예정임.

75-0573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Helsinki(핀란드), 1975.7.30.-8.1. 전2권 (V.2 연설문)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G-41 / 5 / 1-176

1975.7.30.~8.1. 헬싱키에서 개최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연설문 등임.

1. 국가별 동 회담 참석자 명단(프랑스어)

2. 하기 인사의 연설문

- L. Tindemans 벨기에 수상(영어)
- Todor Zhivkov 불가리아공산당 First Secretary 겸 President of the State Council(영어)
- Pierre Trudeau 캐나다 수상(프랑스어)
- Gustav Husak 체코 대통령(영어)
- Giscard d'Estaing 프랑스 대통령(프랑스어)
- Erich Honecker 동독 First 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영어)
- Helmut Schmidt 서독 수상(프랑스어)
- Joop Den Uyl 네덜란드 수상(영어) 등

CENTO(중앙아시아조약기구) 회의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1 / 6 / 1-30
6

1973~75년 중 제20~21차 CENTO(중앙아시아조약기구) 각료회의가 개최됨.

1. 제20차 각료회의(1973.6.10.~11., 테헤란)

● 참가자
- Abbas Khalatbary 이란 외무장관, Aziz Ahmed 파키스탄 외무장관, Umit Bayulkan 터키 외무장관, Alec Douglas-Home 영국 외상, William Rogers 미국 국무장관

● 공동성명서 요지
- 각료회의는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충돌 이후 직면한 제반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주목하였으며, 인도대륙에 있어서 지속적인 평화가 파키스탄·인도 간 의견차이의 정당한 해결을 통해 확보될 수 있기를 희망
- 중동에서 계속되는 위험사태를 검토하였으며 안보리결의 제242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군비축소와 평화조건 촉진을 위한 유럽의 최근 협상을 검토하였으며, 동 협상이 CENTO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줄 것을 희망

2. 1974.5.30. 이승곤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이 Terrence Grant 미 국무부 중근동과 담당관을 면담, 1974.5.21.~22.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1차 CENTO 각료회의 등에 관해 파악한 내용 요지임

● CENTO 현황
- CENTO는 원래 중동지역에서 소련의 남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동 지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영국의 주도하에 구성된 것이며, 미국은 아직도 정식가맹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나 예산의 1/5을 부담하는 등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초기에 군사적 성격을 갖고 발족한 동 기구가 차츰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경향을 띠기 시작하여 이제는 오히려 경제사회적인 협조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

● 금번 회의 성과
- 동 회의기간 중 인도가 핵실험을 한바, 이에 관해 상호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가맹국 중 파키스탄이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동 핵실험에 관해 명확한 코멘트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일치를 봄.

3.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75.4.4. 제26차 CENTO 군사위원회가 1975.4.2.~3.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어 5월 터키에서 개최될 예정인 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575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에 대한 반응 신문기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G-41 / 7 / 1-9

1975년 중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75.8.14.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관련 아래 요지로 주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 해당공관에 통보함.

- 1975.7.30.~8.1. 헬싱키에서 개최된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소련대표 브레즈네프는 유럽안보협력체제의 전세계적 확대를 위해 소련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간 소련이 주장하여온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상이 CSCE 타결을 계기로 구체화 될 것임을 시사

2. 본 문서철에는 1975.8~9월 상기 집단안보 구상관련 국내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는바, 동 기사들 중 8.25. '소련, 아시아 집단안보 관련 선전공세' 제하 중앙일보 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소련의 관영언론들은 8.27. 최근 헬싱키에서 조인된 유럽안보협정의 교훈을 아시아 대륙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가 간의 평등, 무력포기, 현국경의 불가침성,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에 입각한 아시아 집단안보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
- 소련 이즈베스티야지의 사설은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치지도자로서 아시아의 장래에 대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시아에서 독립국들의 경제·문화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소련이 취하고 있는 적극적인 태도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관계(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41 / 8 / 1-11

1975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관련한 통계자료임.

1. SOFA 대상요원(군인, 군속, 초청계약자, 가족)의 출입국 현황(1~12월)

2. 주한미군의 월별 증감수 및 전체수(1~12월)

3.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 행사(사건별, 월별) 통계

4. 미군 당국이 처리한 형사 및 징계사건 통계

75-0577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6-40 / 8 / 1-226

1. 외무부는 1975.2.27.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및 산하 각 분과위원회 위원명부를 수정, 재발간하고자 함을 아래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3.1. 현재 주관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 경제기획원,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노동청, 관세청

2. 관계부처 소관 분과위원회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
  -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 실무반(내무부: 지역사회 및 정부간 관계, 치안본부: 한국경찰과 미군헌병 간의 협력 및 조정, 보건사회부: 보건위생 및 마약단속)
- 경제기획원: 공공용역분과위원회
- 상공부: 상무분과위원회
- 법무부: 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 출입국임시분과위원회,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 재무부: 재무분과위원회
- 국방부: 시설구역분과위원회
- 교통부: 교통분과위원회
- 관세청: 면세물품의 불법거래에 관한 임시분과위원회
- 노동청: 노무분과위원회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1차, 1975.1.3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1-89 / 4 / 1-56

외무부는 1975.1.23. 제101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가 1.30. 미8군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교통부, 상공부, 노동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아래 의제(안)을 참고하여 각 대표들의 동 회의 참석을 요청함.

1.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 한국 측: 토지(0.213 에이커) 반환 1건
- 미국 측: 지역권 설정 2건(9.28 에이커) 등 10건

2. 형사재판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 주한미군 헌병의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1건

3. 재무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 미군 임차부동산에 대한 면세요청 1건

4.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미군기지내 건물 3동 철거 등 2건

5. 공공용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통신요금 인상 1건

6.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군산 공군기지의 주한미군 출입 공항 추가지정 1건

7. 제19차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 1974.12.19. 군산공군기지 기지촌 한·미국 합동시찰 결과보고서 1건

8.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관련사항 확인

- 초청계약자 지명 5건 및 지명 철회 2건

75-0579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2-105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1-88 / 6 / 1-337

1975년 중 개최된 제102~105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중 제104차 한·미국 합동위원회 관련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회의일자 및 참석자

- 회의일자 및 장소: 1975.5.22., 중앙청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Murphy 공군중장

2. 회의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위촉
  - 한국 측의 토지(1.34 에이커) 반환요청 등 2건, 미국 측의 임시사용 허가연장(1,652 에이커) 등 6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한국 측의 토지(0.31 에이커) 반환요청 등 2건, 미국 측의 임시사용 허가연장 3건(12,449.04 에이커) 등 7건 각각 승인
- 면세물품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의 PX 및 매점 등 이용자 제한에 관한 건의 채택
- 제20차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 1975.4.29. 오산공군기지 및 캠프 험프리 기지촌 한·미국 합동시찰보고서 1건
-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관련사항 확인
  - 초청계약자 지명 1건

3. 공동발표문(1975.5.22.) 요지

- 합동위원회는 상기 시설구역분과의원회의 건의 9건을 승인하고 8건의 신규과제 위촉
-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가 최근 오산 비행기지와 캠프 험프리를 포함한 평택군지역을 시찰한 후 제출한 제20차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이 지역의 군민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지적
- 합동위원회는 또한 5.19. 승인한 바 있는 면세물품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의 건의에 유의하고 이를 회의록에 삽입하였으며, 동 조치는 SOFA 산하의 특정 부양가족들이 주한미군 식료품점, PX, 음료판매점 및 주류판매점에 직접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정부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차기 합동위원회는 7.3. 미8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6-108차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1-88 / 3 / 1-280

1975년 중 개최된 제106~108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중 제107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관련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회의일자 및 참석자

- 회의일자 및 장소: 1975.10.16., 미8군 SOFA회의실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Burns 공군중장

2. 회의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 미국 측의 지역권 설정(3.27 에이커) 1건, 임시사용 허가연장 5건(3,072.44 에이커) 등 10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미국 측의 임시사용 허가연장 1건(2,255 에이커) 등 4건 승인
-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관련사항 확인
  - 초청계약자 지명 8건 및 지명 철회 1건
-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군납 계약환경 개선에 관한 보고서 채택

3. 공동발표문(1975.10.16.) 요지

-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현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상무분과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승인
  - 주한미군은 복잡한 절차와 언어상의 장애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었음에 유의하고 모든 군납관계 업자들에게 더 좋은 정보와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장애를 제거하겠다고 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어떠한 한국업체라도 자격만 있으면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상품 및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 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된 기타사항은 부동산 이양 4건, 초청계약자 지명 및 철회, 통신 및 노무관계 합의사항의 기록 등

75-058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제98-104차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1-88 / 2 / 1-283

1. 제98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회의(1975.2.14.)
   - 의제
     - 한·미국 행정협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해제 반환에 관한 사항

2. 제99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회의(1975.3.20.)
   - 의제
     - 한·미국 행정협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해제 반환에 관한 사항

3. 제10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회의(1975.5.1.)
   - 의제
     - 한·미국 행정협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해제 반환에 관한 사항

4. 제101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회의(1975.6.10.)
   - 의제
     - 주한미군 시설과 토지의 사용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02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회의(1975.8.14.)
   - 의제
     - 주한미군 시설과 토지의 사용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제103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회의(1975.9.30.)
   - 의제
     - 주한미군에게 공여 또는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사항

7. 제104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회의(1975.11.13.)
   - 의제
     - 주한미군 시설과 토지의 사용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당국과 외국기관 노동조합 간의 쟁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6-40 / 12 / 1-26

1. 주한미군 당국이 1975.3.6. 현 초청청부업체의 감독 불충분 및 경비절약을 이유로 10.1.부터 직속으로 전환할 것을 노동조합 측에 통보함.

2. 노동조합은 주한미군 당국과의 노사회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자 1975.8.8. 노동청장에게 쟁의발생 및 조정의뢰서를 제출함.
   - 8.11. 한국노총위원장에게 쟁의발생 보고 및 지원요청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쟁의발생 및 조정의뢰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통보함.

3. 노동조합이 1975.9.9.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초청청부업체 직속 전환 연기를 요청함.

4. 노동조합이 1975.9.11. 노동청장에게 초청청부업체 직속 전환 연기를 요청함.

5. 노동조합이 1975.9.22. 주한미군과의 노사회의를 통하여 조합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극한투쟁을 통보함.

6. 노동조합은 1975.9.23. 주한 미국대사관을 접촉하여 주한미군 당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함.

75-0583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30-32차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1-88 / 10 / 1-56

1974~75년 중 제30~32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1. 제30차 회의(1975.1.23.)

● 주요 의제
- 제19차 임시분과위원회 보고서 검토
- 임시분과위원회의 현지답사 계획
- 제31차 임시분과위원회 개최 시기

2. 제31차 회의(1975.3.14.)

● 주요 의제
- 임시분과위원회의 오산기지 답사
- 제32차 임시분과위원회 개최 시기

3. 제32차 회의(1975.5.20.)

● 주요 의제
- 제20차 임시분과위원회 보고서 검토
- 오산 공군기지 병원의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
- 제33차 임시분과위원회 개최 시기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국 군인기지촌 현지답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6-40 / 13 / 1-34

1975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를 답사함.

1. 답사 지역

- 경기도 평택군 오산 기지

2. 답사 일자

- 1975.4.28.

3. 답사보고서 요지

- 마약 문제
  -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리화나가 전체의 90%를 차지함.
- 성병 문제
  - 계몽 및 단속방안 등을 협의함.
- 도난 문제
  - 증가율이 높지 않으며 협조가 잘 되고 있음.
- 인종 문제
  - 별 문제 없음.
- 화재예방 문제
  - 기지와 소방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유지됨.

75-0585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회의, 제5-6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2-41 / 12 / 1-81

1975년 중 제5~6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1. 제5차 회의(1975.2.3.)

● 주요 의제
- 한·미국 합동단속 실적에 대한 브리핑: 한국 측
- 한·미국 합동단속반 현안보고: 미군 측
- 한·미국 공동관심사에 대한 일반토의
- 제6차 임시분과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 선정

2. 제6차 회의(1975.4.2.)

● 주요 의제
- "일부 대상자에 대한 특전 제한"에 관한 연구결과 설명 및 토의
- 동 문제에 관한 분석 및 공동목표 성취를 위한 조치를 다룬 건의안 제출
- 제7차 임시분과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선정

SOFA(주둔군지위협정) - 한·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 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문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6-40 / 14 / 1-65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에 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문제에 대한 과제부여 내용임.

1. 주요 요지
   - 미국 측 요청으로 제100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1974.12.17.)에서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에 과제부여
   - 현행 합의사항(1969.4.22. 제37차 합동위에서 합의)
     - 김포, 인천, 부산, 오산, 대구, 광주, 군산을 미군 출입항으로 지정
     - 김포, 인천, 부산, 오산, 대구, 광주를 미 군속, 가족, 초청계약자 등의 출입항으로 지정
   - 검토
     - 미 군속, 가족 등의 출입항으로 군산만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군산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사료

2. 법무부는 1975.1.23. 제100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의 토의사항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자 동 분과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함.
   - 회의일시 및 장소: 1975.1.28. 14:00, 미8군 SOFA회의실
   - 토의의제: 군산 군용비행장의 주한미군 출입항 지정

3. 1975.1.30. 제101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는 군산 군용비행장을 출입항으로 지정하는 동 분과위 건의를 승인함.

75-0587

SOFA(주둔군지위협정)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및 운영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1-89 / 3 / 1-102

1975년 중 주한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고속도로 상에서 일정한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Military Police Highway Patrol)를 설치함.

1. 설치근거 및 연혁

-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 10항(나)에 따라 주한미군 경찰당국은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밖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 1975.1.30. 제101차 SOFA 합동위 회의에서 동 순찰대 설치에 관한 과제를 부여함.
- 1975.12.3. 제108차 SOFA 합동위 회의에서 동 순찰대 설치에 관한 합의의견을 승인함.

2.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합의의견 요지

- 순찰 범위
  - 장소적 범위: 대한민국 모든 고속도로, 주요 공급 도로
  - 물적 범위: 주한미군 차량, SOFA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사유차량
  - 인적 범위: 미군, SOFA협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KATUSA(한국 증원군) 및 KSC (한국노무단원) 등
- 적용 법규
  - 미합중국 교통법 및 안전규칙, 미군 교통규칙에 따라 적용가능한 대한민국 교통법규 및 기준
- 권한 및 기능
  - 권한: 적절한 질서와 규율 유지, 행정적인 통제
  - 기능: 자산 검열 시행, 차량지도 및 감독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저축조합 결성문제

생산연도 1967-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6-40 / 15 / 1-15

외무부는 1975.4.3. 주한미군 고용원의 국민저축조합 결성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의 의견을 재무부에 통보함.

- 1966년 재무부에서는 저축장려시책의 일환으로 국민저축조합법(1962년 제정, 1963년 개정)에 의한 국민저축조합 결성을 주한미군 고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의뢰
- 이에 따라 외무부는 미국 측과 수차 협의한 후 1969.6.16. 제39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시 이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무분과위원회에 과제를 부여
- 최근 합동위 미국 측 간사는 동 과제가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그간 사정이 변경되어 이를 이행할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동 과제를 철회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온 바, 재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재무분과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협의 후 과제 철회 등의 건의를 합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속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요망

75-0589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6-40 / 16 / 1-104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인 주한미군 부사령관 Murphy 중장은 1975.7.18. 한국 측 앞 서한에서 7.9. 국회에서 통과된 민방위법에 규정된 동원대상에 SOFA 제17조 1항(나)에 규정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 및 KSC(한국노무단원)은 제외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 측이 확인해주고 아울러 민방위법시행령에 이러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주도록 요청함.

- 미국 측은 이러한 요청의 이유로서 주한미군 종업원은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동원훈련을 받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동원훈련 및 교육도 면제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

2. 외무부는 1975.7.19.자 내무부 앞 공한에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의 민방위훈련 면제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3. 또한 외무부는 1975.9.3.자 내무부 앞 공한에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의 민방위훈련 면제에 관한 미국 측 요청에 대해 정식 회신하고자 하니 내무부의 조치결과를 9.10.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동 공한에서 8.5.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민방위법시행령 제16조 2항은 면제대상을 "주한 외국군 부대에 근무하는 고용원"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미국 측에서 SOFA에 규정된 주한미군 부대 고용원 및 한국노무단원으로 분류하여 면제요청을 하였으므로 한국노무단원도 동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국 측에 회신하고자 이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도 알려줄 것을 요청함.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 조치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북미2/의전2
MF번호 Re-6-40 / 12 / 1-94

1973~75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 조치임.

1. **외무부는 1975.4.30. 아래 요지의 내부결재를 통해 PX 등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자 제한에 관한 미국 측 제의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함.**
   - 미국 측은 기지촌 주변의 직업여성들이 현행제도를 악용하여 미군 등과 위장결혼한 후 비세출자금기관의 출입증을 발급받아 물품을 대량 구입, 암시장에 유출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들이 구입하는 물품이 전국 PX 월평균 판매고 5백만 달러의 20~50%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인기품목 식·음료 중에서는 80%를 상회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추산
   - 최근 미국 측은 관세청 당국과의 사전협의하에 PX 등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에 관한 조치를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에 제의
   - 동 미국 측 제의를 검토한 결과, 하기 사유로 동 제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의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할 것을 건의
     - 동 조치로서 부정 외래품의 가장 큰 유출구를 원천적으로 봉쇄
     - 위장결혼 여성들의 인기품목 매점으로 인한 미군 및 그 가족들의 불만해소 및 한국에 대한 나쁜인식 불식 등

2. **외무부는 1975.5.20.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5.19.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PX 등 일부 비세출자금기관 및 매점 이용자를 제한하는 아래 조치를 승인하였으며 미국 측에서 5.20.부터 시행 예정임을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함.**
   - 주한미군 등의 부양가족 중 한국 내에서 결연된 하기 범주의 사람들이 PX, 음료판매점, 주류판매점 및 매점에 직접 출입하는 것을 금지
     - 한국에서 타지로 전속 발령 시 동반한 사실이 없는 미군의 부양가족
     - 수송협정을 만료하지 않고 전속 명령으로 미국으로 갈 때 동반하지 않았던 군속의 부양가족
     - 초청계약자의 부양가족 등
   - 동 조치는 대상자의 국적을 불문하며, 부양가족을 위한 구매량, 기타의 권리나 특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75-0591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58-362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42 / 14 / 1-344

1975년 중 제358~362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관련 내용임.

1. 제358차 회의(1975.2.5.)
   - 개최 제의
     - 북한 측
   - 토의 내용
     - 휴전협정 위반행위

2. 제359차 회의(1975.2.21.)
   - 개최 제의
     - 북한 측
   - 토의 내용
     - 해상침투 간첩선 사건
     - 수원 32, 33호 생존자 송환문제

3. 제360차 회의(1975.3.3.)
   - 개최 제의
     - 북한 측
   - 토의 내용
     - 북한의 서해선단 침범 사건

4. 제361차 회의(1975.3.20.)
   - 개최 제의
     - 북한 측
   - 토의 내용
     - 땅굴 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5. 제362차 회의(1975.5.27.)
   - 개최 제의
     - 북한 측
   - 토의 내용
     - 땅굴 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63-369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42 / 15 / 1-557

1975년 중 제363~369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관련 내용임.

1. 제363차 회의(1975.6.11.)
   - 토의 내용: 땅굴 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2. 제364차 회의(1975.6.30.)
   - 토의 내용: 휴전협정 위반행위

3. 제365차 회의(1975.7.12.)
   - 토의 내용: 핸더슨 소령 구타사건

4. 제366차 회의(1975.7.30.)
   - 토의 내용: 휴전협정 위반행위

5. 제367차 회의(1975.9.3.)
   - 토의 내용: 김세연 납북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6. 제368차 회의(1975.10.24.)
   - 토의 내용: 휴전협정 위반행위

7. 제369차 회의(1975.12.10.)
   - 토의 내용: 휴전협정 위반행위

75-0593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30-438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43 / 1 / 1-359

1975년 중 제430~438차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관련 내용임.

1. 제430차 회의(1975.1.23.)
   - 토의 내용: 북한 선박 침몰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2. 제431차 회의(1975.3.1.)
   - 토의 내용: 북한 선박 침몰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3. 제432차 회의(1975.4.4.)
   - 토의 내용: 북한 선박 침몰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4. 제433차 회의(1975.5.16.)
   - 토의 내용: 휴전협정 위반행위

5. 제434차 회의(1975.6.20.)
   - 토의 내용: 땅굴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6. 제435차 회의(1975.8.14.)
   - 토의 내용: 휴전협정 위반행위

7. 제436차 본회의(1975.9.30.)
   - 토의 내용: 휴전협정 위반행위

8. 제437차 본회의(1975.11.16.)
   - 토의 내용: 김세윤 납북사건, 휴전협정 위반행위

9. 제438차 본회의(1975.12.24.)
   - 토의 내용: 휴전협정 위반행위

중립국 감시위원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3 / 2 / 1-60

1974~75년 중 중립국감시위원회 명단 및 동향임.

1. 중립국감시위원회 명단(1974~75년)

- 스웨덴
  - Gunnar Gerring 장군 외 7 명
- 스위스
  - Claude Van Muyden 장군 외 9명
-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 Miroslav Smoldas 장군 외 6명
- 폴란드
  - Brunon Marchewka 장군 외 7명

2. 중립국감시위원회 동향(1975년)

- 중립국감시위원회 체코대표단 서울 방문(3.27.)
  - 방문자: 병참장교, 부비서장, 행정장교(3인)
- 중립국감시위원회대표 영화관람(4월)
  - 북한이 굴착한 제2 지하갱도를 촬영한 영화를 스위스대표 Muyden 장군 및 스웨덴대표 Smoldas 장군이 관람
- 중립국감시위원회 요원들의 주요 발언(5월)
  - 체코 대표: 북한은 진정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
  - 체코 차석대표: 김일성은 북한의 왕임.
  - 폴란드 차석대표: 최근 북한 국민 특히 군인들은 인도차이나 사태로 사기가 오르고 있음.
  - 체코 및 폴란드 요원: 북한의 실력자는 김정일이 아니고 김영주임.
- 중립국감시위원회대표단 경인지구 시찰(1975.5.28.~30.)
  - 참가자: 스위스 및 스웨덴대표단

75-0595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유엔기(旗) 사용제한 조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국제연합
MF번호	G-43 / 4 / 1-80

1975년 중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유엔기 사용제한 조치임.

1. **외무부는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에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장래문제에 관하여 미국 측과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현행 한국 휴전협정의 일방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의 협정이행 책임을 한·미국 양국정부가 임명할 후계사령관으로 하여금 계승하도록 하여 휴전협정의 효력을 유지시킨다는 방안에 대하여 협정 타방당사자인 북한과 중국(구 중공)이 사전 동의한다면, 미국 정부는 1976.1.1.자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임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함.

2. **미국 정부는 상기 내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통고하는 1975.6.27.자 공한에서 "1950.7.7.자 안보리결의 제84호에 의하여 인정된 유엔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엔군 사령부의 면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경과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3. **미국 정부는 한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기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아래 요지의 공한을 1975.9.5.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송부함.**
   - 8.25.부터 한국 휴전협정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에 유엔기를 게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함.
   -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1975.6.27.자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 공한에 따라 취하여진 것임.
   - 이러한 유엔기 사용제한은 휴전협정의 제반 규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는 휴전협정 존속을 조건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에 관해 직접 관계되는 협정 타방당사자들과 상호 합의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음.
   - 미국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기초가 되어온 휴전협정이 이에 대한 영속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함.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연례보고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G-43 / 5 / 1-27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1950.7.7.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84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1975년도 연례보고서의 요지임.

1. 개관

- 한국 정부는 휴전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여는 휴전체제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2. 구성

-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로 구성됨.

3. 활동

- 1974.9.1.~75.8.31.간 13차례의 위원회 및 9차례 사무장회의가 개최됨.
- 1975.6.27. 미국 측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 공한을 통하여 유엔사령부 해체의 선결문제로서 후계사령관 지정 용의를 표명하고 유엔기 사용제한 조치를 통보함.

4. 결론

-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계속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휴전협정의 유지는 쌍방 간의 대화계속 및 평화보전을 위해 필수적임.

75-0597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G-43 / 6 / 1-22

1.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는 1974.4.20. 브뤼셀 한국광장에서 한국전 전사자 추도행사를 거행함.

2.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는 한국전 참전 25주년을 맞이하여 1975.9~10월 개최 예정인 행사를 아래와 같이 1974.12월 주벨기에대사관에 알려옴.

- 창설 및 출정 기념식
  - Bourg Leopold에서 한국전 참전대대 창설기념식 및 기념비 제막식
  - Marche-Les-Dames에서 출정기념식 및 기념비 제막식
- 추도행사
  - 브뤼셀 한국광장에서 한국전 전사자 추도행사
- 한국인 전우 초청
  - 한국전 시 벨기에 참전대대에 근무했던 한국인 전우 30명 정도 초청
- 한국문화주간
  - 1주간 동안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개최
- 벨기에 참전용사 한국 방문
  - 1975.9.29.~10.6. 간 한국관광 계획

3.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 2인이 벨기에 참전용사의 한국 방문 사전답사차 1975.6월 한국을 방문함.

4. Guerisse 벨기에 한국전 참전용사회 부회장은 1975.10월 유엔총회에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한국전 참전 16개국 참전용사회 회장들의 공동명의로 제출하는 사업을 추진함.

- Guerisse 부회장은 동 조치의 일환으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용사회를 대표해서 동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지갑종 16개국 참전용사협회 사무총장 앞으로 송부
- 이에 대해 지갑종 사무총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
  - 우선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의 참전용사회가 주동이 되어 유엔총회 의장에게 개별적으로 "한국의 유엔가입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 철수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G-43 / 7 / 1-9

1.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무관 보고(1975.4.30.)

- 에티오피아 정부의 1975.4.23. 정책심의 결과 결의내용
  - 한국과의 우호관계 폐기
  - 유엔사령부 한국파견 연락장교단 철수
  - 한국 공식행사 불참
  - 6.25 참전 기념물 기증요구에 대한 거절

2. 주한 유엔군사령부 에티오피아 연락장교단 한국인 종업원 제보(1975.6.4.)

- 연락장교단은 1975.5.30. 본국으로부터 철수지시를 받음.
- 연락장교단은 6.14. 철수예정임.
- 연락장교단은 본국의 철수지시에 대해 연락장교단에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의 3~6개월분 봉급을 송금해줄 것을 건의함.

75-0599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용사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G-43 / 8 / 1-10

1975년 중 주벨기에대사관이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활동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75.10.30. 보고

- 1975.10.24.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무명용사비 헌화식에 관한 신문기사와 참전용사회 회원들이 Thorn 유엔총회 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채택한 결의문 사본
  - 첨부: 신문기사 및 결의문 사본

2. 1975.11.13. 보고

-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원들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세계평화 증진을 위하여 채택한 결의문을 Thorn 유엔총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동 결의문은 10.29.자 Luxembourgwelt지에 게재됨.
  - 첨부: 신문기사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태국 연락장교단 철수문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3 / 9 / 1-17

1974~75년 중 주한 유엔군사령부 태국 연락장교단 철수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Payong Chutikul 주한 태국대사가 주한 유엔군사령부 소속 태국 의장병 6명과 주일본 유엔군후방사령부에 배속되어 있는 태국 공군기 2대를 철수시킬 것을 본국 정부에 건의하였다는 첩보를 1974.1.19. 입수하고, 주태국대사에게 그 사실여부를 은밀히 타진할 것을 지시함.

2. 주태국대사는 태국 외무차관 등 고위관계관들과 접촉한 결과, 태국 외무성이 여사한 건의를 접하였거나 또는 철수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1974.2.11. 외무부에 보고함.

3. 방콕발 AP통신은 Chatchai 태국 외상이 1975.9.15. 기자회견에서 금년 유엔총회가 끝나는 대로 주한 유엔군 소속 태국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면서, 태국이 사실상 중립국가가 되길 원하며, 북한과도 우호관계를 갖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음을 9.16. 보도함.

4. Chatchai 외상은 1975.12월 한국 방문 시 가진 기자회견(12.2.)에서 태국은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된 2명의 연락장교와 6명의 의장병을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

75-0601

북한의 도발사건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북미2/동북아1
MF번호	G-43 / 10 / 1-129

1973~75년 중 북한의 도발사건 내용임.

1. 비무장지대 총격 사건(1973.3.7.)

- 미국 측 입장
  - 계획적인 도발사건으로 보이지 않음.
  - 미국 측은 동 사건을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할 것임.
  - 한국 측은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북한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2. 한국 해군함정의 북한선박 격침사건(1975.2.15.)

- 동해를 경비중이던 해군함정이 어선을 가장해 남하중이던 50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침시키고 침몰 현장에서 간첩승조원 1명을 생포

3. 북한선박 서해 침몰사건(1975.2.26.)

- 서해지역을 경비중이던 해군경비함이 경비보호구역까지 남하해 온 북한선박 2척을 추격하다가 그 중 1척과 충돌하여 동 선박이 침몰

4. 북한기 서해영공 침범사건(1975.3.24. 및 6.9.)

- 3.24. 북한의 고성능 전투기 30대가 서해 북방경비한계선 남방 50마일 지점까지 침범
- 6.9. 북한군 고속항공기 2대가 서해 백령도 상공에 침입했다가 서해를 초계중이던 한국 공군기의 추격을 받고 도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하터널 구축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3 / 11 / 1-21

1975.3.19.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의 북한 제2터널 발표에 대한 미국 주요언론의 보도 내용임.

1. 1975.3.21.자 뉴욕타임즈, 볼티모어선, LA타임즈 등의 보도 요지

- 유엔군사령부와 한국은 3.20. 북한의 침투용 지하터널구축을 비난함.
  - 서종철 국방장관은 동 터널이 사단 규모의 병력, 차량 및 화기를 1시간 내에 이동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말함.
  -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인 Morgan 소장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서부 및 중부에 2개의 터널을 구축하였다고 비난하고, 이 터널들이 1974.11월 발견된 터널에 이어 추가적인 것이라고 언급함.

2. 1975.3.30.자 뉴욕타임즈 보도 요지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인하여 한국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권위있는 미군 장교들이 말함.
- 미국은 북한의 적대행위가 진정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것 같으며, 따라서 이에 긴급하게 대처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 관리들이 말하고 있음.

3. 1975.4.9.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요지

- 북한 터널구축은 표면적으로 조용한 한반도가 다시금 분쟁지역이 되어 아시아 문제 개입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미국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함.
- 비무장지대에서의 터널 발견은 미군이 철수하면 남북한이 그들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종래의 가정에 의문을 품게 함.

4. 1975.5.27.자 워싱턴포스트 보도 요지

-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는 북한의 터널구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음.
  - 지난 1, 2년 사이에 소련제 미사일을 서울을 사정거리 내에 두는 비무장지대 인근으로 이동
  - 미그21 제트기가 4분 이내에 서울로 비행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건설 또는 개량

75-0603

6.25 참전국 참전인사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6-48 / 7 / 1-200

6.25 한국전 참전용사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재향군인회는 1975.1월 한국동란 참전용사 유치사업계획을 수립함.

- 사업목적
  - 정부가 주관하는 한국동란 25주년과 광복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참전용사 및 가족을 초청
- 초청대상 및 조건
  - 전참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미국을 주요대상으로 1976.5.30.까지 1만명을 초청
  - 항공료는 할인요금 자담(自擔), 체재비는 재향군인회 부담조건으로 국제관광공사와 협조하에 추진

2. 외무부는 1975.1.29. 및 2.1. 주미국대사에게 상기 참전용사 유치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초청대상: 미국 및 캐나다 재향군인 및 가족
- 체한일정: 5박6일(3일은 기본관광, 2일은 자유관광)
- 여행비용: 서울-LA 간 왕복 40% 할인요금 적용
- 국제관광공사 사장이 2월 동 사업추진차 방미 예정

3. 국방부는 1975.4월 외무부에 제27회 국군의 날(10.1.) 행사에 6.25 참전국 주요인사 초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초청인사 선정을 요청함.

- 초청기준
  - 6.25 동란 참전 16개국가 및 비전투요원 파견국 참전인사중 국가의 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 안보외교 강화에 필요한 인사, 친한적이거나 순화에 필요한 인사
- 초청방법
  - 초청기간: 1975.9.29.~10.3.
  - 초청조건: 왕복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 부담
  - 수행원: 동부인 또는 수행원 1명
- 초청규모
  - 참전국 16개국 25명, 비전투요원 파견국 5개국 5명, 총 30명

Ennatollah Zoghi 이란 지상군 공병감 방한, 1975.9.29.-10.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G-43 / 12 / 1-23

E. Zoghi 이란 지상군 공병감(육군소장)이 1975.9.29.~10.8.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 군사시설과 건설분야 시찰
  - 방한 진의는 지상군의 막사 및 군 시설확장에 따른 건설자료 수집 및 인력확보를 위한 것으로 확인됨.

2. 주요 방한일정

- 한국 참모총장 및 공병감 예방, 판문점 및 일선 군부대 시찰
- 건설부와 코트라 방문, 산업시찰 등
-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
  - 양국간의 경제관계, 한국의 국내외 정세, 이란과의 협력방향 등

75-0605

Lekhanya, Justinus M. 레소토 기동경찰대장 방한, 1975.9.25.-10.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G-43 / 13 / 1-109

J.M. Lekhanya 레소토 기동경찰대장이 1975.9.25.~10.2. 방한함.

1. 방한 목적

-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2. 주케냐대사는 1975.8.25. 상기 경찰대장 방한 관련 아래 보고함.

- 1975.8월 태권도 시범대회는 참석하지 못하고, 국군의 날 행사(10.1.)에 참석하기를 희망
  - 체한기간 중 유격전대, 공수부대 등 시찰, 일선부대 시찰 등 주선요망

3. 방한 주요일정

- 외무부장관 및 경제차관보 예방, 태권도협회장 예방 및 태권도 시범 참관(9.26.)
-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예방(9.27.)
- 국방부 방문, 기업체 시찰(9.29.)
- 일선부대 시찰(9.30.)
- 국군의 날 행사 참석(10.1.)

4. Lekhanya 기동경찰대장은 금번 방한시 L. Jonathan 레소토 수상의 박정희 대통령 앞 아래 친서를 외무부에 전달함.

- 기동경찰대장의 방한 초청에 사의 표명
- 레소토의 원조희망 목록 첨부

영국 국방대학원생 일행 방한, 1975.9.21.-2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G-43 / 14 / 1-27

영국 국방대학원생 일행이 1975.9.21.~25. 방한함.

1. 국방부는 1975.8.29. 외무부에 영국 국방대학원생 일행이 동남아 순방계획의 일환으로 방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방한기간(1975.9.21.~25.) 중 외무부장관 예방 및 브리핑을 주선해 줄 것을 요망함.

- 방한단 명단
  - 인솔단장: A. Golds 국방대학원 부원장(외무성 대사급)
  - 인솔학생: C. Pollard 영국 육군준장 등 11명(국적: 영국, 나이지리아, 프랑스, 파키스탄, 캐나다, 터키)

2.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975.9.23. 상기 영국 국방대학원생 일행에 대해 아래 요지로 브리핑을 실시함.

- 한반도 정세 및 안보상황
  -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1950~53년)의 비극과 극심한 파괴 경험
  -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북한의 야욕은 불변
-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및 정책
  -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과 긴장완화가 유일한 방법
- 한국의 평화통일 기본 3대원칙 발표(1974.8.15.)
  - 남북한 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상호 문호개방 및 신뢰회복, 한반도 총선거 실시를 통한 통일실현
- 북한의 반응
  - 북한은 동 제안 거절 및 미국과의 평화협정 등 주장
  - 유엔에서 유엔사 해체,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등 공산 측 결의안 제출
- 한국 측 대응
  - 유엔 서방 측 결의안으로 남북대화 지속 및 남북한 화해를 통한 평화적 통일방안 지지
  -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리 조치 촉구

75-0607

미국 안보관계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43 / 15 / 1-63

1975년 중 미국 안보관계 인사가 방한함.

1. A. Jordan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1975.1.28.~31.)
   - 목적: 주한미군 주둔 실태파악 및 극동 안보문제 협의
   - 국방부차관 및 합참의장 면담

2. N. Gayler 미 태평양지구 사령관(1975.5.27.~30.)
   - 목적: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시찰
   - 국방부장관 예방, 한미 1군단 및 미 제2사단 시찰, 오산 미 공군기지 시찰

3. M. Abramowitz 미 국방부 부차관보(1975.6.3.~5.)
   - 주요일정
     -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 예방, 한국 전방부대 시찰
     - 외무부장관 예방,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등
   - 외무부장관 면담(6.5.) 시 장관 설명요지
     - 김일성 중국(구 중공) 방문과 중국의 입장: 김일성은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국의 지원 획득 목적, 중국은 묵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
     - 북한에 대한 국제적 승인추세와 동 추세가 미치는 영향: 북한승인 국가수가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추세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 북한승인 추세로 말미암아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지지 세력이 크게 증가

4. F. Weyand 미 육군참모총장(1975.6.17.~19.)
   - 목적: 주한미군 시찰
   - 방한 주요일정
     - 주한 미국대사, 미8군 사령관 예방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예방
     - 한미 1군단 및 제1군 사령부, 주한 미군기지 시찰 등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87 / 40 / 1-348

1975.5.5.~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차 NPT(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 대비한 사전준비 사항임.

1. 외무부는 1975.3.7. 주유엔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1975.2월 제네바 개최 NPT 준비회의 경과, 본회의 기간, 회의 참가범위, 유엔사무국의 준비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 파악

2. NPT 평가회의 훈령

- 일반사항
  - 핵무기 비보유국가의 안전보장체제의 강화 필요성 역설, 특히 핵무기 보유국가의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방지(소극적 보장)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시 핵우산 즉시 제공(적극적 보장) 체제의 절차확립을 강조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특히 개도국의 에너지 자원확보 관점에서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강조
- 세부훈령
  - 회의기구에의 참가문제, 조약 3~6조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대처

3. 외무부는 1975.5.3. NPT 평가회의 보도자료 배포

- 정부는 NPT회의(1975.5.5.~30., 제네바)에 박근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5명 파견
- NPT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통해 핵전쟁을 방지하고, 동서 간의 긴장완화와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바, 동 회의는 동 조약 제8조 및 제28차 유엔총회결의 제3184조에 따라 협약 발효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
- 동 회의에서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의 발생에 대처하는 국제안보체제 강화문제, 핵에너지의 군사적 전용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문제, 특히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에너지 자원의 장기적 확보를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촉진 등에 관한 조치가 토의될 예정

75-0609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87 / 41 / 1-168

정부는 1975.5.5.~3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NPT(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 박근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개요

- 개최근거 및 목적: NPT 제8조 3항(조약 발효후 5년이 경과한 후 평가회의 개최) 및 제28차 유엔총회결의(제3184 B)에 따른 조약의 운용평가
- 참가현황: NPT 당사국 57개국, 서명국 7개국 및 유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타 25개 비정부간 기구

2. 한국대표 기조연설 시행(5.9.)

-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안보문제 관련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강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후진국에 대한 특례 문제도 언급

3. 주요 문제별 제안서 제출

- 지하 핵실험의 중지에 관한 의정서안, 핵 군비경쟁의 중지 및 핵군축에 관한 의정서안,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의정서안 및 전술 핵무기의 철거에 관한 결의안 등 3개 결의안 제출

4. 최종선언문 채택

- 전문
  - 핵무기의 비확산이 핵전쟁의 방지를 위한 노력의 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안전조치가 결여되면 핵폭발의 확산을 초래할 것임을 인정 등
- 핵무기의 비확산, 핵 군비경쟁의 중지 및 감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조약의 중대한 역할을 재확인

5. 회의결과 및 평가

- 회의에 제출된 각종 결의안 및 의정서안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소련, 영국의 반대로 불채택, 그러나 최종선언문 채택과정에서 77그룹은 제 결의안 및 추가 의정서안을 최종 선언문과 함께 회의 최종문서로 편철할 것과 최종 선언문은 동 결의안 및 의정서안의 내용에 비추어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종 선언문 채택에 동의
- 금번 회의는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 소극적인 평가를 면치 못하며, 특히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현저한 입장 차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됨.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G-43 / 18 / 1-33

1975년 중 미국 상원 본회의는 1975.12.12.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을 통과시킴.

1. 1975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 제출 동향은 아래와 같음.

- 상원
  - A. Cranston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10.9. 본회의에 제출
- 하원
  - C. Zablocki 의원이 7.30. 본회의에 제출

2. 결의안 주요내용

- 명칭: Mondale-Pastore 결의안
  - W. Mondale 의원(민주당, 미네소타주)과 J. Pastore의원(민주당, 로드아일랜드주) 발의
- 결의안 요지
  - 미국 대통령은 유엔 기타 세계기구 고위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노력을 즉각적이고 철저히 행할 것
  - 미국 대통령은 또한 여타 핵공급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핵확산이 방지되도록 핵장비와 기술의 이전이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도록 노력할 것
- 동 결의안 통과와 관련한 뉴욕타임즈(1975.12.29.) 사설 요지
  - 핵장비와 기술의 확산을 막는데 있어 포드 미국 대통령과 다른 핵공급국가 지도자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번 결의안에 의해 재확인됨.
  - 동 결의안은 어느 특정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있으나, Mondale 의원은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독일(구 서독)과 브라질, 프랑스와 한국과의 위험한 거래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음.

75-0611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구주1/북미2
MF번호	G-43 / 19 / 1-51

1972~75년 중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관련 사항임.

1. 경위

- 1968.6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나토 각료이사회에서 처음 제의
- 1972.5.29. 닉슨 미국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과 1973.6월 브레즈네프 소련 당 서기장의 워싱턴 방문 시 공동성명에서 1973.10.30.부터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1973.10.30. 비엔나에서 "중구유럽에서의 군대 및 장비의 상호감축과 관련조치에 관한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제1차 회의 개최
  - 참가국: 나토 측은 미국, 영국, 서독 등 7개국, 바르샤바조약기구 측은 소련, 동독, 폴란드 등 4개국
  - 양측 입장: 바르샤바조약기구 측은 상호감군을 실현하되 계속 군사적 우위확보 추구, 나토 측은 상호 대등한 수준으로의 감축 주장

2. 양측의 의도

- 서방 측
  - 주유럽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공산 측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 획득
- 공산 측
  - 미국의 구주 주둔군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미국의 위치를 약화시켜 소련에 유리한 발판 획득

3. MBFR 교섭에서의 양측입장

- 서방 측
  - 감축대상은 지상군에 한정, 규모는 1단계 미군 2.9만 명, 소련 6.8만 명 감축, 양측 병력한도를 72만 명으로 제한
- 공산 측
  - 감축대상은 지상군 및 공군포함, 양측이 균등하게 2만 명(75년), 5%(76년), 10%(77년) 감축

4. 문제점

- 감축비율 문제, 대상지역에 헝가리 포함여부, 군사력 및 장비 동질화기준 설정 문제, 감축의 증명방법, 철수병력의 재투입 및 군대이동 통제 등 다양한 문제로 논의 지속

5. 극동안보에 미치는 영향

- MBFR이 성공하는 경우, 중국(구 중공)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압력 가중 전망

국제기구분담금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H-30 / 1 / 1-147

외무부는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금 지불 관련조치를 시행함.

1. 1974년도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ICND(국제마약관리위원회)
- UNDP(유엔개발계획)
- UNICEF(유엔아동기금)
- WHO(세계보건기구)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태국제기구
  - ACDA(아시아개발행정센터), ASI(아시아통계연구원), AIEDP(아시아경제개발계획연구원)
- 세계지질도록위원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ITD(국제관세율표 발간동맹)

2. 1975년도

- UNDP
- ESCAP 및 산하기구
  - AIEDP, ASI, ACDA
- UNCTAD
- UNIDO
- INC(국제마약통제기구)
- WHO
- GATT
- BITD
- 콜롬보플랜
- CCOP(아시아천해저(淺海底)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
- ITC(국제주석(tin)위원회)

75-0613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전4권 (V.1 대책 및 진행사항 I: 1975.3-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0 / 2 / 1-120

1975.3~7월 중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외교적 노력임.

1. 외무부는 1975.5.30. 주유엔대사에게 남북 월남의 유엔가입 신청 동향파악을 훈령함.

● 남북 월남은 소련의 압력으로 조만간 유엔에 가입 신청한다는 미확인 정보

2.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Snider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함.

● 제1차 면담(1975.6.14.)

- Snider 대사 언급요지
  - · 주미국 소련대사가 1975.5.27. 미 국무부 잉거솔 차관을 방문, 남북 월남의 유엔 동시가입을 소련이 지지하고자 하는데 미국의 지지도 요청
  - · 미국 측은 남북 월남이 유엔에 동시가입한다면 남북한도 동시가입되어야 한다고 하고, 소련의 지지를 촉구
- 김 장관 언급요지
  - · 한국의 유엔가입이 이번 기회에 실현되도록 남북 월남의 유엔가입 신청과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

● 제2차 면담(1975.7.18.)

- 한국 측은 월남 공산정권 및 월맹의 유엔가입 신청(1975.7.15 및 7.16.)에 따라 남북 월남의 유엔가입 문제를 남북한의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지도록 미국 측에 협조 요청

3. 박정희 대통령은 1975.7.22. 미국 포드 대통령 앞 친서 발송

● 한국의 유엔가입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

- 남북 월남과 남북한의 유엔가입 문제를 일괄 처리
- 한국의 가입 없는 남북 월남의 유엔가입은 반대

4. 박동진 주유엔대사는 1975.7.29.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앞 한국의 유엔가입 재심요청 전문 발송

● 한국이 1949.1월 신청한 유엔가입 재심(renew) 요청

- 유엔안보리에서 조속한 시일내 심의하기를 희망
-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도 환영

5.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1975.7.30. 성명발표

●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성명을 유엔에 보도자료로 배포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전4권 (V.2 대책 및 진행사항 II: 1975.8-1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0 / 3 / 1-402

1975.8~10월 중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외교적 노력임.

1.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7.23.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시 한국 측 입장 지지 요청

2. 북한은 1975.8.5. 외교부 대변인 성명발표

-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은 민족의 영구분열을 꾀하는 엄중한 범죄행위

3. 외무부는 1975.8.6. 대변인 성명발표

- 금번 한국의 유엔가입 재심신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촉진,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돕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조치

4. 1975.8.6. 유엔안보리 비공식회의 개최

- 한국가입 의제채택은 미국 등 7개국 찬성, 중국·소련 등 6개국 반대, 2개국 기권으로 부결

5. 김동조 장관은 1975.9.22.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앞 한국의 유엔가입 재심신청서 제출 및 외무부 대변인 성명발표

- 한국은 금번 안보리가 아시아 분단국인 남북 월남의 가입신청을 재심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가입신청과 더불어 보편성 원칙에 따라 공정히 처리하기를 희망
  -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도 동시에 유엔에 가입할 것을 촉구

6.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75.9.26. 한국 및 월남의 유엔가입 문제 심의

- 한국 가입의제는 찬성 7개국, 반대 7개국, 기권 1개국으로 의제채택 부결

75-0615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전4권 (V.3 각국 입장 및 지지 교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0 / 4 / 1-203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각국의 입장 및 지지 교섭임.

1. 외무부, 전재외공관(또는 관련공관)에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각종 훈령 하달

- 제30차 유엔총회 대책 훈령(1975.1.10.)
  - 한국은 1974년 총회결의를 전폭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해 성의를 다하고, 남북대화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며 안보리 심의를 환영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확보 훈령(7.19.)
  - 남북 월남이 7.15. 및 7.16. 각각 유엔가입을 정식 신청
  - 상기 사실을 적극 활용,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지지확보를 위해 교섭하고 결과보고
- 한국의 유엔가입 재심 신청(7.30.)
  - 유엔안보리가 조속한 시일내 재심을 요청하는 외무부장관의 서한발송
- 유엔안보리회의(8.6.) 대비 지지교섭 훈령(8.1.)
  - 한국가입 신청에 관한 안건채택 지지확보
  - 한국가입 권고 결의안 지지확보
- 전재외공관 대기 훈령(8.2.)
  - 비동맹회의(1975.8.25.~29., 페루 리마)와 유엔안보리 한국가입 신청 심의(8월)에 대비, 주재국 주요인사와의 긴급접촉 상황 대비
- 한국의 유엔가입 권고결의안 제기 검토(9.4.)
  - 1975년 가을 유엔총회 신규가입문제 토의 시 남북 월남 가입권고 결의안 제기 가능성에 비추어 한국의 유엔가입 권고결의안 제기문제 검토
-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 재심요청 서한발송 통보(9.22.)
  - 정부는 9.21.자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 재심을 요청하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

2. 재외공관은 상기 훈령에 따른 주재국 정부와의 지지교섭 내용을 수시 보고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전4권 (V.4 언론보도 및 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0 / 5 / 1-216

한국의 유엔가입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자료가 수록됨.

1. 전재외공관은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된 주재국의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보고함.
   - 남북 월남의 유엔가입 동향
     - 남북한 가입과의 연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 등
   - 한국 정부의 유엔가입 재심신청 동향
   - 유엔안보리의 남북 월남 유엔가입 및 남북한 유엔가입 논의 동향
     - 미국의 남북 월남 유엔가입 거부권 행사

2. 외무부는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관련 각종 자료를 정리함.
   - 과거 한국과 북한의 유엔가입 신청 관련문서
     - 한국 가입신청 서한(1949.1.19., 1951.12.22., 1961.4.21.)
     - 북한의 가입신청 서한(1949.2.9., 1952.1.2.)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토의와 관련된 안보리문서(1957년, 1958년)
   -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토의와 관련된 안보리문서(1949년, 1951년, 1952년)

75-0617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 기본대책 I: 1974.12-75.2)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0 / 6 / 1-200

1975.9.16.~12.17.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정부의 기본대책임.

1. 외무부는 1975.1월 1975년도 제30차 유엔총회 대책을 수립함.

- 대유엔 전략 기본방향
- 기본대책
  - 한국문제 토의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유엔가입 추진, UNC(유엔사) 해체문제(안보리 대책),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대비, 득표공작

2. 외무부는 1975.1월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자료로 1975년도 유엔대책을 작성함.

-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경과
- 제29차 유엔총회 결과 분석평가
- 1975년도 대유엔 기본방침 및 대책
- 결론
  -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의 표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연초부터 각 공관장에 의한 총력 외교활동의 효율적 전개 필요
  - 득표 노력에 있어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표세(票勢) 호전 여하가 금년 가을총회에서의 승리의 관건

3. 외무부는 1975.2.20. 1975년도 외교활동계획을 수립함.

- 아시아지역: 외무부장관 순방(1975.2.16.~3.9.) 5개국, 겸임국 순방 2개국, 신임장 제정국 1개국, 방한초청 1개국
- 중남미지역: 겸임국 출장 10개국, 방한 초청 9개국, 원조 3개국
- 아프리카지역: 외무부장관 순방(75.6월) 4개국, 교통부장관 순방 4개국, 차관 순방 5개국, 공관설치 2개국, 대통령 방한 2개국
- 중동지역: 외무부장관 순방(75.5월) 4개국, 대통령 특보 수개국, 공관설치 1개국

4. 외무부는 1975.2.24. 1975년도 유엔 및 비동맹 대책을 위한 중점 교섭대상국을 아래와 같이 선정함.

-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23개국, 중동 12개국, 서구 9개국, 아시아 9개국 등 총 65개국

5. 최경록 교통부장관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제30차 유엔총회 대비 지지교섭차 1975.3.12.~4.16. 감비아 등 아프리카 7개국을 순방함.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6 연설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2 / 3 / 1-119

1975.9.16.~12.17. 뉴욕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기조연설 관련 사항임.

1. 기조연설 내용

- 통일은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 대화만이 전쟁과 민족적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
- 남북대화 재개문제, 휴전협정 보전(保全)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항구적 조치 마련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비현실적 태도를 반박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조치를 제의
- 미군의 한국주둔은 제3자가 운위(云謂)할 수 없는 주권적 사항으로 유엔헌장 취지에 부합됨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와 대남침략 기도 및 위협이 바로 미군주둔을 불가피하게 하는 이유임을 설명

2. 상기 김동조 장관의 기조연설에 대한 AP, UPI, Reuter 등 주요 외신의 언론보도 내용임.

- 동 연설이 많은 외교관들에 의해 박수와 함께 훌륭하다(excellent)는 평가를 받음.
-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사항을 중점 보도
  - 북한의 남침땅굴에 대한 직접 견학을 제의
  - 공산 측 결의안이 채택되면 남한의 행정시스템 붕괴와 전쟁 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질 것
  - 전쟁과 민족적 비극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대화와 평화임을 강조

75-0619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7 기타 자료)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2 / 4 / 1-233

1975.9.16.~12.17. 뉴욕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총회 관련 자료임.

1. 외무부는 1975.1월 제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한국의 평화 및 평화통일정책 제하의 정책 설명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서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확립의 긴요성
- 분단 종식을 위한 남북한의 접근
- 남북대화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 남북한 유엔가입
- 결론

2.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 결과 및 금후의 전망에 관해 통일주최국민회의에 보고함.

- 한국문제에 관한 기본입장
  - 남북대화 즉각재개와 남북간 교류와 협력확대 추구 기본입장
- 결어
  - 한국은 금번 총회에서 채택된 서방 측 결의안에 따라 계속 남북대화 재개와 당사자간 회담개최 노력 전개
  - 6.23 평화통일 외교노선에 따라 유엔가입노력 꾸준히 전개

3. 기타 참고자료

- 총회 발언자 명단
- 한반도 현실평가 및 공산 측 결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비망록
- 서방 측 결의안 및 공산 측 결의안
- 한국문제 안건신청 각서
- 제1위 의제 배정표
- 유엔사무총장 앞 미국 측 서한
-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
- 북한의 각서

유엔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V.19 국가별 교섭 I: 지시공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2 / 6 / 1-252

외무부가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대비 전재외공관(또는 관련공관)에 하달한 훈령 관련 사항임.

1. 유엔총회 대책 제1차 예비교섭(1975.2.10.)

2. 유엔총회 대책의 일환으로 우방간 협의결과 통보 및 교섭(1975.6.28.)

3.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가담교섭(1975.6.30.)

4.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평가 활용 및 주재국 반응보고(1975.8.13.)

5. 타국 대표 기조연설 시 한국 측 결의안 지지교섭(1975.8.19.)

6. 유엔총회 의장단 입후보국에 대한 한국 측 안건 채택 지지교섭(1975.9.2.)

7. 총회 운영위 안건채택 지지교섭(1975.9.6.)

8. 한반도 현실평가 및 공산 측 결의안의 부당성 지적내용의 비망록(aide-memoire) 송부와 주재국 입장확인(1975.9.9.)

9. 총회 제1위 한국문제 토의 관련, 공산 측 결의안 반대 및 한국 측 결의안 우선표결권 확보 노력(1975.9.21.)

10.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기조연설(1975.9.22.) 내용 및 외무부장관 성명 활용교섭(9.23.)

11. 한국문제에 관한 정부각서 및 서방측 수정 결의안 제출통보와 활용교섭(1975.10.13.)

12. 유엔총회 외무부장관 기조연설문 교섭 및 홍보활용(1975.10.21.)

13. 유엔총회 한국문제 표결(1975.10.29) 결과 통보 (10.30.)

75-0621

유엔 특별총회, 제7차(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력), New York, 1975.9.1.-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국제연합
MF번호	H-34 / 7 / 1-288

제7차 유엔 특별총회가 1975.9.1.~16. 뉴욕에서 개최됨.

1. 주요 결과

- 개발 및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결의안 채택(9.16.)
- 결의안 주요내용(7개 부문)
  - 개발도상국의 실질소득 확보
  - 선진국 GNP의 0.7% 원조 및 새로운 신탁기금 창설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활동 강화
  -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
  - 유엔경제기구 개편추진
- 토의 과정상 주요 문제점
  - 공산품과 원자재 간의 수출입가격 링크문제
  - 개발원조 목표량(special target figure)
  - 미국의 유보표명(선진국 GNP의 0.7%원조, IMF(국제통화기금) SDR(특별인출권)과 개발원조와의 링크문제)

2. 종합관찰 및 평가

- 이번 결의안 채택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한 획기적인 결정
- 이번 회의에서 서방국가 특히 미국이 제6차 특별총회(신국제경제 질서수립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나, 제28차 유엔총회(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에 관한 헌장채택), 제2차 UNIDO 총회(공업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리마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에서와는 달리 77그룹과의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고 문제별로 비교적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만장일치에 의한 결의안 채택 가능

주유엔 북한대표부 동향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4 / 8 / 1-15

1974~76년 중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련 동향임.

1. 북한대표부 현황

- 수석대표 권민중(1926.9월 평양출생), 부대표 이윤겸(1932년 함남출신) 외 공사 1명, 1등서기관 3명, 2등서기관 3명, 3등서기관 4명, 운전수 2명 근무
- 공관건물: 뉴욕시내 맨하탄 주택가에 위치
- 1974.4.30.이후 인원 5명 보강(차석대사 1, 참사관 3, 1등서기관 1)

2. 김일성 광고 게재에 대한 조치

- 뉴욕타임즈 김일성 광고 게재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대표부의 허용된 활동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 유엔사무국에 통보하여 북한대표부에 경고를 전달할 방침(1975.3.14. 및 3.17., 주미국대사 보고)
- 유엔사무총장 지시로 Suy 사무국 법률고문은 1975.4.3. 북한대표부 직원을 초치, 미국이 북한대표부 앞으로 유엔에 관련되지 않은 여타 업무활동을 삼가 줄 것을 요망한다고 전달(1975.4.4., 주유엔대사 보고)

3. 북한대표부 기자회견에 대한 항의(1976.3.10., 주유엔대사 보고)

- 1976.3.4. 김형익 공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Bennet 주유엔 미국대표부대사가 3.11. 직접 유엔측에 항의 예정
- 재미교포, 일반 미국시민에 대한 북한대표부의 선전침투에 관해 미국대표부는 3.10. 아래 각서를 한국대표부에 송부
  - 1.7.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유엔사무국에 북한대표부가 근거 없는 선전자료 배포활동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

75-0623

Waldron-Ramsey, Waldo E.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 방한, 1975.7.8.-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국제연합
MF번호	H-34 / 9 / 1-90

Waldo Waldron-Ramsey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 부부가 1975.7.8.~12.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2.6.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는 작년 유엔총회 시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으로 5월중 방한계획을 언급

2. 방한 목적

- 제29차 유엔총회 시 결의안 지지 등 협조에 사의표시 및 제30차 유엔총회 협조 확보

3. 주요 일정

- 7.8. 김포공항 도착,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7.9. 중앙대학교 방문(명예박사학위 수여), 용인민속촌 관광,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7.10. 대통령 예방, 경주 방문
- 7.11. 포항종합제철, 울산 현대자동차 방문
- 7.12. 전방부대 방문

Caicedo, Aurelio 주유엔 콜롬비아대사 및 Giambruno, Carlos 주유엔 우루과이대사 방한, 1975.6.9.-13.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4 / 10 / 1-49

Aurelio Caicedo 주유엔 콜롬비아대사 및 Carlos Giambruno 주유엔 우루과이대사 부처가 1975.6.9.~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방한 희망을 표시한 주유엔 콜롬비아대사 및 주유엔 우루과이대사에 대해 주유엔대사 명의로 1975.3.31. 초청장 발송

2. 방한 목적

- 제28차, 제29차 유엔총회 시 한국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표시
- 제30차 유엔총회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 및 공동제안국 참여

3. 주요 일정

- 6.10. 외무부장관 예방, 방교국장 면담, 국무총리 예방
  - 국립박물관 방문
  -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 6.11. 대통령 예방
  -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방문
- 6.12. 유엔기념묘지 참배
  - 전방부대 방문
- 6.13.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민속박물관 탐방

75-0625

Obame, Alexis 주유엔 가봉대사 방한, 1975.4.13.-20.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국제연합
MF번호	H-34 / 11 / 1-21

Alexis Obame 주유엔 가봉대사가 1975.4.13.~2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4.3.18. 외무부는 주유엔 가봉대사의 방한 승인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2. 방한 목적

-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확보

3.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전방부대, 선경직물 시찰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부총리 주최 오찬, 비공식만찬 2회
- 수교훈장 흥인장 수여

유엔 한국참전국협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H-34 / 12 / 1-43

유엔 한국참전국협회가 1975.3.1.~25.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함.

1. 경위

- 1963년 이래 유엔 참전국과의 민간외교활동 전개
- 6.25 제25주년을 기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2. 방문 목적

- 양국간의 상호 전우애와 유대강화, 한국기념관 전시용 전사품 기증, 참전용사의 한국 재방문 등

3. 주요 일정

- 미국
  - 6.25 참전 미국 상·하의원 순방
  - 한국전쟁 참전 미국의원 친목회 발족
  - 참전부대 마크 등 6.25 전사품 수집 활동
  - 미 향군 총회 참석
  - 역사적 증인 순방
- 캐나다
  - 캐나다군의 한국참전기념일(11.7.) 선정
  - 가평전투를 기념하여 연대병사를 가평으로 명명
  - 가평전투 캐나다 전적비 건립 합의
  - 참전용사단 방한 추진
  - 가평 장학생제 제의
  - 6.25 전사품 제공 합의

75-0627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4 / 13 / 1-243

1975년 중 개최된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회의임.

1. 제2차 정기회의(1975.10.27., 부산)

- 참석자: 주한 대사관(호주, 캐나다, 미국 등) 관계자, 외무부 차관보
- 정부 입장
  - 재정규칙 개정: 특별기금 신설의 불가피성 감안, 재정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지지 및 채택
  - 76년도 예산안 채택: 2차에 걸쳐 수정 성안한 7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지, 통과
  - 특별기금 사용문제: 특별기금을 일반 경상운영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시설, 건축, 기념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조경 등에 사용
- 회의 내용
  - 개회, 의제 채택, 의장 선출, 관리인 연례 보고
  - 소위원회 보고, 위원회 규칙 채택, 재정 규칙 채택, 예산안 승인

2. 소위원회(1975.10.7., 주한 캐나다대사관)

- 결정사항
  - 재정규정 개정 확정 및 위원회 정기회의 건의 결정
  - 76년도 예산안: 전기요금 인상 감안 65,860달러로 재조정
  - 특별기금 문제: 실무그룹 구성, 사용원칙 및 사업계획 검토

제30차 유엔의 날 기념메세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34 / 14 / 1-28

유엔의 날 기념메시지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10.22. 주유엔대표부에 유엔 창립 30주년에 즈음한 외무부장관의 기념메시지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 메시지 주요내용
     - 한국의 건국, 북한의 남침격퇴 및 국제평화의 유지에 있어서 유엔의 기여 평가 및 사의
     -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달성을 위해 유엔총회의 기여를 희망
     - 평화와 개발을 위한 유엔의 기능 달성 염원

2. 국무총리는 1975.10.24. 유엔의 날 제30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 치사를 대독함.
   - 치사 주요내용
     - 일부 국가들에 의해 유엔이 불필요한 대립과 선전장으로 변질된 사실에 주의를 환기
     - 우리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변화를 주목하여 나갈 것을 강조

75-0629

한국의 대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활동 강화 방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1 / 1-86

1975년 중 한국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강화를 위한 보고문서 및 국내외 활동임.

1. 제3차 수출진흥 확대회의(1975.4.30.)

- 개요, 우리의 위상, 활동 강화 필요성, 우리와의 관계, 최근 움직임, 활동강화 방안
- 필요성
  - 중국(구 중공)의 활동 적극화, 북한의 가입 가능성, 유일한 지역협력기구, 통상확대 등
- 활동강화 방안
  - 우선사업 적극참여: 경제개발계획, 공업개발 등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업의 채택을 통한 참여 시도
  - 사무국 및 전문기구 한국 직원 증가: ESCAP 사무국에 대한 한국 직원 파견 등

2. 국·내외 활동

- 외무부는 강화방안보고 문서를 1975.5.13. 주태국대사관에 송부, 참고하도록 함.
- 외무부는 5.14. 동 문서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통보, 직원파견에 대한 의견을 요청
- 관계부처는 직원파견에 대해 이견 없다고 회신
- 외무부는 6.10. 대ESCAP 활동강화에 따른 예산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제기획원에 송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1차. New Delhi(인도), 1975.2.26.-3.7.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2 / 1-349

정부는 1975.2.26.~3.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 박찬현 주인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74.12.12. ESCAP 총회 참석 준비 공지사항 통보서한 송부
- 1974.12.19. ESCAP 총회 참석 초청장 송부
- 1975.1.6. 외무부는 참석자, 의제별 입장 등 자료를 관계부처에 요청
- 1975.2.14. 총회 참가대표단 임명

2. ESCAP 총회 결과

- 의장단: 의장은 인도 상공장관, 부의장은 중국(구 중공) 등 12개국
- 주요 의제
  - ESCAP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계획 및 전망
  - 경제, 사회, 식량, 인구 등 제반활동 검토
  - ESCAP지역 각종 훈련기관의 진척 사항 검토
- 정부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 공식 및 비공식 회의 참석활동
- 특이 사항
  - 중국의 월남대표권 문제 제기, 미국의 반박 발언
- 평가
  - 식량부족, 에너지 가격 앙등, 인플레, 보호무역 강화 등 세계경제 여건에서 ESCAP지역 내 개도국의 경제에 대한 영향 검토 및 대응책 마련
  - 역내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난국의 극복 강조

75-063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공업·주택 및 기술위원회, 제1차. Bangkok, 1975.9.15.-2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3 / 1-182

정부는 1975.9.15.~22.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공업·주택 및 기술위원회 회의에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75.6.11. ESCAP 초청장 발송
- 1975.6.23. 외무부는 참가대표 및 입장자료를 관계부처에 요청
- 1975.9.12. 외무부는 과학기술처가 작성한 기술분야 자료를 주태국대사관에 송부

2. 회의 내용

- 주요 토의사항
  - 비수도권 공업개발 문제
  -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 농기구개발센터
  - 해외투자와 조세행정
  - 바이오 가스 활용: 한국 주관 워크숍 개최 용의 표명
  - 기술이전센터
  - 인간정착 및 환경
- 건의
  - ESCAP 주요 분과위에 전문가 참석 요망
  - 대ESCAP 활동 강화 필요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업개발위원회, 제1차. Jakarta, 1975.8.25.-9.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4 / 1-335

정부는 1975.8.25.~9.1.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농업개발위원회 회의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75.5.27. ESCAP 사무국 초청 서한 송부
- 1975.6.18. 외무부는 회의 참가대표 및 의제 관련 입장을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에 요청
- 1975.8.2. 외무부는 회의 참가대표단 임명

2. 회의 결과

- 회의명: The First Session of Committee on Agriculture, ESCAP
- 목적
  - ESCAP지역 농업분야의 발전과 협력방안 모색
- 주요 토의사항
  - 식량, 농업에 관한 주요정책결정 및 문제점
  - 식량 및 농업의 역내 협력
  - 역내 농업분야의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의 농촌 개발경험 설명 및 새마을운동 홍보. 농업·식량분야의 광범위한 새로운 정보 수집보다는 기존 정보의 활용 주력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ESCAP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동노력 방안 강구를 촉구
- 특이사항
  - 8.27. 정부대표단의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
- 평가
  - 구체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앞으로 검토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타협
  - 6개 선진국 및 13개 개도국의 저조한 참가실적을 보임.

75-0633

제1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위원회 및 제6차 무역협상단 회의. Bangkok, 1975.11.3.-14.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5 / 1-165

1975.11.3.~14. 방콕에서 개최된 제19차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무역위원회 및 제6차 무역협상단회의에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75.7.25. ESCAP 사무국의 무역위원회 잠정 의제 및 무역정책개발 자료 송부
- 1975.9.25.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제6차 무역협상단회의 의제통보 및 입장 요청
- 1975.10.17. 외무부는 ESCAP 사무국의 해운분야 참석요청을 교통부에 전달하고 대표 추천 요청
- 1975.10.25. 상공부는 무역협상단회의 관련 입장 송부
- 1975.10.25. 외무부는 제19차 무역위원회 및 제6차 무역협상단 회의 참가대표단 임명

2. 제19차 무역위원회(1975.11.3.~10., 방콕)

- 주요 토의사항
  - 무역위원회에서는 1975년도 중 ESCAP 회원국의 무역현황 및 무역정책동향 검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 경과와 개도국의 참여문제, 1976년도 ESCAP 활동계획 및 우선순위 협의

3. 제6차 무역협상단 회의(1975.11.11.~14., 방콕)

- 주요 토의사항
  - 무역협상단회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자유화, 공업 및 합작투자에 관한 협력문제, 상품분야의 협력문제 논의

4. 평가

- ESCAP 방콕협정 비준 진전 내용 통보 및 1976.1월말까지 3개국 비준 전망. 비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
- 공업 및 합작투자의 협력문제 관련 사무국 제안에 대한 동의 표명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사회개발위원회, 제1차. Bangkok, 1975.7.30.-8.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6 / 1-220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가 1975.7.30.~8.5. 방콕에서 개최됨.

1. 경위

- 1975.5.15. ESCAP 사무국의 초청 서한 송부
- 1975.5.26.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보사부에 대표 추천 및 자료 요청
- 1975.7.9. 외무부는 회의 관련 한국입장을 주태국대사관에 통보

2. 회의 결과

- 주요 토의사항
  - 제2차 유엔개발 10년 잔여기간의 주요 사회개발문제
  - 지역사업을 위한 아시아 사회복지 및 개발훈련연구센터 설립문제
- 한국 입장
  - 새마을사업 추진의 배경 및 성과 소개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
  -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개발문제의 중요성 증대 고려
  - 새마을사업을 통한 여성의 농촌사회개발 참여
- 평가
  - 종합적 경제개발 계획과 사회개발 계획을 양립시키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추구
  - ESCAP 회의구조 합리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사회개발위원회로서의 의의

75-063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제9-13차. Bangkok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7 / 1-236

1975년 중 제9~1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됨.

1. 제9차 회의(1975.4.28.)
   - 사업 및 우선순위 검토, 1975~76년도 회의 일정,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보고서, 개발 및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특별총회 준비

2. 제10차 회의(1975.6.24.)
   - 사회개발위원회 및 농업개발위원회 준비, 우선사업 이행경과 검토, 개도국 기술협력 논의

3. 제11차 회의(1975.8.15.)
   - 산업·주택·기술위원회, 내륙국특별기구회의의 준비, 제7차 특별총회 준비, 우선사업 이행경과, ESCAP 홍보물 발간 검토

4. 제12차 회의(1975.9.8.)
   - 제31차 총회 결의안 제158호의 실천을 위한 운영위원회 보고서, ESCAP 지역훈련원기관의 운영체제 개선방안 및 아시아연구원의 제3단계 운영계획안 논의

5. 제13차 회의(1975.10.10.)
   - 개도국간 기술협력, 회의 운영 지침, 제19차 무역위원회 및 제24차 교통·통신위원회 준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DI(아시아개발연구원) 집행이사회. Bangkok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8 / 1-70

방콕에서 개최된 제25~2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DI(아시아개발연구원) 집행이사회에 송인상 주벨기에대사가 참석함.

1. 제25차 집행이사회(1975.4.30.~5.2.)

- 회의 내용
  - 1976~80년간 사업계획 및 재정지원에 관해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 등 포함 논의 결과, 대체적 방향을 합의하고 성안되는 대로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제31차 ESCAP 뉴델리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실천 방안을 비공식 토의

2. 제26차 집행이사회(1975.7.31.~8.1.)

- 1975.5.15. 경제기획원은 집행이사 후보로 김만재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추천
- 회의 내용
  - 아시아 경제개발계획 연구원의 운영 및 재정 관련 협의
  - 사무국 제출 ADI 문서의 승인, UNDP의 재정 지원 확실시
  - AIEDP(아시아경제개발계획연구원)를 ADI로 개칭

75-063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sian Industrial Survey 권고 사업수행을 위한 고위계획관, 정부관리, 기업인 및 금융기구대표 간 회의. Bangkok, 1975.5.19.-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9 / 1-38

정부는 1975.5.19.~26.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sian Industrial Survey 권고사업수행을 위한 고위 계획관, 정부관리, 기업인 및 금융기구 대표 간 회의에 전계묵 상공부 중공업국 제철과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75.2.26. ESCAP 사무국 초청 서한 송부
- 1975.3.14. 외무부는 상공부, 재무부 등에 참석대표 추천 요청
- 1975.5.6. 외무부는 정부대표단 임명

2. 주요 토의 내용

- 지역협력을 위한 Asian Industrial Survey 보고서 상 권고사업 수행방법 및 지역협력원칙 토의
  - 지역 Steel Billet Plant 설립 가능성 검토

3. 한국의 입장

- 아시아 공업 Survey건의 사업수행 실천방안 결정의 중요성 강조, 현실적으로 협력가능한 국가간의 협정 추구 방안의 적절성 지적, Steel Billet Plant 설립에 제한된 범위내 자문용역 제공, 공장건설 지도 등 가능

4. 평가

- 제9차 아시아 공업개발이사회의 권고 및 제30차 ESCAP 총회 결의에 따라 회의를 개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TNG(무역협상단) 회의, 제5차. Bangkok, 1975.7.1.-3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10 / 1-386

정부는 1975.7.1.~31.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TNG(무역협상단) 회의에 김형근 주태국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75.4.16. 외무부는 제5차 TNG 회의 참가대표 추천 및 의제 관련 입장을 재무부와 상공부에 요청
- 1975.6.18. 재무부 주관 무역협상 양허품목 및 양허폭 작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1975.6.23. 무역협상단회의 참가 정부대표단 임명

2. 협상 결과

- 참가국 전체 양허 품목수: 157개
- 한국 양허내용: 엽연초, 소가죽, 코코넛 등 23개 품목
- 한국의 양자협상 대상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 1975.7.31.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의정서(방콕협정) 채택

3. 평가

- ESCAP을 중심으로 역내의 경제적 단합을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결실을 거둠.
- 제5차 회의에서 양자간 협상 진행을 통해 국별 양허표를 부속서로 하는 39개조의 협정문을 채택

75-063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회복지훈련연구센터 재정지원 문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6 / 11 / 1-32

1973~75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회복지훈련연구센터 설립 재정지원 문제 관련내용임.

1. 주태국대사는 1973.11.16. ESCAP 사무국이 UNDP(유엔개발계획) 및 ESCAP 회원국의 재정지원으로 동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제29차 ESCAP 총회에서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재정지원액을 회시하여 주기를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73.11.21. 센터 설립 재정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보사부에 문의함.

3. 보사부는 1974.1.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1,000달러 정도를 1974년 3/4분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회신함.

4. 주태국대사는 아시아 사회복지훈련연구센터 설립 문제가 1974.3.27.부터 콜롬보에서 개최되는 제30차 ESCAP 총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면서 재정지원문제를 훈령에 포함하여 주기를 요청함.

5. 과학기술처는 1974.4.1. 보사부가 1974년도에 1,000달러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온 바 있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6. ESCAP은 1975.6.30. 재정지원 기여금 증액 요청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7. ESCAP은 1974.8.15. 1,000달러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8. 주태국대사는 1974.9.1. 여타국의 재정부담 현황(이란 및 인도네시아 각기 1만 달러, 필리핀 6만 달러 등)에 비추어 우리의 1,000달러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고 1975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을 건의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농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간 회의. Bangkok, 1975.11.20.-22.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12 / 1-76

정부는 1975.11.20.~22.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농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간 회의에 문헌상 주태국대사관 재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75.10.2. ESCAP 사무국의 정부간 회의 초청 공한 송부
- 1975.11.21. 외무부는 ESCAP 활동 강화 필요성 감안,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임을 경제기획원에 알리면서 추후 센터설립 부담금 협의 예정임을 통보
- 1975.12.1. 외무부는 1977년부터 3년간 매년 3만 달러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경제기획원에 요청
- 1975.12.12. 경제기획원은 여타국의 재정부담에 비해 과중함을 고려하여 부담액 경감조치를 요청
- 1975.12.20. 외무부는 총 21,000달러를 통보하고자 함을 경제기획원과 협의
- 1975.12.30. 경제기획원은 금액에 동의를 표시

2. 회의 내용

- 참가국: 한국, 호주, 인도, 소련 등 13개국 및 UNDP(유엔개발계획),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 주요 토의사항
  - ESCAP 비회원국의 기부금 기탁 시 동 센터 참여 가능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로 신축성 있게 조정
  - ESCAP 사무국장은 UNDP와 협의, UNDP 이사회에서 동 프로젝트의 승인을 촉구

75-064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ACU(아시아청산동맹) 설립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13 / 1-33

1974~75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U(아시아청산동맹) 설립에 따른 역내국가의 참가 동향 및 우리의 가입 필요성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4.10.5. ESCAP 사무총장이 인도, 이란,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중앙은행이 ACU 기구창설을 위한 협정문에 서명하고 1974.12.29.자로 발효됨을 알려왔다고 하면서 주재국 정부의 참가 가능성 등을 타진할 것을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 관련공관에 지시함.

2. 외무부는 타국의 참가 가능성 등 역내 국가의 반응을 1974.10.25. 재무부에 통보함.
   - 일본은 참가 의사가 없으며 기술원조는 제공할 것이라고 함.
   -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은 가입 의사가 없으며 여타국은 신중히 검토 중임.

3. 재무부는 1974.12.11. ACU 설립 참가 관련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참가여부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를 보류하면서 일본 및 아세안의 태도를 관망하여 추후 가입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4. ESCAP 사무국은 ACU가 1975.11.1.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한국의 가입요청을 희망하는 서한을 11.10. 송부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작업단 회의 및 속개회의, 제14차. Geneva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14 / 1-28

1975.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작업단 회의 및 속개회의에 이용선 과학기술처 기획관리실장이 옵서버로 참가함.

1. 외무부는 1975.4.29.부터 개최되는 제14차 UNCTAD 이사회에서 기술이전위원회의 회원국 가입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한국가입 문제에 관한 의견을 과학기술처에 3.13. 요청함. 아울러 상공부에도 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3.3. 상공부에 제14차 UNCTAD 이사회 개최 자료를 송부하면서 토의안건별 입장을 요청함.

3. 과학기술처는 1975.4.4. 기술이전위원회 회원국 가입이 타당하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4. 회의 내용

- 작업단회의(1975.4.21.~25.)
  - 선진국은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 업무의 중복 회피를 위한 여타 기구와의 긴밀한 협의 등 강조. 개발도상국 예산증가 및 기술이전 활동 강화 주장
- 속개회의(1975.4.29.)
  - 제6차 선박위원회 보고서 등 채택, 한국 등 63개국의 기술이전위원회 회원국 피선

75-064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15차. Geneva, 1975.8.5.-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6 / 15 / 1-76

1975년 중 제15차 UNCTAD(유엔개발회의)/TDB(유엔무역개발이사회) 본회의와 속개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본회의(1975.8.5.~16.)

-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참석
- 제4차 UNCTAD 총회 의제는 제7차 유엔특별총회 결과를 토대로 제15차 이사회 속개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조치' 등 6개의 결의안을 채택함.

2. 속개회의(1975.9.30.~10.2.)

- 대표단(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
- 제4차 UNCTAD 총회(1976.3월, 나이로비) 가의제를 채택함.
- 제4차 UNCTAD 총회 운영방안 및 이사회 자문위원회 문제는 제7차 UNCTAD 특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하기로 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 외채문제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제3차. Geneva, 1975.2.25.-3.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1 / 1-35

정부는 1975.2.25.~3.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CTAD(유엔개발회의)/개발도상국 외채문제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에 정영모 한국은행 조사제1부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내용

- 금번 회의에서는 의제 제5항 '외환상환 불능사태 발생 시의 구제조치'만을 다루기로 한바, 동 의제 토의 시 아래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 됨.
  - 외채상환 계획 연장조치 작성 시 적용될 일반적인 원칙 마련
  - 개발도상국의 외채상환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치

2. 타협안

-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 필요성을 역설한 77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선진국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양측은 아래의 타협안을 채택함.
  - 채무국의 요청에 따라 채권국과 채무국 간 협상에 앞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동 위원회에 당사국 이외에 UNCTAD와 기존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 가능하나 당해 채무국의 경제동향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며 어떠한 건의도 할 수 없음.

75-064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1차. Geneva, 1975.11.24.-12.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2 / 1-75

정부는 1975.11.24.~12.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 위원회에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

-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아래사항 이행
  -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제반 여건을 고려한 행동계획 작성
  - UNCTAD 역할에 대한 건의
-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개도국은 기술의 토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할 것

2. 회의 결과

- 두뇌유출 문제에 관한 토의 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현격한 입장 대립을 보임.
  - 사무국이 제출한 문서는 두뇌유출이 선진국 경제에 기여한 효과 등을 주로 분석하고 두뇌유출의 주원인인 개발도상국 자체 내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분석하지 않음.
  - 선진국 측은 사무국이 동 문서를 재검토, 연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바, 개도국 측은 선진국의 태도를 비난함.
- 동 회의는 아래 골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함.
  - 개도국의 기술능력 강화 문제: 개도국의 기술향상 및 하부구조 개선을 위하여 UNCTAD가 주가 되어 계속 개발도상국에 권고
  - 특허문제: 파리협정의 개정문제는 9개 항목의 Guideline에 따라 수정될 것을 권고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7차. Geneva, 1975.10.27.-11.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3 / 1-106

정부는 1975.10.27.~1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에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54개 회원국, 7개 옵서버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2. 회의 결과

- 국제통화문제, 개도국 부채문제, 금융재원의 흐름, 국내자원의 동원, 보험 등의 의제를 주로 토의함.
- 선진국·개도국 Contact Group 합의에 따라 77그룹 제출 6개의 결의안 중 2개의 결의안(개도국의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신용 지원 및 보험)만이 채택됨.
- 개도국의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신용 지원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및 지역개발기구는 중장기 신용수출에 대한 재할금융제도의 신설 내지 확대를 긴급 고려하여 제7차 TDB(유엔무역개발이사회) 특별회의에 보고할 것
  - UNCTAD 사무총장은 국제금융기구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국제수출보증제도의 설립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한 후 이를 제16차 TDB에 제출할 것
- 77그룹은 개도국의 국제수지 및 부채상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동 그룹 제출결의안을 종합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별도로 채택함.

75-064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작업단 및 전문가회의, Geneva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6 / 1-54

1976.2~10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관련 동향 보고임.

1. 제3차 UNCTAD/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회의(1976.2.16.~3.5.)
   - 참석자(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 훈령
     - 복합 운송형태에 대처한 새로운 운송 법질서 수립에 있어서 합리적인 과실책임 원칙과 간명하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에 입각한 규정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
     - 콘테이너 운송분야에서 여타 개도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

2. UNCTAD/동(Copper)에 관한 준비회의(1976.9.27.~10.1.)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 정부간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 정부간 전문가그룹 구성: 생산자 측 15명 및 소비자 측 15명
     - 수권사항: 통합상품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방안 검토
     - 운영방법: 각 회원국별로 1명의 전문가를 임명, Nucleus Intergovermental Expert Group 구성

3. 제15차 UNCTAD/국제운송법규 작업단회의(1976.7.26.~30.)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 동 회의는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 채택한 상품의 해상 수송에 관한 문안을 심의하고 UNCTAD의 코멘트를 작성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품위원회, 제7차. Geneva, 1975.6.23.-7.4.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4 / 1-88

정부는 1975.6.23.~7.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품위원회에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활동

- 본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제품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발언
- 소그룹회의에서 비관세장벽 협상 및 직물류 교역에 관하여 발언

2. 회의 결과

- 결의안 등 채택
  - 결정: Cooperation between UNCTAD and UNIDO, Standstill
  - 결의안: Tariff Reclassification,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Convention of Another Expert Group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3. 평가

- 공식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의안을 협상하는 비공식 회의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 Standstill 및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등에 관한 결의안 채택은 실질적 진전

75-064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제9차. Geneva, 1975.7.28.-8.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5 / 1-52

정부는 1975.7.28.~8.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에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

- 기본 입장
  - 볼리비아 중석생산회의를 비롯한 최근 중석 관련회의에서 한국이 취한 견고한 입장 유지
- 세부 훈령
  - 중석의 국제시장 가격안정 확보에 주력할 것
  - 이를 위해 최고 및 최저가격제도 시행 지지
  - 중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 GSA의 중석 반출을 시장가격 교란 없이 자율규제하는 것과 대량생산국의 협조 그리고 중석생산 및 소비국의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이 선결 조건임을 주장
  - 중석 생산국 중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중석의 고가공품 수출장려와 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원조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회의 결과

- 한국대표단의 활동사항
  - 훈령에 따라 한국의 기본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
  - 의제7의 TUNGSTEN ORE RESERVES 토의 시 발언: 사무국이 작성한 통계자료는 서방 11개국에 국한되어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회원국 전체의 통계자료가 수집되기 전에는 동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료보완을 위한 추가사항을 요청함.
- 차기 회의는 1976년초 개최하기로 합의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제10차. Geneva, 1975.11.15.~1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6-63 / 7 / 1-144

정부는 1975.11.15.~1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에 신정섭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

- 의장단 선출
  - 회의 성격상 중석 생산국과 소비국 양측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망됨을 감안,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국가의 대표를 회의 의장으로 지지할 것
  - 이를 위해 J. Van Diest 네덜란드대표를 의장으로 지지
- 실질적 문제
  - 최고/최저가격도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현재 생산국과 소비국의 중간입장에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할 것
  - 중석가격의 안정과 관련, 세계 최대 중석공급국인 미국과 중국의 자발적인 공급량 조절이 실질적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

2. 회의 결과

- 회의 초반 생산국 측이 의제4항의 첨부인 Tungsten Stabilization Arrangement의 논의를 주장하고 협정초안을 제출한 데 대하여, 소비국 측은 동 협정안의 토의 전에 아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 정보교환 방법 및 제도 개선, 생산원가 및 최근 가격상승 원인 분석, 가격지표 개선, 재고조절 등
- 양측은 Contact Group을 구성, 이견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된바, 최종 본회의에서 양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함.
  - 생산국 측은 차기 제8차 UNCTAD 무역개발위원회 특별이사회에서 Tungsten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제협정 제정을 목적으로 한 협상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금차 회의가 성과 없이 종결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 소비국 측은 보고서에 소비국 측의 제안을 첨부로 수록할 것을 요청함.

75-065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위원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75.11.10.-2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6 / 1-77

정부는 1975.11.10.~2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위원회에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활동

- 해운위원회 회의가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토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차기 회의 시부터는 하주대표 등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건의함.

2. 주요 결정사항

- 해운 및 항만에 대한 기술지원 문제
  - 개도국의 해운 및 항만 분야에의 적극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관계인의 훈련, 지역기구 발전에 역점을 둘 것을 결의
- 운임율 문제
  - 선진 해운국과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하여 개도국의 지역별 하주기구 설립 필요성을 재확인
- 선박금융
  - 개도국 선박 보유량 확충을 위한 항구적인 선박 금융기구의 창설 가능성을 UNCTAD 사무국이 검토하기로 함.
- '정기선 동맹헌장' 시행 촉구
  - 선진 해운국의 강력한 반대로 77그룹의 '정기선 동맹헌장' 조속 시행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회의보고서 첨부에 수록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입법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5.1.27.-2.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7 / 1-20

정부는 1975.1.27.~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입법 작업단회의에 이보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옵서버로 파견함.

1. **외무부는 한국이 동 작업단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옵서버로 파견하여 동 회의에서 논의·검토되는 상황을 관찰하도록 함.**
   - 동 회의는 개도국의 무역확대에 따른 해운운임 부담의 과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해운관계 법률 및 관행을 검토·개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용선시장 운영 및 용선 계약상 법률문제를 검토·개선하고자 하는 회의임.

2. **훈령(우리 관심사항)**
   -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선 계약에 관한 서식 및 규정의 표준화 조치 동향을 탐지할 것
   - 선주간 또는 선주와 하주 간 기간용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표준시간 설정을 통해 당사자 간 용선시차에 관한 불편을 제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할 것
   - 항해 용선시 선주 측의 하역준비 완료통고와 하주 측의 하역개시 가능통보 간의 시차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하역 기준시간 표준화 조치 검토 동향을 파악할 것
   - 선진국의 선주로부터 나용선 계약을 통해 선박을 인도받는 경우 기간의 최대 연장을 통해 용선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할 것

3. **회의 결과**
   - 한국은 작업단 국가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회의에 대표부 직원이 옵서버로 참가함.
   - 훈령에 따라 한국의 관심사항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본국으로 전달하여 향후 입법화에 대비하도록 함.
   - 한국 측은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데 주력함.

75-065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1차산품위원회, 제8차. Geneva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8 / 1-80

1975년 중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1차산품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부 회의(1975.2.10.~21)
   - 수석대표: 이보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토의 결과
     - 텅스텐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중 가격제 창설 가능성을 텅스텐위원회로 하여금 계속 검토하도록 함.
     - 1차산품의 무역장벽 제거와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생산국 정부와 소비국 정부 간에 집중적인 협의를 조속히 가지도록 촉구하기로 함.

2. 제2부 속개회의(1975.7.21.~26.)
   - 수석대표: 문덕주 주네제바대표부 대사
   - 토의 결과
     - 유엔사무총장이 제시한 생산국과 소비국의 협조에 의한 기금 창설에 관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의견이 대립함.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기금 창설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음.
     - 선진국은 사무국이 기금 창설안을 제시하기 전에 품목별 Stocking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문제점 및 기존 국제상품협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3. 제3부 속개회의(1975.12.8.~19.)
   - 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토의 결과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상호 상반되는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스웨덴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관계 규정 변경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9 / 1-8

1. 스웨덴 정부는 1975.7.1. 원산지 규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함.

2. 스웨덴 외무부는 1975.7.25.자 주스웨덴대사관 앞 공한으로 상기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하면서 이와 관련한 스웨덴의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 대한 통보문을 첨부함.

75-065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10 / 1-71

1974~75년 중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대상국 관련 사항임.

1.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5.3.24. GSP 수혜대상국 명단 및 수혜대상 품목리스트가 수록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

- 수혜대상국
  - 89개 개발도상국(한국 포함) 및 43개 속령(수혜대상국은 당초 93개국이었으나, OPEC(석유수출국기구) 국가 및 미국 재산몰수국 등 4개국이 제외됨.)
- 수혜대상 품목리스트
  - 수개의 관심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리스트가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회부됨.
  - ITC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동 리스트를 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동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
- 발효시기
  - ITC 검토 완료 후

2. 주미국대사관은 일부 산유국을 수혜대상국에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함.

-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산유국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부여 금지조항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함.

각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11 / 1-47

1975년 중 각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에 대해 아래국가의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국에 각각 통보함.

1. 방글라데시(1975.3월 요청)
   -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관계를 감안함.

2. 이란(1975.6월 요청)
   -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감안함.

3. 트리니다드토바고(1975.7월 요청)
   - 비동맹 정회원국이며 유엔 한국문제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임.

4. 터키(1975.7월 요청)
   - 한국전 참전국이며, 유엔에서 한국입장을 계속 지지하는 등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함.

75-065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Lima(페루), 1975.3.12.-26. 전2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12 / 1-255

정부는 1975.3.12.~26.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에 최각규 경제기획원차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인권 주페루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대표와 접촉하여 경제협력, 기술제휴의 증진을 기함.
- UNIDO 당국자와 접촉하여 동 기구로부터 지속적인 각종 기재 및 기술원조 획득을 기함.
-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개선 및 유대강화를 기함.

2. 정부 대책

- 남북대화 재개, 안보이사회의 UNC 문제 검토 등 작년 총회결의 이행이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길임을 역설하며 동 총회결의의 이행을 위한 능동적인 태도를 취함.
-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함.

3. 대표단 훈령

- 북한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표대결에 대비하여 비동맹 내지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 확보와 한국 고립화를 위한 책동을 격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비동맹국 대부분이 속해있는 77그룹에의 참여와 활동을 실질적으로 적극 강화함으로써 비동맹 세력 내지 제3세계 내에서의 한국의 열세를 만회할 것이 요망됨.
-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77그룹 국가와 보조를 같이하되 특히 비동맹 내 한국입장 적극 대변교섭대상국과의 협조에 유념하는 동시 회의 개최국의 비동맹그룹 내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페루대표단과도 적극 접촉, 협력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와 지위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2차. Lima(페루), 1975.3.12.-26.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13 / 1-151

1975.3.12.~26.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결과임.

1. 참석자

- 114개 회원국 및 34개 국제기구대표

2. 의제

-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

3. 주요 경과

- 31개국 대표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선언 및 행동계획'안을 협의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가 심해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는 못함.
- 미합의사항은 소규모의 Presidential Group에서 협의하도록 함.
- Presidential Group은 77그룹과 그룹B(선진국) 간의 의견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아래를 포함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도국의 수출입 물자 가격링크 문제,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행사,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에 관한 헌장, 대선진국 공동협상 및 협상지위 강화방안으로서의 1차산품 생산국회의 강화, 신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문제 등
- 선진 4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요청으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10개 항목에 대해 Roll Call에 의한 투표를 실시함.
- 이어 개최된 본회의에서 '선언 및 행동계획'이 표결로 채택됨.
  - 찬성 82개국(한국 포함), 반대 1개국(미국), 기권 7개국(영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스라엘)

4. 한국대표단의 종합관찰 및 평가

- 동 회의에서는 미국·서구국가의 기존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부정하고 자원보유 개발도상국 중심의 신경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77그룹 회원국인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세네갈, 중국(구 중공) 등이 회의를 주도하는 분위기임.

75-0659

제9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6차 상설위원회. Vienna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14 / 1-106

정부는 197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9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및 제6차 UNIDO/IDB 상설위원회에 옵서버를 파견함.

1. 제9차 UNIDO/IDB(1975.4.21.~5.2.)

- 옵서버대표: 강승구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 제2차 UNIDO 총회 결정 및 권고사항 추진
  - 이사회 2개 결의안 채택(리마총회 결정 및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결의문,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의 무차별 대우에 대한 결의문)
- 중국(구 중공)의 한국에 관한 발언
  - 중국은 UNIDO 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과정에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구 크메르), 이스라엘에 대한 기술원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대표단의 관찰사항
  - 77그룹, 선진국, 공산국간의 상이한 입장 지속

2. 제6차 UNIDO/IDB 상설위원회(1975.12.1.~10.)

- 옵서버대표: 차원민 주제네바대표부 과학관
- 동 회의는 리마총회에서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시 이를 지지하지 않은 8개국(반대 또는 기권한 선진국)과 82개 지지국 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성격의 회의임.
- 주요 토의의제
  - 제2차 UNIDO 총회의 결정 및 권고 후속조치
  - 제7차 공업개발에 관한 유엔특별총회 후속조치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20차. Geneva, 1975.6.11.-3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경제기구
MF번호 I-57 / 15 / 1-76

정부는 1975.6.11.~3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0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옵서버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

- UNDP 사업의 집행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수원국 정부가 가지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상응한 권리도 수원국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
  - 이를 위해 Executing Agency가 갖고 있는 권한의 많은 부분을 수원국 정부로 이양할 것
- 수원국 전문가를 UNDP 프로젝트의 국제전문가로 활용할 경우 의사소통 원활, 애국심에 의한 열성 발휘, 두뇌 유출 방지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바, 현행 자국 전문가 활용 금지조항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
- UNDP 운영에서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의 과감한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바,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것

2.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유엔에 의한 기술원조사업의 25주년이 되는 연도에 개최된 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구상 등을 토의함.
- 주의제인 'UNDP의 장래역할' 문제에 관하여 Administrator가 제시한 'New Dimension'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지를 받아 컨센서스로 채택됨.
  - UNDP 사업은 단순한 기술원조에서 탈피하여 경제발전에 관한 기획·입안·집행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게 됨.
- 컨센서스에 의한 New Dimension 채택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UNDP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75-0661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 제3차. Nairobi(케냐), 1975.4.17.-5.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7 / 16 / 1-12

1975.4.17.~5.2.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에 외무부는 주케냐대사관 직원이 동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지시함.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분담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7 / 17 / 1-66

1. 주한 유니세프대표는 1975.2.25.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에서 유니세프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한국 정부의 수원부처가 수원액에 비례하여 주한 유니세프대표부의 행정경비를 부담할 것을 제안함.

2. 외무부는 1975.5월 매년 전년도 수원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니세프에 대한 분담금으로 전액 원화 부담하고 행정경비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
   - 동 방침은 경제기획원 및 수원부처(문교부, 보사부, 농촌진흥청, 노동청)와 협의하여 결정됨.

3. 외무부는 1975.6.21.자 공한으로 유니세프에 대한 분담금 관련 사항을 주한 유니세프대표부에 통보함.
   - 한국 정부는 1976년도부터 유니세프에 대한 분담금을 증액할 것을 고려 중임.
   - 주한 유니세프대표부의 행정경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

75-0663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기여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I-57 / 18 / 1-14

1975년 중 한국 정부가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기여금 납부를 검토한 내용임.

1. 유엔사무총장은 제29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각국 정부에 기여금 납부를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5,000~10,000달러)의 기여금을 제공하여 왔으나, 1975년에는 UNRWA를 통하지 않고 팔레스타인피난민 관계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함. 그러나 베이루트 주재 한국공관은 8월 외무부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3만 달러 이상의 기여금을 한국문제가 토의되는 9~10월경 유엔을 통하여 제공할 것을 건의함.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총회, 제25차. Moscow(소련), 1975.10.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7 / 19 / 1-183

정부는 1975.10.1.~6.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5차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총회에 전택보 유엔한국협회 회장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WFUNA 개요

- 회원국에서 유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민간차원에서의 유엔에 대한 지원활동을 위하여 1946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민간기구연합체임.
- 한국은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연맹 회원임.

2. 한국대표 참석

- WFUNA는 1975.6.27. 주제네바대표부에 보낸 공한에서 1975.10.1.~6.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총회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소련 정부가 미수교국인 한국대표단에 입국사증을 발급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연맹에 대한 교섭을 지시함.
- Perera WFUNA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주일본 소련대사관에 비자발급 관련 외무부 지시 접수여부를 탐문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하였으며, 주일본 소련대사관은 모스크바 본성으로부터의 훈령 미접수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하다가 회의 당일이 되어서야 대표단원 중 3명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함.
- 한국대표단은 동 총회에 남북한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못함.

75-0665

WFC(세계식량이사회) 회의, 제1차. Rome, 1975.6.23.-2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7 / 20 / 1-30

정부는 1975.6.23.~27.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WFC(세계식량이사회)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로 파견함.

1. 유엔총회는 1974.12월 제1차 세계식량이사회 회의를 1975.7.1.이전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동 회의를 1975.6.23.~27. 로마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식량이사회를 신설

2. 주요 의제
   - 80여개 국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사회에서는 세계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조치들에 관한 의견교환과 최빈개도국에 식량원조를 목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IFAD(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안 검토

WFP(세계식량계획)/IGC(정부간위원회) 회의, 제27-28차. Rome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7 / 21 / 1-58

정부는 1975~76년 중 로마에서 개최된 제27~28차 WFP(세계식량계획)/IGC(정부간위원회) 회의에 옵서버을 파견함.

1. 제27차 회의(1975.3.17.~25.)
   - 옵서버 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회의 결과
     - 의제 중의 하나인 한국에 대한 WFP 지원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환경개선(농촌급수 및 하천개수와 수자원 개발, 수유 및 영양공급 개선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WFP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그러나 WFP는 재원 감소로 최빈개도국 및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개도국 지원에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WFP와 교섭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제28차 회의(1975.9.29.~10.3.)
   - 옵서버 대표: 성백전 농수산부 수자원국장
   - 참가 목적
     - 정부는 WFP 지원으로 한국에서의 치수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3차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WFP에 지원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지원 확보
   - 회의 결과
     - 15개국에서 시행되는 18개 경제, 사회개발계획에 165백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한국에도 4백만 달러를 책정함.

75-0667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19차. Vienna(오스트리아), 1975.9.22.-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7 / 24 / 1-132

정부는 1975.9.22.~26.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9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병희 과기처 원자력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1976년 예산심의 및 분담금 결정, 이사국 선출, 핵에너지의 평화적 목적 사용에서의 발전 등
- 총회기간 중 "핵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CA)" 회의 별도 개최

2. 훈령

- 한·IAEA 안전조치협정과 한·프랑스·IAEA 안전조치협정이 한국 측 안대로 채택되도록 교섭,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훈련센타 및 핵연료 재처리센타 설치 적극추진 등

3. 회의 결과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관리와 선진·개도국 간 원자력 자원 및 기술의 광범위한 교류 확대 문제
  - 선진국들은 평화적 이용 및 안전관리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낙후된 국내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해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IAEA가 원조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
  - Eklund IAEA사무총장은 NPT(핵비확산조약) 및 안전조치협정의 체결을 통한 비핵무기 국가 내 원자력 활동,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에 따르는 물리적 보호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실험 등 일체의 원자력 관련 활동을 IAEA 관리 하에서 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
- 이사국 선출
  - 극동지역 대표로 한국이 지지한 필리핀이 선출되었으며 북한은 출마 포기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 제9차. London, 1975.11.3.-1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7 / 22 / 1-141

정부는 1975.11.3.~14. 런던에서 개최된 제9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에 최종익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IMCO 정관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비준현황 및 문제점 검토, 이사국 선출, 해사안전위원회, 해사환경보호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 제출 보고서 심의, 추가 정관개정 추진, IMCO의 장기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 등
- 훈령
  - 상위권에 속하는 해운국가로서 이사회 및 해사안전위원회, 사무국에의 진출 가능성 등 조사할 것, 각 전문위원회 보고서 승인

2. 회의 결과

- 개정된 정관 비준 현황 점검 및 추가 정관개정을 위한 Ad hoc working group의 보고서 청취
  - IMCO의 역할 확대에 맞추어 기구의 명칭 개정
- 해산안전위원회 등 각종 전문위원회 보고서 채택
- 3개 그룹별 이사국 선출

75-0669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 제9차. London, 1975.11.3.-14. 전2권 (V.2 회의문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7 / 23 / 1-257

제9차 IMCO(정부간 해사자문기구) 총회에서 배포된 의제, 의제별 토의요록 등 회의자료임.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7 / 25 / 1-37

1975년 중 비엔나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개최됨.

1. 2월 이사회

- 호주는 2월 이사회에서 PNE(Peaceful Nuclear Explosion)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립하고 관심 있는 회원국들에 가입을 개방하자는 결의안을 영국, 서독 및 일본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동 위원회 설립 시 한국 정부의 가입추진을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지시함.
  - 이사회 회의에서 소련, 프랑스 등 다수 대표들이 동 결의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내용검토 필요 및 본국 정부로부터의 훈령 미접수를 이유로 이사회 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당기간 유보하기로 결정

2. 3월 임시이사회

- 일본의 NPT(핵비확산조약) 가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임시이사회가 1975.3.5. 개최되어 원안대로 통과됨.
- 프랑스대표는 동 이사회에서 한·프랑스·IAEA 간 안전조치에 관한 3자 협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사전 소개함.

3. 6월 이사회

- 원자력기구 사무국 내에 여성채용을 권장하는 미국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유럽지역 이사국 윤번제 수임방식을 두고 스웨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이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 후보를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동 문제는 서구그룹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함.

75-0671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75.4.28.-5.2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 / 1-198

정부는 1975.4.28.~5.2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MO(세계기상기구) 총회에 양인기 중앙관상대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최호중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기상분야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문제
- 기구헌장 개정
- 사무총장 연임 및 집행위원 선출
- 월맹, 북한가입,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및 PRG(베트콩)대표권과 이스라엘 및 남아공 축출 문제 등 정치적 문제

2. 정부 훈령

- 북한가입 문제 투표에서는 기권(6.23선언 근거), 베트콩대표권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월맹의 가입에 대하여는 기권, PLO대표권 문제에 대하여는 찬성 또는 기권, 이스라엘 축출 표결 시에는 결석, 남아공 축출문제 제기 시에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하여 원칙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축출 표결에는 결석
- 사무총장 연임지지 및 집행위원 입후보 국가 중에 지지 요청한 일본 등 국가에 대하여 지지
- 세계기상 감시계획 수행, 연구개발 계획, 응용기상 및 환경개선 계획, 수문 및 수자원 개발계획, 기술협력 및 훈련계획, 지역계획 등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 기상기구가 수문분야 업무를 흡수 관장하도록 헌장을 개정하는데 찬성

3. 회의 결과

- 정치문제
  - 월맹가입 통과, 월남 정부 붕괴로 베트콩이 대표권 인수, 북한 가입안은 통과, 남아공 회원자격 정지, PLO 및 14개 아프리카 민족해방전선기구의 옵서버자격 인정
- 선출
  - 사무총장 유임, 총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선출
- 기상분야 결의안 채택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제7차. Geneva(스위스), 1975.4.28.-5.23. 전2권 (V.2 북한가입, 1974-7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2 / 1-179

1975.4.28.~5.2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MO(세계기상기구) 총회에서 북한가입이 결정됨.

1. 1974년 WMO 총회의 북한 옵서버자격 참가

-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표는 1974년 총회에 옵서버자격 참가를 WMO에 통보하고 동 기구가입 절차 등에 대하여 탐문함으로써 북한이 1975년 총회에 가입 신청할 것으로 예측됨.
- 1975년 총회에 대비하여 동독은 북한을 옵서버로 참가하도록 초청함에 따라 옵서버 참석 대상 12개 국가에 대한 우편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북한의 참석이 결정됨.

2. 회원 가입

- 북한은 1975.3월 허담 외상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WMO 사무국에 송달하였으며 사무국은 각 회원국에 이를 공시함.
- 한국 정부의 입장과 우방국에 대한 설득 노력
  - 한국 정부는 우방국들에 6.23선언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는 하지 않으나 북한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진지한 태도를 보이기 전에는 기상기구 가입신청에 대하여 기권할 것임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함.
- 북한가입 결의안 제출 및 표결
  - 4.18. 알제리 등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5.7. 비밀투표 결과 총회참석 114개 국가 중에 찬성 96, 반대 0, 기권 17로 가입 결정
  - 북한은 5.27. 가입서 기탁, 6.26. 협약 발효

75-0673

WMO(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의, 제6차. Colombo(스리랑카), 1975.9.8.-18.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3 / 1-68

정부는 1975.9.8.~18.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6차 WMO(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의에 이상진 주스리랑카통상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지역회의에서는 기상재해를 최소한으로 감소,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인접 국가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 문제 등을 협의
- 세계기상 감시계획의 지역적 현황, 지역차원에서의 교육, 훈련 및 연구 현황,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기술협력 프로그램, 강의 및 토론 등

2. 정부 훈령

-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훈령에 따라 정부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신규 회원국이 된 북한의 정치선전 가능성에 대비

3. 회의 결과

- 정치적 문제
  - 회의 의장 선거에서 소련과 중국(구 중공)의 대립이 노골화 되었으며 중국이 지지하는 태국 후보가 당선
  - 중국대표와 월남대표가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격렬한 영유권 주장 공박을 전개
- 기술적 문제
  - 제5차 회의 이후의 활동보고서 채택 및 차후 4년간 활동 우선순위 결정
  - WMO 사무국에 아시아지역 사무처 설치를 집행위원회에 건의
  - 아시아지역 관측체제, 자료처리 체제, 통신 체제, 아시아지역에서의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피해 경감책, 교육 훈련 및 연구계획,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결의 등 채택

유네스코 매스미디어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전문가회의. Paris(프랑스), 1975.12.15.-22.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4 / 1-98

정부는 1975.12.15.~22.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대중매체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전문가회의에 민병규 주프랑스대사관 공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경위 및 의제

- 1974년 개최된 제18차 총회는 평화와 국제이해를 강화하고 전쟁과 인종 편견을 타파하는데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자는 기본원칙 선언문 초안 채택을 제의하였으며 제19차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 동 초안을 작성할 것을 결정함.
- 외무부장관은 1975.3.21.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즈음한 메시지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천명

2. 회의 결과

- 쟁점사항
  - 아랍국가들이 반시오니즘 조치를 선언문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자 미국 정부는 온건 아랍국가들을 통하여 문안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
  - 유고슬라비아가 선언문 전문에 인종차별에 관한 유엔 결의 일반과 특히 반시오니즘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문(내용이 아닌 결의문 번호)을 언급하게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에 붙여졌으며 통과됨(한국을 포함한 70개국이 표결에 불참).
- 선언문 초안 채택
  - 제1부(정보자유의 개념), 제2부(매스미디어 책임의 개념)로 구성된 백그라운드 설명과 선언문 초안(전문과 13개 조항)이 채택됨.

75-0675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국내위원회 회의, 제6차. NewDelhi(인도), 1975.11.10.-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5 / 1-143

정부는 1975.11.10.~15.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6차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국내위원회에 김규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70년 이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이래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유네스코 관계회의에서 채택된 각종 권고사항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유네스코 회원국 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토의
- 제19차 유네스코 총회 대비

2. 회의 결과

- 역내 국내위원회 17개국 대표가 참석
- 권고안 채택
  - 교육·문화·과학의 발전에 대한 권고안 등 10개 권고안
- 한국대표단은 지역사회개발 연수사업을 촉구하는 등 위원회 활동방향을 제시함.

유네스코/IBE(국제교육국) 총회, 제35차. Geneva(스위스), 1975.8.27.-9.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6 / 1-231

정부는 1975.8.27.~9.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네스코/IBE(국제교육국) 총회에 조성옥 문교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73~75년 유네스코 회원국의 교육발전의 주요 동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교육이 회원국들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닥쳐올 도전에 유효한 대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반 문제를 검토
  - 1985년까지의 취학자 및 교사수급 계획, 교육발전의 주요 동향 소개, 교사의 변화하는 역할이 주요 주제

2. 정부 훈령

- 한국의 문교정책과 제도 및 운영, 향후 방향을 소개하여 한국 이미지 제고, 북한과 동구권국가 대표들의 6.23선언 이해를 제고하며 주요 토의주제(1985년까지의 취학자 및 교사수급 계획, 교육발전의 주요 동향 소개, 교사의 변화하는 역할) 토의에 한국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의에 참여

3. 회의 결과

-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90여개국 대표 참석
- 북한대표가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한국대표는 한국의 교육전반에서의 발전사항을 발표함.

75-0677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의 공업소유권 관계기술 습득을 위한 상임위원회, 제2차. Geneva, 1975.3.17.-2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7 / 1-35

정부는 1975.3.17.~2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의 공업소유권 관계기술 습득을 위한 상임위원회에 문기상 상공부 특허국장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의제

- 개도국을 위한 특허 및 노하우 관계법안, 라이센싱 세미나와 가이드라인, 라이센싱 공개 등

2. 참가목적

- WIPO는 1974.12.17.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유엔전문기구로 되었는바, 한국의 동기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가자세 요망
- 현재 한국은 WIPO 및 WIPO 관계협약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금번 회의에 대표를 파견함으로써 동 가입문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3. 정부 훈령

- WIPO 가입에 대비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며, 해외시장에서 신개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한국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수준화를 위한 발전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 기구 전문가단의 적극적인 협조 특히 법 기술상의 지원확보가 필요함을 설득(전문가 파견과 연수생 증원)

4. 정부대표단 활동

- 대표단은 WIPO 사무국장 등 고위인사와의 개별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협의함.
  - 가입 조건, 절차 등과 WIPO의 지원협력 제공
- 대표단은 회의 참가보고에서 한국의 WIPO와 파리협약 가입 필요성이 농후해졌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 11개국과 이미 개별 협정을 통하여 공업소유권을 상호보호 중임.
  - 서독, 영국 등 9개국과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보호를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 그 적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결 예정
  - 한국도 경제발전으로 상표권을 비롯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주장해야 할 시점이 도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18차. Rome, 1975.11.8.-2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8 / 1-157

정부는 1975.11.8.~27. 로마에서 개최된 제1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 장덕진 농수산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사무총장 선출, 신규 회원국 가입 및 옵서버 수락 결정, 이사국 및 이사회장 선출 등 절차문제
- 세계식량사정, 세계식량회의 총회의 권고사항,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선언 및 조치계획 등 실질문제

2. 정부 훈령

- 각국의 농업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 보고함으로써 아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한국의 관련분야에 대한 관계국과의 국제협력을 적극 강화하도록 함.
- 식량증산 및 빈곤타파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1974년 세계식량회의 권고사항 및 유엔총회 특별위원회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조치 행동계획에 대한 후속조치의 강력한 추진이 앞으로의 식량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임을 역설할 것
- 그레나다 등 4개 신규 가입신청 국가에 동의할 것. 북한이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사표명 없이 지지국의 발언내용 등 회의장 분위기 파악에 철저할 것

3. 회의 결과

- 그레나다 등 4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및 아프리카해방기구가 옵서버로 초청됨.
- 레바논 후보인 Saouma가 제2차 투표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됨(한국 지지).
- 동 총회는 수석대표들의 일반 토의와 의제별 분과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어 결의안과 보고서안을 채택함.

75-067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18차. Rome, 1975.11.8.-27. 전2권 (V.2 각국의 사무총장 및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9 / 1-321

제1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의 각국의 사무총장 및 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 관련내용임.

1. 사무총장

- 엘살바도르, 레바논, 우루과이, 가나,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캐나다가 자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함.
  - 한국 정부는 제1차 투표에서는 라틴아메리카지역 대표인 엘살바도르 후보를 지지하였으며, 제2차 투표에서는 레바논 후보를 지지
  - 캐나다 후보는 총회 개최에 앞서 8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지지 호소

2. 이사국

- 독일,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콜롬비아,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핀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세네갈이 자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함.
  - 한국 정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세네갈,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입후보를 지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67차. Rome, 1975.11.3.-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0 / 1-22

정부는 1975.11.3.~7. 로마에서 개최된 제67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로 파견함.

- FAO 총회에 연이어 개최된 FAO 이사회는 FAO 및 World Food Program 관련 활동 검토, 식량기구의 76/77년 사업, 예산 등 총회 결의사항 검토 등을 다룸.

75-068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개발도상국 농업신용에 관한 세계회의. Rome, 1975.10.14.-2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1 / 1-120

정부는 1975.10.14.~21.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개발도상국 농업신용에 관한 세계회의에 김주학 농수산부 구조개선과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및 의제

- 개도국 농업발전에 있어서 농업여신 및 저축기제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얻음으로써 이들의 성장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개도국에서의 농업신용운용에 추가적인 지지 유치를 도모

2. 정부 훈령

- 참가국들의 농업금융제도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 정보를 수집하고 “농업금융과 관련 개발용역의 통합” 및 “영세소농에 대한 융자제도 확립” 등에 관한 토의에 적극 참여할 것

3. 정부대표단 활동

- 농업금융과 농산물 판매, 투입재 공급 및 지도기능 등의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종합농협의 역할을 소개
- 개발 의욕이 강한 우수 새마을에 농업개발 및 금융지원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소개

4. 회의 결과

- 선언문 채택
  -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 표명과 조속한 식량증산 필요성에 유의하면서 정부, 중앙은행, 농업금융 관련 기관과 FAO에 대하여 조치 필요사항을 건의
- 의제별 검토
  - 농업금융과 관련 계획의 조정문제, 소농에 대한지원, 소농 지원을 위한 농업금융의 발전상 파악 등 15개 주제 검토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비료위원회 회의, 제2차. Rome, 1975.6.3.-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2 / 1-29

정부는 1975.6.3.~7. 로마에서 개최된 제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비료위원회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비료수급에 관한 국가별 및 세계 현황과 단기 전망, 국제 비료공급 계획에 관한 보고, 제20차 비료산업 자문위 회의 보고, 유기질 물질의 비료로의 사용에 관한 FAO/SIDA 전문가 협의 보고, 장기 비료 수급전망 및 세계 비료 정책의 요소 등을 검토함.

2. 정부는 회의 참석자료(한국의 비료생산, 수급 현황과 가격, 수출입 등 관련 현황과 계획 포함)를 작성 제공함.

75-068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상주대표단 회의, Rome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3 / 1-23

1975.10.23. 주이탈리아대사관이 10.2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개도국(77그룹) 상주대표단 회의 결과에 관해 보고한 문서의 주요 요지임.

1. 동 회의에서 FAO 사무총장은 개도국 중에서 선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레바논의 Saouma를 지지하는 사우디, 알제리 등이 77그룹의 단결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많은 입후보자를 총의로서 지지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강조한데 반해, 엘살바도르의 Aquino를 지지하는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대표들은 77그룹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함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이를 반대

2. 알제리대표가 제안한 77그룹을 대표한 2개 위원회 설치안은 위임사항과 위원국 선출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각국 대표들의 의견으로 인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 제1위원회는 제18차 FAO 총회까지 77그룹의 공동관심사 토의
   - 제2위원회는 총회 이후의 공동관심사(예: 유엔특별경제총회 건의사항 추진 등) 협의

3. Saouma 지지국가(이슬람국가 등)와 Aquino 지지국가(라틴아메리카 등) 간 FAO 사무총장 입후보 관련 격돌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지지국가 및 중립입장 국가로 77그룹이 3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장관리위원회, 제6차. Manila(필리핀), 1975.4.28.-5.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4 / 1-108

정부는 1975.4.28.~5.6.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6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장관리위원회에 김한곤 주필리핀대사관 경제협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동 회의는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9개국과 ADB(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 참가하에 4.28. 개막됨.
   - 한국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 및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촌재건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식량증산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FAO의 적극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강조함.

2. 1975.5.6. 동 회의는 5.5. 본회의에서 하기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폐회됨.
   - 아시아 및 극동지역에서 본 회의의 업무와 FAO의 프로그램을 강화
   - 소농 발전과 식량증산에 역점
   - 농장경영 훈련실시
   - 농장경영 통계수집 및 농장경영시스템을 위한 FAO 사업 실시

75-0685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 제19차. Rome, 1975.10.6.-1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5 / 1-96

1975.10.6.~10. 로마에서 개최된 제19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FAO/CCP 관련 연례회의로서 대표를 파견하여 세계곡물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각국의 곡물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의 식량관계 현황을 설명

2. 기본 훈령

- 세계 식량부족국가의 식량사정 완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식량안보 구현문제에 대하여는 아직도 한국이 식량부족국인 점을 감안하여 이의 효과적인 실현을 강력히 촉구

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5.10.21. 상기 회의 참가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 바, 동 회의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75/76 곡물사정과 전망에 대한 일치된 결론은 곡물사정은 1974/75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으며 이는 소맥과 잡곡생산이 전년대비 3%가 증산되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미작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임.
- 1975/76 소맥 및 잡곡 교역량은 전년대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소련의 대규모 구입에 있으며 이러한 수입 수요충족을 위해 일부 수출국의 재고는 감소할 수 있으나 다행히도 잡곡에 있어서는 재고가 약간 증가하고 소맥재고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회의. Rome

생산연도 1975-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1 / 1-129

1975~76년 중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회의 관련사항임.

1. 1976년 하반기에 개최된 FAO/CCP 정부간 연구단회의

- 제10차 FAO/CCP 정부간 유실유지연구단회의 및 제7차 동 연구단 통계분과위원회 회의(1976.3.8.~12., 로마)
  -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참석
- 제19차 FAO/CCP 정부간 미곡연구단회의(1976.3.29.~4.2., 로마)
  - 배규성 농수산부 식량차관보 등 참석
- 제6차 FAO/CCP 정부간 육류연구단회의(1976.10.4.~8., 로마)
  - 이병석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참석

2. 제19차 FAO/CCP 정부간 미곡연구단회의 주요 요지

- 한국측 대표단(수석대표)
  - 배규성 농수산부 식량차관보
-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세계미곡의 생산, 소비, 무역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토의하는 회의인바, 동 회의에 참가하여 세계미곡 수급, 교역 및 가격에 관한 현황과 전망을 검토, 평가하고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미곡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의제별 세부훈령
  - (의장단 선출) 한국과 우호관계가 깊은 아시아지역 국가 대표의 당선이 바람직하나 대다수 회원국의 의견에 찬성할 것
  - (세계미곡사정 현황 및 전망 검토) 준비한 자료에 의거 한국의 미곡사정 현황과 전망을 적의 발표 등
  - (세계식량안보 관련) 개도국의 식량사정 완화 및 재난지역의 긴급구호를 위한 세계식량안보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

75-0687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8차. Rome, 1975.1.13.-17.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6 / 1-97

정부는 1975.1.13.~17. 로마에서 개최된 제1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기본 훈령
  - 한국의 양곡 유통, 교역, 비축 및 가격정책 등을 발표하고 세계식량사정에 관한 정보 수집
- 세부 훈령
  - 각국의 미곡 수출입 전망을 토의함에 있어 한국은 현재 양곡 수입계획을 조정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나 추후 제시할 것임을 설명
  - 외무부 송부 연설문 및 참고자료를 참고, 74/75 미곡연도의 미곡사정 현황과 전망을 적의 발표

2. 회의 결과

- 각국의 미곡 수출입 전망 등 발표로 세계 식량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 세계식량사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
- 한국 측은 본부 훈령에 따라 74/75년도의 미곡사정 현황과 전망을 적의 발표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회의, 제50차. Rome, 1975.10.13.-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7 / 1-85

정부는 1975.10.13.~24. 로마에서 개최된 제5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 정부는 1973.11월 FAO 이사회에서 동 위원회 회원국으로 선출된바, 농산물의 현황과 문제점,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종 농산물의 품목별 연구단의 활동과 보고서를 검토 내지 평가하여 향후 정책을 심의

2. 회의 주요요지

- 동 위원회는 FAO 회원국 중 6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차 회의에는 56개국이 참가
- A.H. Boerma FAO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극동에서 식량공급사정이 호전되었음을 환영하고, 다만 여타 지역에서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큰 진전이 없음을 지적
- 또한 Boerma 사무총장은 금번 회의는 작년 말의 세계식량회의와 지난 9월의 제7차 유엔 특별총회에 이어 개최되고 향후 개최될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이전에 개최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개최됨을 강조하고 보다 문제지향적이고 정책지향적인 공헌을 당부
- UNCTAD 대표는 금번 회의가 세계 주요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행동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 개최되었다면서 UNCTAD가 추진 중인 상품종합계획(Integrated Programme for Commodities)은 유엔특별총회 결의와 CCP의 각종 건의사항과 밀접히 연결하여 추진할 것임을 표명 등

75-0689

FAO(유엔식량농업기구)/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특별협의회. Rome, 1975.5.19.-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8 / 1-57

정부는 1975.5.19.~23.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특별협의회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5.5.30. 강인희 농무관이 동 협의회에 참석하여 결의문 채택에 있어서 한국 정부로서는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한국은 찬성표명 46개국 중의 하나가 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동 협의회가 6월 FAO 이사회에 제출할 건의사항(Recommendations)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국제강령을 수락하지 않은 국가에게 수락을 촉구
   - 모든 국가는 동 강령 추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곡물에 관한 국제협정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 추구
   - 세계식량안보 및 재고비축의 적정 수준화를 위해 모든 정부가 식량증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
   - FAO 사무총장은 CGFPI(식량생산및투자에관한협의그룹)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도국의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국제원조 재원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FAO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AG(농업위원회) 회의, 제3차. Rome, 1975.4.15.-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19 / 1-69

1975.4.15.~24. 로마에서 개최된 제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AG(농업위원회)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975.1월 FAO 측이 배포한 동 회의의 잠정의제는 아래와 같음.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제 채택
- Review of FAO's Programme of Work in the Food and Agricultural Sector
- Selected Development Problems
  · Agricultural Extension and Training
- Other Matters
  · Follow-up to World Food Conference
  · Matters Arising from Sessions of Governing Bodies
  · Progress Reports on Action since the Second Session
  · Other Business
  · Date and Place of Next Session
  · Adoption of Report

75-0691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10차. Rome, 1975.6.3.-1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20 / 1-24

1975.6.3.~10. 로마에서 개최된 제1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 회의에 이창기 주이탈리아대사관 수산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수산업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국제적 양상
  - 개도국의 자원조사 및 평가기술 향상을 위해 UNDP(유엔개발계획) 자금에 의한 지원 요청
  - 선진국가의 수산업 경제성, 제품생산 경제성 및 이에 따른 정책에 관한 자료 입수
  - 자원평가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및 자원역학적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개도국 전문가 양성을 위해 UNDP 자금 지원 요청
- 수산업 개발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지원 조정
  - 한국은 각 연안국가와의 어업협력 강화를 위해 연안국의 훈련생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는 바, 동 훈련생 연수기관인 부산 소재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국제수산기술훈련소로의 승격에 따른 UNDP 자금(2.1백만 달러) 지원 요청
- 1976/77 FAO 수산사업
  - 개도국의 기술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UNDP 각 사업에 개도국의 전문가 참여기회 부여를 주장

2. 회의 결과

- 수산업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국제동향을 적시에 파악
- 수산자원평가를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및 자원역학적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을 깨닫는 계기가 됨.
- 한국 측은 개도국의 기술개발지원과 UNDP 사업에 개도국 전문가 참여를 강력히 주장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GFPI(식량생산 및 투자협의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21 / 1-23

1975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CGFPI(식량생산 및 투자협의단) 관련사항임.

1. 주랑군총영사는 1975.5.14. 주재국 외무성 U Mg Mg Gyi 미얀마(구 버마) 외무성 유엔 및 경제국장의 요청으로 동인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FAO/CGFPI 아시아·극동지역 대표 입후보 관련 공한을 수교하고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음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1974.11.16. 제16차 FAO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22호에 따라 1975.5월 중에 아시아·극동지역 상임대표들이 로마에서 회의를 갖고 CGFPI에 동 지역을 대표할 2명의 대표를 선출 예정
- 미얀마(구 버마)는 농업국가로서 동 지역의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입후보를 결정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지원 요망

2. 외무부는 1975.5.23. 미얀마의 CGFPI 입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랑군총영사에게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에 통보를 지시함.

- 주랑군총영사관은 6.12. 동 입후보 지지를 통보한 동 총영사관 공한(5.29.)에 대해 주재국 정부의 사의를 표명하는 외무성 답신(6.5.)을 접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3. 외무부는 1975.5.23. 미얀마의 동 입후보를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하고 상임대표회의에서 지지할 것을 지시함.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5.26. CGFPI 아시아·극동지역 대표로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가 입후보하였으며 5.28. 상임대표단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6.4. 지난 5.28. 개최된 개도국 상주대표단 회의에서 CGFPI 대표 관련, 아시아·극동지역에서는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가 양해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가 대체로 결정된 바 있으나, 쿠바가 특히 브라질의 선출에 반대함으로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월 개최될 FAO 이사회에서 표 대결로 접어들 공산마저 보이나 아직 타협의 여지가 기대됨을 외무부에 보고

75-0693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C(국제포플라위원회) 회의, 제15차. Rome, 1975.12.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8 / 22 / 1-52

정부는 1975.12.1.~6. 로마에서 개최된 제1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C(국제포플러위원회)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세부훈령 요지

- 1975~80년까지의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한국포플러위원회에서 주최측에 후보자로 추천한바 있는 동 위원회 현신규 부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도록 노력
- 각 회원국의 포플러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취합, 송부
- 금번 회의의 주제인 관상 및 산업용재 충당을 위한 포플러 및 버드나무류의 역할에 관한 각국의 앙케이트와 이에 관한 각국의 정책, 법령 및 통계자료 등을 수집, 송부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5.12.6. 현신규 박사가 동 위원회 12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음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당선은 결석 입후보자로서 유일한 경우이며, 동 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가 한국포플러산업의 발전상, 입후보자의 자질, 집행위 구성에서의 지역안배 원칙 등을 강조한 결과로 보임.

FAO(유엔식량농업기구)/WECAFC(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차. Port of Spain(트리니다드토바고), 1975.10.20.-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64 / 14 / 1-175

정부는 1975.10.20.~23. 트리니다드토바고 Port of Spain에서 개최된 제1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WECAFC(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에 김한모 주미국대사관 수산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목적

- 동 위원회는 제8차 FAO 어업위원회 회의(1973.4.10.~17., 로마) 권고에 따라 중서대서양 지역의 새우를 비롯한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신설된 기구로서 금번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현재 동 지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금번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기구의 전망, 자원 및 어획량 등의 통계수집과 국제협력을 위한 자료교환 등을 통해 새우 어업진출의 기반 조성

2.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 23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참석
  - 의장국: 트리니다드토바고
  - 부의장국: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 집행위원국: 미국, 바하마, 자메이카, 가이아나
- 새우, 가재 및 기타 어종의 자원평가와 개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반을 각각 설치
- 국별 및 지역사업을 포함한 중서대서양 수산업 개발전망 토의내용 요지
  - 수산물 교역확대, 캐리비안해역의 지역적인 수산개발 계획과 전망
  - 각국의 연안어업 개발촉진과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종합수산기업 전문가단 설치
  - 고용증대, 식량공급 및 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체제와 기구의 설치운영
- 금번 회의보고서 채택에 있어 자원규제 내용은 없음.

75-0695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8차. Geneva(스위스), 1975.5.13.-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1 / 1-175

정부는 1975.5.13.~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8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진병훈 보건사회부 국제협력담당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5.23. 북한대표(한흥섭 보건부 부부장)의 한국 비난발언(5.19.)과 한국대표(문덕주 주제네바대사)의 반박연설(5.22.)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대표 발언요지
  - 남한에서는 일부 특권층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서민은 거의 의료혜택이 없으며, 북한 적십자사 측이 제의한 이산가족 상호서신 교환문제도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거부
  - 통일의 첩경은 미군 철수 및 조선인민의 자주적 노력에 있으며, 외세에 의존하다가 망한 캄보디아(구 크메르), 월남 공산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앞잡이인 남한도 반드시 멸망 등
- 한국대표 반박요지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북한이 본회의장에서 허위 정치선전을 되풀이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통일의 저해요인은 유엔군 주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끊임없는 전쟁 도발행위에 있으며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하여 정치선전을 중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함.

2. WHO 총회 주요 결정사항

- 1975.5.21. 이사국 선출에서 호주 등 8개국이 피선되었으며, WHO 헌장을 개정, 이사국 수를 30개국으로 증가시킨 후 실시된 추가 이사국 선출에서 스위스 등 6개국이 피선
- 한국의 분담금은 1975년과 같이 총예산액의 0.11%를 지불(북한: 0.07%)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의, 제26차. Manila(필리핀), 1975.9.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2 / 1-77

1975.9.1.~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의에 장경식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만약 중국(구 중공) 및 공산국가들이 한국대표권에 관계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북한이 동 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동 회의가 정치적 언동을 위한 회합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6.23선언 정신에 따라 적의 대처

2. 주필리핀대사관은 1975.9.1. 동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차기 회의개최 장소 관련, 일본이 유치를 타진하다가 철회하였고 중국이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유치에 대한 입장 회시를 건의함.

- 9.2. 외무부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유치 시도를 하고 있고 타회원국들도 이를 찬성할 경우 중국과 국교관계가 없는 회원국 대표의 중국 입국 및 회의 참석이 주최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다는 조건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할 것을 주필리핀대사관에 지시

3. 주필리핀대사관은 1975.9.3. 차기회의 유치 관련 중국 측은 발언하지 않았고 내년 9월 개최될 제27차 지역회의는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1975.9.1.~3. 회의기간 중 중국 및 공산권 대표들은 아래 요지로 발언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중국
  - 대미 투쟁에서 승리한 월맹의 본회의 참가를 환영한다고 하고 자국의 보건과 위생 활동사항 설명
- 월맹
  - 1945년 독립 후 30년간의 전쟁으로 비정상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1975.5.1. 월남 해방과 월남정권 붕괴로 정상적인 발전을 기하게 되었다고 발언
- 월남
  - 자국에는 지금 300만의 실업자와 90만의 전쟁고아가 있으므로 많은 원조가 필요하다고 발언

75-0697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60차. Geneva(스위스), 1975.6.4.-2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3 / 1-87

정부는 1975.6.4.~2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최두열 노동청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외무부는 금차 총회에 대비해 ILO 가입신청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한국이 북한의 가입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가입을 시도할 경우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해 동 기구 사무국 및 주요 우방국 대표들과 조용히 타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의견 보고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4.8. 한국의 ILO 가입 관련, ILO 사무총장 및 주요 우방국 대표 접촉에 앞서 ILO 사무국 관계관 및 법률고문 등과 접촉결과, 동인들의 반응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ILO 가입을 위해서는 총회에 참석, 투표하는 정부대표의 2/3를 포함한 총회 참석 총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바, 그러한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한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극히 어렵다고 사료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6.4. 제60차 ILO총회 의장에는 필리핀 노동장관이 피선되었으며, 동일 현재 북한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중국(구 중공)대표는 동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최두열 노동청장은 1975.6.11. 동 총회 참관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기관에 보고함.
   - 동 총회에는 가입국 126개국 중 104개국이 참가(북한 및 중국은 불참)
   - ILO 사무총장 등 면담결과, 중앙직업훈련원, 산업재활원 등 확충사업을 위한 2백만 달러 상당의 ILO의 원조를 확약 받음.

5.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6.16. 동 총회 본회의는 6.12. PLO의 옵서버자격 참석을 위한 ILO Standing Order 규정 개정 문제 관련, 아랍 및 동조국가들과 미국, 이스라엘 등과의 장시간 논쟁 끝에 결국 투표에 회부되어 찬성 225, 반대 19, 기권 73으로 PLO의 참석이 확정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대만(구 중화민국)의 UPU(만국우편연합) 회원권상실에 따른 제 문제

생산연도 1972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4 / 1-70

자유중국의 UPU(만국우편연합) 회원권 상실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책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2.9.29.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대만과의 우편업무관계 유지문제에 관한 방침을 결정함.**
   - 대만이 UPU 회원국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대만 우정청은 체신부 앞 서한을 통해 한국과의 우편교환 계속을 위하여 UPU의 관계규정 계속 적용을 제의하여온데 대해 체신부는 외무부에 이의 없음을 알려오면서 의견을 문의
   - 상기 관련, 체신부가 대만 제의에 이의 없다는 답신을 보냄으로써 관계규정의 양자간 적용을 사실상 유지할 것을 건의

2. **외무부는 1972.10.7. 대만 우정청 제의에 대해 이의 없다는 답신을 보냄으로써 동국과 UPU 관계규정을 사실상 계속 적용하는데 동의함을 체신부에 통보함.**

3. **1972.11.30. 체신부는 아시아대양주 우정학교(Asian and Oceanic Postal Training School) 관리이사회(의장국: 태국)가 서한을 통해 대만의 UPU 축출(4.12.)에 따라 동 학교 과정에 대만 학생을 수용하면 1974년 이후 UNDP(유엔개발계획) 원조를 받기가 곤란하게 됨을 알려오면서 의견을 문의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 회시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72.12.12. 상기 아시아대양주 우정학교에의 대만 참가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의견을 체신부에 통보함.**
   - 동 학교에서 현재 교육중인 대만 학생에 대하여는 현 과정 종료시(1973.4.)까지 수학을 허용하자는 태국 측 의견에 동의
   -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1973년에 소집될 관리이사회에서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봄.

75-0699

북한의 UPU(만국우편연합) 가입에 따른 남북한 우편물 교환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I-59 / 5 / 1-80

1. 외무부는 1975.10.1. 북한의 UPU 가입에 따른 제반 문제 관련 체신부에 아래 요지로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북한은 1974.6.6. 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UPU에 가입함과 동시에 1969년 UPU 헌장(1969년 추가의정서 포함)과 UPU 총칙 및 협약에 각각 가입함.
- 이에 따라 남북한이 동 협약을 각기 비준 또는 승인조치를 끝내면 상호간에 통상우편물 외에도 소포우편물의 교환을 행할 수 있게 되므로 현행 국내법 관계규정과의 관련하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향후 조치 등에 관해 회보 요망

2. 체신부는 1975.10.21. 현재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어 합의에 의한 남북한 우편물 교환에 앞서 UPU 규정에 의거 우편물 교환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11.5. UPU 관계 제 협약 비준관련 아래 요지로 중앙정보부에 통보하고 의견회보를 요청함.

- 외무부는 1974.5.22.~7.5. 로잔에서 개최된 제17차 UPU 총회에서 채택된 제 협약중 한국 전권대표가 서명한 UPU 헌장 제2추가의정서 등에 대한 비준 및 승인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평화공세의 기선을 제어하고 국제여론의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상기 제 협약의 비준 및 승인서 기탁 시 북한에 대해 남북한 간의 우편물 교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UPU 회원국에 회람할 것을 검토 중인바, 이에 대한 의견회보 요망

4. 중앙정보부는 1975.11.24. 상기 관련, 아래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북한에 대한 남북한 간 우편물 교환을 촉구하는 외무부의 공식성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이 남북조절위 및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한 간 우편물 교환을 여러 차례 제의한 바 있는 사실을 지적, 이에 즉각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를 남북대화에 미루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가입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6 / 1-43

1973~75년 중 북한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동향임.

1. 외무부는 1973.8.25.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회의(1973.9.14.~10.26.,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가입신청에 대처한 하기 정부방침을 주미국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등 주요 재외공관에 통보함.
   - 6.23 특별선언에 따라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북한가입에 찬성을 표시하는 것은 제3국의 북한승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권함.

2. 주스페인대사관은 1973.10.8. 상기 전권위원회 회의에서 현재까지 ITU 가입 관련 북한 측의 움직임은 없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75.3.29. 주제네바대표부가 3.17. ITU 사무국을 통해 확인,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ITU에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함을 체신부에 통보하고 여사한 가입신청은 우편투표에 회부될 것이나 동 가입에 대한 의견회보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75.6.4. Longmuir 주한 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이 캐나다가 북한의 ITU 가입신청에 찬성 투표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왔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5. 체신부는 1975.7.3. 북한이 국제무선통신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경우에는 무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파를 규제함으로써 혼신 등 혼란이 상당 해소될 것이나 소련이나 중국(구 중공)의 전례에 따라 무선규칙의 적용에 유보를 설정할 경우 북한의 ITU 가입으로 인한 하등의 실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을 외무부에 통보함.

6.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8.4. 북한의 ITU 가입신청 우편투표 최종결과는 찬성 104, 반대 3, 기권 10(미국, 칠레, 네덜란드, 이스라엘, 터키 등)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701

유엔에서의 칠레 인권문제 토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9 / 7 / 1-78

유엔에서의 칠레 인권문제에 관한 사항임.

1. 주유엔대표부는 1974.11.27.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 및 다수 서구국가들이 칠레 군사혁명 이래 구속되어 있는 사회주의계열 정치범의 구제를 위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인권보호 안건을 제출하여 동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칠레대사관은 1975.7.10. 유엔인권위원회 조사단의 주재국 방문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재국 정부는 금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가 주재국의 인권유린 사례 진상조사를 위해 실무조사단 파견을 결정한데 대해 동 방문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음을 표명
- 그러나 동 조사단이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6월말 주재국 정부는 지난 제네바에서의 ILO 회의시 대칠레 비난, 멕시코에서의 국제여성회의 시 대칠레 비난, 소련 및 쿠바 등의 반칠레 태도 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칠레의 실태를 정당하게 파악·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 조사단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
- 주재국 외상은 7.9. 현지 주재 전외국공관장을 초치, 칠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특별성명을 수교

3. 주칠레대사관은 1975.11.24. 주재국 외무차관이 현지 주재 각국 대사를 초치, 칠레가 인권문제에 관해 제30차 유엔총회에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각국 외무장관 앞 공한을 수교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칠레대사관은 1975.12.3. 주재국 정부가 제출한 상기 결의안은 11.27. 유엔 제3위원회에서 소련권 국가들의 반대로 1977년 제32차 회기에 토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세계여성의 해' 국제회의. Mexico City(멕시코), 1975.6.19.-7.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9 / 8 / 1-315

정부는 1975.6.19.~7.2.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유엔 주최 "세계여성의 해" 국제회의에 이매리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132개국 정부대표, 21개 유엔산하기구 대표, 옵서버로서 1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참석

2. 정부 훈령

- 금번 회의는 여성문제에 관한 최초의 정부급 회의로서 여성의 지위 및 대우에 관한 정치, 경제 등 제반 영역에 있어 여성의 역할 및 참여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각국의 실천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임에 비추어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향후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과 이에 관련된 국제협력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

3. 주요 의제

- 세계여성의 해 목표(평등, 개발, 평화), 국제평화 증진과 인종차별 철폐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평등한 권리, 기회 및 의무를 획득하는데 있어 극복되어야 할 제반 난관, 개발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 세계 행동강령 등

4. 토의 요지

- 1975.6.19.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이 개회, 이어 멕시코 대통령이 연설, 멕시코 수석대표(검찰총장)를 의장에 선출하고 신임장위원회, 제1위원회, 제2위원회를 각각 설치
- 1975.6.20.~30. 전체회의에서 각 참가국 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행한바, 한국 수석대표는 6.26. 북한 측은 6.20. 각각 연설
- 제1위원회, 제2위원회 보고서, 회의보고서를 채택하고 33개의 결의와 1개의 선언 채택

75-0703

'세계여성의 해' 국제회의. Mexico City(멕시코), 1975.6.19.-7.2.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9 / 9 / 1-276

1975년 유엔주최 '세계여성의 해' 국제회의(1975.6.19.~7.2., 멕시코시티) 관련 문서목록임.

1. 1975.1.6.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배포 사무총장의 Progress Report

2. 1975.2.8.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배포 Draft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및 2.25. 배포 동 Plan의 Addendum

3. 1975.3.4. 동 이사회 배포 Pahlavi 이란 왕비(Chairman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the Worl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Women's Year)의 Statement

4.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의 1975년 Projects

5. 1975.4.15. 유엔사무국 배포 동 회의 Basic Documents List, Background Documents List, List of Questions 등

6. 1975.4.15. 유엔총회 배포 주유엔 이집트대표부의 유엔사무총장 앞 공한(4.10.) 회람문서

7. 동 회의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8. 잠정의제 9(Current Trends and Changes in the Status and Roles of Women and Men and Major Obstacles to be overcome in the Achievement of Equal Rights'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에 대한 사무총장 Report 부록

9. 1975.4.28.~5.2.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여성에 대한 동등대우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지역 세미나에서 채택된 선언문

10. 1975.5.21. 유엔사무국 배포 WHO의 Health of Women: How it affects their needs and status에 관한 자료 등

유엔마약위원회 회의, 제26차. Geneva, 1975.2.17.-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9 / 10 / 1-17

정부는 1975.2.1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6차 국제마약위원회 회의에 강근택 주네제바대표부 서기관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외무부는 1974.10.26. 제26차 국제마약위원회 회의가 1975.2.17.~28. 제네바에서 개최됨을 보건사회부에 통보함. 이에 보건사회부는 1975.2.10. 동 회의에 참가할 정부대표 임명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함.

2. 파견 목적
   - 한국이 동 위원회 정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국가이므로 정식대표를 파견하지 않더라도 주제네바 대표부로 하여금 동 회의를 관찰, 보고하고 회의자료를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

3. 대표단 훈령
   - 한국의 마약, 습관성약품 등 국제사회의 전반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마약 관련 한국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마약 및 습관성약품의 현황과 관리 및 통제제도 등을 국제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우방국들에 대한 한국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마약통제 관련 타국의 기술, 정보 및 제도 등의 습득에 주력할 것

4. 회의 결과
   - 한국대표단은 우리의 마약 및 습관성약품 실태와 이에 대한 통제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하고 한국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마약통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타국의 관행과 기술을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됨.

75-0705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9 / 11 / 1-180

정부는 1975.9.1.~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 이종원 법무부 교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배경 및 성격

- 본래 국제형사 및 교정위원회(International Penal and Penitentiary Commission)에 의해 개최되었던 회의였으나 1950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동 위원회 기능이 유엔에 이전되면서 유엔이 5년마다 동 회의 개최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사회보호대책이라는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범죄인 취급에 대한 최저 기준법, 형사 및 교도소기관 인원의 훈련문제, 복역자 사역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금차 회의에서는 '범죄방지와 관리-금차 최종 4반세기의 숙제'라는 주제로 제반 문제가 토의될 예정

2. 기본훈령 요지

- 정부대표단은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앞으로의 범죄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과 이에 관련된 국제협력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과 각국 대표 등 접촉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이해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9 / 12 / 1-264

1975.9.1.~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결과보고임.

1. 제5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가 예정대로 1975.9.1. 개막됨.
   - 금차회의 의장에는 핀란드대표가 피선되었으며,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인 범죄 형태의 변천추세와 이의 방지 및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 특히 금차회의가 세계 각국에 적용될 수 있는 Standard Minimum 제정을 위한 확고한 터전을 이룩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2. 1975.9.5. 이종원 수석대표는 Section IV 위원회에서 아래 요지의 기조 연설을 함.
   - 구금형의 대체제도 관련, 실형의 집행인 구금의 대체제도로서 한국은 단기자유형 대신에 벌금형을 많이 활용하고 형 집행유예 가석방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성과 거양
   - 교정제도 개선책 관련, 새마을운동을 교도소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재소자에게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터득 실천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재소자의 직업교육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1974년 5천명 이상의 수형자가 국가기능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에 복귀 등

3. 1975.9.9. Section IV 최종 토의의제인 Protection of All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Inhuman Treatment 토의에서 그리스 및 칠레의 고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현재까지 북한은 참석하지 않고 있음.

4. 1975.9.12. 동 회의는 각 Section별 채택보고서를 재검토 후 부분적인 자구수정을 하고 만장일치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하였음.

75-0707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3.21.) 기념행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9 / 13 / 1-41

1975.4.4. 외무부가 작성한 유엔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기념행사에 관한 국무총리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임.

1. 경위

- 유엔 인종차별반대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against Apartheid)는 주유엔대사에게 1975.3.21. 제15차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동시 동 기념행사 계기 국가원수 또는 외상 명의 메시지가 있을 경우 이를 낭독하도록 되어 있음을 통보
- 주유엔대사는 1975.3.21. 동 행사에 참석했으며 메시지는 시간관계로 낭독하지 않고 별도 문서에 수록하도록 함.
- 주유엔대표부는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를 보도자료로 작성, 각국 대표부, 유엔사무국 및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

2. 의의

- 한국 정부는 종전까지 인종차별 철폐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지지하면서도 남아프리카 및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이를 발표하지 않았음.
- 금번 외무부장관 명의 메시지 형식을 통해 정부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한국의 비동맹 내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 수행을 위해 그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인종차별 철폐문제에 관한 한국의 진취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 제8차. Rome, 1975.4.23.-26.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14 / 1-78

제8차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가 1975.4.23.~26. 로마에서 개최됨.

1. **외무부는 1974.10.26.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the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가 제18차 총회 개최일정을 알려오면서 한국의 참가를 초청하였으며, 동 기구 이사회 후보자 1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문화공보부에 통보하고 적격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
   - 문화공보부는 12.18. 이치순 문화재관리국장을 정부대표로, 이선근 문화재위원장을 동 기구 이사회 후보로 각각 추천
   - 외무부는 1975.2.5. 동 기구 이사회 위원 출마와 관련, 이선근 문화재위원장을 정부대표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문화공보부에 통보

2. **외무부는 1975.2.5. 이선근 박사의 동 이사회 출마 관련 지금까지 총회기록을 보면 한 번도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온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교적 교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주이탈리아대사에게 통보하고 이 박사 본인이 현지에서 입후보 상황 및 전체적 분위기를 살핀 후 동 대사와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는 4.15. 이선근 박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통보하고 김광원 공보관을 대표로 참석하도록 할 것을 지시

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5.4.30. 아래 요지의 동 회의 참가 결과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 50개 회원국 중 36개국 대표 및 27명의 옵서버 참석
   - 신규 회원국 가입
     - 알제리, 호주, 파라과이
   - 17명의 이사를 기명투표로 선출(21명 입후보)
   - 건의사항
     - 대부분의 대표들이 문화재 보존복구에 평생 종사해온 전문가들이며 동 회의 성격상 전문분야 대표가 계속 참가하여 개인적인 접촉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며, 현 국립박물관장은 개인적으로도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이사 출마 등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75-0709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3차. Paris, 1975.5.26.-3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15 / 1-119

정부는 1975.5.26.~31.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3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이중희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1953.11.18. 동 기구에 가입한 이래 매년 가축위생 전문가를 파견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역에 관한 정보교환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수출에 기여
- 금차 회의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로 하여금 특히 한국의 가금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실태에 관한 설명을 행하도록 하고, 각국 대표와 가축위생 및 방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최대한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가축위생 및 방역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증진

2. 세부훈령 요지

- 각 회원국 가축위생 현황 및 가축전염병 방제법에 관한 토의에 있어 조류의 호흡기성 마이코프라스마병의 진단과 방제에 대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가금전염병 진단과 예방실태 설명
- 금년 구제역이 근절된 영국, 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들은 한국에 많은 가축과 축산물을 기증 또는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중에 있고 일본은 근년에 동 국가들과 조건부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으므로 해당국 대표들과 접촉, 현지조사단 파견문제, 검역조건 등을 조사 보고할 것 등

3. 회의 결과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가축방역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출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회의로 평가됨.
- 한국대표단은 한국 내 가축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에 관해 설명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끔.
- 유럽 등 축산 선진국들의 구제역 근절현황 및 검역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IOE(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 총회, 제9차. Paris, 1975.10.22.-11.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16 / 1-103

정부는 1975.10.22.~11.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차 IOE(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 총회에 노영찬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효율적인 해양개발을 위한 선진정보와 기술 및 해양과학교육 추세 파악
- 저명한 해양과학자들과의 상호협력 및 친선 도모

2. 주요 토의사항

- 해양탐사 장기계획
  - 국제해양개발 10년계획
  - 동남아시아 해저광물탐사
  - 남태평양 해저탐사
  - 카리브해역 탐사
  - 인도양해역 탐사
- 범세계적 기상연구계획
- 전해양의 수심도 작성
- 해양 오염
  - 범세계적 해양환경오염 조사
  - 지중해역의 해양오염
  - 동남아시아해역의 해양오염
  - 카리브해역의 해양오염
- 국제합동조사
- 기구조직문제

75-071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제12차. 동경, 1975.8.8.-2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9 / 17 / 1-142

정부는 1975.8.8.~22.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에 김종수 국립지질광물연구소 해양개발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아시아 천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 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 각국의 탐사실적, 탐사계획 및 기술에 관한 자료수집

2. 주요 토의내용

- 해저 인회석광의 탐사에 관심을 갖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미나를 사무국에서 마련하기로 함.
- 일본이 한국과의 상호협력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명함.
- 한국남동해역의 항공자력탐사를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책정함.
- 각 지원국의 기술지원이 다양화 되었고, 지원국에 소련 참가이후 노르웨이 및 스위스가 참가의향을 표명함.

SEAMEC(동남아문교장관기구이사회), 제10차. Baguio(필리핀), 1975.1.20.-24.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9 / 18 / 1-51

정부는 1975.1.20.~24. 필리핀 바기오에서 개최된 제10차 SEAMEC(동남아문교장관기구이사회) 회의에 장지량 주필리핀대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
  - 필리핀, 태국, 월남, 캄보디아(구 크메르),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준회원국
  -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 옵서버
  - 한국,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6개국
  - 8개 국제기구 또는 원조기관

2. 주요 토의사항

- SEAMEC의 1974년도 업무실적
- 예산안, 개발계획, 신규사업, 특별기금모금 현황 등
- 유네스코와의 관계수립
- 차기 회의를 1976.1.26.~30.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75-0713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총회, 제3차. Melbourne(호주), 1975.11.19.-27.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 / 1-249

정부는 1975.11.19.~27.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3차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총회에 강유원 체신부 우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
  -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중국(구 중공)
- 옵서버
  - 방글라데시, 부탄, 홍콩,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2. 주요 토의결과

- 한국의 제안사항(공동제안 포함) 중 주요 결정사항
  - AOPU 교환직원의 체재비 인상
  - 연합경비 분담등급의 상향조정 조건 수정
  - 회원국간 우편관계 정보자료 교환
  - 아시아대양주 우정학교를 AOPU의 산하기구로 흡수
  - 우정학교 관리이사회의 설치근거, 기능, 구성 및 운영방법 명시
- 타국 제안사항 중 주요 결정사항
  - 회원국간 교환되는 통상우편물의 제한 범위에서 소형포장물을 삭제
  - 회원국간 선편·육로 통상우편료의 할인율을 40%에서 25%로 인하
  - 연합가입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집행이사회에 지시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회의, 제3차. Montreal(카나다), 1975.4.1.-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2 / 1-108

정부는 1975.4.1.~5.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3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회의에 장기익 체신부 전무국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INTELSAT 장기계획과 한국의 제2위성지구국 건설계획과의 조정
- INTELSAT 이사회 구성현황 파악 및 한국의 이사회 대표문제 검토
- INTELSAT 이사회 회계처리상황 점검 및 INTELSAT 상설기구 운영현황 검토

2. 주요 토의내용

- 이사회 대표권을 위한 최저투자율 결정
- INTELSAT 활동상황 및 재정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심의
- INTELSAT 재정계획에 관한 보고서 심의
- 칠레의 국내통신을 위한 INTELSAT 우주부분 사용승인 요청
  - 칠레의 요청이 제 규정에 합당함을 확인하고 승인하기로 결정
- 신임장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서명자회의의 의사진행규칙에 포함하는 문제
  - 서명자회의의 의사진행규칙에 포함하기로 결정
- 차기 서명자회의 장소 결정
  - 제4차 회의(1976년): 싱가포르
  - 제5차 회의(1977년): 호주
  - 제6차 회의(1978년): 이란

75-0715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 참여를 위한 공동이사국 형성문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3 / 1-228

1973~75년 중 한국의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 참여를 위한 공동이사국(Joint Governor) 형성문제에 관한 사항임.

1. 1973.2월 대만(구 자유중국)으로부터 한국과의 공동이사국 형성 제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대만의 국제적 지위 및 향후 중국(구 중공)의 진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보류함.

2. 1973.8월 이란 정부가 한국,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의 공동이사국(5개국) 형성을 제의함.

3. 1974.1월 정부는 5개국간 공동이사국을 형성하자는 이란 정부의 제안을 수락함.

4. 1975.4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3차 INTELSAT 서명자회의 기간 중 한국, 이란, 터키, 파키스탄 4개국 대표들은 공동이사국 형성에 관한 아래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함.
   - 제3차 INTELSAT 서명자회의에서 결정된 이사회 대표권을 위한 최저투자율은 1.25% 이다.
   - 4개 서명국의 합계투자율은 1.586535%로서 이사회 대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 4개국 서명자들은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한국, 이란, 터키, 파키스탄 4개국 대표들은 1975.7.30. 이란 테헤란에서 4개국 INTELSAT 공동이사국 형성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
   - 동 약정에 따라 제1차 연도에는 이란이 이사, 한국이 교체이사로서 활동하기로 결정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Traffic 회의, 제1차. Athenes(그리스), 1975.9.3.-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4 / 1-37

정부는 1975.9.3.~8.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Traffic 회의에 이성희 체신부 국제업무과 사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의 위성회선 사용계획과 회선구성 상대국과의 의견 조정 및 확정
- 조정·확정된 위성회선의 제시
- 인도양 지구국 건설계획에 따른 회선 수요 측정
- 회원국간 위성개발에 관한 의견교환

2. 주요 토의의제

- 통신 소요의 종합 방법 검토
- 통신 소요량의 분석 및 사용자 소요의 판단
- 국제통신을 위한 INTELSAT 우주부분의 사용실적 평가
- 각 회원국의 지구국 운용계획

75-0717

IHO(국제수로기구) 동부아시아지역 수로위원회 제2차 총회 개최의 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5 / 1-8

제2차 IHO(국제수로기구)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 총회 관련사항임.

1. 교통부(수로국)는 1975.9월 제2차 IHO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 총회 개최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옴.

-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는 제2차 정기총회를 12월 현재 의장국인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함.
- 그러나 태국은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이유로 자국 내 회의 개최를 포기하고, 아래 3가지 대안을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에 권고함.
  - 부의장국인 대만(구 자유중국)이 회의를 개최
  - 알파벳 순서에 의해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순서로 회의 개최
  - 자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가 개최
- 상기 3가지 대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2. 외무부는 교통부의 의견 문의에 대해 1975.10월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제2차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 총회 개최 건에 관한 3가지 권고안 중 부의장국인 대만이 개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됨.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1차. Madrid(스페인), 1975.5.12.-24.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6 / 1-225

정부는 1975.5.12.~2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차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에 신상철 주스페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정부간 국제기구로 신설된 UNWTO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동 기구 신설에 따른 제반 논의에 참여함.
- 관광진흥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함.
- 관광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함.

2. 대표단 훈령 요지

- 수석대표의 지휘, 감독하에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동 기구를 통하여 한국의 관광진흥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 북한의 가입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기본입장에 따라 행동할 것
- UNWTO 사무국 소재지 문제에 관하여는 스페인을 지지할 것
- 각 대표 및 현지 관광관계 기관과 교섭하여 관광객 한국유치에 진력할 것

75-0719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1차. Madrid(스페인), 1975.5.12.-24.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7 / 1-190

1975.5.12.~2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차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 결과 보고임.

1. 참가국

- 89개국 대표 336명 참가

2. 주요 회의결과

- UNWTO 사무국 소재지
  - 5차례 투표 결과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UNWTO 사무국 소재지로 결정됨.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1976~77년 회계기간 총 예산을 500만 달러로 의결, 확정함.
- UNWTO 정회원 자격 문제
  - 1975.5.20.자로 99개국이 UNWTO 헌장을 비준 승인하였거나, 비준 승인을 조건으로 수락함.
  - 99개국 중 대만(구 자유중국)의 UNWTO 헌장 비준 승인 무효안이 제의되어 가결됨.
- 1977년 차기 총회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함.

UNWTO(세계관광기구) 태평양·아시아지역위원회, 제1차. Manila, 1975.8.13.-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8 / 1-55

정부는 1975.8.13.~15.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차 UNWTO(세계관광기구) 태평양 및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에 허세린 주필리핀대사관 2등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7개국)

-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2. 주요 회의결과

- 의장단 선출
  - 의장: 태국
  - 부의장: 호주 및 한국
- 임원 선출
  - 사무국장을 필리핀이 지명하기로 결정
- 회원국 가입문제
  - 역내 회원국으로서 금번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은 국가에는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기로 함.
  - 역내 비회원국에게는 먼저 UNWTO의 회원국이 되어 역내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도록 권유하기로 함.
- 지역위원회 사무국 후보지
  - 투표결과 필리핀이 후보지로 결정됨.
- 차기 회의는 1976.3월에 개최 예정인 UNWTO 집행위 개최 전에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함.

75-0721

UNWTO(세계관광기구) 회원국 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9 / 1-38

1. UNWTO(세계관광기구) 사무국이 1975.10.8. 각국 정부에 통보해 온 현재 회원국 명단임.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브룬디, 카메룬,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베냉(구 다호메이), 예멘,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가봉, 감비아, 동독, 서독, 가나, 그리스, 아이티, 교황청,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캄보디아(구 크메르),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몽고, 모로코, 네팔, 네덜란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베트남, 루마니아, 르완다, 산마리노,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위스, 시리아, 태국,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소련,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유고,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잠비아(총 102개국)

2. UNWTO 사무국은 1976.2.24.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UNWTO 본부 사무국 건물이 동일자로 정식 개소되었음을 발표함.

- 1975.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NWTO 창립총회시 UNWTO 본부 사무국을 마드리드에 설치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 UNWTO 본부 사무국 건물 개소식에는 스페인 외무장관, 정보문화장관, UN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함.

IBWM(국제도량형국) 총회, 제15차. Paris, 1975.5.27.-6.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0 / 1-72

정부는 1975.5.27.~6.3.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IBWM(국제도량형국) 총회에 김종학 공업진흥청 기술지도국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박재만 공업진흥청 계량표준시험부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요지

- 회의참가 기본입장
  - 국제도량형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표준계량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설정된 계량의 표준을 국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
- 한국의 대표권 문제
  - 일부 공산국가 또는 친공산국가 대표들에 의해 한국의 대표권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6.23 외교정책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불참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며 이를 한국의 대표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함을 설명할 것
- 참가 대표들과의 접촉
  - 회의 참가국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비동맹 국가들을 적극 접촉하여 한국입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도록 할 것
- 세부 훈령사항
  - 미터법, 광속, 킬로그램의 표준, 시간의 정도, 전기 표준, 국제온도 측정, 국제단위체제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하여는 의제별 세부훈령에 따르도록 할 것

2. 회의 결과

- 세계적인 표준계량 추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각국 대표와 토의함으로써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75-0723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연락관위원회 회의, New Delhi(인도), 1975.10.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1 / 1-108

정부는 1975.10.16.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연락관위원회 회의에 박찬현 주인도대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15개국)

- 가나, 필리핀, 이집트, 한국, 에티오피아, 인도, 이라크, 요르단, 케냐,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모로코, 수단, 시리아, 예멘

2. 주요 회의결과

- 신구 의장 인사
  - 신임 의장: Busuego 주인도 필리핀대사
  - 전임 의장: Duah 주인도 가나대사
- AARRO 활동 상황
  - 사무국의 AARRO 활동상황 브리핑 및 이에 대한 검토
- AARRO 운영규칙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의장: 에티오피아
  - 소위원회 위원: 말레이시아, 가나, 인도, 수단
  - 운영규칙 작성: 1975년 11월 3째주까지 초안을 작성하기로 합의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 제16차. Manila, 1975.10.27.-3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2 / 1-95

정부는 1975.10.27.~31.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AARRO(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에 장지량 주필리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필리핀(의장국), 한국(부의장국), 이집트(부의장국), 인도, 일본, 가나, 말레이시아, 케냐, 모리셔스, 대만(구 자유중국)

2. 주요 회의결과

- 사무총장 선출
  - 인도의 입후보 예정자가 와병으로 입후보를 포기함으로써 현 사무총장 서리인 이집트의 Osman이 만장일치로 선출됨.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1974년도 회계보고서 접수
  - 1975년도 예산 확정
  - 1976~77년도 사업계획 협의
- 극동지역사무소 경비 증액
  -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극동지역사무소에 대한 AARRO 지원경비를 현 1,000달러에 2,000달러로 증액함.

75-0725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총회, 제5차. Manilla, 1975.2.24.-3.3.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3 / 1-292

정부는 1975.2.21.~3.4.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5차 AARRO(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 총회와 제14차 및 제15차 집행위원회 회의에 함만준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5차 AARRO 총회(1975.2.24.~3.3.) 주요 결의사항

- 집행위원국 선출
  - 아프리카지역 집행위원국으로 케냐, 수단, 모리셔스 및 라이베리아 4개국 선출
  - 아시아지역 집행위원국으로 대만(구 자유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이라크 및 일본 5개국 선출
- 폐막결의문 요지
  - 역내 회원국들의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기술 및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 이를 위한 조사 소요자금을 최대 55,000달러로 하여 이를 사무총장이 염출
  - 이 사업지원을 위해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조

2. AARRO 집행위원회 주요 결의사항

- 제14차 회의집행위원회(1975.2.21.~24.)
  - 대만이 제의한 "현 집행위원국은 헌장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재가입 신청을 낼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신헌장에 삽입
  - 회원국 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한국의 제의를 채택
  - 차기 의장국에 필리핀, 부의장국에 이집트와 한국을 추천
- 제15차 집행위원회(1975.3.4.)
  - 차기 집행위원회를 1975.8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Chand(인도인) 전 사무총장 및 인도 정부에 감사편지를 전달하기로 결정
  - 신임 사무총장 후보의 자격요건 및 조건을 결정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17차. 서울, 1975.5.20.-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4 / 1-72

정부는 1975.5.20.~23.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에 심의환 상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12개국)
   -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

2. 주요 의제
   - 사무총장 선임문제
   - 1974년도 결산승인
   - 197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장기사업계획의 검토
   - 신회원국 가입문제

3. 주요 결의사항
   - 신임 사무총장에 일본의 다케우치 하루미(현 주이탈리아대사)를 선임하기로 결정
   - 1974년도 결산 승인
   - 197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차기 이사회를 필리핀이 주최하기로 합의

75-0727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위생위원회, 제12차. Washington, D.C., 1975.5.12.-1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5 / 1-89

정부는 1975.5.12.~16.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2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위생위원회 회의에 서중일 주미국대사관 농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식품영양분과위원회 등에서 토의된 식품위생규격에 관련된 사항의 재검토
- 활선어 및 생선통조림의 규격안 중 위생규격에 대한 검토
- 식품위생의 일반적인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검토
- 연체패류, 낙화생, 식용개구리, 유유아식품 등에 대한 위생규격안 재검토

2. 주요 토의내용

- 식품영양위원회 및 각 분과회의에서 토의된 내용 중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
- 특히 수산물과 동 가공제품에 대한 규격안을 기술 측면과 미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검토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문제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47 / 15 / 1-23

1973년 중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 추진 동향임.

1. 주제네바대사는 1973.6.8. ICDO 가입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하여 건의함.

- ICDO 사무총장이 6.5. 동 대표부를 방문하여 ICDO의 최근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옴.

2. 외무부는 1973.6.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ICDO 가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 현재 ICDO 회원국이 25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범세계적 기구로 발전될 전망이 없음.
- ICDO 가입으로 얻는 실리가 별무함.
- 관계부처인 내무부도 가입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외무부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으며, 다원화되어 있는 민간방위관계기구가 일원화될 때까지 가입 연기가 좋다는 의견임.

3. 외무부는 1973.6.11. ICDO 가입문제를 관계부처인 내무부와 협의한바 일원화된 국내민방위기구 전담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ICDO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 기구에 통보하도록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함.

75-0729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 및 분담금 지불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6 / 1-70

1975년 중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 및 분담금 지불 관련내용임.

1. ICDO(국제민방위기구)는 1972.3.1. 제1차 ICDO 총회에서 ICDO 헌장이 발효됨으로써 정부간 기구로 발족함.
   - 한국은 ICDO가 민간기구로 존속된 1971년까지 동 기구의 회원국이었음.

2. 1973년 한국 정부는 ICDO 불가입을 결정하였으나, ICDO는 한국을 회원국으로 간주하여 1973년 이후 수시로 한국의 분담금 납부를 요청함.

3. ICDO의 분담금 납부요청에 대해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8.29. 아래 요지의 공한을 ICDO에 송부함.
   - 한국은 ICDO가 민간기구로 존속된 1971년까지 동 기구의 회원국이었으나, 정부간 기구로 발족한 1972년부터는 회원국이 아님.
   - 따라서 한국은 동 기구 분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

4. 주제네바대표부의 1975.8.29.자 공한 송부에도 불구하고, ICDO 사무국은 ICDO 회의 개최 관계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에 계속 송부해 옴.

5.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11.21.자 ICDO 앞 공한을 통해 한국이 ICDO 회원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송부된 ICDO 관계자료를 반려 조치함.

ADC(아시아개발센터) 이사회, 제12차. 동경, 1975.6.25.-2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7 / 1-16

정부는 1975.6.25.~27.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2차 ADC(아시아개발센터) 이사회에 정우식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옵서버)

2. 주요 회의결과

- 캄보디아(구 크메르)와 월남 피난민 구호에 관한 일본 측 결의안 채택
- APU(아시아의원연맹) 비회원국도 APU 목적에 찬동한다면 ADC 회원이 될 수 있도록 ADC 헌장 개정
- 향후 3년간 ADC 본부를 일본 도쿄에 두기로 결정
- 장차 아시아국가들 간의 진정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세안국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기로 결의

75-0731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 제11차. Taipei(대만(구 중국)), 1975.10.6.-10.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0 / 18 / 1-263

정부는 1975.10.6.~8. 대만(구 자유중국)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11차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에 김진만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
  - 대만, 일본, 한국, 라오스, 태국(개인자격 참가)
- 옵서버
  -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2. 주요 회의결과

- 19개항의 공동성명 채택
  - APU 헌장에 입각한 APU 회원국들의 단결 강조
  - 베트남, 캄보디아(구 크메르), 라오스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행위 규탄
  - 모든 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개발, 투자 증진 및 협력 등 권장
  - 차기(제12차) 총회를 1976.9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IPU(국제의원연맹) 구주안보회의, 제2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75.1.31.-2.6.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2/국제기구
MF번호 I060 / 19 / 1-44

정부는 1975.1.31.~2.6.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제2차 IPU(국제의원연맹) 구주안보회의에 강문봉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
  - IPU 구주안보회의 회원국
- 옵서버
  - 한국, 이스라엘, 일본,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 베네수엘라, 몽골 등

2. 대표단 주요 활동내용

- 강문봉 의원 활동
  - 유고슬라비아 국회의장 예방
  - 유고슬라비아 IPU 의장 예방
  - 주베오그라드 일본대사 주최 만찬 참석
  - 주베오그라드 미국대사 주최 리셉션 참석
  - 주베오그라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대사 접촉
- 강승구 참사관(수행원) 활동
  - 철도기계 제작회사인 Rudnap사 방문
  - 종합상사인 Yugoexport사 접촉
  - 담배 수출사인 Centrocoope사 접촉
  - 무역상사인 Progres사 접촉

75-0733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2차. London, 1975.9.4.-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1 / 1-323

정부는 1975.9.4.~1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62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김세련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67개국 대표 513명 참석

2. 주요 의제

- 중동 사태
- 경제개발과 국제협력
- 핵무기확산방지 및 화학무기방지조약 문제
- 비자치령의 독립촉구 문제

3. 주요 결과

- 신규회원 가입
  - 예멘공화국이 신규 가입되고 월남, 라오스의 회원자격이 정지됨.
- 집행위원 개선
  - 임기 만료되는 일본, 루마니아, 이탈리아의 후임으로 유고슬라비아, 영국, 이란이 당선됨.
- 총회규약 제4조 개정
  - 옵서버자격을 “유엔총회에서 초청받은 단체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인 안이 통과됨.
- IPU 총회 개최지 결정
  - 제63차 총회(1976.9월): 마드리드(스페인)
  - 제64차 총회(1977.9월): 소피아(불가리아)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6차. Colombo(스리랑카), 1975.3.31.-4.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2 / 1-264

정부는 1975.3.31.~4.5.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16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 김세련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74개 총회원국 중 56개국 대표단 참가

2. 주요 의제

-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촉구, 화학무기사용금지 등에 관한 문제(정치위원회)
- 비인도적 형벌금지 등에 관한 문제(인권위원회)
-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북한이 제출한 추가의제)

3. 한반도 긴장완화 의제

- 북한은 1975.3.11. IPU사무총장을 통하여 이사회 추가의제로 "세계 및 아시아에서의 평화유지와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문제"를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북한의 요청은 집행위원회에서 4:6, 이사회에서 36:40으로 부결됨.
- 북한은 동 의제를 제62차 총회(1975.9월) 의제로라도 상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사회가 동건 총회 상정여부를 동 총회에서 2/3 다수로 결정하게 할 것을 가결함으로써 북한의 시도가 좌절됨.

75-0735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지역 회의, 제3차. Manila(필리핀), 1975.4.3.-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3 / 1-21

정부는 1975.4.3.~8.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지역 회의에 허세린 주필리핀대사관 영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3개 INTERPOL 아시아지역 회의 회원국

2. 주요 의제

- 최근 3년간의 범죄 경향
- 마약불법거래
- 국제적 경제범죄와 사기
  - INTERPOL 사무국이 국제적 경제범죄와 사기에 대한 역내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촉구
- 인신매매
  - INTERPOL 사무국이 정보교환의 필요성과 상호협조를 촉구
- 미술품 도난
- 역내 회원국 통신망
  - INTERPOL 사무국이 역내 회원국간 통신망을 설명하고 통신의 중요성을 역설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44차. Buenos-Aires (아르헨티나), 1975.10.9.-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4 / 1-28

정부는 1975.10.9.~1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4차 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김봉균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장(치안감)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20개 회원국 대표

2. 회의 주요안건

- 도난차량의 불법매매
- 미성년 범죄 추세
- 위조통화 거래현황
- 국제사기 및 무역사범에 대한 예방조치
- 국제민간항공의 불법납치 및 대책

3. 회의 결의사항

- 마약불법거래에 대한 대책
  - 마약재배금지, 불법제조 및 거래금지,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함.
- 경찰쌍무협정
  - 국제경찰의 쌍무협정이 효과적임을 각국 정부에 알림.
- 인질사건
  - 인질사건에 대한 통일된 국제보고서식을 사용함.
- 신회원국 가입 승인
  - 소말리아와 스와질랜드의 가입을 승인함.
- 1974년도 결산 및 1976년도 예산안 의결

75-0737

아시아 사법회의, 제6차. Wellington(뉴질랜드), 1975.2.3.-7.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5 / 1-41

정부는 1975.2.3.~7.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사법회의에 민복기 대법원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뉴질랜드, 호주, 방글라데시,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구 크메르), 말레이시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월남, 네팔

2. 주요 일정

- 2.2.
  - 웰링턴 도착
  - 아세안국가 공관장 주최 리셉션
- 2.3.
  - 개회식 및 회의
  - 뉴질랜드 대법원장 주최 리셉션
  - 뉴질랜드 소개영화 관람
- 2.4.
  - 제1차 회의
  - 뉴질랜드 국회의장 예방
  - 뉴질랜드 검찰총장 주최 오찬
  - 제2차 회의
  - 뉴질랜드 법률가협회 주최 리셉션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집행이사회, 제20차. Manilla, 1975.5.3.-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6 / 1-43

정부는 1975.5.3.~7.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0차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집행이사회에 동홍욱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1개 EROPA 회원국 중 8개국 참가
  -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2. 주요 의결사항

- 차기 총회 개최
  - 시기 및 장소: 1976.5~6월, 이란 테헤란
  - 의제: 개발전략 및 공기업
- 국가회원국 회비 인상
  - 현 1,913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
- 개발전략센터 설치
  - 이란에 설치하여 운영
- 발전외교센터 신설
  - 필리핀에 발전외교센터를 신설하여 주재관, 외교관 등에 대한 교육훈련 담당
- 신규가입국 문제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의 신규가입 문제를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결정

75-0739

IUA(국제건축가연맹) 총회, 제13차. Venice(이탈리아), 1975.4.30.-5.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7 / 1-44

정부는 1975.4.30.~5.3.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13차 IUA(국제건축가연맹) 총회에 정인국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69개 IUA 가입국 대표 참가

2. 한국의 이사국 진출 교섭

- 외무부는 1975.4월 이후 관련 재외공관을 통하여 한국의 이사국 진출을 측면 지원함.
  - 각국의 건축가협회를 접촉하여 지원 요청

3. 한국의 이사국 피선

- 금번 총회에서 IUA 이사회(Council) 회원국 중 9개국이 피선됨.
  - 한국이 속한 제4그룹(아시아·중동지역)에서는 2개국이 피선
- 한국은 1975.5.3. IUA 이사국으로 선출됨.

아시아·아프리카 국제박람회협회 창립 및 한국가입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3/조약
MF번호 I-6-66 / 5 / 1-108

정부는 1975.11.3.~6.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국제박람회협회 창립 총회에 박노수 주이란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창립경위 및 목적

- 경위: 1972.4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후원 박람회 이사회의에 참가한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대표들이 동 협회설립을 건의
- 목적: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경제, 특히 공업개발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박람회 이용

2. 참석자

- 한국, 일본, 중국(구 중공), 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옵서버 12개국 및 4개 국제기구 대표

3. 주요 토의내용

- 협회 정관 및 세칙 채택, 회장 선출(이란 박람회협회장), 11개 임시이사국 선출, 행동계획 채택

4. 회원자격

- 상설 국제박람회 또는 박람회 및 전시회를 주관하는 단체
- 창립총회 참석국으로서 1년 이내에 가입의사를 보고하면 자동가입

5. 대표단 건의

- 동 협회 창립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건의

6. 상공부는 1976.1.12. 외무부에 아시아·아프리카 국제박람회협회 가입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가입효과
  - 회원 예정국이 자원보유국 및 제3세계 국가 위주이므로 북한 단독가입 사전예방
  - 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7. 외무부는 1976.6.26. 상기 박람회협회 가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 동 협회 가입승인 시 사전 국무회의 상정 등 국내 행정절차를 요하는지 여부 검토

75-0741

WEC(세계에너지회의) 국제집행이사회. Copenhagen(덴마크), 1975.5.25.-2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8 / 1-67

정부는 1975.5.25.~29.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WEC(세계에너지회의)/IEC(국제집행이사회)에 이근양 국내위원회 부의장 겸 석탄공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4개국 및 1개 국제기구 대표 총 134명

2. 주요 결과

- 1974년도 WEC/IEC 회의록 승인
- 협회의 대유엔 활동 등 사무국장 보고 승인
- 제9차 WEC 총회 결과보고
- 에너지 자원조사, 에너지 경제용어 표준화사업 등 검토
- 보존위원회(Conservation Commission) 사무국 및 위원 구성
  - 사무국은 비엔나 소재, Kiely 미국 위원장외 위원 8명으로 구성
- 제10차 WEC 총회 개최 결정
  - 1977.9월, 터키 이스탄불
- IEC 부의장 선출
  - 터키 및 캐나다 국내위원회 부의장이 각각 피선
- 차기 이사회 개최 결정
  - 1976년도: 코트디부아르
  - 1978년도: 캐나다

3. 대표단 관찰 및 건의사항

- WEC/IEC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국제에너지 전문가와 한국에너지의 당면문제 토론 및 한국 산업발전을 소개
- 1980년대에는 WEC/IEC 회의를 한국에 유치하도록 준비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 제12차. Adelaide(호주), 1975.11.9.-2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9 / 1-17

정부는 1975.11.9.~22. 호주 아드레이드에서 개최된 제12차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에 홍경모 KBS 사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문화공보부는 1975.11.5. 제12차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 참가와 관련, 아래 주요 협의사항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을 요청함.
   - 한국(KBS)의 ABU 이사직 임기만료에 따르는 문제
   - 북한의 ABU 가입
   - 공산 월남의 회원자격 문제
   - 중국(구 중공)에 대한 이사국 찬반투표 문제
   - 아랍 12개국의 정회원 가입문제

2. 외무부는 1975.11.10. 문화공보부에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함.
   - 한국의 이사직 재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입후보 출마를 재고할 필요
   - 예상되는 북한의 가입문제 거론에 대하여는 북한이 ABU 설립취지 및 활동에 적극 호응한다는 조건으로 동 기구가입에 불반대
   - 공산 월남의 회원자격 문제 제기에 대해 컨센서스로 처리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표결할 경우에는 기권
   - 중국의 이사직 지명추천에 대하여는 기권
   - 아랍권 국가의 가입문제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입장을 취하되 원칙상 반대 불필요

3. 주요 협의의제
   - 몬트리올올림픽 우주중계권료 문제
   - 이사국 선출, 특히 1974년 대만(구 자유중국)을 축출하고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중국의 이사국 선출문제

4. 주요 회의동향
   - 중국대표는 동 회의에 한국대표 참석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회람을 각 참가대표에게 송부(1973년 동경회의 시에도 동일한 행동)
   -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사국으로 피선

75-0743

제3세계 교직자회의, 제1차. Acapulco(멕시코), 1975.8.5.-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10 / 1-40

제1차 제3세계 교직자회의가 1975.8.5.~9.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개최됨.

1. 개요 및 목적

- 회의 개요
  - 초청범위: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제의한 경제권리의무헌장 수락국
  - 참가자: 54개 국가 및 기관대표 143명
  - 북한은 5명의 대표단(조총련 소속) 파견
  - 한국은 불초청되어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을 파견
- 개최 목적
  - 제3세계 국가 주권, 경제적 독립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 국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기하기 위해 교육원리와 교원 교육활동 조정
- 주요 의제
  - 교육과 경제사회적 발전, 교육과 문화, 교육과 국제적 유대
- 제3세계 교직자선언문 채택(1975.8.8.)

2. 주멕시코대사는 1975.9.19. 상기 회의 관련, O. Lopez 멕시코 교직자 노조 국제관계국장과의 면담결과를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회의소집 경위
  - 국제사회 교직자간의 제반문제 해결모색, 교육 문화개발 촉구, 국제사회 단합촉구, 복지향상 및 각국 노조간의 경험과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멕시코 노조의 이니셔티브로 개최
- 초청범위
  - 유엔권리헌장 지지국과 중국(구 중공), 월맹 등 일부 사회주의국가, 프랑스 등 일부 자본주의국가 초청, 초청대상은 멕시코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북한(조총련)은 guest로 초청)
- 차기 회의 전망과 한국 초청여부
  - 1976년도에 가능하면 아랍국가 중에서 개최를 구상중이나 아직 미확정
  - 향후 한국 교원노조 측과 접촉할 의향이 있으며, 차기 국제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언급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11 / 1-80

1975년 중 개최된 LRCS(국제적십자사연맹) 개최회의 내용임.

1. 정부는 1975.6.11.~13.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세계적십자평화회의에 이범석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자
  - 적십자사연맹 회원국 74개국 및 연맹 사무국 등 190 여명 참석
- 한국대표단 활동
  - 적십자사연맹 사무총장을 방문, 한국적십자사의 월남 피난민 구호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적십자사와의 관계, 평화회의 등 의견교환
- 대표단 관찰 및 건의
  - 유고 등 공산국 및 비동맹국은 동 적십자평화회의를 정치도구 선전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강대국의 압력으로 회의보고서 및 토의에 그치고 투표나 결의문 채택에는 실패
  - 적십자사의 평화증진을 위한 기여방안으로 종래의 Negative peace에서 Positive peace로 평화를 추구하자는데 집중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인간 대 인간, 국민 대 국민의 한 가족개념이 되어야 하며, 단결·협동·우의증진 면에서 보다 활동적인 기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강조
  - 아울러 Programme of Action of the Red Cross as a Factor of Peace를 적십자사업 각 분야별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건의

2. 정부는 1975.10.27.~11.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3차 적십자사연맹이사회에 이호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사전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975.9.17.)
  - 북한의 정치선전화 가능성에 대비, 반론자료 준비와 대처방안 논의
  - 한국의 집행위원회 불출마와 북한의 출마에 소극적 반대 결정

75-0745

제24차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및 제15차 Workshop. Sydney(호주)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1 / 12 / 1-89

정부는 1975.3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4차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1975.3.17.~20.) 및 제15차 워크숍(1975.3.13.~14.)에 김완수 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32개국 약 2,000명

2. 파견 목적

- 한국관광선전 및 국위선양, 관광객 유치 및 거래선 개척, 1979년도 PATA 총회 및 워크숍 한국유치, 한국전 참전용사 제방문 유치활동, 각국대표 및 언론인과의 유대강화

3. 주요결과

- 이사회 및 총회 주요 결의사항
  - 자연환경보호 결의문 및 신임이사 지명위원회 건의를 총회에 상정
  - 향후 5년간 예산 확정, 차기 상근부회장 선출은 1975.6월 이사회에서 선출 결정
  - 차기회의 일정 확정
    - 제25차 총회(1976년): 하와이
    - 제26차 총회(1977년): 홍콩
    - 제27차 총회(1978년): 인도와 스리랑카
- 한국대표단 주요활동 내용
  - Korea Hospitality Suite 운영, 한국 PATA지부 표창, 관광공사 사진전 입선, 1979년도 PATA 총회 유치활동, 참전용사 유치 및 홍보활동 등

4. 참가효과

- 한국경제의 발전상과 한국관광지 광범위한 선전
- 1979년도 PATA 총회 한국유치에 대한 적극적 지지확보로 유치전망 제고

5. 대표단 건의

-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의 국내유치를 위한 대규모 회의장 건설
- 국제회의 참가 한국대표단 정예화 요망
- 관광객 수용시설 및 각종 서비스의 국제수준화 촉진 등

한·터키 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1/조약
MF번호 J-95 / 1 / 1-173

1975~75년 중 한·터키 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68.2월 국방부는 주터키대사관 무관을 통해 터키 육군대학에 유학생 파견가능성 타진
- 1968.10월 터키 정부는 한국군 장교 파견교육 승인
- 1973.11월 터키군 총사령부는 한국군 유학생 1명 입학승인 통보 및 협정초안 제시
- 1974.7월 외무부와 국방부가 협의, 한국 측 수정안 작성

2. 협정 주요내용

-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장교에 대한 터키의 관세법 적용, 군사관할권, 재판권, 군령위반의 제재, 손해배상 등 기타 행정사항 규정
- 터키 초안과 한국 수정안의 주요 차이
  - 터키 복무법 및 규칙의 적용, 손해배상 청구, 훈련기관에서의 명령복종, 건강 등 사유로 인한 훈련 불참여의 경우 본국송환

3. 교섭경과

- 1974.9월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터키 정부에 제시
- 1975.5월 터키 측 자국협정 원안내용을 수락할 것을 요청하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정안 제시
- 1975.5월 외무부는 국방부에 아래 검토의견 송부
  - 한국 군인의 해외 파견훈련은 대부분 정부간 협정 없이 추진되어 왔음에 비추어 본건도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한국군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추진
  - 터키 측 원안을 그대로 수락시 한국으로서 협정 체결 실익 무
- 1975.5월 주터키대사는 한국장교의 파견교육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을 고려하여 협정 체결 추진을 건의

4. 국방부 추진방침

- 국방부는 1975.8.20. 상기 협정 체결은 현 상태에서 유보하고 1975년도 유학을 위해 행정협정과는 별도의 합의방식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외무부에 통보

75-0747

한·미국 국방부 간의 과학교류 및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75.3.1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안보
MF번호	J-95 / 2 / 1-20

한·미국 국방부 간 한·미국 과학교류 및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를 1975.3.17. 체결함.

1. 피교육 후보자 선정

- 국군장교 또는 정부관리 포함,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유창한 영어구사 및 실무지식 소지자

2. 비용

- 모든 비용은 한국이 직접 지불

3. 보안

- 미 국방부는 동 후보자 배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국 국방부에 통보
- 미 군사비밀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파견완료 후 최소 2년간 한국 정부의 공무원 지위 보증

4. 기술 및 행정적 사항

- 미 국방부는 피교육자 과제수행을 위해 인정되는 기술 및 행정지원 제공
- 배치된 국방부 소속 요원은 미 국방부 요원과 동등한 신분의 대우와 특권 향유
- 배상문제 발생시 적용 가능한 지역의 법에 의해 결정

5. 발명 및 기술정보

- 국방부는 정보가 허용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의 방지를 보장
- 국방부는 착상된 발명 또는 발명의 최초 실용화에 대해 전세계를 통한 권리소유권 및 이권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

6. 유효기간 및 폐기

- 조기에 폐기되지 않는 한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상호 합의에 의해 언제라도 폐기 가능

한·독일 간의 재정원조 협정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5 / 3 / 1-57

한·독일 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을 1975.4.15. 체결함.

1. 협정의 구성 및 내용

- 전문과 8개 조문으로 구성
- 한국의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기계화와 양곡보관창고 건설을 위해 독일 정부는 3천만 마르크(약 1,200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제공
-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사업기획단에 종사할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외화용역비로 49만 마르크(약 19만 달러) 제공

2. 외무부 평가

- 상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차관계약은 본 기본협정에 따라 향후 체결예정
- 이러한 한·독일 간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과 한·독일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가일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

3. 동 협정은 1975.4.15.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K. Leuteritz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 발효됨 (조약 제531호).

75-0749

한·캐나다 수출진흥공사 간의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J-83 / 8 / 1-117

한·캐나다 간의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이 체결됨.

1. 경위

- 한국 정부는 제3차 5개년계획 기간에 소요되는 시외전신전화회선 수요의 자연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함.
- 이에 소요되는 외자 2천만 캐나다 달러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도입을 위해 1972.1.29. Pepin 캐나다 통상장관과 협의
  - 제4차 연도(1972~76년) 총 4,380회선 증설, 차관 총액 2천만 캐나다 달러
  - 도입조건: 이자율 연 6%, 2년 거치 13년 6개월 이상 상환

2. 교섭 및 진행

- 외무부는 1972.5월 이후 동 차관 제1차 연도분 도입을 위한 캐나다 측과의 교섭 및 국내절차를 진행함.
- 1972.9.1. 조달청과 캐나다 Radio Collin 간 구매계약 체결
- 1972.11.14. 캐나다 측 차관협정안 접수
- 1972.11월 체신부, 상기 차관협정안 서명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 추진
  - 차관규모: 585만 캐나다 달러(약 542만 달러)
  - 조건: 연 6%이자, 2년 거치, 10년 6개월 상환
- 1973.1.11. 한·캐나다 간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체결

3. 상기 차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약속어음 제1호가 1975.1.2. 발행됨.

한·일본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에 관한 차관협정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조약
MF번호	J-95 / 4 / 1-277

한·일본 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에 관한 차관협정을 1975.8.29.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3.12월 제7차 한·일본 각료회담시 일본 측은 북평항의 개발에 관해 협력할 것을 약속
- 1975.4월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차관제공 원칙에 관해 합의
- 1975.8월 양측간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안에 합의

2. 주요 골자

- 북평항 개발
  - 일본 해외협력기금 124억2천만 엔 차관제공
  - 차관조건은 7년 거치 13년 상환, 연리 3.5%, 인출마감일은 1979.6.30.
- 농업개발 차관
  -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110억 엔 차관제공
  - 차관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75%, 인출마감일은 1976.12.31.
- 한국 정부의 의무
  - 차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의 부과 면제
  - 차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일본국민에 대해 입국 및 체재상의 편의제공

3. 체결 의의

- 북평항 개발차관
  - 북평항 항만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변 임해공업단지의 수송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동해안의 산업개발에 기여
- 농업 개발차관
  - 농업부문 간접자본의 확충 및 농업 근대화를 추진하여 식량 및 농업생산 증진을 통한 농민 생활향상에 기여

4. 동 협정은 1975.8.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8.29. 노신영 외무부장관직무대리와 니시야마 아키다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4호).

75-0751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V.1 1973)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1
MF번호	J-95 / 5 / 1-111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2.10월 한국 측은 프랑스 측에 협정초안을 요청
- 1973.7월 프랑스 측 초안 수교

2. 한국 측은 프랑스 측 초안검토

- 프랑스 측 협정초안은 프랑스의 대한투자에 대한 한국의 일반적인 보장에 관한 사항만 규정
- 외무부는 기 체결한 독일 및 스위스와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과 현재 추진중인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의 협정안에 준하는 한국 측 대안 작성 검토

3. 한국 측 수정안 확정 및 프랑스 측에 수정한 제시(1973.9월)

- 수정안 요지
  - 프랑스의 대한투자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쌍무적으로 수정
- 협정 주요내용
  - 체약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투자 장려, 투자의 보장, 과실송금의 자유, 투자의 수용과 국유화 및 박탈금지, 면제, 최혜국 대우, 분쟁해결 등 규정

4. 프랑스 측 반응(1973.10월)

- 쌍무적인 한국 측 안은 프랑스 국회의 인준을 득하는데 1년반 내지 2년이 걸리므로 동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편무적인 프랑스 측 안에 동의할 것을 제의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V.2 1974-75)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1
MF번호 J-95 / 6 / 1-184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1975.1.22. 체결함.

1. 교섭 경위

- 프랑스 측은 1974.2월 쌍무적인 협정 체결은 국회 동의를 얻는데 1~2년이 걸리므로 시간단축을 위해 우선 프랑스 안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쌍무적인 한국 측 안은 가까운 장래에 교섭을 개시한다는 수정안 제시

2. 협정 주요내용

- 한·프랑스 투자촉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쌍무적인 협정 발효 이전에 프랑스 국민의 대한투자를 보장하는 편무적인 내용
- 전문, 9개 조문 및 부속공한으로 구성
  - 대한투자분에 대한 국유화 방지, 과실송금 보장, 최혜국 대우 부여,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 규정
  - 3년간 유효하고 쌍무적인 협정 발효시 자동 폐기

3. 협정 체결의 의의

- 프랑스인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국내법(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협정으로 보장함으로써 프랑스의 대한투자를 더욱 촉진시켜 한국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자를 확보하는데 도움
- 한·프랑스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

4. 동 협정은 1975.1.22.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헌 주프랑스대사와 C. Chayet 프랑스 외무성 조약국장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 발효됨(조약 제525호).

75-0753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V.1 체결교섭, 1970-73)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1
MF번호	J-95 / 7 / 1-215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0.12월 네덜란드 정부는 한·네덜란드 간 경제협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정안 제시
  - 동 협정은 전문 및 본문 20개조로 구성
  - 주요내용은 경제관계 증진과 투자촉진, 항공 및 해운업무, 공업소유권, 조세 등에 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
- 1971.7월 한국 측 수정의견 제시
  - 네덜란드 측 경제협력협정안은 경제전반에 걸친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
  -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제의
- 1972.10월 네덜란드 측은 투자보장을 규정한 경제협정안 제시
  - 투자보장규정 이외에 양국간 경제협력, 민간항공 및 네덜란드의 영토규정 조항 포함
- 1973.7월 한국 측 안을 확정, 네덜란드 측에 대안 제시
  - 전문 15개조로 구성
  - 체약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투자장려 및 허가, 특허권 보장, 투자의 보장, 과실송금의 자유, 투자의 수용과 국유화 및 박탈금지, 변제, 최혜국 대우, 분쟁해결 등 규정
  - 협정기간 최초 15년

2. 실무자회의 개최

- 1973.12월 헤이그 개최를 추진했으나, 교섭시기 등 사정으로 동 회담 개최 미 실현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V.2 체결 및 공포, 1974-75)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1
MF번호 J-95 / 8 / 1-236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이 1974.10.16. 체결됨.

1. 실무자회의 개최(1974.4.24.~27. 서울)

- 양측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동원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네덜란드 측: H Stolp 경제성 국제경제국장
- 주요 교섭사항
  - 투자대상 범위의 결정, 특허권, 투자에 의한 대외송금 자유화, 투자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화해, 투자보험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였을 때 투자자의 권리 대위권 인정문제, 상호투자 권장문제(세제면) 등

2. 협정체결의 의의

- 한·네덜란드 간의 경제협력 강화
-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

3. 협정초안 합의 및 가서명(1974.4.29.)

- 양국 정부의 국내절차 완료후 조속한 시일내에 정식 서명하도록 노력

4. 동 협정은 1974.10.16. 헤이그에서 최완복 주네덜란드대사와 V. Stoel 네덜란드 외상 간에 서명되고 1975.6.1. 양국간 국내 법적절차 완료에 대한 각서교환으로 발효됨(조약 제534호).

- 동 협정은 전문과 13개 조문으로 구성

75-0755

한·튀니지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95 / 9 / 1-292

한·튀니지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1975.5.23. 체결함.

1. 추진 경위

- 1973.12월 튀니지 측, 협정초안 송부
- 1974.4월 한국 측, 수정안을 튀니지 측에 제시
- 제2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1974.7.18.~19., 서울)에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합의
- 1974.7.20.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H. Chatty 튀니지 외상 간에 가서명

2. 협정 주요내용

- 전문 및 10개조로 구성
- 투자의 증진 및 허용, 투자의 보호 및 대우, 이자·배당금 등의 자유이전, 수용 및 국유화의 금지, 소급효, 특별규정 인정, 분쟁해결 등

3. 협정체결의 의의

-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 및 우호관계 강화 기여

4. 동 협정은 1975.5.23. 튀니스에서 문철순 주튀니지대사와 M. Kooli 외무담당 국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75.11.28.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보함으로써 발효됨(조약 제522호).

한·벨기에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1975.1.28.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526호)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95 / 10 / 1-177

한·벨기에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1975.1.28. 체결함.

1. 추진 경위

- 1971.10월 벨기에 측, 상기협정 체결을 제의
- 1973.11월 한국 측은 벨기에 측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
- 1974.5월 한국 측 일부수정 제의
- 1974.11월 양측 간 최종안 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일방 체약국은 관계법규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타방 체약국 기업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면세
- 상호면세는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고 있는 공동출자, 합작사업 및 국제운영 대리기간에 참여하는 체약국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
- 본 협정의 면세는 1974.1.1.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및 사업연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

3. 협정체결 의의

- 1972년 이래 한·벨기에 간 교역량이 급격히 증대하여 1975년에는 양국간 교역 총액이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므로 동 협정의 체결은 앞으로 양국간 운수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동 협정은 1974.12.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28.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G. Jenebelly 주한 벨기에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6호).

75-0757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V.1 1971-74)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
MF번호	J-94 / 11 / 1-159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71.9월 주한 덴마크대사는 외무부차관에게 덴마크 선박회사 대리점에 대한 과세부과 재고(再考)를 요청
- 재무부는 1971.10월 국내법에 의거, 당해국가와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약을 체결해야만 비과세할 수 있다고 회신
- 덴마크 정부는 1971.12월 기업소재주의에 의한 상호면세 내용의 협정안 제시

2. 한국의 입장

- 초기에 아래 이유로 동 협정 체결에 소극적 입장
  - 양국간에 항공기 취항 계획이 없어 동 협정 체결의 실익이 적음.
  - 기업소재주의에 의해 상호면세하는 경우, 한국의 일방적 세수입 감소 초래
- 추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
  - 항공 및 해운의 비약적 발전으로 한국 항공기의 구주 취항과 수출량 증대로 한국선박 취항 및 한국 수출업자의 용선회수가 증가되고 있는바, 국제운수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성 대두

3. 덴마크 측과의 교섭진행

- 1973.11월 한국, 덴마크 측에 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한국 측 대안 제시
- 1974.10월 덴마크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통보
- 1974.11월 덴마크 측은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체결권한과 소급면세적용까지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회신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V.2 1975)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93 / 12 / 1-136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1975.9.18. 체결함.

1. 협정문안 합의(1975.5월)
   - 상호주의에 따라 선박 및 항공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조세면제
   - 상호면세는 공동출자, 합작사업 및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는 국제운수기업 소득에도 적용
   - 일방이 문서로 종료통고시 6개월 기간 만료후 익년 1.1.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비적용

2. 협정체결 의의
   - 1972년 이래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교역량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양국간의 교역량은 1972년 약 9백만 달러에서 1974년 2천3백만 달러), 또 국제운수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대유럽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바, 동 협정 체결은 양국간 교류증진과 특히 국제운수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동 협정은 1975.9.18.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T. Dahlgaard 주한 덴마크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6호).

75-0759

한·그리스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체결 교섭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92 / 13 / 1-24

한·그리스 간의 국제운수 소득의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체결 교섭을 추진함.

1. 교섭경위

- 1971.2월 그리스 측 협약안 통보
- 1973.1월 재무부는 양국의 운수실적으로 보아 협정 체결이 한국에 불리하다는 의견
- 1974.5월 그리스 측 수정안 제출
- 1974.6월 재무부는 그리스 측 수정안 수락이 곤란하다는 입장

2. 주요 쟁점

- 선박등록주의/기업소재지주의
  - 그리스 측은 선박등록주의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소재지주의를 주장
- 한국 측 주장 이유
  - 양국이 각각 면세기준을 달리하면 호혜주의에 어긋남.
  - 양국간 보유 선박량 및 운수실적상 일방적인 한국의 세수감소만 초래
- 그리스 측 주장 이유
  - 그리스 선박의 90% 이상을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 안에 따를 경우 그리스 측 혜택이 전무

3. 추후 재협의

- 1975.4월 주한 그리스대사 방한 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 양국이 각각 타국과 체결한 협약에 관한 자료를 교환, 검토후 재협의하기로 함.

한·싱가포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1975.8.19.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6 / 1 / 1-126

한·싱가포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1975.8.19. 개정함.

1. 교섭 경위

- 한·싱가포르 간 항공협정 발효(1972.2.2.)
  - 한국의 지정항공사는 싱가포르 이원(以遠)지점으로 호주내 제지점만을 운행
  - 싱가포르의 지정항공사는 서울 이원지점으로 미국 및 캐나다의 서해안 제지점으로 한정
- 양국은 각자의 항공망을 확장시킬 필요성에서 이원지점 추가교섭

2. 한·싱가포르 항공회담 개최결과(1975.4.9.~11., 서울)

- 주요 합의사항
  - 이원지점 추가: 싱가포르 측은 일본내 2개 지점, 한국은 방콕, 인도네시아의 2개 지점 및 뉴질랜드내의 1개 지점(단, 현행 호주내 제지점을 호주내 1개 지점으로 수정)
  - 운수권 제한조항 삭제: 제5의 운수권 행사 가능
  - 운항회수 증회: 현행 주3회를 주7회로 증회
- 협정체결 의의
  - 동 협정의 개정으로 한국 지정항공사의 동남아노선이 더욱 확장됨.

3. 동 협정은 1975.8.19. 싱가포르 외무부 공한과 주싱가포르대사관간 공한 교환으로 개정됨(조약 제543호).

75-0761

북한·제3국가 간 항공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6 / 2 / 1-31

북한의 파키스탄 및 오스트리아와의 항공협력에 관한 내용임.

1. 교통부는 1975.3.4. 외무부에 파키스탄 항공사의 북한 영공통과 시도에 관한 대책을 협조 요청함.

- Aviation Daily지는 2.7. 북한이 파키스탄 국제항공사(PIA)의 북한기착 및 영공통과권을 허용, PIA 측은 일본 정부에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북경/동경 정기항로 개설을 신청했다고 보도
- 만약 PIA가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사전대책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
  - 파키스탄과 북한 간에 합의한 북한기착 및 영공통과 내용
  - PIA가 의도하는 정기항로 개설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의 조치계획
  - PIA의 북한 영공통과 시도에 대한 한국의 저지방안 등

2. 외무부는 1975.3.17. 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북한이 PIA에 북한기착 및 영공통과를 허용하였으나, 파키스탄 측에서 일본 정부에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북경/동경항로에 대해 운행허가를 신청했는지는 불명확함.
- 동건 관련, 일본 정부에 직접 타진하는 것은 미묘하다고 생각되므로 우선 항공사간의 접촉을 통해 동 허가신청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5.11.18. 북한·오스트리아 항공운송협정이 오스트리아 외무성에서 가조인될 예정이며,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함.

- 협정문 주요내용
  - 항공권: 타방국 영토 무착륙 통과권, 비수송 목적의 기착권, 승객과 화물 등 상대국 지정지점 기착권
  - 운항 항공사 지정(오스트리아 에어라인, 조선민항)
  - 운항 60일전 관계당국간 항로, 항공반경, 항행에 따른 제반 기술적 문제 사전협의
  - 타방국 항공기, 승객, 승무원, 화물 등에 대한 자국 국내법규 동일적용
  - 여타 항공협력 관련사항

일본·대만(구 중화민국) 민간항공협정 체결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J-96 / 3 / 1-71

일본과 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민간 항공협정이 1975.7.9. 체결됨.

1. 추진 경위

- 일본은 1974.4.20. 일본·중국(구 중공) 간 항공협정 서명직후, 담화를 발표
  - 일본과 대만 간 항공업무에 관한 교환각서를 무효화
- 이후 일본은 대만노선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
- 양국간 교류상 중요역할을 하는 동 노선을 계속 폐쇄하기 어려운 실정과 중화민국항공사(CAL)의 진로타개를 위한 필요성에서 대만은 동 문제에 탄력적인 태도로 선회

2. 민간협정 체결

- 일본·대만 양국은 노선재개 원칙에 합의를 보고, 1975.7.9. 양국간 민간협정 체결
- 동 협정 주요내용
  - 양국간 항공노선은 민간협정에 의해 운항
  - 항공지점은 일본 측 하네다, 대만 측 타이베이
  - 항공편수는 주 약 40편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 CAL의 서울노선 재개
- 대한항공의 타이베이노선 취항횟수와 승객 감소 가능성
-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뱀장어 수송을 위한 대한항공의 전세기 운항이 CAL 또는 JAL (일본항공)에 의해 대체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

4. 대만항공의 일본취항 재개

- 일본 운수성은 1975.7.24. CAL기의 일본 취항을 정식으로 인가
  - 8.1.부터 동경경유 미국 서해안 주6회 취항 가능

75-0763

한·벨기에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5.10.20.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5 / 14 / 1-158

한·벨기에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1975.10.20. 체결함.

1. 추진 경위

- 양국 항공사간 실무협의(1974.11.21., 서울)에서 각 정부에 항공협정 체결 추진을 건의
- 1975.4월 한국 측, 양국 간 항공협정 초안을 벨기에 측에 전달

2. 한·벨기에 항공회담(1975.6.3.~4., 벨기에 브뤼셀)

- 대표
  - 한국 측: 홍일 주벨기에 공사
  - 벨기에 측: 외무성 Perdieus 공사
- 양측 합의(가서명) 내용
  - 운항노선: 서울과 브뤼셀 직항노선
  - 중간지점과 이원지점: 양국 항공당국 간 협의를 거쳐 외교공한으로 확인
  - 운항회수와 시기: 양국 지정항공사 간 협의를 거쳐 항공당국이 결정
- 회담 회의록 주요내용
  - 지체 없이 본 협정이 양국간에 서명될 수 있도록 각자 정부에 건의
  - 개인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각자 정부에 건의

3. 협정체결의 의의

- 양국간 항공협정의 체결로 한국 민간항공의 대유럽 노선은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스위스와의 협정 노선과 더불어 더욱 확장

4. 동 협정은 1975.8.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0.20. 브뤼셀에서 송인상 주벨기에대사와 V. Elslande 벨기에 외상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9호).

한·이탈리아 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면제협정, 1975.4.5. Rome에서 각서교환: 1977.5.5. 발효(조약 제530호)

생산연도 1966-1975
생 산 과 조약/구주1
MF번호 J-96 / 4 / 1-130

한·이탈리아 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협정을 1975.4.5. 체결함.

1. 추진 경위

- 1967.6월 이탈리아 측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교섭추진
- 1972.6월 이탈리아 측 국내사정으로 일시 중단후 교섭재개, 이탈리아 측은 면제 향유기간을 3개월로 제안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이를 2개월로 제의
- 1974.12월 면제 향유기간을 2개월로 하는 협정안에 최종합의

2. 협정 주요골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의 60일 이내 기간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 사증면제
- 60일 이상 체류 시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출입국관리 규정준수 및 사증면제자의 영리활동 금지
- 무기한 효력지속, 3개월전 통고로서 종결

3. 체결 의의

- 양국 국민의 여행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양국간 교류를 원만히 하여 기존 우호유대관계를 더욱 강화

4. 동 협정은 1975.2.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4.5. 로마에서 조상호 주이탈리아대사와 R.Ducci 이탈리아 외무성 정무차관보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5.5.5.자로 발효됨(조약 제530호).

75-0765

한·그리스 간의 선원수첩 공인협정 교섭철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J-96 / 5 / 1-28

한·그리스 간의 선원수첩에 대한 공인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73.5월 주한 그리스대사관(동경 주재)은 선원수첩에 대한 상호 공인협정 체결을 제의
- 1974.9월 한국 측 수정안 제의

2. 주요 쟁점사항

- 선원수첩의 효력
  - 그리스 측은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로서 여권과 동일한 효력 주장
  - 한국 측은 여행증명서로서의 구실은 인정하나 여권과 동일한 효력은 불인정
- 사증, 스탬프 표시방법
  - 그리스 측은 모든 사증, 스탬프 등은 여권상에 표시하는 대신 선원수첩에 표시를 제의
  - 한국 측은 사증, 스탬프 등을 선원수첩에 표시하지 않고, 상륙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의

3. 추가교섭

- Chrisanthopoulos 주한 그리스대사는 1975.8.13. 이경훈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의
  - 양국간 미합의 사항중 선원수첩의 성격규정 및 기능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그리스 선원수첩을 여권과 같은 Travel Document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이경훈 국장의 언급사항
  - 여권 및 선원수첩에 대한 한국제도 설명
  - 선원수첩을 소지한 선원이 승선을 목적으로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Travel Document for Aliens를 발급하는 보완절차 추가설명
  - 그러나 그리스 측이 희망하는 대로 선원수첩에 직접 입국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
- Chrisanthopoulos 대사는 추후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

한·스페인 간의 선원수첩 공인협정, 1975.4.18. Madrid에서 각서교환: 1975.5.18. 발효(조약 제535호)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6 / 6 / 1-150

한·스페인 간의 선원수첩 공인협정이 1975.4.18. 체결됨.

1. 추진 경위

- 스페인 정부는 한국이 ILO(국제노동기구)의 선원수첩 공인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양국간 협정도 없다는 이유로 한국선원의 선원수첩 불인정 및 한국선원의 불법입국에 대한 벌과금 부과
- 1973.7월 한국은 스페인에 선원수첩 공인협정 체결 제의
- 1974.11월 한·스페인 양측이 문안에 최종합의

2. 협정안 주요골자

- 양국의 선원수첩을 공식 여행증명서로 인정
  - 동 선원수첩 소지자에게 15일 이내 기간의 체류, 통과를 허가
- 불가피한 경우 상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재기간중 동 선원들은 외국인에 관한 국내법령을 준수
- 각국은 외교 또는 영사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탈선원을 즉각 억류하여 재승선 또는 송환조치 가능
- 양국은 불만스러운 인물에 대한 입국·체재 거부 가능

3. 협정 체결의 의의

- 한국어선 등 외항선박이 1966년 이래 스페인 근해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들의 상대방 영토내의 상륙 및 체재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외항선원들의 여행편의와 양국간 협력을 강화

4. 동 협정은 1974.12.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4.18. 마드리드에서 신상철 주스페인대사와 스페인 외상 간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고, 1975.5.18.자로 발효됨(조약 제535호).

75-0767

한·독일 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 연장에 관한 협정 체결 및 철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6 / 7 / 1-181

한·독일 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 연장협정을 추진하였으나, 독일 측의 협정연장 철회로 1974.12.15. 동 협정은 종료됨.

1. 현황

- 한·독일 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이 1969.9.8. 체결되고, 1969.12.16.자로 발효됨(조약 제320호).
  - 괴테학원이 수입하는 자동차 및 교재, 교육용구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공과금 면제
  - 동 학원 직원 및 가족의 자동차, 개인용품, 식음료 등 수입세 면제
- 1974.10월 독일 측은 동 협정기간 연장을 제의
  - 12월 한·독일 간 최종합의

2. 연장협정 내용

- 1969.12.16. 발효된 동 협정의 형식과 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유효, 3개월 전 사전통고로 폐기 가능

3. 동 협정은 1974.12.23. 외무부와 주한 독일(구 서독)대사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기간연장협정에 합의하고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 충족을 상호통고한 일자로부터 1974.12.16.로 소급하여 발효함.

4. 한국 측, 국내조치 보류(1975.6.10.)

- 동 협정에 포함된 면세규정이 한·독일 문화협정 의정서 내용과 중복
- 단순한 협정 연장적용에 국회동의를 요하는 국내절차상의 문제 등

5. 독일 측, 동 연장협정 철회요청(1975.8.13.)

- 동 연장협정은 독일이 회원으로 있는 EC(구주공동체)에 대해 발효한 새 관세규정의 적용 및 한·독일 간 조만간 체결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으로 독일 내에서 발효될 수 없다는 이유

6. 괴테학원 설립협정 종료

- 한국 측이 1975.8.28. 독일 측의 연장협정 철회요청을 수락함으로써 괴테학원 설립협정이 1974.12.15.자로 (소급)종료됨.

한·이란 간의 문화협정, 1974.7.16. Teheran에서 서명: 1975.3.20. 발효(조약 제529호)

생산연도	1968-1975
생 산 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6 / 8 / 1-223

한·이란 간의 문화협정을 1974.7.16.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69.1월 주이란대사를 통해 한국 측 초안을 이란 측에 제시
- 1973.8월 이란 측이 한국 측 안에 대한 대안 제시
- 1974.1월 한국 측이 이란 측 대안을 수락하고 교섭종결

2. 협정 주요내용

- 문화, 교육, 과학사절의 상호방문 주선 노력
- 서적 등 출판물 교환, 문화프로 교환 및 방송 전시회 주선, 기자 상호교류
- 전문가, 교사 교환, 장학금 및 연구비 제공
- 체육사범 교환, 체육활동 및 경기 주선
- 문화단체 설립의 호혜적 설립 교류
-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 기간만료 6개월 전 종결의사 통고 없을시 계속 유효

3. 협정체결 의의

- 동 협정의 체결로 주요 산유국이며 친서방적인 이란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양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고양시키고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함.

4. 동 협정은 1974.7.16. 테헤란에서 현시학 주이란대사와 A. A. Khalatbary 이란 외상 간에 서명되고, 1975.3.20. 양국간 국내법적 절차완료를 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9호).

75-0769

한·파라과이 간의 문화협정, 1973.6.28. Asuncion에서 서명: 1975.7.31. 발효(조약 제541호)

생산연도	1963-1975
생 산 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6 / 9 / 1-294

한·파라과이 간의 문화협정을 1973.6.28.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63.8월 양국정부 간에 문화협정 체결합의를 본 이래 동 협정안에 대한 교섭이 완료되어 1967.9월 국무회의 심의를 필함.
   - 그후 파라과이 측은 국내사정을 이유로 서명 지연
   - 1973.6월 주아르헨티나대사의 겸임국 순방 시 양측 간에 협정문안 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양 체약국의 문화 및 지적교류 증진
   - 교수, 학자, 교사, 학생 및 기타 인사들의 상호교환 장려와 이들에 대한 장학금 및 연구비 제공조치 검토
   - 타방 체약국의 언어,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좌, 과정의 설치 연구
   - 한·파라과이 문화기관의 설립 및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 자국의 공보관 설치

3. 협정체결의 의의
   - 양국간 이해 및 우호관계를 보다 촉진하고 결속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4. 동 협정은 1973.6.28.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와 Pastor 파라과이 외상 간에 서명되고 1975.7.31.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Pastor 파라과이 외상 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1호).

한·파나마 간의 문화협정, 1974.6.3. 서울에서 서명: 1975.1.17. 발효(조약 제524호)

생산연도	1965-1975
생 산 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6 / 10 / 1-203

한·파나마 간의 문화협정을 1974.6.3.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0.5.26. 주멕시코대사는 한국 측 초안을 파나마 측에 제시
- 1970.11.2. 파나마 측 수정안에 대한 한국 측 검토
- 1970.11.10. 한국 측 초안 철회 및 신 초안 제시
- 1972.6.5. 파나마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한 동의 표시

2. 협정 주요내용

- 문화,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의 상호교류 증진(제1조)
- 자국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상대국 언어, 문화, 예술, 역사에 관한 과정, 강사 등 설치 장려(제2조)
- 학위, 자격 등 상호인정 방안 검토(제3조)
-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 내 설치시 편의제공(제4조)
-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간 협의(제5조)
-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종료를 상호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제7조)

3. 동 협정은 1973.5.2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6.3.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스와레스 전 주한 파나마대사 간에 서명되고 1974.12.18. 양국이 상호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1975.1.17.자로 발효됨(조약 제524호).

75-0771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문화협정, 1975.4.19. Jeddah에서 서명: 1975.8.4. 발효(조약 제540호)

생산연도	1969-1975
생 산 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6 / 11 / 1-189

한·사우디 간의 문화협정을 1975.4.19.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67.2.17. 주터키대사는 한국 측 초안을 겸임국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제시
- 1969.3.6.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측 초안에 대한 대안제시
- 1969~74년 양측 간에 수정안을 놓고 교섭 계속

2. 협정 주요내용

- 문화, 과학, 예술 및 기술분야의 관계개선(전문)
- 상기 분야의 발전촉진(제1조)
  - 과학자, 기술자, 교사, 언론인, 의사 및 학생의 교환과 활동 촉진
  - 문학 및 문화작품 번역 장려
  - 교육문서, 정기 소책자, 라디오, TV 프로 및 홍보물 교환 등
- 문학, 역사 강좌 등의 설치 및 세미나 개최 가능성 검토(제2조)
- 교육증명서 인정문제 검토(제3조)
- 협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제4조)
- 국내절차완료 통고 30일 후 발효(제5조)

3. 동 협정은 1975.1.1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4.19. 제다에서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와 마수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1975.7.5.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 완료를 상호통보함으로써 1975.8.4. 발효됨(조약 제540호).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1975.10.31. 서울에서 서명: 1975.11.14. 발효(조약 제550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6 / 12 / 1-316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안전조치협정을 1975.10.31. 체결함.

1.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의 안전조치협정 체결경위

- 1975.5.22.~23. 안전조치에 관한 한·프랑스·IAEA 간 3자협정 교섭 및 서명(비엔나)
- 1975.5.26.~27. 한·IAEA 양자협정 교섭
- 1975.5.29. IAEA는 교섭결과를 반영한 협정안 제시
- 1975.8.12. IAEA 협정안 수락

2. 협정 주요내용

-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의 전용방지 목적(제1조, 제2조, 제28조)
-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 기구의 활동과 국내안전조치 체제 활동 간의 불필요한 중복방지(제7조, 제31조)
  - 상업 및 산업상의 비밀보호(제5조)
- 안전조치의 적용 요령
  - 핵연료 주기 단계에 대한 중점적 검증조치 적용(제6조)
  - 핵물질에 대한 개량방식 위주로 하되, 격납 및 감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제29조)
  - 핵물질의 반입 반출을 규제하는 물질수지 구역의 설정(제32조)
  - 핵물질에 대한 재고 목록의 작성(제41조)
- 안전조치의 대상
  - 물질 및 시설(제98조), 적용 시발점(제34조)
- 사찰제도
  - 수시, 일반 및 특별사찰(제71조, 제72조, 제73조)
  - 사찰의 범위 및 출입구역(제74조, 제75조, 제76조)

3. 동 협정은 1975.10.2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0.31. 서울에서 노신영 외무부장관직무대리와 Hellmut Glubrecht IAEA 사무차장 간 서명되고, 1975.11.14. 발효됨(조약 제550호).

75-0773

IAEA(국제원자력기구)·한·프랑스 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1975.9.22. 비엔나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47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6 / 13 / 1-359

IAEA(국제원자력기구)·한국·프랑스 간의 3자 안전조치협정을 1975.9.22.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4.10.19. 한·프랑스 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75.3.13. 한·프랑스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원자력 협력사업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한·프랑스·IAEA 간 협정 체결을 IAEA에 제의
- 1975.3.24. IAEA사무총장은 협정 체결 요청을 수락하고 3자 협정안을 제시
- 1975.5.26. 비엔나에서 가서명

2. 협정 주요내용

- 협정당사자의 의무
  - 한국 정부: 핵무기,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 및 여타의 군사적 목적에 불사용(제2절)
  - 프랑스 정부: 한국에서 생산되고 프랑스에 재반입된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불사용(제3절)
  - IAEA: 양국정부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의 적용(제4절)
- 협정상 품목의 상호 또는 제3국 이전에 관해 IAEA에 통보(제6절)
- 양국의 핵물질 핵시설 관련 재고목록의 작성 및 유지, 변동 상황을 IAEA에 통보(제7~16절)

3. 동 협정은 1975.8.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9.22. 비엔나에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와 프랑스 정부대표인 Bertrand Goldschmidt IAEA이사와 Eklund Sigvard IAEA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7호).

[1974년도] 한·미국 간의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정 제8조 C항의 해석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7 / 1 / 1-68

한·미국 간의 원자력 민간이용협정 제8조 C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1. 제8조 C항 해석 관련 경위

- 1975.6.10. 주한 미국대사관은 비망록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 요청
- 1975.6.26. 외무부 경제차관보 주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1975.7.19. 미국 측 해석 수락 건의 및 재가
- 1975.7.21. 미국 측에 한국입장 통보

2. 협정 제8조 C항에 대한 미국 측 해석의 요지

- 특수 핵물질의 재처리 또는 조사 핵연료의 내용 또는 형태의 변경을 위한 제1단계 선행조건으로서 동 협정 제11조(미국의 안전조치권)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정부의 공동결정이 필요
- 동 공동결정이 내려질 경우, 동 재처리 또는 변경의 제2단계 선행조건으로서 동 재처리 대상 시설에 관해 양국정부가 합의해야 함.

3. 한국 정부 입장 요지

- 미국 측 해석을 수락
- 다만, 체결교섭 중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체제의 포괄적 안전조치의 유효성 강조 및 재처리 시설에 대한 비용의 경제적 요소 등 고려 희망

75-0775

한·그리스 간의 발명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72.7.15. 및 10.25. 서울에서 각서교환: 1973.1.25. 발효(조약 제458호)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조약/통상2
MF번호	J-84 / 9 / 1-124

한·그리스 간의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협정을 1972.10.25. 체결함.

1. 협정체결 경위

- 1971.12.4. 그리스 측은 주일본 그리스대사관을 통하여 한·그리스 양국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의
- 1972.2.11. 한국 측은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 이외에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상호보호를 포함하는 대안을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그리스 측에 제의
- 이에 대하여 그리스 측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에 관해 자국의 현 공업소유권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다시 제의
- 1972.7.15. 그리스 측과 최종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발명특허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해 상호 내국민 대우 부여
- 상기 보호를 위해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체약국의 국내법규 준수
- 회답 각서 후 3개월 경과일자에 발효

3. 협정체결 의의

- 양 체약 당사국 국민은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교류는 확대될 것임.

4. 본 협정은 1972.10.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7.15. Chrysanthopoulos 주한 그리스대사(일본 상주)의 그리스 측 제안각서에 대하여 1972.10.25.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회답각서로 체결되고, 1973.1.25.자로 발효됨(조약 제458호).

한·스페인 간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각서교환, 1975.7.31. 서울에서 각서교환: 1975.8.15. 발효(조약 제542호)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통상2/조약
MF번호 J-97 / 2 / 1-145

한·스페인 간의 공업소유권 각서교환을 1975.7.31. 체결함.

1. 체결 경위

- 1972.1월 스페인 측은 한국과의 공업소유권협정 체결의사를 전달
- 1974.3월 스페인 측은 협정초안 제시
- 1974년중 양측은 대안을 놓고 교섭계속
- 1975.2.21. 스페인 각의 승인
- 1975.3월 스페인 측은 한국 최종안에 동의 표시

2. 주요 내용

- 체약국 영역에서 공업소유권에 관해 상호 내국민 대우 부여
- 공업소유권 및 그 우선권을 출원한 자연인과 법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
- 보호하는 국가의 관계법령 준수 의무
- 협정의 종료의사 통보 6개월 후 종료

3. 체결 의의

- 한국 국민의 공업소유권을 스페인에서 보호받고 또한 한국에서 스페인 국민의 공업소유권을 보호하게 되어 한국과 스페인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증진될 것임.

4. 동 협정은 1975.7.31.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호세 엠 아구아도 주한 스페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5.7.31. 잠정발효 이후 1975.8.15.부터 정식으로 발효됨 (조약 제542호).

75-0777

[평화식량법에 의한] 한·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협정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J-97 / 3 / 1-13

1973년도 한·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협정 제3~4차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내용임.

1. 제3차 개정

- 1975.2.26. 서울에서 각서교환 및 발효
- 1975.3.7. 외무부는 협정개정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구매승인서의 조속 발급교섭을 지시

2. 제4차 개정

- 1975.3.13. 서울에서 각서교환 및 발효
- 1975.3.14. 경제기획원은 협정 개정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구매 승인서의 조속한 발급협조를 요청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정부의 대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08-47 / 1 / 1-50

일본·중국(구 중공) 간 어업협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사항임.

1. 주요 내용

- 중국의 해양관할권과 일본·중국 간 민간어업협정
- 정부간 어업협정의 구조와 내용
  - 협정체결 경위, 협정의 구성, 협정수역 및 군사수역
  - 협정수역내의 규제방식, 협정의 이행, 긴급피난
  - 공동위원회, 발효 및 유효기간
- 협정에 대한 평가
  - 모택동 라인의 합법화
  - 규제수역의 공해로서의 성질 약화
  - 저인망 제1보호구와 평화선의 중복
  - 경제수역의 설정에 대비한 포석
  - 군사수역의 사실상 인정
  - 제3국에 대한 효과

2. 정부 대책

- 비동맹 회의를 고려한 외무부 성명 발표(1975.8.30.경)
- 일본 측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시
  - 외교경로를 통한 유감 표시
  - 제10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1975.8월)에서의 문제 제기
- 관계부처에 의한 조치사항 검토
  - 어민에 대한 행정조치
  - 군사수역의 연구와 조치강구 등

75-0779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전2권 (V.1 협정 체결)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조약/동북아2
MF번호	J-97 / 4 / 1-195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을 1975.8.15. 체결함.

1. 협정체결 경위

- 1974.4.23. 일본·중국 어업전문가회의에서 정부간 어업협정 체결교섭 합의
- 1974.5.24. 어업협정 교섭 제1차 회담(북경)
- 1975.3.1. 어업협정 교섭 제2차 회담(동경)
- 1975.5.20. 어업협정 교섭 제3차 회담(북경)
- 1975.8.15. 어업협정 서명

2. 협정 주요내용

- 어업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및 조업질서의 유지 목적 표시(전문)
-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제2조)
- 안전 항행 및 조업, 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한 조치(제4조)
- 해난 기타 긴급사태에 대한 원조 및 보호의 상호부여(제5조)
- 일본·중국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제6조)

3. 본 협정은 1975.8.5. 북경에서 야나가야 일본대사관 공사와 중국 농림부 수산국 부국장 간 가조인되었으며 국내절차를 거쳐 1975.8.15. 동경에서 미야자와 일본 외상과 주일본 중국대사 간에 정식으로 서명되고 1975.12.22. 발효됨.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전2권 (V.2 정부대책 및 조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조약/동북아2
MF번호 J-97 / 5 / 1-258

일본과 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체결에 대한 정부대책 및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대통령 특보 주재로 정부대책회의(1975.8.23.)

- 외무부 성명 발표
- 일본 측에 대해 한국과의 사전협의 부재에 대한 유감 표시
- 관계부처 차원의 대책 강구: 어민에 대한 행정지도 등

2. 정부대책 건의 및 대통령 재가

- 외무부 성명 발표 및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표명
- 어민에 대한 행정지도 등 대내적 조치

3. 외무부 성명 발표(1975.9.2.)

- 한국의 관심 표명 및 이해당사국에 대한 협의 없는 협정 체결에 대해 유감 표시
- 황해 및 동지나해에서 한국의 전통적 권리 재확인
- 어업자원의 관리 및 보존, 안전조업 등 관련 협의 용의표명

4. 관계부처 통보 및 협조요청

- 외무부는 상기 조치에 대해 수산청, 내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
- 수산청 주관으로 1975.12.19.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75-0781

한·월남 간의 농업기술협력 약정의 수정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7 / 6 / 1-20

1973.3.24. 체결된 한·월남 간의 농업기술협력약정에 대한 수정을 양국간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함.

1. 주월남대사는 1974.12월 사이공 개최 제6차 양국 각료회담 시 합의한 주월 한국농업사절단의 파견기간 연장을 위해 1973.3.24. 서명된 농업기술협력약정의 수정을 건의함.

2. 주월남대사는 Dong Nai 유역 종합개발조사 및 Dai Dien 지구 수리개발 타당성조사를 위한 약정의 체결을 1975.3.4. 외무부에 건의함.

3. 주월남대사는 농업기술협력약정 수정을 위한 각서를 1975.3.22. 월남 외무부에 송부함.

4. 월남 외상은 1975.3.26. 농업기술협력약정 수정을 위한 회답각서를 송부함.

한·호주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전2권 (V.1 1974) 1975.6.1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36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통상1
MF번호	J-97 / 7 / 1-54

1974~76년 중 한·호주 간의 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개정 추진경위

- 1973.9.17.~18.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호주 무역협정 개정에 합의
- 1974.1.25. 외무부는 무역협정을 "한·호 통상증진과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호주 측에 제의하도록 주호주대사에게 훈령

2. 한국 측 개정안 이유 및 요지

- 개정 이유
  - 양국 공히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원국으로 무역증진은 동 협정에 상세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간 협정에서는 간략히 조정
- 요지
  - 자원 장기확보, 경제 및 기술협력 조항의 신설에 따른 제목의 변경
  - 장기 자원공급체제 지원 조항
  - 경제협력 증진 및 기술협력 조항

75-0783

한·호주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전2권 (V.2 1975-76) 1975.6.17.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536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조약/통상1
MF번호	J-97 / 8 / 1-294

한·호주 간의 무역협정 개정을 1975.6.17. 체결함.

1. 협정의 체결경위

- 1975.3.10. 주호주대사는 한국 측 초안에 대한 호주 측 대안의 검토를 요청
- 1975.4.15. 호주 통산부 부차관보는 투자, 선박기항 등 관련 최혜국 대우 문제에 대한 5월중 실무회의 서울개최를 제의
- 1975.5.12.~15. 협정개정 실무회의 개최(서울) 및 문안합의

2. 개정 한·호주 무역협정 주요내용

- 협정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 주요 내용
  - 양국 민간상사간의 상담 촉진과 산품의 공급 및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장려(제3조)
  - 양국기업의 상호협조분야의 개척장려 및 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해 규정에 따른 대우부여(제5조)
  - 공동무역위원회를 설치, 협정상의 문제검토 및 양국기업 간의 협력분야를 발견(제8조)

3. 동 협정은 1975.6.17.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프랑크 크린 호주 국제무역부장관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 발효됨(조약 제536호).

한·오스트리아 간의 원산지증명 발급협정, 1975.3.14. 비엔나에서 서명: 발효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J-97 / 9 / 1-95

한·오스트리아 간의 원산지증명 발급협정을 1975.3.14.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4.10.30. 외무부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원산지증명 발급협정 체결 제안을 상공부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
- 1974.12.10. 외무부는 오스트리아안을 수용, 체결하도록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지시
- 1975.1.22. 오스트리아 측은 협정 최종안을 제시

2. 협정의 주 내용

- 한국 통상산업부는 원산지 및 수공예품증명 발급기관을 인증(제1조)
- 원산지 및 수공예품 발급 양식과 내용은 일반특혜제도에 따른 양식 A의 요건을 충족(제2조)
- 통상산업부는 담당기관의 변경 관련 오스트리아 재무부에 통보(제3조)
- 통상산업부는 증명서의 확인에 있어 오스트리아 당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제4조)

3. 동 협정은 1975.3.14. 비엔나에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와 Rudolf Willenpart 오스트리아 통산성 및 Franz Manhart 재무성 대표 간에 서명, 발효됨.

75-0785

한·코스타리카 간의 무역협정, 1974.3.15. 동경에서 서명: 1975.6.27. 발효(조약 제539호)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조약/통상2
MF번호	J-97 / 10 / 1-229

한·코스타리카 간의 무역협정을 1975.3.15.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3.5.14.~18. 주유엔 코스타리카대사 방한 시 한국 측은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
- 1973.6.23. 외무부는 우리 측 협정안을 주일본대사에게 송부, 주일본 코스타리카대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 1973.9.21. 외무부는 코스타리카 측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
- 1973.11.30. 양국정부 간 문안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전문과 본문 7개조로 구성
- 양국정부는 교역증진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함.(제1조)
- 수출입, 관세, 지불수단 등에서의 최혜국 대우 부여(제2조)
- 지불수단은 체약국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달러화 또는 기타 태환성통화로 행함.(제3조)
- 국가안보, 공중보건, 동식물병 예방을 위한 제한 및 금지 가능(제4조)
- 경제협력증진(제5조)

3. 동 협정은 1974.3.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3.15. 김영선 주일본대사와 탁산 주일본 코스타리카대사대리(주한 겸임) 간에 서명되고 1974.6.27.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39호).

[1971.1.1.자] 한·EC(구주공동체) 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의 연장교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J-97 / 11 / 1-21

1975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면직물 교역협정 연장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5.1.8. 주벨기에 대사에게 1974.12.31.까지 잠정 연장된 한·EC 간의 면직물 교역협정과 관련하여 1975.1.1. 이후 처리에 관한 EC 측의 입장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2. 주벨기에대사는 1975.1.14. EC 측이 MFA(다자간 섬유협정) 교섭협상을 3월에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잠정적으로 1974년도 수준의 6% 증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할 것임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75.2.14. EC 측이 3.31.까지 협정의 잠정 연장을 제의함을 상공부에 통보하고 3개월간 협정의 연장에 합의하도록 주벨기에대사에게 지시하였다면서 이에 따른 선적집행을 요망함.

4. 외무부는 1975.4.23. MFA 신협정 체결시까지 현재의 면직물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는 EC 공한을 상공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함.

5. 상공부는 1975.5.7. 협정 연장시에는 MFA 제2조 2항(ii)규정에 따라 양측간 협의 후 TSB(직물감독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한국입장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회보함.

6. 주EC대표부는 1975.6.5. EC 측이 3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한 면직물 협정을 9월말까지 재연장할 것을 제의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을 요청함.

7. 외무부는 1975.6.13. 주벨기에대사에게 EC 측이 언급한 연증가율 6% 확보선에서 재연장을 수락하도록 지시함.

75-0787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V.1 제1차 체결교섭회담. Washington D.C., 1974.9.12.-20.) 1975.6.26.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1974.10.1. 소급발효(조약 제538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2/조약
MF번호	J-97 / 12 / 1-210

한·미국 간의 섬유류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이 1974.9.12.~20. 워싱턴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74.7.4. 외무부는 미국 측이 9.3. 한·미국 간 섬유류 쌍무교섭을 워싱턴에서의 개최하기를 제의 함에 따라 이를 상공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
- 1974.8.31. 미국 측은 1974.9.12.~20. 회담 개최를 희망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휘 경제차관보
- 미국 측: Anthony Jurich 백악관 국제경제정책이사회 위원

3. 토의 결과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섬유류 다자협정 제4조에 의거,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Package Deal로 교섭추진
- 잠정합의: 기존 2개 협정을 1개 협정으로 통합 및 3개 그룹으로 분류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V.2 제1차 체결교섭회담 및 추가교섭회담, 1974.11.4.-9. 및 1975.1-3) 1975.6.26.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1974.10.1. 소급발효(조약 제538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2/조약
MF번호 J-97 / 13 / 1-287

한·미국 간의 섬유류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이 1974.11.4.~9.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휘 경제차관보
- 미국 측: Anthony Jurich 백악관 국제경제이사회 위원

2. 개최 경위

- 1974.11월 교섭 결과, 8개 관심품목 등 package deal을 통한 224항에 대한 합의
- 1974.11.18. 미국 국무부 과장 및 상무부 과장을 급거 파한, CAT224의 기재착오를 주장하고 수정을 요청
- 1975.1.13. 미국 측 수석대표의 방한, 교섭회담 개최. 이어서 2차례 추가회담 개최

3. 토의 내용

- CAT224-suit의 쿼터 수준을 10백만 평방야드로 하는 방안 등 협의

4. 추가 협의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5.2.28. 섬유류협정 미국 측 초안을 제시, 224항 관련 종전입장 포함
- 미국 측은 CAT224에 대한 우려표명

5. 토의 결과

- 기존 쌍무협정을 대체할 신규협정 체결 추진
- 양국간 면직물협정과 인조·모직물협정을 대체할 1개 협정의 체결 합의

75-0789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V.3 체결철) 1975.6.26.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1974.10.1. 소급발효(조약 제538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2/조약
MF번호	J-97 / 14 / 1-313

한·미국 간 섬유류협정을 1975.6.17. 체결함.

1. 추가 교섭경위(계속) 및 합의

- 1975.4.8. 미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 측 대안을 주미국대사관 공사에게 제시
- 1975.4.10. 외무부는 Cat224 문제 관련 미국 측 최종안을 상공부에 통보, 의견을 요청
- 1975.4.11. 상공부는 Addendum 3항의 초과선적분 처리문제 시행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 측 안 수락을 회신
- 1975.4.25. 미 국무부는 Cat219 및 221 초과선적분 구제 관련 미국 측 서한에 서명,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 1975.5.1. 외무부는 Cat224 문제 관련 미국 측 안에 대해 일부 조정 조건으로 수락함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 1975.5.15. Cat 64 및 208 관련 미국 측 입장을 통보

2. 협정의 주요내용

-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제4조에 따라 한·미간의 직물류교역 쿼터협정을 체결, 기존의 2개 협정(1971.12.30.자 면직물협정 및 1972.1.4.자 모직물·인조섬유직물협정)을 대체함.
- 적용기간은 1974.10.1.부터 소급하여 1977.9.30.까지 3년간으로 함.
- 대미 직물류 수입쿼터 내용
  - 제1차 협정 연도(1974.10.1.~75.9.30.)
    (가) 총량한도: 504,718,159평방야드
    (나) 그룹량한도: 총량한도내에서 제품류의 특정한도량을 구분하여 책정
  - 제2차 협정 연도(1975.10.1.~76.9.30.): 대미수출의 총량한도를 제1차 협정연도의 총량대비 6.25%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제3차 협정 연도(1976.10.1.~77.9.30.): 대미수출의 총량한도를 제2차 협정연도의 총량대비 6.75%까지 증가할 수 있음.
  - 협정연도 간의 이월 및 조상사용을 일정한도까지 허용하고 있음.

3. 동 협정은 1975.6.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6.26. 워싱턴에서 함병춘 주미국대사와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1974.10.1.부터 소급하여 발효됨(조약 제538호).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V.4 참고자료) 1975.6.26.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1974.10.1. 소급발효(조약 제538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2/조약
MF번호 J-98 / 1 / 1-162

한·미국 간의 섬유류협정 체결을 위한 참고자료임.

1. 미국과 제3국간 직물류협정

- 미국과 홍콩 간 직물류협정
  - 협정기간: 1974.10.1.~77.9.30.
  - 제1차 협정연도 규제수준: 835,287,133평방야드
  - 연 증가율: 전녀도 한도량의 6.25%
  - 이월 및 조상사용: 11%(그중 조상사용 6%)
- 미국과 대만 간 협정
  - 1974.6.27. 회담 종료
  - 성장률: 제1차 연도(0%), 제2차 연도(6.25%), 제3차 연도(6.25%)
  - 융통성: 홍콩과 동일 패턴
- 미국과 일본 간 협정
  - 신합정기간: 1974.10.1.~77.12.31.
  - 대상섬유: 면직물류, 이조섬유직물류, 기타 3개 그룹으로 구분
  - 연 증가율: 제1차 연도(5%), 제2차 연도(6%), 제3차 연도(6%)
- 미국과 중국(구 중공) 간 협정 교섭
  - 1975.9월 워싱턴에서 양국간 방직물 무역문제회담 개최 예정
  - 2개 협정(중·미 간 면방직물무역협정, 비면방직물무역협정)의 통합화 추진

2. 미국 의류업계 동향

- 1974.6.25.자 Journal of Commerce는 한국 등 극동 4개국의 대미의류수출 동향 보도
- 1974.6.27. 미국 소비자조합은 직물류협정집행위를 상대로 소송 제기
- 1974.11.1.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의류수입 증가 항의 시위 예정 보도
- 1974.11.11. 미국 의류노조의 시위진행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

3. 통계자료

- 1973.10~74.4월 미국의 일본, 홍콩, 대만으로부터의 인, 모, 면직물 수입현황
- 극동 4개국의 모 및 인조섬유별 1973.10~74.9월 협정연도의 쿼터 소진 실적
- 미국 상무성 발행 Commerce News 게재 Textile Import Data for July

75-0791

한·독일 간의 기술원조협정의 해석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2 / 1-28

1975년 중 한·독일 간의 기술원조협정 해석 관련사항임.

1. 경기도는 한독 실업학교의 일부인 직업보도부 운영 관련, 한·독일 정부간 기술원조협정 제10조의 재정적 부과금 면제의 해석에 관해 1975.8.26. 외무부에 질의함.

2. 외무부는 동 협정이 1965.3.31. 종료되고 양국간 이견으로 개정되지 못하여 구협정을 신협정 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데 12.15. 합의한 바 있다고 하면서 학교의 설립 근거 및 변천 경위, 정부의 지원실적, 독일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1975.9.19. 문교부 및 노동청에 문의함.

3. 문교부는 1975.10.30. 한독실업학교의 설립 근거 및 변천 경위, 인하재단과의 관계, 동교의 학재, 규모와 교직자 및 학생현황, 독일 정부 지원실적 등을 포함하여 외무부에 회신함.

한·독일 간의 독일내 한국인 병원요원의 노동 및 생활에 대비한 준비에 관한 협정 체결추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3 / 1-27

1975년 중 간호원 독일파견 협약과 관련된 사항임.

1. 한국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 간의 협약에 의해 독일에 간호원을 파견함. 동 협약은 1971.2월 체결, 1975.1.1. 개정된 바 있음.
   - 1974년말 현재 8,838명의 간호원이 독일에서 근무

2. 독일 정부는 1975.2.10.자 주한 독일대사관 공한을 통해 파독 간호원의 사전교육에 관한 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체결할 것을 제의해 옴.

3. 외무부는 1975.2.13. 동 협정한이 기존협약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며 어학교육비 한국부담을 포함하고 있는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양정부간 협정 체결이 요망된다면 민간협약과 중복되지 않고 한국의 재정적부담을 명시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인 규정만을 포함한 간략한 교환공문 형식의 협정이 합당하다고 주한 독일대사관에 회신함.

75-0793

한·독일 간의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 수정 약정 체결, 1973.3.27.

생산연도	1972-1973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98 / 4 / 1-84

1972~73년 중 한·독일 간의 부산직업훈련소 약정 개정과 관련한 사항임.

1. 경위

- 1972.11.10. 독일 정부는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한·독일 부산직업훈련소 약정의 수정을 제의하여 옴.
- 외무부는 독일 측 수정안을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처 및 노동청에 통보하고 이를 검토함.
- 과학기술처는 1972.12.8. 노동청의 의견을 종합, 한국 측 대안을 제시함.
- 외무부는 한국 측 대안을 작성하여 독일 측에 제시함.
- 1973.1.15. 독일 정부는 한국 측 대안에 대해 수락통보함.

2. 1966.9.28. 서명된 한·독일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에 의거 1970.5.16. 체결된 한·독일 간의 부산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약정 제13조 1항에 따라 동 약정의 수정을 위한 약정이 1973.3.27. 외무부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됨.

한·독일 간의 전화시설 유지보수 용역사업 연장 약정, 1975.5.6. 각서교환: 발효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J-98 / 5 / 1-74

1974~76년 중 한·독일 간의 전화시설 유지보수 용역사업 연장 약정 관련사항임.

1. 연장약정 경위

- 1974.5.28. ~6.13. 서독 기술협력국장 방한, 한국 측과 기술협력문제 협의
- 1974.6.17. 과학기술처는 전화시설 용역사업이 1974년도 한·독일 경제회담 시 의제에 포함되도록 외무부에 요청
- 1974.10.12. 과기처는 체신부의 의견에 따라 전문가 구성의 변경을 외무부에 요청
- 1974.12.31. 체신부는 독일 자문단 기술지원의 1년 추가연장에 합의한 바 있으나 공식회신을 대기중이라고 외무부에 통보
- 1975.1.6. 외무부는 주독일대사에게 독일 측의 공식회신을 받도록 지시

2. 약정 주요내용

- 독일 정부는 자체 비용으로 6명의 전기통신전문가 지원을 1975.12.31.까지 연장
- 한국 정부는 전문가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원과 기록 및 서류를 제공

3. 약정체결 의의

- 독일전문가에 의한 시내 회선망 및 장거리 회선망 계획의 연구 및 지도를 통하여 통신망 구성에 적정화를 기함.

4. 동 사업을 위한 독일전문가들의 용역기간 1년 연장에 관한 약정이 1975.4.4. 독일 측과의 각서 교환에 의거, 1975.5.6. 발효됨.

75-0795

한·독일 간의 주물기술센타 설립지원에 관한 약정, 1975.6.13. 각서교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6 / 1-60

한·독일 간의 주물기술센터 설립지원 약정을 1975.6.13. 체결함.

1. 약정 체결경위

- 1973.10.23.~30. 서울 개최 한·독일 경제회담에서 독일 측은 주물기술센터 지원을 약속
- 1975.4.3. 주한 독일대사관은 각서교환안을 제시

2. 약정 주요내용

- 독일 정부는 주물기술센터의 설립 관련 한국 정부를 지원하며 2인의 기술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고 급료를 지급
- 독일 정부는 운임과 보험료 포함 1.13백만 마르크 한도내의 주물 기자재 공급
- 독일 정부는 6명의 한국 주물기술전문가 훈련 자금 제공
- 한국 정부는 주물연합체 통합촉진조치를 취하고 주물기술센터의 잔여 자본비와 경상비의 재정 지원을 보장

3. 동 약정은 1975.6.13.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Karl Leuteritz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됨.

한·이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 1975.7.8. Teheran에서 서명: 1975.9.27. 발효(조약 제548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98 / 7 / 1-172

한·이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의정서를 1975.7.8. 체결함.

1. 체결 경위

- 1974.10.20. 외무부는 이란과의 협정 체결 가능성 타진교섭을 주이란대사에게 지시
- 1974.12.24. 주이란대사의 건의에 따라 한국 측 문안 제시
- 1975.1.20. 이란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1975.5.3. 양측 문안합의

2. 의정서 주요내용

- 전문과 9개조의 본문으로 구성
-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기술협력의 증진
- 자연자원, 하부산업구조, 농업 및 어업의 개발이용 등 제 분야에서의 협력
- 기술훈련과 전문가 및 정보교환을 통한 기술협력
- 경제기술협력 공동각료위원회 설치

3. 동 의정서는 1975.7.8. 테헤란에서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후샹 안사리 이란 경제재무부장관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고, 1975.9.27.자로 발효됨(조약 제548호).

75-0797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1975.8.29. 서울에서 각서교환 (조약 제545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경제조사
MF번호	J-98 / 8 / 1-127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실험용 기재지원 약정을 1975.8.29. 체결함.

1. 체결 경위

- 1972.4.12.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서울공대 실험용 기재지원을 요청
- 1974.12.27. 제1차 연도 지원(5억 엔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체결
- 1975.4.25. 일본 측은 제2차 연도 사업을 위한 5억 엔 지원 통보
- 1975.7.1. 일본 측은 제2차 연도의 사업지원을 위한 약정 체결 제의
- 1975.7.2. 외무부는 재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조회

2. 약정 주요내용

- 일본 측은 5억 엔 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
- 무상원조는 일본산 기재의 구입 및 소송비에 충당
- 기재의 구입을 위한 별도의 구매계약서 체결
- 한국 측은 기재의 수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3. 동 약정은 1975.8.29. 서울에서 노신영 외무부장관직무대리와 니시야마 아키라 주한 일본대사 간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5호).

한·르완다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경제협력
MF번호 J-98 / 9 / 1-25

한·르완다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5.3.25. 르완다와의 경제기술협력협정안 검토
- 1975.4월 외무부차관의 르완다 방문 시 협정안 제시
- 이후 공관철수로 교착상태

2. 동 협정 한국 측 제시 문안 주요내용

- 양국간의 우호 및 협력증진 도모(전문)
- 양국간의 투자, 자본, 기술협력 등을 통한 협력조치 강구 및 필요시 특정협정 체결(제1조)
- 양국간의 투자장려 및 투자보호(제2조)
- 기술자 파견 등 기술협력증진(제3조)
- 공동위원회 설치(제4조)

75-0799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1974.7.4. 서울에서 서명: 1975.1.9. 발효(조약 제527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10 / 1-220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을 1974.7.4. 체결함.

1. 협정체결 경위

- 1974.2.13. 사우디아라비아 국무상 겸 기획장관 방한 시 한국 측 협정안 제시
- 1974.4.25. 사우디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시
- 1974.4.28.~5.4. 장예준 상공부장관 사우디 방문 시 제2차 수정안 제시
- 1974.5.27. 한국 측은 사우디 제2차 수정안에 대한 동의표시

2. 주요 내용

- 전문과 본문 7개조로 구성
-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 증진, 경제발전 촉진 및 경제협력 달성(전문)
-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촉진(제1조)
- 합작사업 등을 통한 경제 제 분야의 협력조치 강구(제2조)
- 합작, 혼성기업 및 회사의 설립에 중점을 둔 양국 국민 간의 경제기술협력 촉진(제3조)
- 양국간의 자본투자 촉진(제4조)
- 양국간의 기술협력 촉진(제5조)
- 격년제 합동위원회 설치(제6조)

3. 동 협정은 1974.6.2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7.4.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사까프 사우디아라비아 외상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고, 1975.1.9.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됨(조약 제527호).

한·영국 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1975.12.8. 서울에서 각서교환: 1975.1.13. 소급발효(조약 제551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11 / 1-79

한·영국 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 연장협정을 1975.12.8.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1.1.12. 각서교환으로 체결
- 1972.3.21. 협정 개정
- 1975.1.12. 유효기간 만료
- 1975.1.27. 한국 측은 영국 측에 협정 연장(4년간)을 제의
- 1975.4.12. 영국 측은 한국 측의 협정 연장 제의에 동의

2. 연장협정 체결 의의

- 울산공과대학과 병설전문학교는 1971.1.21. 체결된 동 협정에 의거하여 영국 측으로부터 그동안 약 28만 파운드 상당의 실험실습용 기자재를 공급받음.
- 동 협정의 유효기간이 1975.1.12. 만료되어 동 협정의 연장을 통하여 협정에 명시된 지원액 중 잔여분 약 5만 파운드 상당의 기자재를 계속 지원받고 양국 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추가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

3. 주요 골자

- 동 연장협정은 1975.1.13.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유효함.

4. 동 연장협정은 1975.12.8.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스터디 주한 영국대사대리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고, 1975.1.13.부터 소급하여 발효됨(조약 제551호).

75-0801

한·월남 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1975.2.7. 및 3.1. Saigon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28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6-104 / 9 / 1-128

한·월남 간의 기술지원 약정을 1975.3.1. 체결함.

1. 체결교섭 경위

- 1973.10.5.~6. 제5차 한·월남 경제각료회담시 대월남 기술지원에 합의
- 1974.5.3. 상기 합의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대월남 경제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한국 측 파월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함.
- 1974.6.10.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측 안을 검토협의
- 1974.8.14. 한국 측 안을 월남 측에 제시
- 1974.10.15. 월남 측은 상수도지원사업을 설계변경하여 동 약정안의 수정을 제의
- 1974.11.29.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월남 측의 수정안 검토
- 1974.12.24. 약정안에 대해 한·월남 간 최종합의

2. 체결 의의

- 동 협정은 1973.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월남 경제각료회담 합의사항의 일환인 한·월남 경제기술 협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월남의 직업훈련센타 건립, 수리시설사업 및 급수시설사업을 위해 한국 측이 월남 정부에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한·월남 양국간의 기존우호, 협력관계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약정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월남 직업훈련센타 건립사업 40만 달러, 수리시설사업 20만 달러, 급수시설사업 1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함.
- 월남 정부는 상기 사업을 위한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장비 및 물자에 관하여 모든 수입세, 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함.
- 월남 정부는 상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전문가 및 기술자에 대하여 한·월남 기술협력협정 제3조에 규정된 면제와 필요한 지원을 함.

4. 동 약정은 1975.1.2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김용관 주월남대사와 Vuong Van Bac 월남 외상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5.3.1.자로 발효됨(조약 제528호).

한·북예멘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추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J-98 / 12 / 1-10

1975년 중 한·북예멘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상공부장관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1975.10.17.~21. 북예멘 방문시 과학기술협력협정안을 북예멘 정부에 제시하여 동 협정의 체결을 추진 하기로 함.

2. 북예멘 측에 제시할 협정안은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체결된 한·파라과이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75.7월 체결)과 그 내용이 동일함.

75-0803

각국의 국제기구 신규가입 및 한국과의 다자조약 관계 성립

생산연도	1956-1963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13 / 1-132

1956~63년 중 각국의 국제기구 신규가입 관련사항임.

1. 각국의 UPU(만국우편연합) 가입

- 미얀마(구 버마)(61.6월), 아일랜드(61.8월), 니제르(61.6월), 차드(61.6월), 세네갈(61.6월), 나이지리아(61.7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61.7월), 콩고(전불령)공화국(61.9월), 사이프러스(61.11월),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61.11월), 리히텐스타인(62.6월)

2.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신회원국 가입

- 이란(57.12월), 기니(59.11월)

3. 각국의 WMO(세계기상기구) 가입

- 모리셔스(58.11월), 온두라스(60.10월), 부르키나파소(구 오타볼타)(60.10월), 니제르(60.10월), 토고(60.10월), 코트디부아르(60.10월), 콩고(레오폴드빌)(60.11월), 말리(60.11월), 세네갈(60.11월), 콩고(브라자빌)(60.11월), 나이지리아(60.11월), 마다가스카르(60.12월), 코스타리카(60.12월), 카메룬(60.12월), 차드(61.2월), 베냉(구 다호메이)(61.4월), 콜롬비아(62.1월), 모리타니아(62.1월)

4. 기니, 알제리의 유네스코 가입

- 기니(59.11월), 알제리(62.10월)

1961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각국의 관행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14 / 1-28

1974~75년 중 외교관의 면세 관련사항임.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10월 주재국 내 외교관에 대한 세금부과에 관해 보고함.

- 오스트리아는 세제를 개편, 1973.1.1.부로 신규 부가치세를 도입함.
- 오스트리아 주재 외교단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외교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교섭하여 왔으나, 오스트리아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를 제외한 각 외교공관 및 소속직원에게 이를 계속 부과함.
- 동 외교단은 부가가치세 철폐를 관철하기 위한 추후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오스트리아 주재 각 공관에 통보함.

2. 주유엔대표부는 1975.2월 외교공관에 대한 각 국의 부동산세 면제실태를 수록한 유엔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 에콰도르, 가봉, 아이티, 교황청, 아이슬란드, 레소토, 모리셔스,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르완다, 예멘

75-0805

유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에 관한 회의. Vienna, 1975.2.4.-3.1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15 / 1-320

정부는 1975.2.4.~3.1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에 관한 회의에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81개국의 대표, 2개국의 옵서버 및 국제기구 대표

2. 동 회의는 1975.3.14. '보편적 성격을 띤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에 관한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Representation of States in their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Universal Character)'을 채택함.

3. 대표단의 평가 및 전망

- 동 회의에서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선진국가와 파견국인 개발도상국·공산권국가 간의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임.
- 동 협약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므로 개발도상국들의 비준으로 일단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선진국가는 동 협약이 파견국의 권익만 확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동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비록 비준 또는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핵심규정을 유보할 것임.
- 대부분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입장을 고려하면, 동 협약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2차. Geneva, 1975.2.3.-4.18.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8 / 16 / 1-150

1974~75년 중 제2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를 위한 비공식 준비회의 및 본회의가 개최됨.

1. 비공식 준비회의(1974.9.6.~9., 이탈리아 산레모)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황호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회의결과
  - 주한 월남대사관은 공산권국가들이 동 회의에 월남임시혁명정부 초청문제를 거론할 경우 한국정부가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반대해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주한 월남대사관에 제1차 회의 시와 마찬가지로 월남 측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통보함.

2. 본회의(1975.2.3.~4.18., 스위스 제네바)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회의 결과
  - 각 위원회는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의정서 초안(1,11) 중 약 70개 조항을 심의·채택
  - ICRC 의정서 초안(1,11) 중 토의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채택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제의 또는 수정제의는 1975.11월까지 제출
  - 제2차 재래식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는 ICRC 제의대로 1976.1~2월 개최
- 평가
  - 캐나다, 벨기에, 소련 등 선진국 대표들은 금번 회의에서 약 70개 조항이 심의·채택된 것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제3차 회의를 낙관한다고 언급

75-0807

ILO(국제노동기구) 북한 가입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J-98 / 17 / 1-13

1975년 중 북한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6.5.~2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총회 시 북한이 ILO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남북한 가입문제가 일괄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제네바대표부대사로 하여금 동 ILO 총회기간 중 북한의 동 기구 가입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지시함.

2. 상기 총회기간 중 북한의 ILO 가입신청은 없었음.

1929.10.12.자 Warsaw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항공법회의. Montreal, 1975.9.3.-2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국제기구
MF번호	J-98 / 18 / 1-373

정부는 1975.9.3.~25.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1929.10.12.자 Warsaw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항공법회의에 장만순 주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을 대표로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74.2월 제2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는 화물에 관한 새로운 의정서 초안 채택
- 1974.12월 ICAO 이사회는 1975.9월 몬트리올에서 전권대표회의 개최 결정

2. 회의 결과

- 화물의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과실책임 제도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의를 표함.
  - 서구 및 일부 아프리카국가들은 종전의 주관적 책임제도 존속을 주장
- 면책범위의 Defence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으나, 무과실책임 제도를 채택한 이상 범위를 확대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임.
- 기타 거증책임문제, 기여과실, 운송인의 책임한도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위가 작성한 초안이 모두 채택됨.

75-0809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1.7.14.

생산연도	1957-1971
생 산 과	조약/국제연합
MF번호	J-99 / 1 / 1-369

정부는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1971.7.14. 가입함.

1. 가입 경위

- 1970.6월 국무회의 심의
- 1970.12월 국회 비준동의
- 1971.4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한국이 동 협약 가입자격이 있음을 선언

2. 주요 골자

-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1년이내 체제하고 있는 자동차, 피견인차 및 운전자이며, 승객 휴대품 이외의 화물을 수송하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부속서 1,2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체약국은 국제교통에 허가된 자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수입관세와 수입세의 지불을 보증하는 공채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여사한 담보가 없을 경우, 체약국은 국제교통에 허가된 자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토지 및 신호기의 모양, 색깔 및 도안은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며, 그 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고 적소에 설치하여야 함.

3. 협약가입의 의의

- 본 협약은 육상도로를 통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발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육상도로를 통한 국제교류의 증대가 기대되며, 또한 국내도로교통의 발달에도 기여할 것임.

4. 동 협약은 1970.12.22.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971.6.14. 유엔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1971.7.14.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389호).

유네스코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검토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조약/국제기구
MF번호	J-99 / 2 / 1-78

정부는 1973~75년 중 유네스코협약 가입을 추진함.

1. 외무부는 유네스코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수입에 관한 협정' 가입을 검토하였으나, 1975.2월 관계부처(재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 협정 가입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함.

2. 관계부처 의견
   - 문교부, 문공부, 과기처, 법제처는 가입에 찬성
   - 재무부는 가입에 반대
     - 협정에 지정된 자료는 막대한 양이 수입되고 있으므로 한국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입에 반대
     - 다만, 특별한 경우 관세면제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75-0811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의정서 한국가입, 1975.8.8.

생산연도	1972-1977
생 산 과	조약/국제연합
MF번호	J-99 / 3 / 1-153

정부는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에 1975.5.5. 가입함.

1. 개정의 의의

- 동 협약 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불법거래와 마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의 강화 및 마약중독자의 예방, 치료, 갱생 및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되므로 마약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본 개정의정서를 수락함으로써 마약 밀수 및 불법거래방지와 마약중독자의 근절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주요 골자

- 국제마약통제국의 구성 및 기능의 강화
- 약품 견적의 구비요건 및 통제표 강화
- 아편 생산의 제한, 불법행위방지 등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
- 당사국의 사회정책적 조치 및 이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 마약범의 인도에 관한 규정
- 약품의 불법행위문제 대처를 위한 지역센터 설립협정 체결 촉진

3. 동 의정서는 1973.1.12.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973.1.25. 유엔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75.8.8.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01호).

각국의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가입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9 / 4 / 1-43

1975~76년 중 각국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 관련사항임.

1. 윌슨 영국 수상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5.2.17. 모스크바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

2. 이탈리아와 독일이 1975.5월 미국정부에 NPT 비준서를 기탁함.

75-0813

NPT(핵확산금지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1 1967-68.6)

생산연도	1967-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87 / 42 / 1-280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1968.7.1. NPT 서명식이 거행됨.
   - 경위
     - 1968.6.13. 유엔총회는 NPT안 지지 결의안 채택
     - 1968.6.17. 미국은 안보리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선언
     - 1968.6.19. 유엔안보리는 미국·영국·소련 3개국의 안전보장(소위 핵우산)결의안 채택

2.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한국이 NPT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래 이유로 쉽지가 않다고 설명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구 중공)이나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은 NPT의 권외에 있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에 노출되어 있음.
   - 분단국가로서 독일(서독)의 경우는 유엔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국과 비교될지 모르나 독일은 소련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련이 동 조약 및 핵우산선언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사정이 다름.

3. **주한 미국대사관은 핵공격으로부터의 한국 방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외무부에 전달함.**
   - 미국은 NPT 교섭 중 기존 상호안전보장조약상의 미국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NPT 서명 시 또다시 이를 천명할 것임. 한·미국 상호방위조약은 분명히 이에 해당하는 조약임.
   - NPT, 안보리의 안전보장결의(1968.6.19.) 및 이와 관련한 미국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상기 미국의 의무이행보장이 결코 약화되는 것은 아님.

NPT(핵확산금지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2 1968.7-12)

생산연도	1967-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87 / 43 / 1-221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김동조 주미국대사는 1968.7.1. 워싱턴에서 거행된 NPT 서명식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NPT에 서명함.
   - 56개국 대표 참석

2. 외무부 구아국은 NPT 가입에 따른 제 문제 해설서를 작성함.

3.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4차례 면담, NPT와 관련하여 한·미국 간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함.

75-0815

NPT(핵확산금지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3 1969-74)

생산연도	1967-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88 / 1 / 1-206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NPT는 1970.3.5.자로 발효됨.
   - 3개 기탁국(미국, 영국, 소련)을 포함한 43개국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요건이 충족됨.
   - 동 발효일에 3개 기탁국의 수도인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NPT 발효기념식이 개최됨.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핵보유국인 프랑스·중국(구 중공)·인도 등이 NPT에 가입할 의사가 없고, 일본·독일(서독)·이탈리아·이스라엘·이집트 등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조약 비준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함.
   - 한국은 1968.7.1. 동 조약에 서명한 이후 안보상의 이유로 비준을 보류하여 옴.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및 동 기구 주재 미국대표는 1972년 및 1974년 각각 한국의 동 조약 가입을 권유하였고, 1974년 영국은 NPT 운영검토회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가입 의사를 문의함.
   - 1974.4월 현재 96개국이 서명하고 78개국이 비준함.

NPT(핵확산금지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4 1975)

생산연도 1967-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88 / 2 / 1-267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1975.4.23. 가입함.

1. 한국의 비준서 기탁 시 미 국무부에서 환영행사가 개최되고 외무부가 성명을 발표함.

- 미 국무부의 환영행사
  - 주미국대사 및 주미국대사관 직원과 미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등 미 국무부 간부 참석
  - 미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NPT 가입을 환영하는 미국 측 성명 낭독
- 외무부는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즈음한 성명' 발표

2. 미 국무부 군축국장은 1975.4.28. 주미국대사 면담 시 한국의 NPT 비준서 기탁에 사의를 표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의 NPT 비준서 기탁은 미 행정부가 의회의 협조를 얻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는바. 미 국무부는 이를 크게 홍보하고 의회에 대해서도 이를 강조할 생각임.
- 미국은 NPT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는 여러가지 문제점(핵연료 도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므로 미국이 동 연료공급을 규제하고 있음을 이해 바람.

3. 동 조약은 1968.7.1. 워싱턴에서 김동조 주미국대사가 서명, 1975.3.1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3.19. 국회가 비준동의한 NPT에 대한 비준서(대통령 명의)를 1975.4.23.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동 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533호).

75-0817

ISC(국제잠사위원회) 설립규약 한국가입 검토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J-99 / 9 / 1-71

1975년 중 정부는 ISC(국제잠사위원회) 가입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ISC는 1975.4월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한국이 동 위원회의 설립협정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에 관련자료를 송부함.
   - 농림부장관에게도 동일한 공한과 관련 자료를 송부

2. 농림부는 1975.6월 동 협정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회보함.

아시아·극동 및 남서태평양지역의 동물생산 및 보건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정 한국가입 추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9 / 10 / 1-107

1973~75년 중 아시아·극동 및 남서태평양지역의 동물생산 및 보건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정 가입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3.1월부터 '아시아, 극동, 남서태평양지역 동물생산 및 보건위원회 설립협정' 수락을 검토함.

2. 외무부는 1975.11월 현재 상기 위원회의 운영상 실제 기술지원국으로 기대되는 호주, 일본 등이 가입에 소극적임을 감안, 동 2개국이 가입할 때까지 동 협정 수락을 보류하기로 함.
   - 태국,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동 협정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였거나, 수락 의사를 표명함.

75-0819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5.7.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경제기구
MF번호	J-99 / 11 / 1-141

정부는 1975.7.1.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에 가입함.

1. 의정서 채택경위

- 1974.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소맥이사회는 1974.6.30. 만료되는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을 계승하는 새로운 협약 채택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동 협약을 1975.6.30.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동 의정서를 채택함.

2. 한국가입의 의의

- 한국은 과거 소맥수입의 대부분을 미공법 제480호에 의거 미국에서 도입하여 왔으나, 점차 이에 의한 도입이 대폭 감소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국제소맥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 한국은 소맥 또는 소맥분의 수입국으로서 국제소맥 수급상황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소맥수입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음.

3. 동 협약의 주요내용

- 1971년도 협약을 1976.6.30.까지 의정서당사국 간에 연장함.
- 의정서에의 서명기간은 1975.3.25.~4.14.(워싱턴)으로 함.
-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기탁기간은 1975.6.18.까지(워싱턴)로 함.
- 동 의정서는 1975.6.18.까지 비준서 등이 기탁되면 1975.6.19.자로 발효됨.

4. 동 협약은 1975.4.3. 워싱턴에서 함병춘 주미국대사가 서명, 1975.6.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6.18.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1975.7.1.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537호).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J-99 / 12 / 1-182

1974~75년 중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임.

1. 기니비사우

- 기니비사우가 1974.12.31. 일방적으로 영해를 150해리로 확정 선언하였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함.

2. 노르웨이

- 해양법담당 무임소장관의 노르웨이 어업규제수역 획정에 관한 정책 연설문(1975.11.26.)

3. 몰타

- The Territorial Waters and Contiguous Zone(Amendment) Act 1975, concerning the extension of Malta's Territorial Waters to 20 nautical miles(1975.10.24.)

4.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의 200마일 어업전관수역 선포(1975.7.15., 주미국 아이슬란드대사관 보도자료)
- Regulations concerning the Fishery Limits off Iceland(7.15.)
- The Fishery Limits off Iceland(200 Nautical Miles)(10월, 아이슬란드 외무부)

5. 영국

- 영국 속령 '길버트엘리스제도(The Gilbert and Ellice Islands Colony)의 어업수역이 1974.11월부터 12마일로 확장되었음을 통보하는 주한 영국대사관 공한

6. 캐나다

- 캐나다 연안어업보호법(Coastal Fishery Protection Act 9 1970)
- 캐나다 하원 외교·국방위원회의 제3차 해양법 회의에 관한 회의 속기록(1973.11.6., 11.15.)

75-0821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법률전문가 그룹회의. New York, 1975.12.1.-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9 / 13 / 1-68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법률전문가 그룹회의가 1975.12.1.~12. 뉴욕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57개국 대표 및 2개 국제기구 대표
- 한국 측: 주유엔대표부 공사 등

2. 회의 내용

-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Part Ⅲ, ChapterⅦ(Enforcement)
- 대륙붕의 정의 및 무해안국 문제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4권 (V.1 사전준비, 1974-7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100 / 1 / 1-132

정부는 1975.3.17.~5.1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에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기본 훈령
   - 기본적 고려, 안보 문제, 대륙붕 문제, 원양어업 문제, 국제해협의 군함통항규제 문제, 해운 문제, 주변국가의 입장분석, 북한활동 견제, 77그룹 관계, 월남 및 캄보디아(구 크메르)의 대표권 문제, 대표단의 활동지침 보고

2. 주요문제에 대한 활동지침(위원회별 소관사항)
   - (제1위원회) 심해저 개발주체, 심해저의 개발조건, 기존 시장질서에 대한 경제적 영향
   - (제2위원회) 영해, 접속수역, 국제해협, 대륙붕, 경제수역, 영해이원의 비독점적 연안국 우선권, 공해제도, 내륙국 등 지리적 불리국가의 지위, 군도 문제, 반패소해, 도서제도, 분쟁해결절차
   - (제3위원회) 해양환경의 보존, 과학적 조사, 기술의 개발과 이전

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와 관련한 77그룹회의가 동 회기 시작 1주일 전인 1975.3.10. 부터 6일간 개최됨.

75-0823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4권 (V.2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100 / 2 / 1-13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의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임.

1. 금번 회기는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 관한 최종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폐회함.

2. 카라카스회의(1974년 개최 제2회기)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한 Interest Group간의 교섭은 금번 회기에서도 계속되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 내륙국와 연안국, 도서국와 비도서국 등 각양각색의 이해관계가 교섭과정에서 심화 또는 첨예화됨.

3. 그러나, 금번 회기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의장 책임하에 회기말까지 각 Interest Group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반영하는 단일교섭 초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한 것이 획기적인 돌파구가 됨.

4. 가장 강력한 Interest Group인 77그룹은 Sub-Interest Group간의 이해대립으로 제2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공동입장을 취하지 못함.

5. 금번 회기에서는 Private Interest Group의 활동이 현저한 바, 특히 노르웨이의 무임소장관이 주도한 Evanson Group(대륙붕, 경제수역, 해양환경 유지)과 주유엔 호주대사가 주도한 Harry Group(분쟁해결)의 활동이 주목을 받음.

6. 차기 회의는 단일교섭 초안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회기로 전망되고 있으나, 수많은 수정안 제출이 예견되고 있어 교섭완결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국 제5회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됨.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4권 (V.3 자료 I , 1974-7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100 / 3 / 1-336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 회의문서 및 관련자료임.

1. 영해, 도서국가, 대륙붕 등에 관한 조항 초안(캐나다 등)

2. 국제해협 정의(캐나다)

3. 어업에 관한 조항 초안

4. 해양환경의 보존 및 해양과학연구에 관한 조항 초안

5. 해양기술 형태 및 동 기술이전 방법의 기술(유엔사무총장)

6. 유엔공보국 보도자료

7. 국가별 대표단 및 국제기구별 대표단 명단

8. 토의요지 기록 초안

75-082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4권 (V.4 지료Ⅱ, 197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100 / 4 / 1-30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 회의문서 및 관련자료임.

1. 비공식 단일교섭 초안(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 제1위원회 소관안
   - 제2위원회 소관안
   - 제3위원회 소관안
   - 분쟁해결 조항안

2. 국가별 제출 조항 수정안
   - 노르웨이,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스페인 등

3. 제2위원회 작업에 관한 성명 초안(위원회 보고자 작성)

4. 제2위원회의 비공식 협의 그룹용 자료
   - 무해통항, 경계획정, 경제수역, 공해 등

5. 기타
   - 방글라데시의 기선문제에 관한 입장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어업관리 개념 정의
   - 77그룹의 배타적 경제수역 조항안

해양법에 관한 중국(구 중공)의 입장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법규/동북아2
MF번호	J-100 / 5 / 1-271

1973~75년 중 해양법에 관한 중국(구 중공)의 입장임.

1. 외무부(아주국)가 1973.6월 작성한 '해양법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및 황해·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1장 중국의 해양법 제도
  - 영해선언의 배경과 내용 및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 직선기선, 어업구역, 일본·중국 민간 어업협정, 군사경계, 금지구역, 무해 항행권 및 기타 국제협정과 타국과의 항해조약 등 검토
- 제2장 해양법에 중국의 새로운 접근
  - 현행 12마일 영해폭의 확대 움직임, 광대한 경제수역 선포 가능성,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 제네바 4개 협정에 대한 정면도전 등 고찰
- 제3장 황해 및 동지나해에서의 한·중국 관계
  - 이 해역은 한·중국 간 협력과 분쟁의 요소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한·중국 간 협력 가능성과 가능한 분야 및 중국 측의 협력의사 표명 사례를 고찰
- 제4장 종합적 전망 및 대책
  - 양국간 해양법 체제의 차이와 앞으로 취할 입장의 차이가 상호간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조화되지 않으면 해양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2. 외무부(아주국)가 1975.12월 작성한 '해양법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및 황해·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 중국의 해양법 제도
  - 일반적인 사항, 중국의 영해선언, 영해, 어업구역, 방위수역, 기타사항
- 해양법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
  - 영해폭에 관한 입장 변경, 경계해역에 대한 주장, 대륙붕, 제네바 해양법 체제에 대한 도전
- 황해 및 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
  - 황해·동지나해와 그 연안국의 지리적 구성, 한·중국 해양법 체제의 불균형, 한·중국 간 협력 가능성, 황해·동지나해에서 국제분쟁의 요소
- 종합적 전망 및 대책
  - 전망, 대책

75-0827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J-100 / 6 / 1-40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에 관한 일본의 입장임.

1. **주일본대사관 직원이 일본 외무성 관계관으로부터 파악한 1975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 임하는 일본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일본의 입장은 카라카스회의에서 표명된 바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 다만, 200해리 경제수역 설치에 관하여는 종래 일본이 유일한 반대국이었으나, 일본의 어업자원 의존도가 높고 국제적 식량부족현상을 감안하여 국제적 협조하에 어업자원의 충분한 개발을 도모한다는 입장임.
   - 영해폭의 12해리 확대문제는 유엔해양법회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임.
     - 소련선박이 일본 근해 3해리 지점까지 접근, 남획하여 일본어민이 피해를 입는 문제로 인하여 여론이 비등하고 일본 농림성을 중심으로 영해 12해리를 조기선언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됨.

2. **제3차 해양법회의 제3회기에 배포된 비공식 단일교섭초안의 작성경위, 성격 및 개요(해양법 본부, 일본어)가 수록됨.**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100 / 7 / 1-126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에 관한 미국의 입장임.

1. 제네바회의(제3회기)의 가장 큰 성과는 비공식 단일교섭 초안의 배포임.

- 조약 형성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인바,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 단일초안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임.

2. 동 회의시 제기된 4개 주요문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영해
  - 12마일 영해에 대한 실질적인 컨센서스가 지속되고 있음.
  - 12마일 영해로 영향을 받는 국제해협에 있어서 '무저해 통항'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함.
- 경제수역
  - 200마일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균형'이 package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
  - 연안국은 동 수역내에서 어족을 보호하고 연안국 어획능력을 초과하는 자원에 대한 타국의 참여를 인정할 의무를 지는 조건하에 어업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데 일반적 컨센서스가 있음.
- 심해저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원칙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
- 분쟁해결
  - 분쟁해결기구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해양법재판소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함.
  - 또한 포괄적 분쟁해결기구에 의할 것인지 분야별로 분리처리될 것인가도 불분명함.

75-0829

브라질·아르헨티나 간의 Parana강 분쟁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K-13 / 3 / 1-70

1975년 중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국제하천 분쟁에 관한 사항임.

1.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대표는 1975.3.24.~4.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천연자원위원회 토의에서 국제하천의 항해 이외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

● 브라질

- 국제하천의 항해 이외의 이용 및 개발문제는 하천의 특수성 및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임.
- 자연자원의 이용 및 개발권은 하천이 통과하는 여타 관계국에 심각한 그리고 영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제한을 받을 수 없음.

● 아르헨티나

- 국제하천의 개발은 국제관리기구를 통한 관계국간의 협력에 의하여야 함.
- 국제하천의 수자원 이용은 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하나, 그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여타 관계국에 피해가 없어야 함.

2. 브라질 정부는 1975.4월 주한 브라질대사관을 통하여 국제하천의 항해 이외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Aide-Memoire를 외무부에 송부함.

월남의 Paracels, Spratleys군도(서사·남사군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만(구 자유중국)의 항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K-13 / 4 / 1-8

1975년 중 월남이 백서를 발표하면서 Paracels와 Spratleys 군도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하여 대만(구 자유중국)이 항의한 내용임.

1. 월남은 1975.2월 발간한 백서에서 Paracels(서사군도)와 Spratleys(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 중국(구 중공)은 1974.1.19.~20. 서사군도를 점령하였고 1975.2월 서사군도 부근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함.

2. 대만 외교부장은 1975.2월 주대만 월남대사를 초치하여 양 군도가 대만의 영토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대만 정부는 월남 정부 또는 어느 정부의 양 군도에 대한 주장이나 행동이 대만의 주권에 영향을 초래할 수 없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75-0831

터키·그리스 간의 Aegean Sea(에게해) 대륙붕 분쟁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구주1
MF번호	K-13 / 5 / 1-106

1974~75년 중 터키·그리스 간의 Aegean Sea(에게해) 대륙붕 영유권 주장내용임.

1. 경위

- 에게해 해저에서 풍부한 석유자원이 발견되자 터키와 그리스는 서로 동 해역이 자국의 내해 또는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해저탐사권 및 개별권을 자국 또는 타국 석유회사에 허가함에 따라 양국간의 권리중복이 초래되고, 더나아가 양국간의 중대한 외교적 문제가 됨.

2. 협상 경과

- 터키는 1974.2.6. 그리스에 대하여 에게해에서의 석유탐사 및 개발, 어업문제를 양자협정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제의하면서 6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법회의 시 에게해의 특수지위를 해양법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제의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1974.6~8월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해양법회의에서 터키는 에게해에 대해 영해 12마일 원칙 적용배제를 주장하였으며, 그리스와 터키 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입장 지지를 요청함.
- 카라만리스 그리스 수상은 1975.1월 어트막 터키 수상에게 보낸 친서에서 영해 분쟁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한데 대하여 터키 측은 제의를 수락하면서 사전에 각료급회의 개최를 제의함.
- 1975.5월 제네바에서 재개된 해양법회의에서도 양측은 자국입장을 계속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함.
- 1975.8.12. 양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안보리에서 그리스가 터키의 에게해에서의 탐사가 동 지중해 평화와 안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 하였으며, 양국 외무장관의 신랄한 설전 후에 안보리는 양국이 동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함.

케냐의 탄자니아 및 우간다와의 분쟁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K-13 / 6 / 1-26

1975년 중 케냐의 탄자니아 및 우간다와의 갈등내용임.

1. 탄자니아는 1975.5월 케냐 나이로비에 소재하는 East African Railway Headquarters에 대하여 케냐 및 우간다로 가는 화물의 적재를 중단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화물수송거부에 따른 파급 영향이 제기됨.

2. 케냐 법무장관은 1975.6월 케냐를 포함한 East Africa Community가 회원국 간의 정치적 선의의결여로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간다 방송이 우간다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영국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케냐 주둔 영국군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방송한데 대하여 케냐 정부, 국회 및 언론계는 심한 분개를 표명함. 또한 이디 아민의 우간다 정부에 제공되는 소련제 무기 상당부분이 케냐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련 군인이 운송차에 탑승한 것이 적발되어 추방되기도 함.

75-0833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말리 간의 국경분쟁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K-13 / 7 / 1-10

1975년 중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와 말리 간의 국경분쟁 내용임.

1. 경위

-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부르키나파소 북부 Oudalan지역을 두고 영유권 주장 대립을 하였으며 1974.11월에는 양국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한데 이어 1975.6월 다시 군사충돌이 발생함.
- 동 국경지역에는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와 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2. 분쟁해결 노력

- 양국이 소속된 CEAO(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세네갈과 니제르 대통령이 중재노력을 하였으며, 4개국으로 구성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조정위원회도 가동되어 1975.6월에는 토고에서 조정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서부아프리카국가들은 역내 회원국간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중재노력을 전개함.
- 한편,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1974년에 계획되었던 주말리 부르키나파소대사관 철수결정을 이행하고 1975.5월 동 대사관을 완전히 폐쇄, 인원과 장비를 철수시킴.

스페인령 서부사하라(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2/중동
MF번호 K-13 / 8 / 1-220

1975년 중 스페인령 서부사하라를 둘러싸고 인근국인 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와의 영유권 분쟁 관련내용임.

1. 분쟁 내용

-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 점령한 서부사하라에 대하여 주변국인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는 반환 요청을 함.
- 스페인은 4백년 이상 지속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모로코에의 이양이 아닌 동 지역의 자주독립을 구상하고 원주민들에 의한 정당설립 등 조치를 취함.
- 서부사하라를 두고 모로코, 모리타니아와 알제리는 자국 이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함.

2.분쟁 해결 노력

- 유엔식민지위원회조사단이 1975.5~6월 스페인, 모로코 등으로 사실 확인차 방문하는 도중 스페인 프랑코정부는 1975.5.23. 정부성명을 통하여 조속한 영토이양을 발표함으로써 독자적인 비식민화과정 추진을 시도함.
- 모로코는 즉각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권고에 따라 총회가 서부사하라 비식민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연기할 것을 결정한 유엔총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였으며, 모리타니아도 이양 절차는 스페인이 아닌 유엔의 결정에 따를 것을 주장함.
- 유엔조사단은 1975.10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감시하의 국민투표를 건의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10.16.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의 영유권 주장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사하라 원주민의 자결원칙에 따른 비식민화 과정을 주장하는 권고안을 채택함.
- 1975.10월에 모로코인들이 사하라로 평화행진을 시도하자 스페인은 군대를 증파하는 등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페인,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는 마드리드에서 협상 끝에 11.4. 사하라 반환, 분할합병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함(알제리는 반발).
- 알제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알제리의 배후 지원을 받으면서 이미 사하라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독립을 호소하고 있는 폴리사리오가 해방투쟁선언을 하고 있으며 사하라의 자결권을 주장하는 유엔안보리 권고 등을 감안할 때 내전 발생의 씨앗이 될 것으로 우려됨.
- 모로코는 1975.12.11. 사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하라 합병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모리타니아군도 12.19. 사하라 최남단 도시를 점령하였으며 사하라 시민의회는 12.22. 마드리드협정을 절대 다수로 가결함.

75-0835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 평화협상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K-13 / 9 / 1-61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975.9.1. 시나이 반도 잠정평화협정에 가조인함.

1. 미국의 중재외교

- 미국은 1973년 중동전쟁 종료 후에 시나이 반도 반환 등 중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재노력을 경주하여 옴. 그러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왕복외교를 통하여 추진하여온 중동문제의 점진적 단계별 해결방안 설득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3월에는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포드 미국 대통령은 중동정책 검토를 지시함. 이에 반하여 소련은 제네바평화회담을 개최하여 일괄적 타결을 주장함.
  - 중동전 이후 소련은 이집트에 대한 군원을 중단하고 관계가 소원해짐.

2. 분쟁 당사국 입장

- 이스라엘은 제2차 군격리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타결의 일환으로 여기는 반면 이집트는 분쟁의 단계적 해결을 위한 순수한 군사적 협정으로 취급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부전선언 요구에 반대함. 또한 철군 한계선, 소요시간 및 유엔평화유지군 주둔기간에 대하여도 이견
- 수에즈운하에 대하여도 이스라엘은 즉시 개통과 자유항행 보장을 주장하는 반면 이집트는 안전조건 충족후 개통을 고수하면서 이스라엘 국적기 표식제거를 요구함.

3. 시나이 평화협정 가조인

- 키신저 장관의 중재외교가 개시되어 동 장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련한 협정안에 이스라엘 측이 먼저 서명하고 동 협정안을 이집트에 가지고 가서 이집트 측이 서명함으로써 양국은 1975.9.1. 이스라엘이 주요 전략요충지를 포함한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불사용 약속을 담은 협정에 합의함. 동 협정은 수에즈운하의 즉시 개통과 완충지 폭을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함.

각국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신청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국제기구/조약
MF번호	K-13 / 10 / 1-43

1970~75년 중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신규가입 신청 내용임.

1. 모리셔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시리아, 호주 및 남태평양국가들이 1970~75년 AALCC 가입을 신청하여 한국을 포함한 기 회원국(한국은 1974년 준회원국에서 정회원국으로 승격)들이 찬반 의견을 표명함.
   - 사우디는 준회원국 자격 신청
   - 호주 및 남태평양국가들의 회원자격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해석

2. 한국은 비동맹 국가들에 대하여는 유엔총회 및 비동맹회의에서의 지지를 얻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의 가입을 지지함. 그러나 친북한 국가인 시리아인 경우에는 한국이 정회원국으로 승격한 이후 지지하도록 검토함.

75-0837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분담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K-13 / 11 / 1-22

한국 정부는 1975년도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분담금으로 964.64 영국 파운드가 책정됨에 따라 이를 납부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제129-133차. New Delhi(인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K-13 / 12 / 1-41

1975년 중 제129~133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AALCC는 뉴델리 주재 회원국 공관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인 연락관회의를 1975년 5차례 (제129~제133차) 개최함.

2. 연락관회의는 1975.1월 테헤란 총회 결정사항 이행과 예산안, 사무국 행정사항 등 차기 총회 관련사항을 토의 준비하였는바, 1975년 연락관회의가 제17차 총회에 대비하여 준비한 주요 관심 의제는 아래와 같음.
   -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국제법 성안에의 참여
   - 상사법 전문가 회의 및 외무성내 법률자문업무에 관한 세미나 개최 추진 문제
   - 국제상사 중재 및 국제운송에 관한 법
   - 환경법
   -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75-083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6차. Teheran(이란), 1975.1.26.-2.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K-13 / 13 / 1-186

정부는 1975.1.26.~2.2.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6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이원호 주인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해양법, 환경법, 국제 상품매매 모델 계약서, 국제해운법, 국제상사 중재

2. 훈령

- 1974년 북한과 함께 정회원국이 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총회로서 국제법 발달추세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대립에 대하여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도국입장을 지지할 것
- 해양법 문제 토의 시에는 베네수엘라 개최 유엔해양법회의 시 한국입장(서해 5도 지위를 포함한 안보문제, 대륙붕에 관한 기존 이익보존, 원양업에 대한 보호, 수입원유 및 기타 원자재의 공급에 대한 수송의 보장)을 최대한 반영 노력할 것
- 상사관계분야 토의에서는 국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 토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회의 결과를 수출진흥에 직결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3. 회의 결과

- 28개 회원국 및 옵서버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함.
- 터키가 정회원국으로 인정되어 참가하였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결정이 유보됨. 차기 회의는 1976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 상사법 분과위원회에서 완결한 표준계약 양식 초안을 확정하고 1976년 전문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함.
- 해양법 관련 문제는 문제의 방대성과 의견 불일치 때문에 결의 형태로 종합하지는 못하였으며 회의의 주요 추세만을 보고자가 정리하여 추후 사무국에서 별도로 작성하기로 결정함.
- 전문가회의 서울개최 문제는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하여 추후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6차. Teheran(이란), 1975.1.26.-2.2.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K-13 / 14 / 1-204

1975.1.26.~2.2.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6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서 배포된 회의 의제, 대표단 명단, 수석대표 발언문, 분과위원회별 토의요록 등 토의자료, 상사거래 표준 계약서 등이 수록됨.

75-0841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한 국가명(호칭) 사용문제

생산연도	1967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K-13 / 15 / 1-29

1967년 중 국제경기대회에 참석하는 남·북한 국가대표의 국가호칭 사용문제 내용임.

1. 일본 개최 국제경기대회

- 북한이 1967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호칭, 국기 사용, 선수 운동복에 국가명을 표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한국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일본 입국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한국 선수단에 대한 정식국명 사용과 북한 선수단의 경우에는 North Korea를 사용하는 IOC 방식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고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선수단 불참 가능성도 시사함.
- 일본 정부는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북한 선수단이 North Korea로서 입국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입국거부를 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한 선수단 공히 국명 대신에 단체명을 사용하기를 선호함.

2. 한국 여자농구팀 체코 입국문제

- 1967.4월 체코에서 개최되는 국제농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자농구팀은 주일본 체코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출발일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동 대사관은 직원을 국제농구연맹 사무총장이 소재한 독일 뮌헨으로 출장시켜 비자문제와 호칭문제를 해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월남임시혁명정부(베트공)의 월남정권 인수에 따른 법적 제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K-13 / 16 / 1-64

1975.4.30. 월남 정부가 패망하고 월남임시혁명정부(베트콩)가 정부를 인수함에 따라 월남 패망으로 억류된 잔류 대사관 직원에 대한 국제법상의 보호의무와 월남 내의 한국 재산 및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등 법적문제를 외무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임.

1. 국가 계승과 정부승인 문제

- 베트콩은 월맹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불과하나 내전과정에 북한을 포함한 58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월남이 패망하자 사이공 정부를 인수함에 따라 승인문제가 발생함.
  - 월맹이 베트콩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경우에는 월남은 국가로서 소멸하므로 정부승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상당 기간 통일되지 않고 베트콩이 남부월남을 지배하는 확립된 정부로 존속하는 한 국가의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고 월남 정부를 계승하는 정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며, 베트콩은 승인을 받을 자격을 갖춤.

2. 한국 정부의 승인 문제

- 한국이 새 정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함.
  - 월남을 대표하는 자격인정과 구정부가 체결한 조약상의 권리의무 계승, 국가책임의 주체로서의 지위 인정, 국가와 국민의 제소권 인정
- 한국의 승인에 따른 법적 문제점
  - 베트콩이 한국의 국가자격(법적존재 자체)을 부인하고 한국의 승인을 법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따라서 외교관계 단절)
  - 승인이라는 일방적 조치에는 상호주의의 국제법 규칙이 적용되므로 한국이 승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법적의무는 없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의 월남전 참전에 따른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제기

75-0843

영국 'The Sunday Times' 게재 한국 관계 기사에 대한 해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L-13 / 1 / 1-10

1975.6.8. 영국 The Sunday Times에 게재된 한국 관계 기사에 대한 해명내용임.

1. TST는 1975.6.8. Korea Base Offered to Russians 제하의 특파원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월남 패망 이후 한·미국 간 갈등이 격화되어 한국 정부는 소련 정부에 제주도를 소련의 잠수함 기지로 사용할 것을 비밀리에 제의하였다고 보도함.

2. 한국 정부는 1975.6.11. 주영국대사관에 상기 기사가 한·미국 간 관계를 이간하려는 제3국의 조작이라는 점을 동 신문사 측에 해명하게 함.

대미국 특별홍보 활동계획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L-13 / 2 / 1-99

1974~75년 중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의 특별홍보 활동을 전개함.

1. **미국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탄압 등 반민주주의적 정책을 비난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한국 정부는 미국 여론 선도와 양국간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적절한 홍보회사를 물색하기 시작함.**
   - 차기 주한대사로 임명된 South Carolina대학의 Richard Walker 교수의 협력으로 다국적 자문회사인 MNC(Multinational Consultants Inc.)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하였으나,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홍보회사인 Hill and Knowlton Inc.와 홍보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업무 중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MNC의 활동은 학계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됨.

2. **한국무역협회는 1975.3.12. 미국에서 경제 및 일반 관련 홍보를 위하여 자문회사인 Hill and Knowlton과 1년간 (1975~76년) 계약을 체결함(계약금 30만 달러).**

75-0845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과세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공보문화/조약/의전
MF번호	L-13 / 3 / 1-57

1975~76년 중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과세문제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1975.3.19. 한·독일간의 괴테학원 설립협정(1962.12.16.발효)에 의거하여 학원 관계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등 물품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제공하였으며, 1974.12.15. 동 협정이 종료되자 한국 정부는 독일 측의 요청에 따라 동 협정 연장을 위하여 서울시 용산구청에 조치를 취함.

2. 그러나 연장이 확정되기 이전에 문화원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자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5.3월 동 과세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용산구청은 협정 연장 시 소급적용하는 조건으로 먼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함. 국세청은 9.29. 괴테학원에 대하여 협정 소멸로 인하여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위한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함.

3.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5.8.13. 외무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독일 정부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 과세방지협정과 EC(구주공동체) 국가들에게 발효된 관세규정으로 인하여 기존 괴테설립협정을 재연장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재연장 제의를 철회하며 괴테학원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의를 제의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옴. 외무부는 이러한 독일 측의 새로운 협정 체결 제의에 대하여 1970.5.16. 양국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으로 학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의함.

4. 주한 독일대사는 1975.10.20. 외무부차관을 예방하고 Aide Memoire를 전달하면서 괴테학원 지위에 대한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학원과 관계자가 과거 협정에서 향유하였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이에 외무부는 국세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를 요청하여 수락됨.

5. 새로운 지위협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측은 1975.12.5. 문화협정 제8조 2항(교육용 물품의 수입을 촉진)에 의거하여 문화원 사용 진공청소기에 대한 면세조치를 허용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나, 외무부는 내부검토에서 진공청소기가 교육적 목적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해석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제3차. Paris, 1975.5.29.-30.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1/공보문화
MF번호 L-13 / 4 / 1-226

제3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가 1975.5.29.~30 파리에서 개최됨.

1. 목적

- 1968.5.8. 발효된 한·프랑스 문화 및 기술협정에 의거하여 2년마다 서울과 파리에서 교대로 혼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문화교류와 기술협력사업을 협의함.
  - 제1차 회의는 1969.10월 파리에서 개최, 제2차 회의는 1971.5월 서울 개최

2. 의제

- 양국에서의 언어교육, 학술분야에서의 협력, 기술협력, 기타

3.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윤석헌 주프랑스대사
- 프랑스 측: M.Laloy 외무성 문화총국장

4. 회의 결과

- 양국은 문화 및 과학기술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인적교류 확대, 해양개발, 석유자원 조사, 원자력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그리고 파리에서의 한국영화주간 개최 등을 담은 향후 2년간의 교류 및 협력계획서에 서명함.
  - 혼성위를 매2년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과학,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과위를 창설하기로 합의함. 프랑스 측은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하였으며 아주대학 확장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1975.10월에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함. 프랑스 측이 요구하는 알리앙스 프랑세즈 및 프랑스어 교사와 기술협력 요원의 지위 개선에 대하여 프랑스 측이 구체적인 안을 추후에 제시하면 한국 정부가 검토하기로 합의함.
  - 과기처 등 관계부처는 동 교류계획서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외무부에 통보

75-0847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제1차. Bonn, 1975.3.4.-7. 전2권 (V.1 기본계획, 1972-75)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L-13 / 5 / 1-211

제1차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회의가 1975.3.4.~7. 독일 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1972.8.11. 발효된 한·독일 문화협정 제10조는 6개월 이내에 공동위원회 개최를 규정하였으나 양측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1975.1.20. 주한 독일대사관이 외무부에 보낸 공한에서 3월 개최를 제의하여 실현됨.

2. 의제

- 양국에서의 언어교육, 중·고교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학술분야(대학수준)에서의 협력,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협력, 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의 협력, 기타(문화원 설치문제 등)

3.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진필식 주독일대사
- 독일 측: Schoedel 외무성 문화정보국장

4. 훈령

- 한·독일 문화협정을 대외문화선전 강화와 한·독일 간의 실질적 문화교류 촉진이라는 기본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
- 금번 합동회의가 문화협정 발효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향후 문화협정 시행을 위한 기본패턴을 정립하도록 할 것
- 문화교류 행사를 가급적 제도화하여 한국의 대독일 문화진출을 활발하게 하며 한·독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독일 측의 의욕적인 협조를 획득할 것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제1차. Bonn, 1975.3.4.-7.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L-13 / 6 / 1-124

1975.3.4.~7.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 회의 결과임.

1. 회의 목적: 한·독일 간 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 협의

2. 회의 결과

- 한국과 독일은 제1차 합동위원회의 합의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1975.3.12.에는 양국대표단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회의 성과를 설명함.
- 주요 합의내용
  - 장학생 선발 절차 규정(제1차 선발권은 한국 문교부)
  - 교육 자료의 상호 교환
  - 독일에서의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대학에 한국학과를 설치하고 한국인 교수 초청
  - 한국 문화재 전시를 위하여 지원
  - 매스미디어분야에서의 협조를 위하여 독일 거주 한국인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강화
  - 여자 배구팀, 탁구팀 및 체육전문가의 상호교환
  - 매2년 마다 합동위원회를 교대로 개최하고 향후 2년간의 문화교류를 작성 시행

3. 후속 조치

- 동 회의에서 합의된 교류사업 시행을 위하여 문교부 등 관계부처는 외무부에 상세계획을 제출함.

75-0849

Ahmed Taibi Benhima 모로코 공보담당국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L-13 / 7 / 1-18

1974~75년 중 Ahmed Taibi Benhima 모로코 공보담당 국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주모로코대사는 북한과 모로코의 수교 저지를 목적으로 1974.6월 외무부에 모로코 국왕의 측근으로 외상과 주유엔대사를 역임한 Benhima 공보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주모로코대사가 Ahmed Taibi Benhima에게 방한 의사를 타진, 외무부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1974.8월에 발송하였으나, 동 장관은 사하라 문제 해결이 시급하므로 사하라 문제 해결 후에 방한하겠다고 언급함.

미얀마(구 버마) 언론인단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정보1
MF번호 L-13 / 8 / 1-8

1975년 중 미얀마(구 버마) 언론인단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5년 공관장회의 계기에 1975년 해외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언론인 3명 초청을 결정하고 미얀마 정부에 통보하여 언론인 방문이 추진됨.

2. 그러나 담당부처인 문공부는 예산형편으로 1975년도에는 미얀마 언론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외무부에 통부하여 옴에 따라 동 사업은 정지됨.

75-0851

Reyner, Pedro 멕시코 'Ovaciones'지 논설위원 방한, 1975.1.19.-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L-13 / 9 / 1-24

멕시코 Ovaciones지 논설위원인 Pedro Reyner가 1975.1.19.~24. 방한함.

1. Reyner 논설위원은 주멕시코대사관에 자신의 한국 방문 계획을 통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등 요인 예방,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주멕시코대사관은 1975.1.9. 외무부에 협조를 건의함.
   - 동인은 Portes Gil 전 멕시코 대통령의 사위로 보험공사 부총재를 역임하였으며 미국 재보험사의 멕시코 책임자로서 한국 보험업계를 시찰하기 위하여 미국 보험업자와 동행하여 방한함.

2. Reyner는 방한기간중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북한과의 대화, 한국의 대아랍 정책 등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가졌으며 그 내용 전문이 Ovaciones지에 보도됨.

미국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L-13 / 10 / 1-47

1975년 중 미국 호놀룰루 소재 언론사 간부들이 방한함.

1. Honololu Advertiser지 논설위원 John Griffin(1975.5.22.~29.)

● 주호놀룰루총영사는 한국에 대하여 비판적인 보도성향을 보이는 동지의 Griffin 논설위원의 동경 방문 계기에 한국도 방문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건의함. 동인은 1975.5.22.~29. 방한하여 문공부장관, 외무부차관 등 인사 예방과 판문점 시찰 등 일정을 가짐.

2. Honolulu Star-Bulletin지 편집부국장 Carl Zimmerman(1975.6.29.~7.4.)

● Zimmerman 부국장은 한국을 종합취재하기 위한 방한계획을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통보하면서 취재협조를 요청하여 왔으며 동인은 정부의 취재지원하에 한국을 방문하여 김경원 대통령특별보좌관 등 인사 면담과 판문점 시찰 등 일정을 가짐.

75-0853

Beltran, Washington 우루과이 'El Pais'지 사장 방한, 1975.10.20.-30.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L-13 / 11 / 1-43

우루과이 El Pais지 사장인 Washington Beltran이 1975.10.20.~30. 방한함.

1. 우루과이 야당인 Unidad Nacional Blanco의 당수이자 최대 일간지 El Pais지 사장인 Beltran 상원의원은 1973.6월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초청으로 아시아 방문 계기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여 왔음을 주우루과이대사관이 1973.6.7. 외무부에 보고하여 옴에 따라 동인의 언론계 및 정계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한이 결정됨.

2. 그러나 1973.6.27.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우루과이 대통령의 의회 해산 조치와 좌익계 의원들에 대한 탄압으로 국내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방한이 연기되었으며 1975.10월에 초청이 재추진됨. 동인은 대만 방문 후 1975.10.20.~30. 한국을 방문하여 외무부장관대리, 문공부장관 등 인사 면담과 땅굴, 새마을운동, 울산산업단지 시찰 등 일정을 가짐.

미국 Harvard대학교 한국학 연구비 지원 문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L-13 / 12 / 1-70

1974~75년 중 한국 정부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한국학 연구비 지원을 추진함.

1. **주뉴욕총영사는 1974.10.28. 보스턴지역 출장활동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하버드대학에 한국관계 연구분야 지원 또는 한국문제연구소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가 추진중인 3백만 달러 규모의 한국학연구사업계획에 한국무역협회가 1975.3월 1백만 달러 제공을 구두로 약속함.**
   - 동 대사관 관계자가 1975.2월 하버드대학 관계자를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라이샤워 교수 등 한국을 연구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의 문제 등)를 전달함.

2. **하버드대학이 1975.2.13.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한 한국학연구추진계획 제안서에는 한국의 근대사회 및 경제분야를 연구, 교수하는 종신 교수직을 설치하며 한국관계 도서를 보강한다는 목표가 설명됨.**

75-0855

미국 Hawaii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건립기금 모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L-13 / 13 / 1-15

1975년 중 미국 하와이대학이 1975년에 한국학연구센터 건립기금 모금을 전개함.

1.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75.6.4. 미국 하와이대학이 추진하는 한국학연구센타 건립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총경비 90여만 달러 중에 40만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지 모금액이 3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20만 달러 상당이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건립추진 위원회 측은 민관식 전문교부장관 등 한국 정부 인사에게 한국 정부가 10만 달러를 더 지원해 주도록 외무부에 요청함.

2.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75.9.23. 한국학연구센터가 한국 정부의 지원 등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중인바, 건립비용 경감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면세조치를 미국정부에 요청함.

외국 교과서 및 문헌에 나타난 한국관 시정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L-13 / 14 / 1-184

1974~75년 중 외국 교과서 및 문헌에 나타난 한국에 관한 잘못된 기술을 시정해 나감.

1. 한국 정부는 1972년 대외홍보에 관한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외국 교과서 등 문헌에 나타난 한국 관련 기술에 왜곡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노력을 꾸준하게 시행하여 왔으며,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5.9월 2/4분기 실적 보고회에서 외무부, 문교부 및 문공부는 외국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노력을 추진할 것을 지시함.

2. 국무총리실은 1975.9.29. 관계부처별로 보고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한국관 시정계획을 통보하면서 매월 시행상황을 문교부가 종합 보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외무부는 10.7. 미국, 일본 등 13개 국가 주재 공관에 이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해당공관은 주재국에서 발간되는 교과서 등 문헌에서의 왜곡내용 파악여부 및 시정노력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857

Winkler, Günther 오스트리아 Vienna대학교 부총장 겸 오스트리아·한 친선협회장 방한, 1975.7.20.-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L-13 / 15 / 1-27

Günter Winkler 오스트리아 Vienna대학교 부총장 겸 오스트리아·한국 친선협회장이 1975.7.20.~24. 방한함.

1. 법률학자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지지하는 등 열렬한 친정부 인사인 Winkler 부총장이 문교부장관 초청으로 방한함.
   - 동인은 1972.12.13. 설립된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 초대 회장으로, 1973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수여, 박 대통령의 "민족의 저력"을 독어로 번역

2. 체한기간 중 대통령, 문공부장관 등을 면담하고 판문점 시찰 등 일정을 가짐.

일본 창가학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L-13 / 16 / 1-100

일본 창가학회(일년종정)와 일본 공산당 간의 협정문 내용임.

1. 일본 창가학회와 공산당은 1974.12.28. 상호조직공존 협정문에 서명하고 1975.7.27. 이를 공표함.
   -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며, 창가학회는 과학적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적대시 하지 않음.

2.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창당, 유지되는 공명당은 1975.10월 전국대회에서 동 협정에 대한 반대와 반공주의 입장을 표명함.

3. 한국 정부는 28만 명에 달하는 한국 창가학회 회원들이 동 합의에 따라 공산당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지 않을까 우려하고 창가학회와 조총련 간의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창가학회의 입장표명 등을 파악하는 한편, 1975.10월에는 문공부에서 대책안을 작성함.

75-0859

프랑스 여행사의 한국 내 지점 설치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L-13 / 17 / 1-11

1975년 중 프랑스 여행사의 한국내 지점설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의견임.

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5.1.23. 외무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프랑스 관광공사는 프랑스 정부가 한국 여행사 지사개설에 관한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는 경우 한국 정부도 상호적인 조치를 허락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기를 희망한다고 질의함.

2. 관계부처인 교통부는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여행사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33회. Calcutta(인도) 및 ITTF(국제탁구연맹) 총회, 1975.2.6.-16.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공보문화/동북아2
MF번호 L-13 / 18 / 1-38

제33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ITTF(국제탁구연맹) 총회가 1975.2.6.~16. 인도 콜카타에서 개최됨.

1. 외무부는 1975.1.31. 제33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75.2.6.~16., 콜키타) 기간 중 개최되는 1975년도 ITTF(국제탁구연맹) 총회(1975.2.8. 및 14., 콜카타) 관련, 아래 요지의 지침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현지 한국대표와 긴밀히 협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것을 지시함.

- 대륙연맹 가입에 관한 ITTF 헌장 개정문제
  - 미국탁구협회안: 대륙연맹은 동 지역내의 국제탁구연맹 회원에 대해 대륙연맹 가입을 거절할 수 없음.
  - 지침: 미국탁구협회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
- ATTU(아시아탁구연맹) 인준문제
  - 현 대세로 보아 인준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한국도 ATTU에 가입 신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인준에 반대하지 않으나, ITTF 헌장 개정이 ATTU 인준에 선행하여 처리될 경우 미국안이 통과될 시 찬성, 부결될 시 인준에 기권하고, ATTU 인준이 먼저 처리될 경우 기권

2. 주인도대사관은 1975.2.20. 상기 1975년도 세계탁구연맹 총회 및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관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륙연맹 가입에 관한 세계탁구연맹헌장 개정문제
  - 표결은 호명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안이 44표, 미국안이 13표를 각각 획득하여 이사회안이 가결됨.
- 이사회안 통과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점
  - 한국은 앞으로도 ATTU 가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인접 대륙연맹 가입교섭을 하는 한편 기회를 기다릴 것인지의 문제
  - 인도네시아도 곧 ATTU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입하게 될 경우 한국만이 고립되는데 대한 대책
- 건의
  - 탁구를 통한 중국(구 중공) 및 북한과의 정치적인 대결이 계속될 것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대책이 탁구협회와 정부 관계부처 간에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등

75-0861

일본문제연구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L-13 / 19 / 1-56

1975년 중 일본문제연구 친선협회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11.10.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일본문제연구 친선협회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함.
   - 일본문제연구 친선협회는 일본 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한·일본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민간외교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외무부에 등록 신청
   - 상기 법률규정에 따라 검토한바, 동 등록서류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동 단체의 활동이 민간외교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동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할 것을 건의

2. 외무부는 1975.12.2. 동 협회에 대한 사회단체 신규등록(등록일: 1975.12.2., 등록번호: 제121호) 사실을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12.2. 동 협회에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단체운영에 있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단체현황카드 작성을 요청함.

한·호주 협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L-13 / 20 / 1-58

1975년 중 한·호주 협회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5.19.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한·호주협회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함.
   - 한·호주 협회는 호주와의 상호친선과 문화교류, 교역증대 등을 목적으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외무부에 등록 신청
   - 상기 법률규정에 따라 검토한바, 동 등록서류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동 단체의 활동이 민간 외교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동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할 것을 건의

2. 외무부는 1975.5.23. 동 협회에 대한 사회단체 신규등록(등록일: 1975.5.23., 등록번호: 제117호) 사실을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5.23. 동 협회에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단체운영에 있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단체현황카드 작성을 요청함.

75-0863

코스타리카·한 친선문화협회 창립, 1975.1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문화교류/중남미
MF번호	L-13 / 21 / 1-21

코스타리카·한국 친선문화협회가 1975.12.4. 창립됨.

1.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은 1975.11.25. 코스타리카·한국 친선문화협회 결성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재국 전직 각료, 실업인,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이 주축이 된 발기인(20명)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동 협회 창립문서는 지난 10월말 현재 산호세 주지사 및 내무장관의 결재를 득하고 11.17. 내무부등록 제520호로 문화단체로서 정식 재가를 얻음.
   - 11.25. 현재 주재국 관보에 게재되기 전에 대통령의 결재를 위해 대통령실에 제출되어 있음을 확인

2.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은 1975.12.10. 동 협회 결성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12.4. 주재국 관보 제231호에 공포됨으로써 동 협회는 공식 인가단체로서 등록을 마침.
   - 발기인들의 정식 서명을 얻어 정관을 결정하고 주재국 내무부 등기소에 등록
   - 가능하면 연말전 자축회를 갖고 발기인들로 하여금 양국간 이해와 협조 제고를 위해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인바, 협회 지원금을 매월 송금 요망

에콰도르·한 문화협회 창립, 1975.12.1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L-13 / 22 / 1-23

에콰도르·한국 문화협회가 1975.12.18. 창립됨.

1.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75.11.12. 에콰도르·한국 문화협회(La Sociedad Ecuatoriano-Coreana)의 규약 및 위원명단을 작성하여 주재국 문교부에 제출, 인가를 대기중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75.12.29. 상기 협회 창립총회를 12.18. 호텔 키토에서 개최하였으며 동 총회에는 주재국 외무성 의전관 및 언론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총회에서는 주에콰도르대사의 격려사에 이어 정관을 채택하고 만찬 및 시사회 개최
   - 동 총회에서 주재국 상공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El Tiempo지 부사장인 Marco Tulio Gonzalez 박사를 동 협회 회장으로 선출

75-0865

한·이란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L-13 / 23 / 1-79

1974~75년 중 한·이란 친선협회 관련사항임.

1. 주이란대사관은 1974.6.3. 이수장 한·이란 협회 회장의 1974.5.29.~6.2. 주재국 방문시 이란 노빈당(Iran Novin Party, 여당) 사무총장인 Kalali 국무상 방문내용이 동 당 기관지(6.2.)에 보도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5.2.25. 동 대사관 윤 공사가 2.24. Hamzavi 주한 이란대사(동경 상주)를 방문한바, 동 대사는 한·이란 협회 결성에 있어서 동 협회 측에서 사전 협의를 한 바 없었음에 비추어 동 협회의 결성경위 등에 관해 알고 싶다면서 동 협회 측이 비자발급 업무를 취급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이란대사는 1975.4.22. 일시귀국중인 Hamzavi대사를 4.19. 면담한바, 한·이란 협회 측이 동 대사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사증발급 등 영사업무를 취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서 동 협회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양국간 관계증진에 저해요인이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건의함.

4.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5.5.2. 주한 이란대사는 동 협회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은 물론 그 존재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우호친선을 위해 설립된 동 협회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나아가서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아중동국에 통보하고 동 협회 등록취소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5.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5.5.20. 동 협회(74.3.15. 외무부에 등록)가 1975.5.15.부로 자진해산 하였음을 아중동국에 통보함.

6. 주일본대사관은 1975.5.29. 윤 공사가 주한 이란대사를 방문, 동 협회의 자진해산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대해 동 대사는 잘되었다면서 양국 친선협회 자체는 환영하나 동 협회를 창립시키는 경우 그 회장이 사회적으로 경험을 가진 인사가 될 것을 희망하고 주이란대사관 측과도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표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일본·한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L-13 / 24 / 1-192

가나가와현 일본·한 친선협회 창립준비에 관한 관련 공관의 보고내용임.

1. 가나가와현 일본·한 친선협회 창립준비에 관한 1975.3.25.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가나가와현에는 각 현에 있는 일본·한 친선협회와는 달리 한국인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일본·한 우호협력회가 있었으나 동 총영사관은 이를 한국인이 적극 참가할 수 있고 각 현과 같은 명칭인 일본·한 친선협회로 대체하도록 종용
- 동 우호협력회의 다가사키 마사미 회장의 신변으로 인한 사의 표명과 현 임원의 임기만료를 계기로 새로운 민간합동 친선기구인 일본·한 친선협회를 창립하기로 결의
- 3.17. 가나가와현 일본·한 친선협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
  - 회장: 사토 이치로 전 국무대신

2. 관할지역 내 일본·한 친선협회 현황에 관한 1975.4.10.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구마모토현 일본·한 친선협회(1962.12.26. 창립)
  - 회장: 히라스카 타이소
  - 인원수: 한국인 36명, 일본인 52명
  - 주요사업실적: 1971.3.18. 양국 생도 작품 교환전시회 개최 등
- 나가사키현 일본·한 친선협회(1961.8.18. 창립)
  - 회장: 나카무라 고오카이
  - 인원수: 한국인 344명, 일본인 113명
  - 주요사업실적: 1970.10월 이방자 여사에게 복지기금 모금 전달 등
- 오이다현 일본·한 친선협회(1969.11.27. 창립)
  - 회장: 현재 공석
  - 인원수: 한국인 90명, 일본인 55명
  - 주요사업실적: 1970.12월 한국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등
- 후쿠오카현 가한지구 일본·한 친선협회(1958.4.25. 창립)
  - 회장: 하나무라 시게마사
  - 인원수: 한국인 100명, 일본인 100명
  - 주요사업실적: 1970.7월 한국예술단의 이이스카 지방공연지원 등

75-0867

뉴질랜드·한 협회 창립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08-62 / 26 / 1-11

1975년 중 뉴질랜드·한국 협회 창립 관련사항임.

1.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5.1.29. 뉴질랜드·한국 협회(New Zealand-Korea Association) 발기인회가 구성(1974.12.16.)되어 단체등록을 하였으며, 1975년 상반기 중에 정식발족을 준비중임을 보고함.**
   - 1974년도에 동 단체에 친한단체 보조금 400달러 교부
   - 창립총회 및 이후 1회 총회 경비보조 예산 1,600달러 배정 건의

2.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5.10.17. 양국간 친선 및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인 뉴질랜드·한국 협회 창립을 위한 회의가 10.16. 개최되어 정식으로 발족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협회 고문격인 patron에 주뉴질랜드대사 및 Sir Keith Holyoake 전 주재국 수상을 추대하고 회장은 추후 선출하기로 결정

3.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5.11.12. 동 협회가 제1차 사업으로 11.11. 한국의 밤을 개최하고 한국 고전무용, 태권도 시범, 뉴질랜드인의 한국 가곡 공연을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행사에는 주재국 정부인사, 외교단, 언론계, 한국전 참전용사, 교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으며 공연 후 간단한 리셉션 개최

한·파나마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L-13 / 25 / 1-16

1975년 중 한·파나마 친선협회 설립 관련사항임.

1. 주파나마대사관은 1975.6.8. 주재국에 친한단체를 설립하여 북한의 집요한 접근기도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재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문화교류, 유대강화 및 통상증진과 경제협력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접촉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금년 7월말을 목표로 한국·파나마 친선단체를 발족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소요경비를 포함하여 동 대사관 작성 활동계획 승인을 건의함.

2. 주파나마대사관은 1975.12.9. 한·파나마 친선협회 발족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12.5. 현지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정계, 학계, 언론계, 실업계 등 각계인사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협회(정식명칭: Fraternidad Corea-Panama) 정식 발족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 회장: Gilberto Bosquez 파나마대학 법대교수
- 동 발족 사실은 주재국 신문 및 방송에 보도
- 동 협회 발족을 계기로 북한 불온문서 및 책자 회수운동을 전개, 이미 김일성 혁명 투쟁사 1권 등을 회수, 파기

75-0869

1974년도 나이지리아 대외무역 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33 / 1 / 1-15

주카메룬대사관이 1974년도 나이지리아 대외무역 현황에 관해 외무부에 송부한 자료임.

1. 대외무역 총액

- 1974년도 나이지리아의 수출입총액은 75억 31.7백만 나이라(122억 76.6백만 달러 상당)로 1973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신장
  - 수출액은 재수출액을 포함 57억 94.4백만 나이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신장
  - 수입액은 12억 24.8백만 나이라로 전년대비 42% 증가

2. 수출구조

-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윤활유 등으로 전체 수출액의 93% 차지
- 코코아열매의 경우 1974년 18만 톤 수출로서 전년대비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가격이 66% 인상됨에 따라 수출액은 1억 59백만 나이라로 전년대비 41% 증가

3. 수입구조

- 1974년도 수입액은 17억 37.3백만 나이라로 전년대비 41.8% 증가
- 수입은 전년대비 전부문에 걸쳐 증가한바,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수입증가분의 70%이상 차지 등

4.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수출

- 1974년도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수출은 13백만 817천 달러 수출로 전년대비 45.7% 증가
  - 수출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직물류중 합성섬유직물 수출이 상당히 증가
- 1974년도에 대나이지리아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동국이 인구 7천 9백만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 시장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세계 8위의 산유국으로서 일반적인 경기침체와는 달리 막대한 석유수익을 배경으로 정부의 활발한 투자계획에 의한 국내산업 붐이 조성되어 수입수요가 증가한데 기인 등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 공관협의체 운영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구주1
MF번호 M-33 / 2 / 1-34

1975년 중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 공관협의체 운영 관련사항임.

1. 주EC대표부는 1975.4.30. EC 협의체가 동일 국무총리훈령 제117호(1974.4.30.)가 하달된지 만1년 그리고 제1차 정기회의 개최(1974.8.29.~30.)로부터 8개월이 지났으므로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돌이켜 보고 개선점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EC 협의체 운영실적과 개선책을 작성·보고함.

2. 상기 주EC대표부 작성 EC 협의체 운영실적과 개선책에 관한 보고서 내용 중 EC 협의체 성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EC지역 경제관계의 종합적 접근
     - (통상분야) EC는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MFA(다자간섬유협상)의 경우와 같이 회원국 공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하에 EC 당국과 교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입증, 코트라 및 외환은행 조직망의 협조를 얻어 구주 주재 민간상사대표 간담회를 1975.6.5. 브뤼셀에서 개최, 구주진출 방안 등을 협의
     - (경제협력분야) 투자유치대상 업종을 회원국 공관별로 선정하는 한편, 투자유치 공동지원의 일환으로 투자세미나 개최에 회원국 공관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 현지에 파견지원 등

3. 주EC대표부는 1975.6.26. 1975년도 하기 목차의 사업계획 추진상황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지시사항 하달을 건의함.
   - 구주차관단 구성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소요외자 조달
   - 투자유치대상 업종 선정과 투자유치활동
   - 한국·EC지역 국가 합작 금융회사 설립
   - EC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확대와 유기적 협조
   - 구주지역에 대한 수출시장의 심화
   - 북구지역 국가와의 경제관계 증진방안
   - 협의체 간행물 발간
   - 구주 자본시장에서의 기채에 관한 연구

75-0871

EC지역 주재 공관협의체 회의, Brussels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M-33 / 3 / 1-141

1975년 중 제1~2차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 공관협의체 정기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2.20.~21.)

- 참석자
  - (협의체 구성원) 송인상 주EC대사, 윤석헌 주프랑스대사, 김용식 주영국대사, 진필식 주독일대사, 조상호 주이탈리아대사 등 EC지역 주재 대사
  - (기타 참석자)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코트라 구주 주재 이사, 외환은행 구주 주재 이사 등
- 회의의제
  - (협의안건) 협의체 제1차 연도 사업계획의 진척상황, 정부 및 민간업계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 관계부처 요망사항, 정부 및 민간업계에 대한 건의사항 등
  - (보고안건) EC의 경제현황과 전망,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활용, 대EC 수출실적 분석 및 전망, 구주 자본시장의 동향, MTN(다각적무역교섭)의 동향 등

2. 제2차 회의(1975.11.27.~28.)

- 참석자
  - (협의체 구성원) 송인상 주EC대사, 윤석헌 주프랑스대사, 김용식 주영국대사, 이창희 주독일대사, 조상호 주이탈리아대사 등 EC지역 주재 대사
  - (기타 참석자)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코트라 구주 주재 이사, 외환은행 구주 주재 이사, 한국은행 서독 출장소장 등
- 회의의제
  - (협의안건) 협의체 제2차 연도 사업계획의 진척상황, 1976년도 대EC지역 수출증진 방안, 관계부처 요망사항, 협의체 구성원이 제출하는 기타 안건 등
  - (보고안건) 구주 자본시장의 최근 동향, EC 경제의 현황과 서독의 경제 전망 등

3. 제1차 정기회의 자료 중 정부 및 민간업계에 대한 건의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이 구주지역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한국 주재 해당국 공관과 사전접촉을 하는 경우 동 사실을 구주지역 해당 한국 공관에도 통보 요망
- 민간경제단체 및 민간업계의 구주사절단 파견계획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사전통보해 줄 것 등

한·덴마크 경제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4 / 1-25

1975년 중 한·덴마크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덴마크 F.L. Smidth 시멘트회사의 대한국 진출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주덴마크대사관은 1975.4.7. 주재국 F.L. Smidth사 측이 1974.11월 쌍용양회의 생산시설 확충계획과 관련, 쌍용 측에 사양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서독 및 프랑스 합자회사인 Polysius사에 수주되었으며, 성신화학의 단양시멘트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도 사양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한국 측에서 검토 중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F.L.S.사는 주재국의 저명한 시멘트 회사로서 정평이 있으므로 가급적 동 사가 한국과 제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해줄 것을 건의
- Tyge Dahlgaard 주한 덴마크대사(동경 상주)는 4.22.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시 단양 시멘트공장 확장 건설사업(45백만 달러) 관련 호의적 고려를 요청
- 동 대사는 4.23.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시에도 동일한 지원을 요청
- 외무부는 4.24. 쌍용양회 및 성신화학의 시멘트공장 증설계획과 관련 양 회사가 F.L.S.와 거래한 내용과 현황에 관해 경제기획원 측이 알려온 하기사항 등을 주덴마크대사관에 통보
  - 단양시멘트공장 증설 관련, 성신화학 측은 F.L.S. 등 여러 회사로부터 차관조건 및 기자재 공급가격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동 사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오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예정임.

2. 외무부는 1975.6.21. 주덴마크대사의 보고에 의거, 상당수 덴마크 기업인들이 마산자유수출공단 등지에 수출공장을 설치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에 통보하고 한국내 자유수출공단에 관한 안내서 및 입주시 특혜에 관한 설명자료를 요청함.

75-0873

한·가이아나 경제협력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M-33 / 5 / 1-96

1974~75년 중 한·가이아나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외무부는 1974.4.16. 아래 사항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가이아나 겸임)에 통보함.
   - 주유엔대표부 보고에 의하면, 유엔특별총회에 참석중인 Searwar 가이아나 외무성 정치·경제국장과 면담결과,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자국의 목재를 대규모 수입하고 있는 중국(구 중공)의 반감을 유발하지 않기를 희망

2. 외무부는 1975.2.6. 가이아나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일 뿐만 아니라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종래의 중립적 태도에서 후퇴하여 공산 측 결의안에 찬성투표한바 있음을 감안, 금년에는 대중남미 외교의 중점대상국으로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통보하고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의견보고를 지시

3. 외무부 미주국은 1975.5.6. 한국 경제협력실무조사단이 1973.6월 가이아나 방문 시 교환한바 있는 각서내용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1975.4.14. 조정회의에서는 동 각서 내용이 정부간 사업으로서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음을 국제경제국에 통보

4.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5.6.30. 가이아나 방문중 King 가이아나 통상장관이 희망을 표시한 비닐제품공장 설치는 20만 달러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공장 설치를 통한 경협제공 고려를 건의하면서, 동 장관이 관심을 표시한 품목(타이어, 신발류, 어망 등)에 대한 카탈로그와 가격 제안을 요청

5. 외무부는 1975.8.6. 가이아나 측이 희망을 표시한 비닐 및 플라스틱제품 공장은 동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길 희망하며, 현재 동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한국 관련업체는 PVC Tile 및 파이프 등의 3차 가공품류 수출, 플랜트 수출, 현지에서의 합작투자 등 3가지 형태 사업중 가이아나 측의 희망에 따를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통보하고, 가이아나 측 의사타진을 지시함.

한·헝가리 금융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M-33 / 6 / 1-12

1975년 중 한·헝가리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주독일대사관은 1975.1.17. 헝가리를 여행(1974.6.25부터 5일간)한 바 있는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헝가리 방문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여행목적
     - 헝가리 중앙은행과의 거래 가능성, 은행간행물 교환 및 헝가리 경제인의 한국 방문 가능성 타진
   - 입국예정 및 체재기간: 1975.1.27.~2.1.
   - 초청자: 헝가리중앙은행 외국부장

2. 외무부는 1975.1.20. 상기 허가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중임을 주독일대사관에 통보하고 가능하다면 동인의 헝가리 방문시 동국 상공회의소장, 박람회 당국자와 접촉, 동인들의 방한 의사를 타진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3 주독일대사관은 1975.1.21. 상기 지시에 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지점장은 1974.12월중순경 헝가리 중앙은행 외국부장의 연하장을 받고 인사발령으로 귀국하게 되므로 후임자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답신을 송부
   - 1975.1.14. 동 부장은 장거리전화로 귀국전 헝가리 방문을 초청하고 비자관계는 주독일 헝가리 대사관에 연락해 두겠다고 언급
   - 지난번 헝가리 방문시 상공회의소 방문을 희망했으나 헝가리 중앙은행 측은 계통이 다른 기관이므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시사해 방문하지 못함.

4. 주독일대사관은 1975.2.7. 동 지점장이 1975.2.3.~5. 헝가리를 방문, 헝가리 중앙은행, 상공회의소 및 박람회 당국자와 접촉하고 2.6. 프랑크푸르트로 귀임하였으며. 상공회의소 및 박람회 당국과의 협의는 별 진전이 없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0875

한·이스라엘 경제협력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33 / 7 / 1-12

1973~75년 중 한·이스라엘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3.5.19.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가 이스라엘계열 자본의 대한국 조선공업 투자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로 보고하여 왔음을 구아국에 통보하고 대아랍권 외교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함.**
   - 주대만대사의 주대만 요르단대사 면담시(4.26.) 요르단대사의 언급요지
     - 이스라엘 실업가 Eisenberg 및 같은 계통의 이스라엘 회사는 자본이 부족한 영국 조선회사를 내세워 23만 톤 Tanker 30척을 대만과 합작으로 건조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외양적으로는 그럴듯하나 위험한 조건이었음.
     - 석유생산국인 아랍국가는 이스라엘 회사와는 물론 동 회사와 관계하는 제3국과의 거래를 보이콧 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본으로 건조된 Tanker에 대한 석유판매도 거부할 것임.
     - 대만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Eisenberg 등을 상대하지 않고 축출하였는데 이들은 지금 한국으로 가서 무슨 일을 꾸미려는 듯함.

2. **외무부 구아국은 1973.5.24. 아랍권 국가는 이스라엘(유대계 포함)과 밀접한 우호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랍권 국가와의 우호관계 증진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스라엘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랍권의 반발과 아랍국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을 국제경제국에 통보함.**

3.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1975.8.14. 주이란대사가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인력진출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LPL회사로부터 텔아비브 소재 병원에 한국간호사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했음을 아중동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 아중동국은 8.14. 정부의 현 아랍정책에 비추어 불가함을 영사교민국에 통보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8 / 1-24

1974~75년 중 한·이탈리아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4.11.11.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주재국 업체중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로부터의 질의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 분야의 한국업체 현황 및 외국과의 협력전망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1.14. 국내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수급현황과 함께 현재 국내에는 동 품목의 공급능력이 수요규모를 초과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동종품목 생산공장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기 어려움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함.

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5.3.6. 아래 요지의 투자유치활동 효율화 방안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함.

● 투자유치활동상의 제약사항

- (주재국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 주재국은 평균수명 1년 빈도의 잦은 내각변동으로 일관된 경제정책이 없는 점과 주재국 경제발전의 현 단계는 자본수입국이지 자본수출국이 아닌 미성숙 단계에 있는 점 등
- (지정학적인 제약사항) 한국과의 거리가 멀어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거래의 적시성을 놓칠 위험성이 있으며 주재국 남부와 북부의 상이한 산업구조로 유기적인 기업 활동상의 한계 등

● 투자유치활동 효율화 방안

- (사실상의 경협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한국의 전략산업 부문중 기계공업, 화학공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있어서 주재국의 발전된 제품 또는 시설재 등을 수입 또는 도입하는 기회를 주어 여타 구주국가와의 경제협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
- (균형된 통상의 양적확대 및 질적심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행 조건으로서의 통상확대 및 심화 필요
- (양국간 지속적인 인사교류) 지난 2월 방한한 바 있는 실업인단의 방한 결과는 주재국 각계에서 성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지속적 인사교류 필요
- (경협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계속 접촉) 그간 주재국 공업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대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과 접촉, 한국 진출을 유도하여 왔으나 이를 더욱 적극화하고 명실공히 경협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등 추진

75-0877

한·스위스 경제협력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9 / 1-47

1974~75년 중 한·스위스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스위스기업 Nestly의 대한국 투자 관련 1974.6.15.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국장의 Joseph-Paul Lustenberger 주한 스위스대사대리와의 면담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 대사대리의 언급요지
  - 최근 한국 정부는 POSCO의 연속주조시설 관련 스위스의 Concast 시설을 구매하지 않았고 Nestly사의 커피공장 외국인 합작투자 인가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유감 표명
- 상기 언급에 대한 투자진흥국장의 발언요지
  - Nestly사의 인가신청 각하는 스위스와의 우호관계를 저버린 것이 아니며 단지 1974년부터 투자유치정책 변경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

2. 상기 대한국 투자 관련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의 1974.6.24. Lustenberger 주한 스위스 대사대리와의 면담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 대사대리의 언급요지
  - 커피공장 투자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Nestly는 커피 외에 베이비푸드 등 음식물 제조분야에도 대한국 투자 의향이 있는바, 경제기획원에 동 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외무부의 조언을 듣고 싶으며 스위스는 한국이 미국 다음 2번째로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인 만큼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여 주길 희망
- 상기 발언에 대한 김동휘 차관보의 언급요지
  - 한국은 유럽 우방국가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며 특히 한·스위스 투자보장협정 체결(1971.4.7. 발효) 이후 처음 제기되는 Nestly의 투자를 환영함.
  -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인 만큼 스위스 측이 대한국 투자에 있어서 생산품의 수출, 최신 기술 도입, 국내 기존산업 및 시장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등의 투자내용이라면 외무부에서 관계부처에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할 것임.

한·영국 경제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10 / 1-36

1975년 중 한·영국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내용임.

1. 대한국 투자 및 교역증진 세미나 결과에 관한 1975.3.5. 주영국대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개최일자 및 장소: 1975.3.3., 버밍햄 상공회의소
- 참석자
  - 버밍햄지역 주요 상공인(약50명), 통상성 관계관, Nichols 한·영국 경협위원장, 대사관 관계관 등
- 연사: Nichols 위원장외 방한 경제인 3명
- 세미나 요지
  - 영국의 일본 진출이 15년 늦은 사실을 명심, 한국에만은 조속한 기반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이 서구에 관심을 갖고 교역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는 이때가 영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최적기
  - 한국은 자동차 부품업에 양국 기술협력의 가능성이 크며 양국 경협에 ECGD 보증 활용 용이
- 동 세미나 관련 버밍햄 유력 일간지인 Birmingham Post는 'Chances in Korea' 제하의 2단기사로서 Nicholas 회장의 말을 인용, 한국은 안정된 정부하에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영국 실업계가 한국의 이러한 잠재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

2. 한국 관계 세미나 결과에 관한 1975.5.16. 주영국대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개최일자 및 장소: 1975.5.15., 런던 소재 CBI(영국산업연맹) 회의실
- 동 세미나는 주재국 통상성 및 동 대사관 공동후원하에 CBI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양국 실업인 약 200명 참석
- 특히 금번 세미나는 현재까지 한국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주재국 유력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중화학개발계획에 관한 발전상을 홍보하는 동시, 대한국 투자 및 교역증진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가 됨.

75-0879

한·가봉 경제각료회담. 서울, 1975.7.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33 / 11 / 1-35

한·가봉 간의 경제각료회담이 1975.7.7.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목적

- 양국간의 경제협력, 통상증진 및 기술협력 등의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

2. 정부대표단(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가봉 측: 조로즈 타위리 교통부장관

3. 회의 결과

- 양국 장관들은 양국간 경제, 통상 및 기술협력분야의 현안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최근 긴밀화된 양국관계에 따라 경제적인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데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
- 양국 장관들은 양국 원수간에 합의된 협력강화원칙에 의하여 양국간 교역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
  -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통상증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통상사절단을 1975년 가을 가봉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한국 측은 가봉의 자원개발정책에 관심을 표명하고 가봉의 부존자원 개발, 자원조사에 대한 한국 측 참여가능성 및 석유의 연불수출 등에 대한 가봉 정부의 정책 등을 문의한데 대해 가봉 측은 자원조사에 대하여는 현 단계에서 답변이 곤란하며 석유의 연불수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거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양국 정부간 협력 필요성에 따라서 정부의 협조도 가능하다고 답변
- 건설부장관은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계약고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가봉 철도건설 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데 대해 가봉 교통장관은 기술훈련을 위해 가봉의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상공부장관은 이를 수락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조사/중동/경제협력/통상3
MF번호 M-33 / 12 / 1-155

제1차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가 1975.11.17.~19. 서울에서 개최됨.

1. 주이란대사는 1974.11.13. Vafa 이란 재무성차관을 방문, 양국간 공동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동 차관은 이란이 현재 20여개국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이란과 한국이 공동위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11.14.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75.5.2. 경제장관간담회(4.21.)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한·이란 경협추진과 관련, 한·이란 경제 및 기술협정 체결교섭 현황, 공동위원회 개최시기 등에 관한 주이란대사관의 보고 내용을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통보함.

3. 주이란대사관은 1975.10.14. 제1차 한·이란 각료급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해 한국 측 입장을 제시하는 Memorandum을 이란 측에 수교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공동위는 실무회담(1975.11.13.~15.), 각료회담(1975.11.17.~19.)으로 각각 개최

4. 1975.11.20. 외무부 경제협력과 작성 제1차 한·이란 각료공동위원회 합의의정서(Protocol of the First Session of Korea-Iran Ministerial Joint Commission for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요약문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 공동위는 1975.11.17.~19. 서울에서 남덕우 부총리와 Hushang Ansary 경제재무장관을 수석대표로 개최, 아래 사항 합의
     - (건설협력) 이란의 주택건설사업(향후 5년간 10만 호 건설계획이며 일차적으로 2만 호 건설)에 인력 및 기자재 공급, 주택건설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3개월 내 한국조사단 파견
     - (기술협력) 일차적으로 5,200명의 기술자를 이란에 송출하고 이란의 기술훈련소 설치에 기술지원, 기술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를 4개월내 이란에 파견
     - (합작투자) 섬유 및 의류, 합성피혁, 조립식 주택자재 등의 제조를 위한 합작투자사업을 이란내 설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4개월내 테헤란에서 개최

75-0881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V.2 회의 준비자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조사/중동/경제협력/통상3
MF번호	M-33 / 13 / 1-276

제1차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준비자료임.

1. 상공부 작성 The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Ira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s

2. 제1차 한·이란 공동위원회 Protocol 요강안

3. 1975.10.25. 경제기획원 작성 동 위원회 개최 준비사항
   - 양국 대표자 명단(안), 일정(안), 사무국 구성(안), Checklist
   - 기타 참고사항
     - 공항출영 및 영송인사 명단, 국립묘지 참배인사 명단,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공항 환영 절차, 오찬 및 만찬행사 등

4. 1975.10.28. 경제기획원 작성 동 위원회 회의의제 및 교섭방침(안)
   - 기본목표
     -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의 우위성 확보, 한·이란 간 경제 및 기술협력의 유대 강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중화학공업 추진계획에 소요되는 외자 일부의 효과적 조달 모색
   - 기본 협력방안
     - 대이란 기본협력은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맺고 있는 일방적인 요청방식을 지양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도록 추진(한국 측: 주요물자 및 과학기술인력의 제공, 이란 측: 자본 및 자원 제공)
     - 양국의 경협은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측 제의사항을 package로 단일화하여 제시
   - 분야별 협력방안
     - 자본협력, 과학기술협력, 건설협력 등

5. 1975.11.6. 경제기획원 작성 제1차 한·이란 각료공동위원회 준비자료
   - 대표구성, 회의준비요령 및 의제, 회의문서, 회의준비를 위한 정부내 절차, 의제별 제의 및 교섭방침, 제의내용 비교, 일정(안)

6. 한국 측 작성 Construction Project of Fertilizer Complex for IFC in Shiraz, Iran

7. 1975.11.13. 한국 측 작성 Agenda for Working Group Meeting 등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5.11.17.-19. 전3권 (V.3 후속조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조사/중동/경제협력/통상3
MF번호 M-33 / 14 / 1-64

1975.11.17.~19.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이란 각료 공동위원회 후속조치임.

1. 외무부는 1975.12.10. 한·이란 간에 11.19. 서명된 제1차 각료공동위원회 합의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 및 산업분야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을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하고 이란 측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시멘트 및 비료 수출
     - 이란 측 수입업자 통보 요망
   - 이란 체류 한국기술자 수입 식품리스트
     - 동 식품구입에 따른 부과금에 특별배려를 하여 주도록 조치
   - 합작사업분야 자료 송부
     - 이란의 textile, 합성피혁, 조립식 주택자재의 수급계획 등 필요자료 송부 등

2. 경제기획원은 1976.1.9. 상기 합의의정서에 따른 소관분야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세부추진 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을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함.

3. 외무부는 1976.3.26. 동 합의의정서에 의거, 정부는 그동안 건설, 주택 및 어업협력 등 각 분야에 걸쳐 동 의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려하여 왔으나 이란 측은 이에 미흡한 실정임을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이란 경협강화를 위해 이란 당국에 동 의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을 지시함.

4. 주이란대사는 1976.4.5. 한·이란 합의의정서 추진을 위한 가나디안 이란 상무성 총국장과의 면담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무역실무회담 개최시기
     - 한국 측의 5월초 개최제의에 대해 동 총국장은 국제회의 개최여부 및 시기는 경제재무성에서 총괄조정 결정하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정기각료회담 직전에 실무회담을 개최함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표명
   - 동 총국장은 합작투자분야에 대한 이란 측 파트너는 아직 선정되고 있지 않다면서 결정되도록 곧 주선하겠다고 언급
   - 동인은 이란 체류 한국기술자의 주요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수출입규정에 반영했다고 언급한바, 품목별 세율인하 현황은 추후 보고예정

75-0883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 동경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15 / 1-133

1975년 중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3.4.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에 대표단 파견을 결정함.

- 경제기획원장관은 1975.2.23.~25. 방일 시 미야자와 일본 외상과 양국 경제협력 실무자회담을 3.10. 전후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 회의를 1975.3.12.~18. 동경에서 개최, 4개 대일본 경협사업 등을 다룰 예정
- 4개 대일본 경협사업 관련 교섭
  - 북평항 항만건설(45백만 달러), 농업개발 상품차관(50백만 달러), 충북선 복선화사업(35백만 달러), 여주댐 및 양수발전소 건설(85백만 달러) 등 차관사업에 대해 1974.11월 및 12월 각각 동경과 서울에서 실무자회담을 개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결과 동시에 사업규모, 자금원(OECF, EXIM Bank, 민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동 결정사항을 문서화하는 문제 논의
- 한국대표단(대표)
  - 이선기 경제기획원 경협차관보

2. 주일본대사관은 1975.4.7.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 개최와 관련 4.6. 아사히신문 등은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회의에서는 작년 가을 한국 측이 요청한 북평항 건설 등 약 2억 달러 상당의 엔 차관 공여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북평항 건설은 한국 측 요청을 전면적으로 받아드릴 것이나 농업개발은 한국 측이 요청한 5천만 달러를 하회할 것이라고 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75.9.6. 이선기 경제기획원 차관보 등 대표단은 9.5. 오전 주재국 외무성에서 개최된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의에 참석,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현황 브리핑과 일본 측과의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일본 수은에 융자신청 계류중인 여수석유화학 등 민간경제협력에 대해 일본 측 실무진의 이해를 촉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75.10.2. 주일본대사관에 1975년도 제2차 대일본 경협사업 실무자회담을 10.13.부터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주재국 측에 정식 제의하도록 지시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1차. The Hague, 1975.5.27.-28.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16 / 1-130

제1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가 1975.5.27.~28. 헤이그에서 개최됨.

1. 주네덜란드대사는 1974.11.19. Verhagen 네덜란드 경제성 대외경제국장 등과 오찬 시 동 국장이 내년 5월경에 헤이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대표단(수석대표)

-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3. 훈령 요지

- 상품차관(Program Loan) 제공 가능성, 중화학분야, 특히 제철 및 여천지구 석유화학사업에 대한 공공차관 도입 교섭
- 투자세미나 개최, 한·네덜란드 민간경제협력기구 창설 제의 등

4. 제1차 회의(1975.5.27.) 결과

-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경협문제를 토의
  - 네덜란드가 EC 회원국 중 대한국 직접 투자액이 제일 많은 점에 유의하고 투자보장협정 발효를 계기로 한층더 대한국 투자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대한국 투자증진을 위해 대표단이 준비한 33개 합작 희망사업과 투자가능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교 설명하고, 특히 포항제철 및 여천지구 석유화학공장 건설계획에 필요한 차관 제공에 협조 요청
- 투자세미나는 5.27. 김동휘 차관보, Warning 네덜란드 전실업인연합회 회장 공동주재하에 개최되었으며, 경제성 국장, 외무성 아주국장, 네덜란드 유력 실업인 60여명 참석

5. 제2차 회의(1975.5.28.) 및 제3차 회의(1975.5.28.) 결과

- 한·네덜란드 민간경제협력기구 창설 제의에 대해 네덜란드 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한국 측은 전경련으로 하여금 동 기구 창설을 위한 안을 작성 제출하기로 함.
- 중화학분야에 대한 투자조사단 파한 제의에 대해 네덜란드 측은 동 조사단 파견 필요성을 인정하고 창설될 상기 기구를 통해 파한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함.

75-0885

한·파라과이 [경제]혼성위원회 설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M-33 / 17 / 1-23

1975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혼성위원회 설치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7.29.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장관 초청으로 1975.7.27.~31. 공식 방한 중인 Raul Sapena Pastor 파라과이 외상이 7.28. 양국 외상회담 시 제의한 바 있는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 설치에 관해 각서를 보내왔으므로 이에 대한 회답각서(7.31.)를 교환함으로써 동 혼성위원회 설치에 합의할 것을 건의

2. 외무부 미주국은 1975.12.17. 동 혼성위원회 관련 아래 요지로 국제경제국에 통보함.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파라과이 정부는 동 혼성위원회 구성 관련, 자국 대표(외무성 관방장, 경제국장 등)를 임명하였다고 공한으로 통고
- 한국대표단 구성 및 통고는 주파라과이대사관 창설(김진하 공사, 1월중순경 부임 예정)과 관련해 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의견 문의

3.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5.12.24. 상기 문의에 대해 아래 요지로 미주국에 통보함.

- 파라과이 측이 임명한 위원의 직위를 감안, 한국 측도 이에 상응하는 counterpart를 위원으로 임명
- 동 위원회 운영 관련, 파라과이 측 제안각서에 의하면 동 혼성위원회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재정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도모하자는 의도이므로 부문별 소위원회를 설치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 제1차. Jeddah, 1975.8.10.-1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통상3
MF번호 M-33 / 18 / 1-326

제1차 한·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위원회가 1975.8.10.~12. 제다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신영 외무부차관
- 사우디 측: 알 바시르 기획성차관

2. 주요인사 면담

- 한국대표단은 사우디 체류 중 칼리드 국왕을 위시하여 나제르 기획상, 아와드 상공상, 사우드 외무담당 국무상 등 사우디 정부의 관계인사들을 두루 면담, 현안문제 해결추진 및 앞으로의 협력방안 등 논의
- 칼리드 국왕은 양국관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특히 사우디 진출 한국 건설업체의 업적을 높이 평가
- 쿠라이씨 중앙은행 총재는 회계년도(1975.7~76.6월) 중의 대한국 차관공여는 난망시되지만 문호는 열려있다고 하고 건설업자의 보증문제는 양국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사

3. 회의 내용

- 합동위원회 의제별 토의요지
  - (과학기술협력) 한국의 KIST와 같은 종합연구기관의 설립을 위해 자문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데 대해 양국 관계기관 간에 예비교섭을 갖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
  - (인력협력) 사우디 측은 한국 기술자 및 인력의 도입에 관해 노동사회성을 통한 관계 공공기관에서 희망사항을 파악 중으로 그 결과는 외교경로를 통해 회보해 주겠다고 함.
  - (의료협력) 사우디 측은 한국 정부의 간호원(20명) 파견계획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우디 병원 건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 보건성과 접촉을 갖기로 함.
  - (건설협력) 사우디 건설기술자를 초청,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한국 측 제의에 대해 사우디 측은 사의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를 희망

4. 평가 및 건의사항

- 제1차 합동위원회 개최 자체에 큰 의의가 있은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회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
- 사우디는 중요정책이 왕실과 각의를 중심으로 고위층에서 이루어져 차관이하 실무진들은 거의 결정권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합동위원회 수석은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 등

75-0887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제3차. Tunis, 1975.5.20.-2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19 / 1-130

제3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가 1975.5.20.~23. 튀니스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 튀니지 측: Mongi Kooli 외무담당국무상

2. 훈령 요지
   - 1974.7.19. 가서명된 한·튀니지 투자보장협정 조속 발효
   - 튀니지 연근해에 종사할 어선장 및 기관사 송출 교섭 등

3. 공동위 의제
   - 통상진흥문제, 의료·양잠·수공예분야 기술협력문제, 어업협력문제 및 투자보장협정 서명

4. **주튀니지대사관은 1975.5.23. 동 공동위는 1975.5.21.~23. 2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거쳐 회의의사록을 채택, 양측 수석대표 간 서명하고 폐회하였음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한·튀니지 투자보장협정 서명을 계기로 양국간 합작 등 투자증진에 노력하고 동 협정 발효를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함.
   - 한국 정부가 2차에 걸쳐 파견한 어업조사단의 보고를 검토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특히 연안해기사 송출, 간이선박수리소 합작, 원양어업 합작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어업협력협정 체결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함.
   - 통상증진
     - 양국의 통상정책을 설명하고 주요 수출입품목, 튀니지 수입제한품목 등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 향후 통상사절단 교환 및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기로 함.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차. Brussels, 1975.3.2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20 / 1-16

제2차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75.3.27. 브뤼셀에서 개최됨.

1. 대표단(대표)

- 한국 측: 김용주 한·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벨기에 측: A. Dubuisson 벨·한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특별참석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및 일행 5명, 송인상 주벨기에대사 및 대사관 관계관
  - 벨기에 측: 대외통상성 대표 4명

2. 회의 경과

- 벨기에 측 위원장의 개회사, 한국 측 위원장의 답사에 이어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한국경제개발계획,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정책연설을 함.
- 회의에 앞서 1975.3.26. 양측 회장단 간의 만찬에서 양국 민간업계간의 협력에 관한 기본전략 등이 충분히 토의되어 회의는 최단시간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측 대표들은 회의 내용에 만족 표명
- 1976년중 양측이 동의하는 일자에 제3차 합동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976년 회의부터는 룩셈부르크·벨기에 간의 경제동맹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위원회로 확장시킬 것에 원칙적으로 양해

3. 주요 개별접촉 사업

- (현대그룹) Coppee-Rust회사대표와 인도네시아지역의 요소 및 암모니아 비료생산을 위한 부선공장(floating plant) 건설 등에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KAL) Sabena 측과의 구체적 협조방안이 마련되면 항공협정 체결문제를 양국 정부당국에 제출하기로 합의

75-0889

한·프랑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차. Paris, 1975.3.1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21 / 1-8

제2차 한·프랑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75.3.17. 파리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및 동 경제협력위원회 회원 19명 등
- 프랑스 측: 프랑스·한 경제협력위원회 회원 등 41명

2. 회의 요지

- 장예준 상공부장관의 연설
- 토의 및 질의응답
- 공동성명 채택

3. 공동성명의 주요 요지

- 양 대표단은 급변하는 국제경제정세에 유의하고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계속 증진함으로써 국제적 경기후퇴로부터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
- 프랑스대표단은 양국간의 무역증진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 투자가를 위한 좋은 투자환경이 한국에 있음을 인식
- 한국대표단이 주요개발사업 특히 중화학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프랑스 대표단은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 민간부문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 대표단은 공업문제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선진관리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경영자 및 기술자의 프랑스 파견, 경제 및 시장정보 교환 등의 가능성에 관해 검토할 것에 합의

한·일본 민간 합동경제위원회

생산연도	1969-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33 / 22 / 1-29

제1회 한·일본 민간 합동경제위원회 회의가 1969.1.27.~29.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주요요지

- 양국은 경제개발에 있어 기술협력이 자본협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기술연수생 및 훈련생의 파견, 경제협력의 강화, 과학센터의 설립추진 및 공업소유권 문제 등에 관해 상호 의견교환
- 한국 측은 기술연수생의 수입 및 훈련생의 파견은 민간차원으로 추진하고 동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해 양국이 공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기술연수 및 훈련사업의 강화가 절실하며 또한 이의 촉진을 위해 양국이 공동기구의 설치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 한국 측은 경영협력의 증대를 위해 경영자 세미나의 정기적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일본 측은 양측 10명씩으로 경영자 세미나를 갖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한국에 경영상담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로 함.
- 한국 측은 이미 합의된 prototype 기술센터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작년중에 파견하기로 한 예비조사단을 올해 봄까지 파견하도록 촉구한데 대해 일본 측은 동 조사단이 곧 파견되도록 본국 정부에 촉구할 것을 다짐함.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제1회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 공동성명, 경제협력분과회 회의보고(1969.1.29.), 무역분과회 회의보고(1969.1.29.) 등도 수록되어 있음.

75-0891

한·모로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M-33 / 23 / 1-13

1975년 중 한·모로코 간의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관련사항임.

1. 주모로코대사는 1975.6.3.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귀국시 상공회의소 측과 협의한 바에 따라 한국대표단의 모로코 방문시 양국 합동경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정서 서명 및 합동회의 개최 등에 관해 주재국 상공회의소 측과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모로코대사는 1975.6.5. 카사블랑카에서 6.4. Abaakil 모로코 상공회의소 소장과의 면담결과 및 건의사항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상기 의정서 서명식에서 Abaakil 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한국 측 단장의 답사가 있을 예정
- 건의
  - 주재국 상공상을 예방할 예정으로 방한 초청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상공부장관 명의 초청 공한 지참 건의 등

3. 외무부는 1975.6.10. 주재국 상공상 방한 초청 문제는 예산편성 사정상 원칙적으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임을 주모로코대사관에 통보함.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차. Madrid, 1975.6.17.-18.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M-33 / 24 / 1-105

제1차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합동회의가 1975.6.17.~18.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됨.

1. 대표단(대표)

- 한국 측: 이학수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회장
- 스페인 측: Bages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회장

2. 주요 일정

- 6.17.
  - 스페인 상공회의소 예방
  - 합동회의 개최
  - 스페인 측 주최 만찬
- 6.18.
  - 스페인 산업공사 전시장 시찰
  - 합의의사록 및 공동성명 채택
  - 한국 측 주최 만찬

3. 공동성명서 주요 요지

- 양측 대표들은 한·스페인 경제통상관계 증진, 기술·공업협력 및 상호 정보교환 가능성을 검토함.
- 한국 측은 원양어업 합작회사 설립 및 냉동창고 합작설치 등을 제의함.
- 스페인 측은 페세타를 국제결제가 가능한 태환화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제의함.
- 양측은 상설사무국을 스페인 상공회의소 연합회와 서울 상공회의소 내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함.

75-0893

한·영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차. London, 1975.3.2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25 / 1-26

제2차 한·영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75.3.21. 런던에서 개최됨.

1. 대표단(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영국 측: Nichols 한·영국 경제협력위 회장

2. 대표단 주요 일정

- 3.20.
  - Shore 영국 통상장관 주최 리셉션
- 3.21.
  - 한·영국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 장예준 상공부장관 주최 리셉션
- 3.24.
  - 런던 상공회의소 회의 참석
- 3.25.
  - 버밍엄 상공회의소 방문 및 실업인 면담
  - 정주영 회장 주최 리셉션

3. 공동성명서 주요 요지

- 양국간 교역이 꾸준히 신장되어 왔음을 주목함.
- 양국간 교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청됨을 강조함.
- 자본협력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및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환영함.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 제5차. Melbourne(호주), 1975.4.8.-10.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M-33 / 26 / 1-204

정부는 1975.4.8.~10.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에 고재필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최두열 노동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호주, 일본 등 총 19개국, 61명 참가

2. 주요 토의의제

- 고용촉진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
- 아시아지역의 노동 및 관계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추진

3. 공동성명서 요지

- 제6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장 후보로 필리핀 노동장관을, 이사회 의장 후보로 호주를 지명, 지지함.
- 각국의 경제개발계획은 고용의 기회창출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 정책은 사회복지, 교육, 무역, 투자, 직업훈련, 농촌 및 도시의 개발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함.
- 세계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여성의 노동력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함.
- 교육 및 노동시장정책은 산업개발 및 농촌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와 부합되어야 함.
- 차기 제6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를 1976.8월 이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75-0895

제10차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 개최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3 / 27 / 1-12

제10차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가 1975년 중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월남 사태로 개최되지 못함.

1. 회원국 명단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얀마(구 버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월남, 캄보디아(구 크메르)(12개국)

2. 회의 개최 역사

- 제1차 회의(1966.4월, 일본 동경)
- 제2차 회의(1967.4월, 필리핀 마닐라)
- 제3차 회의(1968.4월, 싱가포르)
- 제4차 회의(1969.4월, 태국 방콕)
- 제5차 회의(1970.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제6차 회의(1971.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제7차 회의(1972.12월, 월남 사이공)
- 제8차 회의(1973.10월, 일본 동경)
- 제9차 회의(1974.11월, 필리핀 마닐라)

3. 한국의 참여문제

- 정부는 1967년 동 회의 참여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한국이 참여하여 동 회의를 확대, 발전시키게 되면,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 운영하고 있는 ASPAC(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함.

경제조사단 에콰도르 방문, 1975.6.12.-1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M-33 / 28 / 1-26

김명윤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조사단이 1975.6.12.~17. 에콰도르를 방문함.

- 경제조사단은 1975.6.16. Guillermo Rodrigues Lala 에콰도르 대통령을 예방하였는바, 동 대통령의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경제조사단을 파견해 준 한국 정부의 후의에 감사함.
  -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에콰도르의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자본 및 기술지원이 있기를 기대함.
  -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증진 및 경제협력이 확대되길 바람.
  - 에콰도르는 한국에 바나나, 카카오, 커피, 원유 등을 수출할 수 있고, 한국은 에콰도르에 시멘트, 철강재, 비료 등을 수출할 수 있음.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에콰도르의 정책은 변함이 없음.

75-0897

경제협력사절단 미국 및 일본 방문, 1975.2.12.-2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3 / 29 / 1-135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절단이 1975.2.12.~25. 미국 및 일본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한국 경제현황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 현안 문제의 타결
- 한·미국 경제협의회 연차총회(1975.2.13.) 참석 및 대한투자증진

2. 방문 결과

- 일반 경제문제
  - 한·미국·일본 각국 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격의 없는 의견교환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함.
  - 한국의 국제수지 대책을 포함하는 당면 주요정책을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일본 정부당국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
- 국제금융기구와의 현안문제
  -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과의 차관 교섭에서 성과를 거둠.
- 미국과의 현안문제
  - 미국 수출입은행 차관, 농산물 차관 등 교섭에서 성과를 거둠.
- 일본과의 현안문제
  - 일본의 농업개발 차관공여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 일본 측이 한·일본 대륙붕 문제를 최우선 비준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함.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이란 방문, 1975.7.4.-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1 / 1-86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1975.7.4.~8. 이란을 방문함.

1. 방문 일정

- 7.5.
  - 경제재무장관과 제1차 회담
  - 상무장관과 회담
- 7.6.
  - 국왕 및 수상 예방
- 7.7.
  - 외상 면담
  - 중앙은행총재 및 석유공사총재 면담
- 7.8.
  - 경제기획장관과 회담
  - 경제재무장관과 제2차 회담

2. 주요 방문성과

- 한국 측의 경제협력 제의
  - 양측 합동회의에서 이란 측에 정부의 경제협력 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정식 공한으로 제시
  - 이란 국왕과 수상은 한·이란 간 경제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제의에 대해 고무적으로 언급
- 한·이란 경제 및 기술의정서 서명
  - 남덕우 부총리와 이란 경제재무장관이 한·이란 경제 및 기술의정서에 서명
- 한·이란 공동위원회 개최 합의
  - 제1차 양국 공동위원회를 1975.9~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75-0899

김상영 국회의원 미국·중동 및 구주 순방, 1975.8.18.-9.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2 / 1-37

김상영 국회의원이 1975.8.18.~9.15. 미국, 중동 및 구주지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민간 경제협력 증진
- 각국 재계대표와 회동

2. 주요 방문 일정

- 이란(8.23.~24.)
  - 이란석유공사 총재, 테헤란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산업시찰
- 사우디아라비아(8.24.~26.)
  - 제다 상공회의소 회장, 산업시찰
- 프랑스(8.26.~28.)
  - 프랑스·한국 경협위 위원장, 국제교역구주센터 회장 면담, 산업시찰
- 독일(8.28.~30.)
  - 도이치뱅크 총재, 독일·한국 경협위 위원장, 독일개발공사 사장 면담
- 벨기에(8.30.~9.2.)
  - 벨기에·한국 경협위 위원장, 국회의원 면담, 산업시찰
- 네덜란드(9.2.~3.)
  - 네덜란드·한국 경협위 위원장, 네덜란드 대외경협위원회 회장 면담, 산업시찰
- 영국(9.3.~6.)
  - 영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영국·한국 경협위 위원장, 영국 대외경협위원회 회장, 런던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산업시찰
- 미국(9.6.~13.)
  - 워싱턴 상공회의소 회장, 국회의원 면담, 산업시찰

3. 주요 협의사항

- 경부선 전철화사업, 핵연료 재처리 가공시설,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사업, 포항제철 확장사업 등 경제협력분야
- 창원단지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창원기술훈련원 사업 지원요청
- 기계공업 투자조사단 파견 가능성 타진
- 항공노선 확대 개설 필요성 논의
- 유럽 각국에 설치된 민간경협위 간 횡적인 협조 가능성 논의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구주지역 순방, 1975.6.21.-7.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 구주1
MF번호 M-34 / 3 / 1-75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1975.6.21.~7.4. 구주지역을 순방함.

1. 국가별 주요 방문일정

- 네덜란드(6.21.~23.)
  - 수상 예방
  - 경제성장관, 외무부장관 면담
- 벨기에(6.23.~25.)
  - 부수상 겸 재무상, EC(구주공동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예방
  - 경제상 면담
- 독일(6.25.~28.)
  - 부수상 겸 외상 예방
  - 재무성장관, 경협성장관 면담
- 프랑스(6.28.~7.3.)
  - IECOK(대한국 국제경제협의체) 총회 참석
  - 산업시찰

2. 구주순방 후속대책

- 기본대책
  - 주EC 공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순방 시 각국에 제시한 경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 공관별 주요사항
  - 네덜란드: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기술협력
  - 벨기에: 신형원자로 및 핵연료 가공시설 차관, 기술훈련센타 설립,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구주합작금융회사 설립, 포항제철 제3단계사업
  - 독일: 재정차관 3개사업, 기술협력 5개사업,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포항제철 제3단계사업
  - 프랑스: 원자력발전 및 신규화력발전사업, 포항제철 제3단계사업, 석유화학제품검사소 및 화학촉매연구소사업

75-0901

Abdel-Rahman Ⅰ. El Kashif 이집트 주택재건성차관 방한, 1975.11.15.-1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34 / 4 / 1-24

El-kashif 이집트 주택재건성차관 일행이 1975.11.15.~19. 방한함.

1. 방한 경위

- 주카이로총영사는 1975.10월 이집트의 전후 복구사업으로 인해 건축자재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건축자재 입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가 1975.11월 El-kashif 차관의 일본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동인 일행을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방한 초청장을 주일본 이집트대사관에 전달함.

2. 외무부차관과 El-kashif 차관과의 면담(1975.11.17.)

- El-kashif 차관의 언급 요지
  -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전한데 대해 감명을 받았음.
  - 한·이집트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조만간 외교관계도 수립될 것으로 믿고 있음.
  - 양국간 교역이 증진되면 자연스럽게 양국민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것임.

한국의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구호용 의약품 원조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M-34 / 5 / 1-126

1974~75년 중 한국이 캄보디아(구 크메르)에 대한 구호용 의약품을 원조함.

1. 보건사회부는 1974.4월 APU(아시아의원연맹)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단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시한 대캄보디아 구호용 의약품 원조를 준비함.
   - 총 4,372,000원 상당의 의약품
     - 정부구입 의약품: 13종 3,000,000원 상당
     - 민간기증 의약품: 20종 1,372,000원 상당

2. 양측은 동 의약품을 한국 측이 홍콩까지 운송하면 캄보디아 측이 이를 인수해 가기로 합의하였으나, 캄보디아 측 사정으로 중간에 홍콩-프놈펜 간 Air Cambodge 운항이 취소됨.

3. 캄보디아 측은 1974.11월 한국 측이 지원의약품을 홍콩 대신 태국 방콕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국 측은 동 의약품을 1974.12월까지 방콕으로 수송하기로 결정

4. 한국 측은 1974.12월 한국에 남아있는 지원의약품 잔량(1,536.5kg) 및 홍콩에서 프놈펜으로 운송되지 못하고 홍콩에 남아 있던 의약품(1,836kg)을 모두 방콕으로 수송함.

5. 주태국대사관이 1975.1.16. 지원의약품 전량을 캄보디아 측에 전달함.

75-0903

한국의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긴급 원조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M-34 / 6 / 1-51

한국 정부는 1975.3월 중 대캄보디아(구 크메르) 긴급 원조 문제를 미국 및 6개 아시아 국가에 제기함.

1. 문제제기 내용(미국 측과 사전 협의 후 제기)

- 현 캄보디아 정부와 국민은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매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아시아의 자유국가들이 스스로의 이니셔티브로 캄보디아를 돕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도울 것을 호소하며, 우방국 및 평화애호국가들이 이에 호응하여 주기 바람.
- 지원 방법은 의약품, 식량, 의류 등 인도적 물품지원을 생각하고 있으며, 탄약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2. 주요국의 반응 요지

- 미국
  - 한국의 제의를 환영함.
  - 이러한 원조는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의 노력이어야 하되, 한국 정부가 관계국과 접촉함에 있어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은 무방함.
  - 원조물품은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과 탄약 등이 있음.
  - 미국은 원조물품의 수송을 담당할 용의가 있음.
- 말레이시아
  - 현 시점에서 말레이시아의 대캄보디아 원조는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일본
  - 이미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긴급 원조할 생각은 없음.
- 필리핀
  -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나, 필리핀 정부는 기여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함.

한국의 대차드 군복 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34 / 7 / 1-12

정부는 1975년 중 차드에 대해 군복을 원조함.

1. 주카메룬대사는 1975.8.12.~15. 겸임국인 차드 출장 이후 한국문제에 대한 차드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앰블런스 2대와 군복지(2천 벌 제조분)를 차드에 원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장관은 1975.10.14. 페루 리마에서 차드 외상 면담 시 군복 원조 등 협력의사를 차드 측에 표명하고, 10.15. 아래와 같은 조치를 주카메룬대사를 통하여 취할 것을 외무부차관에게 지시함.
   - 차드에 원조할 군복의 견본 1착을 차드 측에 제시함.
   - 군화 2,000족의 제작을 위해 차드 측으로부터 필요한 사이즈 및 견본을 받음.
   - 차드의 한국문제에 대한 각의상정 토의에 앞서 대통령, 외상, 각료들과 사전접촉하여 교섭을 시행함.
     - 아울러 차드 대통령이 차드 와상과 주유엔대사의 조기 방한을 승인하고 방한시기도 확정하도록 교섭

3. 외무부는 1975.10.17. 차드에 원조하기로 한 군복 견본 1착을 주카메룬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별송하는 군복 견본에 대한 차드 측의 동의를 받을 것
   - 동 견본에 대한 차드 측의 동의수락 즉시 항공편으로 군복을 발송 예정임.

4. 주카메룬대사관이 1975.10.21. 차드에 원조하기로 한 군복 견본을 접수함.

75-0905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무상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34 / 8 / 1-49

정부의 1975년 중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수재민 구호기금

- 보카사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이 수재민 구호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여 바자물품 판매전액을 기증하기로 함.
- 외무부는 1975.11월 바자회 개최 경비 3,573.53달러를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에 송부함.

2. 토산품 상점 건립 경비

- 보카사 대통령의 요청으로 몽금바 관광지대에 건립중인 토산품 상점 건립에 한국도 참여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는 1975.11월 토산품 상점 건립경비 10,000달러를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에 송부함.
  - 주중앙아프리카대사가 11.28. 동 건립자금을 동 대통령에게 전달

3. 설계전문가 파견

- 보카사 대통령은 1975.11월 자신의 별장에 동양식 누각 건립을 희망하면서 동 누각을 설계할 수 있는 한국설계사 1명 파견을 주중앙아프리카대사에게 요청함.
- 주프랑스대사관은 12.11. 프랑스대사관 수리작업을 위해 프랑스에 체재 중인 설계사 강석원이 12.20.경 중앙아프리카를 방문할 수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과학기술처는 12.20. 나상기 홍익대 이공대교수를 중앙아프리카에 파견할 설계사 후보로 추천함.

한국의 대이집트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34 / 9 / 1-34

정부의 1974~75년 중 이집트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외무부는 1974.9월 이집트가 필요로 하는 백신 등 의약품 기증사업을 인도적 견지에서 추진함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전달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74.9.15. 이집트 보건장관을 면담하여 양국간의 의료협력문제에 관해 협의함.
   - 동 협의 시 이집트 측은 한국으로부터 홍역 및 소아마비 백신을 기증받기를 희망함.

3.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 협의 후 홍역 및 소아마비 예방약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974.10.7. 주카이로총영사에게 통보함.

4. 주카이로총영사는 이집트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생산하는 백신 및 혈청의 상세한 목록을 송부해줄 것을 1974.12.10. 외무부에 요청함.

5. 외무부는 1975.1.23. 한국이 생산하는 백신 및 혈청 목록(국문)을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송부함.

6. 주카이로총영사는 1975.2.5. 한국이 생산하는 백신 및 혈청 목록(영문)을 송부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7. 외무부는 1975.2.24. 한국이 생산하는 백신 및 혈청 목록(영문)을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송부함.

75-0907

한국의 대피지 태풍 구호금 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M-34 / 10 / 1-15

정부의 1975년 중 피지에 대한 태풍 구호금을 원조함.

1. 외무부는 1975.5.9. 피지에 대해 태풍 구호금 10,000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주호주대사(피지 겸임)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주호주 피지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태풍 구호금 제공을 통보
   - 가급적 조기에 피지에 출장하여 구호금을 피지 정부에 직접 전달

2. 주호주대사는 1975.5.12. 주호주 피지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구호금 제공을 통보하고, 본인이 직접 피지를 방문하여 구호금을 전달할 예정임을 알림.

3. 주호주 피지대사관은 1975.5.26. 주호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아국의 구호금 제공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주호주대사가 6.10. 이전 피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고 알려옴.

4. 주호주대사는 1975.6.1.~6. 겸임국인 피지를 방문하여 Mara 피지 수상에게 구호금을 직접 전달함.

한국의 대그레나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미담당관 / 경제협력2
MF번호	M-34 / 11 / 1-95

정부의 1975년 중 그레나다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구급차

- 한국의 그레나다에 대한 원조물품인 구급차 2대가 1975.4.5. 그레나다에 도착함.

2. 경운기

- 외무부는 1975.5월 그레나다에 대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경운기 20대를 그레나다에 기증하기로 결정함.
  - 경운기 종류: DT85/M11(대동공업주식회사 제품)
  - 경운기 및 부속기계 가격: 30,326달러 상당
  - 운임 및 보험료: 21,929달러 상당
- 경운기 20대는 1975.7월 부산항을 출발하여 9월 그레나다 도착

3. 의약품

- 주베네수엘라대사(그레나다 겸임)가 1975.3월 그레나다에 대한 의약품 원조를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5월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여 그레나다에 의약품을 원조하기로 결정함.
  - 의약품 품명 및 수량: 앰피씰린캅셀 100갑 외 29개 품목
  - 의약품 가격: 약 10,000달러
- 동 의약품은 10월 그레나다 측에 전달

4. 수재 구호금

- 그레나다 정부는 1975.11.18. 자국이 최근 폭우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국 측에 알려오면서, 한국 정부가 수재 구호금을 보내줄 것을 호소함.
  - 한국 정부는 20,000달러의 수재 구호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재로 인한 통신 상태를 감안하여 양국 공관이 소재하는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11.26. 그레나다 측에 통보함.

75-0909

한국의 대자메이카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당담관
MF번호	M-34 / 12 / 1-44

정부의 1975년 중 자메이카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자메이카 외무성은 한국 측의 경운기 20대 기증 제의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내용의 공한을 1975.5월 주자메이카대사관에 보내옴.

2. 주자메이카대사는 1975.5월 자메이카에 대한 경운기 기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3. 외무부는 1975.6월 자메이카에 대해 경운기 20대를 기증하기로 결정함.
   - 경운기 종류: DT85/M11(대동공업주식회사 제품)
   - 경운기 가격: 28,280달러 상당
   - 운임 및 보험료: 11,252달러 상당

4. 자메이카에 대한 원조용 경운기 20대는 1975.7.28. 부산항을 출발하여 9.22. 자메이카에 도착함.

5. 자메이카 원조용 경운기 20대의 기증식이 1975.11.6. Belinfanti 자메이카 농업상과 주자메이카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됨.

한국의 대레소토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34 / 13 / 1-121

정부의 1974~76년 중 레소토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1974년도
   - 대레소토 경협자금 50,000달러
     - 주케냐대사(레소토 겸임)가 6월 레소토 수상에게 전달

2. 1975년도
   - 인쇄기 1대(12,000달러 상당)
     - 주케냐대사가 8월 레소토 수상에게 전달
   - 트랙터 2대 구입비 18,000달러
     - 주케냐대사가 9월 레소토 수상에게 전달
   - 의료협력기금 20,000달러
     - 주케냐대사가 9월 레소토 수상에게 전달

3. 1976년도
   - 의료협력기금 30,000달러
     - 주케냐대사가 2월 레소토 보건상에게 전달

75-0911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마스게임 교관단 파견지원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M-34 / 14 / 1-78

정부의 1975년 중 라이베리아에 대한 원조내용임.

1. 외무부는 1975.10월 라이베리아가 제30차 유엔총회 시 한국문제에 관한 우방국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가담함에 따라 라이베리아에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원조 내역
  - 마스게임교관단 파견: 교관 3명을 6개월간 파견
  - 차량 지원: 버스 2대, 지프차 1대
- 경위
  - 외무부장관이 1975.10.6. 유엔에서 라이베리아 외상 면담시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1976.1.4.) 행사지원 약속
  - 라이베리아 외상은 1975.10.9. 주라이베리아대사에게 행사지원 내용을 공식 요청
- 파견 교관단 명단
  - 윤우석: 도수체조 담당
  - 최희남: 행진훈련 담당
  - 김경수: 기계체조 담당

2. 1975.10월 라이베리아에 파견된 마스게임교관단의 활동은 아래와 같음.

- 라이베리아 학생마스게임 지도(1975.10.30.~76.1.5.)
  - 교관단이 라이베리아 체육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을 직접 지도
- 라이베리아 체육교사 지도(1976.1.19.~2.13.)
  - 김경수: 체조일반 지도
  - 최희남: 조립 및 조형기술 지도
  - 윤우석: 체육교육일반 지도
  - 공동 : 정리 지도
- 학생마스게임 실시(1976.1.6.)
  - 합동체조
  - Highlight Scene No.1
  - Highlight Scene No.2

한국의 대라오스 원조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M-34 / 15 / 1-148

정부의 1974~75년 중 라오스에 대한 원조내용임.

1. 외무부는 1974.12.8.~11. 방한한 라오스 경제사절단과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조를 라오스에 제공하기로 결정함.

- 라오스 피난민 구호를 위한 나일론 원단 50만 야드 제공
- 라오스가 원하는 분야에 10명의 라오스 기술연수생 접수

2. 외무부는 라오스 경제사절단 귀국 후 주라오스대사관을 통하여 라오스 측과 협의한 결과, 나일론 원단제공에 관해 1974.12월말 합의함.

- 원단 종류
  - Nylon Taffeta 175, plain dyed
- 운송 방법
  - 한국 측이 방콕까지 운송하면 라오스 측이 방콕에서 인수

3. 외무부는 1975.1.23. 라오스에 공여될 나일론 원단 50만 야드 중 제1차분 83,988야드를 부산항을 통해 발송함.

4. 한국의 라오스에 대한 원조물자 전달식이 1975.4.11. 라오스 외무성에서 거행됨.

- 전달 원조물자
  - 라오스 피난민 구호를 위한 나일론 원단 50만 야드 중 제1차분 83,988야드
- 전달 방법
  - 주라오스대사대리가 라오스 외무차관에게 전달
- 전달식 참석 라오스 고위인사
  - 외무장관, 국방장관, 외무차관, 재무차관, 경제차관 등 고위인사 약 20명

75-0913

한국의 대모리셔스 태풍 구호금 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6-39 / 20 / 1-15

정부는 1975년 중 모리셔스에 대한 태풍 구호금을 원조함.

1. 영국 주재 모리셔스 고등판무관실은 1975.2.17. 모리셔스가 최근 태풍(1975.2.6.~7.) 피해로 난민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비상시기상태이므로 예정되었던 1975년도 모리셔스 독립기념 경축행사(3.12.)는 취소가 확실시 됨을 주영국대사관에 알려옴.

2. 주영국대사는 1975.2.21. 모리셔스의 태풍 피해 및 구호사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인명 피해
  - 사망 10명, 중상 6명, 이재민 수천명
- 재산 피해
  - 도로, 교량, 비행장, 가옥 침수
  -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호텔 손상
  - 수출총액의 86%를 차지하는 사탕수수 재배 피해(사탕수수밭 전체의 1/5)
- 주요국의 구호사업 현황
  - 영국: 10,000파운드 현금 및 의약품 원조, 해군의 피해복구작업 직접 지원
  - 미국: 해군의 피해복구작업 직접 지원
  - 소련: 긴급구호원조 약속

3. 외무부는 1975.2월말 모리셔스에 아래와 같이 구호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함.

- 구호금액
  - 10,000달러
- 전달 방법
  - 1975.4.9.~12. 최경록 특사의 모리셔스 방문 시 직접 전달

4. 모리셔스를 방문한 최경록 특사는 1975.4.10. 람구람 모리셔스 수상을 면담하고 최근의 태풍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동정의 뜻과 구호금 10,000달러를 전달함.

한국의 대르완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34 / 16 / 1-84

정부의 1973~75년 중 르완다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소학교 건물 10동 건립

- 르완다 정부는 1972.12.19. 한국의 원조사업으로 소학교 건물 10동 건립비 10만 달러 제공을 요청
- 정부사절단의 르완다 방문시(1973.3.26.~4.1.) 한국 측이 르완다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지지를 조건으로 동 원조제공을 시사
- 르완다 외상이 1975.4월 르완다를 방문한 노신영 외무부차관에게 동 사업을 요청

2. 기타 원조요청

- 르완다 외상이 1972.10월 주르완다대사대리에게 요청
  - 호텔 건립(객실 40~50개)
  - 키갈리공항건물 건립
  - 종합병원 건립(침대 50개)
  - 신발공장 건립
- 르완다 외상이 1973.7월 정부사절단에게 요청
  - 도로건설 및 관광분야 원조
- 르완다 외상이 1975.4월 노신영 외무부차관에게 요청
  - 도로건설(길이 130km)
  - 지방병원 건립(침대 250~500개)

75-0915

한국의 대튀니지 어망 기증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34 / 17 / 1-41

정부는 1973~75년 중 튀니지에 대해 한국산 어망을 기증함.

1. 주튀니지대사는 1973.3.13. 마스무디 튀니지 외상이 한국과의 어업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 한국산 어망을 튀니지에 지원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73.4.12. 동 어망 구입비 12,000달러를 주튀니지대사관에 송금함.

3. 주튀니지대사는 주재국 Union De Ganques Suisses상사로 하여금 남양어망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동 상사는 1973.6.28. 신용장을 송부함.

4. 남양어망은 1973.9.24. 한국산 어망 122개를 선적·송부하였으며, 동 어망은 12월 튀니지에 도착함.

5. 마스무디 외상이 1974.1월 튀니지와 리비아 통합문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외상직을 사임함에 따라 동 어망의 수령자가 부재하게 됨.

6. 주튀니지대사는 1974.2월말경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동 어망을 농업장관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함,

7. 동 어망은 1974.5.2. 한국 정부 명의로 튀니지 농업성에 기증됨.

한국의 대통가 폭풍우 피해복구 원조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M-34 / 18 / 1-41

정부는 1975.1월 겸임국인 통가의 폭풍우 피해복구를 위한 원조를 검토함.

1. 통가 정부가 1973.4월 폭풍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한국의 원조제공을 요청해 옴.

2. 주뉴질랜드대사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의 원조제공이 가능하도록 외무부에 건의함.

3. 동 피해복구를 위하여 외국 정부가 제공한 원조액은 아래와 같음.
   - 유엔
     - 12,000달러
   - 서사모아 정부
     - 약 5,260달러 상당
   - 호주 정부
     - 약 32,450달러 상당
   - 뉴질랜드 정부
     - 약 108,770달러 상당

75-0917

한국의 대터키 지진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M-34 / 19 / 1-41

1975.9.6. 지진피해를 입은 터키에 대한 정부의 원조내용임.

1. 터키 중동부지역에서 1975.9.6. 발생한 대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 및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 피해 상황(9.11.현재)
  - 사망자 약 3,000명
  - 행방불명 약 1,600명
  - 주거 및 식량문제 심각
- 주요국 원조상황(9.11.현재)
  - 미국: 25,000달러
  - 일본: 10,000달러(별도 경제인 구호금 2,000,000엔)
  - 서독: 천막 2,000매, 담요 3,000매
  - 네덜란드: 20,000달러

2. 한국이 한·터키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터키 지진 피해의 심각함을 감안하여 1975.9~10월 제공한 원조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구호금 지원
  - 10,000달러
- 구호약품 지원(10,000달러 상당)
  - 페니실린 주사액: 3,000병
  - 디아제팜정: 600병
  - 키오리다진정: 100병
  - 봉산연고: 200개
  - 백색바셀린: 200개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군복 원조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M-34 / 20 / 1-85

정부는 1975~76년 중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에 대해 군복을 원조함.

1. Zerbo 부르키나파소 외상은 1975.4.23.~26.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동국을 방문한 노신영 외무부차관에게 도로건설용 공병대 군복 4,000벌의 긴급 원조를 요청함.

2. 정부는 1975.4월말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요청한 군복 4,000벌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군복제작업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군복제작에 들어감.

3. 한국에서 제작된 군복 4천 벌은 2차례에 걸쳐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함.
   - 제1차분 2,000벌(100상자): 1975.8.29. 도착
   - 제2차분 2,000벌(100상자): 1975.12.10. 도착

4. 군복 4천 벌의 정식 인도식이 1976.1.27. 부르키나파소 외무성에서 거행됨.
   -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인사말에서 부르키나파소 측이 군복 4천 벌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이번 원조를 계기로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Zerbo 외상은 한국 측의 우호적인 협력에 감사하며 앞으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특히 동 군복이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져서 크게 만족한다는 취지의 답사를 함.

75-0919

대월남 지원 잔여 구호물자 처리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M-34 / 21 / 1-92

정부의 1975년 중 월남에 대한 잔여 구호물자 처리 관련사항임.

1. 1975.3월 월남 정부는 공산군의 침공이 증가함에 따라 월남 북부지역의 전시난민을 후방지역으로 긴급후송하기 위한 수송단 파견 및 난민구호 지원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호소함.

2. 한국 정부는 1975.4.8. 국무회의에서 전시난민의 후방지역으로의 긴급후송 및 난민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호물자(총 14억 8천 5백만원 상당)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정부 조달 기금으로 소요 물자를 구입함.

3. 해군함정에 의해 월남에 수송된 구호물자는 1975.4월 상당량이 월남 측에 전달되었으나, 한국 정부가 급변하는 군사정세를 감안하여 해군함정을 4.26. 철수함으로써 월남 측에 인도되지 않은 구호물자는 본국으로 회송됨.

4. 한국 정부는 1975.6.20. 국무회의에서 회송된 구호물자를 매각 처분할 경우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일반 행정부처의 소요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각 부처에 무상관리 이전하기로 결정함.

대아프리카 남북한 원조공여 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M-34 / 22 / 1-42

1975년 중 남북한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공여 현황에 대한 분석내용임.

1. 한국의 원조공여

- 한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의 형태는 크게 나누어 금액으로 표시되는 자금지원 또는 물자지원과 금액으로 적절히 표시될 수 없는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기술훈련생 방한 초청 등의 인적 지원이 있음.
- 인적요소는 제외하고 물적요소에 국한할 때, 한국은 1973~75년 총 19개국(56회)에 대하여 17,05,500달러의 원조를 제공함.
  - 자금지원: 총 16개국(29회)에 대하여 1,118,600달러
  - 물자지원: 총 13개국(27회)에 대하여 586,900달러 상당

2. 북한의 원조공여

- 전통적 사회주의국가에 대하여 계속적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 제의 및 시행
  - 농업원조, 공장건설, 건물건립, 군사원조, 도로포장 차관제공 등
- 연도별 원조대상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1973년도: 카메룬, 시에라리온 등
  - 1974년도: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 1975년도: 에티오피아, 감비아, 니제르, 세네갈 등

3. 남북한 원조공여의 차이

- 규모 측면
  - 한국은 소규모 자금 및 물자지원에 치중
  - 북한은 차관공여 등 대규모 원조사업 시행
- 제공방식 측면
  - 한국은 상주대사 또는 특사의 약속에 따라 소규모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가 단기적임.
  - 북한은 사업추진을 위한 협정 체결, 사전조사, 사업진행 등 과정을 통해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가 장기적임.

75-0921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23 / 1-57

1975년 중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관련사항임.

1. Yeutter 미국 농무부 차관보는 1975.1.14.~16. 방한하여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문제를 협의함.

2. 1973년도 PL480(1)에 의한 농산물도입협정에 대한 수정협정이 1975.2.26. 한·미국 간에 체결됨.
   - 수정협정은 현미 60천M/T(22,800천 달러)을 122.5천M/T(46,800천 달러)으로 증액수정하고, 소맥 600천M/T(53,700천 달러)을 435천M/T(38,900천 달러)으로 수정

3. 주미국대사관은 1975.3.11. 미 농무부가 PL480협정에 따른 미곡 도입 PA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고 보고함.
   - 번호 : PA 24-759
   - 수량 : 미곡 62천M/T
   - 금액 : 24,000천 달러
   - 계약기간 : 1975.3.18.~3.31.
   - 선적기간 : 1975.3.18.~5.31.

4.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1975.3.12. 미국의 PL480 원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 요지의 기사를 보도함.
   - 미국의 PL480 농산물 원조가 한국을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만들었을 뿐아니라 한국 국민의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옴.
   - PL480 농산물 원조는 한국의 국제수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기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함.
   - 그러나, 이러한 원조가 한국의 농업개발을 둔화시키고, 최종 혜택은 미국 농민에게 간다는 비판이 있음.

한·미국 해저유전 개발장비 건조합작 투자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24 / 1-25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대한조선공사와 미국 해저유전 개발장비 제조회사인 Marathon Mfg.Co.가 참여하는 선박건조계약이 동 총영사관의 주선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다고 1975.9월 외무부에 보고함.

1. 계약당사자
   - A.P. Moller(덴마크) : 선박발주자
   - Marathon Mfg.Co.(미국): 자재공급
   - 대한조선공사(한국) : 선박건조

2. 건조선박 종류
   - Santa Fe Marina Class Rig(시추선)

3. 건조 수량
   - 1척(시험건조)

4. 계약 금액
   - 총 17,750천 달러
     - 현금 지불 : 8,750천 달러
     - 선주 자재공급: 9,000천 달러

5. 선박인도일
   - 1976.7.31.

75-0923

프랑스 공공차관 도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25 / 1-91

1975년 중 프랑스 공공차관 도입 관련사항임.

1. 임계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차관계약이 1975.2.15. 체결됨.

- 추진 경위
  - 1974.3월 부총리 프랑스 방문 시 프랑스 측에 차관공여 요청
  - 1974.6월 프랑스 측에 사업계획서 제출
  - 1974.10월 프랑스 측이 예비조사 실시
  - 1974.12월 타당성 조사 차관에 대한 국회동의 획득
  - 1974.12월 프랑스 정부가 BNP(Banque Nationale de Paris) 및 Sogreah사와 협의
- 차관사업 요지
  - 차주 : 대한민국
  - 사업주 : 건설부
  - 차관공여자 : BNP
  - 차관형식 : 용역회사인 Sogreah사에 지급하되 구매자 융자형식을 취함.
  - 차관금액 : 5,000천 F.F.
  - 차관조건 : 이자율 연 6.4%, 상환기간 5년

2. 외무부는 1975.3.15. 제2차 포항제철 확장사업을 위한 차관도입 문제와 관련, 아래와 같이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과 내외자 조달상의 문제점 및 철강재 수요의 감소 등을 감안, 제2제철 건설계획을 1977년까지 보류하기로 함.
- 제2제철 건설을 보류하는 대신 포항제철을 현 2,600천 톤/년 규모확장에 이어 8,500천 톤/년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기로 함.
- 제2차 포항제철 확장사업을 위한 외자조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통보할 예정임.

대일본 농업개발 및 북평항 건설차관 도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26 / 1-9

1975년 중 대일본 차관도입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8.29.자 교환각서를 통해 합의된 대일차관사업에 대한 차관계약이 조속 체결되도록 교섭할 것을 1975.12월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농업개발 차관(110억 엔)
  - 일본수출입은행이 제시한 차관계약 초안의 일부 수정을 교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원안 수락
- 북평항개발 차관
  - 일본 측이 일본 측 차관계약서 초안를 1975.12월중 송부하겠다고 약속

2. 상기에 대한 일본수출입은행 측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농업개발차관
  - 계약서 발효에 대한 정부승인은 국영인 일본수출입은행의 운영 성격상 행위요건
  - Japanese Authorized Foreign Exhange Bank는 외국환 업무 취급 허가를 받은 일본 국내은행을 지칭하며 일본의 모든 대외차관은 이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한국만 예외 인정은 곤란
- 북평항개발 차관
  - 차관협정 최종문안이 1975.12.12. 기금위원회에 상정될 예정
  - 차관문안이 확정되는대로 전달 예정

3. 주일본대사관은 1975.12월 농업개발 차관 협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고려, 동 협정문안을 원안대로 수락함을 통보함.

75-0925

영국의 공공차관 도입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27 / 1-159

1974~75년 중 영국의 공공차관 도입 관련사항임.

1. 한국 외환은행은 1975.2.17. 영국 Lloyd Bank와 차관계약을 체결한바, 동 차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액 : 4백만 파운드
   - 도입품목 : 영국에서 제조되는 Plant와 Equipment 도입 및 용역비 충당(구체적 도입품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 차관금리 : 연 7%

2. 서울대학교가 1975.9월 현재 영국 Abmtm사(Associated British Machine Tool Makers Ltd.)와 교육용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을 위해 5백만 달러의 차관 및 물품공급 계약체결을 추진중인바, 동 Abmtm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 : 1917년
   - 자본금 및 보유고 : 약 4백만 파운드
   - 연간 총 매상고 : 약 11백만~16백만 파운드

3. 서울시는 영국 Simon-Hartley사로부터 중랑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도입을 추진한바, 동 차관 협정안이 1975.3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음.

AID(미국국제개발처) 주택개량사업 차관도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28 / 1-40

1975년 중 USAID(미국국제개발처) 차관도입 관련사항임.

1. 제3차 USAID(미국국제개발처) 주택 개량사업 차관(25백만 달러) 도입을 위한 정부지불보증 협정과 차관계약이 1975.7.15. 서명됨.

2. 상기 정부지불보증협정 및 차관계약의 서명자는 아래와 같음.

- 정부지불보증협정
  - 한국 측: 함병춘 주미국대사
  - 미국 측: Daniel Parker 미국 AID 차장
- 차관계약
  - 한국 측: 양택식 주택공사 사장
  - 미국 측: Bryce Curry 뉴욕 연방주택은행장 및 Raymond W.Elliott 보스턴 연방주택은행장

75-0927

벨기에의 상업차관 도입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29 / 1-53

1974~75년 중 벨기에의 상업차관 도입 관련사항임.

1. **50C/S Group은 1975.5월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하여 경부선 전철화사업을 위한 정식차관 제의 서류를 경제부총리 앞으로 제출한바, 철도청장은 1975.6.5.~6. 브뤼셀을 방문, 50C/S Group 대표 및 은행그룹대표를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함.**
   - 철도청장은 차관제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은 6.20.경 통보 예정이라 하고 단계별 추진 및 수원-구로 간 전철 참여 가능성 등을 타진함.
   - 50C/S Group 측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임.
     - 자신들의 제의는 수원-부산 구간을 3구간으로 구분, 5년간 건설하는 것으로 차관부담도 이에 따라 발생
     - 전체 경부선을 고려함이 없이 일부 구간만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
     - 내자용 차관은 한국 정부에 의한 동 사업우선순위 확인이 있어야 확보 가능

2. **주벨기에대사관은 주재국 보증당국으로부터 인천제철 확장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선 순위에 관해 질의받았다고 보고한바, 경제기획원은 1975.10월 인천제철 2단계 사업추진은 현 단계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함.**

프랑스의 상업차관 도입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30 / 1-27

1974~75년 중 프랑스의 상업차관 도입 관련사항임.

1. 대한항공은 1974.9월 프랑스 Air Bus Industrie사와 Air Bus 4대 도입계약을 체결함.

- 동 Air Bus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보증담당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1975.2월 프랑스 측 임대자와 임차료 지급에 따른 대외외화표시 지급보증에 합의함.

2. 외무부는 한국전력의 3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등에 관한 주프랑스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1975.4월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상공부에서 장기 전원개발 계획상 300MW급 화력발전소를 1977년 착공, 1980년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동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방침 등에 관하여는 고려한바 없다고 함.

75-0929

여천지구 석유화학 관련 공장건설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 문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31 / 1-25

1975~76년 중 여천지구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 관련사항임.

1. 호남 에틸렌사는 영국으로부터 25백만 파운드의 차관도입을 추진함.

- ECDG(영국 수출신용보증기구)은 1975.7월 동 차관 사업과 이의 보증에 대하여 잠정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급상인 Mummus사와 차관계약자인 Lazard Brothers에 이를 통보함.
- 동 차관조건은 3년 거치 8년 상환, 연리 8%임.

2. 일본 통산성 경제협력부장은 1975.2월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여천 석유화학건설을 위한 대일 상업차관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동 프로젝트 수출계약이 적절하면 총 320백만 달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옴.

- 1976년: 현금 20백만 달러, 연불 20백만 달러
- 1977년: 연불 220백만 달러
- 1978년: 연불 60백만 달러

대이라크 건설업체 진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32 / 1-59

1974~75년 중 대이라크 건설업체 진출 관련사항임.

1. 건설부는 1974.6.7. 외무부에 한국 건설업의 이라크 진출에 관해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5.7월 및 11월 아래와 같이 회보함.

- 한국 건설업자의 이라크 진출은 양국간 관계 긴밀화를 위해 유익할 것임.
  - 정부는 대아랍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이라크와도 가능한 한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대를 적극적으로 모색중
- 다만, 이라크는 북한과 단독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어 한국인의 이라크 진출시 이라크 주재 북한요원의 한국인에 대한 책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 신변안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라크 주재 우방국 공관과 한국인 신변 안전보장에 관해 사전협의
  - 관계자가 출국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보안교육을 받도록 함.

75-0931

이란 코람샤항만 확장공사 참여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4 / 33 / 1-14

1975~76년 중 이란 코람샤항만 확장공사 관련사항임.

1. 주이란대사관은 1975.9월 주재국 코람샤항만 확장공사에 참여중인 신원개발이 동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조치를 건의함.

2. 외무부는 1975.12월 제일은행이 신원개발에 대하여 1975.11~12월 5차례 외화지급보증을 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이란대사관에 통보함.

대이란 인력 진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중동
MF번호	M-34 / 34 / 1-50

1975년 중 대이란 인력 진출 관련사항임.

1. 이란 비료제조회사가 발주한 비료공장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Davie-Powergas 사는 동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기술인력 2,000명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1975.4월 동건을 코트라 런던무역관과 협의함.

- 상공부는 본격적인 인력 진출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교섭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주영국대사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동 대사의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런던무역관에 지시함.

2. 노동청은 1975.12월 항공정비사 해외송출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항공기술요원의 해외진출은 인력만의 진출보다는 용역개발을 통한 진출이 우선되며, 외국 항공회사가 한국 항공기술요원의 채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내 항공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원이 아닌 기술자 송출을 원칙으로 함.
- 이란항공이 1975.8.20. 서울에서 대한항공 취업자를 모집한 것은 직업안정법 제15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부분이 실무경험 5년 이상의 중견정비사들로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요원이므로 이들의 이란항공 취업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 그러나, 항공기술요원들을 국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항공사가 이란항공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진출이 될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함.

75-0933

대사우디아라비아 인력 진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동/조약
MF번호	M-34 / 35 / 1-79

1975~76년 중 대사우디아라비아 인력 진출 관련사항임.

1.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노동청이 작성한 한·사우디 정부간 노무협정 초안과 인력 진출 합의각서 초안에 대한 외무부 관련국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 통상국은 1975.7월 동 초안 2건에 대해 이견 없음을 회보함.

2. 1975.8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된 제1차 한·사우디 합동위원회에서 양국간 인력협력 문제가 토의됨.
   - 한국 측은 사우디 개발계획 수행에 참여할 기사, 기술자, 숙련공, 의사, 간호원, 교사 등 분야에서의 소요인력 모집에 있어서 사우디에 협력할 용의를 표명함.

3. 한·사우디 양국은 한국간호원의 파견을 위하여 양국간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바, 외무부 통상국은 1975.7월 동 양해각서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 관련국의 의견을 문의함.

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는 1975.10월 사우디 측 담당자(CPO 서부사무소장)와 한국의 대사우디 의료요원 지원문제를 협의한바, 양측은 종래 추진하여온 의료요원 취업 경험에 비추어 아래 절차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봄.
   - 일반 고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택보장, 급료 및 대우조건 제시, 신속 집행이 가능한 방안을 채택함.
   - 학력·경력등 한국측 구비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사우디 관계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방한, 한국의 응모자를 면담하고 고용여부를 결정함.

한·프랑스 간 아주공과대학 운영 및 장래문제 협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공보문화
MF번호 M-34 / 36 / 1-98

제3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 회의(1975.5월, 파리) 합의에 따라 아주공과대학의 활동상에 대한 제1차 교육평가와 아주공과대학의 현재 운영상황 및 장래문제에 관한 한·프랑스 정부대표 간 협의회가 1975.10.22.~23.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문교부 교육시설국장, 문교부·외무부·과기처 담당과장 및 아주공과대학 관계자
- 프랑스 측: 문교장학총감, 낭트대 교수, 주한 프랑스대사관 참사관

2. 주요 토의내용

- 아주공과대학의 활동상에 대한 제1차 교육평가
  - 프랑스 측은 교육, 기재, 시설, 학생 선발, 한·프랑스 교수 간 분위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학교 당국과 유신재단 간의 책임분담 불명확, 기자재관리의 배려 부족 등을 지적
- 아주공과대학의 현재 운영상황 및 장래문제 연구 검토
  - 프랑스 측은 한국 문교부와 유신재단의 계속 참여가 보장된다면 프랑스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

3. 채택된 합의의사록 내용

- 학교행정에 대한 재단 측의 불간여
- 기존학과의 인원증원이나 학과신설은 프랑스 측과 협의하여 한국 정부가 결정
- 프랑스 정부는 학과 신설 결정시 대표단을 파견, 한국 측과 신설학과 지원문제 협의

75-0935

한·프랑스 촉매화학연구실 설립 사업추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4 / 37 / 1-46

1973~75년 중 한·프랑스 간의 촉매화학연구실 설립을 추진함.

1.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의 요청에 따라 1973.8월 한국의 KIST와 프랑스의 IFP 간 협력에 의한 촉매화학연구실을 KIST에 설립하기 위한 계획서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제출함.

2. 주프랑스대사는 1975.9월 프랑스 IFP(석유화학연구소) 측과 접촉 결과,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화학촉매연구실 설치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바, 과학기술처는 1975.10월 동 사업계획서(수정본)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제출함.

니제르 도자기공장 건설 원조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경제조사/서부아프리카
MF번호	M-35 / 1 / 1-288

1973~76년 중 니제르 도자기공장 건설 원조 관련사항임.

1. 한국과 니제르는 구상서 교환을 통하여 한·니제르 도자기공장 건설협정(1972.12.11.발효)의 유효기간을 1976.12.10.까지 연장함.

2. 1975.12.현재 니제르 도자기공장 건설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은 아래와 같음.
   - 현황
     - 1972.12월 한·니제르 도자기공장 건설협정 발효
     - 1974.12월 공장 기공식 거행
     - 1975.6월 한국 건축전문가 2명, 검수전문가 1명, 시설전문가 1명 파견
     - 1975.8월 공장 건물 완공
     - 1975.10월 한국 시설전문가 및 검수전문가 각1명 파견
   - 향후 계획
     - 1976.3월 기계 설치 완료
     - 1976.4~7월 시운전
     - 1976.8~12월 운전 기간
   - 사업규모
     - 한국 원조 50만 달러, 니제르 부담 18.5만 달러(대지·건물 제공)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니제르 겸임)는 니제르 군사혁명 제2주년(1977.4월)에 즈음하여 동 공장 준공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함.

75-0937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75.8.4.-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5 / 2 / 1-36

제5차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실무자회의가 1975.8.3.~7. 서울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형기 과기처 기술협력국장
- 일본 측: 기노시다 도루 과학기술청 진흥국장

2. 훈령

- 원자력의 실용화 등 제안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분야에서 전문가 교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함.
- 연구기관 간의 제휴로 장래 계속적인 협력체를 갖출 수 있도록 협의함.
- 제5차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제6차 실무자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를 협의함.

캄보디아(구 크메르)의 기술공여 요청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M-35 / 3 / 1-35

1973~75년 중 캄보디아(구 크메르)의 기술공여 요청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4년도 대외기술공여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요업분야 기술훈련생 1명을 초청하고 전문가 1인의 캄보디아 파견을 계획함.

2. 주한 캄보디아대사는 1975.4월 외무부앞 공한으로 농수산 3개 분야의 캄보디아 훈련생을 초청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 아주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4.17. 붕괴됨에 따라 캄보디아 훈련생 초청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국제경제국에 제시함.

75-0939

대이집트 기술공여 문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5 / 4 / 1-23

1974~75년 중 대이집트 기술공여 관련사항임.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75.4.20. 주재국 공업장관 및 재건장관을 면담, 이집트 전후 복구사업 건을 협의함.

- 재건장관은 이집트가 수리개간사업, 각종 공장건설(시멘트, 비료, 방직 등), 광물개발, 관광, 어업, 목축업, 경제개발 하부구조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건설장관은 이집트를 방문하는 한국의 건설업자 및 수산회사 대표들을 직접 면담하여 상호협조 가능성을 토의하고 싶다고 함.

2. 외무부 구아국은 1974.5.1. 대이집트 기술협력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국제경제국에 제시함.

- 이집트에 대한 기술분야지원은 동국과의 관계개선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함.
- 기술원조는 이집트가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이 제공 가능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양국간의 종합적인 협의나 양해사항에 따라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이란 간의 정유공장 합작건설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M-35 / 5 / 1-135

1973~76년 중 한·이란 간의 정유공장 합작건설 관련사항임.

1.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이란 방문기간 중 1975.10.13. 한·이란 정유공장 합작을 위한 합의각서 및 부속서류에 서명함.

2. 한·이란 정유공장 합작 건설 추진 경위 및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추진 경위
- 1973.12월 쌍용은 합작건설계획서 제출
- 1974.5월 상공부는 동 사업 승인
- 1975.2월 이란 국왕은 쌍용-NIOC 정유공장 합작사업 재가
- 1975.10월 상공부장관은 이란을 방문 ,한·이란 정유공장 합작 합의각서 및 부속서류에 서명
- 1975.12월 NIOC(이란석유공사) 대표단이 방한, 쌍용 측과 합작회사 설립인가 조건 합의
- 1976.1월 경제기획원은 외국인 투자계약 인가 승인

● 사업 개요
- 투자비율: 쌍용 50%, 이란 NIOC 50%
- 규모 : 정유공장 6만 BPSD, 윤활유 기유공장 3,320BPSD
- 투자비 : 163백만 달러
- 판매계획: 국내시판
- 건설장소: 온산
- 건설기간: 1975.10~77.10월

75-0941

Eghbal, Manoutcher 이란 석유공사 총재 방한, 1975.5.4.-10.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M-35 / 6 / 1-60

Manoutcher Eghbal 이란 석유공사 총재가 1975.5.4.~10.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방한함.

1. 외무부장관은 1975.5.6. Eghbal 이란석유공사 총재를 면담함(면담요록 수록).

2. 주요 방한 결과

- 한국 측은 주한 이란 상주공관의 조속한 설치에 협조를 요청
- 양측은 외무부장관의 1975.6~7월중 이란 방문과 이란 외상의 10월중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테헤란 시장의 9월 서울 방문과 서울 시장의 6월 테헤란 방문에도 합의함.
- 한국 측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 지지를 요청
- 한국 측은 이라크 및 페르시아만 국가 등 아랍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이란의 측면지원을 요청

대만(구 중국)의 해저 석유자원 개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M-35 / 7 / 1-15

대만의 해저 석유자원 개발 관련사항임.

1. 주대만(구 중국)대사관이 보고한 대만의 해저석유자원의 개발현황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만은 황해, 동지나해 및 대만해협에 5개 개발구역을 설정하고 미국의 6개 석유자본과 합작 또는 단독으로 개발시추작업을 진행중임.
- 기초탐사 결과 대만 연안 대륙붕의 지질구조로 보아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표됨.
- 대만석유공사는 1975.1월 제1광구의 합작개발구역에서 일일 생산능력이 천연가스 150만㎥, 석유 100KT인 유정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함.

2. 주대만대사는 주재국 국방부 당국이 1975.7월 한국과 일본어선의 대만 근해 어로작업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사하였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수산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면서 상기 근해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단에 이를 주지시킬 것을 요청함.

- 기륭 북방의 Peng Chiy Hsu 및 Tiao Yu Tai 해역에서 한국과 일본어선이 어로작업을 한 사실을 발견함.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엄중히 경계하도록 해군 및 공군 당국에 명령함.
- 상기지역은 대만 북부 관측시계 범위이기 때문에 해군 제3관구로 하여금 상시출동, 순찰하게 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선을 억류 또는 구축하도록 지시함.

75-0943

특정해역의 어업제한에 관한 수산업법 개정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35 / 11 / 1-20

1975년 중 특정해역의 어업제한 관련사항임.

1. 민주공화당은 1975.10월 한국 연안 및 접속수역에 있어서 어업과 관련하여 안보체제의 강화와 어업보호 및 조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상기 민주공화당이 검토하고 있는 수산업법 중 특정해역의 어업제한규정 신설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조약 및 일반 국제법상 문제
- 한·일본 간 문제: 동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이는 한·일 어업협정과 상충되므로 일본 정부와의 외교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동 규정을 일본어선 등에 실제로 적용할 경우 분쟁이 야기될 것임.
- 기타 제3국과의 문제: 기타 제3국의 경우는 한국과의 협정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입법화하는 자체만으로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해당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임.

● 대외정책상 문제
- 일본어선의 특정해역 출어제한 문제는 일본 정부에 의한 자제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일본과의 외교문제나 어업분쟁을 야기시킬 입법조치는 피하는 것이 좋겠음.
- 상기 규정이 입법화되고 시행되는 경우, 중국(구 중공) 연안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 가능성이 있음.

한·코스타리카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5 / 12 / 1-27

1975~76년 중 한·코스타리카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Amador 코스타리카 농림목축부 기획관리실장이 1975.10.23.~26. 수산청장 초청으로 방한한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수산청장 예방 및 동 청장 주최 만찬, 수산진흥원 방문 및 동 진흥원장 주최 오·만찬,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방문
   - 수산청에서 수산현황 설명 청취, 어업협력 협의
   - 남양어망 방문

2. 수산청장 등 수산청 간부와 Amador 실장 간에 협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양국간 기술협력, 합작투자, 교역증대, 어업협정 체결
   - 코스타리카 영해 내 한국어선의 새우조업, 한국어선의 코스타리카항구 이용

75-0945

한·가나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5 / 13 / 1-10

1975년 중 한·가나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수산관은 1975.2월 가다랭이 판매방안을 검토하고 가나 State Fishing Corporation과의 협력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가나에 출장한바, 출장결과는 아래와 같음.
   - 참치류 판매동향
     - 일본어선은 어가 하락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귀국 중에 있음.
   - State Fishing Corporation과의 협력
     - 합작투자는 취소하기로 함.
     - 동사는 한국 가다랭이어선 250톤급 3척 수입의사를 표명함.

2. 외무부는 1975.3월 상기 가나 측의 한국 가다랭이어선 수입제의에 관하여 업계에 타진한 결과, 희망하는 회사가 없다고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통보함.

한·이란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5 / 14 / 1-162

1973~76년 중 한·이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E.Riahi 이란 Persian Gulf Fisheries Co.사장이 1975.1.17.~22. 수산청장 초청으로 방한한바, 동 인은 방한기간 중 수산청장과 아래 요지의 합의각서에 서명함(1.22.).
   - 한국은 Sterntrawl 2척과 참치선 2척을 이란에 파견하여 시험함.
   -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선을 증선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함.
   - 한국은 이란 훈련생을 한국에서 훈련시키고 이란에 자문관을 파견함.

2. 한국의 세일수산과 이란 Persian Gulf Fisheries Co.는 1975.2.22. 이란해역에서 시험 조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업협력 계약을 체결함.

3. 수산청장은 이란의 Persian Gulf Fisheries Co.사장의 초청으로 1975.5.26.~31. 이란을 방문한바, 양측간 주요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시험조업
     - 세일수산과 Persian Gulf Fisheries Co.간 1975.5.21.체결된 어획물 매매 및 기지운영에 관한 계약 재확인
   - 기술협력(이란 측 요청사항)
     - 10개 분야 10명의 이란 수산기술자를 이란 측 경비부담으로 한국에서 교육
     - 매년 이란인 10명(선장과정 5명 및 기관장 과정 5명)씩 5년간 이란 측 경비부담으로 한국에서 교육
     - 이란의 수산자원개발을 위하여 이란 측 경비부담으로 7개 분야의 한국 수산전문가 이란 파견

4. 수산청은 상기 이란 측과 합의에 의거 추진 중인 이란 수산계 학생 교육, 선장·기관장과정 훈련생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1975.9월 이를 이란 측에 제시함.

75-0947

한·일본 어업공동 규제수역내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35 / 15 / 1-47

1975~76년 중 한·일본 간의 어업공동 규제수역 관련사항임.

1.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본 어업협정 합의의사록에 따라 공동규제수역 내 자국어선 출어 척수 및 어획량을 각각 상호 통보한 사항(1975년도 분기별 자료)을 내용으로 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전관수역을 침범한 한국어선 제15용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함.
   - 사법조치: 내무부가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1975.9월)
   - 행정처분: 제1종 유자망 어업허가 취소(1975.12월)

한·일본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35 / 16 / 1-57

1975년 중 한·일본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외무부는 1975.6월 주일본대사관에 최근 일본 게잡이어선이 대거 묵호근해 공동규제수역 내에 출어·조업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이와 같은 일본어선의 조업으로 예상되는 한국 측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본 당국의 지도·계몽 및 규제조치를 촉구하도록 지시함.**
   - 일본 수산청 관계관은 6월 주일본대사관 수산관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겠다고 함.

2.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은 1975.10월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2차례에 걸쳐 한국 동해 및 서해의 특정해역에서 일본어선들이 조업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줄 것을 비공식 요청함.**
   - 일본 측은 그간 일본 정부가 한국 특정해역 내에서의 일본어선 조업을 사실상 자숙시켜 왔으나 공식적으로는 공해상에 설정된 특정해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75-0949

한·모로코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5 / 17 / 1-174

1974~75년 중 한·모로코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한국의 남양항해주식회사와 모로코의 Mr Mustapha El Alaoui(격일간 아랍어신문 El Kawaliss지 사장)는 1974.12.22. 한국·모로코·일본의 3국 합작투자에 의한 어업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는 각서에 서명함.

2. 외무부는 1975.4월 주모로코대사에게 주재국 수산청장 및 해운국장을 한국 측 경비부담으로 방한 초청하고자 한다고 통보하고 동인들의 방한 예정일자 등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3. 한국의 대호원양과 모로코 실업인 Tahar Mekour은 1975.2.21. 한·모로코 어업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4. 한국어업조사단(수산청 증식과장 등 2명)이 1975.4.16.~28. 모로코 지중해 연안 및 대서양 연안을 답사, 연안 증식 가능성을 조사함(동 보고서 수록).

5. 한국 원양어업협회 회장이 1975.6.28.~7.1. 모로코를 방문함.
   - 수산청장 및 해운청장 면담
   - 남부어항, 수산청 지방사무소 방문

한·모리타니아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경제협력
MF번호	M-35 / 18 / 1-85

1975년 중 한·모리타니아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외무부는 1975.4월 주스페인대사관에 한국 원양어선의 모리타니아 어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함.

- 모리타니아 정부는 동원수산 소속 선박에 대하여 입어허가를 발부하였으며 이를 시범 케이스로 하여 다른 한국 원양어선 19척에 대하여도 입어허가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함.

2. 외무부는 1975.4월 미수교국인 모리타니아 영해 내에 한국어선이 입어조업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한 수산청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보함.

- 모리타니아와는 수교관계가 없으나 한국어선이 모리타니아 영해 내에서 조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모리타니아에는 북한대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선원의 모리타니아 상륙시 북한요원 또는 모리타니아 당국과의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 선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함.

3. 동원수산은 1975.7월 어획물 처리 기술선원 4명을 모리타니아에 파견함.

4. 동원수산 대표는 모리타니아와의 민간어업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1975.10.15.~18. 모리타니아를 방문함.

- 냉동공장 시찰, 소련 어선단 하역상황 시찰, 협력사(IMAPEC) 총지배인 면담, 지방정부 수산국장 등 면담

75-0951

한·니카라과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5 / 19 / 1-70

1975년 중 한·니카라과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외무부는 1975.3월 주멕시코대사관에 한국의 중미수산개발이 니카라과의 Promarblue사와 Lobster 및 Turtle 어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동 사업추진 검토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멕시코대사관의 보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 Promarblue사는 한국 측이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어선의 니카라과 도착을 확인한 후 정부 당국에 조업권을 신청할 예정이며, 영해 내 조업이 가능하다고 함.
   - 니카라과 선박에 외국선원의 취업은 불가하나, 기술자의 경우는 제한없음.
   - 외국회사에 대한 소득세는 신규회사의 경우 8년간 100%, 기존회사는 3년간 100% 면제함.
   - 과실송금 규제는 없음.

2. **수산청은 1975.8월 중미수산과 Promarblue사 간의 어업협력을 승인함.**

한·시에라리온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서부아프리카
MF번호	M-35 / 20 / 1-30

1975년 중 한·시에라리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외무부는 1975.4월 수산청에 시에라리온 정부가 추진중인 굴 양식 개발계획의 관계인사 2명이 한국의 굴 양식 현황 견학차 방한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동인들의 방한일정 마련, 숙소예약, 교통편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9월 주시에라리온대사관에 수산협력추진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보함.

- 어업협정 체결
  - 시에라리온 영해 내 조업은 현재 입어료 납부로 조업이 가능하나 경제수역 200마일 선포에 대비하고 프리타운기지 이용의 계속 등을 고려, 어업협정 체결을 검토예정임.
- 연안어업 합작투자 추진
  - 희망업체를 물색 중임.
- 어업기술협력
  - 수산분야 전문가(어선장 및 기관사) 파견은 한국 수산업체의 시에라리온 진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민간 차원에서 우선 검토·추진함이 효율적임.

75-0953

한·스페인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5 / 21 / 1-55

1975년 중 한·스페인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는 스페인과 합작으로 선박수리공작소 회사 Nahikosa를 설립함(1974.12월 정식등록).
   - 주스페인대사는 1975.3월 주재국 외무부에 동 공작소에 근무하게 될 한국인 기술자 10명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주스페인대사관은 1975.4월 스페인의 북부대서양지역 연안어업에 관하여 보고서(특히 어가 유지면에서 본 문제점과 대책)를 외무부에 제출함.

남태평양 수산 진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5 / 22 / 1-30

1975년 중 남태평양 수산 진출 관련사항임.

1. **수산청(수산진흥원) 소속 태백산호가 1975.4.17.~5.29. 마이크로네시아 근해(사이판 및 팔라우 근해) 상어어장 조사를 실시함.**
   - 외무부는 주하갓냐영사를 통해 동 시험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 당국과 교섭함.

2. **외무부는 1975.10월 주사모아 영사에게 한국업체 동화수산의 원양산 상어지느러미 사모아 현지 수집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함.**
   - 사모아에서의 상어지느러미 수집은 경쟁이 치열한바, 외국상사들이 동화수산 주재원의 수집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한국 원양어업회사 주재원 및 선원 일부가 외국상사에 협조한다고 함.

75-0955

한·일본 수산청장회담. 서울, 1975.11.14.-15.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35 / 23 / 1-47

한·일본 수산청장회담이 1975.11.14.~15.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용순 수산청장
- 일본 측: 우치무라 수산청장관

2. 주요 토의사항

- 어업분야 관계 일반
  - 한·일본 어업협정 체결이후 10년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필요성을 확인함.
  - 국제해양법회의 등 국제해양질서 동향과 관련하여 양국은 원양어업국으로서 더욱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함.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일본의 어업활동
  - 한국 측은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의 어업협정을 체결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일본 측은 일본 정부가 그와 같은 움직임을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함.
  - 한국 측은 특정수역에서 일본어선의 조업을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일본 측은 일본 정부로서는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함.
- 참치류 무역
  - 일본 측은 참치류 수입 질서확립을 위해 Tariff Quota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한국 측은 Tariff Quota제 도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10차. 동경, 1975.8.25.-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35 / 24 / 1-159

제10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가 1975.8.25.~28. 동경에서 개최됨.

1. 경위

- 1975.3.22. 수산청은 제10차 어업공동위 개최 관련 의제 및 자료수집을 외무부에 요청
- 1975.5.12. 외무부는 한국 측 조사자료를 일본 측에 제출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송부
- 1975.7.24. 일본 외무성은 전문가회의(1975.8.19.~23.), 본회의 및 소위원회(1975.8.25.~28.) 개최안 제의

2. 대표단(정부대표)

- 한국 측: 김인수 수산청차장
- 일본 측: 농림중앙금고 이사장

3. 회의 결과

- 어업자원의 과학적조사 심의 및 조치: 어업자원 전문가회의 보고서 채택, 금어기 설정, 어선의 합계 총 톤수 및 수 제한
- 어선사고 처리 및 상황보고: 어선사고 증가 및 발생수 광역화 인정,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처리 노력
- 협정위반 처리: 지속적 검토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교섭: 1975.11월 목표로 정부에 교섭재개 건의 등

75-0957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Madrid, 1975.6.18.-2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6 / 1 / 1-199

제2차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가 1975.6.18.~21. 마드리드에서 개최됨.

1. 경위

- 1975.3. 7. 수산청은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제2차 회의 시기 및 의제를 파악하도록 외무부에 요청
- 1975.4.22. 스페인 외무부는 1975.5.27.~28. 회의 개최안을 제의
- 1975.4.25. 외무부는 1975.6.19.~20. 또는 1975.6.26.~27.안을 제의
- 1975.5.14. 수산청에서 어업회담 준비 실무자회의 개최, 사하라 어족자원규제, 전문가 및 과학자 교환, 뱀장어양식 합작투자 등 논의
- 1975.6.4. 정부대표단 임명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동원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스페인 측: Jaime Pinies 수산청장

3. 논의 및 합의내용

- 스페인 사하라어장 어로규제 문제: 스페인 측은 어업자원 감소로 한국어선단의 척수 제한 및 어획량 쿼터규제를 강력히 요청, 차기회의 시 어족자원 및 어로활동 공동평가를 위한 정보교환에 합의
- 경제협력 사업: 양식사업의 협력, 간이 선박수리소 합작, 냉장시설 합작, 한국어선의 복지시설 및 편의제공 등에 관해 합의

4. 한국 측 대책 및 건의

- 한국어선단의 자율적 어로활동 조정 필요성
- 세네갈 등 인근어장 개척 방안 마련

한·미국 어업실무자회담, 제3차. 서울, 1975.11.10.-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조약
MF번호	M-36 / 2 / 1-100

제3차 한·미국 어업실무자회담이 1975.11.10.~15. 서울에서 개최됨.

1. 경위

- 1975.7.31. Makatsu 미 국무부 수산국장은 방한 중 신동원 국제경제국장을 면담
- 1975.9.10. 주미국대사는 미국대표단 구성 및 회의진행방식을 보고
- 1975.11.4. 수산청은 훈령자료를 외무부에 송부
- 1975.11.5. 정부대표단 임명

2. 대표단(수석대표)

- 운영소위원회
  - 한국 측: 주홍장 수산청 어업진흥관
  - 미국 측: Makatsu 국무부 수산국장
- 자원소위원회
  - 한국 측: 김기영 수산진흥원 원장
  - 미국 측: A.Pruter 수산청 서북지소 부소장

3. 논의내용

- 협정이행 및 개선책: 한국 측의 협정이행 상태는 양호함. 미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선박리스트 및 허가절차와 규제방법 등에 관한 자료제공 약속
- 협정위반 검토: 한국 측의 어업협정 준수는 양호함.
- 어구분쟁 예방책: 미국 측의 은대구 통발고정 조업구역 설정 및 한국어선 접근 조기통보 요청
- 기술자본 및 협조: 한국 측의 1975년도 연어, 송어란 부화실적 설명 및 1976년도 연어, 송어란 4.5백만 무상지원 요청. 미국 측의 최대한 협조 약속

75-0959

한·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6 / 3 / 1-45

1975년 중 한·호주 간의 면양 시범목장 운영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주한 호주대사관이 한·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과 관련, 동 목장 면양관리관의 호주 연수 초청 관련사항을 과학기술처에 1975.4.21. 통보함.

2. 외무부는 1975.6.10. 주한 호주대사관이 제공하는 면양 시범목장을 위한 면양과 기자재가 전세기 편으로 6.12. 서울 도착 예정임을 알려옴에 따라, 과학기술처와 농수산부에 통관 및 검역상 협조를 요청함.

3. 외무부는 1975.8.2. 목장사업평가조사단이 1975.8.10.~20. 한국 방문 예정임을 과기처와 농수산부에 통보함. 평가조사사항에는 동 사업의 성과,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동 사업의 지속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됨.

4. 농수산부는 1975.8.9. 호주조사단의 방한 시 축산국장이 수행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75.9.19. 호주가 목장용 면양 305두의 공수계획을 알려옴에 따라, 농수산부와 과기처에 통관 및 검역상의 협조를 요청함.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임업협력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M-36 / 4 / 1-45

1974~76년 중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임업협력 관련사항임.

1. 산림청은 1974.7.25. 체코 식물원이 임업기술자료 및 단풍나무 종자의 송부를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자료 및 종자교환과 양국간의 기술협력이 가능한지를 문의함.

2. 외무부는 1974.7.31. 대동구권 교역촉진 및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기술협력, 자료 및 종자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산림청에 회신함.

3. 외무부는 1974.8.1. 체코와의 임업기술협력으로 자료 및 종자를 송부할 예정임을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통보하고 요청기관의 성격(관영 또는 민간단체 등)을 파악하도록 산림청에 지시함.

4. 산림청은 1974.11.20. 6개 품종 표본 및 설명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5. 외무부는 1974.11.26. 상기 표본을 산림청에 반송하면서 동 청에서 항공편으로 체코의 식물원으로 직송하기를 통보함. 산림청은 12.13. 서신과 함께 단풍나무 종자 및 목엽표본을 체코 식물원장에게 송부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6. 산림청은 1975.4.3. 체코 식물원장의 감사서한을 접수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7. 산림청은 1975.12.1. 고로쇠나무 종자 및 식엽표본을 체코 식물원장에게 우송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75-0961

한·핀란드 임업개발협력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6 / 5 / 1-115

1972~75년 중 한·핀란드 간의 임업개발협력 관련사항임.

1. 경위

- 1974.3.25. 외무부는 임업분야에서의 대핀란드 경제협력 추진 건의서를 산림청에 송부
- 1974.4.2. 외무부는 핀란드와의 임업개발사업 추진이 제3차 수출진흥확대회의(3.27.) 시 보고되어 관심을 받은바 있음을 산림청에 통보하고 차관 신청 건의 검토를 요청
- 1974.4.4. 산림청은 치산녹화 10년계획 성과거양을 위해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대비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
- 1974.4.8. 외무부는 임업개발을 위한 ADB 차관 반응을 타진하도록 주필리핀대사에게 지시
- 1974.4.12. 주핀란드대사는 임업개발사업을 위한 핀란드와의 협력방안을 건의
- 1974.4.18. 핀란드와의 산림협력사업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1974.4.20. 주필리핀대사는 ADB 공여자금 사용조건 관련 보고
- 1974.7.15.~19. 주일본 핀란드대사관 상무관 방한, 외무부 통상국장, 산림청 임정국장 등 면담 시 산림협력 등 협의
- 1975.4.3. 산림청은 ADB 차관 신청용 임목종자 개량사업추진 사업계획서를 외무부에 제출

2. ADB 차관에 의한 한국의 임업개발사업계획

- 주체: 산림청 임목 육종연구소
- 사업기간: 1976~85년(10년)
- 목적: 육종방법에 의해 개량된 종자를 대량생산 공급, 임산자원의 증대를 도모
- 소요자금: 8.1백만 달러
- 핀란드 전문가 초청 사업타당성 조사: 1975.9~10월
- 사업효과
  - 개량종자의 지속적 공급, 임산자원의 증대, 산주의 임업소득 증대, 임업경영의 합리화, 수원함양증대 등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 제7차. 동경, 1975.3.11.-1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6 / 6 / 1-76

제7차 한·일본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가 1975.3.11.~14. 동경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75.1.27. 외무부는 일본 측이 제시한 개최일정(1975.3.11.~14.)을 농수산부, 과기처에 통보
- 1975.2.4. 및 2.11. 과기처와 농수산부는 개최 일정에 동의
- 1975.2.24. 정부대표단 임명
- 1975.3.4. 사전 준비회의 개최(농업기획관실)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익래 농수산부 농업기획관
- 일본 측: 가와다 노리요 농림성 관방기술심의관

3. 회의 진행

- 4개 분과위: 일반분과위, 기술분야 3개 분과위로 구성

4. 회의 의제

- 종자, 종묘의 교환
- 기술자 교류
- 자본의 교환
- 농림수산 시험연구협력

5. 기타 참고사항

- 동 위원회는 1968년 제2회 한·일 정기각료회담 합의에 따라 1969년 이래 매년 개최

75-0963

손수익 산림청장 구주 순방, 1975.7.26.-8.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6 / 7 / 1-32

손수익 산림청장이 1975.7.26.~8.9. 독일, 핀란드 등 구주를 순방함.

1. 방문 경위

- 1975.6.18.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독일 산림녹화사업약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산림경영사업기구 관련, 산림청장의 독일 방문을 초청
- 1975.7.21. 산림청은 독일 측이 1975.7.25.~8.2. 방문 및 2명의 수행원 대동을 승인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

2. 방문 및 일정안

- 독일(7.26.~8.2.) : 산림청 인사 등 면담 및 시찰
- 핀란드(8.2.~5.) : 산림청 방문, 임업시험장 시찰 등
- 스웨덴(8.5.~7.) : 산림청 방문, 임업시험단지 시찰, 왕립임과대학 방문 등
- 덴마크(8.7.~8.) : 산림청, 임업시험장 방문 등
- 이탈리아(8.8.~9.) : 포플라연구소, 밤나무 시험재배지 방문

인도 잠업사절단 방한, 1975.10.26.-2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M-36 / 8 / 1-35

Sharma 인도 공업조달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잠업사절단이 1975.10.26.~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10.17. 주한 인도대사관 부영사는 공업조달장관 등 잠업사절단의 1975.10.25.~28. 방한계획 설명 및 협조를 요청
- 1975.10.18. 주인도대사는 한국의 견직공업 발전상 시찰 및 정부간의 견직공업육성협력 목적으로 사절단이 방한 예정임을 보고
- 1975.10.18. 외무부는 인도사절단의 방한계획을 농수산부에 통보, 협조 요청
- 1975.10.21. 농수산부는 한국과 인도의 잠업현황 자료 및 잠사관계 협력상황을 외무부에 송부

2. 방한 목적

- 생사 수입 및 양잠협력 협의

3. 방한 일정

- 10.26. 고 육영수여사 묘소 참배, 주인도대사 주최 리셉션
- 10.27. 농수산부차관, 한국 잠사협회장, 한국 생사수출조합 이사장, 외무부차관 면담, 수원 잠업시험장, 안양 생사검사소 시찰, 농수산부차관 주최 만찬
- 10.28. 상공부차관, 국무총리 예방, 코트라 사장 주최 오찬

75-0965

Soedjarwo 인도네시아 산림청장 방한, 1975.11.6.-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M-36 / 9 / 1-65

Soedjarwo 인도네시아 산림청장이 1975.11.6.~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10.15. 인도네시아 산림청장은 미국 개최 벌목회의(1975.10.30.~11.1.) 참석 후 방한, 쌍무협정 체결 관련 협의를 희망
- 1975.10.16. 산림청은 산림관계 쌍무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인도네시아 산림청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외무부에 통보

2. 방한 목적

-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쌍무협정의 체결 논의

3. 방한 주요일정

- 11.6. 도착
- 11.7. 국립묘지 참배, 쌍무협정 협의, 합판협회 및 선주협회 대표 면담, 산림개발협회 주최 오찬, 학위 수여(건국대학교), 산림청장 주최 만찬
- 11.8. 내무부장관, 부총리,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예방, 내무부장관 주최 오찬

Abdul Ghafar Bin Baba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성장관 방한, 1975.10.24.-29.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통상1
MF번호 M-36 / 10 / 1-155

Abdul Ghafar Bin Baba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성장관이 1975.10.24.~2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3.3.~5. 외무부장관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면담한 말레이시아 농업장관의 희망에 따라 외무부장관은 방한 주선을 약속
- 1975.3.26. 농수산부장관 초청장 전달
- 1975.8.5. 주말레이시아대사는 동 장관의 방한시기가 10월 중순경이 될 것임을 보고
- 1975.10.7.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는 동 장관의 방한 일정을 1975.10.24.~29.로 통보

2. 주요 일정

- 10.24. 도착
- 10.25. 현충탑 참배, 농수산부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경제3단체 공동주최 만찬
- 10.26. 판문점 시찰, 경남도지사 주최 만찬
- 10.27. 울산공업단지 시찰, 현대조선 주최 오찬, 한국산업훈련소 방문, 농수산부장관 주최 리셉션 및 만찬
- 10.28.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새마을마을 시찰
- 10.29. 국무총리 예방

3. 평가

- 주요인사의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 말레이시아 제3차 개발계획 참여 기대
- 어업훈련생에 대한 훈련 제공
- 원양어업분야 협력 가능성
- 과학기술분야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증대

75-0967

한국 근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각국반응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경제협력/동북아2/북미1
MF번호	M-36 / 11 / 1-188

1973~75년 중 한국 근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정부의 대책임.

1. 대륙붕 시추탐사 착수

- 상공부는 1975.2.10. 1975년도 대륙붕 시추탐사 촉진을 위해 제4광구에 2개공, 제6광구에 1개공 시추탐사 실시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네덜란드, 미국 측과 교섭하여 주기를 요청

2. 대륙붕 탐사 관련 미국 정부의 입장

-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은 1975.3.4. 경제차관보를 면담, 한국의 대륙붕 탐사작업에 있어서 타국과의 관할권 분쟁을 고려, 미국은 인명이나 재산상의 보호책임을 질 수 없음을 관련기업에 통보함.
- 외무부장관이 3.27. 미 국무부차관 면담 시 미국 측은 분쟁소지가 없는 지역에서의 개발을 미국 기업에 권고한다고 언급

3. 한국 정부의 대책

- 1975.4.11. 아주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
  - 미국 석유회사 Gulf 및 Zapata에 의한 황해, 동지나해 석유 탐사작업과 관련하여 동사가 제3국 선박과 인원을 동원하여 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함.
- 1975.5.9. 미주국장은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과 면담, 제4광구 시추작업 관련 정부의 입장을 전달. 주미국대사에게도 미국 측의 협조요청 지시
- 1975.6.16. 외무부는 제4광구 시추작업의 조속 착수를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를 주미국 대사에게 재지시
- 방한한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분쟁야기지역에서의 시추작업 반대입장을 재천명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월남 및 캄보디아 정부 인정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12 / 1-39

1975년 중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월남 및 캄보디아의 지위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재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캄보디아(구 크메르), 월남 사태와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제기 등과 관련 IMF/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및 동남아국가의 동향과 대응책, 캄보디아 및 월남 신정권의 IMF/IBRD 잔류 시의 동남아그룹 유지 문제를 조사하도록 1975.6.5.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2. 신병현 세계은행 고문은 월남의 IBRD/IMF 잔류 가능성, 캄보디아의 중국(구 중공)과 같은 쇄국 경향 노정, 라오스의 공산화 시의 유사한 전철 등 견해를 피력함.

3. 재무부는 IMF 이사회에서 월남 및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토의할 예정이라면서 양국의 대표권 인정문제 관련 1975.7.2. 외무부의 견해를 문의함.

4. 주미국대사는 IMF와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3국간의 법적관계를 보고함.
   - IMF와 3개국 간의 법적관계
     - IMF는 3개 신정부가 구정부의 권리의무 승계 전제하에 IMF 회원국 자격 취득 해석
   - 3개국의 동남아 그룹 잔류 여부
     - 3개국이 IMF 회원국에 잔류하는 한, IMF/IBRD가 순수 경제기구라는 성격에 비추어 동남아그룹에 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75-0969

제30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및 김용환 재무장관 영국 방문, 1975.9.1.-13.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13 / 1-175

정부는 1975.9.1.~5.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0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단, 8.29.~31. 잠정위원회 및 동남아그룹회의)에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국제금융통화제도 및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적자 보전을 위한 계속적인 지원 방향 촉구 등

2. 주요 의제

- 잠정위원회 등 보고, 제6차 쿼터조정 이사회 보고, IMF 예규개정 등

3. 훈령

- IMF 및 IBRD 가맹국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국제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지위향상을 기하고 동 기구와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 세계경제, IMF 및 IBRD 그룹의 정책에 관하여 한국은 개발도상국 및 동남아그룹의 입장에서 그 방향을 제시 또는 주장할 것
- 주요 선진국 및 IMF, IBRD와의 경제협력을 도모하여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유리한 개발자금 확보에 노력할 것

4. 회의 결과

- 동 기구 가입국들과의 우의 향상 및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한 한국의 국제금융분야 지위 향상에 기여
- 가입국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안 해결 노력 경주

5. 김용환 재무부장관의 영국 방문(1975.9.8.~13.)

- 방문 목적
  - 영국 정부 및 경제계와의 협의를 통한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대방안 모색
  - 민간금융협력 활동 증대를 통한 정부의 측면지원
  - 유로 시장에서의 기채 가능성 타진

● 주요 일정
- 영국 재무장관, 수상, 재무상, 영란은행 총재, 기타 런던시 관계인사 예방 및 면담
- 주영국대사 주최 리셉션

6. 방문 결과

● 유럽 주요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대, 민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측면지원, 유로시장 기채 가능성 타진 등

75-0970

IMF(국제통화기금) 잠정위원회 및 IMF/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 제2-3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14 / 1-112

1975년 중 제2~3차 IMF(국제통화기금) 잠정위원회 및 IMF/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가 개최됨.

1. 제2차 회의

- 잠정위원회(1975.1.15.~16., 워싱턴)
  - 수석대표: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 의제: 오일 달러 환류문제, 국제수지 조정정책, IMF협정 개정, 제6차 IMF 쿼터증자
- 개발위원회(1975.1.16.~17., 워싱턴)
  - 수석대표: 신병현 IBRD 고문
  - 의제: 유류가 인상의 개도국 타격 문제, 상품가격 조정정책, 1975년도 개발위의 업무계획, 개도국에의 재원이전 일반원칙

2. 제3차 회의

- 잠정위원회(1975.6.12.~13., 파리)
  - 수석대표: 남상진 재무차관
  - 의제: 제6차 IMF 출자금 조정, IMF협정 개정, 석유금융제 검토 및 이자보조제도
- 개발위원회(1975.6.12.~13., 파리)
  - 수석대표: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 의제: 제3창구, 특별신탁기금, 국제자본시장 참여, 세계식량문제 금융지원
- 동남아그룹 회의(1975.6.9., 파리)
  - 참석 범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네팔
  - 수석대표: 남상진 재무부차관
  - 의제: 제3창구, 제6차 쿼터조정, IMF협정 조정 등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및 개발문제회의, 제5-7차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15 / 1-129

1974~75년 중 제5~7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및 개발문제회의가 개최됨.

1. 제5차 회의(1975.1.8.~9., 서울)

- 수석대표: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 참가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월남 등 10개국
- 의제: IMF/IBRD 이사 보고, 개발위원회 및 잠정위원회 관련 토의
- 목적
  - 국제통화제도개혁 및 개도국에 대한 재원이전문제 관련 의견교환, 동남아그룹의 공동 입장 수립

2. 제6차 회의(1975.7.30.~8.1., 싱가포르)

- 수석대표: 하영기 한국은행 부총재
- 참가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1개국
- 의제: 국제통화개혁문제 및 개도국 개발지원문제

3. 제7차 회의(1975.12.20.~22., 카트만두)

- 수석대표: 정인용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 참가국: 8개국 (3개국 불참)
- 의제: 국제통화개혁문제, 개도국 개발지원문제

75-0972

IMF(국제통화기금) Oil Facility 및 Trust Fund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16 / 1-99

1974~75년 중 IMF(국제통화기금) 유류시설 및 신탁기금 관련사항임.

1. IMF Oil Facility 설립 및 참가

- 설립 배경
  - 유류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국제수지상 유류수입국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1974~75년간 IMF 내에 잠정적으로 설립
- 교섭 경위
  - Oil Facility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할 이사회에서의 지지 획득을 위해 주한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대사관에 한국입장 전달 및 지지요청
- 국제 동향 및 참가 추진
  - 1975.1.7. EC(구주공동체) 재무장관회의는 IMF를 통한 120억 달러의 아랍석유자금회전을 추진하기로 합의
  - 1.13. 주한 영국대사관은 EC의 IMF Oil Facility 확대안을 통보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
  - 1.16. 재무부는 1975년 IMF Oil Facility 설립을 찬성하고 1월 IMF/IBRD 동남아그룹 회의에서도 동 설립 지지 결정을 외무부에 통보
  - 4.6. IMF는 1975년도 Oil Facility 제공 방안을 결정

2. IMF 신탁기금안

- 목적
  - 최빈개도국 국제경제 적응을 위해 기존의 조건보다 양허적인 방식의 자금공여
- 재원
  - 규모: 제1차 연도 15~20억 달러
  - 재원조달: 산유국, IMF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자발적 출자와 IMF 보유금 활용
- 상환기간 및 이자
  - 10년, 4년 거치 후 분할상환
  - IMF의 4~6% 수준

ADB(아시아개발은행) 그룹에서 한·대만·월남그룹 활동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17 / 1-38

1975년 중 ADB(아시아개발은행) 내 한·대만·월남그룹 활동문제 관련내용임.

1. ADB 내 활동문제

- 1975.5.2. ADB 및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내 한국 이사에 대해 훈령 하달
  - 인도차이나 사태 및 중국(구 중공) 총회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대표권 문제제기 등 동향 및 대응책 보고
- 한국 이사의 보고
  - 중국이 대만 부채 승계 시 대만 추방문제를 용이하게 가결할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와 월남의 신정부는 ADB와의 연락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ADB는 구정부와의 관계를 유지

2. ADB그룹 내 한·대만·월남그룹 활동문제 입장

- 1975.5.24. 재무부에 외무부 입장 통보
  - 월남인 대리이사 임명문제 관련 공산월남 정부의 구정부 권리 및 의무 승계에 관해 사전에 의사 확인 필요
  - 한·중국·월남그룹회의에서의 월남인 대리이사 Buu Hoan 자격은 월남공산 정부의 재신임을 필요
- 한국 재무부의 입장을 대만 측에 통보
  - Buu Hoan 대리이사는 월남 신정부에 의해 재신임되지 않는 한, 자격을 상실하므로 임기가 만료되는 5.31.까지 신정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인의 대리이사 임명을 보류

3. 월남 대리이사 사임 및 한국 증자문제

- Buu Hoan 대리이사는 1975.5.29. 대리이사직을 사임
- ADB 이사회에서 한국의 증자 문제 논의시 지지 표명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증자로 인해 중소국가의 이익 반영기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

75-0974

제8차 ADB 총회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대표권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18 / 1-18

1975년 중 제8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대표권 관련사항임.

1. 재무부는 1975.4월 마닐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ADB 총회에서의 대만대표권 문제와 관련하여 3.24.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2.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는 1975.3.31. 국제경제국장을 면담, 대표권 문제 거론 시 대만이 마련한 대안을 제의하기를 요청함.

3. 외무부는 1975.4.24. 마닐라 개최 ADB 총회 참가 한국대표단에 대만대표단을 지지하도록 훈령하였음을 4.19. 주한 대만대사관에 통보함.

4. 주한 대만대사관은 한국 및 여타 우방국의 지지로써 대만의 지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데 대해 1975.4.30. 사의를 표명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8차. Manila, 1975.4.24.-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19 / 1-169

정부는 1975.4.24.~26.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8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경위

- 1975.3.12. 각국의 수석대표 및 인적사항 파악을 일본, 미국 등 주재공관에 지시
- 1975.3.31. 미국, 일본 등 수석대표와의 면담 주선을 관련공관에 지시
- 1975.4.12. 정부대표 임명

2. 주요 토의사항

- 대만(구 자유중국)대표권 문제: 파키스탄 등 4개국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대만 축출, 중국(구 중공) 가입 문제를 제기
- ADB 융자정책: 신국제수지 흑자국으로부터의 자본환류문제, 프로그램 론 실시문제, 농업분야 중점 융자실시문제, 융자금리의 재검토 등
- 한·중국·월남그룹 문제
  - 그룹유지 전망: 인도차이나 사태 및 대만대표권 문제 제기로 재검토 필요, 사태 진전에 따른 신그룹 모색 검토
- 주요 활동 상황
  - ADB 총재 및 간부 면담 시, ADB 특별증자 공식요청
  - 미국 수석대표 면담 시, IMF Oil Facility, 국제금융기구 차관 등 미국의 지원약속
  - 일본 수석대표 면담 시, 일본계 은행 중심의 신Bank Loan 기채 구상전달 및 지원요청

75-0976

ADB(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한국지소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M-36 / 20 / 1-97

1975년 중 ADB(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한국지소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내용임.

1. ADB의 무상지원 결정

- ADB는 1975.5.2. 대만(구 자유중국)에서 개최된 제8차 AVRDC(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이사회에서 1975~76년간 한국지소에 대한 13만 달러의 무상지원을 결정
- 이를 위한 기술지원합의문을 작성, 한국 측 서명을 요청

2. AVRDC 한국지소 기술지원사업협정 체결 필요성 문제

- 외무부는 1975.8.8. 이 사업이 1973.1.29. 한국에 대해 발효한 AVRDC 헌장과 1966.8.22. 발효한 ADB 설립협정의 범위 내에 시행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은 없다고 농수산부에 회신

한국의 ADB(아시아개발은행) 자본금 증자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21 / 1-109

1975년 중 한국의 ADB(아시아개발은행) 자본금 증자 관련사항임.

1. ADB 증자문제 대책

- 한국의 ADB 자본금 증자 신청(70백만 달러)이 1975.5.29. 이사회에서 승인
- 6.3. 관계부처 고위실무자회의에서 대책을 협의
  - 41개 회원국 중 찬성(31개국) 및 반대(4개국)를 제외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6개국 중심으로 교섭 시행

2. ADB 특별증자 외교교섭 시행

- 재무부는 특별증자 ADB 총회 결의안이 1975.6.30.까지 서면투표에 부의된다고 하면서 6.4. 외무부에 관련공관을 통한 외교교섭의 시행을 요청
- 외무부는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 6개 공관에 대한 외교교섭 시행을 지시
- 6.24. 현재 한국 증자안 지지국은 14개국으로 정리
- 6.27. 현재 21개국이 찬성
- 외무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0개국 주재공관에 대해 투표종용 교섭을 지시

3. ADB 특별증자 확정

- ADB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로 1975.6.30. 확정
- 투표 상황
  - 총 41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투표에 참여, 33개국의 찬성 및 1개국의 기권

75-0978

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 부과에 따른 대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22 / 1-114

1975년 중 수입물품에 대한 방위세 부과에 따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책 관련사항임.

1. 재무부는 국회에 제출 중인 방위세 법안에 따라 방위세를 부과할 경우 일부 GATT 회원국의 GATT 양허품목에 대한 신수입 제한조치라는 이의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1975.7.4. 외무부에 주제네바대표부와의 협의를 통한 사전대비를 요청함.

2. 외무부는 아래 사항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훈령함.
   - 기본 입장
     - 방위세가 각종 세원에 부과되므로 수입물품이 국내생산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치로 해석될 경우 GATT에 대한 통고나 여타 회원국과의 교섭이 불필요
   - GATT 접촉 방향
     - 상기 해석이 불가할 경우 GATT Waiver를 받아야 하므로 GATT 법률담당관을 비공식 접촉, GATT 측 입장과 한국 측 조치를 파악

3. GATT 측 비공식 견해
   - 한국의 양허품목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경우 조약면세 또는 비관세에 준하여 방위세 과세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면 GATT 규정 비저촉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조치는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입상의 국내조치라는 점을 강조, GATT 범주 밖의 주장 근거는 가능

4. 방위세 부과에 대한 GATT 대책
   - 기본 입장
     - 과세 목적이 국가안보의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제반 국내조치 일환으로 GATT 범주밖의 조치임을 주장
   - 대책
     - GATT에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차기 GATT 이사회에 설명
     - 대한국 수출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해 방위세 취지를 설명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및 철회 교섭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6 / 23 / 1-49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양허수정 문서 관련사항임.

1. 뉴질랜드 및 EC(구주공동체) 양허수정 문서
   - 뉴질랜드 및 EC 문서: GATT(1974.12.23)

2. 인도,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양허수정 문서
   - 오스트리아 문서: GATT(1975.1.9)
   - 인도 문서 : GATT(1975.1.13)
   - 남아프리카 문서: GATT(1975.1.15)

3. 뉴질랜드 양허수정 통보
   - 뉴질랜드 문서: GATT(1975.4.15)

4. EC의 납 및 아연수입 통계수정 문서
   - EC 문서: GATT(1975.5.13. 및 6.6.)

5. 일본과 EC 간 수정교섭 문서
   - GATT(1975.6.2)
   - GATT(1975.6.17)

75-098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종합대책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 / 1-154

1974~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에 대한 종합 대책임.

1. MTN 개최 일정

- 1975.2월 제4차 TNC(무역협상위원회) 개최로 본격적인 협상 일정과 조직을 마련
- 1975.3~7월 협상의 기본계획수립
  - 비관세그룹, 열대산품그룹, 관세그룹, 농산품그룹, 세이프가드그룹 등
- 1975.9월 본격적인 협상 진행

2. GATT/MTN 대책

- 대책 방향
  - 비관세 및 관세에서의 논의방향 관찰 및 대처 필요
  - 수량제한 등 비관세분야의 대처를 위해 상설 태스크포스를 구축
- 대책회의 개최
  - 1975.4.23. 경제차관회의에서 MTN 관련부처의 적극적 대책수립 및 협조요청
  - 1975.4.24.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주재 회의 개최: 부처별 업무작성 및 보고, 인력지원
- 주제네바대표부는 5.1. 분야별회의 일정에 따른 인원파견을 외무부에 건의
- 외무부는 6.4. 회의별 담당직원 파견을 재무부, 상공부에 요청

3.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MTN 현황 자료

- MTN의 기본 문제, 진전상황, 전망
- MTN에서의 한국 관련 주요 문제점
- 그룹 및 하위그룹별 검토
  - 관세, 비관세, 분야별 접근 문제, 세이프가드, 농산물분야, 열대산품분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 그룹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2 / 1-124

1975년 중 제1~4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 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3.18.~21.)

- 대표단(대표): 김창수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 주요 의제
  - 향후 관세 그룹회의 일정
  - 관세협상 적용 Base Date
  - 통계수집대상 기준연도
  - 협상용 기준단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보전방안
- 회의 논의 및 합의사항
  - GATT bound rate 합의 및 양허일 기준
  - Tariff cutting formula 각국 의견 개진
  - 사무국의 comparative tabulation에 1973년도 이후 통계 사용 합의

2. 제3차 회의(1975.7.7.~11.) 및 무역협상위원회(7.15.~18.)

- 대표단(대표): 김창수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 주요 의제
  - 관세 그룹회의에서는 제1차, 제2차 회의에서의 미합의사항 토의
  - 무역협상회의에서는 분야별 토의 종합정리 및 향후 계획 논의
- 관세그룹 회의 논의사항
  - 제2차 회의 시 제안된 관세인하 방식에 대한 코멘트
  - 개도국은 선진국 제안 관세안에 개도국을 위한 특별조치가 결여됨을 강조하고 반영을 요구

3. 제4차 회의(1975.10.14.~16.)

- 논의사항
  - Tariff cutting formula, 선진·개도국 협상을 위한 특별 절차, 기술적 문제, 관세정보파일 작성 등

75-098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수량규제분야 소그룹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3 / 1-156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QR(수량규제)분야 소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4.21.~30.)

- 한국대표단 주장내용
  - QR의 조속한 타결 촉구
  - 수출자율규제 조속 철폐 촉구
  - Standstill 및 Agreed Action Program의 일차적 검토
- 주요 쟁점: 농산물 QR, 수출제한 문제, 섬유류, 합법성 문제
- 합의사항
  - 당사국은 향후 협상대상 QR현황을 GATT에 통고
  - 당사국의 통고를 기초로 6~9월간 이해당사국 간 제1차 협의를 거쳐 세부협상 원칙 결정

2. QR 리스트 통보

- GATT 사무국 제출용 QR 리스트 및 자료작성을 1975.9.9.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 제2차 QR 리스트
  - 제2차 리스트는 농산물에만 해당, 사무국에 통보
  - 섬유류 등 공산품은 추후 필요시 통보

3. 제2차 회의(1975.10.27.~11.7.)

- 대표단(대표): 상공부 통상진흥국 국제경제과장
- 논의사항
  - Dialogue 및 협상의 지연 이유, 향후 일정
  - 제1차 통고품목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 작성
  - QR의 전망 및 분석,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열대산품 그룹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4 / 1-8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열대산품 그룹회의가 1975.3.10.~14.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토의 내용

- 열대산품 관심 개도국은 "동경선언"을 인용, 개별품목에 대한 Request List 및 Offer List 제시에 있어서나 가격, 시장문제 등 다자간 해결원칙 적용분야에 있어서 선진수입국의 특별고려를 요청

2. 협상원칙의 결정

- 리스트 제출: 저개발수출국은 1975.5.16.까지 선진수입국 및 사무국에 Request List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종합하여 참가국에 배포
- 결의:
  - Product by Product Basis 토의가 불가능한 가격, 시장 및 비관세 문제 등은 필요한 경우 다자간 심의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여타 국제기구의 토의에 유의
  - 타부문 협상진행과 상호 연관성에 유의
  - 비호혜 원칙에 관한 동경선언 규정을 고려 등

3. 토의결과 문서내용

- 협상지침
- 협상에 관한 각국의 주장
- 품목별 협상절차
- 협상지침 상정안
- 협상지침 채택
- 각국 대표명단

75-0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5 / 1-121

1975년 중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3.4.~7.)

- 대표단(대표)
  -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토의사항
  - 협상 초기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NTB 선택 문제
  - 협상 초기단계에서 누락된 NTB의 협상 절차 문제
- 결정사항
  - 본회의 및 소그룹회의 일정
  - 비관세분야 4개 부문 소그룹 창설 결정: QR(수량제한), 표준화, 관세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2. 제2차 회의(1975.6.23.~27.)

- 대표단(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 토의사항
  - 다자간 협상으로 처리될 수 없는 비관세장벽의 협상방법
  - 4개 하위그룹의 토의결과 검토
  - 이해당사국 간 QR 대화 개최 문제
- 평가
  - 그동안의 토의경과 종합 점검, 제5차 TNC에 보고
  - 수량제한 문제는 각국의 통고를 기초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일정까지 토의

3. 제3차 회의(1975.10.28.~11.7.)

- 의제
  - 수량제한
  - 수입허가
  - 분야별 접근법
- 토의사항
  - 미국은 주요 품목별로 Sector 범위를 확정짓고 다른 부문은 Sector 이외에서 다루자고 주장
  - EC(구주공동체)는 관세분야, NTM 및 생산데이터 등 망라하여 Sector에서 취급 주장
  - 일본은 Sector Selection에 대해 글로벌베이스로 선택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장벽) 기술적장벽 소그룹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6 / 1-57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장벽) 표준규격회의와 기술적장벽 소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표준규격회의(1975.5.5.~16.)

- 토의사항
  - 표준규격안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에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문제
  - 사무국에 대해 토의 기초안 작성 과제 부여
  - 미국제안 표준제도의 개요 및 통계자료 수집 문제는 차기회의 시 논의
  - Marks of Origin 문제 관련, 1958년 체약국들의 건의를 기초로 하자는 주장과 draft code 관련조항을 삽입, 광의의 standards 문제의 일환으로 하자는 주장의 대립 노정

2. 기술적장벽 소그룹회의(1975.9.23.~10.3.)

- 주요 논의사항
  - 법률적 효력문제,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제재 규정, GATT 비회원국 참여문제 등
- 세부사항
  - 정의 문제, 임의표준(Voluntary Standards), 검사결과의 비밀취급
  - 기술지원 문제, 위원회 구성 문제, 기존 표준 조정 문제, 분쟁조사방법

75-09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7 / 1-123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장벽) 세관문제 소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5.20.~30.)

● 논의사항

(세관평가)

- 단일평가 정의통일 주장: EC(구주공동체), 일본, 북구
- 잠정안을 기초로 논의: 한국 등 개도국, 일본, 북구, 미국

(수입서류)

- 수입서류 간소화의 유용성 인정
- 영사송장 및 수수료

(통관절차)

- 통관절차의 지연과 과도한 처벌문제, 쟁송절차의 허용 등 추후 논의

(품목분류문제)

- BTN(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의 모순점, CCC(관세협력이사회)의 Harmonized Commodity Code

2. 제2차 회의(1975.10.6.~31.)

● 분야별 회의

- 세관문제회의, 교섭그룹회의, 무역협상참가국 위원회, 제30차 통상개발위원회

● 논의사항

- 관세평가 문제, 수입서류 문제, 품목분류 문제, 세관절차 문제 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그룹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8 / 1-76

1975년 중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세이프가드 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4.10.~11.)

- 논의 내용
  - 산업조정조치 및 수출자율규제조치, 감시기구 설치문제, 개도국 특별대우
  - 자의적 해석방지 요건, 무차별 적용원칙의 예외인정 등
- 논의 결과
  - 5월 중순까지 사무국의 종합자료 작성
  - 사무국은 Safeguard 조치로 인한 개도국의 수출피해 자료 작성

2. 제2차 회의(1975.6.30.~7.11.)

- 논의 내용
  - 적용요건, 발동형태, 적용방법, 적용기간, 협의절차, 감시기구의 설치
- 한국 입장
  - GATT 가입국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남발 및 일방적 조치 방지
  - 현행 GATT 규정을 기초로 현 규정의 보충 및 상세한 규정의 설정
- 논의 결과
  - 국제감시기구 설립문제 관련 사무국의 유사 국제기구제도의 조사 과제 부여
  - 세이프가드조치의 검토문제, 발동요건의 세부기준 설정, 사전협의 및 보고절차 등 쟁점 차기회의시 논의

3. 제3차 회의(1975.11.17.~20.)

- 논의 사항
  - 세이프가드 관련 GATT 조항, 발동기준, 국내적 조정 프로그램
  - MFN(최혜국 대우) 기준 적용, 개도국 특별취급문제
- 논의 결과
  - 합의사항은 없음.
  - 다자간 감시기구의 구성, 기능에 관해 사무국에서 검토

75-09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9 / 1-85

1975년 중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ectoral Approach(분야별협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4.7.~9.)

- 사무국은 주석,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광석 및 금속(Tariff Study Code No.08 해당품목)에 대하여 관세율, NTB(비관세장벽), 교역현황, 생산, 소비에 관한 자료준비
-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의 관심품목 조사
-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Differentiated Treatment 가능성에 관해 조사

2. 제2차 회의(1975.7.1.~4.)

- 사무국이 작성한 관세율, NTB, 교역현황, 생산, 소비에 관한 자료가 방대하여 상세검토는 차기회의 시 진행
- 주요국 입장
  - EC(구주공동체) 및 일본: 일반협상의 보조방법인 Sector 교섭을 일반협상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 사무국 문서를 현시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반대
  - 미국: Sector 협의가 일반협상의 보조방법이긴 하지만, 자료수집 및 분석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 전번회의 시 관심품목으로 제시한 품목(5개)중 전기기계, 전자, 화학제품에 대해 사무국의 자료수집 제의(채택)

3. 제3차 회의(1975.11.3.~7.)

- 작업원칙 문제
  - 캐나다, 호주 등은 분야별 교섭을 타 협상진행과 병행을 주장, EC 및 일본 등은 타 협상결과를 본 후 진행할 것을 주장, 미국은 자료수집 작업을 진행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 불일치
- 관심품목 포함 문제
  - 한국은 공산품(전자제품) 포함을 주장하고 일반 협상보다 더 폭넓은 자유화와 개도국 우대 조치를 강조, 여타 개도국은 기존 4개 품목 외에 직물류, 가공식품류 포함을 주장
- 전자제품 포함 문제
  - 미국은 전자제품 포함을 강하게 주장, 일본은 이에 반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EC(구주공동체)의 MTN(다자간무역협상)에 대한 입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0 / 1-60

1975년 중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가 1975.3.6. 보고한 EC의 MTN(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본입장 관련사항임.

1. 공산품 관세 문제

- 관세율 수준의 평준화방식(고관세율 대폭인하, 저관세율 소폭인하)을 통한 관세율 대폭인하
- 관세율 구조의 단순화 도모

2. 비관세장벽 문제

- 일반원칙
  - 일반적 해결보다는 case by case방식으로 해결
  - 무역장애 영향이 큰 것부터 선별적으로 해결, 가급적 다수국 참여, 협의 및 분쟁기구 설치 등
- 협상 초기단계 원칙
  - 상계관세,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정부조달, 표준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정립

3. 수출제한 문제

- 경보제도(Warning system) 채택, 수출수량제한 협의절차 수립 등

4. Safeguard(긴급수입제한) 조항 문제

- 국제감시하에서의 선별적 적용, 보호수단을 취하는 수입국가의 보상제공 의무완화 등 동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주장

5. 농산물 문제

- 목표: 현존 농업정책에 따라 안정적 농산물 교역확대 추구를 위해 세계식량회의가 설립한 각종 기구에 적극참여, 필수식료품 안정화제도 도입, 공동규칙 제정 등 조치 강구
- 시장감시 및 농산물 정책정보 교환제도 참여 및 국제상품협정 체결

6. 개도국 문제

-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이익고려
-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한 특별관세 및 비관세 조치 강구
- 개도국의 이익을 위한 식량원조규정 삽입 또는 수출시장 안정화 및 확대조항 삽입

75-09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31차. Geneva, 1975.11.26.-2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1 / 1-141

정부는 1975.11.26.~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1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문덕주 제네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배도 재무부 세정차관보)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한국포함 86개 회원국, 14개 옵서버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1. 대표단 훈령(일반지침)

- 여타 개발도상국과 보조를 같이 하여 선진수입국의 무역장벽 강화 동향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면서 GATT 제4부의 성의있는 실천 촉구
- 특히 한국은 자원부족 개도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주요 관심분야에 관한 요망사항을 개진함으로써 한국의 입장 강화를 도모
- 현재 GATT 체제 내에서 진행 중인 다자간무역협상 작업에서 동경선언에 명시된 대개도국 특별절차수립을 위한 선진공업국의 의무이행을 구체적으로 시현하도록 강조

2. 주요 결과

- 이사회 보고서 채택
  - 한국대표는 제26항(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 관련 동 협정이 개도국의 섬유류 수출보다는 선진국의 교역 억제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고 모든 국가는 동 협정이 섬유류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헌장이 되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강조
- GATT 활동에 관한 일반토의 진행
  - 한국대표는 최근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GATT 활동에 대한 기대를 언급, 아울러 현존하는 각종 수입제한조치의 조속한 철폐와 새로운 수입제한조치의 금지 강조
  - 여타 개도국들도 제7차 유엔특별총회 결의 및 향후 이행선언 등을 인용하면서 주요 선진국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의 조속한 철폐 내지 완화를 촉구
- GATT 활동에 대한 일반토의 결과(종합)
  - 수입제한 사용금지 확인
  - GATT 제4부의 better implementation
  - 18개국 자문단(Consultative Group of 18)의 설립환영 및 그 기능에 대한 기대
  - MTN(다자간 무역협상)의 조속한 추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2 / 1-70

1974~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GATT 이사회(1974.1.20.)
   - 섬유류제품 교역협정 승인, 파키스탄 홍수구조물자에 대한 surcharge 부과승인 등

2. GATT 이사회(1974.3.28.)
   - 터키·EC(구주공동체) 간 Association Agreement, 루마니아 관세율 검토, 콜롬비아 잠정 가입 문제 작업반회의 구성 합의

3. GATT 이사회(1974.6.21.)
   - 특혜관세실시를 위한 유고의 waiver 신청, 우루과이의 waiver 연장신청 채택
   - 이스라엘, 유고, 그리스 등에 대한 BOP(국제수지)위원회 보고서 채택 등

4. GATT 이사회(1974.10.21.)
   - 이탈리아 수입예치금 조치는 BOP 사정상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정
   - 호주의 신발류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한국 등 개도국은 개도국 수출에 대한 특별고려를 요청

5. GATT 이사회(1974.11.8.)
   - 우루과이의 수입부가세에 관한 BOP 보고서 채택
   - 이스라엘 등 4개국의 수입예치금 및 부가세에 대한 국제수지 악화로 인한 제한조치에 관한 BOP 보고서 채택 등

6. GATT 이사회(1974.11.29.)
   - 파라과이의 GATT 옵서버자격 참석 승인 및 가입검토 작업반회의 구성
   - 일본의 스키부츠 양허철회에 관한 협의국가 통고기간 설정

7. GATT 이사회(1975.2.3.)
   - Consultative Group on Meat 설치문제 협의
   - 한국을 비롯한 13개국과의 BOP 협의문제 일정승인 등

8. GATT 이사회(1975.6.2.)

- 콜롬비아의 잠정 GATT 가입 작업반보고서 채택
- 핀란드 수입예치금제도, 터키의 인지세 협의, 칠레의 간이 BOP 협의보고서 채택

9. GATT 이사회(1975.10.31.)

- 스웨덴의 신발수입 쿼터실시 용의 표명 및 관계국 간 협의진행 합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의정서 참가국 위원회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3 / 1-141

1973~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의정서 CPC (참가국위원회)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GATT 내 개발도상국 간 무역확대와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무역협상의정서 채택
  -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터키, 우루과이, 유고 등 16개국이 참가, 관세양허협정 체결(1973.2.11. 발효)
- 동 의정서에 따라 참가국위원회 수시로 개최

2. CPC 회의(1973.11.16.)
- 동 의정서 가입교섭 확대, 촉진문제 협의

3. CPC 회의(1974.4.10.)
- 개도국 참가촉진을 위한 특별회의 1974.5월 개최합의
- 개도국간 무역협상의 기존 양허확대문제 원칙합의(한국 제안)

4. 제2차 CPC 특별회의(1974.6.12.)
- 그리스 등 5개국 가입진행 상황 보고
- 제3차 특별회의 및 CPC 정례회의 건의사항 채택

5. CPC 회의(1974.7.23.)
- 특별회의 참가 개도국에 대한 가입절차, 기술적 원조제공으로 가입촉구 결정
- 멕시코 가입진행 상황 보고

6. CPC 회의(1974.10.2.)
- 멕시코 등 4개국 가입진행 상황 및 방글라데시 등 6개국 가입문의 상황 보고
- 원산지규정 등 협의

7. CPC 회의(1974.12.1.)
- 파라과이, 스리랑카 등 신규가입 신청 문제 검토

8. CPC 회의(1975.4.14.)
- 파라과이의 양허교섭 없는 가입, 루마니아·스리랑카 등 가입신청 검토

75-099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 회의. Geneva, 1975.11.18.-20.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4 / 1-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가 1975.11.18.~20.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는바, 한국 관련된 주요내용임.

1. Full Consultation 요구결정

- 동 BOP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대해 Full Consultation을 요구하기로 결정
- GATT 사무국은 동 협의에 대비하여 협의 개최 1개월 전까지 한국의 협의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한국은 1971년에도 동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협의를 가진바 있음.

2. GATT/BOP 위원장 및 담당관 접촉 결과(1975.12.12. 주제네바대사 보고)

- 한국에 대한 BOP 협의요청 경위
  -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 Full Consultation 요청
  - BOP 협의는 Full Consultation이 원칙이며, Simplified Consultation은 일부 개도국 사정을 참작한 편법으로 도입 채택된 만큼 한국과 같은 위치에서는 Full Consultation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1971년에도 가진바 있어 그간 한국의 경제사정 변천을 알아보자는 데도 목적이 있음.
- 자료제출
  - 동 협의에 제출할 자료는 늦어도 위원회 개최 1개월 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여타국 협의
  - 1976.4월 한국을 포함 브라질, 유고, 핀란드 등과도 협의 예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자문단) 회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5 / 1-138

정부는 1975.11.24.~2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자문단)그룹 회의에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GATT/CG-18(18개국자문단)그룹

- 설치 경위
  - 1974.6.21. GATT사무총장은 급변하는 국제경제동향에 신속히 대처하고, IMF(국제통화기금)의 20개국 잠정위 발족과 병행하여 보다 능률적인 의견조정기구 설치를 제창
- 18개 정위원(Full Member): 선진국 7, 아시아 3(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3, 라틴아메리카 3, 동구 1, 지중해 1명
  - 부위원(Alternate 8~10명 규모): 아시아 1(한국 확정), 선진국 2~3.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국가, 지중해, 유고 각 1명
- 기능
  - GATT의 목표와 원칙에 상응하는 무역정책 추구 및 유지를 위해 국제무역의 진전상황 검토
  - 다자간 무역체제 및 국제무역 관계를 위협하는 돌발사태 예방 및 동 시정조치
- 한국대표 인선
  -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를 임명

2. 제1차 회의(1975.11.24.~25.)

- 참석자
  - 정위원 18개국 대표, 부위원 9개국 대표
- 토의내용
  - 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결정
  - 본질문제(국제적인 경기불황, GATT 역할의 강화, 국제수지와 무역과의 관계) 개괄 의견교환
- 종합관찰 및 건의
  - 본 기구가 주요무역국 간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의장인 GATT사무총장에 대한 자문제공
  - 특히 국제수지와 무역의 상관관계를 깊이 논의함으로써 GATT의 권위와 효용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발돋음으로 출발한 고위정책책임자 집합기구라는 점을 고려, 본 기구 활동에 관해 본국 정부에서 큰 관심으로 임해 줄 것을 건의

75-099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6 / 1-272

정부는 1975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케네디라운드(1963~67년)이후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이 1973년도 동경 각료회의에서 향후 MTN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의(GATT내 TNC 설치 결의)
- 과거 케네디라운드 협상에서는 참가국 간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만 대상

– 금번 MTN에서는 관세 및 각종 비관세분야도 포함

2. 제1차 회의(1975.2.11.~13.)

- 6개 분야별 교섭그룹 설치: 관세, 비관세, 열대산품, 농산물, 특수분야(Sectoral Approach),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3. 제2차 회의(1975.7.15.~16.)

- TNC산하 6개 협상그룹 협상 진행상황 점검
  - 개도국은 현 단계까지의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처우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한데 대한 불만 집중발언
  - 선진국은 협상의 진행상황에 만족 표명
- 협상 방법
  - 미국은 실질적 협상에 들어간 분야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잠정결과(interim results)를 유도하자고 제안, EC(구주공동체) 및 일본 등은 점진적 협상진행을 제의
  - 미국, 일본, EC 등은 supply management 문제 취급을 주장, 캐나다 및 호주 등 주요 원자재 보유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검토작업(exploratory work)후 토의할 것을 주장

4. 제3차 회의(1975.12.9.~11.)

- MTN에 있어서 선진-개도국 간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음에 관심을 표명, MTN을 더욱 촉진하자는데 의견일치
- 보조금 및 상계관세 등을 차기 회의시 중점 토의하기로 합의
- 1976년에는 모든 협상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별대우 및 이를 위한 절차검토에 합의
- 1977년까지 협상종결과 이를 위해 더욱 실질적이고 유효한 협상추진에 합의 등

Wurth, Pau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TSB(직물감독기구) 의장 방한, 1975.5.20.-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M-37 / 17 / 1-70

P. Wurth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의장이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1975.5.20.~26. 방한함.

1. 초청 목적

- 동 의장의 방한은 GATT 섬유협정에 의한 쌍무협정의 체결 및 동 운용과정에서 야기되는 당사국간의 쟁의중재 및 조정 등 TSB의 기능을 고려할 때 한국에 크게 유익한 계기

2. TSB 개요

- 연혁 및 구성
  - MFA(다자간섬유협정, 1974.1.1. 발효)에 의거하여 1975.4월 발족
  - 협정 유효기간은 4년(1974.1.1.~77.12.31.), 협정체결국은 한국을 포함 50개국
- 기능
  - 직물류 수입제한조치 철폐촉진
  - 직물류 교역질서에 관한 보고접수, 감독 및 권고
  - 직물류 교역분쟁의 해결권고 및 동 문제의 상급기관(GATT 이사회 및 직물류위원회) 보고
- 한국과의 관계
  - 호주는 한국 면직의류에 대해 일방적인 수입규제조치를 1974.10월 TSB에 제소

3. 방한 일정

-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섬유단체연합회장 방문, 섬유산업현황 브리핑, 관련 산업시찰 등

4. 김동조 외무부장관 예방(1975.5.21.)

- 김 장관 언급요지
  - 한국의 섬유류 수출비중(총 수출의 약 30~40%)을 감안, 한국 측 입장에 대한 호의적 고려 요망
- Wurth 의장 언급요지
  - 금번 방한이 TSB 직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 섬유류 수출입 양국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섬유류 수출입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

75-0997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5-46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7 / 18 / 1-95

정부는 1975.5.20.~29.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5~4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 송병순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회의 목적
  - 관세행정제도 및 절차를 국제적 수준으로 통일 간소화시키기 위한 연차총회
- 주요 의제
  - 협약 및 권고가입 상황 점검
  - 상임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화제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보고 청취

2. 참가 목적

-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각국대표들의 동향 파악
- 아래 3개 기술협약가입서를 빠른 시일내에 CCC 사무국에 기탁의사 표명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의한 관세협약
  - 포장용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3. 회의 주요경과

- 여객명부(Passenger Manifest) 폐지문제
  - 한국은 PTC(상임기술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여객명부는 세관목적 뿐 아니라 안보 등 중요한 용도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당분간 적용할 수 없음을 피력
  - 그러나, 표결에 의해 동 권고안은 통과
- Customs Emforcement의 다자간협정 제정문제
  - 한국은 사무국 제안을 지지
  - 표결에 의해 통과
- 해외가공을 위해 일시 수출한 물품과 동일물품(Setting off in Equivalent Goods) 수입 시 관세부과 특별고려문제
  - 사무국 작성 타협안 채택

호주의 수입규제조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9 / 1 / 1-21

1975년 중 호주의 수입규제조치 관련사항임.

1. 호주 정부, 철강제품 양적규제조치 발표(1975.3.9.)

- 열연강판 등 대상, 규제기간은 1년(1975.1.1.~12.31.), 규제량은 1972/73년 대비 수입량의 1/4
- 조치이유: 외국 철강제품의 수입급증과 1974년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고누적으로 감원 및 감산 등 심각한 상태감안

2. 호주 정부, 수입규제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논의(1975.3.24.)

- 호주 정부의 직물류 및 철강 수입제한조치 토의
  - 직물류 수출국 대부분은 호주의 수입제한조치 조기철폐 요망
  - 호주 정부는 철강류의 Global Quotas에 의한 일시수입제한조치 설명과 수출관심국가와의 협의 용의 표명

3. 일본·호주 간 양자협의 개최(1975.4.16., 동경)

- 호주의 자동차, 강판 수입제한문제에 관해 GATT 제19조에 의한 양자협의 개최
  - 호주 측은 자동차 수입제한조치의 배경, 수입품의 국내산업 피해상황 및 조치내용 설명
  - 일본 측은 동 조치의 철회 가능성 유무 및 조치의 완화여부 질의

4. 호주 정부, 양자협의 개최 용의(1975.5.29.)

- 철강제품에 대한 GATT 제19조 협의를 이해관계국과 제네바에서 가질 것을 통보
  - 한국과는 1975.7.2. 협의를 희망하며, 한국 측이 동 협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고 언급
- 공식적으로 협의를 제의한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 미국 및 일본과는 협의일정 합의(1975.6.30.~7.4. 제네바)

75-0999

EC(구주공동체)의 참치 수입규제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6-23 / 3 / 1-95

1975~76년 중 EC(구주공동체)의 참치 수입규제 관련사항임.

1. EC, 참치 수입규제조치 실시(1975.5.27., EEC위원회)

- 프랑스가 제3국(EEC비가맹국)으로부터 냉동참치 수입금지조치(1975.7.1. 이후)
- EEC회원국 간의 공동참여 가격개정안 협상 결정
  - 한국, 일본 및 스페인

2. EC·일본 및 노르웨이와의 협상 개최(1975.7.3.~4.)

- EC 측은 참치의 EC내 시장가격(톤당 800달러 이상)을 감안 현 톤당 350UA를 550UA로 인상할 것을 제의
  - 일본은 찬성, 노르웨이는 500UA로 수정제의
- 한국은 주벨기에대사에게 상기 수입가격(Reference price) 인상은 한국 참치어업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탈리아 등 인상 반대국과 협력,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교섭훈령

3. EC, 제3국산 참치 수입금지조치 시행시기 연기(당초 1975.7.1.에서 1976.5.31.로 연기)

- 프랑스 측 요청 고려

4. EC 측의 제3국산 참치 수입가격(Reference price) 인상

- EC 측은 1976.5.1.부터 노르웨이와 합의한바 있는 참치 수입가격(Yellow-Fin 3kg 이상)을 톤당 450UA로 인상
- 참치의 국제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입가격 인상은 한국의 대EC 참치수출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주벨기에대사 보고)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조치 연장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9 / 2 / 1-83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조치 연장 관련사항임.

1. 일본 정부는 1975.2월 생사 수입 재개 방침을 발표함.

- 1974.8.1. 중단했던 생사 수입을 1975.2.20.경 재개
  - 전체 수입량은 Global base로 15,500표(表)로서, 수입선은 과거 국별 수입실적을 배려하여 할당 예정

2. 한국 측은 1975.2.14. 일본 측에 생사 수입 쿼터증량을 촉구함.

- 주일본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 쿼터증량 촉구

3. 일본 측은 1975.5월 생사 수입규제조치 연장을 결정함.

- 규제기간 연장 조치
  - 국제적인 생사 공급과잉상태 하에서 일본의 생사수급도 심한 불균형상태 계속
  - 규제조치를 폐지할 경우 시장교란이 우려되므로, 생사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규제기간을 1975.5.31. 종료에서 1976.5.31.까지 1년간 연장
- 생사 수입방침
  - 1974년도 생사 수입물량(8만표) 수준을 1975년에도 견지
- 박노수 외무부 통상1과장은 5.22. 주한 일본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한국입장을 표명
  - 생사 수입에 있어 자유무역체제로 조속히 환원
  - 생사 수입규제조치 철폐가 불가능할 경우, 연간 수입량 사전제시와 함께 대한 수입물량은 최소 40%이상 수입조치 요망

4. 일본 측은 1975.6.7. 대한 생사 수입방침을 통보함.

- 총 물량 2만 표 중 대한 수입물량 6천 표 수입
- 한국 측은 6.10. 금번 할당량에 대한 일본 측의 재고를 촉구

75-1001

미국의 1974년도 통상개혁법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9 / 3 / 1-351

미국 포드 대통령이 1975.1.3. 서명, 공포한 미국의 1974년도 통상개혁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에 관한 사항임.

1. 통상법안 제정 배경

- 과거 통상협상을 위해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통상법안 부여
- 1962년 케네디라운드에 따른 통상교섭으로 획기적인 관세인하는 가능하게 되었으나,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무역체제의 불평등 상태는 여전히 상존
- 미국 국제수지의 누적 적자, EC(구주공동체) 및 일본의 경제적 성장, 석유위기 등 세계경제의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제정치, 경제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재확립

2. 통상법안 주요내용

- 대통령의 수입규제권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10년간 일반특혜관세제도 부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 대상국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형식으로 조만간 발표
- 공산국가에 대해 최혜국 대우 부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3. 국제교역에 미칠 영향

- 미국 행정부는 향후 5년간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혁 등을 위한 교섭에 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방적이며 균형된 국제경제체제 건설에 새로운 지도권 수립 가능

4. 한·미국 교역에 미칠 영향

- 관세인하, 인상권을 부여받은 미국 행정부의 운영상의 묘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종전보다 더 용이하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 대미 수출액의 80%이상을 점하는 대종품목들이 GSP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GSP 혜택에 큰 기대를 걸 수 없으므로 대미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개발 요망

한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지정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08-70 / 7 / 1-14

정부가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 지정방침을 검토한 내용임.

1. 재무부 입장

- 아프리카, 중동지역 및 동구권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자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동 지역국가 중 GATT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GATT 최혜국 관세율 적용범위 내에서 편익관세 적용 검토

2. 관계부처회의 결정(1975.4.24.)

- 각 경제관계 부처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국으로부터 수입 가능품목을 참작하여 GATT 비회원국가 중 편익관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국가명을 명시, 재무부에 요청
- 재무부에서 종합정리, 외무부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을 요청
- 동 의견에 따라 최종결론 도출

3. 기대효과

- 동 편익관세 대상국가가 결정되면 이를 공표하여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75-1003

한·헝가리 교역 추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9 / 4 / 1-12

1973~75년 중 한·헝가리 간의 교역을 추진함.

1. 대헝가리 상사접촉 활동

- 한국 견본제품을 주오스트리아 수출에이전트상사 전시실에 전시(1973.12월)
  - 1974년초 개별 전시회를 개최, 헝가리 등 동구상사 대표를 초청하여 한국상품 소개에 활용할 예정
- 헝가리 구매사절단이 1974.1월 오스트리아를 방문, 한국상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

2. 주오스트리아대사, 대헝가리 교역 관련 보고(1974.1.22.)

- 한국상사는 주오스트리아 수출에이전트를 통해 헝가리에 아동 편물 스웨트류를 수출중
  - 그러나 헝가리 측이 1973년 한국상사가 선적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는 의견접수
- 한국상사의 1973년도 거래분 중 최종선적분 일부에 다른 제품을 포함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등 대동구 교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국내상사의 여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독려하여 줄 것을 건의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 Selloe 헝가리대사관 상무관 접촉결과 보고(1975.12.1.)

- 한국은 한·헝가리 양국간 외교관계는 없으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동구권과도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전제
- 헝가리 상무관은 양국간 외교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문호개방정책에 대해서는 관심표명을 회피
  - 단, 한국의 수출입 관심품목 제시에는 일정한 관심 표명

아일랜드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조치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9 / 5 / 1-117

1975~76년 중 아일랜드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관련사항임.

1. EC(구주공동체) 측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교섭제의

- EC 측은 1975.1.16. 한국으로부터의 셔츠, 블라우스 등 특정면직물 수입이 자국시장의 교란을 이유로 MFA(다자간섬유협정) 조항에 의거, 쌍무교섭과 긴급방식에 입각한 협력요청

2. EC와의 협상타결

- EC 측과 아일랜드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합의(1975.2.12.~13., 벨기에 브뤼셀)
  - 규제시기: 1975.3~8월(6개월간)
  - 규제품목: 남자 및 여자용 셔츠 등 5개
  - 규제량(쿼터): 품목별로 6,250~7,750타
- 한국은 1975.3월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TSB(직물감독기구)에 상기내용 통보

3. 아일랜드,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덤핑방지세 부과

- 아일랜드 정부는 1975.7.18.부터 한국산 합성섬유제 셔츠 및 블라우스 등에 40%의 덤핑방지세 부과
- 부과 구체내용
  - 부과품목: 남자 및 여자용 합성섬유제 셔츠(편직 내의), 남자 및 여자·유아용 합성섬유제(편직 외의), 합성섬유제 블라우스 등(여자 및 유아용 비편직 외의). 합성섬유제 셔츠(남자용 비편직 내의), 합성섬유제 셔츠(여자 및 유아용 비편직 내의)

4. 정부간 교섭진행

- 외무부는 1975.8월 이후 주벨기에, 영국대사에게 수시로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상기 이중수입규제조치는 MFA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임을 EC 측에 항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결과 보고
- 주영국 아일랜드대사관은 11.7 주영국대사에게 동 문제는 EEC(유럽경제공동체)위원회를 통해 협의될 사항임을 회신

75-1005

한·이스라엘 통상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19 / 6 / 1-18

1973~75년 중 한·이스라엘 간의 통상 관련사항임.

1.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게재

-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1973.2.28. 아래 항의서한을 외무부에 발송
  - 코트라에서 발간하는 해외시장 유의사항(2.26.)에 쿠웨이트가 Eisenberg 상사와 동 자회사를 보이콧한다는 아랍 보이콧위원회(Arab Boycott Committee)의 발표를 게재
- 코트라는 4.16. 아래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
  - 상기 기사는 코트라 쿠웨이트사무소 수시보고에 의해 게재
  - 그간 주한 이스라엘대사관과 협의, 상호 충분한 이해교환으로 3.3. 해외시장지에 해명기사를 게재

2. 이스라엘 화물의 수에즈운하 통과

- 텔아비브발 AP통신은 1975.6.5. 아래 요지로 보도
  - 이스라엘 운수당국은 한국산 설탕을 실은 라이베리아선적의 화물선(행선지는 이스라엘)이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경우, 이집트 측이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test case로 시험할 계획
- 쿠웨이트 The Daily News지는 6.7. 아래 사설로 크게 취급
  - 이집트·이스라엘 간 비밀합의에 의해 이집트가 한국산 설탕선적선박의 수에즈운하 통과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랍권의 대이스라엘 기본자세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논평
- 주카이로총영사는 6.12. 관련 신문사설 보고
  - 이집트 가젯트사설은 이스라엘이 한국에서 구입한 설탕을 라이베리아국적선에 적재하고 수에즈운하를 통과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스라엘 행동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난
- 대한제당협회는 6.19. 상공부에 아래내용을 통보
  - 1975년 관련업계에서 수출한 설탕은 이스라엘이 목적지인 것은 없으나, FOB(수출계약)상 최종 목적지는 확인불가

일본의 한국 부실기업조사서 공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N-19 / 7 / 1-70

1975년 중 일본의 한국 부실기업조사서 공개 관련사항임.

1. 조사서 공개경위

- 1975.2.3.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소속 안타쿠 의원이 외무성이 만든 한국의 부실기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미야자와 일본 외상에게 요구

2. 외무부의 대일 외교노력 전개

- 1975.2.6. 주일본대사, 도고 일본 외무차관에게 동 자료의 비제출 또는 비공개 조치 요청
- 1975.2.10. 외무부 차관보, 주한 일본공사에게 아래 정부입장 전달
  - 일본 정부에 의한 특정기업의 부실상태 공개는 당해기업의 신용에 큰 영향을 주고 이를 손상시킨 것
  - 금번 일본 측의 공개는 이해곤란한 처사이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
- 1975.2.24. 미야자와 외상은 아래와 같이 해명
  - 동 자료는 4~5년전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 그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외무성 내부의 참고자료이며, 절대 정부의견은 아니며 또한 공식자료도 아님.
  - 한국 측에 뜻하지 않은 폐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 1975.2.28. 외무부 차관보는 주한 일본공사에게 한국입장을 아래 메모로 전달하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해명을 요청
  - 동 조사서는 과거의 일
  - 설사 사실을 반영한 자료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공표되어, 관련업체에 폐가 된 것은 유감이나 이것이 일본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음.
- 1975.2.28. 주한 일본공사는 상기 사항이 반영되도록 보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75-1007

한·일본 쯔무기(명주) 교역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9 / 8 / 1-196

한·일본 간 쯔무기(명주) 교역의 원활화를 위한 실무자회담이 1975.2.13.~14.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일본 측: 고토 통산성 심의관

2. 합의사항

- 향후 한국 측은 대일 수출 쯔무기에 한국제품의 표식을 방직과정에서 표시
- 수출량 증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질서있는 무역을 하되, 1974년도 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 측으로서는 최소한 1974년 수준에서 25% 순증(純增)은 불가피함을 비공식적으로 양해
- 일본 정부는 아래 사항을 양해하고 이를 일본 국내에 전달
  - 쯔무기 산업은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고 현재에도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인이 관여중
  - 일본 정부는 쯔무기 및 기타 생산 대일수출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제한조치도 있어서는 안될 것
  - 현 일본내 쯔무기 수급동향에 의하면 한국 수출분은 극히 소량에 불과한바, 한국은 일본 쯔무기 시장을 하등 교란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음.
  - 가능하면 쯔무기 교역은 정부에서 개입하지 말고 민간차원에서 협의 타개하는 방향으로 노력

3. 평가

- 일본의 쯔무기 수입규제를 위한 법안심의는 동 심의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설치여부와 함께 중지 또는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
- 일본 정부는 현 한국의 쯔무기 산업현황 및 정부의 향후시책을 일응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문제가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낙관은 불허
- 따라서 한국의 쯔무기 원산지표시의 강화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선 일본 국내의 여론 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수출량 증대 내지 수출방향 등에 대하여는 일본내 수입규제 동향을 검토하여 다소 신축성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루마니아 교역 추진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9 / 9 / 1-29

1971~75년 중 한·루마니아 간의 교역을 추진함.

1. 루마니아 무역상 방문(1971.8.25.)

- 루마니아 정부계통 무역상이 상무관을 방문, 트랙터 등 대한 수출가능성을 타진

2. 루마니아 국제무역전시회 개최(1973.12.4.~16., 필리핀 마카티)

- 건축자재, 동력기, 화공약품,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등을 전시
- 무역관 당국은 주필리핀대사를 초청하였으나,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초청 취소 통보

3. 세계인구회의 참석(1974.8.19.~30.,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보고

- 북한의 활동분석
  - 지금까지 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가입실현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회의에서 한국과의 대결을 강화하여 한국을 열세에 놓으려는 책동 예상
- 건의사항
  - 루마니아와의 공식접촉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루마니아 상품수입 등을 내세워 접촉을 시도할 필요
  - 기계류박람회(10월) 참관단은 주이탈리아대사관을 통해 직접 루마니아 상공회의소와 연락, 추진
  - 루마니아와의 비정치적 교류는 사회과학아카데미 등 관련기관을 접촉,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일 것으로 판단
- 대루마니아 접촉활동 전개
  - 기계류박람회(10월) 참관과 관련하여 협의한바, 루마니아 상공회의소와 박람회 당국자는 낙관을 표명하였으나, 통상성 관계자는 휴가중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기피
  - 주루마니아 미국대사관 정보에 의하면 루마니아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한국과의 비정치적 교류는 시기상조라고 언급

75-1009

한·사우디아라비아 합작무역회사 설립추진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9 / 10 / 1-95

1974~75년 중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합작무역회사 설립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74.4월 상공부장관과 사우디 경제기획상 간에 합작무역회사 설립원칙을 합의함.

2. A. Derhally 사우디 기획성 서부지역소장이 1974.11.2.~11. 방한, 한·사우디 합작무역회사 설립에 합의

- 계약일: 양측 민간회사 간 1974.11.11. 설립계약
- 투자비율: 한국 49%, 사우디 51%
- 자본금(창업비): 제1차 20만 달러
- 위치: 사우디 제다
- 합작회사 주요업무: 양국간 경제협력, 통상증진 및 공공개발사업에 참여(사우디 제다에 한국 전시관을 설치, 한국상품을 사우디 및 인접 국가에 현지판매, 기술 및 용역수출담당, 산업 및 공공시설개발에 참여)

3. 상공부는 1975.9.22. 대사우디아라비아 진출방안의 일환으로 상기 한·사우디 합작무역회사 설립추진 자료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함.

- 1974.11월 설립계약 체결 이후 현재 설립추진 지연
  - 지연이유: 사우디 국내법상 외국인과의 합작투자 허가는 산업분야에 국한하고 비산업분야인 동 무역합작회사는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합법적인 설립을 위한 의견차이 존재
- 양측간 합의사항
  - 형식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내면적으로 합작무역회사 설립운영
  - 한국 측은 동 무역회사 자본금으로 6천만 원 상당(49%)의 현물투자(전시용 상품)
- 향후 추진계획
  - 1975.11월 대리점 계약 체결
  - 1976.1월중 전시관 개설 추진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제6차. 서울, 1975.6.17.-18.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9 / 11 / 1-302

제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이 1975.6.17.~1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호주 측: Crean 통상장관

2. 의제
   - 양국간 무역현황 검토
   - 교역정책의 추이
     - 호주 측: 수입제한 잠정조치, 일반특혜관세제도와 대개도국 수입지원제도
     - 한국 측: 수입허가제도, 수입담보금제도
   - 교역확대 전망: 한국의 대호주 수출, 호주의 대한 수출

3. 주요 합의사항(공동성명서)
   - 금번 회의가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 달성과 경제유대 강화를 위해 매우 유익했으며, 호주 측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
   - 호주 측은 호주 정부가 최근에 취한 수입규제조치는 잠정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호주의 국내 산업이 안정을 회복하면 즉시 동 제한조치를 철폐할 것을 확약
   - 한국 측은 인삼제품, 철강제품, 섬유제품, 신발류 등의 계속적인 대호주 수출을 위한 호주 측의 협조를 요청
   - 호주 측은 곡물, 사료, 광산물, 축산물과 원료 등 특히 소맥의 대한수출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장기공급계약을 위한 한국의 수요에 대한 자료를 요청
   - 1976년 적절한 시기에 제7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캔버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75-1011

한·미얀마(구 버마) 통상장관회담, 제2차. Rangoon, 1975.10.6.-9.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1/ 서남아
MF번호	N-19 / 12 / 1-236

제2차 한·미얀마(구 버마) 통상장관회담이 1975.10.6.~9. 랑군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미얀마 측: U San Win 통상장관

2. 주요 결과

- 양국간 무역현황 검토
- 양국간 수출관심품목 검토
  - 한국 측: 양국 상호관심품목 수입시 우대주장, 미얀마 원석(原石)수입에 협조요청
  - 미얀마 측: 콩 등 수출희망 품목 제시, 귀금속 경매(매년 2월)에 한국 참가권유
- 대미얀마 연불(延拂)수출
  - 한국 측: 미얀마 관심품목에 대한 연불수출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국내조치 설명
  - 미얀마 측: 연불수입 조건 개선요청
- 자원개발 상호협력 및 활성탄소제조공장
  - 한국 측: 자원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가능성 모색
  - 미얀마 측: 미얀마의 신헌법상 전국토 및 전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 기술협력 제공
  - 한국 측: 미얀마 측 관심분야 기술 한국 측 부담으로 훈련실시 용의 표명
  - 미얀마 측: 한국 측의 호의 수용
- 기타
  - 미얀마의 서울무역사무소 설치: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 미얀마 측은 인원 및 예산 문제 등 어려움 피력
  - 코트라사무소 설치: 한국 측은 조속한 협조를 요청, 미얀마 측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상

3.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미얀마 방문기간 중(1975.10.6.) San Yu 미얀마 국가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Ne Win 미얀마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함.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제1차. 서울, 1975.7.9.-11.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9 / 13 / 1-174

제1차 한·태국 통상장관회담이 1975.7.9.~1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 태국 측: Chittavira 통상장관

2. 양측 관심품목

- 현행 무역협정 부칙에 양측 관심품목이 포함되도록 원칙적 합의
  - 한국 측: 해산물, 합판, 의약품, 섬유류, 기계류,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 태국 측: 원목, 쌀 등 농산물, 건자재, 천연수지, 가구, 피혁 및 의약품 등

3. 양국간 교역확대

- 한국 측은 인삼제품에 대한 태국 측의 관세품목 재분류를 요청, 면직물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철폐를 요청
  - 태국 측은 관계당국과 협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 태국 측은 쌀, 옥수수 및 전분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
  - 한국 측은 동 품목에 대한 교역확대를 위해 공급량과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견해 피력
- 한국 측은 생사의 태국 견직물 제조업자에게 수출 요청
  - 태국 측은 동 요청을 정부 관계부처 및 업계에 전달하기로 약속

4. 무역 정책

- 양측은 무역정보의 상호교환, 수출입 전망, 연간 외화배당 계획 등을 포함한 무역정책에 관한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상설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합의

5. 상호교류 확대

- 양국간의 상호 이해증진 및 교역확대를 위해 통상사절단 교환, 무역전시회 개최, 정부 또는 민간레벨의 방문을 적극 권장하기로 합의

6. 자원 개발

- 한국은 생고무, 면화, 원당, 옥수수 등 태국의 자연자원개발에 협력할 것을 제의
- 한국은 고속도로, 항만건설 등 양국간 개발계획에 상호협력을 증진하자고 제의

7. 차기회의 개최

- 회담의 연례 개최와 제2차 회담을 1976년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75-1013

한·호주 의류 쿼터회담. 서울, 1975.6.10.-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9 / 14 / 1-134

한·호주 의류 쿼터회담이 1975.6.10.~12. 서울에서 개최되고 1975.7.1. 캔버라에서 양해각서를 서명함.

1. 개최 경위

- 호주 정부는 1975.1월 국내산업보호와 시장교란을 이유로 섬유류에 대해 쿼터제 실시방침을 발표
- 호주 측이 1975.4.30. 여자 및 유아용 직조드레스, 직조코트, 직조셔츠 및 블라우스 3개 품목에 대해 MFA(다자간 섬유협정) 제3조에 따라 자율규제 협의를 한국 측에 제의
- 한국 측은 1975.5.27. 호주 측 제의에 동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
- 호주 측: K. Wilkinson 통상성 부차관보

3. 개최 결과

- 직조드레스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직조코트는 월별 수출입통계 상호교환에 합의
- 직조셔츠 및 블라우스의 쿼터량에 합의하지 못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 (호주 측: 29만 Pieces, 한국 측: 40만 Pieces를 각각 제의)

4.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 1975.7.1. 캔버라에서 노석찬 주호주대사와 J.Frgarty 호주 통상성 제1부차관보 간 서명
- 직조셔츠 및 블라우스 쿼터합의
  - 규제량: 30만 Pieces
  - 규제기간: 1975.7.1.~76.6.30.(1년간) 단, 1975.7.1. 선적분은 규제량에서 제외
- 직조코트
  - 감시품목으로 하고 월별 수출입 통계자료 상호 제공

한·오스트리아 간의 합섬셔츠 쿼터회담. Vienna, 1975.7.10.-1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9 / 15 / 1-34

한·오스트리아 합성셔츠 쿼터회담이 1975.7.10.~11. 비엔나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
- 오스트리아 측: G. Dinzl 통산성 국장

2. 회담 결과

- 1975년도(1975.8.1.~76.7.31.) 쿼터를 85만 매(전년대비 13.3% 증가)로 합의
  - 이외에 동 협정연장의 대가로 3만 매 추가허용
- 다음년도 분을 앞당기거나 이월사용
  - 10%(단, 앞당겨 사용시에는 5% 초과 불가)
- 특별조항 삽입 또는 삭제
  - 한국 측 수출분중 오스트리아에서 재수출된 분량은 오스트리아 측이 한국 측에 통보, 동량을 상기 쿼터에서 제외
  - 1974년도 협정문안 중 한국 측의 수출추천서 발급을 협정적용 개시일인 1975.8.1. 이후 신용장 개설분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1975.8.1. 이전 신용장 개설분의 수출을 위한 한국수출업자의 불편제거 목적)
- 기타
  - 오스트리아 측 요청에 따라 소량 주문의 허용 필요성에 대한 오스트리아 측 관심을 토의요약에 기록
  - 85만 매 쿼터량 이외로 3만 매의 추가허용에 관해 오스트리아 측은 한국 측 수석대표 앞 확인서한 전달

3. 향후 추진방침

- 상기 내용의 협정문안에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
  -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는대로 정식발표 예정

75-1015

한·인도 무역회담. New Delhi, 1975.11.25.-27.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9 / 16 / 1-183

한·인도 무역회담이 1975.11.25.~2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74.8월 서울에서 체결된 한·인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제9조)에 의거, 한국 측이 1975.10~11월 회담개최를 제의하고 이에 인도 측이 수락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선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 인도 측: A. Verma 상공성 차관보

3. 의제별 주요 논의결과 및 합의사항

● 무역현황 검토
-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에 의견일치
- 한국 측은 철도차량, 선박, 수도 플랜트 수출에 대한 인도 측 선처를 촉구, 인도 측은 방직기계류 수입지체건 해결을 요망

● 통상증대
- 한국 측은 인도의 수입절차 간소화 등 수입제한 완화를 촉구, 인도 측은 해결노력 약속
- 양국간 구체적인 수출관심품목을 교환하고 상호 교역증대 노력합의
- 한국 측은 인도의 철광석 등 장기공급에 의한 구입제의, 양측은 이를 장려하고 업무제휴 추진 합의

● 경제, 기술협력
- 한국은 창원공업단지에 인도기계공업 합작투자 권유
- 인도는 잠업합작투자 제의, 한국은 관계업자간 구체협의 타진 언급

● 가일층 긴밀한 통상조치
- 현 합동무역위원회(Joint Trade Committee)를 설치하고, 향후 고위급 등 협력기구 확대에 합의
- 양국 상공회의소간 Joint Business Council 설치를 위해 양국 정부 협조 약속

● 기타
-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체결문제와 인도·이집트·유고 3국 간 통상협정에 한국의 가입문제를 향후 검토
- 1976년 제2차 한·인도 무역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한·일본 무역회담, 제12차. 동경, 1975.12.1.-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0 / 1 / 1-355

제12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1975.12.1.~2.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통상국장
- 일본 측: 아카에 외무성 아시아국장

2. 회의 의제

- 양국간 무역현황 검토
-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불균형 시정 문제: 관세인하, 무역자유화 등 관세 이외의 개별 무역문제(섬유류, 수산물, 식육(食肉) 등)
- 기타문제: 일본영화 수입 등

3. 주요결과

- 한국 측은 무역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두고 일본 측에 아래 사항 요구
  - 관세인하, 특혜관세제도 개선, 가공재 수출 원재료분 관세경감 대상품목 확대, 생사 및 견연사 등 섬유류와 해태(海苔) 등 수산물의 수입제한 철폐, 육류 수입쿼터 증대 등
- 한국 측은 별도 수석대표 간 단독회담 시 아래 언급
  - 현재와 같은 대일 무역역조현상이 계속되면 한국 정부로서도 일본을 심한 입초국(入超國)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과세기준 변경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
  - 특히 견연사 수입제한 완화, 특혜관세제도 개선 및 해태 거래의 합리화 등 3개 시정사항에 대해 각별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일본 측은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로 받아들였으며, 종래의 접근과 다른 것임을 인식하고 향후 한국 측 요구사항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성의를 보일 것으로 전망

4. 대표단 건의

- 일본 측이 금후에도 계속 한국 측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요망사항을 시책에 반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입초국 지정 및 과세기준 변경 등 시정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강구

5. 견연사 실무자회의(1975.12.4.~5., 동경)

- 한국 측 수출물량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로 추후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은 수출자율규제 물량으로 월 2,750~2,500표(表) 선을 제시
  - 일본 측은 수용불가입장 표명

75-1017

한·일본 섬유류 실무자회담. 서울, 1975.4.15.-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0 / 2 / 1-55

한·일본 섬유류 실무자회담이 1975.4.15.~16.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금진호 상공부 섬유공업국장
   - 일본 측: 고토 통산성 심의관

2. 양측의 입장

   - 일본 측
     - 일본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섬유류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의도는 없음.
     - 오시마 쯔무기(명주)에 대하여는 생산지 업자들의 특수성과 일본 국내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한국은 1974년 실적에 비해 급격히 수출을 증가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업계 지도바람.
     - 견연사 및 견직물의 대일 수출장려와 생산설비의 급격한 증설의 지양을 희망함.
   - 한국 측
     - 양국간 섬유류 교역수지는 일본 측이 출초(出超)국이며, 무역자유화에 비추어서도 수입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오시마 쯔무기 유사품에 대하여는 1974년도 대일 수출실적에 온건한 신장률을 감안한 물량 한도를 수출하도록 지도하되, 여타 쯔무기의 수출신장에는 구애받지 않음.
     - 일본의 견연사 수입급증은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에 따른 자업자득현상이므로 우선 생사 수입을 정상화해야 할 것임.

3.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4.17. 한·일본 섬유류회담 차 방한한 시마사키 일본 통산성 정무차관과 면담함.
   - 김 장관 언급요지
     - 일본 측의 섬유류 규제조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대입장 표명
     - 일본 정부의 관련업계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입규제 움직임 저지 요청
   - 시마사키 차관 언급요지
     - 세계적 경기불황 하에서 일본 섬유류업계의 타격 등 국내 어려운 상황과 수입규제의 불가피성 설명

한·일본 해태회담, 제12차. 동경, 1975.4.23.-2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88 / 7 / 1-61

제12차 한·일 해태(海苔)회담이 1975.4.23.~24.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명하 수산청 어정국장
- 일본 측: 효도 수산청 어정부장

2. 수입 자유화

- 한국 측은 해태무역 문제는 양국간 무역의 증진 및 불균형 시정책의 일환으로서 또한 국제적 무역자유화 추세를 감안하여 수입자유화를 단행할 것을 요청
  - 일본 측은 해태가 연안어민의 중요한 수입원임과 최근 국내사정의 변화 등으로 즉시 자유화는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3. 수입 할당량

- 1975년도 수입할당량은 2억7천만 매로 합의(1974년도와 동일한 수준)

4. 관세인하

- 한국 측은 현행 1매 당 1.5엔의 관세율을 종가세(10% 정도)로 변경하는 등 관세율 인하를 요청
  - 일본 측은 관세정책상 및 해태 어민의 보호문제가 있으나, 한국 측 요청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사 표명

5. 거래방식 개선

- 한국 측은 통상의 L/C(신용장)베이스에 의한 무역의 실시 등 거래방식 개선을 요구
  - 일본 측은 L/C베이스에 의한 무역의 실시는 민간차원 문제이나, 한국 측 의향을 민간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민간상호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할 것임을 표명

6. 수입시기 제한 등

- 양측은 거래방식 개선과의 관련도 고려하면서 해태의 수입시기제한 철폐문제와 가공해태의 수입문제에 대해 신중히 토의

7. 정보교환

- 양측은 해태생산, 유통, 가공의 원활한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교환 및 관계자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유익함을 재확인

75-1019

한·말레이시아 경제통상 실무자회담 개최 계획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0 / 4 / 1-50

1974~75년 중 한·말레이시아 간의 경제통상 실무자회담 개최를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74.3월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자원사절단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양국간 통상 및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양국 경제통상회담 연례개최 원칙 합의
- 1974.7월 말레이시아 측은 회담 개최에 동의

2. 회담개최 교섭

- 1975.2월 한국 측은 1975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한·말레이시아 경제통상 실무자회담 개최를 제의
- 1975.2월 말레이시아 측은 동 회담을 1975.4~5월 개최 제의
- 1975.3월 외무부장관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D. Abu 말레이시아 상공장관과 협의
  - 우선 실무자급 회담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동 회담을 각료급으로 격상시키자는데 합의
- 1975.5월 말레이시아 측은 정부내 관계부처 사정으로 동 실무자급 회담을 1976년초로 연기할 것을 제의

3. 한국 측 의제(안) 통보

- 무역현황 검토
  - 무역현황 분석, 무역불균형 시정
- 통상증대
  - 교역량 증대, 철도차량 수출, 상호 관세인하, 경제사절단 교환
- 자원 및 기술협력
  - 자원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사회간접자본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및 개발사업 참여
- 합작투자 가능성 검토
  - 활성탄소제조공장, 목재가공공장, 직물류공장
- 생고무 직수입
-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검토
- 어업합작사업 추진

한·노르웨이 섬유 쿼터회담. 서울, 1975.6.27.-7.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0 / 5 / 1-101

한·노르웨이 섬유 쿼터회담이 1975.6.27.~7.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 노르웨이 측: Berg-Nielsen 주한대사(일본 상주)

2. 의제

- 노르웨이가 1975년도에 한국에 부여하는 섬유류 수입쿼터양 확정

3. 훈령

- 한국의 노르웨이와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하여 노르웨이의 수입제한조치 대폭 완화를 요구할 것
- 노르웨이가 한국에 설정하는 쿼터(Fabrics: 385천 달러, Textile: 415천 달러)가 극히 미미하며 제한대상 품목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사실상 포괄적인 제한조치로서 MFA(다국간 섬유협정) 정신과 규정을 정면 부인하는 것으로 철폐되어야 함을 지적할 것
- 노르웨이는 한국을 일본과 같은 수입제한국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는바 한국을 개도국 수입자유지역 국가로 재분류를 요구할 것

4. 회의 결과

- 양국은 회담 결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함.
  - 노르웨이는 한국에 대하여 1975년도 수입량을 Fabrics 85만 달러, Textile and Garment 60만 달러로 확정
  - 이월사용 30%
  - 자유화품목 9개(1974년 2개)
  - 비직물류에 대한 특별 고려(타이어 등에 대하여 일본과 동일한 쿼터 인정)
- 양국 정부는 회의 개최 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사항을 수락함으로써 발효됨.

75-1021

한·스웨덴 섬유 쿼터회담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0 / 6 / 1-234

1975년 중 제1~2차 한·스웨덴 섬유 쿼터회담이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
- 스웨덴 측: Bertil Arvidson 외무성 차관보

2. 의제

- 1975년 스웨덴 정부가 한국에 허용하는 11개 품목(3개 신규)에 대한 섬유류 쿼터 및 운용 조건 조정

3. 훈령(협상 지침)

- 스웨덴 정부의 3개 신규 쿼터품목설정에 반대할 것
- 쿼터 추진실적이 적은 품목을 쿼터 규제대상품목에서 해제할 것과 양말 등 품목별 쿼터 증가를 요청할 것
- 쿼터 운용조건을 개선하고 신발류 쿼터 증가를 요청할 것

4. 회의 결과

- 제1차 회담(1975.5.29.~31., 서울)
  - 양국은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쿼터적용은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75.7~76.6월 기존 8개 품목의 쿼터량에 대하여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함.
- 제2차 회담(1975.7.7.~8., 스톡홀름)
  - 양말 등 품목에 대하여 양측이 양보하여 쿼터 증가액에 합의
  - 운용(swing, carry over 및 carry forward 등)에 대하여 합의
- 양국 정부는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한 수락을 통보함으로 발효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0 / 7 / 1-71

1975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와 관련된 내용임.

1. MFA(다자간 섬유협정) 가입

- MFA에 1975.12월 현재 39개 국가(EC(구주공동체)는 단일국가로 계산)가 가입

2. MFA 체제에서의 양자협정

- 섬유류 교역을 규율하는 MFA에 가입한 GATT 회원국들은 양자간 체결하는 섬유협정에 대하여 1975년 개최된 TSB 회의에서 양자협정이 MFA에 부합되는지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함.
- TSB 10월 회의에서 한국이 EC,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등과 체결한 또는 체결 추진중인 양자협정 심의
- 파키스탄과 EC는 MFA에 기초한 양자협정 협상과 합의사항을 TSB에 통보함에 따라 TSB는 사무국 공식문서로 회원국에 회람함.
- 캐나다는 홍콩과 양자 협의과정에서 MFA 협정문에 대한 해석을 TSB에 의뢰함.

75-1023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V.1 제1-3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0 / 8 / 1-295

정부가 1975.2~4월 3차례에 걸쳐 개최한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 확대회의에 대비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자료 내용임.

1.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외무부 관련 수출진흥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자료를 작성함

- 제1차 회의: 섬유류 쿼터 교섭현황, 미국 신통상법 내용과 영향 분석
- 제2차 회의: 북미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결과,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등 극동지역 국가 간의 수출경쟁현황 비교분석
- 제3차 회의: 한·EC(구주공동체) 간 제1차 섬유류 회담 결과, 한국의 대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활동 강화방안

2. 섬유류 쿼터 교섭현황

- 대네덜란드 특정의류 쿼터교섭 결과
  - 면 및 합성섬유 셔츠류, 합성섬유 내의류에 대한 쿼터가 전년 대비 8% 상승
  - 3~8월간 2개 품목에 대한 수출 잠정규제에 합의
- 한·EC 간 쌍무협정을 1975.3.4. 브뤼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한·캐나다 간 연례쿼터교섭회의를 1975.3.10.~14.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3. 미국 신통상법

-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간 교역증대 및 미국경제의 성장확보 목적
- 1973.4월 미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1974.12.20. 상하 양원협의회 최종 통과
- 주요 내용
  - 수입제한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 확대
  - 행정부 대외교섭 시 의회의 참여 권한 확대
  - 개도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 명문화
  - 자원확보를 위한 대응조치 규정
  - 대공산권 교역에서 정치적 요소 가미

4. 여타 공관장회의에서의 수출진흥방안 토의, 아시아 주요국간 수출경쟁현황 및 한·EC 간 섬유류 회담 시 쿼터증가에 관한 토의 등이 포함됨.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V.2 제4-7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0 / 9 / 1-384

정부가 1975.5~9월 4차례에 걸쳐 개최한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 확대회의에 대비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자료와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임.

1. 외무부 보고자료

- 제4차 회의:(통상국장) 각국의 대중동 산유국 진출 현황, 수입규제 동향
  - 대통령 지시사항: 1975.5월 수출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업계 등 모두 합심하여 1975년도 목표를 필히 달성할 것
  - 중동지역 진출을 위해 아랍어 훈련을 통한 인재를 확보할 것
- 제5차 회의: (경제차관보)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 상사 간담회 결과, Lome 협정(구주공동체와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지역 46개 개도국간 체결)과 그 활용방안
- 제6차 회의: (경제차관보) 외국 수입상에 대한 여론조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방콕협정)
- 제7차 회의: (경제차관보) 재외공관 수출목표 달성 독려, 중국(구 중공)의 대EC 진출현황

2. 주요 내용

- 각국의 대중동산유국 진출현황
  - 사우디 등 중동산유국의 경제개발계획 예산이 2,560억 달러에 달함.
  - 미국은 상무성 내 대중동 교역증진반을 설치 및 사우디 및 이란과 공동위 설치
  - 일본은 외무성 중동과를 확충하고 중동연구기관에 대한 지원확대
  - 유럽각국은 각종 기구를 증설하고 이에 대한 권능 강화
  - 한국은 대중동 협력위 설치, 각국과의 공동위 설치 및 민간경협위 설치 등
- 수입규제 동향
  - 1973년 석유파동 이래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강화 추세
  - EC의 양송이통조림 수입규제, 캐나다의 신사복 수입규제, 호주의 섬유류 수입규제 등
- EC지역 주재 상사 간담회 결과
  - 수출확대방안 도출을 최대목표로 하여 구주시장 동향 및 전망
  - 신규시장 개척 및 상품개발 등 토의
  - 주재상사 활동 지원방향 토의
- 재외공관 수출목표 달성 독려
  - 연간 수출목표 6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진흥활동 수시 점검
  - 부진 공관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 수립
  - 공관의 목표달성 가능여부를 점검하여 남은기간 중 현실적인 추진계획 수립

75-1025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3권 (V.3 제8-10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0 / 10 / 1-314

정부가 1975.10~12월 3차례에 걸쳐 개최한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 확대회의에 대비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자료 내용임.

1. 외무부 보고자료

- 제8차 회의: (경제차관보) 건설 수출전망, 한-EC(구주공동체) 섬유회담 결과
- 제9차 회의: (통상국장) 산유국 장기시장 전망, 북한의 대아시아 경제진출 관련사항
- 제10차 회의: (경제차관보) 일본 10대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순방 결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석

2. 주요 보고내용

- 건설 수출전망
  - 바레인에서의 건설수주로 금년 목표인 5억 달러 초과 전망
  - 현재 32개 건설업체 4,123명의 건설 인력이 26개국에 진출중
  - 중동과 동남아 및 태평양이 주요 진출지역이며 1974년중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최초 진출
- 한·EC 섬유회담 결과
  - 1974.4월 제1차 회담 이후 현재까지 제5차 회담 개최
  - EC 측은 다자간 섬유류협정 발효에 따라 한국과 체결한 7개 기존협정을 조속 단일화한다는 입장
  - 한국 측은 서두르지 않고 최소한 주요경쟁국인 홍콩보다는 뒤에 협정을 단일화한다는 입장
  - 고가 및 전망이 양호한 품목 위주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임함.
- 산유국 장기 시장 전망
  - 12개 산유국의 수입 증가는 1981~85년간 연평균 8%에 달할 전망
  -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 등이 현재 주수입국이나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 산유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수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주사우디 및 주이란대사관을 중동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
- 북한의 대아시아 경제진출 동향
  -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미약하나 최근 아시아시장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
  - 강철제품, 기계류, 비금속광물, 시멘트, 생사, 무연탄, 오징어 등이 주요 수출품목
-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 특혜관세율에 있어서 어떤 선진국의 제도보다 혜택이 크므로 적극 활용 요망
  - 특혜관세 효과가 높은 고율 관세품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통상사절단 중동 순방 계획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20 / 11 / 1-80

1975년 중 한국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통상사절단 중동 파견을 추진함.

1. 대한상공회의소는 1975.2.14. 외무부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중동지역 수출시장 개척 및 주요 자원의 장기적인 확보 방안,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 등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월에 동 지역에 통상사절단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오면서 협조를 요청함. 그러나 중동 현지 대사관에서 참여업체의 적절성, 현지 사정으로 인한 일정조정 건의와 상공부에서 파견 예정인 세일즈사절단 활동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연기됨.

2. 경제과학심의회에서 1975.3월에 중남미와 중동지역에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함에 따라 상공회의소 사절단의 방문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방문지 조정이 이루어짐.

3. 외무부는 사우디 및 이란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증진을 위하여 1975.5~6월 정부 고위사절단 파견을 추진하였으나 국무총리의 사우디 방문 등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유보됨.

4. 한국무역협회는 1975년도 제2차 민간무역사절단 파견계획을 수립하면서 1975.6월에 이란 등 중동 4개국에 사절단 파견을 추진함.

75-1027

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세일즈맨단 파견 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0 / 12 / 1-85

1975~76년 중 코트라가 동구지역 교역 추진을 위하여 통상사절단 파견을 추진함.

1. **코트라는 1975.8월 동구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동구국가 및 인접국가에 사절단 파견을 추진함에 따라 외무부는 오스트리아 등 현지 공관을 통하여 협력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10월에는 외무부 등 관련부처와 코트라 실무자회의를 소집하여 12월에 정부 공무원과 상사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민관 세일즈맨단 파견계획을 확정함.**
   - 방문 대상국은 유고, 폴란드, 루마니아와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중에서 입국사증 획득이 가능한 국가를 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함.
   - 그러나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하여 접촉하여온 유고 등 동구지역 대사관 관계자들은 본부에서 아직까지 한국과의 직접교역에 대하여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2~3명 규모의 사절단을 다음해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세일즈맨단 파견은 유보됨.

2. **한국 정부는 1972.8월 대동구권 교역추진 결정에 이어서 1973.6.23. 문호개방을 선언하였으며, 구주안보협력회의는 1975.7월 헬싱키회의에서 통상분야 협력증진 필요성에 합의함.**

파라과이 통상사절단 방한, 1975.10.24.-11.1.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N-20 / 13 / 1-30

Jose A. Matiauda 파라과이 상공부동산 사장(파라과이 대통령 사촌)을 단장으로 하는 파라과이 통상사절단이 1975.10.24.~11.1.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 기업과의 건설협력 모색
- 동 사절단은 파라과이·브라질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Itaipu발전소 건설과 파라과이·아르헨티나 양국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Yacireta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 및 Rio Alto Panama강 개발 및 항만 건설, 정부종합청사와 아순시온 시청 공사 등 협의를 희망

2.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국회의장, 건설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예방 등 일정을 주선함.

75-1029

Gillespie, Alastair 카나다 상공장관 방한, 1975.6.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0 / 14 / 1-59

Alastair Gillespie 캐나다 상공장관이 1975.6.26. 방한함.

1. Gillespie 장관이 장예준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예방과 상공부장관 면담 및 기자회견 개최 일정을 가짐.

2. 양국 상공장관은 1975.6.26. 면담에서 캐나다가 한국에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한국의 에너지수급 계획, 대단위 화학펄프공장건설, 포항제철에 대한 원료공급 등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Gillespie 장관 언급요지

- 인도의 핵확산 우려로 한국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대하여 캐나다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인사의 대외 발언에 유의하도록 요청함.

3. 박정희 대통령은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철수할 경우에 한국이 단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함.

Manhindra, Harish C. 인도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 방한, 1975.9.26.-3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0 / 15 / 1-37

Harish C. Mahindra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이 1975.9.26.~30. 방한함.

1. 박인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대행 초청으로 1975.9.26. Mahindra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신임회장 일행이 방한함.

2. Mahindra 회장은 1975.9.27.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기회에 양국간 통상확대를 위하여 한·인도 Business Council 설치를 제의함.

75-1031

쿠웨이트 통상관계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3/중동
MF번호	N-20 / 16 / 1-51

1974~75년 중 쿠웨이트 통상관계 주요인사들이 방한함.

1. Mohammed M. Madooh 상공차관보(1975.5.15.~20.)

● 동인은 쿠웨이트가 현대조선소에 발주한 15척의 유조선 건조 현황파악을 위하여 현대중공업의 초청으로 비공식 방한하였으며, 정부는 동인 방한을 계기로 쿠웨이트와 외교관계 수립(1972년 통상대표부 설치)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무부차관과 정무차관보와의 면담을 개최함.

2. Abdul Aziz Al-Sagar 상공회의소 회장(1975.9.11.~14.)

● 장예준 상공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김동조 외무부장관 예방 시 김 장관은 쿠웨이트와의 국교수립을 희망하였으며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Ghissassi, Abdellatif 모로코 상공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6-25 / 14 / 1-88

1975~76년 중 Abdellatif Ghissassi 모로코 상공장관 방한을 추진함.

1. 상공부는 한·모로코 간 통상증대 및 경제협력 긴밀화를 위하여 1975.8월 Ghissassi 모로코 상공장관에 대하여 장예준 상공부장관 명의로 1976년 방한을 초청함. 또한 한국 정부는 동인의 1976.1월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77그룹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계기와 2월 모로코 수상의 일본 방문 수행 계기에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서부사하라 사태로 인한 국내 문제로 인하여 동인의 방한은 실현되지 못함.

2. Ghissassi장관은 1976.3.16.~30. 모로코와 튀니지를 순방한바 있는 심흥선 대통령 특사와의 면담에서 현안문제인 양국간의 어업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무역협정 서명과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1976.4월말 방한 의사를 표명함.

75-1033

Magnussen, Einar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 방한, 1975.9.21.-24.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N-20 / 17 / 1-28

Einar Magnussen 노르웨이 상무해운장관이 1975.9.21.~24. 방한함.

1.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1974년 Jens Evensen 장관을 방한 초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1975년 신임 장관인 Einar Magnussen이 방한하게 됨.

2.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상공부장관, 국무총리, 외무부차관, 교통부장관, 전경련 회장, 대한상의 회장 예방
- 현대조선소 시찰 및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3. 방한 결과

- Einar Magnussen 장관의 방한은 한번 연기되었다가 다시 실현된 것으로 금번 방문 중 대통령 등 주요인사들을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원하던 현대조선소 시찰까지 이루어져 만족한 것으로 평가
- 동 장관은 국제법 전문가로 카라카스 해양법회의에 노르웨이대표로 참가한다고 하며 이번 방한 중 대륙붕 관련사항 및 해저유전 문제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임.

Adnan M. Khashoggi 사우디아라비아 'Triad'사 회장 방한, 1975.11.2.-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21 / 1 / 1-31

Adnan M. Khashoggi 사우디아라비아 Triad사 회장이 1975.11.2.~6. 방한함.

1. 박충훈 한국무역협회 회장 초청으로 1975.11.2. Khashoggi 사우디아라비아 Triad사 회장(국제무기상)이 방한하여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재계인사들을 면담함.

2. Khashoggi 회장은 1975.11.5. 노신영 외무부차관과의 면담에서 중동지역에서 한국 미수교국인 이집트, 수단, 리비아 등과 관계개선에 조력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75-1035

Ob Vasuratna 태국 상공회의소 소장 방한, 1975.5.4.-9.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2 / 1-30

Ob Vasuratna 태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1975.5.4.~9. 방한함.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초청으로 1975.5.4. 방한한 Ob Vasuratna 소장은 외무부장관 등 고위인사 예방과 울산조선소 등 시찰 일정을 가짐.

2. 동인은 1975.5.6.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평가, 인도차이나 사태, 한국의 무역역조 해소 협력, 태국과 북한 간의 수교추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Shore, Peter 영국 통상장관 방한, 1975.9.11.-16.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경제협력
MF번호	N-21 / 3 / 1-38

Peter Shore 영국 통상장관이 1975.9.11.~16. 방한함.

1. Shore 장관은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1975.9.11. 방한하여 외무부장관 예방, 한·영국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서명, 울산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고리원자력발전소 방문 등 일정을 가짐.

2. 외무부가 장관회담을 위하여 작성한 면담자료에는 한·영국 공업소유권보호협정 서명, 한·EC(구주공동체) 섬유협정 교섭, 노동당의 대북한 승인 움직임(노동당내 좌파인 Tribune Group은 7월에 북한과의 수교 결의안을 제출하여 채택을 추진하였으나 폐기됨. Shore 장관은 동 그룹에 속하기는 하나 결의안에 불참) 등이 수록됨.

75-1037

대미얀마(구 버마) 연불 수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4 / 1-73

1974~75년 중 미얀마(구 버마)에 대하여 연불 수출을 함.

1. **한국과 미얀마는 1974.11월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에서 연불 수출에 합의하였으며, 이어서 1974.11.9.~14. 미얀마를 방문한 동남아경제사절단은 한국상품의 미얀마에 대한 연불 수입 방안에 대하여 미얀마 측과 협의하고 직물류 연불 수입에 관한 MOU를 서명함.**
   - 미얀마 측은 한국의 화학섬유, 타이어, 어망 등 상품에 대하여 연불 수입을 희망하며 한·미얀마 상공장관 회담 시 협의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제시(1년 이상, 무이자 연불)를 요청
   - 미얀마 수출입공사가 주미얀마대사관을 통하여 11월 1년이상 무이자 연불 조건 입찰공고서를 한국과 일본에 송부함에 따라 한국타이어 등이 입찰 의향서를 제출함.
   - 미얀마 측은 1975.5월 MOU에 근거한 직물류 연불 수출과 관련하여 조달가능 품목, 조건 등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함.

2. **재무부는 1975.1월 미얀마에 대한 연불 수출 조건에 대하여 장기(6개월이상 5년이내) 연불 수출인 경우 수출입은행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하며 수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60억 원 조달이 필요하므로 1975년도에는 수출입은행 자금조달 가능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제시함.**

대중국(구 중공) 홍삼 수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5 / 1-52

1974~75년 중 중국(구 중공)에 대하여 홍삼을 수출함.

1. **한국의약품 수출협회 홍콩지사장이 1974.11월 홍콩의 친중국계 상사로부터 의약용 홍삼 중국 수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음을 외무부에 보고하자, 외무부는 홍삼수출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개선 모색을 위한 통로를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2. **정부는 전매청 홍삼 수출창구인 롯데물산의 홍콩대리점을 통하여 홍삼 2만 근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유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975.4.4. 외무부 주관으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 담당부서인 전매청은 중국 수출 홍삼의 여타지역 유출 가능성, 한국 홍삼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한 비밀보장 불확실 등을 이유로 전매청장이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중앙정보부도 홍콩상사의 중국 정부 대표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홍콩총영사관에 중국 정부의 대표자격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는 한 홍콩상사를 통한 홍삼수출 추진을 유보하기로 통보함으로써 종결됨.

75-1039

대일본 참치 수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6 / 1-252

1975년 중 일본의 한국산 참치 수입제한과 한국 정부의 대응임.

1. 일본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움직임

- 일본 참치업계가 참치어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참치어선이 일본 어항에 입항하여 직접 참치를 인도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하자, 자민당은 1975.3월 이를 위해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본 국회 통과를 추진함 .
- 일본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값싼 참치공급 권리보장과 한국 정부와의 마찰 불원 등 이유로 동 법률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자민당 지도부는 법률안 상정을 일단 유보함. 그러나 한·일본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본 국회는 법률안 개정 추진을 결정하여, 6.18.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
- 일본 참치업계가 6월 한·일본 수산청장 간 합의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개최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입물량 중 일부를 수입상사가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함.

2.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

-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한국원양어업회사의 일본에 대한 참치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정부간 협의를 통한 참치 불황타개 방안모색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원양어업협회장은 일본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1975.3월에 직접 일본을 방문함.
- 한편 일본 수산청 어정부장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참치 수출량 자율규제를 통한 감량 교섭을 위하여 3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1975.3.26.~27.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양측은 1975.5~12월 잠정적으로 일본 어항에서의 직접 이전을 유보하고, 가급적 운반선 이용을 권고하며 수출물량은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함.
- 한국 원양어업협회 회원들은 4~5월 회합을 갖고 동 법률안 개정이 한·일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를 결의
- 한·일본 양국은 수산청장 회의를 6.25. 서울에서 개최하여 1975년도 대일 참치 수출물량을 4만 5천 톤으로 합의함. 그러나 동 한도에 일본 운반선에 의한 수입량 포함여부를 두고 한·일 정부간 해석 차이를 노정함.

한국의 대이집트 군수품 수출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21 / 7 / 1-12

1975년 중 이집트에 대한 한국 군수물품 수출에 관한 내용임.

1. 1975.11월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이집트 무관이 한국 무관에게 대공포 등 소련제 무기와 각종 소련 무기용 탄약 생산과 수출 가능성을 문의한데 대하여 외무부가 국방부에 불가 의견을 제시함.
   - 중동 분쟁 당사국인 이집트에 무기공급 시 예상되는 국제적 비난과 이스라엘 우방인 미국의 불만을 고려

2. 다만, 군복 등 개인장비 수출은 무방하다고 판단함.

75-1041

대사우디아라비아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통상3
MF번호	N-21 / 8 / 1-182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사절단이 1975.3.10.~25. 방한함.

1. 방한 경위

- 국방부장관은 1974.5월 사우디 국방장관 및 군사협력사절단 파견을 초청하였으며, 1974.10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사우디 총참모장은 사우디 군사사절단 파견을 약속함.
- 사우디 군부는 사우디 왕의 지시에 의하여 양국간의 특수협력 유대강화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방부 군수참모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조사와 특수협력 방안 및 군수품 구매 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절단 파견계획을 1975.1월 한국 측에 알려옴에 따라 양측이 리야드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3월 방한이 결정됨.

2.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1975년도 대중동 협력위원회 회의를 1975.1.23.에 개최하여 방한시기의 적절성 여부, 주관부서 결정, 경비지원 문제, 분야별 협의 등을 토의하고 사절단 접수를 위한 부처별 업무분장을 결정하였으며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상부 재가를 사전에 받는 것으로 결정함.

3. 방한 결과

-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사절단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 등 고위인사 예방, 사관학교, 특전사, 수도통합병원, 조달청, 판문점, 해군 진해통제부, 군수사령부, 조병창 등 육·해·공군 시설 방문, 종근당, 삼양식품, 현대조선소, 포항제철 등 민간기업, 한양대 의대, 과학기술연구소 방문 등 일정을 가짐.
- 동 사절단은 양국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에 신뢰성이 있는 기업을 추천하여 줄 것과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추천된 업체의 임원과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1975.4월까지 사우디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함. 무기와 탄약, 해안 경비정, 고공침투 등 특수훈련 시설 및 장비 등 특수분야 협력문제는 4월 사우디 국방차관 방한 시에 협의하기로 합의함.

대태국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9 / 1-16

1975년 중 태국이 한국 군수물자 수입을 희망함.

1. 1975.6월 태국 군수물자 수입회사가 주태국대사관을 통하여 실탄류와 군화 등 2,50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군수물자 수입의사를 표명하여 오면서 구매사절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함.

2. 담당부처인 국방부는 1975.7.29. 태국 관심품목 중에 실탄류 및 철모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75-1043

프랑스산 방위산업제품 수입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2015-109 / 15 / 1-106

1974~75년 중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대함미사일인 EXOCET미사일을 구입함.

1. 한국 정부의 국군현대화사업(일명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타코마가 1974년 고속정 탑재용 엑조세미사일을 프랑스로부터의 구입을 추진하였으나, 프랑스 정부는 정부 최고위층에서 모든 공격용 무기의 전반적인 수출금지방침을 내린데다가 1974년에 발생한 서해도발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공격용 무기수출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사가 어려워짐. 그러나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대한항공의 AIR BUS 구매와의 연계를 제시하여 엑소세미사일 공급에 대하여 양해가 이루어짐.

2. 수입자인 타코마와 엑소세 제작사인 프랑스 아에로스페샬 기술진 간에 가격 등 공급조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AS사는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급비용(약 1.6억 프랑)의 70%를 프랑스 정부의 차관을 사용하기로 함(30% Down Payment는 타코마가 민간 은행으로부터 차입 조달).

3. 양측 협상 결과 1975.2.28. 1.6억 프랑에 상당하는 미사일과 부품 공급계약(발사기 5대와 탄두 20발) 체결을 프랑스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발효되어 프랑스는 10월에 한국에 미사일을 인도함.

그리스산 엽연초 정책 수입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1 / 11 / 1-36

정부는 1975년 중 그리스산 엽연초를 정책적으로 수입함.

1. 주한 그리스대사(동경 상주)는 1975.4.18. 외무부 통상국장을 면담한 기회에 한국 전매청이 1975년도 엽연초 구매계획을 세우면서 그리스를 제외한데 대하여 한국 정부가 경제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그리스산 엽연초를 수입할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전달함.

2. 유엔에서의 그리스의 협조확보 등 이유로 외무부는 1975.8.7. 국무조정실 대책회의에서 그리스산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주장하였으나, 1974년도에 그리스로부터 1천 톤을 수입한바 있는 전매청은 그리스산과 동일한 품질인 유고산이 가격면에서 그리스산보다 훨씬 더 저렴하며 대동구권 교역 확대를 위하여 정책상 유고산 엽연초 수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그리스가 가격 조정 시 일부 구입가능).

3. 그리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한국은 대통령 특사의 1975.10월 그리스 방문 시 그리스 측에서 가격조정을 하여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과 유사한 조건이라면 그리스산 엽연초를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기로 함.

75-1045

남아프리카산 철광석 수입 문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통상3
MF번호	N-21 / 12 / 1-23

1974~75년 중 한국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철광석 수입을 추진함.

1. 정부는 1974년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증대 및 철광석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하여 남아프리카연방 공화국에 대한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남아공은 국내 인종차별정책과 나미비아 식민지 유지정책으로 유엔으로부터 무역금지 제재를 받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이 지적됨.

2. 포항제철은 1974.12월 고품질의 남아공 철광석의 장기적인 공급 확보 계획을 세우고 외교적 문제점에 대하여 외무부에 문의한바, 외무부는 유엔결의 위반과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는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필요시 소량씩 구입하는 조용한 방식을 권유함.

대동구권 교역 추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13 / 1-26

1975년 중 한국 정부가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증진을 추진함.

1. 재무부의 정책변화 추진

- 1975.2월 아프리카, 중동지역 및 동구권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자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동 지역 국가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비회원국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편익관세(GATT 최혜국 관세율 부여) 적용을 검토하면서 외무부에 대하여 혜택부여 여부 및 대상국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비적성 국가와의 재보험거래를 금지하여온 기존정책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하여온데 대하여 외무부는 이에 동의함.

2. 교역증진을 위한 협의

- 코트라 주관으로 1975.8월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동구와 교역하는 기업 관계자 간의 동구교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일본 및 오스트리아 등 동구지역 교역상의 제시조건 검토, 구상무역조건 그리고 정부부처의 지원방안과 동구교역 추진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10월에는 외무부 주관으로 동구교역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회의가 개최되어 소규모 세일즈맨단 파견에 관련된 문제점이 협의됨.

75-1047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한계선 조정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조약
MF번호	N-21 / 14 / 1-16

1974~75년 중 한국 정부가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한계선을 조정함.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1973.12월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항공회의가 채택한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한계선을 인준(38선을 기준으로 설정)하면서 1975.6월까지 시행하도록 권고함.**
   - 기존 대구 항공정보구역(1962년 벤쿠버회의에서 결정)에 속하는 개성 및 웅진을 제외하고 속하지 않는 속초, 철원 등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을 포함하도록 조정

2. **교통부는 ICAO 인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구 비행정보구역 북부한계선 조정계획을 1974.9.1.자로 공고 시행을 추진하면서 8.8. 외무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외무부는 휴전선 종단과 서해상의 북부한계선이 명시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휴전당사자인 중국(구 중공),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통부에 통보함.**
   - 이에 따라 1975.2.7.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바, 국방부는 비행정 보구역 조정이 서해 5개 도서와 관계 영해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보강하는 것이므로 공고를 찬성하는 반면 외무부는 조정 공고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공고시기를 연기하도록 권유함.

외국 항공기의 대구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및 구역조정 문제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08-72 / 23 / 1-93

1972~75년 중 외국 항공기의 대구 FIR(비행정보구역) 통과 및 구역조정 문제 내용임.

1. 외국 항공기의 통과문제

- 경위
  - 유엔에 가입한 중국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바탕이 되는 CICA(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항공 관련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일본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항공기의 한국 영공과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중국 영토로의 이원 등과 관련하여 국제항공협약의 체약 당사국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 1972.8월 일본은 JAL기의 한국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요청
- 법적 문제점 및 정부의 의견
  - 비행정보구역 통과가 허가의 대상인지 또는 통보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비행정보구역은 영공 주권과 관련없이 항공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통보사항이라고 외무부는 판단하였으며, 정부는 1973.10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통보절차를 단순화하기로 결정
  - 미국과 일본항공기의 중국 취항에 대하여는 비행 유형별 허가한다는 방침을 교통부는 1973.6월 수립
  - 1973년 들어 일본,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외무부는 일본과 중국 항공기의 한국 영토 및 비행정보구역 통과와 한국 내에 기착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1974.5월에는 청와대에서 일본·중국 항공협정 서명(1974.4월)에 따른 관련되는 정치·안보상 문제점 협의를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됨(비행정보구역 남단, 방공식별구역 통과 등).

2. 항로 및 대구 비행정보구역 남단부분 조정문제

- ICAO 극동 및 태평양지역사무소는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동경/오사카-가고시마-상해항로 설정, 대구 비행정보구역 남단의 일부를 일본에 이양하거나 가고시마-상해 항로의 관제업무를 타관제국에 이양할 것을 1975.4월 교통부에 제의함.
- 교통부는 동 제의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ICAO 제의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제의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기로 결정함.

75-1049

대만(구 중국)의 제주도 개항 요청 문제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N-21 / 15 / 1-25

1973~75년 중 대만(구 자유중국)이 한국 정부에 제주도를 개항할 것을 요청함.

1. 1973.8월 대만에서 개최된 한·대만 경제각료회담에서는 한국의 상어유망어선이 긴급피난, 수리 및 보급을 목적으로 대만 항구에의 기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어업분야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수산청이 10월에 한국어선의 대만항 기항에 관한 합의각서 교섭을 추진함.

2. 대만 정부는 한국 측 각서체결 요청에 대하여 1974.1월 한국 측에 제주항 개방을 요청하여, 서귀포항을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11월 대만시찰단 방문 결과 시설불비로 어선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제주항으로 변경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75.2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하였는바, 양국 협의가 외교 채널이 아닌 수산청 간에 이루어진 점에 대한 문제지적과 대만 측의 제주항 개항 요청은 제주항을 대만 어업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때까지 수산청이 대만과의 개항문제에 관한 협의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함.

중국(구 중공)상선의 부산항 입항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N-21 / 16 / 1-71

1975년 중 중국(구 중공)상선의 부산항 입항과 관련된 문제임.

1. 1974년 중국 광주교역회에 참가한바 있는 재미교포 실업인이 중국산 가발 원모의 한국 직수입을 포함한 한·중국 간 교역추진 문제를 워싱턴 주재 중국 연락사무소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며, 1975.1월 외무부를 방문하여 동 협의내용을 알리면서 중국 당국은 원모를 중국상선으로 직접 수송하기 위하여 상선의 한국 항구 기항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입항에 따른 한국 정부의 사전 보장을 요청하였음을 언급함. 이에 외무부는 1.30. 대통령에게 추진방안 등 관련 보고를 상신함.
   - 중국상선 입항을 허용하고, 통상사절단 파견 의향을 구두로 표명한다는 내용으로 건의한데 대하여 대통령은 언론 등 보안문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2. 대통령 지시를 접수한 외무부는 미국, 일본 및 홍콩 주재 공관을 통하여 사실 확인을 하는 한편 보안대책을 위하여 중앙정보부와도 협의함. 그러나 1975.4월 부산항 입항 예정기일이 지나서도 중국선박 입항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교포 실업인에게 사실을 확인한바 중국 당국이 부산항 입항으로의 선적을 금지하였음을 알려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중국과의 접촉 창구 수립 노력은 무산됨.

75-1051

일본 항공당국의 내공성(耐空性) 개선 통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N-21 / 17 / 1-13

1975년 중 일본 항공당국이 내공성 개선사항을 한국 정부에 알려옴.

1. 일본 항공당국은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1975.4~7월 한국 정부에 두 차례 내공성 개선내용을 알려옴.

2. 상기 통보내용은 비행기날개 유압오일 누출방지 등 안전을 위한 정기적 조사주기 및 필요한 개선 조치사항임.

대한항공 및 대한해운공사의 쿠웨이트 대리점 설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21 / 19 / 1-53

1. 1975년 대한해운공사의 쿠웨이트 대리점 설치 추진 관련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1975.5.30.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 공사는 1974.4.26. 주재국 소재 United Shipping Co.(USC) Abullateef Al-Kazemi 회장 면담 시 동 회장은 대한해운공사의 걸프지역 취항에 대한 총대리인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동 지역 취항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함을 대한해운공사에 통보하고 호의적 고려를 요청
- 외무부는 6.10. 대한해운공사 측이 중동지역과의 정기항로 개설 또는 부정기선의 잠정적 취항 계획을 현재 검토중으로 대리점 개설도 필요시 된다고 하며 동 대리점 개설문제는 USC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파악 후 확정할 계획으로 동사와 직접 서신이나 telex를 통해 추진 예정임을 주쿠웨이트공사에게 통보
- 외무부는 10.10. 대한해운공사 측이 11월 초순경 사우디 Jizan항에 입항할 예정인 동사 소속 선박 영일호에 대한 Tramper Service를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USC를 선정하였다고 알려왔음을 주쿠웨이트공사에게 통보

2. 1975년 대한항공의 쿠웨이트대리점 설치 추진 관련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1975.5.30.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 공사가 1974.4.26. 상기 주재국 소재 United Shipping Co.(USC) Abullateef Al-Kazemi 회장 면담 시 동 회장이 대한항공의 걸프지역 총대리인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쿠웨이트 취항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 이를 대한항공에 통보하고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
- 외무부는 9.6. 대한항공 파리지점에서 6.17. 발송하였다는 서한(총대리점 신청서양식 포함) 사본을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에 송부하고 이를 USC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
- 주쿠웨이트공사는 9.18. 대한항공 파리지점장 일행이 주재국을 방문, USC 측과 접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75-1053

한·소련 해운협력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20 / 1-85

1972~75년 중 한·소련 간의 해운협력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3.7.20. 소련 운수공단회의(1973.8.12.~16., 모스코바) 참가 문제 관련 아래 요지로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에 보고함.

- 한국 수출상품을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로 유럽에 운송하도록 하는 화물운송계약이 1973.6.1. 삼익선박(주)과 일본 JCT 간 체결
- 동 계약 체결차 방한한 JCT 사장에게 매년 8월 소련 운수공단의 주최로 개최되는 운수공단 관계국지점 대표자회의에 한국대표도 JCT와 계약이 체결된 만큼 참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의한데 대해 동 사장은 이를 주선하여 보겠다고 언급

2.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1973.8.6. 삼익선박 관계관에 대한 소련의 비자발급 건을 JCT에 문의한바 소련 측이 금회에는 비자발급을 부결하였으나 실적이 쌓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3. 1974.5.24. 외무부가 작성한 일본이 용선한 소련여객선의 부산 기항문제 관련 대통령 앞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JTB(일본교통공사)는 동 사가 용선하여 일본 관광객을 수송하는 소련여객선 2척의 부산 기항에 관한 한국 측의 의견을 KTB(대한여행사)에 문의
- 일본교통공사가 소련여객선을 용선, 부산항에 기항시키고자 하는 이유
  - 일본 국내 항로(후쿠오카-오키나와)에는 외국선박을 용선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을 기항지로 포함시켜 국제항로로 만듦으로써 저가의 소련여객선 용선 가능 등
  - 외교적으로는 입항을 허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연해 항해에는 안보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항로를 지정할 필요, 상륙 승조원에 대한 보안대책 수반 필요, 관광객이 소비할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총 외화수입은 60만~100만 달러 정도로 추산
- 본건은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는 전제하에 입항을 허가하는 것이 대소련 외교, 대북한 대책 및 관광진흥 견지에서 유익하다고 봄.

4. 1975.3.27. 외무부 구주3과 작성 대한여행사와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대한여행사 측은 소련 정부가 소련선박의 한국 기항을 반대하여 동 선박의 부산 기항문제는 취소되었다고 함.

대한항공사(KAL)의 운임신청에 대한 미국의 이의제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N-21 / 21 / 1-54

1975년 중 대한항공의 운임신청에 대한 미국의 이의제기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7.3. 아래 사항을 교통부에 통보하고 본건 경위 등에 관해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6.11.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당국에 제출한 운임에 대해 한·미 항공협정 제11조 F항에 의거 이의를 제기

2. 교통부는 1975.7.31. 상기에 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함.

- 태평양구간 단체왕복 할인운임설정 지시이유
  - 광복 30주년 및 한국전 25주년을 맞아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모국 방문 및 참전 용사들의 방한을 용이하게 함.
- 대한항공은 6.11.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할인운임을 미국 항공당국에 신청하고 6.25. 최소 여행기간 14일을 30일로 수정하여 신청하였으며, NWA(노스웨스트항공)는 7.1. 대한항공이 수정 신청한 동일 조건으로 교통부에 신청
- 미국 항공당국은 7.9. 대한항공과 NWA에 동 운임허가 등

3. 외무부는 1975.8.16. 주한 미국대사관 앞 외교공한을 통해 상기 교통부 측 통보내용을 적시하고 미국 측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협정에 따른 절차는 불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통보함.

4. 외무부는 1975.9.19. 주한 미국대사관은 9.5. 대한항공 측이 신청한 화물요금에 대해 한·미 항공협정 제11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여 왔음을 교통부에 통보하고 본건 경위 등에 관해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5. 교통부는 1975.9.26. 상기 요청에 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함.

- 대한항공은 7.3. 미국 항공당국에 로스앤젤레스/서울 1달러/kg, 로스앤젤레스/동경 0.95달러/kg 운임인가 신청
  - 미국 측은 7.10. 동 신청에 대해 불인가 통보
- 대한항공은 8.27. 동 운임을 조정하여 미국 측에 재신청하고 9.9. 교통부에도 인가 신청
- 교통부는 9.25. 동 신청을 불허
- 교통부의 입장
  - 운임인가에 대한 방침을 항공시장 질서 확립에 그 근본을 두고 또한 수출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아 추진해 가고 있는 입장인 바, 금번 신청을 불허하면서 미국 측에 신청한 것 자체를 철회하도록 대한항공 측에 통보

75-1055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1 / 22 / 1-111

1975년 중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관련사항임.

1. 상공부는 1975.2.26. 인천항 차별선임 철폐 설명반 파견계획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함.

- 북미지역 수출입 해운동맹이 인천항에 부과하고 있는 차별선임 철폐를 위해 한·미 상공장관 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채택하는 등 노력한바 있으나 1974.5월 인천 제2도크의 완성에도 불구, 동 차별선임은 계속 부과되고 있고 이는 인천항의 1975년도 예상물동량을 감안할 때 약 1천만 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외환손실을 가져옴.

2. 외무부는 1975.7.22. 인천항 차별선임 철폐 교섭을 위한 하주사절단(Shippers Mission) 파견계획을 아래 요지로 주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함.

- 교섭단 구성
  - 단장: 오범식 한국하주협회 부회장, 단원: 국회의원 3명, 상공부, 교통부 관계관 등
- 일정
  - (일본) 7.29.~8.1. JKAGFC(극동/북미대서양운임동맹) 및 TPFCJK(극동/북미태평양운임동맹) 사무국 방문, 주요선사 개별접촉
  - (샌프란시스코) 8.4.~5. PWC 사무국 방문, 주요선사 개별접촉
  - (뉴욕) 8.7.~8. FEC 방문, 주요선사 개별접촉
  - (워싱턴) 8.11.~13. FMC(미연방해사위원회) 방문 등

3. 동 하주사절단의 주재국 방문 결과에 관한 보고문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75.8.1.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Grey 대미수출 동맹의장 및 사무국 간부를 방문, 차별선임 철폐문제를 차기 총회 의제로 채택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데 대해 동 의장은 신중히 고려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맹선사와의 개별적인 접촉 필요성을 강조
- 1975.8.6.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8.4. PWC 선사의 간부를 예방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Sealand 측에서는 동 사절단을 위한 오찬을 주최함과 동시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
- 1975.8.11.~12. 주미국대사관의 보고문서 요지
  - 8.7. Flynn FEC 의장 및 의장단을 방문,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 측은 8.13. FEC 총회에 동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언급

4. 주미국대사관은 1975.10.31. PWC가 10.30. 회의에서 인천항 차별선임 문제를 재논의, 현재의 10달에서 6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Charbert, Josef 벨기에 교통체신장관 방한, 1975.1.3.-8.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구주
MF번호 N-21 / 23 / 1-43

Josef Chabert 벨기에 교통체신장관이 1975.1.3.~8. 방한함.

1. 주벨기에대사는 1974.10.23. Josef Chabert 벨기에 교통체신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을 면담하였으며 동 장관은 김신 전교통부장관이 지난 7월 벨기에 방문의 답례로 자신을 금년내 방한하도록 초청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1974.11.2.~5. 방한일정을 제시하면서 만약 한국 측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12월말경 방한도 가능하다고 시사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74.10.29. 현재 1974년도 정기국회가 개회중이며 12.2.까지 197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야 되므로 동 장관의 방한시기를 예산국회 종료 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주벨기에 대사관에 요청함.

3. 1975.1.4.~8. 동 장관의 방한일정 등은 아래와 같음.
   - 수행원
     - 동 장관 비서실장 등 4명
   - 방한일정
     - 판문점 시찰, 민속촌 방문(1.5.), 교통부장관,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부총리, 상공부장관, 체신부장관 예방, 교통부장관 주최 만찬(1.6.), 철도산업선(중앙선) 시찰, 울산 공업단지 시찰, 주한 벨기에대사 주최 만찬(1.7.), 이한(1.8.)

75-1057

Tarjanne, Pekka J. 핀란드 교통장관 비공식 방한, 1974.1.25.-26.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N-21 / 24 / 1-58

Pekka Tarjanne 핀란드 교통체신장관이 1974.1.25.~26. 방한함.

1. 1974.1.29. 외무부 작성 Pekka Tarjanne 핀란드 교통체신장관 방한 결과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 장관이 1974.1.25.~26. 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동 장관의 금번 방한은 북구 5개국의 각료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큼.
- 체한중 예방 및 면담
  -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 상공부차관 각각 면담
- 한·핀란드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교섭(외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 면담 시)
  - 핀란드 측이 1976년 봄부터 헬싱키-레닌그라드-북경-서울-동경(또는 오사카) 항공노선을 개설, 운항하고자 양국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제의한데 대해 우선 양국 교통장관 간에 일차적인 의견교환을 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FINNAIR와 KAL 간에 협의하도록 함.
- 경제협력 및 교역증대(외무부장관 및 상공부차관 면담 시)
  - 핀란드는 제지 및 동제련분야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므로 양국간 동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금후 양국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함.
- 안보 및 남북대화 진전상황 설명(외무부장관 면담 시)
  - 한국의 안보태세, 불가침협정 제안 등을 상세 설명한데 대해 공감을 표명

2. 주핀란드대사관은 1974.1.29. 주재국에서 발행되는 3개 유력지들은 1.27. 동 장관의 방한관계 외신(서울발 AFP)을 인용, 특히 한국은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서 핀란드가 외교적인 협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도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노르웨이 조선장비사절단 방한, 1975.3.1.-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N-21 / 25 / 1-11

노르웨이 조선장비사절단이 1975.3.1.~4. 방한함.

1. **외무부 통상국은 1975.2.27. Miller 노르웨이 공업성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노르웨이 선박기재 및 원유시추기 제조업자 일행 11명이 1975.3.1.~4. 방한할 예정임을 구아국 및 국제경제국에 통보하고 3.4. 외무부차관의 Miller 차관 및 주한 노르웨이대사 면담에 포함시킬 사항이 있으면 알려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 통상국은 1975.3.8.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3.4. 상기 노르웨이 조선장비사절 단장인 Miller 차관 면담요록을 구아국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동 면담요록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노신영 차관이 노르웨이의 조선 능력을 문의한데 대해 Miller 차관은 연간 약 1백만 톤으로 작년에는 화물선 포함 약 150 척을 건조했다고 언급했으며 배석한 Nielson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현대조선만 하더라도 약 1백만 톤 건조능력이 있는 것으로 들었으며 한국의 조선 능력이 이미 노르웨이를 앞지르고 있다고 언급
   - Miller 차관이 서해 대륙붕 석유개발 현황을 문의한데 대해 노신영 차관은 아직 개발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며 중국(구 중공)은 서해 대륙붕 경계 획정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다고 언급
   - Nielson 대사가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유엔에서 북한과 대결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문의한데 대해 노 차관은 불행하지만 그럴 것으로 본다고 하고 한국은 유엔에서 우방국가가 매년 막대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심지어 소련을 포함한 동구지역 국가도 한국문제 토의의 반복, 북한의 비타협성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듯하나 북한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외교공세를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

75-1059

Mohammed Omar Tawfig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체신교통장관 방한, 1975.4.25.-5.2.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21 / 26 / 1-67

Sheikh Mohammed Omar Tawfig 사우디 건설체신교통장관이 1975.4.25.~5.2. 방한함.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5.3.16. 리야드 출장 시 Sheikh Mohammed Omar Tawfig 사우디 건설체신교통장관 면담결과에 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사우디대사는 과거 동 대사관의 건설관으로 부터 주재국 건설장관을 정식 초청하는 초청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던 사실을 근거로 건설부장관을 대리하여 Tawfig 장관을 방한 초청
   - 탐문한 바에 의하면 동 장관의 한국 방문은 4월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2. 건설부는 1975.3.26. 방한 예정인 동 장관 및 수행원의 이력사항 등을 알려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외무부 중동과는 1975.3.27. 동 장관의 방한이 파이잘 사우디 왕의 급서로 취소되었음을 건설부 해외협력실에 전화로 통보함.

4. 주사우디대사관은 1975.4.8. 주재국은 Tawfig 장관을 대만(구 자유중국) 장 총통 서거 조의사절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주재국 교통체신부는 동 장관이 수행원 2명을 대동, 4.10. 대만 도착 및 장례의식을 마치고 4.20.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5. 건설부는 1975.5.2. 동 장관 일행은 하기 방한일정을 마치고 5.2. 홍콩으로 출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건설부장관 주최 만찬(4.25.), 건설부장관 예방 및 건설현황 브리핑, 도로공사 업무현황 청취, 울산 도착(4.26.), 현대조선소 시찰, 부산경유 서울 도착(4.27.),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경제기획원장관 주최 만찬(4.28.), 국무총리 예방, 체신부장관 예방, 광화문전화국 시찰(4.29.), 건설부장관 면담, 기자회견, 대통령 예방(4.30.), 이한(5.2.)

Plovdiv(불가리아) 국제박람회 간접 참가, 1975.9.3.-10.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27 / 1-23

불가리아 국제박람회가 1975.9.3.~10. 개최됨.

1. 코트라는 1975.8.23. 및 8.28. 동구권 시장개척정책의 일환으로 불가리아에서 개최되는 Plovdiv 박람회(1975.9.3.~10.)에 간접 참가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코트라 베이루트 사무소장과 삼성물산 및 선경직물 주재원이 동 박람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각각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9.5. 동인들의 불가리아 여행에 있어 파견전 철저한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행후 보고서를 제출할 것 등을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에 지시함.

3. 주베이루트공사는 1975.9.6. 현지 주재 삼성 및 선경 지사장은 활동계획 변경으로 동 박람회 불참을 알려 왔으며 코트라 소장은 동일 오전 불가리아로 향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5.10.22. 현지 주재 코트라 소장의 동 박람회 참가 결과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 바,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참가 경위
     - 베이루트 소재 Strand Exhibition & Export Center사의 자매회사인 Rawmatimpex상사 명의로 참가(명칭은 레바논관이나 실제 전시품은 전량 한국상품)
   - 박람회 참가국
     - 동독, 오스트리아, 미국, 소련, 북한, 중국(구 중공) 등 39개국
   - 한국관 규모
     - 면적: 100 평방미터
     - 계약액: 60만 달러, 추진액: 100만 달러
   - 성과
     - 간접 참여이기는 하나 수입상들은 한국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불가리아 직접교역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
   - 문제점
     - 북한측으로부터 신변위협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출장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1976년도에는 신변안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75-1061

광주(廣州, 중국)교역회 참가, 1975.10.15.-11.1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28 / 1-19

중국(구 중공) 광주교역회가 1975.10.15.~11.15. 개최됨.

1. 주홍콩총영사관은 1975.10.1. 추계 중국(구 중공) 광주교역회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중국상품 정보수집 방법은 교역회 참가이나 홍콩체류 교포는 장기거주자일지라도 홍콩여권 취득이 불가능하며 현재 한·중국 관계에 비추어 중국 측이 한국여권 소지자를 직접 초청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제3국인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뿐인바, 동 교역회에 참가하는 홍콩상공회의소 관계관을 통해 상품견본 수집, 가격 및 수량조사 등을 할 예정
  - 동 정보수집을 위한 예산지원 가능여부 회보 요망

2. 외무부는 1975.10.16. 예산지원을 위한 송금 수속중임을 주홍콩총영사관에 통보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중국상품에 관한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중국 교역당국자와 접촉, 한국과의 교역 가능성에 대한 중국 측 의향 등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3. 주홍콩총영사관은 1975.12.1. 동인의 제38차 광주교역회 참가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 바, 동 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교역회 기간 및 규모
  - 1975.10.15.~11.15., 4층 건물의 총11만 평방미터
- 수량
  - 여러 종류의 6만종 이상, 16mm 컬러TV, 소형바퀴의 자전거 등이 인상적이었으며, 3천 톤급의 cargo vessels 및 oil tankers를 수출용으로 건조한다고 함.
- 가격
  - 일반적인 산정은 어려우나 춘계 교역회에 비해 변하지 않거나 인하된 가격
- 참관인단
  - 중국 내외로부터 많은 관람객이 참관했으며 참가 기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자들이 초청됨.

Kinshasa(콩고민주공화국) 국제박람회 참가, 1975.6.21.-7.6.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29 / 1-121

킨샤사 국제박람회가 1975.6.21.~7.6. 개최됨.

1. 외무부는 1974.12.24. 킨샤사 국제박람회 관련 아래 요지로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관에 통보함.

- 동 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동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이미 현지 코트라 사무소로 하여금 375 S/M의 독립관을 임차하도록 지시

2. 외무부는 1975.5.2.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한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방문 결과보고에서 한국이 참가하기로 한 제4차 킨샤사 국제박람회 참가준비와 관련, 콩고민주공화국이 국제정치면에서 점하는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북한보다 공업발전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동 박람회 참가규모와 내용에 충실을 기할 것을 건의하였음을 상공부 및 코트라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3. 동 박람회 개최(1975.6.21.~7.6.) 진행사항에 관한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의 외무부 앞 수시 보고문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6.23. 보고문서 요지
  - 동 박람회는 6.21. 모부투 주재국 대통령의 참석하에 개회되었으며 동 개회식에는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및 안광호 코트라 사장이 참석
  - 주재국 상공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규 참가 7개국을 거명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북한은 동 박람회에 불참하고 북한대표단 2명이 개막식에 참석
- 6.24. 보고문서 요지
  - 모부투 대통령은 6.23. 한국전시관을 방문, 전시상품에 큰 관심을 갖고 20분간 관람했으며, 동일 주재국 TV는 동 대통령의 한국전시관 방문 광경을 방영하고 동 대통령이 한국 공산품의 높은 품질을 칭찬했다고 보도
- 7.1. 보고문서 요지
  - 6.29. 17:00부터 한국의 날 행사를 가졌으며 동 행사에는 Mokolo 대통령 외교담당고문 등이 참석
- 7.8. 보고문서 요지
  - 동 박람회는 7.6. 모부투 대통령 참석하에 폐막식을 거행했으며, 연 인원 약 35만 명이 한국관을 방문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데 기여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둠.

75-1063

Leipzig(동독) 국제무역박람회 간접 참가, 1975.3.9.-16.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30 / 1-32

동독 라이프치히 국제무역박람회가 1975.3.9.~16. 개최됨.

1.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12.13. 현지 주재 코트라 무역관은 1975.3.9.~16. 동독 Leipzig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할 하기 요지의 계획을 동 대사관에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코트라 무역관장의 동독 입국사증 신청을 위해 현지 주재 동독대사관을 접촉해도 좋을지 등에 관한 외무부 지시를 요청함.
   - 코트라 무역관이 직접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현지 한국인 설립법인 상사 명의로 참가하고 코트라 무역관장을 파견하여 직접 운영

2.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5.1.22. 코트라 무역관의 직접참가 신청에 대해 동 박람회 당국은 전시장 스페이스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서한을 보내왔으며 한국인 설립법인 상사 명의 참가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5.2.12. 한국인 설립법인 상사 명의로 동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신청한데 대해서도 스페이스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며 예년과 같이 Vlemtex를 통한 간접참가를 추진 중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75.2.13. 코트라 무역관장이 정식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동독에 입국, 한국관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관광사증으로 동독에 입국하여 당일 돌아오는 것은 효과 면에서 기대할 것이 없으며 동독이 북한의 대서구 공작거점인 점을 감안할 때 불가함을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통보함.

5.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5.4.18. 현지 코트라 관장으로부터 접수한 동 박람회 종합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 바, 동 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박람회 성격 및 규모
     - 유럽 최대 규모로서 60개국의 9,400개 상사 참가(북한 불참)
   - 한국 참가
     - 간접참가(Vlemtex stand 50 S/M, Mackintosch Confectie N.V. stand 50 S/M)
     - 실적: 50만 달러 계약

오끼나와(일본) 국제해양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통상1/동북아1
MF번호 N-21 / 31 / 1-40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가 1975.3.2.~8.31. 개최됨.

1. **외무부 통상국은 1973.5.11.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박람회(International Ocean Exhibition) 참가여부에 관한 방침 결정을 위해 아래 요지의 자료를 아주국에 송부하고 동 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개최기간 및 theme
     - 1975.3.2.~8.31., The Sea We would like to see
   - 성격
     - 국제박람회 조약에 의거한 국제박람회로서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박람회
   - 참가범위
     - 일본 정부는 국교가 있는 140개국과 34개 국제기관에 초청장 발송
   - 참가시 의의
     - 동 박람회는 해양에 관한 종합박람회로서는 처음 기획된 것이며, 한국이 참가함으로써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환경 보전 등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의 조선, 해운, 수산 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임.

2. **외무부 아주국은 1973.5.14. 아래 요지의 견지에서 동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을 통상국에 통보함.**
   - 최근 한국이 조선공업, 원양어업분야 등에서의 현저한 진전을 거듭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임.

3. **외무부는 1975.6.4.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Expo75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 기간(1975.7.20.~76.1.18.)중 '한국의 날'(10.3.)에 정부고위인사의 일본 방문을 초청 하였음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정부 고위인사 부부 및 수행원 3명에 대해 일본 체재경비를 일본 측이 부담

4. **외무부는 1975.9.19. 동 박람회 한국의 날(10.3.) 행사 관련 국무총리 앞 건의를 통해 태완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부인동반)을 한국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함.**

75-1065

Poznan(폴란드) 국제박람회 참가, 1975.9.7.-14.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32 / 1-21

1975.9.7.~14. 폴란드 포즈난(Poznan) 박람회 참가보고서 내용임.

1. 박람회 개황

- 박람회 개최기간 및 명칭
  - 1975.9.7.~14., Poznan International Fair for Consumer Goods
- 연혁 및 주최
  - 금회로서 제44회이며 Poznan International Fair Authority 주최
- 성격
  - 공산권 등 50여개 국가에서 참가하는 국제박람회로서 폴란드와 서방세계를 잇는 교량역할을 담당

2. 박람회 규모

- 총면적 85,000평방미터중 소비용품 전시장 59,000평방미터, 기계류 전시장 21,000평방미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국상사는 31,000평방미터 차지
- 총 참가상사 수는 776개사로서 35개국에서 참가
- 한국관 면적
  - 30평방미터이었으며 네덜란드 측 참가상사의 전시장 장치인이 특별봉사가격으로 건축

3. 한국의 참가 시도 및 성과

- 1972년 최초 참가시도는 직접참가가 허용되지 않아 네덜란드상사와 공동으로 참가
- 1974년에는 직접참가가 거의 확실시되었으나 최종단계에서 비자신청 시 폴란드 외무부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금년에도 직접참가가 거절되어 암스테르담 소재 한국교포상사로 하여금 참가 신청하게 하여 우회적이나마 실질적 직접참가 실현
- 한국관 참관자 수는 약 400여 명이며 392,600달러의 상담이 계속 추진중

4. 문제점 및 건의

- 현재와 같은 정치적 여건하에서 한국제품을 동구국가로 수출함에 있어서 원산지 및 지불조건 등의 애로로 인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수상사의 설립이 요망됨.
- 향후 동 박람회 참가에 대비하여 상품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 등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조직망 조정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33 / 1-66

1. 상공부는 1974.9.2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제네바 소재 국제통상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코트라 직원 1명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파견하도록 조치한바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파견근무에 앞서 협조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10.1. 상기 요청에 대해 아래 요지로 상공부에 통보함.

- 코트라 해외무역관(사무소)의 설치나 폐쇄 및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해서는 외무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그간 수차에 걸쳐 요청한바 있으나 금번 또다시 사전협의 없이 코트라 직원을 일방적으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조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 GATT 등 국제경제기구는 정부간 협상기구로서 코트라가 관여할 성질의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GATT 등 국제경제기구 문제를 관장하기 위해 외무부 등 관계부처 직원이 이미 파견되어 있으므로 코트라 직원의 주제네바대표부 파견문제는 재고 요망

3. 상공부는 1975.2.19. 최근 세계무역환경의 격변에 대비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100억 달러 수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코트라의 해외조직망을 하기 요지로 조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조직망 현황
  - 56개국 69개소(무역관 26개, 사무소 43개)
- 신설 조직망
  - 뮌헨, 리마, 뭄바이(구 봄베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랑군 등 11개소
- 폐쇄 조직망
  - 시애틀, 애틀랜타, 서베를린, 나고야, 카불 등 10개소

4. 외무부는 1975.3.13. 코트라가 신설 해외사무소에 4.15.까지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을 주독일대사관 등 해당공관에 통보하고 동 협조요청 사항을 주재국 또는 겸임국 측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코트라 사무소가 비영리정부관리기업체임을 주지시키고 이의 설치가 허용되도록 교섭
- 동 사무소 및 주재원에게 주재국 또는 겸임국에 이미 주재하고 있는 제3국의 동일한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도록 교섭

75-1067

Dhaka(방글라데시) KOTRA 사무소 설치 및 폐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34 / 1-50

1. 외무부는 1973.7.13. 신설되는 코트라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동 사무소가 비영리정부관리 기업체임을 주재국에 주지시키고 이의 설치가 허용되도록 교섭해 줄 것을 해당공관에 지시·특히 상주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다카, 카불)의 코트라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해서는 예상되는 제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주뉴델리총영사관에 지시함.

2. 주뉴델리총영사관은 1973.7.26. 코트라 다카사무소 설치 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설치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74.1.9. 코트라의 1974년도 5개 해외사무소 설치계획 중 다카, 카불 및 라스팔마스 해외사무소 설치에 관해 아래 요지로 코트라에 통보함.
   - 다카 및 카불지역에는 조만간 한국공관 설치가 예상되며, 또한 수출입 행위를 대부분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행하고 있어 민간교역의 여지가 적고, 특히 라스팔마스에는 영사관이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고 수산관도 주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해외사무소 설치가 적절하지 않음.

4. 외무부는 1974.7.4. 코트라가 다카에 해외사무소 설치를 결정하고 9.1.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함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5. 코트라는 1974.9.23. 다카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설요원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중동 산유국에 대한 시장개척이 보다 시급히 요청되어 동 요원 파견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외무부는 9.24. 동 신설요원 파견 보류는 장래 예상되는 방글라데시와의 재교섭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주인도대사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다카사무소 설치를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코트라에 통보
   - 코트라는 10.2. 동 요원 파견은 금년말 인사에 반영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

6. 외무부는 1975.2.22. 코트라 다카사무소 등은 조직망 조정 결과 폐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주인도대사관 등 해당공관에 통보함.

Rangoon(미얀마) KOTRA 무역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35 / 1-46

1. 외무부는 1975.3.17. 코트라가 해외사무소 신설을 결정하고 4.15.까지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함을 주랑군총영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도록 주재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주랑군총영사관은 1975.4.2. 동 사무소 설치에 관해 주재국 외무성에 공한을 발송하고 관계당국인 통상성 측과 교섭을 진행중이나 코트라와 같은 성격의 기관으로서 주재국에 상주하는 외국기관은 전무한 상태로 코트라 주재원의 입국사증 발급문제 등이 있으므로 주재국 정부의 결정통보 접수 후 출발하도록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랑군총영사관은 1975.6.10. 코트라 직원 파견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그간 통상성과 계속 접촉 교섭한 바, 주재국에는 외국 Trade Representative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동 규정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 각의 및 국가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
   - 동 총영사는 동일 주재국 통상장관 특별보좌관 및 외무성 경제과장과 협의한 결과, 코트라직원이 status로 입국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공관에 파견되는 commercial assistant로 하게 되는 경우 통상성의 사전허가가 필요 없으며 외무성에서 처리한다고 함.

4. 주미얀마(구 버마)대사대리는 1975.9.4. 코트라 사무소장으로 발령된 주재원은 동일 1주일간의 관광비자로 주재국에 도착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인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방법은 공관 소속 고용원 또는 상무보좌관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1975.10.16. 동 주재원의 지위는 편의상 Commercial Assistant로 주재국에 통보할 것을 주미얀마대사대리에게 지시함.

75-1069

Copenhagen(덴마크) KOTRA 사무소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36 / 1-15

1. 외무부 통상국은 1975.4.30. 주덴마크대사가 현지 주재 코트라 사무소장의 원활한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동 사무소장을 동 대사관의 상무관으로 지명해 줄 것을 건의하여 왔음을 기획관리실에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75.5.2. 현행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관 내지 상무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에 한하고 있으므로 상기 코트라 직원의 상무관 지명은 불가함을 통상국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5.10. 주덴마크대사가 코트라 코펜하겐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새로운 곳을 물색중에 있다면서 국가예산 절약과 업무의 유기적 협조 도모라는 견지에서 동 사무소를 대사관 내로 이전시킴이 좋을 것이라고 건의하여 왔음을 코트라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4. 코트라는 1975.6.19. 상기 사무소의 대사관 이전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주덴마크대사관에 회보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아래의 사유로 독립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수출진흥을 위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 코트라 사무소 이전문제는 재고 요망
     - 폴란드 및 동독 등 동구권에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수입상 발굴 및 접촉에 있어 대사관내에 있음으로 인해 풍길 수 있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 인상을 배제하여 순수한 business base로 활동
     - 현 사무실과 대사관과는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큰 차이는 없음.

Guayaquil(에콰도르) KOTRA 무역관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37 / 1-30

1.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74.3.22. 코트라 통신원 임명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재국 수도인 키토에 코트라 통신원을 두고 한국상품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정보를 적시에 입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주재국 수출입무역상의 저명한 변호사로 활동중인 Dr. Oswaldo Torres G.를 코트라 통신원으로 임명해줄 것을 건의

2. 외무부는 1974.10.4. 코트라가 상기 명예 코트라 요원 임명 요청을 수락하여 위촉장 송부를 의뢰하였음을 주에콰도르대사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2.22. 수출진흥 일환책으로 구아야길(Guayaquil) 등 지역에 코트라 사무소 신설이 결정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설치요원이 부임할 예정임을 주에콰도르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함.

4.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75.2.26. 상기 주재국 구아야길에 코트라 사무소 설치 관련, 키토 주재 코트라 통신원의 유임을 외무부에 건의함.

5. 외무부는 1975.3.17. 코트라가 신설되는 해외사무소에 4.15.까지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으로 동 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주에콰도르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가 비영리정부관리기업체임을 주재국에 알리고 동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75-1071

주서백림(독일) KOTRA 사무소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38 / 10-20

1. 외무부는 1973.7.18. 코트라가 서백림(독일 서베를린) 등 지역에 해외사무소 설치를 결정하고 9.1.까지 사무소장 전원을 부임시켜 1974년초부터는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동 사무소 설치 관련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주서백림총영사관 등 해당공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도록 주재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주독일(구 서독)대사관은 1974.12.3. 들리는 바에 의하면 코트라 서백림사무소 철수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사무소의 계속 존치를 건의함.

- 대서백림 수출실적이 현재로는 미미하나 동 사무소 설치기간이 1년밖에 안되므로 철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
- 서백림은 동서무역의 접촉지점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바, 구미 각국뿐만 아니라 일부 동구권 국가들의 무역기관이 서백림에 주재하고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의 무역기관이 동백림(동베를린)에 집중되고 있어 서백림의 중요성은 지대한 것으로 판단

3. 외무부는 1975.2.22. 서베를린 등 지역의 코트라 사무소는 조직망 조정 결과 폐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주서백림총영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함.

4. 코트라는 1975.5.1. 주독일대사 및 주서백림총영사가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코트라 서백림사무소의 존속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건비 및 기본활동비는 코트라 부담하에 직원 1명을 주서백림총영사관에 주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직원이 총영사관 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할애 가능여부 등을 문의함.

5. 주서백림총영사관은 1975.5.20. 상기 사무실 공간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총영사관은 사무실 방수가 적고(전부 6개) 각방이 협소하여 사무실로서 충분한 공간를 할애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코트라 직원이 자료수집보고 등의 활동은 가능할 것이나 현지 고용원 채용, 상품전시, 업자 면담 등은 어려울 것임.

Athens(그리스) KOTRA 사무소 존속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39 / 1-12

1. 주그리스대사관은 1975.1.28. 내외경제신문 1.14.자 무역정보기능강화 제하 기사에 의하면 코트라는 아테네사무소를 포함한 일부 해외조직을 폐쇄하기로 하였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사실여부 회보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2.4. 평가교수단의 건의에 따라 제한된 인원과 예산 범위내에서 자원보유국에의 중점지원을 위해 1975년 상반기 중에 코트라 아테네사무소를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 예정임을 주그리스대사관에 통보함.

3. 주그리스대사관은 1975.2.5. 동 사무소 폐쇄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코트라 아테네사무소는 1973.10월 설치이후 시장조사, 수출알선 등 활동에 있어 1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여 왔으며, 1974년 2,500만 달러 수출달성에 공헌하였고 앞으로도 주재국 시장개척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고 봄.
   - 동 사무소를 창설 1년 수개월 만에 폐쇄하는 경우 주재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특히 최근 주재국이 사이프러스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대그리스 태도에 비상한 신경을 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사무소 철수 조치를 대그리스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드릴 가능성이 농후함.

4. 외무부는 1975.2.22. 코트라 아테네사무소의 존속이 결정되었음을 주그리스대사관에 통보함.

75-1073

Bombay(인도) KOTRA 사무소 설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40 / 1-25

1. 외무부는 1975.1.23. 주인도대사가 뭄바이(구 봄베이)에 코트라 사무소 설치를 건의하여 왔음을 코트라에 통보하고 특히 뭄바이 일대는 인도의 공업 및 상업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동 건의가 수락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2.22. 수출진흥일환책으로 뭄바이 등 지역에 코트라 사무소 신설이 결정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설치요원이 부임할 예정임을 주인도대사관 등 해당공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3.17. 코트라가 신설되는 해외사무소에 4.15.까지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으로 동 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주인도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가 비영리정부관리기업체임을 주재국에 알리고 동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주인도대사관은 1975.5.16. 코트라 뭄바이 사무소장이 현재 뭄바이에 체재하면서 사무소 개설에 따른 제반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주재국 정부로부터 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식 허가가 나지 않아 은행구좌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므로 사무소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를 당분간 대사관 앞으로 보내주면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송금하는 것이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외무부에 보고함.

Dublin(아일란드) KOTRA 사무소 설치 및 폐쇄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41 / 1-19

1. 외무부는 1973.11.17. 아일랜드와의 수출진흥촉진을 위해 더블린에 코트라 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 보고를 주영국대사관에 지시함.

2. 주영국대사관은 1973.12.10. 아일랜드에 1인 코트라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아일랜드는 산업구조상 농업분야의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추진과 외국인투자 증대로 인한 경기확대로 소비수요의 증가율이 높아가고 있음.
   - 아일랜드는 금년에 영국과 같이 EC(구주공동체)에 가입하고 개도국 상품에 대하여는 GSP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의 잡제품 등의 경우 관세상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가공무역 증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반제품을 수출, EC에 대한 수출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 섬유직물의 경우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쿼터협정은 없으나 섬유수출이 증가하면 쿼터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외무부는 1974.1.9. 코트라의 1974년도 5개 해외사무소 설치계획 중 더블린 및 트리폴리사무소 설치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수출전망 및 한국과의 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을 코트라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5.2.22. 코트라 더블린사무소는 조직망 조정 결과 폐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주영국대사관 등 해당공관에 통보함.

75-1075

Casablanca(모로코) KOTRA 사무소 설치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42 / 1-39

1. 외무부는 1974.8.18. 주모로코대사가 최근 북한이 모로코의 상업중심지인 카사블랑카에 통상대표부 설치를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사전에 저지하고 모로코와의 통상증진을 통한 관계강화를 위해 카사블랑카에 코트라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음을 코트라에 통보하고 동건 적극 검토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5.2.22. 수출진흥 일환책으로 카사블랑카 등 지역에 코트라 사무소 신설이 결정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설치요원이 부임할 예정임을 주모로코대사관 등 해당공관에 통보함.

3. 주모로코대사관은 1975.7.3. 코트라 카사블랑카사무소 설치에 관해 그간 교섭한 결과, 주재국 외무성 당국이 코트라가 정부기관이라면 대사관 내에 설치를 시사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사무소 지위 문제 협의에 필요하니 주요국가 소재 코트라 사무소의 지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76.1.16. 주모로코대사가 동 사무소 개소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Sebti 모로코 외무성 국장을 면담 협의한 결과, 동 국장은 코트라와 여사한 외국기관에 대한 모로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현재 대사관 직원 신분으로 있는 코트라 사무소장의 체류신분에 대해 외무성 의전실에서 이의가 없다면 자신으로서는 코트라사무소가 조용히 활동하는 것을 묵인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함을 코트라에 통보하고 하기 주모로코대사의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 현재의 미묘한 상황하에서 동 사무소의 실질적인 지장은 없으므로 그 활동이 정착될 때까지는 정식 개소식이나 주재국 신문에 개소기사 게재 등 공개 활동은 당분간 보류시켜 줄 것을 건의

5. 코트라는 1976.1.23. 상기 건의대로 카사블랑카사무소의 정식인가 및 대외활동이 허용될 때까지 일단 대외 홍보활동을 보류하도록 지시할 것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Lagos(나이지리아) KOTRA 사무소 강화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43 / 1-24

1. **외무부는 1974.8.23. 주카메룬대사는 나이지리아가 세계 8위의 산유국으로서 서부아프리카의 최대부국이며 최대수출시장으로서 코트라 라고스사무소가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유일한 대외기관이라는 점과 남북한의 대나이지리아 관계에 있어서 한국만 코트라 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고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동 사무소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여 왔음을 상공부 및 코트라에 통보하고 동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 쿼터 증원
   - 수출상사 기능대행
   - 사무실 및 직원주택 개선

2. **외무부는 1974.9.10. 상기 건의에 대해 코트라의 검토의견을 주카메룬대사관에 전달하고 코트라 라고스사무소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지시함.**
   - 쿼터 증원
     - 라고스사무소에서 추진방안을 모색, 소요경비를 건의하면 적극 검토예정
   - 수출상사의 기능대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22조 6항(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업무)이 신설되어 특수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업무와 수출상사의 기능 대행업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임.
   - 사무실 이전문제
     -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경비를 보고하면 1975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

3. **외무부는 1974.10.7. 외무부장관이 10.2. 뉴욕에서 나이지리아 외상과의 면담 시 동 외상이 코트라 라고스사무소의 직원 증원을 승인하겠다고 하였음을 주카메룬대사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5.4.19. 코트라에 의하면 라고스 사무소장 및 직원의 새로운 주택마련을 위한 건의 관련, 예산형편상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동 사무소장에게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함을 주카메룬대사관에 통보함.**
   - 코트라는 증원 직원 1명을 4.15. 발령, 파견조치 완료

75-1077

Lima(페루) KOTRA 사무소 설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44 / 1-12

1. 외무부는 1975.3.17. 코트라가 신설되는 해외사무소에 4.15.까지 주재원을 파견할 계획으로 동 사무소 설치와 관련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주페루대사관 등 해당공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가 비영리정부관리기업체임을 주재국에 알리고 동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주페루대사관은 1975.6.11. 동 사무소 설치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재국 외무성에 코트라가 금년도에 리마사무소를 재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동 사무소 설치허용과 동 사무소 및 주재원에 대해 제3국의 동일한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제반 편의 제공을 요청
   - 상기 요청에 대해 주재국 외무성은 5.3.자 공한으로 동 사무소 설치에 동의한다고 통보해온바, 양국간 통상진흥은 물론 주재국에 대한 북한의 맹렬한 접근시도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도 동 사무소의 조기설치를 건의

3. 외무부는 1975.7.29. 리마사무소의 설치시기는 코트라 측 사정에 의하여 상금 미정이며 확정 즉시 설치 예정일자 및 파견직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함을 주페루대사관에 통보함.

KOTRA 직원의 주세네갈대사관 파견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1 / 45 / 1-33

1. 외무부는 1975.2.20. 1975년도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하였던 주세네갈대사가 주재국과의 통상증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을 코트라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 통상국은 1975.3.25. 코트라 직원을 주세네갈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하는 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로 기획관리실에 의견을 문의함.
   - 코트라는 세네갈 다카르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동사 직원을 3.15. 다카르 사무소장으로 발령함.
   - 이에 따라 주세네갈대사는 동 직원의 상주에 따른 입국사증 문제를 정식으로 주재국 정부에 문의한 바, 세네갈 측은 일본의 JETRO도 요청한바 있으나 무역협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세네갈 무역협정 발효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함.
   - 상기 사정으로 주세네갈대사는 편법으로 코트라 다카르 사무소장을 대사관 주재관(Commercial Attache)으로 발령해줄 것을 건의한 바, 이에 대한 의견회보 요망

3.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75.3.27. 현행 법령상 외무부 소속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발령시 공무원 등 해외주재령에 의거 파견되고 있으나 코트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통상국에 통보함.

4. 주세네갈대사관은 1975.6.10. 코트라 직원의 주재관(관용여권 소지)으로서 파견동의 요청은 그간 주재국 외무성 경유 수상실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대사관에서도 수차 관계관과 접촉한바 있으나 외무성은 동일자 대사관 앞 문서를 통해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5-1079

Istanbul(터키) KOTRA 사무소 설치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통상2/구주2
MF번호	N-21 / 46 / 1-45

1. 외무부는 1973.11.29. 코트라 앙카라사무소 설치 관련 동 위치를 이스탄불로 변경 가능하다는 본부 의견에 따라 현재 코트라에서 상공부의 승인을 받고자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주터키대사관에 통보함.

2. 주터키대사는 1974.4.24. 코트라 사무소 지위 문제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주터키대사는 4.24. 터키 외무부 담당 부국장을 면담한 바, 동인은 정부기구에 준하는 외국 통상기구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재국 정부 방침이며 현재 소련 등 동구권 및 서방국가에서도 코트라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동 건 해결을 위해서는 동 사무소를 대사관에 흡수하고 그 직원을 대사관 직명으로 요청하면 그 지위를 인정할 것이나 대외적으로 코트라 명의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언급

3. 외무부는 1974.4.30. 코트라와 유사한 일본 Jetro 사무실이 이스탄불에 소재하고 있음을 주터키 대사관에 통보하고 Jetro 허가 전례에 따라 코트라 사무소 설치허가를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주터키대사는 1974.8.7. 터키 외무성 담당국장을 8.6. 면담한 바, 동 국장은 Jetro 이스탄불 사무소는 이스탄불 도청의 인가로 등록이 되어 일반상사 자격과 별다름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사한 지위의 코트라 설치는 외무성과의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일반상사 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함.

5. 외무부는 1974.8.16. 코트라가 그간 운영하여온 조직망의 활동실적, 해당국에서의 설치허가 곤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조정을 검토 중이며 이스탄불사무소도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주터키대사관에 통보함.

6. 주터키대사는 1974.11.5. 이스탄불은 동서 양진영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간지점이며 국제적으로도 양대 진영의 중간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대동구권 진출의 유일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요충지임을 감안, 코트라 이스탄불사무소의 재설치를 외무부에 건의함.

7. 코트라는 1975.3.11. 1980년대 100억 달러 수출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전 해외조직망의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스탄불사무소 등 11개 조직망을 1975년에 신설하게 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Saigon(월남) KOTRA 사무소 직원 일시철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21 / 47 / 1-8

1. 외무부 통상국은 1975.4.7. 코트라가 사이공(현 호치민)사무소 철수계획을 보고해 왔음을 아주국에 통보함.

2. 코트라가 1975.4.4. 외무부에 보고한 상기 사이공사무소 직원 일시철수 조치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 직원 일시철수 사유
  - 최근 월남전쟁이 악화됨에 따른 사무소 직원들의 신변보호
  - 월남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수출진흥활동 불가
  - 주월남대사관과 협의하여 현재 사이공사무소의 실질적인 수출진흥활동 중지 등
- 조치사항
  - 직원들의 타지역 소재 무역관 발령 등 직원소개를 위한 인사
  - 공관장 지시에 따라 철수하되 정해진 직원 순서대로 철수
  - 소개여비 등 자금차용 승인

75-1081

77그룹 각료회의. Algiers(알제리), 1975.2.15.-18.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경제기구/중동
MF번호	N-22 / 1 / 1-365

정부는 1975.2.15.~18. 알제리 알제에서 개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77그룹 각료회의에 윤석헌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77그룹 회원국으로서 금번 알제리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비동맹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제3세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회의 개최국인 알제리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함.

2. 교섭 경위

● 알제리 측은 회원국 대표의 입국 저지를 정당화할 수 없고 77그룹 의장국인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측의 알선으로 회의개최 직전인 1975.2.14. 오후 늦게 별지 사증발급

3. 대표단 활동

● 회의 참가활동에는 일체 제한이 없었으나 알제리 측은 외부와의 접촉(외출 및 시내관광 등) 및 통신을 제한

4. 회의 결과

● 알제리 측 태도
  - 1975.2.16. 한국대표 연설에 대해 알제리 측 반응은 없었음. 알제 일간지에 월남, 캄보디아(구 크메르), 칠레에 관해 파시즘 및 탄압이라는 공동 제목하의 비판적인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는 게재되지 않음.

● 알제리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외무성 당국과의 접촉은 불가능하였으나 금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알제리 관계개선 희망은 전달된 것으로 간주

● 대표단의 건의
  -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를 위해 77그룹에 대한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Task Force 구성
  - 제3세력, 특히 좌경국가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제3세력 지도국가에 대해 외교노력 집중 등

북한의 77그룹 가입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기구/중동
MF번호	N-6-26 / 21 / 1-212

1976.5.3.~28. 나이로비에서 개최예정인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 대비하여 사전에 개발도상국들이 협의하기 위하여 1976.1.13.~21. 자카르타에서 제3차 77그룹 아시아 각료회의, 1976.1.26.~2.6. 마닐라에서 제3차 77그룹 전체 각료회의가 개최됨.

1. 외무부는 1975.12월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77그룹 및 아시아그룹 각료회의 대책에 관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음.

-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하여 공동입장을 통해 선진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대책회의로 한국으로서는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북한의 77그룹 참여 움직임에 대처
- 비동맹 중심의 외교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에 대처하고 나아가 77그룹에 한국만이 가입되어 있는 외교적 우위를 이용하여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
- 북한이 77그룹 참여를 시도하는 경우 북한은 이미 UNCTAD 회원국이며 작금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북한의 참여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동 참여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되 77그룹에 가입하게 되면 각종 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취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우방국가와 협조하여 이에 대비

2. 1976.4.29. 외무부가 작성한 북한의 77그룹 가입신청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76.4.22. 주제네바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77그룹 아시아그룹 의장인 주제네바 필리핀 대사에게 아시아 77그룹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문제 처리를 위한 아시아 77그룹회의가 4.29. 오전 주제네바 필리핀대사관에서 개최될 예정
- 북한가입 반대의 난점
  - 북한은 1973.7월 이미 UNCTAD 회원국이 되었으며 77그룹이 UNCTAD 회의 사전준비를 위한 개도국 간의 협의체인 점에 비추어 북한가입을 저지할 명분이 없는 실정
  - 여사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당수 국가의 지지를 얻어 가입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체면이 손상되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좌절 및 고립은 향후 비동맹회의에도 영향을 줄 우려 등
- 외무부가 취한 조치
  - 북한가입에 정면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되 77그룹을 정치무대화함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우방국가의 동조를 얻어 북한가입이 아시아그룹 내지 77그룹에서 전적으로 환영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도록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 등

3. 주제네바대사는 1976.4.29. 북한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 77그룹회의가 동일 필리핀 대표부에서 개최(한국포함 20개국 대표 참석)되었으며 Brillantes 의장은 북한가입에 반대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최종 결정은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아시아그룹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세계경제수뇌회담, 제1차. Rambonillet(프랑스), 1975.11.15.-17.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22 / 2 / 1-187

제1차 세계경제수뇌회담이 1975.11.15.~17. 프랑스 랑부이에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수뇌, 외상 및 재무상 참석

2. 개최 경위 및 배경

- 1975.7.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의
- 보호무역주의 대두, 남북대립 격화, 신국제경제질서 모색 필요 등

3. 주요 회담결과

- (경기회복 문제) 공동보조 필요성 확인, 실업자 구제 및 새로운 인플레 방지 등 꾸준하고 항구적인 경제성장 필요성 인식 등
- (국제통화문제) 20개국 주요 산업국이 정기적으로 외환율 협의, 필요시 중앙은행 개입 등 현행 변동환율제 개선 등
- (국제무역문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서약원칙 공약 재확인 등 보호무역주의 대두 경고, 동경선언에 입각한 다자무역협상 가속화 등

4. 분석 및 평가

- 미국·프랑스 간 통화문제 이견 해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단합 등

5. 1975.11.19. 주미국대사관의 외무부 앞 보고문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미 국무부 관계관 접촉 및 주재국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의 경제팽창 정책을 가속화하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통화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 회담이 개최된 것은 사실이나 회담에서의 협조적 분위기에 따라 공동성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이 더이상 경제팽창정책을 계속하면 심한 인플레 재연의 우려가 많음을 인정하게 됨.
- 동 회담에서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미국·프랑스 간 절충안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소위 변동환율제의 공동관리안은 양국이 종전에 각각 주장해 오던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절충안으로서 중앙은행이 협의를 거쳐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합의안 후속조치는 명년 1월 자메이카에서 개최되는 IMF(국제통화기금) 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

75-1084

콜롬보플랜(Colombo Plan) 자문위원회, 제25차. Colombo(스리랑카), 1975.11.25.-12.3. 및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1975.12.9.-16.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N-22 / 3 / 1-222

1. 정부는 1975.11.25.~12.3.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25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에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조효원 주콜롬보통상대표부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국
  - 회원국: 캄보디아(구 크메르), 월남을 제외한 25개국
  - 옵서버: 2개국, 10개 국제기구
- 의제
  - 역내국가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검토하고 콜롬보계획 지역내의 식량증산과 식량분배 개선에 있어서 전년도 기술협력상황과 차년도 협력방안 등을 검토, 결정
- 훈령
  - 세계적인 자원난, 인플레, 세계 경기의 불투명한 전망 등에 의한 선진공업국의 자위책 강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이 자립경제를 이룰 때까지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규모 확대 필요성 강조
  - 종래 공여국의 일방적인 기술원조방식을 탈피, 수원국 측의 필요에 의한 원조의 필요성 역설
  -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강조, 동남아지역 국가에로의 한국 기술용역의 진출 가능성 모색
- 회의 결과
  - Bandaranaike 스리랑카 수상은 개회사에서 식량부족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지원과 효과적인 소득분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금년도 주요 의제인 "콜롬보플랜 지역에 있어서의 농업생산 증진과 식량분배 개선에 있어서의 의원의 역할"을 토의함.
  - 차기회의 특별과제로 "개발도상국 상호간 기술협력에 중점을 둔 콜롬보플랜 회원국 간 기술이전과 적용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함.

2.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1975.12.9.~16. Djojohadikusumo 인도네시아 연구성장관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 주요 방문일정
  - 정부인사 면담: 대통령, 석유공사총재, 연구성장관 예방
  - 방문 및 시찰: 동부칼리만탄의 LNG 시설 및 과학연구소
  - 원자력청장과 오찬

콜롬보플랜(Colombo Plan) 기술협력이사회, 제126-131차. Colombo(스리랑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N-22 / 4 / 1-150

제126~131차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가 스리랑카에서 개최됨.

1. 제126차 이사회(1975.3.25.)
   - 주요 의제
     - 제125차 기술협력이사회 회의록 채택
     - 제24차 자문위원회(1974년) 결과보고

2. 제127차 이사회(1975.5.14.)
   - 주요 의제
     - 제126차 기술협력이사회 회의록 채택
     - 콜롬보플랜 이사회 의장선출 문제(Mahmud 주콜롬보 말레이시아대사 선출)

3. 제130차 이사회(1975.11.4.)
   - 주요 의제
     - 75/76 회계연도 예산

4. 제131차 이사회(1975.12.22.)
   - 주요 의제
     - 콜롬보플랜 헌장 및 규칙검토 문제

75-1086

CEDEAO(서부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 창설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22 / 5 / 1-51

서부아프리카 15개국 원수 또는 전권대표가 1975.5.28.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CEDEAO(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조약에 서명함.

1. 서명국(15개국)

- 코트디부아르, 가나, 베냉(구 다호메이), 토고,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세네갈, 감비아, 니제르, 말리,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2. 창설 경위

- 1972.4월 Yakubu Gowon 나이지리아 국가원수가 토고 방문 시 창설 제의
- 1973.12월 제1차 각료회의 개최(토고)
- 1974.2월 경제법률가회의 개최(가나)
- 1975.1월 제2차 각료회의 개최(라이베리아)
- 1975.5월 15개국 창설조약 서명

3. 창설 목적

- 모든 경제활동분야에서 협력
  - 공업, 농업, 운수, 통신, 에너지, 통상, 화폐, 재정문제 등
-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분야에서 협력
- 아프리카대륙 발전을 위해 참가국간 관계증진 및 경제안정 유지

4. 기구

- 정상회의
- 각료회의
- 집행사무국
- 기술 및 전문위원회
- 감사역
- 공동체 재판소

알제리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2 / 1 / 1-10

1975년 중 알제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필리핀 외무성은 1975.1.27. 필리핀과 알제리 간에 국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고 발표함.

2.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은 부메디엔 알제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1975.4.10.~12. 알제리를 방문함.

- 방문 목적
  - 양국간 아픈 과거를 일소하고 연대적 관계를 확인하며, 화해를 통해 새로운 협력을 모색
- 양국간 공동성명서 요지
  - 경제협력, 특히 석유, 천연가스, 공장건설, 제철, 시청각기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
  - 양측은 프랑스에서의 아랍어 교육과 알제리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강화함.
  - 알제리는 알제리 내 프랑스인의 재산매각 및 송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 양측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

3. 알제리 정부는 1975.6.19. 전 대통령의 벤베라정권 타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 부메디엔 대통령은 알제리 민주화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1976.6.19.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직접선거 및 알제리 헌장 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4. 주중국 알제리대사는 1975.11.10. 부메디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동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서부사하라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함.

- 이에 대해 수하르토 대통령은 동 지역 분쟁이 무력투쟁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75-1088

앙골라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42 / 2 / 1-164

1975년 중 앙골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앙골라 내 3개 해방운동단체(MPLA(앙골라해방인민운동), FNLA(앙골라민족해방전선), UNITA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는 공동으로 1975.1.15. 포르투갈과 앙골라 독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 협정의 주요내용
- 포르투갈은 1975.11.11. 앙골라의 독립을 승인함.
- 독립 전까지 3개 해방운동단체와 포르투갈대표가 참여하는 과도정부를 수립함.
- 과도정부는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함.
- 통합군 병력에는 포르투갈 및 해방단체가 균등하게 참여함.
- 포르투갈군은 독립 후 철수함.

2. 앙골라는 1975.11.11.을 기하여 포르투갈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하고 포르투갈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으나, 여전히 통일된 중앙정부가 없고 3개 해방운동단체 간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됨.

● 해방운동단체 간 분열
- MPLA는 11.10. 자정을 기하여 앙골라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루안다를 수도로 정함.
- FNLA와 UNITA는 양파가 통합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앙골라공화국을 선포함.

● 앙골라 사태의 국제문제화
- MPLA와 FNLA·UNITA 간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내전이 전개됨.
- 초기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MPLA가 우세하였으나, FNLA·UNITA에 대한 미국 및 중국(구 중공)의 지원이 증가되자 앙골라 사태가 국제전의 양상을 띄게 됨.
- 강대국들의 군사개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앙골라 내전은 장기적인 국제전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됨.

아르헨티나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2 / 3 / 1-14

1975년 중 아르헨티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Vignes 아르헨티나 외상이 1975.3.19. 발표한 성명에서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말비너스(포클랜드) 군도 개발에 관하여 체결하는 어떠한 협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말비너스는 아르헨티나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함.
   - 현재까지 약 50개 석유개발회사가 영국 정부와 말비너스 군도의 해저석유개발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왔다고 알려지고 있는 바, 향후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동 군도의 석유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2. 1975.8.11. Vignes 외상이 사임하고 신임 외상에 주브라질대사인 Angel Federico Robledo가 임명됨.
   - 신임 외상은 과거 국방장관, 주멕시코대사, 주브라질대사 등을 역임함.

3. 1975.10.2. Manuel Arauz Castex가 아르헨티나 외상으로 취임함.
   - 신임 외상은 향년 60세로서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음.
   - 동 외상은 취임사에서 자신은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닌 중립을 추구할 것이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입장을 취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함.

75-1090

호주 총선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2 / 4 / 1-100

1975년 중 호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75.12.13.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Malcolm Fraser가 영도하는 자유당 및 농민당 보수연합이 노동당을 누르고 압승함.

- 하원선거 결과
  - 보수연합: 총 의석 127석 중 91석 확보(12.16. 개표 기준)
- 상원선거 결과
  - 보수연합: 총 의석 64석 중 35석 확보(12.16. 개표 기준)
- 선거 쟁점
  - 보수연합은 인플레이션, 산업 불안, 실업 등 경제문제를 선거쟁점으로 제기
  - 노동당은 호주 총독의 노동당 정부 수상 해임에 따른 헌정위기를 선거쟁점으로 제기
- 선거결과 평가
  - 선거결과는 노동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태도 반영
  - 보수연합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문제를 제기하여 대다수가 중산층인 국민들의 지지 확보
  - 노동당은 경제문제 대신 소위 헌정위기 및 사회보장 문제 등에 열중하여 국민들과 상반됨.

2. 1975.12.22. Malcolm Fraser 수상의 신내각(24명)이 출범함.

- 주요 내각인사
  - Fraser 수상
  - Anthony 부수상(국가자원상 겸임)
  - Lynch 재무상(해외통상상 겸임)
  - Sinclair 일차산업상
  - Peacock 외상
  - Killen 국방상
  - Ellicott 법무상
  - Cotton 상공상
- 신내각의 특징
  - Fraser 수상 자신의 우파적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Peacock 외상, Killen 국방상 등 중도적인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킴으로써 보수주의 온건중도 실무내각의 성격을 가지게 됨.

방글라데시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2 / 5 / 1-135

1975년 중 방글라데시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방글라데시 국회는 1975.1.25. 의회민주주의를 폐지하고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Rahman 방글라데시 수상을 신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등 대통령 중심제와 단일정당제를 골자로 하는 헌정개혁을 단행함.

2.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5.2.24. 신헌법 규정에 따라 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을 당수로 하는 새로운 정당(Bangladesh Krishak Sramik Awami League)을 창당하고 이제까지 존속하던 모든 정당들을 해체시킴으로써 1당정치를 실시하게 됨.

3. 주은래 중국(구 중공) 수상은 1975.8.31. 중국 정부가 방글라데시공화국을 승인한다는 전문을 Rahman 대통령에게 발송함.

4.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975.10.6. 중국 신화사통신이 보도함.

5. 1975.11.3. 방글라데시에 쿠데타가 발생하여 권력구조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 11.3. 사태는 육군 일반참모부장인 Musharraf 준장과 참모총장인 Rahman 소장 간의 불화를 포함한 군부 내 소장파와 고급장교 간의 알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함.
     - Musharraf 준장은 11.3. 쿠데타를 통해 Rahman 소장을 체포하고, 자신이 실력자로 등장함.
     - 동 준장에 의해 연금되었던 Rahman 소장이 11.7. 실권을 다시 장악하고, 11.3. 사태의 주역 Musharraf 준장은 피살됨.
   - 11.7. 사태에 따라 새로운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며, Saysem 신임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천명함.
     - 국회를 해산하고 1977.2월 또는 그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임.
     - 신정부의 성격을 중립적이고 초당적인 임시정부라고 규정함.

75-1092

부탄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2 / 6 / 1-10

1974~75년 중 부탄 정세에 관한 주인도대사(부탄 겸임)의 보고내용임.

1. Lyonpo Sangye Penjor 신임 주인도 부탄대표가 1975.5.20. 인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1975.6.1.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부탄 왕 살해 음모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탄 내무차관 등 저명인사를 포함한 30명이 체포되었다고 공식 발표됨.
   - 부탄 왕 대관식 행사는 예정대로 6.2.부터 3일간 거행됨.
   - 인도 대통령은 동 대관식 참석차 6.1. 인도를 출발함.

3. 주인도 부탄대표부 관계자는 대외정책면에 있어서의 인도·부탄 관계에 대해 1975.6월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힘.
   - 부탄은 1971년 유엔가입 후 대외관계에 있어 점차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해 왔음.
   - 부탄은 대외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인도의 국가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인도·부탄 양국간에는 외교정책면에서 충돌이 없었음.

4. Jigme Singye Wangchuck 부탄 왕이 인도 방문을 위해 1975.9.10. 뉴델리에 도착함.
   - 동 왕은 뉴델리 도착 후 자신의 방문으로 양국간의 제반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동 왕은 인도 방문기간중 인도 수상, 외상, 국방상, 경제기획위원장, 보건상 등 고위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협력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미얀마(구 버마)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2 / 7 / 1-39

1975년 중 미얀마(구 버마) 정세에 관한 주랑군총영사의 보고내용임.

1. 미얀마 인민회의는 반국가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1975.1.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국가활동 규제법"을 통과시킴.

- 국가반란 음모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자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168일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으며, 이 구금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국가이사회는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으며, 동 비상사태 하에서는 내무부장관(위원장), 외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모든 사태를 처리함.

2. 1975.6.7. 오전 10시부터 랑군공과대학 및 문리과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천 여명의 시위대가 랑군시 중심부에 위치한 독립기념탑 공원에서 반정부 집회를 갖고 네윈 미얀마 대통령 및 국가이사회 사무총장인 산유장군의 화형식을 가진 후 시가지에서 시위를 계속함.

- 시위대는 6.7.오후 계속 내린 비 때문에 대부분 자동해산하였으나, 주동학생 200여명은 랑군대학 학생회관에 모여 학생대표로 구성된 "총궐기시위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와 같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함.
  - 구속된 학생, 노동자, 승려를 전원 석방할 것
  - 학생들이 학생연맹을 재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3. 미얀마 정부는 1975.6.9. 전국 모든 대학교의 휴교조치를 시행하고, 6.19. 실시 예정이던 학년말 시험은 각자의 고향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공식 발표함.

- 계엄사령관인 Aye Ko 대령은 6.11. 포고령을 발표하여 전랑군지역에서의 집회, 시위, 시가행진 등을 금지함.
- 시위 중인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6.11. 오후 랑군 외곽 공장지대에 약 35대의 탱크 및 장갑차가 배치됨.

75-1094

브라질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2 / 8 / 1-83

1975년 중 브라질 정세에 관한 주브라질대사의 보고내용임.

1. 브라질 대통령은 1975.3월 연방국회 개회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 1년간의 대외정책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밝힘.

- 외교활동의 기본 목표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 미주대륙국가간 유대강화에 노력하고 아프리카 해방독립을 지지함.
-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구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 모든 아랍국가와 외교관계 및 경제협력관계를 수립함.

2. 1974.8.15. 외교관계를 수립한 브라질과 중국은 초대 주중국 브라질대사(1975.4.10.), 초대 주브라질 중국대사(5.19.)에 각각 신임장을 제정함.

3. 브라질 정부는 1975.8.18. 주방글라데시대사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신정부를 정식 승인함을 통고함.

- 8.19. 브라질 공식방문차 도착 예정이던 인도 외상이 방문 무기연기를 통고하였는바, 동 외상의 방문 취소는 브라질의 방글라데시 신정부 승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4. 브라질 대통령은 1975.12.30. 발표한 연말메시지에서 외교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밝힘.

- 책임있는 실리주의는 브라질의 외교정책을 변화시켰음.
- 서독과의 핵협정은 가장 큰 반향을 보였고, 아프리카 국가들 및 인접 라틴국가들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한 행적이었음.
- 새해에는 국민들의 주권적 실리노선을 답습하고 제3세계와의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새로운 시장개척에 중점을 둘 것임.

베냉(구 다호메이)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42 / 9 / 1-13

1975년 중 베냉(구 다호메이) 정세에 관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베냉 장갑차 부대장 겸 총무·노동장관인 Janvier Assogba 대위가 주동이 된 쿠데타가 실패함.

- Assogba 대위는 1975.1.21.~22. 장갑차부대를 이끌고 수도로 진격하였으나, 정부군의 반격을 받고 체포됨.
- 동 쿠데타의 배후로 전 민간정부 재무상을 지내고 현 UNDP(유엔개발계획) 직원인 Bertin Borna가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짐.
- 현지 언론은 연일 Assogba 대위의 쿠데타 기도를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고 규탄하는 기사를 보도함.

2. Aikpe Michel 베냉 내무상이 1975.6.20. 대통령 경호대원에 의해 피살됨.

- 베냉 정부는 Michel 내무상이 대통령 부인과 간통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살되었다고 발표함.
- 시위 군중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동 사건을 강력한 대통령의 라이벌인 내무상을 제거하기 위한 조작극이라고 규탄함.

3. 베냉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군중 시위와 노조파업에 대하여 1975.6.24. 아래와 같이 조치함.

-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함.
- 모든 공공기관 및 개인업체 노조원들의 파업을 6.24. 15시까지 종료할 것을 명함.
- 전국에서 저녁 2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함.
- 6.24.부터 군, 경찰, 세관 등 공공질서유지기관은 대통령의 직속 지휘하에 들어감.

75-1096

각국의 캄보디아(구 크메르) 신정권 승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2 / 10 / 1-88

시아누크가 이끄는 캄보디아(구 크메르) 신정권(GRUNK: Royal Government of the National Union of Cambodia) 승인 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임.

1. 시아누크 캄보디아 신정부 외상은 1975.3.29. 인도 방문 시 대부분의 비동맹국인 62개국이 신정권을 승인하였다고 언급함.

2. 1975.4월 주요 국가들의 신정권 승인현황임.

- 인도 : 1975.4.1. 시아누크 외상과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승인
- 프랑스 : 1975.4.12.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스웨덴 : 1975.4.15.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호주 : 1975.4.17.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말레이시아 : 1975.4.18.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태국 : 1975.4.18.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이란 : 1975.4.18. 대외발표 및 공문전달을 통해 승인
- 일본 : 1975.4.18. 공문전달을 통해 승인
- 싱가포르 : 1975.4.19.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필리핀 : 1975.4.19.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페루 : 1975.4.19.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 뉴질랜드 : 1975.4.21. 대외발표를 통해 승인

3. 신정권에 대한 승인조치를 하지 않은 주요 국가들의 입장임.

- 오스트리아
  - 국가승인이 관례이므로 정권교체 시 별도의 승인조치 불요함.
- 벨기에
  - 정부승인절차 필요없이 신정권도 자동적으로 승인함.
- 서독
  - 1969년 시하누크가 단교했으므로 캄보디아가 먼저 제안할 사항임.
- 이탈리아
  - 신정권과 외교관계 수립 의향이 있음.
- 영국
  - 신정권의 계속 여부, 다수 국민의 복종, 영토의 효과적 통제 등을 보고 결정할 것임.
- 미얀마(구 버마)
  - 성급한 승인을 피하고 프놈펜 사태가 안정되고 합법적인 신정권의 수립 후 승인할 것임.

캄보디아(구 크메르)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2 / 11 / 1-254

1974~75년 중 캄보디아(구 크메르) 정세에 관한 주캄보디아대사의 보고내용임.

1. 론놀정권의 롱보렛 캄보디아 수상은 1974.7.9.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책선언을 발표함.

- 동 선언은 1973.7.6. 캄보디아 외상이 발표한 평화안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즉각적인 협상을 제의한 것이 특징임.
- 1974.7.11. 시하누크가 이끄는 망명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상 제의가 미국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최후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2.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 표결 결과, 캄보디아 정부가 56:54로 유엔대표권을 가까스로 유지하였으나, 시아누크 망명정부(공산정권)에 대한 승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됨.

3. 공산군의 공격으로 론놀세력의 후퇴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1975.1.1. 공산군의 수도 공격개시 이래 사태가 급격히 악화됨.

- 이스라엘, 네팔, 싱가포르, 호주 등은 프놈펜 주재 공관을 철수시킴.
- 한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은 공관을 잔류시킴.
- 주캄보디아대사관은 공관철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외무부가 3.17. 주캄보디아대사에게 공관 및 직원철수에 관한 재량권 부여
  - 동 대사가 3.18. 단계적 철수계획수립 및 시행

75-1098

차드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
MF번호	O-42 / 12 / 1-28

1975년 중 차드 정세에 관한 주카메룬대사(차드 겸임)의 보고내용임.

1. 차드에서 1975.4.13. 새벽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쿠데타군이 정권장악에 성공함.

- 차드 대통령은 군과 대통령경호대 간의 총격전에서 부상을 당하여 사망함.
- 금번 쿠데타는 차드군 및 경찰과 민간정부 간의 내부 반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2. Cdingar 차드군 총사령관은 1975.4.13.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고 우방국과의 공약을 준수하겠다고 발표함.

- 전국에 통행금지령이 선포되고 엔자메나 공항이 폐쇄되었으나 수도는 평온을 유지함.

3. 차드 군부는 1975.4.14.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번 군사혁명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구정권은 차드군을 계속 우롱 및 모욕하여 왔음.
- 구정권은 경제침체를 야기하고, 사회적 차별로 부족간의 적대감과 유혈사태를 초래함.

4. 차드 군사최고위원회는 1975.4.28.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발표하고, 망명인사와 반란군이 민족공동체제에 참여하여 줄 것을 호소함.

5. 차드 군사최고위원회는 1975.5.12. 9명의 군인과 7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차드 제2공화국 제1차 임시정부 각료명단을 발표함.

6. 차드 군사최고위원회는 1975.5.14. 신정부의 대외정책을 아래와 같이 천명함.

- 신정부는 전정권이 체결한 모든 협정을 준수할 것임.
- 신정부는 비동맹 및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인접국 특히 중부아프리카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임.
- 신정부는 유엔헌장과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원칙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독립 당시의 아프리카 국가의 국경을 존중할 것임.

7. Malloum 차드 국가원수가 1975.9.17. 1960년 이래 차드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프랑스군은 10.27. 철수를 완료함.

대만(구 자유중국)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O-42 / 13 / 1-60

1975년 중 대만(구 자유중국) 정세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의 서거(1975.4.6.)에 대한 반응

- 미국 언론
  -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미국인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미국 정부가 독립을 승인할 경우 중국(구 중공)을 자극하기 때문에 미국 외교관은 대만 독립안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음.
- 일본 외무성
  - 대만에서는 장총통 재임 시부터 이미 행정의 실질적 권한이 장경국에게 있었으며, 국내정국이 안정되어 있었음.
- 서독 외무성
  - 장경국 총리 자신이 후계자로 등장하지 않고 서열에 따라 현 부통령을 총통으로 추대한 것은 현명한 조치로 보며, 신정부는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종래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2. 제10차 국민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임시총회(1975.4.28.) 결과

- 당의 지도체제 강화, 반공 국시 불변, 민주진영 위치 견지 등을 결의하고, 장경국을 당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추대

3. 국민당 중앙상무회의(1975.5.14.) 결과

- 삼민주의 실천, 대륙 광복, 민족문화 부흥 및 민주진용 견지 등 고 장개석 총통의 유지를 받들어 혁명 임무를 완성, 실천하기로 하는 행동강령을 채택

4. 장경국 행정원장의 신년정책 연설(1975.12.15.)

- 정치 부문
  - 국민의 일치단결로서 혁신, 발전을 기하고, 신인을 기용, 정치적 활력을 부여함.
- 외교 부문
  - 독립, 자주의 정신으로 모든 자유국가와 단합하고 대외적 실질관계를 유리하게 전개함.
- 경제 부문
  - 경제건설의 가속화를 통해 부의 균등을 이룩하여 강력한 국력의 기틀을 마련함.
- 군사 부문
  - 군대의 정예화와 현대화를 기함.

75-1100

콜롬비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2 / 14 / 1-13

1975년 중 콜롬비아 정세에 관한 주콜롬비아대사의 보고내용임.

1. Lievano 콜롬비아 외상은 2.21. 기자회견에서 Lopez 콜롬비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주쿠바 스위스대사의 중재로 쿠바와 국교재개를 교섭 중에 있다고 발표함.

2. 1975.11월 주콜롬비아대사관의 1975년도 10대 주요사업 추진현황임.

- 대유엔 대책
  - 주재국의 공동제안국 가담 목표를 달성함.
- 주한 상주공관 설치
  - 외무성 및 친한파 인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음.
- KOREA 로비 구성
  - 영향력 있는 정계인사 30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1975년 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양국간 정기항로 개설
  - 남미의 유수한 선박회사를 통하여 동사의 정기항로를 부산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주요인사 초청
  - 15명의 주요인사를 한국 측의 체재비 부담조건으로 방한 초청함.
- 수출목표 달성
  - 1975.8월 현재 목표의 20%를 달성함.
  - 수입상사들이 한국상품을 수입하면서도 미국 본사를 통해 L/C를 개설함으로써 수출이 미국 실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음.

카메룬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2 / 15 / 1-27

1975년 중 카메룬 정세에 관한 주카메룬대사의 보고내용임.

1. 카메룬 대통령 선거가 1975.4.5. 실시되었으며, 단일 후보인 아히조 현 대통령이 99.9%의 지지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됨.

- 주카메룬대사가 대통령 명의의 아히조 대통령 당선 축전을 카메룬 측에 전달함.

2. 아히조 대통령은 1975.5.6. 제4대 카메룬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신정부 구성에 앞서 정부조직 일부를 개편함.

- 보건사회부를 분리하여 보건부 외에 사회부를 신설
- 상공 및 영토경영부를 병합하여 경제계획부를 신설
- 아래 6개 부처에 각료급 차관제 도입
  - 영토행정부, 외무부, 농림부, 경제계획부, 문교부, 재무부

3. 아히조 대통령은 1975.6.30. 신정부 구성을 발표함.

- 신설된 수상직에는 Biya Paul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됨.
- 외상직에는 Keutcha Jean 전 농업상이 임명됨.
- 처음으로 여성이 신설된 사회부장관(Mrs Tsanga Delphine) 및 각료급 문교차관(MrsNjeuma Dorothy)으로 임명됨.

75-1102

캐나다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42 / 16 / 1-21

1975년 중 캐나다 정세에 관한 주캐나다대사의 보고내용임.

1. Trudeau 캐나다 수상이 1975.3월 유럽 국가들을 방문함.

- 3.3.~4. 서독 방문
- 3.5.~6. 이탈리아 방문
- 3.7. 바티칸 방문
- 3.10.~11. 네덜란드 방문
- 3.12.~13. 영국 방문

2. Trudeau 수상이 1975.4월 카리브해 국가들을 방문함.

- 4.24.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
- 4.25. 바베이도스 방문
- 4.26.~28. 가이아나 방문
- 4.29.~5월초 자메이카 방문

3. Trudeau 수상이 1975.5월 유럽 국가들을 방문함.

- 5.28. 덴마크 방문
- 5.28.~30.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방문
- 5.31. 룩셈부르크 방문

4. 캐나다는 1975.5.8. 캐나다·미국 간 NORAD(북미항공방위협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미국과 합의함.

5. Turner 캐나다 재무장관은 1975.6.23. 국회에 75/76년도 예산안을 제출함.

- 세출규모는 289억 달러로서 31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음.

코스타리카 정세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2 / 17 / 1-148

1973~75년 중 코스타리카 정세에 관한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Facio 코스타리카 외상이 1974.2.2. 기자회견에서 밝힌 코스타리카 대외정책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외교, 통상관계 수립
- 유엔의 기본원칙 재확인
  - 코스타리카는 군비축소, 식민지 독립, 인권존중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
- 안전보장이사회의 효율적 역할 요구
- 제3세계와의 관계
  - 제3세계 국가간의 동등한 이익을 인정함.

2. 코스타리카는 1974.12.16. 리비아와 수교함으로써 종래의 친이스라엘 정책에서 후퇴하여 8개 아랍국가와 외교관계를 갖게 됨.

- 코스타리카와 수교한 8개국
  - 이집트, 레바논, 튀니지, 시리아, 쿠웨이트, 모로코, 요르단, 리비아

3. Oduber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1975.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외정책 요지임.

- 대쿠바 관계
  - 쿠바와의 통상관계 수립은 신시장 개척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외교관계 수립은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음.
- 대중국(구 중공) 관계
  - 중국과도 통상관계는 수립할 것이나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외교 단절,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
- 대미국 관계
  - 미국의 신무역법안에 대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반대입장을 지지함.

4. Oduber 대통령은 1975.5.1. 의회에 제출한 교서에서 국내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정책의 실천과 대외정책에 있어 약소국간의 결속 강화를 강조함.

75-1104

중국(구 중공)의 대외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O-42 / 18 / 1-41

1975년 중 중국(구 중공)의 대외관계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중국(구 중공) 경제사절단이 네팔을 방문하여 경제기술원조 문제를 협의

- 양측은 진행 중인 경제원조와 장래 협력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중국 측은 407km 길이의 도로건설 원조를 약정함.

2. 중국은 1975.4.29. 아래 2개 성명을 발표함.

- 정부 성명
  - 최근 인도 정부가 시킴 인민과 국왕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을 폐위하고 시킴을 인도의 한 성으로 합병함.
  -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도의 조치를 강력히 견책함.
- 외교부 성명
  - 월남남방(베트콩) 임시혁명정부 및 월남민주공화국(월맹)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파리 협정 준수, 월남에 대한 군사개입 및 간섭 중지, 월남 인민의 기본권리 및 자결권 존중 등을 요구함.
  - 중국 정부 및 인민은 동 성명을 지지함.

3. 중국은 1975.7.12. 상투메프린시페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4. 뉴욕타임즈는 1975.12.18.자 사설에서 서방의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에 관하여 보도함.

- 롤스로이스사는 워싱턴과의 협의를 통해 160백만 달러 상당의 제트엔진 및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함.
- 중국의 제1차적 목표는 대서방 접근을 통하여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는 정치적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나, 이제는 서방의 군수품 획득이 제2차적 목표가 되었음이 분명함.

중국(구 중공)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O-42 / 19 / 1-151

1975년 중 중국(구 중공) 정세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중국은 1975.1.6. 보츠와나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2.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뤄오던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전체회의를 1975.1.13.~17. 북경의 인민대전당에서 개최함.

- 전국 2,885명의 대의원 중 2,864명이 참가한 동 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함으로써 당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 현 모택동·주은래 체제와 온건파의 지도노선을 확인함.
  - 당 중앙위의 제안에 따라 26부 3위원회로 구성된 신국무원의 각료임명을 승인함.
  - 218명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을 선출함.

3. 중국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미국 측의 분석은 아래와 같음.

- 개정된 헌법의 특징
  - 국가주석을 폐지하고 당 주석이 군 통수권을 장악함.
- 주은래의 정치활동 보고
  - 대외관계 부분은 종전과 별 차이가 없으며, 한국 등에 대한 언급은 관례적인 것에 불과함.
- 결론
  - 아직 주은래의 위치가 확고하고, 후계자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개발문제에 치중할 것이라고 분석됨.

4.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영국 언론보도 및 외무성 관계자의 견해는 아래와 같음.

- 언론 보도
  - 헌법상의 파업권 인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모택동 사상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것임.
  - 행정부에 경험이 적은 젊은 지도자들이 임명된 것은 놀라운 사실임.
- 외무성 관계자 견해
  - 동 대회는 과격파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
  - 모택동 사망 시에는 집단지도체제가 확실시 됨.
  - 중국의 대외정책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봄.

75-1106

쿠바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2 / 20 / 1-16

1975년 중 쿠바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Rodriguez 쿠바 부수상이 1975.1.15.~20.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여 프랑스 수상, 외상, 공업상 및 재무상과 회담함.

2. 쿠바는 1975.1.29. 유엔에서 개최된 중남미지역그룹 회의에 1960년 이래 처음으로 참석함.

- 참석 경위
  - 중남미지역그룹 1월 의장인 Mills 주유엔 자메이카대사가 쿠바의 참석을 종용하였고 쿠바는 중남미 국가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함.
- 분석
  - 1974.11월 미주기구 외상회의에서 대쿠바 봉쇄 해제안이 부결되었으나, 대쿠바 관계정상화 분위기가 중남미 국가에 강하게 파급됨.
  - 특히 금번에 쿠바의 중남미지역그룹 회의 참석을 주도한 자메이카와 쿠바의 관계는 1972.12월 수교 이래 긴밀히 진전되고 있음.

3. 쿠바와 콜롬비아는 1975.3.7. 양국 수도에서 국교재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1961년 이래 중단되었던 국교를 재개함.

4. 바베이도스 정부는 1975.12.17. 쿠바가 앙골라에 대한 군대수송을 위해 바베이도스공항을 이용하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함.

사이프러스 사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2/중동
MF번호 O-42 / 21 / 1-247

1974~75년 중 사이프러스 사태 추이 동향임.

1. 마카리오스 사이프러스 대통령은 1974.7.5.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정부가 사이프러스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전복의 목적은 사이프러스에 친그리스 독재정권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발언함.

2. 1974.7.15. 사이프러스 국방경비대에 배속된 반마카리오스 지하무장단체가 주동이 된 쿠데타가 발생함.

3. NATO 긴급이사회는 1974.7.17. 사이프러스에 파견된 그리스 장교단 650명의 철수를 권고함.

4. 터키는 1974.7.20. 사이프러스에 대한 무력개입을 단행하여 키레미와 니코시아 간 도로서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함.

5. 터키는 1974.8.14.~16.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사이프러스 전체면적의 43%에 달하는 북부지역을 강점함.

6. 터키계 사이프러스 지도자들은 1975.2.13. 터키가 강점한 북부지역에 터키계 사이프러스 연방국가(The Federated Turkish Cypriot State of Cyprus Republic) 수립을 선포함.

7. 제30차 유엔총회는 1975.11.20. 사이프러스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
   - 사이프러스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존중
   - 사이프러스 내 일체의 외군 철수
   - 유엔사무총장 주관하에 그리스계 및 터키계 주민 간 협상 추진
   - 동 결의안 실천에 관해 유엔사무총장이 1976.3.31.이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75-1108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외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O-42 / 22 / 1-10

1975년 중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외관계 동향임.

1. 체코와 오스트리아는 1975.1.8. 양국간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함.

2. 바르차크 체코 대외무역상은 1975.4.21. 생필품의 1/3을 서방 측에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동 무역상은 지금까지의 대외무역이 주로 COMECON(경제상호원조회의)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서구국가들과의 장기적인 산업협조를 이룩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함.

3. Strougal 체코 수상이 1975.11.12.~15. 프랑스를 방문하여 공동성명서를 채택함.

- 양국은 헬싱키 안보회의 의정서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함.
- 양국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혼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양국간 협력을 문화·과학 및 기술분야까지 확장시키고, 양국 기자단의 방문을 촉진시키는데 합의함.
- 양국은 명년도 프랑스 수상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도 합의함.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2 / 23 / 1-21

1975년 중 도미니카공화국의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1975.5.16. 실시된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Joaquin Balaguer Ricardo 현 대통령이 당선됨.

2. Joaquin Balaguer Ricardo 대통령은 1975.6.3. 현 국방상인 Ramon Emilio Jimenez를 신임 외상으로 임명함.

3. 쿠바 인민친선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쿠바문화사절단이 1975.10.13. 도미니카에 도착함.

4. 도미니카 정부는 에너지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업용 및 가정용을 제외한 석유가격을 1가론당 17센트씩 인상하기로 1975.10.21. 결정함.
   - 동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택시운전사들은 전국적 파업을 통하여 동 조치의 철회를 요구함.
   - 도미니카 정부는 운전사의 봉급인상, 복지향상,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운전사들의 정상업무 복귀를 성취함.

5. Ramon Emilio Jimenez 외상은 1975.11.24.~28. 대만(구 자유중국)을 공식 방문함.
   - 동 외상은 방문기간 중 대만 총통, 행정원장, 외교부장, 경제부장 등을 예방하고, 11.27. 양국간 문화협정에 서명함.

75-1110

이집트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2 / 24 / 1-437

1975년 중 이집트 정세에 관한 주카이로총영사의 보고내용임.

1.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1975.1.27.~29. 프랑스를 공식 방문, 2차례의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현재의 중동 사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같이함.
     - 1967년 점령영토로부터 철수
     - 팔레스타인인의 국가를 수립할 권리 고려
   - 프랑스의 대이집트 군수물자 공급 및 식량원조 증가 원칙에 합의함.

2. 사다트 대통령은 1975.4.16. 내각 개편을 단행함.
   - 수상, 부수상 3명, 각료 31명 등 총 35명에 달하는 신내각 명단이 발표되었으며, 총 35명 중 15명이 새로 임명됨.

3. 사다트 대통령이 1975.5.12.~18.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및 시리아를 방문함.
   - 쿠웨이트(5.12.~14.)에 대하여는 경제협력 및 원조에 대한 사의를 표명함.
   - 이라크(5.14.~16.)에서는 이라크·이란 국경분쟁을 중재함.
   - 요르단(5.16.~17.)과의 단결을 모색함.
   - 시리아(5.17.~18.)에서는 시리아·이라크 국경분쟁을 조정함.

4. 사다트 대통령은 국내정치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75.7.23.을 기해 아랍사회주의연맹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범국민적인 지지세력을 만드는 작업을 강화함.

5.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의 참모총장이 1975.9.1. 시나이반도에서의 제2차 철군을 규정한 협정문과 부속서류에 각각 가서명하고, 9.4. 양국의 군사위원회 대표들이 제네바에서 이에 정식서명함.

6. 사다트 대통령은 1975.10.6. 전승기념일을 기하여 대대적인 시위행진 및 세미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아랍사회주의연맹 내부에 한하여 자유의사의 표명을 허락하는 소위 정치적 민주화조치를 취함.

7. 사다트 대통령은 1975.10.25.~11.9. 프랑스, 미국, 영국을 방문하고 서구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

적도기니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MF번호	O-42 / 25 / 1-12

1974~75년 중 적도기니의 정세 동향임.

1. 미국 워싱턴발 1974.3.1.자 외신은 "적도기니 해방전선"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함.

- Macias정권은 체포, 처형, 린치 및 암살 등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음.
- 적도기니 해방전선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였음.

2. Macias 적도기니 대통령은 자국 언론에 보도된 1974년말 메시지에서 한국문제에 관해 "통일의 불가결한 조건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외국군 완전철수"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지지함.

3. Macias 대통령은 외상 등 다수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1975.1.20.~24. 중앙아프리카를 공식 방문함.

- 양측은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아프리카지역 내 미국 독립 식민지역의 독립 촉진
  -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의 적도기니 답방 합의
  - 양국간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 합의

4. 주카메룬 교황청대사는 1975.4.4. 주카메룬대사(적도기니 겸임)에게 적도기니 최근 정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최근 적도기니 정치정세 및 경제사정은 과거보다 더욱 악화됨.
- Macias 대통령의 대서방 공격이 더욱 치열해진 것 같음.
- 중국(구 중공) 및 쿠바로부터 온 많은 노동자 및 기술자들이 보임.

75-1112

에티오피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42 / 26 / 1-65

1975년 중 에티오피아 정세에 관한 주에티오피아대사의 보고내용임.

1. Kifle Wodajo 에티오피아 외상이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우간다 방문을 마치고 1975.3.19. 귀국함.

2. Kifle Wodajo 외상이 서부아프리카 5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방문을 마치고 1975.5.4. 귀국함.

3. 에티오피아는 1975.6.5.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함.
   - 북한은 에티오피아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고 주수단 북한대사가 에티오피아를 겸임함.

4. 에티오피아 정부는 1975.7.18.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고, 튀니지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결정함.

5. 에티오피아 정부는 1975.7.24. 성명서를 통하여 수도 및 주요 지방도시의 부동산 사유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새로운 부동산 소유제도를 조만간 선포할 것이라고 발표함.

6. 에티오피아 정부는 1975.9.13. 군사혁명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 기념식에 이어 축하행진이 5시간 계속되었으며, 광장에 모인 인원은 약 50만 명에 달함.

7. 에티오피아 정부는 학생들의 반정부 움직임 등을 이유로 1975.9.30.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에티오피아 Eritrea지역 분리독립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42 / 27 / 1-70

1975.3월 에티오피아 Eritrea 문제를 둘러싼 에티오피아 정세에 관한 주에티오피아대사의 보고내용임.

1. 에티오피아의 북부 Eritrea에서는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게릴라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며 그동안 피해도 크다고 하나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알 수 없음.

2. 에티오피아 정부군은 현재 3개 도시(아스마라, 맛싸와, 앗싸부)에만 주둔하고 있음.

3. Eritrea 게릴라는 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을 공격하여 패배시키고 독립을 선언할 수 있으나 그러할 경우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거주하는 Eritrea인 6만 명에 대한 보복이 클 것을 우려하여 주저하고 있다는 루머가 수도에 유포되고 있음.

4. 군사정부는 에티오피아 수도에 거주하는 Eritrea인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함.

5. 당지에서는 Eritrea 독립이 시간문제라는 설이 유력함.

75-1114

가봉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2 / 28 / 1-23

1975년 중 가봉 정세에 관한 주가봉대사의 보고내용임.

1. 가봉 정부는 1975.1.11. PRG(남월남 임시혁명정부)를 승인하고 PRG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2. Bongo 가봉 대통령은 1975.2월 프랑스를 비공식 방문함.

- 2.4. 프랑스 대통령 및 수상 면담.
- 2.5. 프랑스 국방상, 재경상 등 고위인사 접촉

3. Bongo 대통령은 1975.4.13. 현 헌법상의 부통령직을 폐지하고 수상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함.

- 동 개헌안이 국회에서 채택된 후 4.16. 수상이 임명되고 4.17. 전면적인 개각이 단행됨.

4. Bongo 대통령은 중국(구 중공) 방문을 위해 1975.6.27. 북경에 도착함.

- 중국 인민일보는 아래 요지의 환영 사설을 게재함.
  - 아프리카인들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패권주의 투쟁을 찬양함.
  - 중국은 가봉 및 전아프리카인들과 함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패권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임.

5. Bongo 대통령은 1975.10.5. 개각을 단행하여 자신이 5성(국방, 외교, 공보, 기획 및 국토개발성)의 장관을 겸임함.

감비아 대외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43 / 1 / 1-15

1975년 중 감비아의 대외관계에 관한 주세네갈대사(감비아 겸임)의 보고내용임.

1. Jawara 감비아 대통령은 1975.1.6.~10. 말리를 방문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아시아 및 중남미 국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비난함.
   - 자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월남, 캄보디아(구 크메르), 라오스 및 Korea의 용감한 인민들을 지원함.

2. Jawara 대통령은 1975.3.16. 세네갈을 방문하여 세네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아프리카·아랍연합체 구성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함.

3. Jawara 대통령은 1975.3.17.~25. 소련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간 어업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양국간 경제적, 상업적 및 문화적 교류를 증진함.
   -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입장의 일치와 접근에 만족함.

4. Jawara 대통령은 중국(구 중공) 방문을 위해 1975.6.11. 북경에 도착하여 Li Hsien Nien 중국 부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함.
   - Jawara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중국의 외교 5원칙을 찬양하고 중국의 감비아에 대한 무이자 차관제공에 감사의 뜻을 표명함.

75-1116

독일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43 / 2 / 1-54

1974년 중 독일 연차 정세보고서에 관한 주독일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목차

- 독일의 정치권력 구조 변동
- 독일의 국내정치정세 및 전망
- 독일의 대외정책 현황
- 동서독관계
  - 독일 국민에 대한 대표권 문제, 서백림 문제, 서백림 및 서독 시민의 동독 방문
- 에너지 대책
- 경제
  - 일반 경제동향
  - 부문별 동향
  - 동서독 교역
  - 한·독일 교역
  - 독일·북한 교역

2. 주요 내용

- 서독의 정치권력 구조변동 및 정치정세
  - 슈미트, 겐셔내각 발족, 연방대통령 교체
  - 브란트정권의 조기 사임 및 각주 선거에서의 여당의 지지도 감소
- 대외정책
  - 나토에 근거한 안전보장, 구주공동체 발전을 통한 경제 및 정치적 세력확대
  - 대동구 긴장완화정책을 통한 전쟁위험 감소
- 동서독 관계
  - 동방정책에 기초한 대동독 정책에 따라 기본조약 체결, 유엔 동시가입, 양독간 상주대표부 개설, 보건 등 각종 협정 체결
- 경제
  - 경제안정정책으로 과열경기의 진정, 경기침체와 실업증대 초래
  - 수출주도의 경제 추진

가나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3 / 3 / 1-9

1975년 중 가나의 정세 동향임.

1. 토고와 가나 간 영토분쟁

- 가나 영토로 귀속되어 있는 Togoland의 추장급 대표단이 동 지역의 토고국과의 통합 및 가나 정부에 억류된 토고 병합주의자의 석방을 요청하면서 가나와 토고 간의 영토분쟁이 재연될 가능성 제기
- Togoland는 영국 신탁지역으로 토고와 가나의 국경지대에 위치하며 원주민은 토고에 가까움.

2. 가나 정부기구 개편

- 개편 내용
  - 1975.10.9. 대폭적인 정부기구의 개편을 단행
  - 현 국가구제위원회의 상위기관으로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최고군사위원회를 신설, 현 국가원수가 동 군사위원회의 의장을 겸직
- 기구개편 경위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국내경제 및 외환사정이 악화, 국민경제생활의 파탄 초래
- 신정부의 성격
  - 혁명 당시의 주체세력이 퇴진하고 신정부는 경제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
  - 국가안보 등 중대 정책결정은 최고군사회의의 7인 위원이 장악
- 대외정책 전망
  - 좌경향적 전임 외무장관의 퇴진으로 종전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 기대
  - 당분간 국내 경제적 및 정치적 안정 추구 전망

75-1118

과테말라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O-43 / 4 / 1-62

1975년 중 과테말라의 정세 동향임.

1. 과테말라 정부 개각 및 국회 의장단 선임

- 개각
  - 1975.1월 공공사업성장관 및 차관 교체
  - 1975.7월 국방장관 및 참모총장 경질
- 1975~76년 국회 의장단 선임
  - Lic Ruiz 의장 및 2인의 부의장이 1975.6.15. 취임

2. 과테말라 대통령 국회시정 연설

- 연설 요지
  -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의 전개
  - 기본적인 개혁정책과 복지 등 변혁 정책의 추진
  - 기본 양곡의 충당 및 곡가의 저가배급을 위한 비상계획 추진

3. 국회의장단 선거결과 및 정치동향

- 1975.6.15. 임기 1년의 국회의장단 선거 실시
- 선거 결과 정치동향
  - 현존 3개 연립여당인 PID, MLN, CAO의 독점
  - 국민해방단 및 전 대통령 아란당이 각기 1석 더 확보

4. 멕시코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

- 기간: 1975.11.13.~15.
- 과테말라는 Echeverria 멕시코 대통령이 Belice 분쟁에 있어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유엔에서의 영국결의안에 대비, 절충안을 내는 등 우호적 조치를 환영
- 이후 멕시코 대통령의 일부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경한 결의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

가이아나 정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3 / 5 / 1-62

1974~76년 중 가이아나의 정세 동향임.

1. 가이아나와 시에라리온 간 외교관계 수립

- 1974.10.25. 조지타운에서 양국 외교장관 간 각서교환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2. 가이아나 보크사이트 광업 국유화 계획

- 미국계 보크사이트 광업회사를 1974.12월까지 국유화할 계획이었으나 미국계 회사의 반발로 난관 봉착
- 1974년말 합의에 도달, 1975.1.1. 국유화 조치가 발효되고 14.5백만 달러 변상

3. 가이아나와 중국(구 중공) 간 관계

- 양국은 연 1,000만 개의 벽돌생산 공장 건설 합의
- 1974.10.4. 가이아나 건국기념 박람회 참가 후 중국은 박람회 건물을 기증

4. 가이아나 수상의 쿠바 방문

- 기간: 1975.4.7.~11
- 공동성명서 발표
  -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투쟁에서의 공동 보조
  - 한반도에서의 외세간섭 없는 평화통일 지지 등

5. 수상 연설

- Burnham 수상은 TV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 생활방식의 고수 및 승리 결의
-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투쟁의 지속

6. 외국 방문 교류협력

- 1975.5.13.부터 4일간 보츠와나 대통령 방문, 농업발전상 시찰
- 1975.5.11.부터 2일간 나이지리아 대통령 방문
- 1975.7.8.부터 3일간 멕시코 대통령 방문

75-1120

교황청(구 바티칸)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남구담당관
MF번호	O-43 / 6 / 1-19

1974~75년 중 교황청(구 바티칸)의 정세 동향임.

1. 교황청 성명 등 발표

- 1974.11.25. 산아제한성명에서 산모의 건강 및 비정상 신생아 태생 가능 등 여하한 명분의 유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발표
- 1974.11.30. 교황 바울 6세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 대한 국제평화상 시상식에서 유네스코에서의 이스라엘 참석금지에 경악 표명, 유엔 문화기구의 범세계적, 평화적 성격 회복 촉구
- 1975.6.12. 교황청은 6.15. 이탈리아 지방의회선거에서 공산당의 집권방지를 위해 집권당인 기민당에 대한 투표를 호소
- 1975.12.15.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 간의 양립 불가능성 발표

2. 교황 동정

- 1975.9.10. 아민 우간다 대통령을 접견
- 1975.10.14. 레바논 사태의 원조를 협의하기 위해 보좌관을 파견
- 1975.11.9. 야간 미사에서 로마에서는 공산주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
- 1975.12.22. 이스라엘 국민에게 팔레스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여망의 인정을 호소

3. 교황청·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관계

- 교황청 정무차관은 체코 외무장관 초청으로 1975.3.25.~26.간 체코를 방문
- 1950년 체코와 교황청은 단교이래 공식 관계는 부재하며 현 교황의 등극으로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추구

인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3 / 7 / 1-249

1975년 중 인도의 정세 동향임.

1. 주인도대사관의 1975년도 연차 인도 정세보고 주요내용

- 인도 국내정세 및 전망
  - 인·파 전쟁으로 재정악화, 외환 감소, 에너지 및 식량난 경제적 어려움 지속
- 대외정책
  - 인도대륙내 및 비동맹 외교에서의 주도권 장악
  - 중국(구 중공) 세력의 인도대륙 내 침투 봉쇄
- 대한국 태도
  - 등거리 정책 추구, 분쟁의 당사자 해결, 경제적 실리위주 등

2. 미국·인도 공동위원회 개최

- 제2차 회의가 1975.10.6.~7.간 워싱턴에서 개최
- 양국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참석
- 공동성명 발표
  - 경제공동위 창설
  - 미국의 대인도 민간투자 및 제3국에서의 미국·인도 합작투자 장려 등

3. 인도 개각

- 1975.12.20. 간디 수상은 개각을 단행, 국방장관 등 교체

4. 구자라트 주의회 선거

- 1975.6.8 및 6.11. 양일간 실시
- 총의석 182석 중 Janata Front 86석, Congress 75석 등 분포

5. 주요인사 방문 동정

- 아메드 인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5.5.), 헝가리, 유고 방문(9.24.)
- 네팔 국왕 인도 방문(9.30.)

75-1122

동티모르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구주2
MF번호	O-43 / 8 / 1-221

1975년 중 동티모르의 정세 동향임.

1. 포르투갈령 티모르 쿠데타 발생

- 개요
  - 1975.8.11. UDT 주도의 쿠데타 발생, 수도 공항의 폐쇄 및 포르투갈 총독의 추방
- 주요관련국 입장
  - 포르투갈: 초기에는 독립 수락을 거부하다가 사태 악화되면서 국제중재 호소
  - 인도네시아: 불개입정책이나 지역안전 위태 시에는 필요조치 강구 시사, 티모르의 인도네시아와의 병합 희망시 수락 용의 표명
- 사태해결 전망
  - 인도네시아 개입에 의한 내란 평정
  - 친인도네시아 정권수립에 의한 사태 해결

2.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 간 회담 개최

- 양국간 외무장관회담이 1975.11.1.~2.간 로마에서 개최
- 공동발표문 주요 내용
  - 티모르의 무력투쟁 종식
  - 지역주민의 의사 및 유엔에서 결의된 비식민지화 원칙을 토대로 협의

3. 좌익 독립해방전선(Fretilin) 독립선언

- 좌익 Fretilin은 1975.11.28. 독립선언 및 티모르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

4. 인도네시아군의 동부티모르 점령

- 1975.12.7. 인도네시아 군대 약 1,000명 및 함정을 동원하여 티모르 점령

5. 유엔의 개입

- 1975.12.12. 유엔총회는 인도네시아군의 티모르 철수를 결의
- 1975.12.22. 유엔안보리는 동티모르 결의안 채택
  - 인도네시아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비난

이란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3 / 9 / 1-20

1975년 중 이란의 정세 동향임.

1. 이란 국왕의 이집트 방문(1975.1.8.~12.)

- 주요 일정
  - 양국 정상회담, 고적 및 박물관 견학, 룩소르 및 아스완 등 여행
- 공동성명 요지
  - 아랍지지를 전제한 양국간 협력 모색
  -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가중을 위해 아랍과 이란 간의 협력 문제 등

2. 이란 총선 개최

- 1975.6.20. 총선 실시, 268명 하원의원 및 30명 상원의원 선출

3. 주이란대사관의 이란 정세 종합보고

- 이란 국왕의 1975.9.14. 기자회견 요지
  - 금년도 국방비 40억 달러 책정, 공군력 증강 치중
  - 핵무기 보유 가능성 시사
  - 페르시아만 방어에 최선 주력
- 평가
  - 자위에 관한 이란지도층의 소신
  - 공산세력 확대 불원
  - 페르시아만 연안 아랍국과의 유대강화

4. 신내각 구성

- 1975.9.21. 제4대 수상으로 호베이다 수상이 재임명
- 신임 수상 중심의 신내각 출범 예정

75-1124

이스라엘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O-43 / 10 / 1-19

1975년 중 이스라엘의 정세 동향임.

1. 이스라엘 대통령의 미국 방문

- Katzir 이스라엘 대통령이 1975.3.3. 포드 미국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

2.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네덜란드 및 프랑스 방문

- Allon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1975.3월 네덜란드를 방문, 양국 외무장관회담 개최 예정
- 동 외무장관은 1975.4.28.~30.간 프랑스를 방문

3.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이집트 정부 앞 메시지

-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미 국무장관의 중개로 1975.6.2. 이집트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
- 메시지 요지
  - 항해자유의 원칙에 입각, 수에즈 운하의 개통 관련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운하 30km 전방에 배치된 탱크의 절반 철수
  - 운하 32km까지 대포의 불배치
  - 유엔 설정선 40km내 미사일 불배치

일본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43 / 11 / 1-101

1975년 중 일본의 정세 동향임.

1. 일본의 주요 정치현황 자료(1975.4.25.)

- 정치관계: 국회의원 정당별 분포, 자민당내 원내 파벌, 1975.4.13. 지방선거 결과
- 한·일 간 주요 정치안: 정기 각료회의, 김대중 사건, 8.15 사건 처리 등

2. 공선법 등 법률제정 경과

- 공선법 및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이 1975.6.4. 중의원 통과되고 6.5. 본회의 거쳐 참의원에 송부
- 독금법 개정안은 야당과의 절충을 거쳐 6.24. 중의원 통과후 참의원에 송부

3.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일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75.8.7. 미키 일본 수상과 회담,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아시아 정세 관련 논의
-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8.7. 개최

4. 주일본대사관의 일본 정세보고서 요지

- 일본정치 정세
  - 제75회 통상국회 폐막, 제76회 임시국회 소집, 정당별 국회의석 분포 현황
- 일본의 방위정책
- 한·일본 간 주요 문제
  - 미야자와 일본 외상 방한, 제8차 한일각료회담, 한일의원연맹대표단 방한
  - 대륙붕협정 국회심의, 니가타총영사관 설치 문제,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 일본·북한 교류
  - 자민당, 사회당 의원 평양방문, 쇼세이마루 총격사건
- 미국과의 관계
  - 미키 수상 방미, 천황 방미 일정 결정 등

75-1126

자메이카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3 / 12 / 1-88

1975년 중 자메이카의 정세 동향임.

1. 자메이카 수상 베네수엘라 방문(1975.4.17.~19.)

- 멘리 수상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
  - 베네수엘라의 자마이카산 보크사이트 연 20만 톤씩 10년간 수입 결정
- 협정 체결
  - 문화협정, 원유협정, 영양협정
- 공동성명 요지
  -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규탄

2. 영연방국 정상회의 개최(1975.4.29.~5.7., 자메이카 킹스턴)

- 공동성명 요지
  - 개발국과 개도국 간의 빈부격차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결을 위한 신경제 질서확립 촉구
-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1975.4.26.~5.1.간 자메이카 방문

3. 멘리 수상의 쿠바 방문

- 동 수상은 1975.7.8.~13.간 쿠바를 방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경제, 기술, 문화 등 검토회담 개최
- 경제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공동위설치 협정 및 문화교육협정을 서명
- 공동성명서에서 사회주의 국민들 간의 연대와 단합의 중요성 강조

4. 공화제 전환 시사

- 멘리 수상은 1975.12.1. BBC와의 회견에서 사견을 전제로 공화제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여 파문을 야기

요르단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3 / 13 / 1-21

1974~75년 중 요르단의 정세 동향임.

1. 후세인 요르단 국왕 시리아 방문

- 후세인 국왕은 1975.4.3. 시리아를 방문,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 아랍 정세 등 논의

2. 미국 무기 구입

- 1975.9.15. 당지 일간지는 워싱턴발 통신을 인용, 후세인 국왕은 미국에 구입을 신청한 14기의 호크미사일을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련으로부터 구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함.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요르단에 매각할 무기가 이스라엘 침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방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새로운 보장책을 미국 의회에 제시
- 주요르단 미국대사가 9.18. 조건부 무기판매를 요르단 수상 겸 외무장관에게 제시하였으나 요르단 측은 거부하면서 대미 구매노력을 포기하고 다른 공급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

3. 요르단과 시리아 간 합동최고위원회 개최

- 1975.10.25.부터 다마스커스에서 제2차 합동최고위 개최
- 양국 수상을 단장으로 동 회의에서 궁극적 통합 추구를 위한 제반분야의 협력 모색
- 국방, 통신, 전력 및 경제계획 등 8개 분야의 합의 및 공동성명서 발표

4. 시리아 대통령 요르단 방문

- 아사드 대통령은 1975.7월 요르단 방문 후 11.14. 재차 방문 예정
- 합동최고위 개최 등 양국간 교류 증대, "요르단-시리아 합동지도체제"의 운영을 위한 협의 목적으로 관측

75-1128

케냐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43 / 14 / 1-50

1975년 중 케냐의 정세 동향임.

1. 케냐 경제 및 무역동향(1975.1월)

- 경제동향: 농업, 제조업 및 건축, 관광, 소비자가격, 고용 등
- 무역동향: 수입, 수출동향

2. 케냐 외무장관 기자회견

- 케냐 외무장관은 1975.2.6. 기자회견을 실시
- 회견 요지
  - 주중국(구 중공)대사관 재개 및 캐나다, 일본 등에 공관 개설 검토
  - 남아프리카 흑인해방운동 관련 케냐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등 계기에 해방전사 지원 입장을 천명하고 단합을 위한 역할수행
  - 케냐와 탄자니아 간 이념의 차이는 있으나 케냐는 여타의 아프리카국가보다 자본주의의 적이 아님.

3. 방한 국회의원 피살사건

- 1974.5월 방한한 국회의원이 1975.3.2. 이래 행방불명
- 3.12. 일간지는 동 의원의 피살 보도
- 의원의 암살사건 이후 케냐는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초래
- 6.4. 국회는 조사보고서 발표

4. 주케냐대사관의 케냐 정치·경제 정세보고

- 정치경제 정세
  - 반정부 인사의 암살로 일시 불안을 야기하였으나 정치적 안정을 회복
  - 고령인 케냐타 케냐 대통령의 후계자 선출문제로 알력설 제기
  - 석유파동으로 경제의 침체 및 인플레로 인한 국민생활 압력 가중
- 대외정책
  - 비동맹 중립노선을 지지하면서도 친서방적 중립입장 견지

쿠웨이트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3 / 15 / 1-30

1975년 중 쿠웨이트의 정세 동향임.

1. 쿠웨이트 개각

- 1975.2.9. 개각 발표
- 배경
  - 헌법 제37조에 의거, 국회 재구성과 더불어 현 각료 사표제출
- 개각 특징
  - 신진 세대, 교육 및 경험자 기용
  - 부수상제 신설 등 총 16개 부서

2. 국회의장단 선출

- 1975.2.11. 제4대 국회의장단 선출
- 의장단 내역
  - Khaled Al Ghuneim 3대 의장 재선출

3. 쿠웨이트 대아랍 원조제공

- 국회는 1975.4.8. 아랍국가에 대한 원조액 4.15억 달러를 추인
- 동 원조는 라바트 아랍정상회의에서 결정, 이미 집행되었으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북예멘, 남예멘, 모리타니아 및 소말리아에 제공

4. 월남 신정부 승인

- 1975.5.5.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쿠웨이트 정부는 월남 신정부 승인을 결정

5. 걸프국가 통합추진

- 1975.5.19. 쿠웨이트 수상의 바레인 방문 시 공동성명에서 걸프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통합 필요성 발표

6. 쿠웨이트와 이라크 간 국경분쟁

- 쿠웨이트 부수상 겸 공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와의 국경분쟁 관련 언급
-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비상사태 선언 가능성을 부인하고 평화적인 분쟁의 해결을 희망한다고 언급

75-1130

레바논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3 / 16 / 1-78

1975년 중 레바논의 정세 동향임.

1. 레바논 무장충돌 사태 경과

- 1975.4.13.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팔랑기스트당의 교회 준공식장을 공격
- 팔랑기스트 무장대가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탑승버스를 습격, 27명의 승객 사살
- 5.23. 팔랑기스트당과 팔레스타인 게릴라 간 베이루트 교외에서 시가전 전개, 25명 사망, 200여명 부상 등 발생

2. 레바논 정부 붕괴 및 군사내각 구성

- 휴전에 불만인 우파 각료의 사임에 이어 1975.5.15. 솔 수상의 사임으로 내각이 붕괴하는 등 후유증 발생
- 사태 수습을 위한 최후의 방책으로 Franjieh 레바논 대통령은 5.23. 8명의 군사내각을 임명. 기독교 우익정당은 즉각 반대를 표시

3. 신정부 구성

- 주베이루트 공사는 Karami 전 수상이 1975.5.28. 정식 수상에 지명되고 Karami 수상이 조각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고함.
- 3주 경과 후에도 팔랑기스트의 입각에 반대하는 좌파의 주장, 군 지도층에 무슬림의 진출등을 조각의 전제로 내세우는 동 수상의 입장 등으로 난항을 겪음.

4. 레바논 사태 악화

- PLO 내의 주류파와 강경파 간의 대립이 1975.6월 지속, 미국 대령의 납치를 계기로 표면화
- 베이루트 동부에서 각 파벌 및 팔레스타인 게릴라 간의 무장충돌로 유혈 사태가 지속
- 적대세력 간의 충돌로 교통마비와 불안이 야기되고 긴장상태가 지속
- 기독교와 무슬림 간 전쟁으로 비화, 9월부터는 중화기를 사용하는 본격적인 내란상태로 돌입
- 11.30. 기독교와 무슬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수상은 양파간의 화해원칙을 발표

5. 레바논 정부 비상기구 설치

- 수상은 1975.9.24. 유혈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20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화위원회를 설치

라이베리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3 / 17 / 1-45

1975년 중 라이베리아의 정세 동향임.

1. 라이베리아와 포르투갈 간 외교관계 수립

- 라이베리아 외상은 1975.2.3. 포르투갈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2. Vorster 남아프리카 수상의 비밀 방문설

- 1975.2.11.~12.간 Vorster 수상이 라이베리아를 비밀리에 방문, 톨버트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회담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3. 톨버트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 동 대통령은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조약에 서명하기 위해 1975.5.26. 나이지리아를 방문
- 동 경제협력기구에는 최소 15개국이 가입하여 서부아프리카국가간 자유무역을 증진

4. Dennis 라이베리아 외상의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참석

- Dennis 외상은 1975.4.7.~10.간 다레스살렘에서 개최된 OAU 각료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
- 동 회의에서는 식민주의적 인종차별, 짐바브웨와 나미비아 통치문제, 인종격리정책 등 논의

5.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

- 당 집행위원회는 1975.5.8. 대통령선거(10월 예정) 후보자로 현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지명하였다고 발표

75-1132

라오스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3 / 18 / 1-109

1975~76년 중 라오스의 정세 동향임.

1. 라오스 후에이 사이 사태 평화적 수습

- 라오스 서북방지역에서 1974.12.24. 발생한 수비부대의 반란 사태는 내무장관, 공보장관의 현지 방문중재로 12.28. 수습

2. 라오스 정부지도자의 1975년 신년사

- 국왕
  - 라오스는 평화의 길로 들어섬.
  - 중립주의 의무의 준수
- 수상
  - 평화협정 및 부속의정서의 실천으로 총선 준비

3. 라오스 사태 발생 및 경과

- 1975.4.17. 월맹 및 파레트라오군(라오스 공산주의 게릴라군)의 정부군 진지 공격
- 1975.5.11. 좌파 학생, 노동자의 반미, 반연정 구호하에 우파 각료의 사임 및 군지도자 사임 요구 데모
- 1975.5.12. 좌파의 군지휘권 장악 6개항 발표
- 1975.6.20. 파레트라오군의 미국대사관 포위 및 태국과 라오스 간 국경폐쇄
- 1975.6.28. 학생데모대의 미국대사관 부속건물 3개 점거
- 파레트라오군의 90% 이상 라오스 영토점령

4. 라오스 신정부 구성

- 라오스 국민의회는 1975.12.4. 라오스 인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파레트라오군 지도자를 임명
- 국민의회는 수상, 부수상, 재무장관, 외무장관 등 임명
- 라오스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왕정제를 폐지

말리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O-43 / 19 / 1-10

1974~75년 중 말리의 정세 동향임.

1. 말리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방문

-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해 1974.6.18. 북경 향발

2. 말리 외무장관의 세네갈 방문

- 말리 외무장관은 1975.5.1.~9.간 세네갈을 공식 방문
- 5.9. 양국간 공동성명을 발표

75-1134

모로코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마그레브담당관
MF번호	O-43 / 20 / 1-31

1974~75년 중 모로코의 정세 동향임.

1. 모로코 1974년도 제정법 채택

- 1973.12.29. 국왕 주재 각의에서 모로코의 1974년도 제정법이 채택
- 동 제정법에는 1974년도 정부예산이 포함
  - 세출예산: 22억 달러, 세입예산: 20억 달러

2. 생고르 세네갈 대통령의 모로코 방문

- 생고르 대통령은 1974.2.6.~7.간 모로코를 방문, 모로코 국왕과 회담 개최
- 동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네갈 학생의 모로코 직업학교 파견 등 양국간 경제협력증진, 아랍 및 아프리카 간 협력에 대한 모로코 국왕의 이니셔티브 등을 언급

3. 개각

- 모로코 정부는 1974.4.24. 개각을 단행, 각료 19명 중 외상을 포함 11명을 경질
- 수상은 유임되고 Benhima 현 외상은 공보상으로 전임되고 Ahmed Laraki (수상 및 외무장관 역임)가 새로 외상에 임명

4. 아히조 카메룬 대통령의 모로코 방문

- 아히조 대통령은 1974.6.22.~26. 모로코를 방문
- 6.26. 발표된 공동성명에 양국간 공동관심사 및 국제문제 협의, 아프리카 식민지 해방 노력 지속, 비동맹 정책 재확인, 스페인령 사하라 해방을 위한 모로코의 노력에 대한 공감 등 포함

5.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모로코 방문

- 키신저 장관은 1974.10.15. 모로코 방문하여 모로코 국왕과 회담을 개최

멕시코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3 / 21 / 1-96

1975~76년 중 멕시코의 정세 동향임.

1. 북월맹, 월남 공산정부, 알바니아 및 잠비아 등과 외교관계 수립

- 1975.5.19. 북월맹, 5.26. 월남 공산정권과 외교관계 수립
- 10.15. 잠비아와 외교관계 수립
- 10.16. 알바니아와 외교관계 수립

2. 에체베리아 멕시코 대통령의 이란 등 14개국 순방

- 에체베리아 대통령은 1975.7.8.부터 약 40일간 외무장관 등 50명의 수행원을 대동, 가이아나, 세네갈, 알제리, 탄자니아, 이란, 인도, 스리랑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스라엘, 트리니다드토바고, 쿠바 등 14개국 방문
- 방문의 목적은 멕시코상품의 시장 개척과 중동 산유국 석유자원의 제3세계 산업 기여방안 협의
- 또, 동 대통령은 1975.11.13.~15.간 과테말라를 방문, 군축, 경제수역, 경제기술분야 등 상호 협력 합의

3. 멕시코 외무장관 경질

- 1975.12.29. 신임 외무장관에 주유엔대사를 임명

4. 주요인사 멕시코 방문

-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1975.2.24.~29.)
  -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
- 베네수엘라 대통령(1975.3.17.~22.)
  - 라틴아메리카 경제기구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라틴아메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협의
- 탄자니아 대통령(1975.4.23.~28.)
  - 통상기술협력증진 등 협의
- 세네갈 대통령(1975.5.17.~21.)
  - 공동관심사 협의
- 루마니아 대통령(1975.6.7.~11.)
  - 경제, 과학, 산업 등 11개의 협정 체결
- 스웨덴 수상(1975.6.20.~24.)
  - 무역, 기술 등 협력 협의
- 덴마크 수상(1975.11.7.~11.)
  - 경제통상 및 문화분야의 협력증진 협의

75-1136

잠비크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아프리카
MF번호	O-43 / 22 / 1-12

1975년 중 모잠비크의 정세 동향임.

1. 모잠비크 대통령 당선자 국유화 언급

- 1975.6.20.자 Daily Nation은 모잠비크 대통령 당선자가 전 국토의 국유화를 언급하였다고 보도함.

2. 모잠비크 개각(1975.6.30. 발표)

- 외무, 법무, 국방장관 등을 임명

3. 불발 쿠데타 발생

- 모잠비크 방송은 1975.12.17. 일부 경찰병력이 모잠비크 수도에서 무력폭동을 야기,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진압되었다고 12.18. 보도함.

나이지리아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3 / 23 / 1-65

1974~75년 중 나이지리아의 정세 동향임.

1. 나이지리아 쿠데타 발생

- 경위
  - 대통령의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참석기간 중 1975.7.29. 쿠데타가 발생
  - 주동자는 모하메드 준장이며 수도경비사령관의 협력을 받음.
- 신군사정부의 성격
  - 쿠데타의 동기가 부정부패 제거와 경제난국 타개에 있으므로 신정부는 대외정책보다는 대내책에 주력할 전망
  - 대외적으로 친서방 중립노선 표방 예상

2. 신내각 발표

- 혁명정부는 1975.8.6. 25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신내각을 발표
- Garba 대령이 신임 외무장관에 임명

3. 비아프라 명칭 변경

- 나이지리아 정부는 “Bight of Biafra"를 ”Bight of Bonny"로 개명한다고 통보

75-1138

네팔 정세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3 / 24 / 1-32

1973~75년 중 네팔의 정세 동향임.

1. 네팔의 외교관계 수립

- 1975.3.25.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
- 1975.5.6. 월남의 임시혁명정부 승인을 발표
- 1975.5.15. 북월맹과 외교관계 수립

2. 신내각 발표

- 1975.4.13.자에 31명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4.14. 신내각을 구성, 발표

3. 네팔 신정부의 대외관계

- Giri 신임 네팔 수상은 1975.12.1. 기자회견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대인도 친선관계 유지, 대중국(구 중공) 친선관계 발전, 네팔의 평화지역 설정 노력 등을 언급
- 동 수상의 과거 친중국 성향으로 대중국 관계개선 추진 시에는 미국에 대해 영향을 미칠 소지

4. 개정헌법 공표

- 네팔 국왕은 1975.12.16. 헌법 기념일에 앞서 12.12. 제2차 개정헌법을 공표
- 헌법개정을 통한 국왕 친정체제의 강화
- 개정헌법 요지
  - 선거에 의한 국회 정족수를 종전의 90석에서 112석으로 증가
  - 국왕 임명 국회 정족수는 선거에 의한 정족수의 20%, 즉 23석으로 함.
  -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니제르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3 / 25 / 1-21

1975년 중 니제르의 정세 동향임.

1.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의 개최 예정

- 쿤체 니제르 의장은 말리,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방문 후 귀로에 당초 1975.1.22. 예정된 CEAO(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정상회의)가 4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언급

2. 벨기에와 니제르 간 정기각료회의 개최

- 벨기에 외무장관이 인솔한 사절단은 1975.2.19. 니제르에서 정기각료회의를 통한 니제르와의 협력방안을 협의

3. 신월맹 정부 승인

- 니제르는 1975.5.3. 신월맹 정부를 승인하고 월남 및 캄보디아에서의 신정권 수립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

4. 쿤체 니제르 의장의 가나 방문

- 쿤체 의장은 1975.5.10.~12. 가나를 방문,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

5. 개각 발표

- 1975.6.3. 개각 발표

6. 쿠데타 연루자 체포

- 쿤체 의장은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참석 중 쿠데타 보도로 조기 귀국, 1975.8.2. 쿠데타 음모에 연루된 부의장 등 3인을 체포

75-1140

파키스탄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3 / 26 / 1-36

1975~76년 중 파키스탄의 정세 동향임.

1. 파키스탄 국회법 및 정당법 개정

- 하원은 1975.2.10. 국회의원 구속 면책조항 관련 현행 국회법 및 정당법의 일부 개정안을 채택, 1975.2.8.자로 소급 시행하는 개정법안을 통과

2. 부토 파키스탄 수상의 국내문제 기자회견

- 부토 수상은 1975.5.16. 기자회견에서 법과 공공질서의 확립, 범죄와 부패의 근절, 인플레 억제 중점정책을 언급

3. 부토 수상의 프랑스 및 루마니아 방문

- 동 수상은 산업장관, 외무담당 국무상 등 17명의 공식 수행원 등 70명의 수행원을 대동, 프랑스(1975.10.20.~22.), 루마니아(1975.10.23.~25.)를 방문
- 프랑스에서는 개발계획에 필요한 외자 획득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프랑스의 기술지원을 모색
- 루마니아에서는 1973년 합동위원회 구성 이후 제2차 합동각료협력위원회 개최, 기술협력 등 추진

4. 제4차 개헌안 의회 통과

- 하원은 1975.2월 제3차 개헌안 통과에 이어 11.14. 퇴장당한 야당의 불참 속에 제4차 개헌안을 통과
- 동 개정안은 사법부의 권한 축소, 기본권 조항, 소수민족대표의 하원의석 증가 등 포함

5. 파키스탄와 방글라데시 간 외교관계 수립

- 1975.10월 초 양국간의 국교수립 합의에 따라 대사를 임명함으로써 동파키스탄 분리 후 4년만에 외교관계를 수립

6. 부토 수상의 스리랑카 방문

- 동 수상은 1975.12.16.~19.간 스리랑카를 방문, 정상회담에서 지역정세를 논의

파나마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3 / 27 / 1-8

1975년 중 파나마의 정세 동향임.

1. 중국(구 중공) 경제통상전시회 개최

- 중국 대외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통상사절단 주관으로 1975.4.5.~17.간 파나마에서 개최된 중국경제통상전시회가 파나마 정부수반의 개관으로 시작
- 개관식에는 토리호스 정부수반을 비롯 국회의장, 각료 및 의원 등 다수가 참석
- 동 전시회는 농업, 경공업, 중공업 등 5개 부문으로 구성

2. 중국과의 국교수립 전망

- 파나마 외무장관은 외신과의 회견에서 파나마는 조만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

3.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파나마 방문

-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1975.7.25. 파나마를 방문, 정상회담에서 주요 수출품목인 바나나 가격문제, 파나마운하조약 협상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

75-1142

파푸아뉴기니 부겐빌(Bougainville)의 분리독립운동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3 / 28 / 1-46

1975년 중 파푸아뉴기니 부겐빌의 분리독립운동 동향임.

1. 파푸아인의 분리독립운동

- 파푸아인 분리주의자 20여명이 1975.1.19. PNG 수도의 시의회 건물에서 분리독립을 결의
- 동기
  - 지배 종족인 파푸아인과 뉴기니인 간의 갈등 속에서 뉴기니 출신 Somare 수상의 지배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출
- 경과
  - 분리주의자들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
- 전망
  - PNG 행정권은 호주에 속해 있고 호주는 PNG의 분리를 원하지 않고 있어 분리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

2. 부겐빌 독립선언

- 경위
  - 1975.9.1. 분리주의자들은 부겐빌 수도에서 5천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부겐빌 독립을 선언하고 국명을 북솔로몬공화국으로 결정
- 배경
  - PNG 중앙정부의 헌법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만 누적
- 중앙정부 및 인근국 반응
  - PNG: PNG의 통일독립유지 및 분리반대
  - 호주: 독립선언의 불법성 및 반대천명
- 전망
  - 호주의 반대와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의 통일독립 결의에 비추어 부겐빌의 독립국가로서의 존속은 난망시

3. 부겐빌 독립선언 이후 경과

- 1975.10.11. PNG 중앙정부의 부겐빌 지방의회 기능 정지
- 1975.10.17. 부겐빌 지방장관 임명 및 분리운동에 대한 강경태도 견지

파푸아뉴기니 정세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대양주담당관
MF번호	O-43 / 29 / 1-69

1972~75년 중 파푸아뉴기니의 정세 동향임.

1. PNG(파푸아뉴기니) 자치 및 독립 경과

- Somare PNG 수상은 1973.12.1. 이후 최단 시일에 완전자치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을 밝힘.
-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1973.12.1.부터 독립을 전제로 한 행정자치권을 호주로부터 이양 받음.
- 1975.6.19. PNG의회는 1975.9.16. 독립할 것을 결의. 유엔신탁통치 수임국인 호주는 독립 일자 결의를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

2. PNG 독립

- 호주 외무부는 1975.8.22. 공한으로 PNG의 9.16. 독립달성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 9.16. 호주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달성

3. Somare 수상의 유엔 연설

- 동 수상은 1975.10.10. 유엔 연설에서 PNG의 대내외 문제에 관해 언급
- 연설 요지
  - PNG의 우선사업은 국민복지 문제임.
  -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PNG는 자국을 승인하는 정부를 승인하는 방침 견지
  - PNG는 지역적 이념 및 내정간섭에 대해 반대

75-1144

포르투갈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남구담당관
MF번호	O-43 / 30 / 1-42

1974~75년 중 포르투갈의 정세 동향임.

1. 포르투갈 해외영토 독립

- 포르투갈은 해외영토 중 "쌍투메"와 "프린시페"에 대해 1975.7월말 독립부여 예정
- 이외에 기니비사우, 모잠비크에도 독립부여

2. 총선거 실시

- 1974.4월 군사정부가 약속한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1975.4.25. 실시
- 정당 위주의 비례대표제 선거로 247명의 의원 선출
- 분석
  - 중도파와 사회당이 우세하며 공산당이 제3위의 열세

3. 군사혁명 발생 및 이후 정치동향

- 소장파 장교의 주동으로 1974.4.25. 군사혁명이 발생
- 배경
  - 반세기간의 Salazar와 Caetano 파시즘 장기독재체제에 대한 반발
  - 아프리카 등 해외식민지 전쟁에 대한 회의
- 혁명평의회 구성 및 성격
  - 구성: 240명 혁명정책 추진 세력
  - 성격: 수상 중심의 친공세력, 전 외무장관 중심의 온건파, 아프리카 사회주의 중간파 등 이질적 성분의 좌경사회주의 추진세력으로 구성, 분열적 요소 내포
- 정치 동향
  - 1975.8.20. 군 온건파지도자들은 포르투갈 대통령에게 곤잘레스 수상의 해임을 촉구
  - 1975.8.29. 동 대통령은 중도 타협세력 지도자인 해군참모총장을 수상으로 임명

각국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승인 및 PLO 사무소 설치현황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3 / 31 / 1-47

1975년 중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관련사항임.

1. 인도의 PLO 사무소 개설 합의

- 인도 외무차관과 PLO 아라파트대표 간에 1975.1.10. 유엔에서 PLO 사무소 개설에 관한 원칙 합의

2.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한국입장 검토

- 한국 정부는 1973.12.15. 공표한 중동문제 관련 정부입장에서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3. PLO 승인국가 및 사무소 설치현황(1975.3월말 현재)

- 승인국가: 76개국
- 사무소 설치현황
  - 아랍(18), 아프리카(9), 동남아(8), 기타(18)

4. 유럽지역 PLO 회의 개최

- 1975.3.25.~31.간 덴마크에서 개최
-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대표 참가

5. 일본의 PLO 동경사무소 개설문제

- 미키 일본 수상은 1975.11.7. 국회에서 PLO 동경사무소에 대해 외교특권을 부여하지 못하나, 편의는 제공할 계획임을 언급
- 일본 정부는 PLO 동경사무소를 인정하나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어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공관으로 불인정

75-1146

페루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3 / 32 / 1-54

1974~75년 중 페루의 정세 동향임.

1. 테러행위 발생

- 1974.12.1. Mercado 페루 수상 겸 국방장관 등이 탑승한 승용차에 대한 테러 시도, 백화점 폭탄투척, 전몰 경찰관의 동상에 대한 폭파사건 등 정치적 테러 발생

2. 폭동 사건

- 경찰의 임금인상 요구 파업으로 1975.2.5. 군·경찰 간 유혈충돌
- 폭도화한 군중에 의해 시민회관 및 2개 신문사 소실, 상가의 약탈 등 발생

3. 페루 정변 및 신정부 출범

- 수상 겸 국방장관인 Bermudez 장군이 주동이 되어 대통령을 해임하는 쿠데타가 1975.8.29. 발생
- Bermudez 수상이 8.30. 대통령으로 취임
- 신정권은 외무장관 유임 등 개각을 단행, 육·해·공군장관 등 경질

4. 제5차 비동맹 외무장관회의 개최

- 제5차 비동맹 외무장관회의가 1975.8.25.~29. 리마에서 개최, 76개 정회원국 외무장관 및 20개 옵서버 국가대표 등 약 2,000명 참석
- 동 회의는 "단결과 상호협조에 관한 리마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폐막

5. 외교망 확대

-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 앞서 외교관계의 확대를 실현
- 1975.7~8월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프랑스,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시리아와 수교

루마니아 대외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구
MF번호 O-43 / 33 / 1-35

1975년 중 루마니아의 대외정세 동향임.

1.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극동 순방

-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1975.4.4.~13. 일본 및 필리핀을 방문
- 일본 방문
  - 1975.4.4.~9. 일본 방문, 미키 일본 수상, 미야자와 일본 외상과 회담
  - 문화, 교육협정, 비자수수료 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정의 체결
  - 양국 합동경제위원회를 승격, 정부대표급의 혼합위원회 구성에 합의
  - 6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루마니아에 공여
- 필리핀 방문
  - 1975.4.9.~13. 필리핀 방문,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로물로 필리핀 외상과 회담
  - 경제과학기술문화협정 체결

2. 벨기에 외무장관 루마니아 방문

- Elslands 벨기에 외무장관은 1975.10.1.~3. 루마니아를 방문
- 외무장관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75-1148

세이셸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3 / 34 / 1-77

1975년 중 세이셸의 정세 동향임.

1. 외무부는 1976.6월중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세이셸에 대한 정세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정보1과장 등 2명)을 1975.11.19.~23. 세이셸에 파견함.

2. 동 조사단은 방문기간 중 세이셸의 주요인사를 면담함.

- 정부요인: 총독, 수상실 무임소장관 등 6명의 각료
- 언론계: 4개 주요일간지 및 주간지 편집인
- 종교계: 카톨릭 및 성공회 교구장
- 실업계: 한국 원양어선 현지대리점 사장 등

3. 동 조사단의 출장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세이셸 정치정세 현황
  - 1976.6월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예정(1976.1월 런던 헌법회의에서 기본헌법 확정 예정)
  - 정부와 의회는 각료 12명, 의원 25명으로 구성
  - 총독은 독립후에는 상징적·명목적 존재로 존속 예상
- 독립후 대외정책 방향
  - Mancham 수상이 계속 집권하는 한 친서방적일 것으로 예상
  - 엄정 비동맹 중립정책을 추구하고 우호적인 모든 국가와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임.
  - 독립후 정치체제는 사회주의가 가미된 자유민주주의체제 예상
  - 세이셸 인사들은 독립 후 한국과의 국교 수립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
- 한국과의 협력
  - 어업분야 합작에 관심
  - 농업기술훈련 희망

르완다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3 / 35 / 1-29

1975년 중 르완다의 정세 동향임.

1. 주요인사의 르완다 방문

- 리비아 수상(1975.3.18.~20.)
  - 리비아는 르완다에 이슬람문화원 및 호텔건립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 아민 우간다 대통령(1975.5.15.~17.)
  - 공동성명 발표

2. 르완다 주요인사의 각국 방문

- 외무장관의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방문
  -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3국 외무장관회의(1975.5.1.~3.) 참석
- 대통령의 부룬디 방문(1976.8.26.~29.)

3. 르완다는 1975.5.16. 개각을 단행함.

4. 르완다와 월맹은 1975.11.15.자로 외교관계를 수립함.

75-1150

사우디아라비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3 / 36 / 1-191

1975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세 동향임.

1. 외무부가 1975.4월 작성한 '화이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피살과 그 영향'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피살경위
  - 1975.3.25. 리야드 왕궁에서 개최된 '모하메드' 탄신일 축하 리셉션에서 하객접견 중 조현병 환자인 조카에 의해 저격, 살해됨
- 각국의 태도
  - 조문사절 파견: 21개국
  - 국가원수 명의 조전 발송: 6개국
- 대내적 영향
  - 왕실의 전통에 따라 황태자가 국왕으로 즉위
- 대외적 영향
  - 신임 왕이 전임 왕 수준의 영도력 및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난망
  - 미국의 중동전 협상과 석유협상 외교에 난관 봉착
- 한국에 미칠 영향
  - 친한적이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화이잘'왕의 사망으로 아랍권 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변자 및 지원세력 상실

2. 외국 주요인사의 사우디 방문

- 멕시코 대통령(1975.7.31.~8.4.)
- 세네갈 대통령(1975.10.26.~11.1.)
- 영국 외무장관(1975.11.23. 영국·사우디 문화협정 서명)

3. 주요 사우디 인사의 각국 방문

- 문교장관의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1975.5.8.~10.)
- 수상의 프랑스 방문(1975.7.20.~24.)
- 황태자의 영국 방문(1975.10.20.~23.)
- 칼리드 국왕의 쿠웨이트 방문(1975.12.24.)

시에라리온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3 / 37 / 1-87

1975년 중 시에라리온의 정세 동향임.

1. 시에라리온 외무장관은 1975.3.14.부터 4일간 감비아를 방문함.

2. 스티븐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1975.4.1. 개각을 단행함.
   - 외무, 상공, 내무, 국무장관 등을 교체함

3. 중국의료진 11명이 지방 병원에 근무중인 중국 의료진과 교대하기 위해 1975.12.5. 시에라리온에 도착함

4. 스티븐스 대통령은 1975.11.18.~20. 리비아를 공식 방문한 바, 동 방문기간 중 동 대통령의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항 기자회견에서 가다피 리비아 의장의 용감성을 칭찬하고 서부아프리카는 리비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함.

5. 리비아 외무부 기술담당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고위사절단이 1975.12.5.부터 1주일간 시에라리온을 방문함.
   - 주요 방문일정
     - 대통령 예방, 시에라리온 대표단과 수차례 회의, 철광산 시찰
   - 주요 합의사항
     - 리비아는 시에라리온이 필요로 하는 원유 공급(가격과 양은 추후 결정)
     - 리비아는 1976년중 프리타운에 농업종합센타 설립
     - 리비아는 무역, 농업, 농가공업, 보건, 선박 운수업, 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협력가능성 검토

75-1152

스리랑카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3 / 38 / 1-35

1975년 중 스리랑카 정세에 대한 주스리랑카통상대표부 보고내용임.

1. 정치 정세

- 반다라나이케 스리랑카 수상은 1976년의 비동맹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바, 이를 위해 현재의 연정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 외교 정책

- 스리랑카는 그간 소련, 중국(구 중공) 등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스리랑카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경제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스리랑카 측이 서방 측과의 관계를 점차 개선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큼.

3. 대한국 정책

- 최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면서 한국 측에 사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사실 자체가 현 스리랑카 정부의 대한국 자세를 나타내는 척도임.
-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국내의 급격한 좌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방 측,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경우 대한국 정책의 변화도 기대됨.
- 대한국 정책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스리랑카 조야가 한국과 북한 간의 대스리랑카 원조경쟁으로 유도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인 바, 동 수상의 대한국 인식에도 이러한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세네갈 정세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서아프리카
MF번호	O-44 / 1 / 1-37

1973~75년 중 세네갈의 정세 동향임.

1. 셍고르 세네갈 대통령이 1973.1.28.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대통령에 재선됨.

- 세네갈의 대외정책은 비동맹 중립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셍고르 대통령과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프랑스 외교정책을 추종하여 왔는바,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세네갈 주요인사의 각국 방문

- 대통령의 모로코 방문(1974.2.6.~7.)
- 외무장관의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외무장관회의(1975.2.24.) 참석차 에티오피아 방문
- 수상의 이란 방문(1975.3월)
- 대통령의 Francophone 정상회의(1975.3.6.~7.) 참석차 중앙아프리카 방문
- 수상의 감비아 방문(1975.4.16.~19.)
- 대통령의 감비아 방문(1975.6.4.)
  - Trans-Gambia교 건설 프로젝트등에 합의
-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1975.6.16.~21.)
  - 공동성명 발표

3. 주요인사의 세네갈 방문

- 벨기에 국왕 부처(1975.2.25.~28.)
- 모리타니아 대통령(1975.3.15.)

75-1154

수단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4 / 2 / 1-17

1975년 중 수단의 정세 동향임.

1. 뉴메리 수단 대통령은 1975.1.25. 개각을 단행함.

2. 수단과 쿠웨이트는 1975.3.21. 양국의 각 분야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3. 1975.9.5. 수단에서 발생한 공수단 장교들에 의한 쿠데타 기도가 실패로 끝남.

- 뉴메리 대통령은 9.8. 의회 및 수단사회주의연맹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동 쿠데타 기도의 진상을 발표함.
  - 가다피 리비아 대통령이 동 쿠데타 기도에 자금을 제공함.
  - 동 쿠데타에는 전 재무장관 및 전 농림장관이 관련됨.
- 쿠데타 기도 참가인원은 70여명으로 알려짐.

수리남 정세

생산연도	1974-1976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4 / 3 / 1-64

1974~76년 중 수리남의 정세 동향임.

1. 수리남이 1975.11.25.자로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함.

- 11.19. 수리남 의회가 헌법을 통과시킴.
- 11.21.~25. 독립기념 축하행사가 개최됨.

2. 주수리남대사관이 1976.1월 보고한 수리남 정세(요지)는 아래와 같음.

- 국내 정세
  - 독립후 1976.1.현재까지 입법, 행정, 사법부는 종전체제 유지(각료 유임)
- 총선거
  - 야당(인니계)은 1976년중 조기 총선실시 주장
  - 여당(흑인계)은 1977년중으로 연기 시도
- 대외 정책
  - 비동맹 중립노선 채택을 암시하면서도 서방국가와 외교관계 수립
  - 공산권과의 관계수립은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태도
- 경제 관계
  - 수리남·네덜란드위원회가 수리남 경제사회개발계획 입안·시행(향후 10~15년간 네덜란드가 16억 달러 원조)
  - 수리남 정부는 고용증대 및 재정수입원으로 외국기업을 최대한 이용할 방침
- 교역 관계
  - 주요 수출품목: 보크사이트, 쌀, 바나나, 수산물
  - 주요 수입품목: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연료, 운송기기
  - 주요 교역국 : 미국 캐나다, EEC(유럽경제공동체) 국가

75-1156

시리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O-44 / 4 / 1-7

1975년 중 시리아의 정세 동향임.

1.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1975.10.10.~11. 소련을 방문한바, 동 방문시 발표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모든 아랍국가와 아랍인들의 합법적 권리, 특히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의 실지회복을 위한 권리에 있어서의 공동결의를 확인함.
- 중동에 있어서의 양국 우호관계를 저지하는 여하한 외부간섭도 배제함.

2. 시하누크 캄보디아 국가원수가 1975.11.18.부터 4일간 시리아를 방문함.

- 정상회담, 골란고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아사드 대통령이 후세인 요르단 국왕의 초청으로 1975.11.9.부터 3일간 요르단을 방문할 것으로 보도됨.

스위스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구담당관
MF번호	O-44 / 5 / 1-7

1975년 중 스위스의 정세 동향임.

1. 스위스 국방부 정보국장은 1975.5.5. 의회 군사위에서 인도차이나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아래 요지로 비공개 증언함.

- 서방언론이 인도차이나 사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함.
- 북한이 정세 오판시 전쟁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인도차이나에서와 같은 사태는 예상되지 않음.

2. 주스위스대사가 1975.12월 보고한 스위스 안보문제에 관한 스위스 군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스위스로서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공산화된다 하여도 지정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별로 우려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이탈리아의 좌경화 가능성에 관하여는 심각히 우려함.
- 스위스 군부는 스위스가 지향하는 무장중립을 위하여는 현재의 재래식 무기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핵무기 위협에 대하여는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또는 핵 보유국의 핵우산을 요청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함.

75-1158

태국 총선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
MF번호	O-44 / 6 / 1-114

1975년 중 태국의 총선 관련사항임.

1. 1975.1.26. 실시된 태국의 총선결과(269개 의석 분포)임.

- 전(前) 여당계: 108석
  - 사회정의당 45석, 타이국민당 28석, 사회농민당 19석, 민족사회당 16석 등
- 전(前) 야당계: 127석
  - 민주당 72석, 사회활동당 18석, 사회당 15석 등
- 군소 13개 정당 34석

2. 동 총선이후 제1차로 구성된 Seni 연립내각은 하원의 불신임 투표(1975.3.6.)로 물러나고, 제2차 Kukrit 연립내각이 3.19. 하원 신임투표에서 조각 승인을 받음.

- 연립정부 수립
  - 전(前) 여당계 3개 정당(사회정의당, 타이국민당, 민족사회당)이 군소정당과 제휴하여 연립정부 수립
  - 연립정부의 의석은 121석으로 과반에 미달
- 신내각 구성
  - 사회활동당: 수상 및 3개 부처 장관
  - 사회정의당: 5개 부처 장관
  - 타이국민당: 부수상 및 3개 부처 장관
- 신정부의 주요정책
  - 대내정책: 빈부격차 해소, 주요 경제목표 달성 촉진, 저소득층 월수입 평균 1,000바트 보장, 저소득층에 교통수단(버스)·교육 무료제공
  - 대외정책: 외국군대(미군) 조기철수 협상 추진, 중국(구 중공)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 수립, 월맹과 관계 정상화, 아세안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튀니지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4 / 7 / 1-25

1975년 중 튀니지의 정세 동향임.

1. 1975.1.3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프랑스·튀니지 협력위 외무장관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동분쟁의 정당하고도 영구적인 해결책이 조속 마련되기를 희망함.
- 튀니지는 프랑스가 제의한 세계자원회의 개최를 지지함.
- 프랑스는 재프랑스 튀니지 노동자 대우향상 및 추가 입국금지의 해제를 검토함.

2. 튀니지 의회는 1975.3.18. 헌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현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공식 선포함.

3. 튀니지 주요인사의 각국 방문

- 수상의 시리아 방문(1975.1.2.~6.)
  - 경제협력협정, 문화협정 서명
- 외무장관의 알제리 및 모로코 방문(1975.3.11.~13.)
- 수상의 프랑스 방문(1975.7.7.부터 4일간)

4. 주요인사의 튀니지 방문

- 리비아 대통령(1975.3.24.~25.)
  - 정상회담 개최
- 루마니아 대통령(1975.4.17.부터 3일간)
- 코시긴 소련 각의 의장(1975.5.15.~17.)

75-1160

상투메프린시페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O-44 / 8 / 1-7

1974~75년 중 상투메프린시페의 정세 동향임.

1. 상투메프린시페가 1975.7.12.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함.

- 포르투갈 측과 상투메프린시페 해방운동단 간에 독립부여에 관한 의정서가 1974.11월 알제리에서 서명된바 있음.

2. 가봉 주재 상투메프린시페 연락사무소 연락관에 의하면,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이 1975.12.20.~25. 북경 방문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함.

- 정확한 방문일자 및 기간은 북경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함.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4 / 9 / 1-11

1975년 중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정세 동향임.

1. 1975.6.1. 동경발 외신보도에 의하면 트리니다드토바고 석유대표단(단장: 석유광산장관 서리)이 동일 친선방문차 북경에 도착하였다고 보도됨.

2. 주캐나다대사관(트리니다드토바고 겸임)이 보고한 트리니다드토바고 1975년도 4/4분기 정세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76.5월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최근 노동자 파업 등의 여파로 현재의 여당(PNM) 일변도와는 달리 야당의 상당한 진출이 예상됨.
   - 여당(PNM)은 1975.5월 제17차 전당대회를 갖고 1976.5월 총선을 대비한 당정비를 논의함.
   - 의회는 1975.10월부터 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의회내 헌법 개정안 심위 소위가 1976.1월 헌법 초안을 마련할 예정
   - Williams 트리니다드토바고 수상은 12.12. 10.5억 달러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75-1162

탄자니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아프리카
MF번호	O-44 / 10 / 1-14

1975년 중 탄자니아의 정세 동향임.

1. 탄자니아 대통령의 각국 방문

- 인도(1975.1.15.~20.)
  - 양국이 경협의 증대와 국제사회에서 공동보조를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합의
- 케냐(1975.4.14. 도착)
-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멕시코(1975.4.18.~28.)
- 네덜란드(1975.11.24.부터 2일간)
  - 앙골라,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및 남아공 문제와 네덜란드의 대탄자니아 개발원조 문제 협의
  - 네덜란드는 1976년 탄자니아에 64백만 길더의 개발원조를 공여하기로 합의

2. 탄자니아 대통령은 1975.11.9. 개각을 단행함.

우간다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4 / 11 / 1-95

1975년 중 우간다의 정세 동향임.

1. 아민 우간다 대통령의 각국 방문

- 수단(1975.3.31.~4.1.)
  - 양국간 상호협력 촉진 및 아랍·아프리카의 결속 노력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
- 르완다(1975.5.15.~17.)
- 리비아(1975.5.30.~31.)
  - 팔레스타인 및 남아프리카 문제에 초점을 둔 공동성명 발표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1975.6.30.~7.2.)
  - 양국간 경협·통상·개발문제와 우간다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영국인 Cecil Hills 문제 토의
- 이탈리아(비공식), 바티칸(1975.9.8.~11.)
  - 밀라노 헬기공장 시찰, 이탈리아 대통령과 만찬, 교황 면담
- 알제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1975.9월)

2. 우간다 대통령은 1975.4.5. 주우간다 영국대사(고등판무관)대리에게 캄팔라 주재 영국대사관 외교직원수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통보하고, 영국 정부도 런던 주재 우간다대사관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3. 우간다와 영국관계는 영국인 Denis Hills에 대한 사형 판결을 계기로 악화되었으나, 모부투 자이르 대통령의 중재와 이에 따른 영국 외무장관의 우간다 방문으로 Hills 문제가 해결됨.

- 아민 대통령은 1975.6.30.~7.2.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시 Hills를 사면하기로 했으며 우간다와 영국 간의 관계증진 문제를 모부투 대통령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4. 1975.10~11월 발생한 우간다와 소련 간의 외교관계 단절 소동은 아래와 같음.

- 아민 대통령은 10.9. 앙골라 해방운동이 신생 앙골라를 대표하고 있음을 승인할 것을 우간다 측에 요청한데 대해 소련 측의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소련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함.
- 아민 대통령은 11.18. 소련의 대우간다 관계정상화 발표를 수락한다고 발표함.

75-1164

영국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44 / 12 / 1-119

1975년 중 영국의 정세 동향임.

1. Wilson 영국 수상은 Callaghan 외무장관과 함께 1975.2.13.~17. 소련을 방문함.

- 주요 토의사항
  - 양국간 정치적 관계개선, 통상·경제협력, 기술협력, 정보교환 등 양국간 협력과 교류문제
  - 유럽 안보문제, 중동 사태, 사이프러스 문제, 베트남 문제, 핵무기 확산금지 문제 등 국제문제
- 주요 성과 및 합의사항
  - 공동성명 발표, 5개 협정 서명
  -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2. 주영국대사관이 제출한 1975년 3/4분기 정세보고서의 골자는 아래와 같음.

- 개관
  - Wilson 수상의 정치적 수완과 노동당내 일부 거물급 좌파인사들의 정부정책 지지에 힘입어 노동당 정부의 안정이 회복됨.
- 정치 정세
  - EC(구주공동체) 잔류여부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C 잔류가 확정됨으로써 Wilson 수상의 입지가 강화됨.
- 외교 관계
  - 노동당 정부는 동서관계 개선을 위한 구주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구주안보협력회의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함.
  -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1976년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함.
- 경제 관계
  - 소득정책에 관한 경제백서(1975.7월), 실업대책(9월)등을 발표함.
- 대북한 관계
  - 7월 하원에 제출된 북한승인 동의안이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여 폐기됨.

소련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O-44 / 13 / 1-41

1974~75년 중 소련의 정세 동향임.

1.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는 1974.1.1. 신년사를 발표한바, 동 신년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73년의 업적
  - 공업생산계획이 초과 달성되고 농산물 생산이 기록을 세웠으며, 사회문화대책이 강화됨.
  - 소련과 여타 사회주의국가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협정 체결은 긴장완화에 기여함.

2. 주일본대사관이 1974.2월 보고한 소련의 솔제니친 추방에 관한 분석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소련은 강제노동, 정신병원 입원 또는 국외추방 등 3가지 방법 중 가장 온건한 방법을 택함.
- 솔제니친 추방은 서방 측에 실망을 주었으며 소련의 긴장완화 외교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함.
- 1974.3월로 예정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방소와 7월로 예정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소, 그리고 미국의 대소련 최혜국 대우 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내 매파들의 반발이 예상됨.

3. 1975.12월 언론에 보도된 소련의 제10차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련 공산당 중앙위는 1976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계획을 1975.12월 통과시킴.
  - 동 계획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 향상에 역점을 둠.
- 동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는 국민소득 24~28% 증대, 임금 16~18% 인상, 과학기술개발 및 환경보호임.

75-1166

미국 의회 동향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44 / 14 / 1-91

1974~75년 중 미국 의회내 동향임.

1. 외무부는 1975.1.14. 개원한 미국 제94차 의회에서 재선된 상·하 양원 간부들에 대한 대통령 명의 축전발송을 건의함.
   - 상원
     - 민주당 및 공화당 원내총무
   - 하원
     - 하원의장, 민주당 및 공화당 원내총무

2. Carl Albert 미 하원의장은 1975.8월 아래 일정으로 동구국가를 순방함.
   - 소련(8.7.), 루마니아(8.15.), 유고슬라비아(8.19.)

3. Carl Albert 미 하원의장은 1975.9.11. 제95차 의회 하원의장으로 재출마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4. James Allen 미 상원의원은 1975.9.19. 상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유엔에 대한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상원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미국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1/북미2
MF번호	O-44 / 15 / 1-58

1975년 중 미국의 정세 동향임.

1. 1975.1.12. 및 5.6.자 포드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텍스트(영문)가 수록됨.

2. 주미국대사관이 1975.10월 제출한 1975년도 3/4분기 정세보고서의 골자는 아래와 같음.

- 국내문제
  - 하원에서 2/3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의 공화당 행정부 견제로 포드 미 행정부가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음.
  - 행정부 제출 법률안의 심의지연과 부결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의 지도력과 정책 추진력이 심하게 약화됨.
- 의회의 대한국 태도
  - 친한의원 측은 북한의 남침 위험성을 재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진보파의원 측은 한국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 세력을 확대시키려 함.
- 1976년 대통령 선거
  - 민주·공화 양당은 각각 후보자 지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함.
- 대외관계
  - 미국의 인도차이나 철수로 미국의 대외 신뢰도가 약화됨.
  - 키신저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으나, 1975.3월 이집트·이스라엘 협상 조정실패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함.
  - 미국과 소련 간에 긴장완화 정책이 꾸준히 추구되고 있으나, 미국은 소련의 세력확장에 대한 견제노력을 지속함.

75-1168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44 / 16 / 1-43

1975~76년 중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정세 동향임.

1.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이 1975.12월 제출한 정세보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라미자나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1975.11.29.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유일 정당 성격의 국가개혁국민운동의 창설과 이의 전국적인 추진을 선언함.
- 전노조 등은 11.30. 집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노조가 정부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재강조하고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2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함.
  - 정부는 동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노조 측에 제시
  - 정부는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각종 국내시책과 계획 등에 관해 해명
- 노조 측은 정부의 답변과 해명에 불만을 표시하고 1975.12.17.~18. 양일간 파업함.

2.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이 1976.1월 제출한 정세보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노조 파업이후 1975.12월 정부 측은 봉급인상 및 일부 사회제도 개혁에 관한 노조 측의 요구를 거의 수락하였으나, 노조 측은 정치체제개혁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1976.1~2월중 총파업을 예고함.
- 라미자나 대통령은 1976.1월 연두성명에서 경제건설, 사회복지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함.
- 1월 정부 측이 정치개혁문제에 관해서도 대폭 양보함으로써 정부와 노조 간의 정면대결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됨.

우루과이 정세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4 / 17 / 1-105

1975~76년 중 우루과이 정세에 관한 주우루과이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정치 정세

- 현 대통령은 1977.3.1. 임기 만료되나, 임기 만료후에도 계속 유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현 정부에서는 12명으로 구성된 육군장성위원회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실제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4명의 관구사령관이 주도적 역할을 함.
- 공산게릴라는 군부 집권하에서도 지하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2. 경제 정세

- 1970년 이후 우육수출 부진 및 유류파동으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인해 무역적자가 심화됨.
- 현 정치체제에서 오는 모순(군부와 민간정치인 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

3. 대외 정책

- 전통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공산권 국가들과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통상관계를 유지함.
- OAS(미주기구)를 통한 중남미국가간 협력에 적극 참여함.
- 소련과 동구국가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공산당 지하조직 발견후 상호 경계하는 태도를 보임.
- 우루과이 외무장관은 1976년도에도 공산주의자들의 정부 전복기도에 대항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강력한 반공노선 추구를 재확인함.

75-1170

각국의 월남 신정부 승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4 / 18 / 1-72

1975년 중 월남 신정부 승인 관련 사항임.

1. 외무부가 1975.5월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월맹 승인국과 월남 신정권 승인국에 관해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월맹 승인국(외교관계 수립 포함): 75개국
- 월남 신정권 승인국(외교관계 수립 포함): 71개국

2. 1975.6월 이후 월맹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현황은 아래와 같음.

- 영국(1975.6월), 네덜란드(1975.6월), 필리핀(1975.8월), 독일(1975.9월)

3. 일본은 1975.10월 주하노이(월맹) 일본대사관을 개설하고 월맹 측과 무상경제협력(95억 엔) 협정에 서명함.

4. 스위스 외무부 정치2국장이 1975.11월 주스위스대사와 오찬시 월남의 신정권 등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스위스는 1975.6월 월남 신정권과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에 합의하였으나, 아직 상호간에 대사를 임명하지 못함.
- 사이공 소재 외교공관은 스위스를 포함하여 모두가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못하고 단순한 외국인 거주자 취급을 받음.
- 스위스로서는 주월남대사를 임명할 생각이 없으며, 월맹에는 가까운 시일내에 상주대사를 파견할 계획임.

각국의 월남 피난민 수송 및 구호 원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4 / 19 / 1-74

1975.4월 각국의 월남 피난민 수송 및 구호 현황임.

- 네덜란드 : 435천 달러의 구호금 전달, 870천 달러 추가 원조제공 발표
- 독일 : 종교·자선단체에서 월남 피난민 구호 모금운동 전개중
- 미국 : 피난민 수송을 위해 가능한 수송수단 동원
- 캐나다 : 625백만 달러 구호금 제공 결정
- 대만(구 자유중국): 수송기 10대 월남 파견
- 호주 : 수송기 7대 대기중, 200천 달러의 구호금 전달
- 말레이시아: 인도적 원조 검토중
- 필리핀 : LST 1척 파견
- 인도네시아: 검토중
- 영국 : 소형구축함 1척 파견, 750천 파운드 구호금 제공 결정
- 벨기에 : 86천 달러 구호원조
- 독일 : 선박 대기, 10백만 마르크를 피난민 수송 및 구호에 사용하기로 결정
- 인도 : 구호계획 없음.
- 프랑스 : 인도적 원조제공 발표, 15톤의 구호품 항공기 수송
- 스웨덴 : 6백만 달러의 구호금 제공 결정

75-1172

월남 공산화. 전4권 (V.1 이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북미1
MF번호	O-44 / 20 / 1-184

1975년 중 월남의 정세 동향임.

1. 1975.1.7. 월남 정부 발표에 의하면 공산군은 Phuoc Long성을 완전히 점령함.

2. 주월남대사가 1975.3.31. 보고한 월남의 정세는 아래와 같음.

- 전황
  - 다낭·호이안·출타이(청룡부대지역) 실함, 퀴논·빈게(맹호사단지역) 실함 직전, 니호아·캄란등(백마사단지역) 실함 위기
  - 미국과 월남은 사전에 공세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작전 실패의 원인
- 공산군의 공세 결과
  - 공산군의 추격과 월남군의 작전 실패로 월남 국토가 월맹·베트콩·월남으로 3등분됨.
  - 월남군의 계속적인 작전 실패로 월남 국민의 전의가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됨.
  - 티우 월남 대통령과 군 지도부 간의 불화 분위기가 나타나고, 항간에 쿠데타설이 유포됨.
- 전망
  - 월남의 군사적 방어태세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여부에 달려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군사적 재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움.
- 문제점
  - 월남 정부는 10여 만 명의 전투병력 상실과 막대한 전투장비의 손실 후 부대를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그리고 20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어떻게 구호하고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함.

월남 공산화. 전4권 (V.2 공산화 및 각국 반응)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북미1
MF번호	O-44 / 21 / 1-366

1975년 중 월남의 정세 동향임.

1. 주미국대사는 1975.4.2. 월남 정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공산군이 월남 영토의 2/3를 장악함.
- 미 행정부는 미 육군 참모총장의 귀국보고(4.5.) 청취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월남 피난민 수송 및 미 해군함정 보호를 위해 700여명의 미 해병을 파견함.
- 주요 언론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WP : 월남 정부를 구제하기 어려움.
  - NYT: 월맹의 승리가 예견됨.

2. 월남 공산화의 주요 일지(1975.4월)는 아래와 같음.

- 1975.4.21. Thieu 대통령 사임
- 1975.4.28. Minh 대통령 취임식 거행
- 1975.4.30. Minh 대통령 무조건 항복 발표
  - 사이공 함락

75-1174

월남 공산화. 전4권 (V.3 이후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북미1
MF번호	O-44 / 22 / 1-102

1975년 중 월남의 정세 동향임.

1. 외무부가 공관 보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1975.6월 작성한 공산월남 현황(1975.4.30.이후)의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음.

- 기본정책
  - 기본정책 방향, 발표된 정책 강령
- 항목별 현황
  - PRG의 권력구조, 월남 공산세력의 실력자 서열, 사이공 군사위와 PRG의 관계, 사이공 행정기구, 남북 월남 관계, 월남 내부상황, 사이공 당국의 잔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사이공 잔류 외국인 현황, 사이공 잔류 각국 공관, 사이공 주재 국제기구 활동, 주요 외국과의 관계
- PRG 승인국
  - 4.30.이후 승인국, 4.29.이전 승인국

2. 주일본대사관이 1975.9월 주재국 외무성으로부터 파악·보고한 공산월남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일본 대사관의 규모
  - 주월남 일본대사관에는 8명이 잔류(공관에서 더 이상 감축하지 말 것을 건의)
- 주월남 일본대사관 직원에 대한 대우·대사관의 기능·외교관의 여행제약 여부
  - 일본 공관원은 외교특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음.
- 일본대사관의 통신파우치 재개 및 송금허가 여부
  - 대사관과 외무성 간에 통신·파우치가 재개되지 않음.
  - 동경은행을 통해 주월남 일본대사관에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액수에 제한은 없음.
- PRG의 외국공관 설치 및 외교관 접수 여부
  - PRG는 외국공관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외국과 형식적인 외교관계는 수립함.
- 사이공의 치안상태
  - 아직도 불안한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함.
- PRG와 월맹 간의 관계
  - PRG는 아직 표면에 나서지 않고 있음.
  - 월남에서의 당·군·경찰 등 권력기관은 월맹이 완전히 장악, 월맹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월남 공산화. 전4권 (V.4 신문기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북미1
MF번호	O-44 / 23 / 1-127

월남 공산화와 관련한 신문기사 내용임.

1. 한국 국내신문(1975.1~5월)
   - 국내 일간지(영자신문 포함) 기사 클리핑

2. 프랑스 신문
   - Le Figaro, Le Monde 등의 논평기사 클리핑(1975.6월)
   - Le Figaro지의 월남취재 특집기사(3회) 클리핑(1975.11.26.~28.)

75-1176

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 송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O-44 / 24 / 1-15

1974~75년 중 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4.8월 인도차이나 전투중 행방불명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위원회가 주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 또는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인도적 기관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적의조치할 것을 요청함.
   - 동 활동 위원회 대표에 의하면 각국의 적십자사 등 인도적 기관이 월맹의 적십자사에 서한발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함.

2. 외무부는 1974.12월 주태국대사관이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수령한 월남전에서의 한국인 실종자 인적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함.

3. 주태국대사가 1975.11월 보고한 월맹의 미국인 등 전쟁포로 14명 석방 관련기사가 수록됨.

월남 주재 각국 공관 철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4 / 25 / 1-67

월남 주재 각국 공관의 철수 동향(1975.4.20.~27.)임.

1. 1975.4.20.
   - 덴마크: 총영사관 미철수

2. 1975.4.22.
   - 대만(구 자유중국): 공관원 20명중 10명 철수, 대사잔류
   - 뉴질랜드: 전원철수

3. 1975.4.24.
   - 미국: 500명 잔류
   - 영국, 태국, 캐나다, 호주: 전원철수
   - 네덜란드: 철수훈령 접수
   - 이탈리아: 인원감축
   - 벨기에: 대사와 외교관 1명 잔류
   - 이스라엘: 수일전 철수

4. 1975.4.26.
   - 스위스: 대사대리 이하 공관 직원 전원잔류

5. 1975.4.27.
   - 말레이시아: 전원철수

75-1178

베네수엘라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남미담당관
MF번호	O-44 / 26 / 1-57

1974~75년 중 베네수엘라의 정세 동향임.

1. 베네수엘라는 1975.1.1.자로 철강산업을 국유화함.

2.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975.1.23. 개각을 단행함.

- 17개 장관중 8명의 장관이 유임되고, 외무장관을 비롯한 9명의 장관이 새로이 임명됨.

3. 베네수엘라 주요인사의 각국 방문

- 대통령의 OPEC(석유수출국기구) 정상회담 참석(알제리,1975.3월)
-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1975.7.30.~8.1.)
- 외무장관의 소련 방문(1975.8월)

4. 외국 주요인사의 베네수엘라 방문

- 이란 국왕(1975.5.5.~9.)
  - 원유 수송을 위한 선박회사 공동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 스웨덴 수상(1975.6.24.~28.)
  - 양국간 기술·문화교류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 후쿠다 일본 부수상(1975.8.17.~20.)
  - 대통령, 외무장관 등 면담

북예멘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4 / 27 / 1-20

1975년 중 북예멘의 정세 동향임.

1. 북예멘 군사평의회 의장은 1975.1월 아이니 북예멘 수상을 해임하고 다이풀타 공보장관을 임시내각의 수상으로 임명함.

2. 북예멘 군사평의회 의장은 1975.7.1.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함.
   - 양국간 경제협력, 걸프지역 안보, 아랍국가 간의 결속문제 등이 협의됨.

3. 북예멘 정부가 소련과 무기구입협정에 서명하였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뉴스가 1975.12.4. 보도함.

4. 북예멘 대통령이 1975.12.17. 성지순례를 마친 후 사우디아리비아 국왕과 회담하였다고 사우디 언론이 보도함.
   - 동 회담에 배석한 북예멘 외무장관은 회담 후 사우디의 원조가 북예멘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75-1180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정세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44 / 28 / 1-83

1974~75년 중 짐바브웨(구 로데시아)의 정세 동향임.

1. 짐바브웨 정세 배경

- 영국령의 자치정부로 있던 백인 소수정권인 로데시아 정부는 아프리카의 탈식민지 추세로 흑인 정권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여 1965.11월 독립을 선언함. 흑인무장투쟁단체인 ZANU와 ZAPU 등 4개 무장단체는 이에 따라 백인정권에 대하여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짐바브웨 문제는 나미비아, 남아공과 포르투갈 식민지인 앙골라와 모잠비크와 함께 아프리카 평화와 안전에 주요한 관심사항이 됨.

2. 헌정회의 개최 합의

- 로데시아에서의 안정적인 흑인정권 탄생이 남아공 이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Vorster 남아공 수상의 외교적 노력으로 1974.12.4. 잠비아 루사카에서는 로데시아대표, 흑인지도자와 인근 아프리카국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교섭회담이 개최됨.
- 이러한 배경하에 짐바브웨의 당시 수상이었던 Ian Smith는 흑인무장투쟁단체 지도자들을 석방하여 이들이 루사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루사카회의에서 흑인 다수통치를 위한 헌정회의 개최를 두고 Ian Smith 수상이 회담 조건을 거부함에 따라 평화적 해결노력이 좌절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 수상의 오해를 무마하는 노력 끝에 동 수상은 1974.12.11. 점차적인 흑인 다수통치로 발전한다는 양해하에 로데시아 내 게릴라전 종식과 흑인 정치범 총석방 및 조건 없는 제헌회의 개최 등을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 1975.8.25. 로데시아의 정치적 장래문제를 토의하는 제헌회의가 개최됨.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4 / 29 / 1-55

1975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74.12월 중국(구 중공)과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한 지도자 모부투는 아시아 공산주의에 크게 감명을 받고서 사회주의 혁명조치 입안을 지시하였으며, 1975.1월에는 군중집회에서 혁명조치 시정방침을 천명함.
  - 재산 및 기업의 국유화조치 등 경제, 사회 모든분야에서 일련의 급진좌경 정책 추구
-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1975.6월 개최된 군중집회에서 미국이 사주했다고 주장하는 쿠데타 음모 분쇄를 발표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함.

2. 대외 관계

- 1975.6월 킨사샤 주재 미국대사가 쿠데타 관련 이유로 기피인물 선고를 받아 떠났으며, 미국 특별사절단이 콩고민주공화국을 3차례나 방문하여 쿠데타 미수설 이후의 양국간 관계개선을 도모함.
- 8월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경제지원 제공 등 협력방안을 합의하였으며, 9월에는 벨기에 수상이 방문하여 양국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함.
- 모부투 대통령은 11월 가봉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앙골라 문제를 협의하면서 콩고강 하류 최대 석유매장지역인 Cabinda의 영유권을 주장함.

75-1182

공관활동보고 - 아르헨티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남미담당관/정보1
MF번호	O-44 / 30 / 1-38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의 1974년 상반기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2.21. 아르헨티나 정무차관 서리와 오찬을 갖고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교섭 활동 전개
- 3.6. 아르헨티나 외상을 방문하여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교섭 활동 전개
- 3.13. Dr. Harrionuevo 이민청장을 면담하여 주재국 이민 확대방안 협의
- 3.25. 이후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주재국 외교단장으로 활동하게 됨.
- 4.9. 아르헨티나 외상을 방문하여 동인의 방한 문제 협의

공관활동보고 - 카나다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44 / 31 / 1-16

주캐나다대사관의 1974~75년 중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1. 1974년도(12월)

- 12.16. 외무성 한국담당관과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
- 12.16. 몬트리올의 주요 경제인을 초청하여 만찬 개최
- 12.23. 외무성 법무실 당국자와 한국어선 나포 문제 관련 협의
- 12.30. 한전사장과 AECL사장 간 CANDU 원자로 도입 관련 계약서 가서명

2. 1975년도

- 정계 인사 방한 초청
  - 수상: 연중 적절한 시기
  - 재무장관: 3/4분기중
- 기타 유력인사
  - 학계 및 경제계 인사: 연중
  - 주재국에서 영향력이 큰 인사: 연중
  - 유력 언론인: 2/4~3/4분기
- 올림픽 경기 사전준비 및 후원
  - 한국선수단 지원을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 구축
- 주재국 시장 조사 및 개척
- 통상관계 강화를 위한 대주재국 교섭 강화
- 수출진흥회의 참석 및 개최
- 상품전시회 참가 및 개최

75-1184

공관활동보고 - Vancouver(카나다)총영사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북미담당관/정보1
MF번호	O-44 / 32 / 1-81

주벤쿠버총영사관의 1975년 중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16.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아동복지 관련 담당자 면담, 납치된 입양아동의 송환 문제 협의
- 1.22. 한국 통상사절단 환영 리셉션 주최
- 2.5. 정례 수출진흥회의 주재
- 3.11. 한·캐나다 실업인협회 춘계 총회 참석
- 3.14. Karl Riedel 주벤쿠버 독일총영사와 함께 영사단 활동 강화방안 협의
- 4.8. 관내 수출진흥회의에서 지사 활동강화 및 신규상품 발굴책 협의
- 5.26. 한국인 밀입국자 "이병옥" 송환 문제 협의
- 7.9. 한·캐나다 실업인협회 정기 총회 참석
- 8.18. Morris 벤쿠버 무역협회 상임회장과 한국경제사절단 방문 협의

공관활동보고 - 가봉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정보1
MF번호	O-44 / 33 / 1-9

주가봉대사관의 1975년 중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3.17. 오쿰바 외상 면담
- 12.12. 마위리 교통장관 면담
- 12.14. 봉고 대통령 면담
- 12.16. 광산 장관 면담
- 12.18. 상공장관 및 상공부 국장들과 아국 통상사절단 방문 문제 협의
- 12.22. 외무성 정무차관보 면담
- 12.23. 건설장관 면담
- 12.26. 대통령실 의전장 및 비서실장 면담
- 12.29. 마위리 교통장관 면담

75-1186

공관활동보고 - 온두라스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4 / 34 / 1-29

주멕시코대사관 직원이 1975년 11월 겸임국인 온두라스에서의 외교활동을 보고한 내용임.

1. 이정남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이 1975.11월 온두라스에 출장하여 온두라스 정부, 중앙은행, 개발은행, 수입회사 등 인사와의 접촉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요 인사 면담

- 11.17. Carcamo 국방장관
- 11.21. Santos 중앙은행 경제부국장, Orlando Cruz 경제성 공업진흥국장, David Cruz 경제성 상역국 부국장, Guillen 산림개발공사 기술부장

공관활동보고 - 코트디부아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5 / 1 / 1-62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의 1975년 중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28.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 2.7. 국회 의전장 방문, 국회의장 방문 관련 사항 협의
- 3.5. 외무장관 면담, 유엔과 비동맹 문제에 관해 협의
- 3.7. 직업기술교육장관 면담
- 3.14. 가나 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면담, 국교수립 문제 협의
- 4.20. 노신영 외무부차관이 이끄는 사절단 영접
- 4.21. 노신영 차관과 함께 외무장관 면담
- 5.14. 외무장관 면담, 비동맹 및 한반도 문제 협의
- 6.5. 수출진흥회의 주재
- 7.3. 축산장관 면담
- 7.23. 외무장관 면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관련 교섭

75-1188

공관활동보고 - 나고야(名古屋, 일본)총영사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O-45 / 2 / 1-21

주나고야총영사관의 1975년 중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1.3. 나고야 한국학교 문화제 참가 및 축사
- 11.4. 기후현 민단 및 경제인 간담회 참석
- 11.15. 도야마현 한일친선협회 창립 총회 참석
- 12.2. 코트라와 함께 수출입에 관한 종합회의 개최

공관활동보고 - 삿포로(札幌, 일본)총영사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 정보1
MF번호	O-45 / 3 / 1-183

1. 주삿포로총영사관의 총영사와 공관원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년도 월별로 관할지역 내 지방정부 등 인사와의 접촉 활동한 요지와 북해도 지방 선거동향, 북한 관련 사회당 인사동향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2.8. 신임 총영사 부임 후 삿포로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 등 예방
- 2.10. 자위대 북부 방면 총감 및 자위대 11사단장 예방
- 2.13. 북해도 지사 예방
- 2.15. 북해도 국제국장 방문
- 2.26. 북해도 교육위원회 교육장 방문
- 3.7. 삿포로 구치소장, 고등검찰청 감사장 방문
- 6.4. “동포 위안의 날” 행사 개최
- 6.27. 북해도 일·한 우호친선협회 이사회 참석

75-1190

공관활동보고 - 센다이(仙臺, 일본)영사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O-45 / 4 / 1-61

1. 주센다이영사관 영사가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7~12월 관할 지방정부와 교민단체 등 접촉, 활동한 리스트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7.11. 동북 6현 단장회의 소집
- 7.14. 스즈키 센다이 입국관리사무소 소장 방문
- 7.16. 미야기 한일친선협회 권보근 부회장과 한국민속예술단 공연 관련 협의
- 7.22. 미야기 한일친선협회 상임이사회 참석
- 8.5. 이와누마 로타리클럽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해 강의
- 10.26. 일본 자위대 동북방면대 주최 자위대 창립 25주년 기념식전 참석

공관활동보고 - 요코하마(橫浜, 일본)총영사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45 / 5 / 1-59

1.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이 본부의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년도 관할지역 내 지방 정부, 경제계 등 인사와 교민단체 인사와의 접촉과 활동내용 월별 리스트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1.6. 요코하마 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 공동 신년회 참석
- 2.28. 국제수입상품 전시회 개막식 및 리셉션 참가
- 4.19. 가나가와현 한국인 상공회 정기총회 참석
- 9.23. 제7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
- 10.15. 가나가와현 한국인 종합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간담회 참가
- 10.17. 제2회 홍보대책위원회 개최
- 11.5. 요코하마 무역협회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참석

75-1192

공관활동보고 - 일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45 / 6 / 1-174

1. 주일본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정부인사 등 각 분야 인사접촉과 활동내용을 주간별로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1.22. 한·일 의원간친회 회의 참석
- 2.4. 민단간부 주최 만찬회 참석
- 2.6. 도고 외무성 사무차관 면담
- 2.18.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 3.11. 미야자와 외무대신 예방
- 3.12. 오히라 장상 방문
- 4.11. 민단중앙위원회 참석 및 강의
- 5.14. 자민당의원 10명 만찬 초청
- 6.20.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 자택 방문
- 7.15. 후지노 미쓰비시상사 회장 예방
- 8.1. 다카시마 아주국장 방문
- 9.5.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 10.6. 오이카와 요미우리 신문기자 오찬 초청

공관활동보고 - 후쿠오카(福岡, 일본)총영사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O-45 / 7 / 1-60

1.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8~12월 주간별, 분야별 총영사 및 공관원의 관내지방 정부인사 등에 대한 접촉과 활동 리스트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8.23. 나가사키현 지사 예방 및 민단본부 회관 낙성식 참석
- 9.6. 추석성묘단 추진 공관 직원회의 주최
- 9.7. 오이타현 한·일친선협회 재건 총회 참석
- 10.9. 기타큐슈 한국학원 개강식 참석
- 10.11. 구마모토현 지사, 구마모토 시장 및 구마니치 신문사 사장 예방
- 10.15. 후쿠오카 입관 소장 및 규슈 공안조사국장 방문
- 11.14. 민단 후쿠오카 본부 간부 및 교포 유지 만찬 초청
- 12.17. 사가현 지사 및 사가 시장 예방

75-1194

공관활동보고 - 쿠웨이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근동담당관
MF번호	O-45 / 8 / 1-127

1.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가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년도 주간별 주재국 정부 인사 등 접촉과 활동사항 리스트 및 주재국 동향 언론보도문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1.7. 바부레인 외무성 정무국 차장 면담
- 1.12. 외무성 의전차장 면담
- 1.23. 상공부장관 방문
- 1.25. 공보부차관 방문
- 3.15. 국회의장 예방
- 4.3. 상무성장관 비서실장 면담
- 4.17. 국회 외무위원장 방문
- 4.19. 모하마드 Gulf International Group 회장 예방
- 4.28. 재무장관 방문
- 5.1. 석유장관 방문
- 8.9. 외무성 국제부장 면담, 비동맹 및 유엔 관련 문제 협의

공관활동보고 - 라이베리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아프리카/정보1
MF번호	O-45 / 9 / 1-49

1.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인사, 외교단, 교민과의 접촉과 활동한 내용 리스트와 7월 활동에 대한 자체심사 분석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3.3. 오카이 외무성차관 면담
- 3.9. 대통령실 의전장 면담, 한국특사 방문 일정 협의
- 3.25. 법무장관 면담, 태권도 훈련 문제 협의
- 4.17. 외무성 경제국장 면담, 제네바해양법 관련사항 협의
- 4.29. 한국의료단 예방 접수
- 5.13. 태권도사범 면담 및 애로 사항 청취
- 5.20. 대통령 외교고문 존슨 박사를 관저로 초치, 유엔 및 비동맹 문제 협의
- 7.4. 케네디 병원장 면담, 한국의료단 근무 문제 협의
- 8.22. 국방장관 방문
- 8.26. 상원의장 방문

75-1196

공관활동보고 - 라오스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5 / 10 / 1-63

1. 주라오스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3~5월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인사, 외교단, 교민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사항 리스트와 일자별 라오스 정세사항 요약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또한 월남 공산화로 라오스 정세가 매우 혼란해지는 시점에서 라오스 정부가 국내 정세에 관하여 1975.4~5월 발표한 일련의 언론보도문이 첨부됨.

3. 보고내용(1975년도)

- 3.29. 대사 부부, 푸마 수상 주최 야유회 참석
- 4.11. 한국원조품 전달식 거행: 외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등 참석
- 4.28. 잠업 기술훈련생 2명의 방한 환영 및 격려
- 5.6. 교민회 간사 예방 접수 및 애로사항 청취
- 5.7.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북한·중국(구 중공)의 공동성명에 반박하는 자료를 수교하고 북한 문제 협의

공관활동보고 - 르완다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45 / 11 / 1-19

1. 주르완다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1~5월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계, 외교단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사항 리스트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2.24. Benjamin Malfroid 상업은행장 방문, 르완다 경제현황 청취
- 2.25. 외무차관 방문, 제30차 유엔총회와 관련한 문제 협의
- 3.3. 외무성 의전장 면담, 노신영 외무차관의 방문 일정 협의
- 4.13. 노신영 외무부차관 일행 공항 영접
- 4.15. 노신영 차관과 함께 외무장관 면담
- 5.10. 하뱌리마나 대통령 부인 주최 자선파티 참석

75-1198

공관활동보고 - 스웨덴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구1/경제협력
MF번호	O-45 / 12 / 1-43

1. 주스웨덴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보고지침에 따라 1975년도 대사관 업무 수행사항을 정무, 경제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주재국 현황 분석, 대사관 주요 활동사항 등과 1976년도 사업계획을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공관의 특수한 사정

- 공관 내 인적구성원 변동: 1975.8~9월중 공관장 경질, 3~8월중 참사관, 무관, 공보관, 총무담당관 등 교체
- 4월 일부 불순교포가 반정부 데모를 주동한 사건 발생: 이로 인해 6월중 교민 11명이 교민회로부터 제적
- 스웨덴에 입양된 고아수가 3,500명에 달하며 일시 중단된 입양이 10월부터 재개될 예정인바,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
- 스웨덴은 지정학적으로 공산권과의 대치가 심하고 북한은 대사관 및 공보관에 20여 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침투 노력을 전개 중이며 주재국 언론도 좌경화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

● 공관의 중점 외교활동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교섭: 주로 외무성을 상대로 한국입장 관철에 주력, 9월중 최규하 대통령 특사 방문으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 IPU(국제의원연맹) 회의 관련 교섭활동 강화
- 한국의 비동맹 가입추진과 관련한 측면지원 강화
- 친한인사 확보 및 친한단체 육성에 주력
- 대동구권 접촉 시도

공관활동보고 - 시에라리온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정보1
MF번호	O-45 / 13 / 1-65

1.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사항보고지침에 따라 1975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외교단 등 관계인사와의 접촉과 활동사항 리스트, 주재국 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상기 보고내용 중 1975.6월 김영주 대통령 특사 방문 관련 활동 사항, 주재국 반응 및 건의사항과 7월 방문한 민간무역사절단 활동사항,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건의사항(어업협력 및 이동진료차 원조 등 포함) 등이 수록됨.

3. 보고내용(1975년도)

- 3.18. 대사 부임 직후 외무장관 예방
- 4.22. 개발장관 방문
- 5.27. 윌리엄스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 5.31. 외무장관 예방
- 6.4. 외무성 정무차관 면담
- 6.19. 부통령 겸 수상 예방
- 6.25. 김영주 특사와 함께 대통령, 외무장관, 보건장관, 농업자원장관 면담
- 7.8. 교육장관 면담
- 7.9. 에너지전력장관 면담
- 7.28. 국회의장 방문
- 11.11. 스티븐스 대통령 예방
- 11.21. G. Borie 의원 외 2명 방문 접수

75-1200

공관활동보고 -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45 / 14 / 1-141

1.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사항보고지침에 따라 1974.12~75년도 대사대리의 정무, 경제, 영사 분야별 주재국 정부, 경제계 등 관계 인사와 외교단 접촉내용, 활동사항 리스트 및 주재국 정세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1.10. 대통령실 경제고문, 군사고문 및 외무성 사무총장 부처 초청 만찬
- 2.1. 외무성 사무총장 및 국제협력국장 면담, 북한의 도발에 관한 인식 촉구
- 2.6. 대통령실 사무총장 면담, 북한의 도발에 관한 인식 촉구
- 2.11. Ouedraogo 일간지 편집국장 면담, 북한의 도발에 관한 인식 촉구
- 3.7. 상공부장관 방문
- 3.12. 외무성 의전장 면담, 특사 방문 일정 협의
- 4.7. 청년체육문화장관 방문
- 4.11. 법무장관 방문
- 4.23. 노신영 대통령 특사 일행 영접
- 4.24. 노신영 특사와 함께 외무장관, 국가재건자문위원회 의장, 내무장관 등 면담
- 4.25. 노신영 특사와 함께 대통령 예방

공관활동보고 - 우루과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남미
MF번호	O-45 / 15 / 1-58

1. 주우루과이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사항보고지침에 따라 1975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경제계 등 각계 관계인사와 외교단 접촉 및 활동 요약 리스트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3.20. 신임 오윤경 대사 신임장 제정
- 4.2. 외무차관 및 정무국장 예방
- 5.7. 국방장관 방문
- 5.16. 해군사령관 방문
- 5.20. 상공장관 방문
- 5.27. 공군사령관 방문
- 8.21.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유엔에서의 협력 문제 협의
- 10.8. 산업회의소 회장 면담, 동인의 방한 일정 협의

75-1202

공관활동보고 - 월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5 / 16 / 1-72

1. 주월남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사항보고지침에 따라 1974.12월부터 월남 패망 직전인 1975.4.10.까지의 대사와 공관원의 정무 등 분야별 주재국 정부 등 관계인사와 외교단, 교민 접촉과 활동사항 리스트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5년도)

- 1.5. 최근 공산군 공세에 관한 외무성 브리핑 청취
- 1.17. 중국 행정원 부원장 환영 만찬 참석
- 3.7. 부수상 면담
- 3.10. 상원의원 면담
- 3.23. 부수상 관저에서 개최된 피난민수송관계 회의 참가
- 3.26. 수출진흥회의 주재
- 4.8. 외상 면담, 재월 한국거류민 문제 협의
- 4.10. 부수상 면담, 월남피난민 지원 문제 협의
- 4.10. 중국대사 면담, 재월 한국 및 중국거류민 문제 협의

공관활동보고 - 콩고민주공화국(구자이르)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정보1
MF번호	O-45 / 17 / 1-54

1.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이 본부 재외공관 활동사항보고지침에 따라 1973~75년도 대사와 공관원의 주재국 정부 등 관계인사와 외교단 접촉과 활동사항 리스트를 외무부에 보고함.

2. 보고내용(1974년도)

- 3.19. 외무성 국제협력국장 면담, 경제협정 체결 문제 협의
- 3.20.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면담, 유엔에서의 협력 협의
- 4.2. 세계은행 입찰담당 부국장 면담, 문교부 입찰공사 문제 협의
- 4.17. 외무성 정무 부국장 면담, 유엔 및 한반도 문제 협의
- 5.7. 카민다 아프리카기구 국장 면담, 아프리카기구 해방위원회 개최 문제 협의
- 6.27. 임명진 신임대사의 신임장 제정
- 7.4. 김용태 특사 일행 영접
- 7.6. 김용태 특사와 함께 모부투 대통령 예방
- 7.25. 이병희 특별사절단 영접
- 11.17. 경제사절단 영접

75-1204

김철우 재일본 교민 간첩사건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2010-83 / 15 / 1-205

1973~75년 중 일본 거주 교민 김철우 등 간첩사건 관련내용임.

1. 1973.6월 한국 정부는 11명의 간첩단을 체포하였으며, 간첩혐의로 체포된 김철우(북해도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일본 홋가이도대학 교수들이 7월에 대통령에게 석방 탄원서(800여명 서명)를 제출한데 이어 동경대학 생산기술연구소 교수 등이 12월에 대통령에게 석방탄원서를 송부해 옴.

2. 1974.4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김철우에게 1심보다 중한 징역 10년/공민권 정지 10년을 언도하였으며, 부인이 남편 면회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함.
   - 육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김철우 등 간첩단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문이 수록됨.

재외공관의 영사 및 재외동포 관련 업무 봉사자세 확립 시행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15 / 1 / 4-11

1975년 중 외무부가 교민에 대한 친절 등 영사업무 담당직원들의 봉사자세 확립을 지시한데 대하여 재외공관이 영사 및 재외동포 관련업무 봉사자세 확립지침 실시사항을 보고함.

75-1206

해외 유공동포 모국 방문, 1975.9.30.-10.5.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5 / 2 / 1-47

1. 해외 유공동포가 정부 초청으로 1975.9.30.~10.5. 모국을 방문함.

2. 외무부는 1975년 10.1. 국군의 날을 계기로 교포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수년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유공교포 6인을 초청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들 중 재일교포 3인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함.

재일본 한국인 서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5 / 3 / 1-88

정부가 1975년 중 재일교포 중에서 교민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하여 추천을 받아 국민훈장 동백장, 새마을 훈장, 문화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56명에게 서훈함.

75-1208

주오사카총영사관 청사건립 유공자(재일본 한국인) 서훈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5 / 4 / 1-442

정부가 1975년 중 주오사카총영사관 청사 건립에 기여한 재일교포에 대하여 서훈한 내용임.

1. 주오사카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은 1971.9월 총영사관 건립을 돕기 위한 기성회를 결성, 모금활동을 전개하여(10억 엔 모금) 1974.11월 신청사 완공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

2. 이에 정부는 오사카 교포들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하여 개인 107명, 단체 55개에 대하여 국민훈장 모란장을 비롯하여 각급의 훈장 및 표창을 1975.8.29. 수여함.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5 / 5 / 1-25

1975년 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 등록법 개정을 추진한 내용임.

1. 일본 정부가 1975.3.7 “허가인가 등의 정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동 법률안이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함.

2. 개정안에는 “재류자격의 변경 또는 재류기간의 갱신이 허가된 경우 입국 심사관이 당해 외국인이 소지하는 등록증명서에 새로운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을 직접 기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한데 대하여 주일본대사관은 신설조항이 재일 한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75-1210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5 / 6 / 1-40

1974~75년 중 한국 정부가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임.

1. 한국 정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종전 직후인 1945~48년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문서를 일본 정부로부터 입수하려고 교섭함.

2. 일본 근기지역 거류 한국인협의회에서 재일본 한국거류민단중앙회에 발송한 재일 한국인들이 겪는 차별대우(취업, 경제활동, 연금복지 혜택 등) 철폐촉구 건의서가 수록됨.

3. 외무부가 1975.5월 외부 강의용으로 작성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자료에는 한국인의 일본거주 역사, 국교정상화, 한국 체류민의 법적지위 및 실제적 차별, 지역별, 연령별 재일 한국인 현황, 법적지위협정에 의거한 협정영주허가 신청자격, 절차 및 처우, 그리고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현안문제, 국민등록(국적표시 문제), 외국인등록법 개정문제, 민단 등 재일 한국인 지도자의 역할, 민단이 당면한 과제 등이 수록됨.

일본 정부의 한국인 밀입국자 황정하 북한송환 조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5 / 7 / 1-57

1975년 중 일본 정부의 한국인 밀입국자에 대한 북한송환 조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임.

1. 1963년 일본에 밀항하여 거주하다 1974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오무라수용소에 수감 중이었던 한국인 황정하가 북송을 희망함에 따라 일본 법무부의 심의를 밟고 있다는 내용을 중앙정보부로부터 접수한 외무부는 동인의 한국 국적 소지 등 사유를 들어 동인이 북송되지 않도록 일본 당국에 교섭하라는 지시를 1975.2.1. 주일본대사관에 보낸 이래 계속적으로 한국 송환을 교섭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북한이 재일교포 북송을 간첩 루트화할 우려

2.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이 외무성과 법무성 관계자를 접촉하여 북송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였으나, 일본 법무성은 일본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자비로 출국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행선지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그러나 한국 측의 거센 압력에 직면한 일본 외무성은 한국국적 밀항자의 북송 시에는 한국 정부에 사전통보하겠다고 약속함.

3. 니가타항에 입항한 북한 만경봉호는 황정하 외 2명의 북송자를 태우고 1975.8.8. 출항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동인의 출발에 대하여 사전통보해 오지 않음.

4.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각서를 송부함. 일본 외무성은 1975.10.11. 답변각서를 보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국간 우호관계를 염두에 두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알려왔으며 일본 법무성 고위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강제송환문제 협의가 추진됨.

75-1212

재일본 한국인 북한송환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5 / 8 / 1-69

1974~75년 중 재일본 한국인 북송 관련사항임.

1. 재일본 한국인의 북한송환 현황

- 1959.8.13. 북송협정에 의해 1959.12.14. 제1차 북송 개시
- 1959~74년(1968~70년은 북송중단) 총 92,115명 북송
- 북송자 감소추세 원인
  - 북송희망자 대다수가 이미 북송
  - 북한이 북송자의 양적 증대보다는 북송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조총련 지도와 대남전략의 통로를 존속시키고 북송선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물자를 조달하려는 의도

2. 북송선 만경봉호

- 재일 한국인의 북한송환은 만경봉호를 통해 송환
- 만경봉호가 제172차 북송을 위해 1974.10.29. 니가타항에 입항

3. 북송선 인원

- 정기 북송선 취항은 250~300명의 북송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일·북한 적십자 간 합의
- 한국 정부는 1974.12.13. 일본 정부가 상기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여사한 일이 재현된다면 한·일본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항의
-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1975.1.11. 북송 희망자와 실제 북송된 인원 간 수적 차이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일·북한 양국 적십자사 간의 약정이 신청자 수에 따라 배선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표명

가나가와현(일본) 한국종합교육센터 설립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5 / 9 / 1-142

1973~75년 중 가나가와현 한국종합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함.

1. 주일본대사는 1973.5.10. 일본내 지역별 종합교육센터 건립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가나가와현 교포유지에 대한 본국 초청을 건의함.

2. 주일본대사는 1974.6.18. 상기 교육센터 기성회 간부진의 한국 입국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확보된 센터부지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부지변경과 이에 따른 부족액 국고보조 목적

3. 주일본대사는 1975.5.7. 및 8.7. 한국종합교육센터 건립추진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사업은 기 확보 부지내 건립, 여타 부지확보 방안, 주요코하마총영사관 부지내 건립계획 등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추진이 부진
- 최종적으로 요코하마 시내 기존 호텔을 매입, 보수계획 확정
  - 규모: 대지 약 1,725㎡,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건평 348평)
  - 매입금액: 1억9천2백만 엔(재원: 국고보조금 2,290만 엔, 기금 현지모금 1억6,900만 엔)
- 재단법인 설립추진
- 센터 명칭
  -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센터로 결정
- 개관 준비
  - 1975.12.5. 개관을 목표로 보수공사 착공
- 건의
  - 센터건립 유공자 포상(총 97명) 건의
  - 연간운영비(1976년 7만 달러) 국고보조금 예산조치 및 도서관 비치자료 등 수집

75-1214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관련 민원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5 / 10 / 1-23

1975년 중 재일본 한국인의 유골(遺骨)봉환 관련 민원(民願)에 대해 외무부가 조치한 내용임.

1. 제2차 세계대전 전몰인

- 보건사회부는 1975.4.10.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청원서 이송
  - 제2차 세계대전 시 전몰한 청원인의 동생 유골이 현재 일본국에 안치
  - 일본 후생성 유골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니, 일본국에 동 유골의 안치여부 확인 요망
- 외무부는 4.21. 주한 일본대사관에 상기 유골유무와 그 소재 조사를 요청

2. 일제 강제징용 사망자

- 민원인은 1975.1.17.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청원서 제출
  - 부친이 일제하에 강제징용 되어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사망, 그 유골 소재지를 확인해 줄 것을 진정
- 외무부는 1.17. 주한 일본대사관에 상기 유골유무와 그 소재 조사를 요청
- 주한 일본대사관은 7.20. 아래 내용을 외무부에 회신
  - 동인은 1945년 나가사키현 아카시마쵸에서 사망하였으나, 현재 아카시마쵸에는 한국인 유골이 1주도 발견되지 않아 동인의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확인 불가
- 외무부는 7.25. 상기 민원인에게 주한 일본대사관의 회신내용을 통지

미국 Los Angeles시 한국센터(Korea Center) 건립지원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15 / 11 / 1-27

외무부가 1975.10.23.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의 한국센터 건립과 관련, 주미국대사관 등 관련공관 보고내용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사항임.

1. 외국인에 대한 TV 방송국 허가문제

- 미국 정부는 외국인이나 외국정부 기관에 대하여는 TV 방송국 설립을 불허
-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기존 방송시간을 사는 것은 가능

2. 위치의 적합성 여부

- 한국센터 건립예정지인 LA 윌셔가는 시내로부터 산타모니카해변에 이르는 약 25마일에 달하고 있는바, 동 센터에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외환은행지점, 코트라사무소 등을 수용할 계획이라면 상업중심지에 위치해야 할 것이므로 그 대지의 지번이 6,000번지 이하로 되어야 함.

3. 현지교포의 동향 및 미치는 효과

- LA 올림픽가와 제8가에는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음.
  - 윌셔가에 한국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상품백화점을 운영하게 되면 코리아타운 측으로부터 다소의 반발이 예상되나, 한국센터는 현대화된 코리아타운의 이미지를 과시할 수 있는 동시에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대미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 한국센터 공영(公營)또는 민영(民營) 시의 장단점

- 공영 시 장점
  -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최초 수년간 과감한 시설투자 가능, 개인운영보다 국가이익에 부응, 대외 신인도가 높아 현지상사 등의 입주 촉진 가능
- 공영 시 단점
  - 운영이 관료화되어 개별입주자의 요망이 무시되는 경향, 기한부 임기제로 인해 관리인들의 책임감이 희박
- 민영 시 단점
  - 민간이 관리할 경우 이익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한국 각 기관의 상호협조와 대외적 이미지 선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인투자의 경우 자본반출에 따른 외자도피 등 잡음 발생의 가능성, 대외신용도가 부족하여 현지상사 등을 유치하기가 어려움 등

75-1216

주Los Angeles 한국교민회관 건립

생산연도	1972-1976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15 / 12 / 1-248

1972~76년 중 로스엔젤레스 한국교민회관 건립 관련사항임.

1. 주요 추진경위

- 1972.10.28. 건립위원회 구성 및 건립계획 수립
  - 50만 달러 규모의 독립건물 확보
- 1974.3.22.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 추진상황 보고
  - 10월까지 모금액이 20만 달러선을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1974.11월 재미 상공실업인단 대통령 예방시 지시
  - 대통령은 5만 달러 보조약속과 무역협회에서 별도 10만 달러 보조지시
- 1975.4.8.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 정부보조금 15만 달러 신청

2. 한국교민회관 구입

- 위치: 로스엔젤레스 시내 한인타운 중심가 S. Western Ave. 소재
- 규모: 콘크리트 4층 건물, 총 면적 16,200평방피트(약 460평)
- 구입가: 30만 달러
- 1975.10월 동 건물 인수
  - 무역협회 보조금 10만 달러 포함 총 21만 달러 지불, 소유권 취득
- 1975.10.22. 교민회관 개관식 거행
  - 한인회 단체장, 한인회 건립위 이사, 박영 총영사, 기타 교민 200여명 참석
- 1975.12.24.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 정부보조금 교부
  - 총 5만 달러중 3.2만 달러 한인회관 건립위에 우선교부
- 교민회관 건립위 총회 개최예정(1976.1.9. 한인회장단 취임 이후)

재사할린 동포 귀환관계 진정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5 / 13 / 1-71

1975년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 관련 진정서에 대한 외무부의 회신내용임.

1. 각종 진정서 접수

- 외무부장관 앞 진정서 접수(1975.8월)
- 사할린 억류 교포 귀환 한인회장의 각종 사할린교포 서한사본 접수(8월)
- 외무부장관 앞 진정서 접수(11월)

2. 상기 진정서에 대해 아래 요지로 각각 회신

- 사할린 교포의 귀환은 수많은 국내 연고자의 한결같은 희원(希願)임을 인식
  - 한국과 국교가 없는 소련과의 귀환 교섭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다수 국민들의 염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중임을 양지

3. 사할린억류한국인문제 연구소장의 대통령 앞 민원("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문제에 관한 요망서") 접수(1975.8월)

- 주일본대사의 동연구소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요지 서한발송

75-1218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5 / 14 / 1-200

1975년 중 외무부가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을 위해 각종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1. 일본·소련 외상회담 활용

- 외무부는 일본 외상의 방소(1975.1.15.~18.) 시 양국간 외상회담에서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 문제를 소련 측에 거론하도록 일본 측에 요청
- 일본 측 제기 시 소련반응 등
  -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동 문제는 원칙적 입장에서 일본·소련 간의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2. 재사할린 교포 귀환 희망자 명단(1975.2.10., 주일본대사 보고)

- 한국 귀환 희망 432세대 1,635명, 일본 귀환 희망 11세대 65명, 계 443세대 1,700명 (1974년도)

3. 재사할린 교포 한국인(1975.5.2., 주일본대사에게 통보)

- 일본은 재사할린 교포의 한국귀환 시 한국이 이를 인수하겠다는 사전동의를 요청

4. 재사할린 교포 개별송환 문제에 관한 일본 외무성 방침(1975.7.28. 및 8.9., 주일본대사 보고)

- 일본 정부는 개별적으로 입국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
- 귀환 희망 사할린 거주 한국교포로부터 일본입국을 위한 도항(渡航)증명서 발급신청을 주소련 일본대사관에서 접수할 방침
- 한국 측은 일본 측에 동 문제의 조속하고 성의있는 해결을 촉구
  - 일본 측도 동 귀환문제는 전후처리 문제의 하나로 조속 해결되기를 희망

5. 일본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1975.12.8., 주일본대사 보고)

- 사할린 소송 변호인단은 1975.12.1. 사할린 억류 한국인 4명의 위임을 받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 제2차 대전 중 일본 정부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연행된 한국인의 귀환촉진이 목적

월남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문제. 전2권 (V.1 4-8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15 / 15 / 1-366

1975.4~8월 중 월남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 관련사항임.

1. 1975.4.30. 월남 패망에 따라 외무부는 주태국대사관 등을 통해 월남에 잔류한 한국 공관원 및 동포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각종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 4.30. 현재 한국대사관 직원 9명, 교포 약 130명이 사이공에 잔류중
- 재월남 한국인 현황 파악(6.8. 현재)
  - 한국인 159명(공관원 8명 포함), 월남인 처 등 가족 248명

2. 외무부는 1975.6.16. 월남잔류 한국교민의 귀국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기본지침
  - 월남잔류 교민이 공산월남 정부로부터 출국허가 시 본국송환 및 제3국행 허용
- 시행방침
  - 사이공-방콕 항공료 자담 또는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부담 무료탑승이나 한국 정부 부담
- 귀국후 조치
  - 국내주소 확실시 귀가, 기타는 별도수용, 월남계 가족 동반자 별도수용

3. 외무부는 1975.8.6. 재월남 한국인 귀환대책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수립함.

- 경위
  - 프랑스 정부는 7.28. 재월남 프랑스인의 출국을 위한 전세기 운항 시 한국인 탑승 용의 표명
  - 한국은 한국인과 외국인 가족(총 344명)의 철수를 위한 항공료 지불 용의 표명
- 관련 조치
  - 항공운임 등 약 11.3만 달러(추정치) 1975년도 정부 예비비에서 충당

4. 외무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1975.8월 중앙통제대책본부를 구성함.

- 목적
  - 월남 귀환교민의 수용, 심사, 구호, 홍보, 교육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협의 수행
- 외무부 조치사항
  - 입국전 수송 소요경비지출 등 제반사항
  - 제3국 도착시부터 입국까지 송환인원 보호, 접촉자 통제 등 필요한 보안대책

75-1220

월남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문제.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15 / 16 / 1-314

1975.9~12월 중 월남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 관련사항임.

1. 1975.4.30. 월남 패망에 따라 외무부는 주태국대사관 등을 통해 월남에 잔류한 한국 공관원 및 동포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각종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 한국 공관원 및 동포의 출국상황 수시 확인 및 철수노력 전개
  - 10.3. 한국 공관원 8명 잔류, 이중 이대용 공사 등 3명 구속중
  - 교민 155명, 한국인 가족 월남인 185명 잔류(출국자는 누계 381명)

2. 외무부는 1975.10.28. 사이공잔류 공관원 구출 및 가족생계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공관원 구출
  - 교섭 기본지침: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주축으로, 유엔당국 특히 UNHCR(유엔난민기구) 및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측에 측면지원 요청
- 잔류가족 생계대책
  - 국내가족에게 보수 등 지급

3. 외무부는 1975.12.30. ICRC를 통한 사이공잔류 외국인 철수 동향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ICRC 측이 최근 주제네바 미국대표부에 사이공잔류 외국인 수송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주한 미국대사관이 12.29. 외무부에 전달)
  - 사이공 당국이 ICRC를 통해 재월남 외국인 6천 명의 철수에 동의(이중 한국인은 360명 내외)
  - ICRC 측은 1976.1.1.까지 스위스항공 전세기편을 이용, 3회에 걸쳐 600명의 외국인을 우선 철수시키고 1월 이후 수송능력이 적은 수송기를 이용하여 전세 수송을 계속할 예정
  - 그간 월남잔류 한국인 및 월남가족들은 프랑스 전세기편으로 사이공을 철수중인바, 상기 ICRC를 통한 한국인 철수에 관해서는 별도 건의예정
- 한국인 잔류현황
  - 1975.11.29. 현재 사이공잔류 한국인은 공관원 8명 및 교민 84명
  - 잔여 약 280여명은 월남가족인 것으로 추정

재월남 동포 철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16 / 1 / 1-307

주월남대사는 1975.4월 월남 사태의 악화 등 긴급상황 전개에 따라 재월남 동포현황 및 철수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조치를 시행함.

1. 주월남 교민현황 보고(1975.3.30. 현재)

- 교민 861명(이중 사이공 거주 667명), 기 철수자 20명

2. 주월남대사관 주최, 재해지구 교포 피난민 긴급구호대책 협의(1975.3.31.)

3. 미국 등 여타공관에 한국민 철수에 관한 협조요청(1975.4.2.)

4. 월남 외무장관을 면담, 한국 교민 및 가족의 철수를 위한 출국수속 및 항공기 등 기항문제 협조요청(1975.4.8.)

5. 외무부, 재월남 일반교민 철수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1975.4.16.)

- 재월남 국민현황(1975.4.13. 현재): 월남인 가족 및 2세 포함 총 1,547명
- 철수를 위한 수송수단
  - 일반교민: 자비철수를 권고, 무능력자는 LST(긴급구호품 수송선박) 이용 철수

6. 외무부, 공관직원 단계적 철수 훈령(1975.4.23.)

- 공관의 업무량, 현 사태의 긴박성을 감안, 대사 재량으로 단계적 철수실시

7. 주월남대사, 철수현황 보고(1975.4.28.)

- 대사 등 잔류인원 전원철수 계획이었으나, 항공기 준비지연으로 계속 대기중

8. 주월남대사, 철수현황 추가보고(1975.4.28.)

- 잔류 한국인 현황
  - 제3국 출국 또는 출국 예정자 약 200명

9. 주월남대사, 공관 임시폐쇄 보고(1975.4.29.)

10. 해군 LST 월남피난민 철수작전 완료(1975.4.9. 부산출항, 5.13. 부산입항)

- 2개선 총 1,335명 수송(월남 피난민 포함)

75-1222

재월남 동포철수시 기착(체류)국가 동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16 / 2 / 1-158

1975년 중 월남 동포 철수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4.5. 태국, 중국, 필리핀, 일본, 홍콩 등 관련공관에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월남에서 철수하는 한국인이 귀지에 기착 또는 체류시 주재국 당국에 대한 제반수속 등 필요한 편의 제공

2. 상기 훈령에 따라 주하갓냐총영사, 미국지역 총영사, 주필리핀대사 등 관련공관은 1975.4월 이후 재월남 동포의 주재국 철수현황을 수시로 보고

3. 기타 관련동향 보고

- 괌 도착 난민현황(1975.5.7., 주하갓냐영사 보고)
  - 당지 미 해군당국 발표에 의하면 5.6 현재 하갓냐 수용 난민수는 약 3만 여명
  - 5.7. 3척 선박탑승 난민 1만5천 명 도착예정, 이후 주말까지 약 7천 명 추가 입항예정
- 필리핀 정부의 월남 피난민 상륙 불허방침(5.2., 주필리핀대사 보고)
  - 키 월남 수상 등 정부고관을 포함한 피난민들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이들의 상륙을 불허할 방침
  - 모든 피난민은 미국 영토까지의 수송을 조건으로 필리핀 기착 및 기항 허가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싱가포르 기항 불허방침(5.11., 주싱가포르총영사 보고)
  - 월남 피난민 수송선의 싱가포르 기항 불허방침으로 거의 퇴거

김창근 주월남 2등서기관 탈출수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2007-66 / 11 / 1-123

1975년 중 김창근 주월남 2등서기관의 탈출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5.8. 주싱가포르총영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사이공 함락(1975.4.30.) 후 월남에 체재하다 싱가포르로 탈출한 김창근 주월남 2등서기관의 탈출시의 상황(탈출일시, 철수당시까지 잔류 공관원 현황 등)을 긴급보고

2. 주싱가포르총영사는 1975.5.8. 김창근 서기관의 월남 탈출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진술내용을 보고함.
   - 1975.4.28.부터 탈출을 시도한 과정, 최종적으로 롱하이(붕타우 북쪽)해안에서 선박을 이용, 5.8. 싱가포르항에 도착,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후 주싱가포르총영사관과의 접촉 등 일련의 상황을 일자별로 기술

3. 주싱가포르총영사는 1975.5.17. 김창근 서기관의 사이공 출발, 싱가포르 도착까지의 경위(본인의 상세 진술서)를 보고함.
   - 1975.3월초 월남 공산군의 공세 시작부터 5.3. 사이공을 떠난 시점까지의 주월남대사관 직원 동태도 포함

75-1224

재외국민단체 창설 및 활동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16 / 3 / 1-7

1975년 중 재외국민단체 창설 및 활동 관련사항임.

1. 1975년도 한인회 정기총회 결과(1975.8.20., 주시드니총영사 보고)

- 일시 및 장소: 1975.8.16. 주시드니총영사관
- 주요 의제
  - 회장 경과보고, 재무보고, 회칙 개정안 상정, 임시의장 선출, 신임 의장단 및 임원 선출 등

2. 재베네수엘라 한국교민회 창립(1975.10.1., 주베네수엘라대사 보고)

- 재베네수엘라 한국교민회 창립총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75.9.28. 카라카스 시내 식당
  - 참석인원: 21명(재베네수엘라 한국 국민 중 만 21세 이상의 성인, 단 대사관원 및 코트라 직원과 그 가족은 제외)
- 주요 의결사항
  - 재베네수엘라 한국교민회 설립
  - 회장단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총무 각 1명 선출
  - 회칙심의위 구성: 회장단이 회칙심의위를 대신하여 회칙을 심의하기로 의결

반한단체 및 재외동포의 반한활동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16 / 4 / 1-32

1973~75년 중 반한단체 및 재외동포의 반한활동 관련사항임.

1. 캐나다
- 반한시위(1975.10.18., 주토론토총영사 보고)
  - 토론토 Amnesty International은 양심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 주간(10.12.~19.)인 1975.10.14. 시청광장에서 정치범 석방을 호소하는 촛불행진 거행

2. 아주지역
- 반한시위 거행(1974.7.22., 주홍콩총영사 보고)
- 반정부 교민단체 또는 불순교민 동향보고(1975.7.21., 주말레이시아대사 보고)

3. 구주지역
- 반정부 교민단체 또는 불순교민 동향보고(1975.7.16., 주벨기에대사 보고)
  - 반정부 교민단체는 없으나, 소수 문제학생에 대해 수시접촉 또는 한인회를 통해 선도
- 반정부 교민단체 또는 불순교민 동향보고(7.18., 주네덜란드대사 보고)
  - 최근 인접국 체류 반정부적 교민단체 및 친북한단체 등으로부터 불순 유인물이 수차 유입. 교민선도활동을 강화중
- 교민선도 및 대민 업무활동(7.29., 주서베를린총영사 보고)
  - 반국가적 불순분자: 정철재, 윤이상 등 6명
  - 반정부적 불순분자: 정하은 등 2명

4. 중남미지역
- 구정(舊正)기간 모국방문단 일원 중 1명이 반정부인사 중심인물의 처임.(1975.1.27., 주상파울로 영사 보고)
- 교민회장 선거패배 측이 재야한국인 청년회 등을 구성, 반교민적 활동전개(7.20., 주아르헨티나대사 보고)

5. 중동아프리카지역
- 북한대사관 직원, 한국의사 자택방문(1973.10.15., 주우간다대사 보고)

75-1226

재일본 반한단체 동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교민1
MF번호	P-16 / 5 / 1-52

1975년 중 재일본 반한단체 동향임.

1. 주일본대사는 1975년 일본내 반한단체 동향을 수시로 보고함.

- 구한청(베트공파)의 일한청년 우호연대를 위한 집회개최(1.19.)
- 구한청 및 한민통계의 국민투표 반대집회 개최(2.2. 및 2.12.)
- 민청학련 피고 항고기각 판결 반대데모 거행(4.8. 및 4.9.)
- 일본 반한단체 집회 및 시위예정(4.19., 주오사카총영사 보고)
- 긴급조치 철폐 및 정치범 즉시석방 촉구 데모(4.19.)
- 통혁당 재일 한국인 연대위원회 결성(5.12.)
- 반정부시위 개최(7.3.)
  - 재일 한국학생동맹 등 반한단체가 7·4 공동성명 역행정책 반대, 김지하 석방, 긴급조치 철회 등을 촉구

2. 친북 반한단체 명단

- 단체 결성일, 목적, 활동방침, 구성, 연혁 및 주요활동 현황
  - 일조 협회
  - 일한 연대 연락회의
  - 일조 학생연대 위원회
  - 주체사상연구소조
  - 일본 총평

3. 일본내 한국관계 연구단체(1975.11월 현재)

- 친한단체
  - 동경 한국연구원, 국제관계공동연구소, 신학술연구회, 한국사료연구소
- 친북단체
  - 일조연구소, 일조 사회과학자 운영위원회
- 중립단체
  - 조선학회, 코리아평론사

재일본 조선인 민주화 촉진연맹(조민련) 결성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교민1
MF번호 P-16 / 6 / 1-36

1975년 중 조민련 결성 관련사항임.

1. 재일본 조선인 민주화 촉진연맹(조민련)은 1975.1.2. 동경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아래 요지의 선언문을 발표함.

-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은 공화국 북반부 지도자의 앵무새가 되었고, 북반부는 재일동포들에게까지 충성을 강요
- 지난 5년간 조총련의 지부 간부 등 3천 명이 이탈, 조선대 출신의 60% 이상이 조총련 조직에서 이탈
- 총련과 민단은 각각 100명씩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 남북에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

2. 주일본대사는 1975.3.17. 상기 조민련 결성 관련 아래 보고함.

- 조총련은 그간 계급파(한덕수계)와 민족파(민족대책협의회 계열) 간 대립이 계속
  - 조총련내 좌천세력이 동 민족파와 합세, 조민련을 결성한 것으로 조총련내 헤게모니 쟁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당지 관측통에 의하면 동 조직은 북한의 강권주의 유일체제 노선과 조총련의 맹목적인 충성의 혁신운동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지양한다고 자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조민련은 1975.5.8. 김일성의 전쟁도발 준비행위를 규탄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한에 대해 아래사항을 요구함.

- 전쟁준비의 즉시 중지, 양 수뇌자 단독평화회담의 즉시 개최, 전쟁도발 책동 등을 감시할 남북인민대표자 공동감시위 즉시 구성, 남북조절위원회의 즉시 재개, 군사력의 공개와 군비축소회담의 즉시 개최

4. 조민련은 1975.5.20. 조총련 결성 20주년을 계기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 혁신운동과 노예적 맹종체제를 배격하고 그의 죄과를 재일 전체동포에게 사죄하라는 성명을 발표함.

75-1228

전향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6 / 8 / 1-24

1975년 중 전향교포가 한국을 방문함.

1. 주오사카총영사는 1975.4.1. 전향교포의 한국 방문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오사카 민단은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로부터 전향한 자 가운데 국민등록을 필하고 민단에 가입한 인원(32명)에 대한 한국 단체방문을 요청해 왔으며, 아래 방문목적의 의의 등을 인정하여 방문이 실현되도록 건의
- 목적
  - 조국 발전상을 보임으로써 완전한 전향을 촉구
  - 귀임후 민단원으로서의 활약 기대
- 단체 인원의 성분
  - 대부분 조총련계의 주요 역직을 지낸 자는 없으며, 최근까지 조선 국적을 갖고 있던 자와 자녀가 조총련계 학교출신자로 구성
- 주요 희망일정
  - 국립묘지 참배, 남산 등 시내관광, 경복궁 및 박물관 시찰
  - 포항제철, 현대조선 등 산업시찰

2. 외무부는 1975.4.8. 상기 전향자 단체 한국 방문을 허가함.

3. 주오사카총영사는 1975.6.21. 오사카 관할 거주교포 중 조총련계 전향교포 제2진 모국방문단(29명)이 6.24. 귀국예정임을 보고함.

4. 동아일보는 1975.6.25. 상기 조총련계 전향교포 모국방문단 관련 아래와 같이 보도함.

- 재일본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향, 모국을 방문 중인 재일동포들이 6.25. 자유센터에서 간담회 개최
  - 조국의 놀라운 발전에 감명을 받았다, 6.25를 남한이 도발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
- 이들은 대부분 동경에서 조총련의 간부나 맹원으로 활약하다 거류민단 동경지부로 전향한 자들임.

조총련 결성 20주년 기념행사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6 / 9 / 1-101

1975년 중 조총련 창설 20주년 기념행사 관련사항임.

1.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은 1975.5.25.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계획함.

- 행사내용
  - 창설 20주년 기념식(5.25., 동경 조선문화회관) 및 리셉션(5.24.)
- 특히 창설 20주년 기념식에 베트남,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54개국 친북한 단체, 인사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피초청자의 일본입국을 허가하도록 일본 정부당국에 압력

2. 외무부는 1975.5.7. 주일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일본 정부가 이들 친북한 분자들의 조총련 행사참석을 위한 입국을 허가한다면 이는 다나카 친서 및 시이나 각서의 조총련 반한활동 및 정치활동 규제 공약에 위배되는 처사임을 지적, 일본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청

3. 주일본대사는 조총련 창설 20주년 기념식 개최 등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75.5.25. 동경 조선문화회관에서 동 기념식 개최, 일체의 외국인은 불참
  -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대립현상이 상존하는 현재 조총련의 외국인 초청에 대해 일본 국가 이익 및 공안상의 이유로 일체 입국을 불허
- 6.26. 동경 제국호텔에서 기념 리셉션 개최
- 한덕수 조총련 의장은 조총련 창립 20주년 계기 아래내용의 기자회견
  - 재일 조선인의 당면문제, 조총련의 금후활동, 최근 김일성 방중과 관련된 북한의 금후 외교정책, 금년 가을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전망, 한국 통일문제, 금후 일본·조선 관계 등
- 기타 일본지역 각 지방에서도 유사한 경축행사 거행

4. 외무부는 1975.5.30. 주인도네시아 등 남북한 대치공관에서 북한공관이 조총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지 조사함.

- 총 31개 대치공관 중 15개 공관에서 기념 리셉션 등 행사개최

75-1230

조총련 동향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교민1
MF번호	P-16 / 10 / 1-245

1975년 중 조총련 동향 관련사항임.

1.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열성자대회(1975.1.10., 동경 조선문화회관)

- 한덕수 의장이 1974년도 사업결과를 종합보고, 1975년도 활동방향 지시

2. 일본에 있어서의 조총련 및 북한의 대남 간접침략의 양상과 이에 대한 규제강화 문제(1974.10월 오윤경 주일본대사관 서기관 작성 연구논문)

- 조총련 개황, 조총련 및 북한의 대남공작활동 양상
- 조총련 활동의 불법화 및 규제강화 문제

3. 조총련 활동현황(1975.4월 현재)

- 조직: 중앙본부(동경), 13개 중앙전문국, 49개 지방본부, 14개 산하학교
- 북한의 교육 원조자금: 총 58회(1957~74년) 184억 엔, 1974년 총 6회 37억 엔
- 조총련의 공작목표: 조국통일혁명 완수, 민족권리 옹호, 북한에의 기여
- 조총련 당면과제: 한국 정부 전복, 한·일본 간의 이간책동, 한국의 국제적 고립화, 한국으로부터의 유엔군 철수,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지원

4. 조총련에 대한 김일성 교시(1975.6월, 주후쿠오카총영사 보고)

- 총 26회(1971~75.6월말) 교시
  - 최근 한국내의 반정부 운동을 배경으로 조총련 조직의 혁명적 체제강화 지시 등 내용
  - 조총련은 동 교시를 강령적 지침으로 보고 실천에 노력

5. 조총련 제10기 제4차 중앙위회의(1975.11.28.~29., 주일본대사 보고)

- 조총련 집행부 및 관련 산하단체 대표 등 참석
  - 한덕수 의장의 총련 조직강화 및 조국통일사업 집중에 관한 의장보고
  - 노동당 창당 30주년 김일성 교시와 총련 20주년 김일성 교시를 철저히 관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조총련계 인사 북한 방문 및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6 / 11 / 1-129

외무부가 1975년 중 일본 측에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인사들의 북한 방문과 일본 재입국 허가에 관해 수시로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함.

1. 일본 법무성은 조총련계 인사들의 일본 재입국 허가

- 조총련 간부 북한 방문(1974.12월), IPU(국제의원연맹) 회의 참가(1975.4월, 스리랑카), 조국해방 30주년 기념 북한 방문단(1975.8월), 북한창건기념행사 참석, 한덕수 의장 북한 방문(1975.9월), 조총련학자 북한 방문단(1975.10월), 재일 조선인 출판 관계자 북한 방문단(1975.11월)

2.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수시로 일본 측에 주의환기 및 항의

- 조총련 간부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반한활동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성질의 것이며, 이는 정치적 교류는 불허한다는 일본 정부의 종래 방침과 상이
- 조총련의 정치성을 띤 국제회의 참가는 조총련이 북한 정부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결과이므로 불허요망

3. 일본 법무성, 외무성 등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아래 요지로 대응

- 단순한 기념행사 참석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입국 허가
- 친족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북한 방문은 개별적으로 재입국 허가
- 남북한이 동시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기구인 IPU 회의 등 참가를 저지하기는 곤란

4. 일본 측 의도 및 한국 측 대응방안

- 일본 측 의도
  - 일본·북한 간 공식접촉 운운보도로 북한에 대한 공식적 접촉을 쌓아 한국에 대해 이를 기정사실화,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묵시적 승인관계 유지
  - 조총련 소속원의 북한 방문에 대한 원칙적 제한을 점차 철폐하고 조총련을 사실상 북한대표 기관으로 인정
- 한국 측 대응방안
  - 일본 측에 엄중항의 등 강력한 외교적 조치와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1975.9월)에서 중대 문제로 제기하여 한국입장을 강력히 반영하도록 노력

75-1232

조총련계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6 / 12 / 1-123

1975년 중 조총련계 재일교포 모국 방문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5월 조총련계 및 중립계 재일교포의 성묘를 위한 모국방문 허용계획을 수립함.

- 목적
  - 재일교포로서 아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조총련계 및 중립계 교포들에게 고향 방문, 친척 상면 및 성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총력안보체제의 공고화에 기여
- 기대효과
  - 조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게 하여 조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조총련을 통한 북한의 선전이 허위, 왜곡된 것임을 실감하게 함으로써 조총련의 세력을 약화
- 시행시기
  - 가급적 조속히 시행, 늦어도 추석(9.20.) 2개월 전에 시행
- 관련조치
  - 주일본대사가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 및 재결합이라는 정부의 인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한다는 성명발표

2. 재일거류민단은 1975.7.3 조총련계 동포 모국방문계획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합동회의 결의에 따라 동 모국방문 권유운동을 적극 추진함.

- 9월 추석 성묘단을 구성, 대거 모국을 방문하도록 각급 민단조직을 통해 권유운동 전개

3. 조총련계 추석 성묘단(조총련계 615명을 포함한 총 722명)은 1975.9월 상기 계획에 따라 방한함.

- 주요 방한일정
  - 환영대회 참석 및 고향방문
  - 현충사, 포항제철 및 울산공업단지 등 시찰

4. 재일거류민단에서는 1975.11월 조총련계 교포의 제2차 모국방문단을 구성 방한을 추진함.

- 목표인원: 650명
- 일정
  - 산업시찰, 관광 등 공식일정(4박5일)외 고향 방문 및 성묘 등 개별일정은 각 지방본부별로 일임

호주 이민 추진

생산연도 1964-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2008-82 / 16 / 1-97

정부는 1964~75년 중 호주 이민 추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1. 대통령은 1964.12.21. 대호주 이민 가능성 조사를 외무부에 지시함.

- 주호주대사는 1965.3.3. 호주의 백호주의(白濠主義) 정책에 의해 현재로서는 아시아인의 이민이 불가능하다고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차관은 1967.6.2. Snedden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함.

- 한국인의 호주 고용이민 가능성 문의에 대한 호주 측 답변
  - 현재 계약 고용이민은 불가능하며, 영주목적의 이민은 환영함.

3. 호주의 이민정책(1968.7월 외무부 작성)

- 개요
  - 새로 이민령으로 개정되었으나,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는 불변
- 백호주의의 이론적 근거
  - 정치적 이유: 호주의 정치제도에 동화될 수 없는 비유럽계 이민을 배척
  - 사회문화적 이유: 동질사회와 공통된 문화적, 종교적 유산을 향유하고 있는 호주에 동화될 수 없는 이질적 인종의 배척
- 현 단계 대호주 이민통로
  - 이민 쿼터설정이나 계약 고용이민은 불가, 교포 대호주 이민은 개별적으로 추진

4. 한국인의 호주 이민 전망(1970.7.24. 및 10.1., 주호주대사 보고)

- 대아시아인의 이민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백호주의의 결정적 변경은 요원

5. 이민 정책에 관한 Gorton 호주 수상 발언(1970.10.20., 주호주대사 보고)

- 호주가 백인 선호의 제한된 이민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6. Egerton 호주 노동당 부총재의 보사부장관 면담(1974.7.11.) 시 발언요지

- 호주 정부는 백호주의 지양
- 이민법 개정추진
  - 1974년중 11만 명의 이민접수 계획

75-1234

브라질 잠업(양잠) 이민 추진

생산연도	1974-75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08-83 / 10 / 1-260

정부의 1974~75년 중 브라질 잠업 이민 관련사항임.

1. 추진 경위

- 1973.3월 한·브라질 실무자회의시 제1차 200세대 송출합의

2. 추진 계획

- 목적
  - 집단 양잠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민을 통한 한·브라질 간 정치적, 경제적 유대강화
- 이민여건 및 전망
  - 영농의 적격성: 기후 및 토지 적격
  - 경영 및 수확: 잠실(蠶室) 건축비 저렴, 연차별 예상소득은 세대당 1,100~4,500달러 순수입

3. 주요 추진현황

- 1974.2월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 양측 정착경비 부담: 한국 측 토지구입비 등 약 34만 달러, 브라질 측 농지조성 및 기반시설 확보용 약 245만 달러
- 1974.3월 시당국과 토지소유주 간에 1alq당 약 493달러로 가계약 체결
- 1975.4월 한국 측의 토지매매계약 위반 등 무성의한 태도로 토지소유주의 불신초래
- 1975.4월 경제장관간담회
  - 브라질 이민을 위한 토지매입비(800만 평 37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1.7억 원을 해외개발공사에 융자하고, 다음 예산편성시 정부출자로 전환
- 1975.6월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상기 토지매입비를 1976년 예산에 계상되도록 요구서 제출

4.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

- 토지구입비 상승
  - 가계약 당시 1alq당 493달러인 토지가가 급상승(1alq당 1,000달러)하여 예산상 추가부담 불가피
- 예산확보 등 문제로 인한 한국 정부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잠업이민 추진계획이 지연
- 최근 중남미경제사절단도 동 사업이 향후 양국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조속한 해결을 건의

중국(구 중공)의 한국어선(제601수덕호) 나포사건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P-16 / 13 / 1-37

1975년 중 중국(구 중공)의 한국어선 나포 관련사항임.

1. 사건발생 경위(1975.5.25. 수산청 당국 통보)

- 한국어선 제601수덕호가 1975.5.25. 오전5시 소흑산도 서남서방 130마일 공해상에서 기관 고장이라는 신고후 당일 오전5시10분 중국(구 중공)어선 2척에 의해 남서쪽으로 예인되고 있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연락두절 상태

2. 외무부는 1975.5.25. 주일본대사에게 일본 외무성을 접촉하여 상기 사실을 북경당국에 알리고 수덕호의 행방과 동 선박 및 어부상태에 관해 지급 확인요청을 지시함.

3. 주일본대사는 1975.5.29.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관 언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북경 일본대사관의 Hu 중국 교통부 항무감독국 부소장과의 면담 결과
  - 한국어선이 순전히 기관고장에 의해 중국어선에 연행되었을 경우, 선체 및 선원은 송환
  - 해난구조 이외의 이유로 연행되었을 경우, 중국의 주권 및 중국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체 및 선원 처벌

4. 수덕호 귀환(1975.5.30.)

- 1975.5.27. 중국어로 보호선에서 선장 등 3차례 심문
  - 영해 불법침범 각서를 징구
  - 아울러 중국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지를 요구
- 5.28. 오후2시10분 추자도 서남서방 150마일 공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부터 한국어선에 인수되어 오후2시30분 여수항으로 예인 항해, 5.30. 여수항에 귀환
- 해경 여수지구대에서 선원 전원수용, 어선 정밀수색과 선원 합동심사 실시

5. 외무부는 1975.6.4. 내무부, 농수산부에 황해, 동지나해에서 중국 측에 의한 한국어선 피납 또는 중국어선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어민들에 대한 지도계몽 강화를 요청함.

75-1236

주교황청(구 바티칸)대사관 영사업무 취급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P-16 / 14 / 1-21

1975년 중 주교황청(구 바티칸)대사관의 영사업무 관련사항임.

1. **주교황청대사는 1975.11.15. 교황청 발급 여권소지자에 대한 비자발급 및 기타 교황청 국서에 대한 확인행위 등 한정된 영사업무 취급을 허가해 주도록 외무부에 건의함.**
   - 주교황청대사관은 1975.10.22. 교황청 국무성으로부터 한국 상주공관이 개설되었음에도 교황청에서 발급한 여권소지자에게 비자발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라는 Memorandum 접수
   - 교황청은 실제상 입출국자에게 입출국 비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황청 재외공관에서 비자 업무 미취급

2. **외무부는 1975.11.17. 주교황청대사관에서도 교황청 발급 여권소지자에 대한 비자발급 및 기타 교황청 국서에 대한 확인행위 등과 같은 영사업무를 취급하도록 결정함.**
   - 현재 주교황청대사관은 교황청이 공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비자를 발급
     - 여타 교황청 여권소지자에 대한 비자발급 등 일체의 영사업무는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취급중임.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6 / 15 / 1-67

1975년 중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관련사항임.

1. 주일본대사 및 일본지역 각 총영사는 1975년 일본에 밀입국한 한국인의 강제송환 내역을 외무부에 수시로 보고함.

- 주나고야총영사, 밀입국자 1명 강제송환(5.31.)
- 주오사카총영사, 오사카 출입국관리소의 한국인 밀항자 일제단속 상황 보고(7.1.)
- 주후쿠오카총영사, 밀항자 체포 33명중 10명 구치소 탈주 보고(10.13.)
- 주후쿠오카총영사, 밀항자 3명 체포 보고(11.1.)
- 주일본대사, 일본 외무성의 한국인 밀항 브로커 처벌요청 보고(11.29.)

2. 한·일본 양국은 1975.12.2. 한국인의 일본 집단밀항 관련 아래와 같이 협의함.

- 일본 측은 한국내에 조직적인 밀항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한국 측에서 동 밀항 브로커에 대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일본 측 수사결과 통보
- 한국 측은 밀항자 단속을 강화중에 있음을 강조
  - 집단밀항자 방지를 위한 사전 정보교환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데 동의

3. 일본 외무성은 1975.12.19. 주일본대사에게 오사카 집단밀항자의 개별송환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오오무라수용소 수용인원이 260명에 달해 더 이상 수용이 어렵고, 오사카 입관수용소 역시 수용시설 관계로 장기수용이 불가능한 사정
- 1975.11.10.~16. 오사카에서 검거된 집단밀항자중 강제 퇴거령이 발부된 29명은 단순밀항자이므로 제78차 집단송환과는 별도로 가급적 조속히 연내 송환되도록 협조 요청

4. 내무부는 1975.12.30. 외무부에 상기 일본 측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1975.11월 오사카 검거 집단밀항자중 강제퇴거명령 발부자(29명)에 대해 양국 협조체제 유지차원에서 차기 송환과는 별도로 개별송환의 선례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수락

75-1238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76-77차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6 / 16 / 1-317

한·일본 양국이 일본에 밀항중 체포되어 오오무라수용소에 수감중인 한국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제송환을 실시함.

1. 제76차 송환

- 송환일정
  - 1975.3.11. 오오무라수용소 영사면접 심사
  - 1975.3.18. 일본 법무성과의 예비절충
  - 1975.3.22. 일본 외무성은 법무성과의 중앙절충
  - 1975.4.4. 송환선 출발
- 송환대상자
  - 한국 측은 송환대상자 총 239명 중 제75차 송환보류자, 협정영주 허가자, 협정영주권 해당자 및 가족 등 43명 제외를 요청
  - 한·일본 양측은 일본 법무성과의 예비심사, 외무성 및 법무성과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강제송환대상자에 대한 최종심사를 실시
  - 최종송환자 202명 확정(송환보류자 38명, 자비귀국자 3명은 제외)

2. 제77차 송환

- 송환일정
  - 1975.8.13. 오오무라수용소 영사면접 심사
  - 1975.8.22. 일본 법무성과의 예비절충
  - 1975.8.29. 일본 외무성은 법무성과의 중앙절충
  - 1975.9.10. 송환선 출발
- 송환대상자
  - 한국 측은 송환대상자 총 237명중 75명의 송환보류를 요청
  - 일본 법무성과의 예비절충 결과 총 송환대상자 중 보류 64명, 송환대상 173명 잠정확정
  - 일본 측과의 중앙절충 결과 총 송환대상자 237명 중 송환보류자 61명, 자비귀국자 1명 제외, 송환대상자 175명 최종확정

3. 협정영주권자 강제송환

- 주일본대사는 1975.10.7. 협정영주권자 1명에 대한 영주귀국 허가여부를 외무부에 문의
- 법무부는 10.14. 국내연고자 부재 및 협정영주권자 귀국의 선례를 구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계속잔류 의견을 회신

● 일본 측 입장
  - 법적지위협정 3조D항 해당자로 강제송환 대상이며, 인도적 고려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송환 주장

● 법무부는 12.11. 주일본대사 건의와 외교적 측면을 고려 동인의 영주귀국 허가의견을 회신

75-1239

한국 수용 월남난민의 재정착 교섭

생산연도	1975-1976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16 / 17 / 1-331

1975~76년 중 한국 수용 월남난민의 재정착 관련사항임.

1. 1975.4월 월남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으로부터 한국으로 철수한 피난민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총인원: 1,562명
  - 국적별: 한국 238명, 월남 1,277명, 중국 45명, 필리핀 및 프랑스 각 1명

2. 한국은 1975.5월 이후 상기 피난민을 일단 부산에 설치된 난민수용소에 수용하고, 이들의 제3국 정착을 위한 외교적 교섭을 전개함.

- 미국
  - 미국 측은 월남피난민 대부분을 미국에 정착시킬 것이나, 여타국들도 인도적 입장에서 피난민의 재정착에 협력하여 미국의 부담경감을 희망하며 한국에도 최대한 수용 요청
- 국제기구 및 제3국
  -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ICRC(국제적십자사), UNDP(유엔개발계획) 기타 프랑스, 캐나다, 대만(구 자유중국), 호주 등 국가에 제3국 정착희망자 명단을 제출, 재정착 및 구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

3. 월남 피난민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내 또는 제3국에 정착함.

- 정착현황(정착지별)
  - 한국 : 586명(한국인 237명, 월남인 349명)
  - 미국 : 698명(월남인)
  - 캐나다: 167명(월남인)
- 부산 난민수용소는 1975.12.20. 폐쇄

한국 화물선 쌍용호의 월남난민 구조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16 / 18 / 1-75

1975년 중 한국 화물선 쌍용호의 월남난민 구조 관련사항임.

1. 사건발생 개요

- 삼양선박 소속화물선 쌍용호가 화물수송을 위해 방콕으로 가던 중, 1975.5.2. 오전5시 월남 남방 해역에서 표류하는 월남 피난민선을 만남.
- 동 피난민을 미국 해군에 인계하고자 5.6. 미국 해군기지 Sattship에 이동하였으나, 미국 측의 인수거절로 방콕항으로 귀환

2. 외무부 조치사항

- 1975.5.2.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월남 피난민 인수를 요청
  - 미국 측은 동 피난민을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
- 1975.5.4. 주태국대사에게 상기 사실을 알리고, 미국 정부 및 주태국 미국대사관에 긴급구호 및 인수 요청하도록 지시
  - 주태국 미국대사대리는 미 국무부로부터 본건 불개입 지시를 받은 바 있어, 협력제공은 불가능하다는 태도
- 1975.5.5.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재차 요청
  - 쌍용호가 구조한 월남 피난민들은 사이공 근해 미국함선들이 월남인을 계속 구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의 구조를 기대하고 탈출한 사람들이므로 순수한 인도적 견지에서 동 피난민의 인수를 재차 요청
- 1975.5.12. 외무부는 동 난민을 일단 부산항으로 수송, 수용하고 이들의 제3국으로의 송출 등 정착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
- 1975.5.31.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Ericson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에게 이들 난민 대부분이 전 월남해군임을 들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
- 1975.6.3.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동 난민 전원이 미국의 난민접수 대상자임을 설명하는 서한 발송
  - 미국대사관은 6.6.~7, 영사를 부산에 파견, 난민면접을 시행할 예정

75-1241

한국의 대월남 전시난민(수송) 지원 및 구호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P-17 / 1 / 1-172

정부의 1975년 중 월남난민에 대한 지원 및 구호활동 내용임.

1. 월남 정부는 1975년 정세악화에 따라 전 세계 및 국제기구에 대해 월남난민 구호를 위한 원조 조치를 요청함.

- 1975.1.8. 월남, 난민구호 호소 성명발표
- 1975.4.3. 주월남대사 보고
  - 난민구호 목적과 급격히 악화되는 군사정세로 유사시 잔류 공관원 및 교민 철수를 위해 조속한 LST(상륙작전용함정)파견을 요청
- 1975.4.3.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월남 피난민 수송과 구호원조를 계획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

2. 한국 정부는 1975.4.8. 월남공화국 전시난민 구호 원조방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함.

- 구호원조 방안
  - 전시난민 후방지역 긴급수송을 위한 수송단 파견(지원기간 45일, 수송 예상인원 2~3만 명)
  - 난민 구호활동 지원 의료진 파견
  - 41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의복 및 의료품 등 구호물자 무상제공

3. 한국 정부는 1975.5월 월남 귀환교포 및 난민 구호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함.

- 철수인원
  - 1975.4.30.~5.12. 해군 LST선 2척을 이용, 월남난민 1,364명 철수(한국인 541명, 월남인 823명)
- 수용 및 구호대책
  - 1단계: 철수자 수용장소는 부산 소재 학교, 수용자 전원을 15일간 수용 및 구호, 국내연고자는 귀향조치, 무연고자 및 제3국 출국자는 제2단계 수용대책 수립, 제3국 출국희망자 등은 송출계획에 관해 외무부가 관계국과 협의
  - 2단계: 무연고자 및 제3국 출국희망자를 정착 또는 송출시까지 수용 및 구호, 무연고자 및 국내정착이 불가피한 월남인을 최소한으로 엄선하여 취업, 주거 등 정착지원 계획수립
- 홍보
  - 대한적십자사 주관하에 공산침략의 희생이 된 철수교포와 월남난민을 인도적으로 맞이하는 분위기 조성

일본 적군파 관계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7 / 2 / 1-44

1975년 중 일본 적군파 관련사항임.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5.3.13. 외무부에 적군(赤軍)파 테러에 대비한 경비강화를 요청함.

- 일본공관 및 체류 일본인에 대한 적군파의 테러 등으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엄중한 경계태세 필요

2.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75.8.5. 일본 적군파 일당의 인질사건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일본 적군파 일당(수미당)이 1975.8.4. 오전11시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관 소재 빌딩에 난입, 총기 발사후 미국 영사, 스웨덴대리대사 등 약 50명의 인질을 잡고 8.5. 경찰과 대치중
  - 당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군파의 요구사항을 수락, 7명의 적군파 죄수를 특별기편으로 말레이시아에 보내도록 되었다고 보도

3. 한국 언론은 상기 적군파 인질사건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

- 일본 적군파 테러단은 1975.8.6. 인질 15명만을 대동, 쿠알라룸푸르공항으로 이동
- 동 테러단은 8.7. 일본, 말레이시아 관리 4명을 최종 인질로 동승, 리비아로 향발
  - 이들은 8.8. 트리폴리 도착후 인질 전원을 석방하고 투항

4. 주스웨덴대사는 스웨덴 정부가 1975.9.2. 일본 경찰에 의해 적군파로 지목, 검거령이 내려진 일본인 2명을 폭력행위금지법에 의해 일본으로 추방했다고 보고함.

5. 주베이루트공사는 1975.9.17. 현지 적군파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베이루트 현지 적군파는 1975.9.5. 성명서를 작성, 배포
  - 동 성명서 중 상당부분을 한국의 자유 및 혁명운동 탄압에 대한 비난과 한·일본 각료회담 반대 등에 할애
- 주베이루트대표부의 경비 및 교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 조치중임.

부 록

| 1975년 |

1.3.-7. Schmitt-Vockenhausen, H. 독일 하원부의장 방한

1.3.-8. Chabert, Josef 벨기에 교통체신장관 방한

1.4.-8. Ryan, Leo 미국 하원의원 방한

1.6.-13.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방문

1.9.-11. Passman, Otto 미국 하원의원 방한

1.12.-14. 제12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서울)

1.13. 한·영국 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발효(조약 제551호)

1.13.-17. 정세조사단 수리남 및 안틸레스(네덜란드령) 방문
- 단장: 조광제 주네덜란드대사관 참사관

1.15.-17. Maw, C. E. 미국 국무부 안보원조담당차관 방한

1.16.-18. Nunn, Sam 미국 상원의원 방한

1.17. 한·파나마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524호)

1.17.-21.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일본 방문

1.19.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조약 제527호)

1.20.-29. 김세련 국회의원 중국(구 중공) 방문

1.21.-25. Onu, Peter U.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사무총장 방한

1.22. 한·프랑스 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발효(조약 제525호)

1.23. 제4차 한·일본 의원간친회 총회(동경)

1.26.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Teheran, 이란)
- 수석대표: 이원호 주인도대사관 공사

1.26.-29. Charry Samper, Hector 콜롬비아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

1.27.-31. Cheav Seang Leau 캄보디아(구 크메르) 공업수산자원장관 방한

1.27.-2.8.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김동조 외무부장관 주재

1.28. 한·벨기에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발효(조약 제526호)

1.29.-31. Peter-Sim 호주 상원의원 방한

1.30. Abdeslam Tadlaoui 주한 모로코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2.1.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 상무관실 개설

2.4. 조상호 제5대 주이탈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2.12.-25. 경제협력사절단 미국, 일본 방문
- 단장: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미국(2.12.~22.), 일본(2.23.~25.)

2.15.-18.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총회 대비 제2차 77그룹 각료회의(Algier, 알제리)
- 수석대표: 윤석헌 주프랑스대사

2.16.-3.7. 김동조 외무부장관 동남아 순방(싱가포르, 필리핀,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2.17.~19.), 필리핀(2.19.~21.), 네팔(2.22.~26.), 태국(2.26.~27.), 인도네시아(2.27.~3.2.), 말레이시아(3.3.~7.)

2.21.-27. 강양욱 북한 부주석 네팔 국왕 대관식 참석

2.21.-3.4. 제5차 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AARRO) 총회 및 제14~15차 집행위원회(Manila)
- 수석대표: 한만준 농수산부 기획실장

2.24.-3.6. 이철승 국회 부의장 미국 방문

2.25. 전상진 제5대 주말레이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2.25.-3.2. Aroon 태국 공업성장관 방한

2.26.-3.7. 제31차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New Delhi)
- 수석대표: 박찬현 주인도대사

3.1. 주가봉 북한대사관 개설

3.1. 한·월남 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28호)

3.1. 주방글라데시대사관 개설

3.1.-4. Mueller, Oluf C. 노르웨이 공업성차관 방한

3.1.-31. 제13차 Tripoli 국제박람회

3.2.-4. Castaneda Cornejo, Ricarado G. 엘살바도르 외무부차관 방한

3.4. 송광정 초대 주그레나다대사 신임장 제정(베네수엘라 상주)

3.4.-7. 제1차 한·독일 문화합동위원회(Bonn)

3.5. 지성구 주감비아대사 신임장 제정(세네갈 상주)

3.5. 주한 칠레대사관 재개설

3.5. Bates, William Stanley 제6대 주한 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3.9.-12. Wiggins, Charles E. 미국 하원의원 방한

3.10.-14. 제65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Rome)
- 수석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3.10.-19. 박성철 북한 부총리 이란 방문

3.10.-25.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사절단 방한
- 단장: Al-Humaid, Othman 국방성 군수참모부장

3.11.-14. 제7차 한·일본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동경)

3.12.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개설

3.12. 황호을 초대 주파나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12.-27. 제2차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총회(Lima, 페루)
- 수석대표: 최각규 경제기획원차관

3.13. 한·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협정의 제4차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3.14.-22. 김동조 외무부장관 유럽 순방(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교황청)
- 프랑스(3.15.~18.), 룩셈부르크(3.19.~20.), 네덜란드(3.21.~23.), 교황청(3.22.)

3.15.-24. 최규하 특사(대통령 외교담당특별보좌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3.17. Leuteritz, Karl 제5대 주한 독일대사 신임장 제정

3.17. 니시야마 아키라 제4대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3.17.-19.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Habana, 쿠바)

3.17.-20. 제24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총회(Sydney)

3.17.-21. 제2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임위원회(Geneva)
- 옵서버: 문기상 상공부 특허국장

3.17.-25. 제27차 세계식량계획(WFP) 정부간 위원회(Rome)
- 수석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3.17.-5.9.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Geneva)

3.18.-24. Marcus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3.18.-4.12.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감비아, 라이베리아, 차드, 가봉, 레소토, 스와질랜드, 모리셔스)
- 단장: 최경록 교통부장관
- 감비아(3.18.~20.), 라이베리아(3.20.~23.), 차드(3.25.~27.), 가봉(3.29.~4.2.), 레소토(4.2.~4.), 스와질랜드(4.6.~8.), 모리셔스(4.9.~12.)

3.20. 오윤경 제3대 주우루과이대사 신임장 제정

3.20. 한·이란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529호)

3.21.-23. 장예준 상공부장관 영국 방문

3.23.-30. 김동조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3.24.-27. 장예준 상공부장관 벨기에 방문

3.24.-4.1. 한·캐나다 특정섬유류 쿼터회담(서울)

3.25. 김순교 초대 주방글라데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25. 박근 제5대 주스위스대사 신임장 제정

3.27.-30. Astacio, Julio E. 엘살바도르 보건장관 및 Vieytez Canas, Atilio 국가계획청장 방한

3.30.-4.2. Fraser, Donald M. 미국 하원의원 방한

3.31. 주요르단대사관 개설

3.31. Holdrich, John Roger 제4대 주한 호주대사 신임장 제정

3.31.-4.2. 김동조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3.31.-4.5. 제116차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Colombo, 스리랑카)
- 수석대표: 김세련 국회 외무위원장

4.1.-5. 제3차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서명자회의(Montreal)
- 수석대표: 장기익 체신부 전무국장

4.2. Geber, Anthony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차관보 방한

4.3. 김인권 제2대 주페루대사 신임장 제정

4.3. 옥만호 제2대 주콜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4.4. 홍성욱 제2대 주덴마크대사 신임장 제정

4.4.-5. Sutowo, Ibnu 인도네시아 석유공사 총재 방한

4.4.-11.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북예멘 방문

4.5. 주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관 폐쇄

4.5. Mougnon, S. 주한 가봉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4.5. 한·캄보디아(구 크메르) 관계 정지

4.5.-8. Sri Biwa Ari Tadjo 주필리핀 인도네시아대사 방한

4.8.-11. 제5차 아시아노동장관회의(Melbourne, 호주)
- 수석대표: 고재필 보건사회부장관

4.9.-10. 한·구주공동체(EC) 간 섬유류 쿼터회담(Brussels)

4.10. 조효원 주몰디브대사 신임장 제정(Colombo통상대표부 상주)

4.10.-20.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김동조 외무부장관 주재

4.10.-29.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우간다,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세네갈)
- 단장: 노신영 외무부차관
- 우간다(4.10.~13.), 르완다(4.13.~16.), 콩고민주공화국(4.17.~20.), 코트디부아르(4.20.~23.), 부르키나파소(4.23.~26.), 세네갈(4.26.~27.)

4.11.-16. 파키스탄 친선사절단 북한 방문
- 단장: Shah Nawaz 외무부차관

4.13.-18. Okoumba D'okwatsegue, E. K. 가봉 외상 방한

4.13.-24. Sukselainen, V. J. 핀란드 국회의장 북한 방문

4.15. 한·독일 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531호)

4.15. 한·세네갈 간의 무역협정 서명

4.15.-16. 한·일본 섬유류 실무자회담(서울)

4.15.-16. 시마사키 히도시 일본 통산성 정무차관 방한

4.15.-18. Puig Lanza, Barrett 우루과이 대통령 공보실장 방한

4.15.-18. 김종필 국무총리 장개석 중국(구 중공) 총통 장례식 참석

4.15.-19. 제22차 국제지방행정기관연합(IULA) 총회(Teheran)
- 수석대표: 김태호 내무부 지방행정담당관

4.15.-24. 제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농업위원회(Rome)
- 수석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4.18.-26.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4.19.-23. 김동조 외무부장관 인도 방문

4.21. Tenne Koon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방한

4.21.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개설

4.22. 북한·포르투갈 외교관계 수립

4.2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533호)

4.23.-26. 제8차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총회(Rome)
- 수석대표: 김광원 주이탈리아 공보관

4.24.-26. 제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Jakarta)
- 수석대표: 김용환 재무부장관

4.25.-5.2. Mohammed Omar Tawfig 사우디아라비아 교통체신장관 방한

4.26. 정부, 온두라스 신정부 승인

4.27.-5.5. Siriwardence, H.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차장 방한

4.28.-5.4. Duque Ramirez, Gustavo 콜롬비아 하원 외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4.28.-5.23. 제7차 세계기상기구(WM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양인기 중앙관상대장

4.29. Diop, Babacar 초대 주한 세네갈대사 신임장 제정(인도 상주)

4.29. Chaudhury, A.M. 초대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4.29.-5.3. 최경록 특사(교통부장관) 태국 방문

4.30. 주한 월남대사관 및 주월남대사관 폐쇄

4.30.-5.21. 정일권 국회의장 미국, 서구(프랑스, 독일) 및 일본 순방
- 미국(4.30.~5.8.), 프랑스(5.9.~12.), 독일(5.12.~17.), 일본(5.18.~21.)

5.1. 주한 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관 폐쇄

5.1.-3. 노신영 외무부차관 미국 비공식 방문

5.2.-5. 김종필 국무총리 Khalid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즉위식 및 Faisal 국왕 장례식 참석

5.4.-10. Eghbal, M. 이란 석유공사 총재 방한

5.5. 한·이탈리아 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30호)

5.5.-20. 심흥선 총무처장관 스페인 및 중동 순방(튀니지, 모로코)
- 튀니지(5.5.~9.), 모로코(5.11.~15.), 스페인(5.15.~20.)

5.6. Cuenoud, Pierre 주한 스위스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5.6. 허담 북한 외교부장 루마니아 방문

5.8. 북한·태국 외교관계 수립

5.8.-9. 김종필 국무총리 일본 방문

5.8.-18. 제5차 미주기구(OAS) 총회(Washington, D.C.)

5.10.-14. Wilford, K. M. 영국 외무성 아주담당차관보 방한

5.12. 북한·케냐 외교관계 수립

5.12.-6.1. 세계관광기구(WTO) 창립 총회(Madrid)
- 수석대표: 신상철 주스페인대사

5.13.-28. 제28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5.14. Ugarteche, Jorge Velando 주한 페루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5.14. Fontaine Nakin, Leopoldo 초대 주한 칠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5.14.-16. Barjuch Martinez, Hernando 콜롬비아 하원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5.15. 벨기에·한 친선협회 창립

5.15.-20. Mohammed M. Madooh 쿠웨이트 상공부차관보 방한

5.16. 북한·미얀마(구 버마) 외교관계 수립 및 북한대사관 개설

5.16.-6.11.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리비아, 요르단, 북예멘)
- 단장: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 리비아(5.18.~20.), 요르단(6.1.~3.), 북예멘(6.5.~6.9.)

5.17. 주무송 제5대 주한 중국(구 중공)대사 신임장 제정

5.17.-20. Yamasaki, Manoru 미국 상원의원 방한

5.18. 한·스페인 간의 선원수첩 공인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35호)

5.19. 한·미얀마(구 버마) 외교관계 수립 및 주미얀마대사관 개설

5.20. 제17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회(서울)
- 수석대표: 심의환 상공부차관

5.20.-26. Wurth, Paul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직물감독기구(TSB) 의장 방한

5.21. 김인권 주볼리비아대사 신임장 제정(페루 상주)

5.22. 이춘성 초대 주시에라리온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5.22.-6.9. 김일성 북한 주석 동구 및 중동 순방(루마니아, 알제리, 모리타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 루마니아(5.22.~26.), 알제리(5.26.~30., 6.1.~2.), 모리타니아(5.30.~6.1.), 불가리아(6.2.~5.), 유고슬라비아(6.5.~9.)

5.25.-27.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Derwinski, Edward J. 의원

5.26.-31. 제43차 국제수역국(IOE) 총회(Paris)
- 수석대표: 이중희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5.26.-6.3. Nawaaf Ibn Abdul Aziz Al-Faisal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방한

5.27.-6.3. 제15차 국제도량형국(IBWM) 총회(Paris)
- 수석대표: 김종학 공업진흥청 기술지도과장

5.27.-6.12. 노신영 외무부차관 중남미 순방(페루,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 페루(5.27.~31.), 아르헨티나(6.2.~6.5.), 자메이카(6.9.~6.12.)

5.29.-30. 제3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Paris)
- 수석대표: 윤석헌 주프랑스대사

5.29.-30. 한·구주공동체(EC) 섬유류 쿼터회담(Brussels)

5.29.-31. 한·스웨덴 섬유류 쿼터회담(서울)

5.29.-6.4. Rekangalt, Martin 가봉 외무차관 북한 방문

5.29.-6.10.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원장 일본 방문

5.30. 한·수리남 영사관계 수립 합의

5.30.-6.2. Weizsacker, Richard Von 독일 하원의원 방한

5.31. 한·르완다 외교관계 정지 및 주르완다대사관 철수

5.31. 최명준 초대 주아프가니스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5.31.-6.1. Schroeber, Gerhard 독일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방한

5.31.-6.3.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Mathis, Dawson 의원

6.1.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534호)

6.3. 윤경도 초대 주카타르대사 신임장 제정(사우디아라비아 상주)

6.3.-5. Abramowitz, M. E.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방한

6.4.-25. 제6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최두열 노동청장 참관

6.9.-20. 제66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Rome)
- 수석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6.10.-12. 한·호주 의류 쿼터회담(서울)

6.10.-17. 제4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Vienna)
- 수석대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

6.11. 주포르투갈대사관 개설

6.12.-14. 최규하 대통령 외교담당특별보좌관 일본 방문

6.12.-17. 경제조사단 에콰도르 방문
- 단장: 김명윤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

6.13. 노신영 외무부차관 미국 방문

6.13.-21. 신도성 국토통일원장관 독일, 오스트리아 방문
- 독일(6.15.~22.), 오스트리아(6.22.~24.)

6.15.-17. 김종필 국무총리 사토 전 일본 수상 장례식 참석

6.17. 한·호주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536호)

6.17.-18. 제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Crean, Frank 통상장관

6.17.-18. 제1차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Madrid)
- 수석대표: 신상철 주스페인대사

6.17.-19. Weyand, F.C.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6.18.-21. 제2차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Madrid)
- 수석대표: 신동원 국제경제국장

6.19.-22. Willesee, Donald 호주 외상 방한

6.20.-7.12.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가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보츠와나)
- 단장: 김영주 주캐나다대사
- 가나(6.20.~24.), 시에라리온(6.24.~27.), 에티오피아(6.29.~7.2.), 케냐(7.2.~5.), 말라위(7.5.~9.), 보츠와나(7.10.~12.)

6.21.-7.4.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구주 순방(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 네덜란드(6.21.~23.), 벨기에(6.23.~25.), 독일(6.25.~28.), 프랑스(6.28.~7.1.)

6.21.-7.11.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오만)
- 단장: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 쿠웨이트(6.21.~24./7.9.~11.), 바레인(6.24.~28.), 카타르(6.28.~7.1.), 아랍에미리트연합국(7.1.~4.), 오만(7.4.~8.)

6.22.-27. Zurhellen, J. O.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부차관보 방한

6.23.-27. 제1차 세계식량이사회(WFC) 총회(Rome)
- 수석대표: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6.23.-29. Matiarena, J. H. 및 Cornejo Linares, J. C. 아르헨티나 상원의원 방한

6.23.-7.4. 제7차 제품위원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Geneva)
- 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6.24.-30. Roman, Vicfor Hugo 코스타리카 외무차관 방한

6.24.-7.11.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베냉(구 다호메이),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 단장: 윤석헌 주프랑스대사
- 중앙아프리카(6.24.~28.), 차드(6.28.~29.), 카메룬(6.29.~7.2.), 베냉(7.2.), 코트디부아르(7.2.~4.), 니제르(7.7.~11.)

6.26. 제3차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Gillespie, A. 통상장관

6.26. Gillespie, A. 캐나다 통상장관 방한

6.26. 한·미국 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서명 (1974.10.1. 소급발효, 조약 제538호)

6.26. Khamhing, Tiao 초대 주한 라오스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6.26. Obame, Valentine 초대 주한 가봉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6.26. 주한 가봉대사관 개설

6.26.-27. MacEachen, Allan J. 캐나다 외상 방한

6.27. 유엔군사령부 장래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안보리 의장 앞 공한 송부(S/11737) 관련, 김동조 외무부장관 성명 발표

6.27. 한·코스타리카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제539호)

6.27. 한국문제 관련 한국 측 결의안(A/10142) 제30차 유엔총회에 제출

6.27.-7.1. Pineda Milla, Ricardo Arturo 온두라스 외무차관 방한

6.27.-7.1. 한·노르웨이 무역회담(서울)

6.30.-7.5. Sutowo, Ibnu 인도네시아 석유공사 총재 방한

7.1.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537호)

7.2.-3. 제8차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 총회(Paris)
- 수석대표: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7.2.-5. Reyes, Robert V. 필리핀 대통령비서실 차관 방한

7.3. 북한·라이베리아 외교관계 수립

7.4.-8.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이란 방문

7.5.-8. Okoumba D'okwatsegue, E. K. 가봉 외상 방한

7.5.-8. Bongo, El Hadj Omar 가봉 대통령 방한

7.7. 한·가봉 간의 무역협정 서명

7.7. 한·가봉 간의 경제, 기술, 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7.7. 한·가봉 간의 협력에 관한 한·가봉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서명

7.7.-9. 한·스웨덴 섬유류 쿼터회담(Stockholm)

7.8.-12. Waldron-Ramsay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 방한

7.9.-11. 한·일 의원연맹 창립총회 겸 제5차 한·일 의원간친회 총회(서울)
- 한·일의원연맹으로 개명

7.9.-12. 제1차 한·태국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Chittavira, Thongyod 통상장관

7.9.-12. Katigbak A. 필리핀 외무성 의전실장 방한

7.10.-11. 한·오스트리아 섬유류 쿼터회담(Vienna)

7.13.-24. 노신영 외무부차관 서남아 순방(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
- 싱가포르(7.13.~16.), 스리랑카(7.16.~24.), 인도(7.21.~24.)

7.14. 한·스페인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서명

7.15. Rossi, Agnelo C. 로마교황청 추기경(포교성 장관) 방한

7.15.-17. 한·구주공동체(EC) 섬유류 쿼터회담(Brussels)

7.20.-23. Bray, William G. 미국 하원의원 방한

7.20.-24. Winhler, Gunther 오스트리아 Vienna대학 부총장 겸 오스트리아·한 협회 회장 방한

7.22.-27. Bahie Eldin Nasr 일본 상주 아랍연맹대표 비공식 방한

7.23.-24.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외상 방한

7.24. 한·라오스 외교관계 단절

7.25. 주라오스대사관 폐쇄

7.27.-31. Brillantes 77그룹 아시아지역 각료회의 의장 겸 주제네바 필리핀대사 방한

7.28.-31. Sapena-Pastor, R.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7.28.-8.2. 제12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Kampala, 우간다)

7.29. 정부, 유엔가입 신청서 유엔사무국에 제출

7.29. 임명진 주스와질랜드대사 아그레망 접수(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상주)

7.30. 한·파라과이 공동위원회 설치

7.30.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공동이사국 형성 협정 가입

7.30.-8.11. 허담 북한 외교부장 아주 순방(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인도(7.30.~8.2.), 스리랑카(8.2.~5.), 말레이시아(8.5.~7.), 인도네시아(8.7.~11.)

7.31. 한·파라과이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541호)

7.31. 한·파라과이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7.31.-8.7. 한·구주공동체(EC) 섬유류 쿼터회담(Brussels)

8.1. 강양욱 북한 부주석 시에라리온 방문

8.2.-21. 친선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세네갈,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 단장: 이원경 문화공보부장관
- 세네갈(8.5.~7.), 라이베리아(8.7.~9.), 콩고민주공화국(8.11.~14.), 부르키나파소(8.19.)

8.4.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540호)

8.4.-5. 제5차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

8.4.-8. 김인권 주페루대사 볼리비아 독립기념식 참석

8.5.-15. 제15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8.5.-19. 특별사절단 서남아 순방(네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구 버마))
- 단장: 정소영 농수산부장관
- 네팔(8.7.~9.), 아프가니스탄(8.10.~12.), 방글라데시(8.13.~14.), 미얀마(8.14.~17.)

8.7. 장재용 제5대 주칠레대사 신임장 제정

8.8. 한·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8.8.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601호)

8.8. 주싱가포르대사관 개설

8.8.-11.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Wolff, Lester 의원

8.8.-19. 노신영 외무부차관 중동 순방(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 사우디아라비아(8.8.~13.), 요르단(8.13.~15.), 쿠웨이트(8.15.~17.), 레바논(8.17.~19.)

8.11.-14. Burgener, Clair W. 미국 하원의원 방한

8.11.-19.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일본 방문

8.13.-20. 제1차 한·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서울)

8.15. 한·스페인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42호)

8.17.-19. Sikes, Robert 미국 하원의원 방한

8.18. 주토론토총영사관 개설

8.18.-21.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Addabbo, Joseph P. 의원

8.18.-22. Soto Reyes, Artuno 온두라스 외무성 의전장 방한

8.19. 한·싱가포르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발효(조약 제543호)

8.20. 소상영 초대 주요르단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8.20. 윤호근 초대 주포르투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8.20.-22. Findly, Paul 미국 하원의원 방한

8.21. 정부, 방글라데시 신정부 승인

8.25. 주한 이란대사관 개설

8.25.-27. Melchor 필리핀 관방장관 겸 대통령비서실장 방한

8.25.-28. 제10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동경)

8.26.-27. 제8차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서동철 국방부장관 / Schlesinger, J. R. 국방장관

8.27.-31. Mancham, James R.M. 세이셸 수상 방한

8.27.-9.4. 제35차 국제교육국(IBE) 국제교육회의(Geneva)
- 수석대표: 조성옥 문교부차관

8.28.-30. Passman, Otto 미국 하원의원 방한

8.28.-30. Eagleton, Thomas 미국 상원의원 방한

8.29. 윤경도 제2대 주핀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8.29. 북한, 비동맹 가입

8.29. 한·일본 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544호)

8.29.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발효 (조약 제545호)

8.30. 박준하 제4대 주에티오피아대사 신임장 제정

8.31.-9.9. 허정숙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란 방문

9.1.-5. 제30차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김용환 재무부장관

9.1.-6. 제26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Manila)
- 수석대표: 장경식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9.2. 쇼세이마루 일본어선 북한 피납

9.3.-5. 제2차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동경)
- 수석대표: 이선기 경제기획원 차관보 / 기쿠치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9.3.-12. 제62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17차 이사회(London)
- 수석대표: 김세련 국회 외무위원장

9.3.-2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법회의(Montreal)
- 수석대표: 장만순 주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

9.4.-10. 1975년도 대일 경제협력사업 제1차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의(동경)

9.5.-27. 특별사절단 북구 순방(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 단장: 최규하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
- 덴마크(9.7.~9.), 노르웨이(9.9.~12.), 핀란드(9.12.~16.), 스웨덴(9.16.~19.), 아이슬란드(9.19.~23.)

9.6. 북한·일본 간의 민간어업 잠정합의서 조인

9.8.-10. 한·캐나다 특정 섬유류 쿼터회담(Ottawa)

9.8.-13. 김용환 재무부장관 영국 방문

9.9. 김세원 제6대 주스웨덴대사 신임장 제정

9.9.-12. Brutus, Edner 아이티 외상 방한

9.11.-14. Abdul Aziz Al-Sagar 쿠웨이트 상공회의소 회장 방한

9.11.-16. Shore, Peter 영국 통상장관 방한

9.12.-19. Nsekalije 르완다 외상 북한 방문

9.14.-15.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외상 방한

9.14.-15. 제8차 한·일본 정기각료회의(서울)
- 수석대표: 남덕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 후쿠다 다케오 부수상겸경제기획청장관

9.14.-25. 덴마크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Dahlgaard, T. 주한 덴마크대사

9.15.-22. 한·구주공동체(EC) 섬유류 쿼터회담(Brussels)

9.16. 정부, 파푸아뉴기니 승인

9.16.-20. 제1차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실무자회의(서울)

9.16.-12.17. 제30차 유엔총회
- 수석대표: 김동조 외무부장관

9.17. 이창희 제7대 주독일대사 신임장 제정

9.18.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546호)

9.19. 연하구 주모리셔스대사 신임장 제정(케냐 상주)

9.21. 장춘교 중국(구 중공) 부총리 북한 방문

9.21.-24. Magnussen, Einar 노르웨이 상공해운장관 방한

9.22. 국제원자력기구, 한·프랑스 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발효(조약 제547호)

9.22.-25. Al-Faisal, Turki Ibn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방한

9.22.-27. 제1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

9.22.-10.8. 특별사절단 중남미 순방(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에콰도르, 파나마)
- 단장: 최경록 교통부장관
- 엘살바도르(9.22.~24.), 온두라스(9.25.~29.), 에콰도르(9.30.~10.4.), 파나마(10.4.~8.)

9.26.-30. Mahindra, Harish C.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방한

9.27. 한·이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 발효(조약 제548호)

9.27.-10.3. 프랑스 하원 문화사회분과위 사절단 방한
- 단장: Vivien, Robert-Andre 프랑스·한 의원친선협회장

9.29. Fahr bin Taymur 오만 내무차관 겸 국방차관 방한

9.29.-10.3. 제28차 세계식량계획(WFP) 정부간위원회(Rome)

9.29.-10.7. Mertes, Werner 독일 하원 자민당 원내총무 방한

9.30.-10.4. Melen, Ferit 터키 국방장관 방한

10.1.-2. 이재설 특사(주인도네시아대사) 싱가포르 방문

10.2. 장상문 제5대 주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10.2.-11.6.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차드,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니제르, 세네갈,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 단장: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
- 차드(10.2.~5.), 부르키나파소(10.8.~10.), 니제르(10.10.~11.), 세네갈(10.11.~16.), 우간다(10.21.~23.), 중앙아프리카(10.27.~29.), 카메룬(11.3.~6.)

10.3. 일본 요미우리신문 대표단 북한 방문
- 단장: 스쿠다 사회부 부부장

10.3.-7. Abdul Wahab Ahmed Abdul Wassie 사우디아라비아 간사원장 방한

10.4.-10. 제11차 아시아의원연맹(APU) 총회(Taipei)
- 수석대표: 김진만 국회 부의장

10.6. 한·베냉(구 다호메이) 단교

10.6.-8. 한·영국 투자보장협정 체결 실무자회의(서울)

10.6.-9. 제2차 한·미얀마(구 버마) 통상장관회담(Rangoon)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U San Win 통상장관

10.7.-11. 도고 후미히코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0.7.-12. Bahie Eldin Nasr 일본 상주 아랍연맹대표 방한

10.9.-15. 제44차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총회(Buenos Aires)
- 수석대표: 김봉균 치안본부 치안감

10.11. Odevall, Bengt 주한 스웨덴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0.11. M'Bary-Daba, A. 주한 중앙아프리카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0.11.-16. 장예준 상공부장관 이란 방문

10.12.-15. 구자춘 서울시장 터키 방문

10.13.-16. Broomfield, William S. 미국 하원의원 방한

10.13.-16. 정준기 북한 부총리 이란 방문

10.15. 주Paramaribo(수리남)총영사관 개설

10.15.-18. 아르헨티나 국회의원단 북한 방문
- 단장: Luder, Italo A. 상원의원

10.16.-19. McClure, James 미국 상원의원 방한

10.17. 안진생 초대 주미얀마(구 버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0.17.-20. 구자춘 서울시장 중국(구 중공) 방문

10.17.-22. Wilson, Charles H. 미국 하원의원 방한

10.17.-27. 특별사절단 북예멘 및 쿠웨이트 방문
- 단장: 장예준 상공부장관
- 북예멘(10.17.), 쿠웨이트(10.21.~25.)

10.18.-28. Tadeja, D.P. 인도 하원의원 방한

10.19. 한·과테말라 친선협회 창립

10.20. 한·벨기에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발효 (조약 제549호)

10.20.-25. 1975년도 대일 경제협력사업 제2차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의(서울)

10.22.-24. 특별사절단 카타르 방문
- 단장: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10.23. 장상문 주과테말라대사 신임장 제정(멕시코 상주)

10.23.-24. Habib, Philip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10.23.-28. 미국 한국전쟁 참전의원단 방한
- 단장: Murphy, John M. 하원의원

10.24.-29. Abdul Ghafar bin Baba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성장관 방한

10.25. 유양수 제2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신임장 제정

10.25.-29. 이용희 특사(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관) 브라질 방문

10.25.-11.4. 제9차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COI) 총회(Paris)
- 수석대표: 박용만 서울대학교 교수

10.26. 최규하 특사(대통령 외교담당특별보좌관) 태국 방문

10.26.-28. 인도 잠업사절단 방한
- 단장: Sharma, A.P. 공업조달성장관

10.26.-28. 장예준 특사(상공부장관) 그리스 방문

10.27. U Thaung Lwin 초대 주한 미얀마(구 버마)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0.27.-11.1. 제33차 국제적십자연맹(LRCS) 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이호 대한적십자사 총재

10.27.-11.7. 제7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10.29. 제30차 유엔총회 제1(정치)위원회,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 측 결의안(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및 공산 측 결의안(찬성 51, 반대 38, 기권 50) 가결

10.30.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 통가 헌법제정 100주기 기념식 참석

11.2.-6. Kirimli, A. 한·터키 의원협회 회장 방한

11.3.-7. Bonzanga, S. 중앙아프리카 외무차관 방한

11.3.-14. 제9차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총회(London)
- 수석대표: 최종익 주영국대사관 공사

11.6.-9. Soedjarwo 인도네시아 산림청장 방한

11.8.-27. 제18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Rome)
- 수석대표: 장덕진 농수산부차관

11.10.-15. 제3차 한·미국 어업실무자회담(서울)

11.10.-15. 제34차 국제면화자문기구(ICAC) 총회(Abidjan, 코트디부아르)
- 수석대표: 조광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공사

11.10.-15. 제6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국내위원회 회의(New Delhi)

11.12.-12.25. 제4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의(Madrid)
- 수석대표: 강용순 수산청장

11.13.-19. 제1차 한·이란 각료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남덕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 Ansary, H. 경제재무성장관

11.14.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의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발효(조약 제550호)

11.14. 제8차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서울)

11.14. 한·일본 수산청장회의(서울)

11.15. 이규성 초대 주싱가포르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1.15.-19. A.R. El-Kashif 이집트 주택재건성차관 방한

11.16.-19. Ponce Monroy, Ramiro 과테말라 국회 제1부의장 및 Castillo Valdez, Rafael 외무위원장 방한

11.18. 제30차 유엔총회 본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 측 결의안(찬성 59, 반대 51, 기권 29) 및 공산 측 결의안(찬성 54, 반대 43, 기권 42) 가결

11.19.-27. 제3차 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AOPU) 총회(Melbourne, 호주)
- 수석대표: 강유원 체신부 우정국장

11.20. 장상문 주온두라스대사 신임장 제정(멕시코 상주)

11.20.-28. 한·구주공동체(EC) 섬유류 쿼터회담(Brussels)

11.20.-28. 송광정 특사(주베네수엘라대사) 수리남 독립기념식 참석

11.21.-24. 심흥선 총무처장관 Franco 스페인 총통 장례식 참석

11.21.-24. Al-Yousef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무성 국제경제국장 방한

11.22. 김동조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11.24. 장상문 주니카라과대사 신임장 제정(멕시코 상주)

11.24.-28. 제1차 한·덴마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실무자회의
- 수석대표: 최세진 재무부 세제국장

11.25. 정부, 수리남 승인

11.25. 한·코스타리카 친선협회 창립

11.25.-12.3. 제25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Colombo)
- 수석대표: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11.26.-28. 제31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11.26.-29. Daniel, Robert W. 미국 상원의원 방한

11.28. 한·튀니지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552호)

11.28. 한·수리남 외교관계 수립

11.30.-12.3. Chatichai Choonhavan 태국 외상 방한

12.1.-2. 제12차 한·일본 무역회담(동경)
- 수석대표: 신정섭 외무부 통상국장 / 나카에 요스케 외무성 아시아국장

12.1.-1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법률전문가 그룹회의(New York)

12.3. 장상문 주코스타리카대사 신임장 제정(멕시코 상주)

12.5.-9. Bentley, William 영국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2.7.-11. Gillet, Roland 벨기에 하원의원 방한

12.8.-9. Habib, Philip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및태평양담당차관보 방한

12.8.-9. 제13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동경)

12.10. 한·카메룬 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에 대한 일반협정 서명(조약 제610호)

12.10.-19. 제30차 국제군인체육이사회(CISM) 총회(Madrid)
- 수석대표: 김용금 국방부 인사국장

12.12. 이란·한 의원협회 창립

12.12.-15. Macapagal, Diosdado 전 필리핀 대통령 방한

12.15. 한·스위스 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서명

12.15.-18. 제10차 한·중국(구 중공) 경제각료회담(Taipei)
- 수석대표: 남덕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 손운선 경제부장

12.15.-18. Collantes, M. 필리핀 외무차관 방한

12.17. Du Cros, Remy Teissier 제4대 주한 프랑스대사 신임장 제정

12.17. Barkman, Carl D. 주한 네덜란드대사 신임장 제정(일본 상주)

12.18.-19. 한·일본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동경)

12.19. 최규하 제12대 국무총리 취임

12.19. 주수리남대사관 개설

12.29. 윤영교 주차드대사 신임장 제정(카메룬 상주)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75년

인 쇄 | 2020년 8월 31일
발 행 | 2020년 9월 15일

발 행 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 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박상훈, 박재현, 송봉헌, 이휘진, 최석인, 한재영

감수위원 류광철

인 쇄 제일기획
Tel. 02) 2269-8900~2